

大韓民國政黨史

第4輯 (1988. 2. 25~1993. 2. 24)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858-090017-14

大韓民國政黨史

第4輯 (1988. 2. 25~1993. 2. 24)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발 간 사



현대 정치과정의 핵심 동인(動因)은 정당이며, 우리나라의 정당 또한 민주정치 발전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 기능이 점차 증대되어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사료의 보존과 정당정치 발전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1973년 『대한민국정당사』 제1집을 발간한 데 이어 1981년 제2집, 1992년 제3집을 발간하여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생성 및 소멸된 정당들의 변화와 활동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당사 발간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정당과 정당정치에 대한 기록들이 축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간사업을 재개하여, 올해 『대한민국정당사』 제4집과 제5집을 동시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당에 대한 역사기록을 이어가는 한편 한국 정당정치의 발자취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정당사는 법령과 단순 사료 중심의 기존 정당사와는 달리 정당의 성립, 변화, 소멸 그리고 다양한 정당 활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당정치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각 정당의 당내 상황뿐만 아니라 정당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정확히 규명

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료 분석과 연구를 위한 시간적 제약도 또 다른 어려움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찬위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반복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역사기록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완전무결할 수 없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더 나은 사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진심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초적인 정당 관련 사료와 정당정치 과정을 담은 이 책이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정당사』를 발간하는 데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편찬위원회 위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 오랜 기간 자료수집과 원고 집필을 위해 애써 주신 편찬실무단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



일 러 두 기

1. 『대한민국정당사』 제4집은 노태우 정부 집권기인 1988년 2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 까지 존속한 정당을 대상으로 그 성립과 변화, 그리고 정당 활동 등을 수록하였다. 다만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전까지의 기간은 『대한민국정당사』 3집에 수록되어 정치적 상황만을 기술하였다.
2. 『대한민국정당사』 제4집은 5개 장의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하였고, 그 내용은 ‘장·절·1·가·1)·가)’ 순으로 구분하여 전개하였다. 본문은 개관, 정당 관련 제도의 변천, 정당의 성립과 변화, 정당활동, 정당의 수입과 지출 등으로 구성하여 기술하였다. 부록에는 정당의 변천과정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중앙당 등록·말소 현황, 정당의 당원수, 정당의 활동연지, 창당발기취지문·창당 및 합당선언문, 정당의 강령·기본 정책을 수록하였다.
3. 제2장 정당 관련 제도의 변천은 「정당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노태우 정부 기간의 주요 변화를 개정 차수별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전 발간한 정당사에 노태우 정부 이전의 정당관련 제도 변화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였다. 한편 법률 규정과 관련된 하위 법령도 필요한 경우 (영)으로 별도 표시하여 일부 내용을 기술하였다.
4. 제3장 정당의 성립과 변화는 기존정당과 신설정당으로 구분하여 각 정당별로 구성하였다. 기존정당은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기점으로 이미 존속하고 있던

정당을 의미하며, 신설정당은 그 이후 창당과정을 통해 새롭게 등록된 정당을 의미한다. 다만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의해 소멸된 정당은 기존 정당에서 제외하였다. 각 정당 기술의 순서는 정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주요간부 변경일은 변경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5. 제4장 정당활동은 선거활동, 원내활동, 당내활동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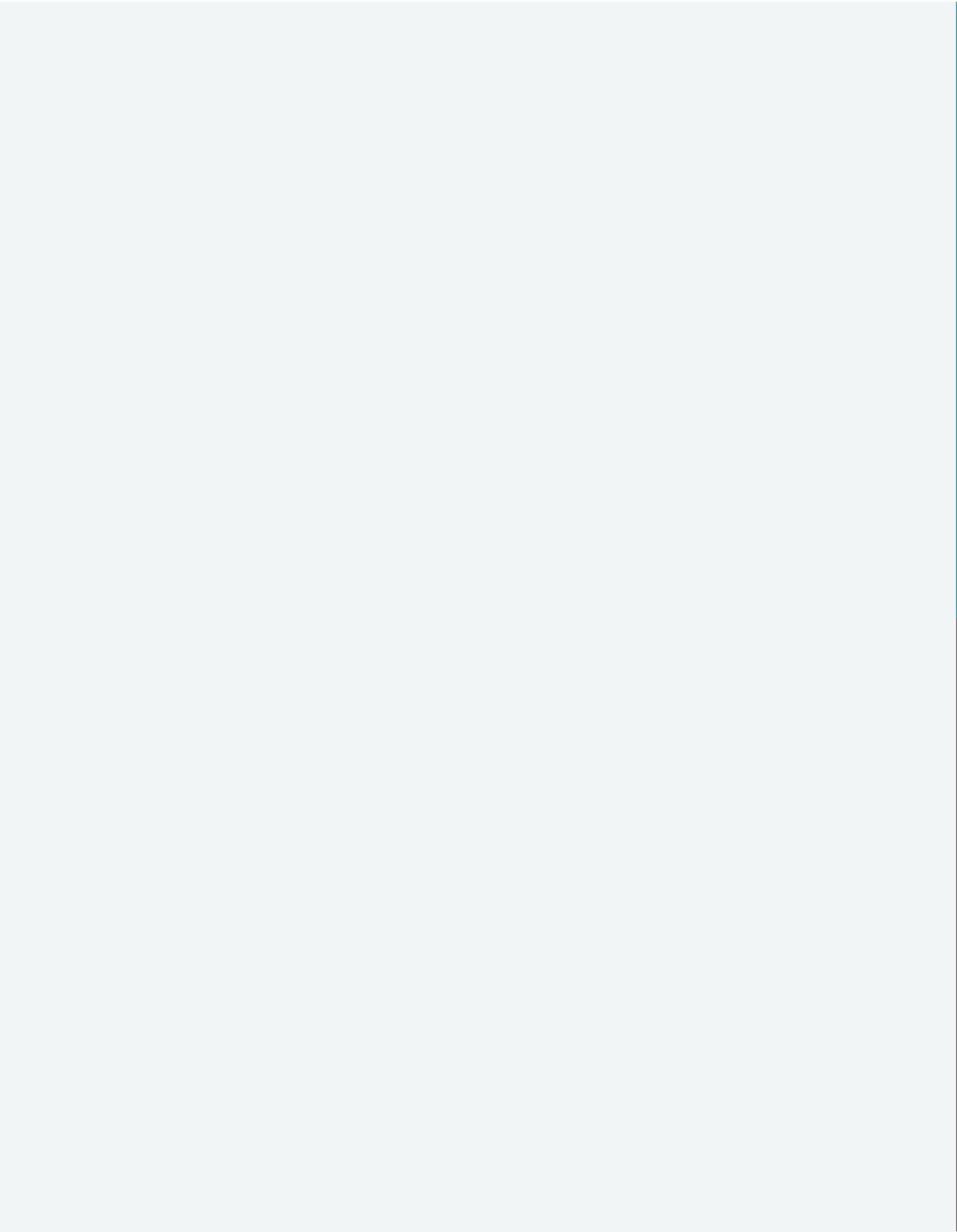
선거활동은 선거별·정당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정당별 선거 활동은 동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선거사』를 발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당의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기간에 실시된 선거로 제한하여 기술하였다.

원내활동은 정당별로 구분하는 대신 연도별로 구분하고, 전반적인 국회운영과 결과를 수록한 『국회사』와는 달리 정당사의 특성을 고려하고 정당 간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당내활동은 각 정당별로 구성하여 당 내부적으로 전개된 주요활동 상황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일부 정당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내용을 수록하지 못하였다. 한편 정당이 중심이 되어 대외적으로 전개한 활동의 경우도 당내활동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6. 제5장 정당의 수입과 지출은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회계 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항목별로 기술하였다. 비공식적이거나 불법적으로 모금·지출된 정치자금은 자료의 한계와 사실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고려하여 기술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록된 내용이 정당의 실질적인 정치자금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1차적인 사료 제공 차원에서 수록하였다.

7. 서술방법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과 인명은 한자 또는 영문을 병기하였다. 정당의 명칭은 약칭을 표기할 경우 같은 명칭이 많아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정식 명칭을 표기하였다. 일부 법률명, 특별위원회 명칭 등의 경우 ‘이하 약칭’ 이라고 부기하고 이하에는 약칭을 사용하였다. 인용문의 경우 당명 등의 약칭이나 일부 문법상의 오류가 있더라도 원문을 그대로 기술하였다.
8. 각종 숫자는 읽기 쉽도록 ‘00억 0,000만 0,000원’ 등의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다만 표 내용에 포함되는 숫자의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만 표기하였다.
9. 각주는 기술 내용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였다.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자료에 기초하였으며, 정치적 상황과 변화과정을 정리하기 위해 신문 등 1차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출처의 표기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였다.
10. 이 책에 게재된 사진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장 자료, 국가기록원에서 제공받은 자료 외에도 언론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大韓民國 政黨史

C o n t e n t s

제 1 장 | 개 관

제1절 여소야대 정국: 야 3당의 공조체제	20
1. 여소야대 국회와 야 3당 공조체제	20
2. 야당 공조체제의 균열	23
제2절 거대여당의 등장과 야권통합: 양당체제의 형성	26
1. 3당 합당과 여대야소	26
2. 야권통합과 양당체제	29
제3절 민자·민주·국민당 3당체제	31
1.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3당체제 형성	31
2. 제14대 대통령선거와 민주자유당의 승리	32

제 2 장 | 정당 관련 제도의 변천

제1절 정당법	41
1. 1987년 이전의 정당법	41
2. 1988년 이후의 정당법	46

제2절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50
1. 1987년 이전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50
2. 1988년 이후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55

제 3 장 | 정당의 성립과 변화

제1절 기존정당	66
1. 민주정의당(1981. 1. 17~1990. 2. 15)	66
2. 통일민주당(1987. 5. 6~1990. 2. 15)	75
3. 신민주공화당(1987. 11. 11~1990. 2. 15)	82
4. 평화민주당(1987. 11. 13~1991. 9. 16; 1991. 4. 15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 변경)	86
5. 한겨레민주당(1988. 4. 6~1991. 3. 13)	104
제2절 신설정당	107
1. 민주자유당(1990. 2. 15~1997. 11. 24; 1996. 2. 7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107
2. 민주당(1990. 6. 18~1991. 9. 16)	130
3. (신설합당) 민주당(1991. 9. 16~1995. 12. 21)	141
4. 통일국민당(1992. 2. 10~1994. 7. 8)	154
5. 신정치개혁당(1992. 3. 4~1994. 7. 8)	166
6. 새한국당(1992. 11. 26~1995. 3. 7)	171
7. 기타정당	177

제 4 장 | 정당 활동

제1절 선거활동	198
1. 제13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98
2. 지방의회의원선거	207

3. 제14대 국회의원선거	225
4. 제14대 대통령선거	254
제2절 원내활동	271
1. 1988년도	271
2. 1989년도	300
3. 1990년도	317
4. 1991년도	334
5. 1992년도	350
제3절 당내활동	372
1. 민주정의당	372
2. 통일민주당	390
3. 신민주공화당	402
4. 평화민주당(1991. 4. 15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 변경)	407
5. 민주자유당	438
6. 민주당	456
7. (신설합당) 민주당	460
8. 통일국민당	466
9. 기타정당	467

제 5 장 | 정당의 수입과 지출

제1절 정당의 수입 · 지출 총괄	478
1. 정당 수입	478
2. 정당 지출	481
제2절 정당의 수입	484
1. 당비	484
2. 기탁금	487

3. 국고보조금	488
4. 후원회 기부금	492
5. 차입금	493
6. 기관지 발간사업 수입	495
7. 기타수입	496
제3절 정당의 지출	498
1. 운영경비	498
2. 조직활동비	500
3. 선거비	502
4. 조사연구비	503
5. 선전비	505
6. 훈련비	507
7. 사업비(정책추진경비)	508
8. 기타경비	510

부록

1. 정당의 변천과정표	515
2.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520
3. 중앙당 등록·말소 현황	522
4. 정당의 당원수	523
5. 정당의 활동연지	528
6. 창당발기취지문·창당 및 합당선언문	575
7. 정당의 강령·기본정책	594



제1장 개관

제1절 _ 여소야대 정국

제2절 _ 거대여당의 등장과 야권통합

제3절 _ 민자·민주·국민당 3당체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이후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 초대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17개 정당이 등록되어 있었다. 17개 정당은 1981년 1월 창당된 민주정의당을 비롯하여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신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독교성민당, 그리고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창당되어 제1야당이 된 신한민주당,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창당된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평화민주당, 일체민주당, 제3세대당, 한주의통일한국당, 그리고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직전에 출범한 한국민주당, 우리정의당, 민중의당, 한겨레민주당 등이었다. 이 정당들 중 신민주당, 한국민주당, 일체민주당 등 3개 정당을 제외한 14개 정당이 노태우 정부 출범 직후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다. 선거결과 5개 정당만이 의석을 확보하였고, 그 중 민주정의당(125석), 평화민주당(70석), 통일민주당(59석), 신민주공화당(35석) 등 4개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 그 외 한겨레민주당이 1석을 차지하였다.

한편 원내의석을 차지한 5개 정당을 제외한 12개 정당은 선거를 전후하여 정당법에 따라 소멸하였다.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3개 정당은 4월 18일에,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였으나 국회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에서도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신한민주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사회민주당, 제3세대당, 한주의통일한국당, 우리정의당, 민중의당, 기독교성민당 등 9개 정당은 4월 28일에 정당법 규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로써 제13대 국회의원선거 후 정당등록 상황은 재정리되었고, 정당구도는 4당체제로 재편되었다.

4당체제 형성과 함께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한국 의정사상 최초로 ‘여소야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선거 후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 3당은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정국을 주도하였고, 정부와 여당은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후 민주정의당은 정국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여소야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정계개편을 시도하였고, 1990년 2월 15일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 신설합당하여 216석의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이로써 여소야대의 4당구도는 ‘여대야소’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합당에 반대하였던 통일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무소속 의원과 결합하여 1990년 6월 18일 민주당을 창당하였고, 정당구도는 3당체제로 재편되었다. 원내정당 이외에도 1990년 11월 19일 일부 재야 진보세력이 민중당을 창당하였고, 1990년 8월에는 공명민주당이 새로이 창당됨으로써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당은 모두 6개로 늘어났다.

민주자유당의 등장 이후 야권은 거대여당에 맞서기 위해 1991년 지방선거 전 야권 통합을 모색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야권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제의 부활 후 첫 기초의회의원선거가 1991년 3월 26일 실시되었으나 야당은 패배하고 말았다. 이후 평화민주당은 4월 15일 재야의 신민주연합을 통합하여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6월 실시된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도 야당은 참패하였다. 이후 공멸의 위기를 느낀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은 민주당으로 신설합당하였고, 정당구도는 양당체제로 재편되었다. 한편 원내 1석을 보유하고 있던 한겨레민주당은 전국에 45개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는 법정요건에 흠결이 발생하여 1991년 3월 13일 등록이 취소되어 소멸하였다.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당창당과 함께 정당 간 이합집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선거결과에 따른 정당소멸도 재현되었다. 1992년 초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정계진출을 선언하면서 통일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새한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와 통합하여 1992년 2월 10일 통일국민당을 창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한당(가칭) 창당을 함께

준비하던 박찬중 중심의 정치개혁협의회는 통일국민당(가칭)과의 통합에 반발하여 3월 4일 독자적으로 신정치개혁당을 창당하였다. 이로써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민중당, 공명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체제정비를 마치고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다.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216석의 거대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은 149석을 차지하며 국회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하였다. 한편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이 각각 97석과 31석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3당 체제를 형성하였다. 기타정당 중에서는 신정치개혁당이 1석을 차지하여 명맥을 유지하였고, 무소속이 21석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역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현상이 재현되었다. 특히 창당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통일국민당은 31석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반면 민중당과 공명민주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득표수에 있어서도 유효투표 총수의 2%를 얻지 못하여 정당법 규정에 따라 3월 30일 등록이 취소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후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도 신당 창당이 이어졌다. 11월 6일에는 진리평화당이, 11월 19일에는 친민당과 대한정의당이 창당되었고, 민주자유당 경선에 참여하였던 이종찬도 경선 후 탈당하여 11월 26일 새한국당을 창당하였다. 이로써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4개뿐이었던 정당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8개 정당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는 새한국당 이종찬 후보가 통일국민당과 통합 원칙에 합의한 후 대통령후보를 사퇴하였고, 진리평화당과 친민당이 대통령후보를 입후보시키지 않아 5개 정당만이 참여하였다.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다. 반면 선거에서 패한 민주당 김대중 후보와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는 선거 후 1992년 12월 19일과 1993년 2월 9일 각각 정계를 은퇴하였다. 특히 통일국민당은 대통령선거 패배 후 정주영 대표가 탈당하면서 소속의원들의 연쇄탈당이 이어져 1993년 초 원내교섭단체 구성자격을 상실하고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제14대 대통령선거

후 정당구도는 또다시 양당체제로 재편되었다.

이상과 같이 노태우 정부 기간 공식적으로 활동한 정당은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5개 정당으로 한 차례 정비된 이후 약 5년 동안 창당과 합당, 분열과 소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11개의 신설정당이 생겨나는 변화를 보였다. 기존 정당 5개와 신설 정당 11개 등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활동하였던 16개 정당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정당의 성립과 변화(1988. 4~1993. 2)

구분	정당명	활동기간	당명변경 및 소멸사유
기 존 정 당	민주정의당	81. 1. 17~90. 2. 15	90. 2. 15 민주자유당으로 신설합당(민주정의당 · 통일민주당 ·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	87. 5. 6~90. 2. 15	
	신민주공화당	87. 11. 11~90. 2. 15	
	평화민주당	87. 11. 13~91. 9. 16	91. 4. 15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 변경 91. 9. 16 민주당으로 신설합당(신민주연합당 · 민주당)
	한겨레민주당	88. 4. 6~91. 3. 13	91. 3. 13 등록취소(정당법제38조①1)
신 설 정 당	민주자유당	90. 2. 15~97. 11. 24	96. 2. 7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97. 11. 24 한나라당으로 신설합당(신한국당 · 민주당)
	민주당	90. 6. 18~91. 9. 16	91. 9. 16 민주당으로 신설합당(민주당 · 신민주연합당)
	공명민주당	90. 8. 3~92. 3. 30	92. 3. 30 등록취소(정당법제38조①3)
	민중당	90. 11. 19~92. 3. 30	92. 3. 30 등록취소(정당법제38조①3)
	민주당	91. 9. 16~95. 12. 21	95. 12. 21 통합민주당으로 신설합당(민주당 · 개혁신당)
	통일국민당	92. 2. 10~94. 7. 8	94. 7. 8 신민당으로 신설합당(통일국민당 · 신정치개혁당)
	신정치개혁당	92. 3. 4~94. 7. 8	
	진리평화당	92. 11. 6~2004. 2. 13	93. 1. 18 신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95. 4. 1 통일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04. 2. 13 자진해산(정당법제39조)
	친민당	92. 11. 19~96. 4. 13	96. 4. 13 등록취소(정당법제38조①3)
	대한정의당	92. 11. 19~94. 2. 15	94. 2. 15 자진해산(정당법제39조)
새한국당	92. 11. 26~95. 3. 7	95. 3. 7 민주당에 흡수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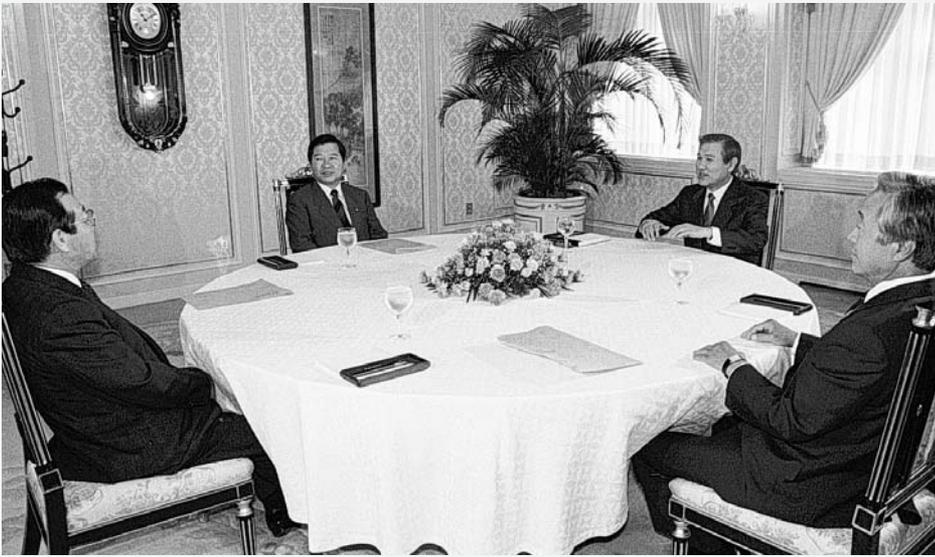
제1절

여소야대 정국: 야 3당의 공조체제

1. 여소야대 국회와 야 3당 공조체제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4개 정당이 참여하였고,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한겨레민주당 등 5개 정당만이 의석을 얻어 국회에 진출하였다.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전국구를 포함하여 과반수에 25석이 모자라는 125석을 차지하였다. 야당은 평화민주당이 70석, 통일민주당이 59석, 신민주공화당이 35석, 한겨레민주당이 1석을 각각 차지하였고, 무소속이 9명 당선되었다. 이로써 정당구도는 4당체제를 형성하였으며, 제13대 국회는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이 299석 중 174석을 차지하여 의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를 맞게 되었다.

여소야대의 형성으로 정국 주도권은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야 3당에게 넘어갔다. 야 3당의 전체 의석은 164석으로 국회 과반수를 넘었고, 따라서 야당만으로도 국회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 야 3당은 공조체제를 통해 원내 다수의 지위를 형성하였고, 주요 국정은 야 3당의 공조 아래 국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야 3당은 공조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면서 개혁을 촉구하는 한편 5공화국과의 단절을 요구하였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야 3당의 정치적 공세를 방어하는 양상을 보였다. 집권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일방적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기존 국회와는 달리 변화된 정치 환경하에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은 야 3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이 어려웠다. 그 결과 여소야대 국회는 여야가 주요 쟁점을 두고 대립과



▲ 청와대에서 민주정의당 노태우 총재,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가 4자회담을 하고 있다(1988년 5월 28일).

갈등을 보이면서도 결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변화된 정치환경 하에서 국회 개원에 직면한 여야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정당별 배분 문제, 5공화국 비리(이하 5공비리) 등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문제 등을 놓고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국회 개원은 지연되었다. 결국 협상 과정에서 야 3당의 요구가 반영되어 국회 개원 후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제13대 국회가 5월 30일 개원되었다.

국회 개원 이후 야 3당은 국회운영을 주도해 갔다. 7월 2일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정기승) 임명동의안이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은 구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그러나 야 3당은 여야 미합의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로 가결하여 정부에 이송하였다. 결국 두 법률안은 1988년 7월 15일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의된 후 7월 18일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이러한 야당 주도의 여야대립과 갈등관계는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잠시 중지되었다. 여야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국가 대의를 위해 정파를 초월하여 초당적으



▲ 올림픽을 위한 정치휴전 합의(1988년 9월 2일).

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잠시 정쟁지양 기간을 가진 후 9월 정기국회가 개최되면서 여야는 다시 대결양상을 재현하였다.

여소야대 정국은 정기국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정감사를 통해 삼청교육대 사건, 언론통폐합사건, 부실기업정리사건 등 이전 정부의 비리와 실상이 밝혀졌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을 비롯하여, 각종 비리 의혹 사건 연루자들의 국회 증언이 이어졌다. 국정감사 이후 야 3당은 공조체제 속에 5공화국 당시 정부와 여당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추궁하면서 과거 청산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반면 열세에 있던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 비판적 국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해재단 청문회,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언론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8년 11월 23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후 강원도 인제의 백담사로 들어가 은둔생활을 시작하였다. 이어 11월 26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시국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 요구와 함께 5공비리 청산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6개 항의 민주화 조치를 밝혔다.¹⁾

그러나 야당의 정치적 공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야 3당은 5공비리

1) 민주화 조치 내용은 ①시국사범에 대한 조속한 사면·복권·석방 ②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및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 ③정치자금의 양성화 및 기업부담금 철폐 ④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비민주적 제도와 관행의 개선·정비 ⑤당정쇄신 ⑥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법과 질서 확립 등이었다.

조사 및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조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갈등 속에 5공비리 청산 문제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정당 중진인사들의 수차례 회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고, 이후 해를 넘기면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2. 야당 공조체제의 균열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제13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중간평가 실시 시기와 방법의 문제는 여야 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1월 1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중간평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중간평가 문제는 1989년 들어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야 3당 총재는 대통령 회견 이후 1989년 1월 24일 회담을 열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겠다는 약속이므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3월 4일 회담에서는 “5공 청산 및 민주화 실천 등이 이루어



▲ 노태우대통령 연두기자회견(1989년 1월 17일).

진 후에 신임 국민투표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후 야 3당은 중간평가의 실시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서 점차 의견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통일민주당은 신임 연계 중간평가를 주장하였다. 반면 평화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은 단순 정책평가로 조용하게 치르자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여당인 민주정의당 내에서도 중간평가 실시를 강행하자는 강경파와 유보를 주장하는 온건파로 의견이 양분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노태우 대통령은 야 3당 총재와 연쇄적으로 단독회담을 갖고 중간평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회담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3월 20일 중간평가 실시를 유보한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중간평가를 국민신임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일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중간평가 유보에 동조한 평화민주당을 비판하였다. 이로 인하여 야 3당은 분열 양상을 외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였고, 중간평가 문제는 야 3당의 공조체제를 와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중간평가 유보결정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야 3당의 공조체제 균열은 이후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와 공안정국 형성으로 가속화되었다. 1989년 4월 실시된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에서 통일민주당은 평화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의 야 3당 공조를 거론하였다. 그러나 야 3당 모두 독자후보를 공천하였고, 선거는 4당 간 치열한 경쟁으로 전개되었다. 선거과정에서는 불·탈법 선거운동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전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신민주공화당 이홍섭 후보가 현지에서 선거를 지휘하던 통일민주당 서석재 사무총장 측의 매수에 의하여 4월 12일 사퇴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민주당이 통일민주당의 공개사과와 이홍섭 후보의 사퇴를 요구함으로써 야 3당 공조체제의 회복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반면 민주정의당은 야 3당의 분열 속에 동해시 재선거에서 승리하였고, 이로써 이후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야 3당의 공조체제 균열상황에서 1989년에 이른바 ‘공안정국’이 형성되면서 공조를 통해 야 3당이 쥐고 있던 정국주도권은 여당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였다.

1989년 3월 25일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과 6월 30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입수경의 밀입북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6월 27일에는 평화민주당 서경원 의원이 1988년 7월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서경원 의원의 밀입북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겨레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 김수환 추기경의 참고인 진술,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의 구인조사 등으로 인하여 정국은 경색되었다. 또한 이러한 공안정국 상황에서 야당공조는 균열되었다.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에 대한 구인장 발부 문제에 대해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는 “진실대로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하며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인 만큼 사법적 처리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공안정국에 대한 야당의 대응에 있어서도 공조체제의 균열 양상은 노출되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야 3당의 공조체제는 붕괴되어 야당의 정국 주도권도 점점 약해졌다. 반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열세에 있던 민주정의당은 야당의 공조체제 붕괴, 국회의원재선거 승리와 공안정국을 계기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과 민주정의당은 이러한 변화된 정치상황 속에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야당지도자들과의 연쇄접촉을 통해 정당합당 또는 정당연합 등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타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그동안 쉽게 해결하지 못해 왔던 5공비리 청산 등 쟁점들에 대해서도 야당이 수용하도록 유도하였다. 결국 1989년 12월 15일 노태우 대통령과 야 3당 총재는 청와대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5공비리 청산을 마무리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 최규하 전 대통령의 서면 질의답변, 정호용 의원의 공직사퇴를 포함한 5공화국 핵심인사 처리 등 11개 사항에 합의하였고, 12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청문회 증언이 이루어졌다. 이후 1990년 1월 3일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으로 5공비리 청산 문제가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이상을 끌어오던 5공비리 청산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졌다.

제2절

거대여당의 등장과 야권통합: 양당체제의 형성

1. 3당 합당과 여대야소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민주정의당은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계개편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고, 결국 1990년 2월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 등 두 야당과 합당하였다. 합당 당시 통일민주당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1야당의 자리를 평화민주당에 넘겨준 이후 국회의원재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하여 당세가 약화되어 갔다. 또한 신민주공화당도 제4당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당은 정국안정을 내세우며 1990년 1월 22일 한국 정치



▲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 총재가 합당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1990년 1월 22일).

사상 최초로 여야를 초월한 합당을 선언하였다.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합당 합의를 “구국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주장하면서 1990년 2월 15일 신설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5월 9일 첫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노태우 대통령을 총재로, 김영삼을 대표최고위원으로, 김종필·박태준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3당 합당 과정에서 이기택, 노무현, 김정길 등 통일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당 수뇌부가 당원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당과 합당한 데 대해 반발하여 합당에 불참하였다. 또한 이들은 무소속의 박찬중·이철 의원 등과 연대하여 1990년 6월 18일 민주당을 창당하고 독자세력화하였다.

민주자유당 창당으로 여소야대 정국은 ‘여대야소’ 정국으로 바뀌었다. 제13대 국회 개원 이후 열세에 있던 여당은 민주자유당의 출범으로 개헌이 가능한 216석의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하였다. 반면 그동안 제1야당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평화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정국의 주도권 또한 집권 여당인 민주자유당으로 옮겨갔다. 야당은 여소야대 상황을 붕괴시킨 3당 합당이 민의를 무시한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라고 비난하면서 민주자유당의 해체를 요구하였다.

여야 간 힘의 이동으로 국회의 운영 양상 또한 변화되었다. 1990년 6월까지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지방의회선거는 선거법 절충 실패로 무산되었다.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여야 간 갈등과 대립으로 국회는 공전하였다. 민주자유당은 1990년 5월 29일 하루 회기의 149회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여 지연되던 하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을 추진하였다. 이어 제150회 임시국회 회기를 이틀 남겨둔 7월 14일에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등 평화민주당과 갈등을 겪던 26개 법안을 불과 30여 초 만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집권여당의 ‘단독처리’에 야당은 ‘육탄저지’로 저항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힘의 정치는 정국을 여야 간 극한 대립상황으로 몰아갔다. 거대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장악하자 야당은 의원직 총사퇴로 맞서며 저항하였다. 7월 14일 민주당 김정길, 이철, 노무현의 의원직 사퇴를 시작으로 민주당과 평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제히 장외투쟁에 나섰다. 1990년 9월 정기국회에서 야

당의원들은 등원을 거부하였고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였다. 정치적 파행이 계속되던 10월에는 내각제 포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군의 정치사찰 중지, 물가·치안 등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네가지 정국 정상화 조건의 수용을 요구하며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가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이로써 여야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한편 야당은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의 독주에 맞서기 위한 또 다른 대응책 중 하나로 범야권통합을 시도하였다.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 민주당 이기택 총재,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²⁾의 김관석 상임대표 등은 1990년 7월 20일 회담을 열고 '범민주세력 수권정당' 결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총재의 단식투쟁과 재야 세력의 내부 분열 등을 거치면서 이해가 엇갈렸고, 결국 야권통합은 무산되었다. 이후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는 '민주연합'과 '신민주연합'으로 분리되었다. 이 가운데 이부영, 고영구 등을 중심으로 한 민주연합은 1991년 2월 3일 민주당과 통합하여 독자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여야간 극한 대립상황은 1990년 10월 11일 민주자유당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단식 중인 김대중 총재를 방문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수용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진정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991년 상반기 중에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후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각각 실시하며,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 안을 평화민주당이 수용함으로써 11월 19일 국회는 정상화되었다. 여야는 합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개정안을 12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로써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1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2년 상반기 중에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는 1990년 6월 민주당 창당발기인대회 개최 이후 선 야권통합을 주장하며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를 이탈하여 결성되었다.

2. 야권통합과 양당체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결정에 의해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로 분리되어 각각 3월 26일과 6월 20일에 실시되었다. 각 정당은 정당공천이 허용되지 않았던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자당이 내친한 후보를 지원하면서 정당경쟁의 선거전을 벌였다.

선거결과는 여당의 승리였다. 3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공천이 허용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정당별 당선자가 집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언론을 통하여 나타난 각 정당의 비공식적 선거결과 민주자유당이 내친자와 친여 무소속을 포함하여 약 70%의 당선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민주당은 자당이 지원한 후보가 901명(20.9%)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패배한 평화민주당은 김관석, 이우정 중심의 재야세력인 '신민주연합'을 통합하여 4월 15일 당명을 신민주연합당으로 변경하는 등 당세를 확장하고 6월 20일 시·도의회의원선거에 나섰다. 그러나 시·도의회의원선거 결과 또한 야당의 참패였다. 민주자유당은 866개 선거구 중 564곳(65.1%)에서 승리하였지만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은 각각 19%와 2.4%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두 차례 선거에서 야당이 계속하여 패배하자 범야권에서는 야권통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선거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야권분열이 지적되었고, 분열된 야당으로는 거대여당에 맞서기에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야권이 통합하지 않으면 1992년 예정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시작하였다. 야권통합의 요구와 위기감 속에서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통합협상에 임하여 1991년 9월 10일 당명을 민주당으로 하는 당 대 당 합당을 선언하였다. 이후 양당은 9월 16일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를 통해 김대중·이기택을 공동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을 신청하면서 공식 출범하였다. 이로써 두

차례의 지방선거 패배를 계기로 야권은 통합을 이루게 되었으며, 통합된 민주당의 출범으로 정당구도는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 대결구도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통합된 야당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양당체제에서 216석을 가진 거대여당의 일방적인 힘의 정치와 야당의 물리적 저항은 여전하였다. 야당통합 후 열린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자유당이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쟁점법안에 대한 민주자유당의 단독처리가 이어지면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12월 1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마지막까지 몸싸움을 벌였고, 민주자유당은 추곡수매안 등 쟁점의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였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제3절

민자 · 민주 · 국민당 3당체제

1.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3당체제 형성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둔 1992년 1월 초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은 정치풍토 쇄신을 외치면서 정계진출을 선언한 후 1월 10일 통일국민당(가칭)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 작업에 나섰다. 통일국민당의 창당은 정주영 · 이내훈 등 현대그룹 관계자와 양순직 · 박한상 전 국회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국민당창당준비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단기간에 당세를 확장하는 한편 ‘현대당’, ‘재벌당’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동길을 중심으로 창당을 추진 중이던 새한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와 1992년 2월 7일 통합에 합의하였다. 이후 통일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2월 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마친 직후 2월 10일 정당등록을 완료하고 통일국민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로써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직전 정당구도는 신생정당 통일국민당이 변수로 작용하는 3자 대결구도로 전환되었다.

각 정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차기 정권 쟁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서둘러 후보자 공천을 완료하고 선거전략 수립 등 선거체제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은 공천과정에서 계파 간 갈등으로 인하여 내부 진통을 겪어야 했다. 공천결과에 대해서도 계파 간 이해관계에 따라 밀실공천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두 정당의 공천탈락자 다수가 신생 통일국민당 등에 합류하거나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면서 선거경쟁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또 다시 여소야대 상황이 나타났다. 선거 전 216석의 거대여당이던 민주자유당은 149석을 획득하여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비록 과반수에 1석이 미달하는 결과였지만 선거 전에 비해 67석이 줄었다는 점에서 패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개헌지지선 100석을 목표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97석을 확보하며 선전하였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신생 통일국민당의 약진이었다. 통일국민당은 지역선거구 24석, 전국선거구 7석을 합해 31석을 확보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외에도 무소속 출마자 중 무려 21명이 당선된 것도 큰 변화 중 하나였으며, 기타정당으로는 신정치개혁당이 유일하게 1석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 이후 민주자유당은 제14대 국회 개원에 앞서 당선자 영입을 통하여 7석을 추가로 확보하여 156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였다. 이로써 선거 결과 형성된 여소야대 국회는 개원하기도 전에 여대야소로 전환되었다. 한편 통일국민당의 부상으로 정당구도는 양당체제에서 3당체제로 재편되면서 새로운 정치환경이 형성되었다.

2. 제14대 대통령선거와 민주자유당의 승리

각 정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자 12월 실시될 제14대 대통령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후보자 선출작업에 들어갔다. 제13대 대통령선거와 달리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은 후보자 선출을 위해 경선제를 도입하였고, 5월 19일과 26일 각각 후보자 경선을 실시하였다. 민주자유당은 김영삼과 이종찬, 민주당은 김대중과 이기택이 경선에 출마하여 경쟁을 벌인 결과 김영삼과 김대중이 양당의 대통령후보로 각각 선출되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표출되면서 혼란을 겪었다. 반(反)김영삼 진영의 대표로 경선에 참여한 이종찬은 경선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엄정중립 불이행과 경선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다가 결국 임시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5월 17일 경선을 거부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이종찬이 불참한 가운데 애초 예정대로 5월 19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김영삼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종찬이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는 등 경선후유증을 쥐어야 했다. 한편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통일국민당은 두 정당과 달리 단독으로 입후보한 정주영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이후 1992년 8월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관권선거 폭로 사건' 이 발생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었다. 양심선언의 골자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연기군에서 이상연 전 내무장관과 이종국 충남지사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광범위한 부정 관권선거를 자행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야당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중립내각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은 9월 18일 민주자유당 명예총재직 사퇴 및 탈당 발표와 함께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선언하였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현승종을 새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10월 9일 내각 개편을 단행하여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였다. 이로써 제14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이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치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은 대통령의 탈당 여파로 민정계로 분류되던 박태준 최고위원, 채문식·윤길중 고문, 박철언·김용환·이자현·장경우·유수호 의원 등이 연쇄탈당 하는 내부 분열과 혼란을 겪었다.

1992년 11월 20일 제14대 대통령선거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선거에는 민주자유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통일국민당 정주영, 새한국당 이종찬, 신정당 박찬중, 대한정의당 이병호, 무소속 김옥선·백기완 등 총 8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종찬은 통일국민당과 통합에 합의하면서 정주영을 지원하기로 하고 12월 12일 후보직을 사퇴하였고, 최종적으로 7명의 후보가 대권 경쟁에 돌입하였다. 경쟁구도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양자대결 구도 속에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통일국민당 돌풍을 재현하고자 하였던 정주영과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박찬중이 선전하는 4인



▲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제14대 대통령선거 패배 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있다(1992년 12월 19일).

경쟁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한편 제14대 대통령선거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 년간 야권의 양측으로 경쟁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김영삼과 김대중이 여야로 갈려 대결을 벌인 점에서 주목되었다.

최종 선거결과는 민주자유당 김영삼의 승리였다. 김영삼은 42%에 달하는 997만 7,332표를 얻어 차점자인 김대중을 190여만 표 앞서는 승리를 거두고 제

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영삼의 승리로 민주자유당은 재집권에 성공하게 되었다. 반면 대통령선거에서 또다시 패배한 김대중은 “국민의 신임을 얻는 데 실패한 것을



▲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가 제14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 인사하고 있다 (1992년 12월 19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한다. (……)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성공해 민주발전과 조국통일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직 사퇴와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 결과 한국정치는 연이은 군 출신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 대통령의 탄생이라는 새롭게 변화된 정치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제2장

정당 관련 제도의 변천

제1절 _ 정당법

제2절 _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헌정 이후 정당의 성립과 소멸, 조직,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단일법으로서의 「정당법」은 1962년 12월 31일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다. 또한 정당의 재산, 수입·지출 등 정당 재정에 관계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1965년 2월 9일에야 단일법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이 법률은 2005년 8월 4일 「정치자금법」(법률 제7682호)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1962년 정당법이 제정되기 이전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1946년 2월 23일 미군정 법령 제55호로 공포된 「정당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당 관련 최초의 법규였다. 「정당에 관한 규칙」은 광복 이후 각종 단체와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혼란한 정당질서를 바로잡고자 미군정이 제정·공포한 법령이었다. 당시 미군정은 공산당에 대하여 강경책으로 나가는 한편 남한의 민주정당 육성 및 민주정치 체제의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정당등록제와 비밀정당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령은 정당의 인적·물적인 기초를 정확히 보고하게 하여 정치적 비밀 활동 제약, 특히 좌익 계열 정당의 지속적인 파괴 행위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정당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 법령에 따라 ‘정치적 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협회를 조직하여 어떤 형식으로나 정치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된 3인 이상의 각 단체’는 정당으로서 군정청 공보국 또는 당해 도청에 등록하여야 했다. 비밀정당은 금지되었고, 정당의 주소를 등록신청하지 않고 이전하면 그 정당은 해산되었다. 이외에도 이 법령에는 당원의 자격제한, 비밀입당의 금지, 당원 이외의 기부금지, 회계장부 비치·기재 및 정당의 회계 보고, 당원명부 제출, 간부 등 당원의 민·형사상 연대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 법령은 1948년의 제헌헌법 제100조의 ‘현행 법령은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제헌 이후에도 효력이 지속되었다. 실제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 법령을 근거로 1958년 2월 25일 조봉암이 대표로 있던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14년여간 유지되어 오던 이 법령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10월 13일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4·19 혁명 이후 제2공화국 헌법은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신헌법은 제13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였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해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 1960년 7월 1일 「신문 등 및 정당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본문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제3조와 제4조에서 정당 등의 등록과 보고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 법률은 ‘정당 기타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조직 후 5일 이내에 국무원 사무처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등록 시에는 명칭, 정강·정책, 당헌,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및 주요 간부들의 주소와 성명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정당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인원수, 활동개황, 회계개황을 이듬해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미군정과 제1공화국 정권하에서 적용된 「정당에 관한 규칙」의 규제보다 훨씬 완화된 것이었다.

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단일법으로서의 「정당법」이 제정되었다. 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제3공화국 헌법은 제7조를 통해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민주성,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위헌정당의 해산제도’ 등을 규정하여 제2공화국 헌법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정당정치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 1962년 12월 31일 최초의 「정당법」(법률 제1246호)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제정 「정당법」에는 제3공화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합당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기타 법령에도 합당의 절차 및 합당에 수반되는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헌법에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정당 간 합당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1964년 6월 12일 「정당법」과 별도로 「정당의 합당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정당의 합당 절차 등을 다룬 이 법률은 이후 「정당법」에 흡수·신설되면서 1969년 1월 23일 폐지되었다.

한편 1965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 때까지 정당의 재정에 관한 규정은 단일 법제로 제정되지 않았다.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 상황 보고, 각종 선거비용의 지출한도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은 여전히 정당법, 선거법 등을 통해 규정되고 있었다. 정치자금 기부 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부패에 의한 정치자금 조달이 빈번하였고, 경제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정치자금 수수를 양성화하여 정당과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정치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인 등이 정당의 보호육성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1965년 2월 9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의 배분방식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정당의 재산과 수입·지출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종전과 같이 「정당법」을 통해 규정되었다.

이후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새로운 헌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금제를 처음으로 채택하는 한편 새로운 헌법에 따라 개정된 「정당법」에 ‘정당의 재산과 수입·지출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33조)’라고 규정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규정 일체를 「정당법」에서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도 1980년 12월 31일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전면 개정되었다.

제1절 정당법

1. 1987년 이전의 정당법

가. 정당법 제정(1962. 12. 31)

5·16 군사정변으로 정치활동이 전면 금지된 이후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정당활동이 재개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이전 헌법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정당정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특히 제7조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명확히 보장하였다.

제7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와 같이 개정된 헌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1962년 12월 31일 정당에 관한 단일법으로서의 「정당법」(이하 정당법)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최초로 제정되었고, 법률 제1246호로 공포되었다. 이 정당법은 제안이유에서 제정의 목적을 “건전한 정당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의 보장,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의 요구, 정당조직의 범위,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대통령후보와 국회의원후보의 정당추천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헌법에 부합되도록 건전한 복수정당의 보장과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정 정당법의 주요 내용은 ①정당의 창당 및 변경의 등록 ②정당의 성립 요건(법정 지구당수, 지구당의 분산, 지구당의 법정 당원수) ③창당준비위원회의 신고 ④정

당의 강령·당헌의 공개 ⑤당원의 자격 제한 ⑥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 ⑦정당의 회계 보고 ⑧외국인 등으로부터의 기부 금지 ⑨정당의 정기 보고 ⑩정당의 소멸 ⑪정당해산소송 제기 ⑫정당의 보호 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직무상 비밀 엄수 ⑭제1야당 대표자에 대한 수당 지급 ⑮벌칙 규정 등이었다. 제정 정당법은 이후 3·4·5공화국을 거치면서 1987년 이전까지 1969년 1월, 1972년 12월, 1973년 6월, 1980년 11월 등 모두 4차례 개정되었다.

나. 1차 개정(1969. 1. 23)

1969년 1월 23일 공포된 제1차 개정 정당법의 개정이유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양당제도의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정당의 성립요건을 보장하는 한편, 정당의 합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정당의 법정 지구당수는 지역 선거구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 지구당의 법정 당원수도 5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또 정당의 창당 및 합당에 관한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 제명에 관한 소속 국회의원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결성신고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고 이 기간에 창당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였다. 한편 정당법과는 별도로 1964년 6월 12일 제정된 「정당의 합당절차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당의 신설합당 및 흡수합당의 절차, 합당에 수반되는 법적 효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정당법에 흡수하였다.

다. 2차 개정(1972. 12. 30)

2차 정당법 개정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 이른바 10월유신으로 일부 헌법조항의 기능을 수행하던 비상국무회의에 의하여 1972년 12월 30일 이루어졌다. 2차 개정은 1972년 12월 29일 대통령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제안 이유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의 성립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정당 관리를 위하여 입당절차와 벌칙을 보완하며, 개정된 헌

법의 취지에 비추어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정리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개정목적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양당체제를 지향한다는 기존 정당법의 명분을 버리고 제1야당의 도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2차 개정에서는 정당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당적이탈 및 변경을 자유롭게 하여 양당제 구도를 타파하고 다수의 정당 체제 속에서 여당 중심의 정치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한 이 개정 법률안은 유신헌법 아래서 12월 29일 제 12회 비상국무회의에 상정되어 그날 바로 의결되었으며, 다음날인 12월 30일 법률 제 2403호로 공포되었다.

2차 개정 정당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당의 성립요건을 완화한 것이었다.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 지구당수는 국회의원 선거구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었고, 지구당의 법정 당원수 또한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축소되었다. 지구당의 분산요건도 서울·부산·도 중 5개 이상에 분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서울·부산·도 중 3개 이상에 분산하도록 완화하였다.

한편 서울·부산·도·시·구·군에 두는 당부의 명칭을 당연락소로 개칭하고,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제를 신설하여 그 활동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다. 제1야당 대표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은 삭제되었다. 정당의 해산과 관련하여서는 대의기관의 결의만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해산소송 조항은 삭제하였다.

라. 3차 개정(1973. 6. 14)

1973년 6월에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정당법의 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정당이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로부터 기탁, 참조,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는 기존 정당법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로부터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3차 개정은 외형적으

로는 제35조 규정에서 기부수령의 금지 대상, 즉 정당이 기부·찬조 및 기타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던 ‘금융기관’ 또는 ‘금융단체’의 용어를 삭제하는 미미한 개정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금융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신기의 취약하였던 정당의 정치적 기반을 정치자금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보강할 수 있게 하였다.

마. 4차 개정(1980. 11. 25)

1980년 전두환 정부의 등장과 제5공화국 출범으로 정당법은 다시 한번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정당법 개정은 신헌법에 따라 국회 기능을 대체하고 있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명목상의 제안이유는 정당설립을 좀 더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당법 개정안의 시안 마련을 위해 1980년 11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선거법 등 정치관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심의 7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법 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7일 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국가보위입법회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980년 11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80년 11월 25일 법률 제3263호로 공포되었다.

4차 개정 정당법은 개정이유에서 제시된 것처럼 “정당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의 확보를 원활히 하고 정당 참여의 문호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었다. 우선 창당요건과 관련하여 법정 지구당수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낮추어졌고, 지구당의 법정 당원수도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 되었다. 또한 창당준비에 필요한 발기인 수도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창당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규제범위도 완화하여 대학교수 등 많은 지식인이 정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당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시·군에는 당연락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식인의 정당참여 문호개방과 관련하여서는 정당법 개정 이전에 이미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1980년 11월 5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공포)에 의해 많은 정치인과 민주 인사들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당참여를 위한 문호 개방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으며, 정권에 협조하는 자들에 대한 문호개방에 지나지 않았다.

4차로 개정된 정당법이 정당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와 상충되는 내용 또한 규정되었다. 정당창당 요건 중 지구당의 분산 요건은 서울·부산·도 중 3개 이상에 분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서울·부산·도 중 5개 이상으로 분산하도록 오히려 강화하였다. 또한 정당의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정당이 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 되어 있던 규정 이외에도 정당등록 취소요건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우선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고의로 참여하지 않는 때는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선거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석을 얻지

정당법 주요 변천내용(1962~1987)

구분	정당법 제정 (1962. 12. 31)	1차 개정 (1969. 1. 23)	2차 개정 (1972. 12. 30)	3차 개정 (1973. 6. 14)	4차 개정 (1980. 11. 25)
법정 지구당수	지역구 총수의 1/3 이상	1/2 이상	1/3 이상	좌동	1/4 이상
지구당의 분산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중 5 이상	좌동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중 3 이상	좌동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중 5 이상
지구당의 법정 당원수	5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좌동	30인 이상
조직구성	중앙당, 지구당 당지부(서울, 부산, 도, 구, 시, 군)	좌동	중앙당, 지구당 당연락소(서울, 부산, 도, 구, 시, 군)	좌동	중앙당, 지구당 당지부(서울, 부산, 도) 당연락소(시, 구, 군)
창당 발기인수	30인 이상	좌동	좌동	좌동	20인 이상
창당준비위원회 활동 기간	제한 없음	결성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결성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좌동	좌동
정당등록 취소	법정 지구당수, 지구당의 분산, 지구당의 법정 당원 수 등 정당 존속요건 흡결시	좌동	좌동	좌동	존속요건 흡결시, 국회의원선 거 불참, 국회의원선거에서 의 석 미획득과 유효투표 총수의 2/100 이상 미득표
기부 수령 금지 대상	금융기관 및 금융단체 등 7개	좌동	좌동	금융기관 및 금융단체 제외	좌동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때에도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야당이 정치적 이유로 선거를 거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방지책의 일환이었으며,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군소정당들을 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 1988년 이후의 정당법

1987년 10월 29일 새 헌법이 공포된 이후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를 거쳐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노태우 정부 기간(1988.2~1993.2)에 정당법은 1988년 8월 헌법개정에 따른 제5차 개정과 1989년 3월 6차 개정 등 모두 2차례 개정되었다.

가. 제5차 개정(1988. 8. 5)

1988년 8월 5일 정당법 5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개정은 제6공화국 헌법 개정에서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와 관련된 정당법 조항의 단순한 자구수정에 불과하였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나 대법원에 헌법재판을 맡기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이 기관을 통해 독립적으로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맡도록 한 것이다. 헌법개정으로 인하여 헌법위원회법은 폐지되었고, 1988년 8월 5일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4항에는 정당법 중 '헌법위원회' 를 '헌법재판소' 로 개정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당법 중 헌법위원회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던 제40조 해산과 등록취소 등, 제41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중 3항, 제42조 대체정당의 금지, 제43조 유사명칭 등 사용 금지 중 제2항의 내용에서 '헌법위원회' 를 모두 '헌법재판소' 로 수정하였다.

나. 제6차 개정(1989. 3. 25)

1) 개정과정

1988년 5월 30일 제13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정당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각 정당은 공통적으로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개정 목적으로 내세우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각각의 개정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1988년 7월 18일 조세형·김정길·이택석 의원 등 야 3당 의원 166명이 ‘정당법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 법률안은 “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복수정당제하에서 정당의 설립과 존속을 용이하게 하여 소수의견을 대표하는 세력을 정치권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정당활동의 폭을 넓힘으로써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제시하였다. 이후 8월 3일에는 박승재 의원 등 22인이 “6·29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민주적인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 내지 간소화하고, 정당가입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아울러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을 개정이유로 내세운 ‘정당법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 법률안은 각각 7월 27일과 8월 5일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들 두 개정 법률안은 모두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간소화하면서 정당활동의 폭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었으며, 근본 취지도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 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여야4당은 절충을 통하여 헌법에 규정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다. 단일안을 마련한 여야는 1989년 3월 8일 제145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개정 정당법은 3월 25일 법률 제4087호로 공포되었다.

2) 주요 개정내용

제6차 정당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정당의 조직 확대와 설립요건 완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정당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정당의 조직 확대, 법정 지구당수 완화, 등록취소 요건 강화, 창당과정의 투명성, 민주적 조직운영 등과 관련된 법 규정이 정비되었다.

정당의 조직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당연락소의 설치범위를 확대한 것이었다. 기존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당지부 또는 당연락소 등의 설치에 정당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당연락소 설치범위는 구·시·군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제6차 개정에서는 그 범위를 읍·면·동까지 확대하였다. 이로써 각 정당은 최하위의 기초단위 지역에게까지 정당 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정당활동의 확장뿐 아니라 주민들의 정당참여 내지는 정치참여 기회 또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정당 조직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당의 창당과 유지요건 중 하나였던 법정 지구당수도 완화되었다. 기존 정당법에서는 정당등록을 위해 지역선거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지구당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224개 지역 선거구를 가지고 있었던 제13대 국회를 기준으로 하면 정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56개 이상의 법정 지구당을 설치해야 하였다. 그러나 6차 개정에서는 법정 지구당수를 지역구 총수의 5분의 1로 줄였고, 그 결과 45개 이상의 지구당만 설치하면 정당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당의 성립요건 완화는 정당정치 활성화를 유인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을 모색하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정당성립을 조금 더 용이하도록 개정된 것과 더불어 정당이 유지될 수 있는 요건 또한 등록취소 요건을 줄여 완화되었다. 기존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①법정지구당수, 지구당 분산 및 지구당의 법정 당원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 ②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참여하지 아니한

때 ③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6차 정당법 개정에서 이 가운데 두 번째 등록 취소 요건인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고의로 참여하지 아니한 때’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한 정당의 경우에도 존속할 수 있게 되었다.

창당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조직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제출과 당헌의 필수 규정 사항을 법정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기존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는 첨부 서류 이외에 중앙당 및 지구당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창당 과정이 다소나마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는 정당 성립에 관한 규정을 이전보다 용이하도록 개정하는 대신 창당과정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정당은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던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당헌의 기재사항 11가지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운영을 유도하고, 내부질서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헌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제6차 개정 주요내용

구분	개정 전(1988. 8. 5 법률 제4017호)	개정 후(1989. 3. 25 법률 제4087호)
법정 지구당수	지역구선거구 총수의 1/4 이상	지역구선거구 총수의 1/5 이상
조직구성	당연락소(시·구·군)	당연락소(시·구·군, 읍·면·동)
정당등록 취소	법정요건 미구비, 국회의원선거 불참,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 미획득과 유효투표 총수의 2/100 이상 미득표	국회의원선거 불참 조항 삭제

제2절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 1987년 이전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정(1965. 2. 9)

1965년 2월 9일 정당의 재정 및 정치자금 등에 관한 단일법인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하 정치자금법)이 제정되었다. 이전까지 관련 내용들은 정당법과 「선거법」 등을 통하여 규정되어 왔다. 정치자금법 제정은 정치인 스스로의 필요성이나 정치권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인의 필요와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정치자금법이 제정될 당시까지 기업의 음성적 정치자금 기부가 만연해 있었고, 정치권력 변화에 따른 부정축재자 처벌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은 일반 국민이나 정치인의 자각보다 주요 정치자금 기부자인 기업인의 필요성, 즉 합법적 정치자금 제공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시 대기업의 모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직의 설립목적에서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명확히 밝힌 것도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3년 9월 정치자금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한편 10월에는 정치자금 양성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자금 수수의 제도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섰다.

이러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정치자금에 관한 입법 요구 활동의 영향으로 1964년 7월 31일 민주공화당 백남익 의원 등 19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내무위원회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1965년 1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65년 2월 9일 법률 제1685호로 공포되었다. 이 법률안은 제정 이유에서도 “정권의 교체를 그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정치제도 하에서 정치자금 수수가 부정과 부패에 연

결되고 경제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현상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는바 정치자금 수수를 양성화함으로써 정치적 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정당과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정치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인이 정당의 보호육성에 협력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제정 정치자금법은 전문 6조와 부칙 2항으로 구성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정치자금의 배분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정당법 제35조(기부수령금지)에 규정한 자를 제외한 산업·경제인 및 기타 일반인이나 단체로 규정하였고, 정치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하였다. 기탁금 배분은 기탁 당시 정당의 국회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하되 기탁자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 2개 이상의 특정 정당을 지정하고 배분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정치자금은 매년 4기로 나누어 정당에 배분·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고하도록 하였고, 기탁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부칙에서 제6대 국회에 한하여 기탁자가 배분비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탁된 정치자금의 100분의 70을 기탁 당시 국회에서의 의석비율에 따라, 나머지 100분의 30은 기탁 당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동일한 비율로 각각 배분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제1차 개정(1969. 1. 23)

1968년 12월 29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이하 정치관계법특위)는 제1차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67회 정기국회 제4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1969년 1월 23일 법률 제2090호로 공포되었다. 1차 개정의 핵심은 비지정 기탁금의 배분 비율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즉 정당의 의석수 비율로 기탁금을 배분·지급하던 방식을 원내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에 60%를 지급하고, 40%는 원내 2당 이하에 소속 국회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나 지정기탁의 경우 이전과 동일한 배분방식이 유지되었다.

한편 정치자금의 배분 시기도 분기마다 배분 지급토록 한 것에 추가하여 대통령선거일 또는 국회의원선거일이 공고된 때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에 배분·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이 더 필요한 정당정치 현실을 고려한 것이었다.

다. 제2차 개정(1973. 6. 14)

1972년 12월 유신헌법 제정으로 인해 국회 구성방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1973년 6월 정치자금법이 전문 개정되었다. 유신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이 추천한 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12대 국회 구성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73명의 국회의원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선출되었다. 이들은 대통령의 추천에 의해 국회의원에 선출되었으나 여당인 민주공화당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인 유신헌법추진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김용태·민병권·이민우 의원 등 23명은 유신헌법추진회에 정치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당에게만 기탁금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 정치자금법의 개정안을 1973년 6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 정치자금법은 제안 이유에서도 “정당에 소속하지 아니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국회법 제35조에 의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명부가 제출된 교섭단체에도 정치자금을 배분·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개정 목적을 명확히 나타내었다. 따라서 2차 개정의 핵심은 비지정 기탁금의 배분방식 변경이었다. 즉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 최대의석을 가진 정당에 비지정 기탁금의 60%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차 개정에서는 비지정 기탁금 중 70%는 기탁 당시 소속 국회의원 비율에 따라 원내정당에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국회교섭단체에 그 소속 국회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2차 개정에서는 기탁된 정치자금의 배분·지급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되었다. 기존 정치자금법에서는 4분기로 나누어 정치자금을 지급하되, 대통령선거일 또는 국회

의원선거일이 공고된 때에는 그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에 배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정치자금법에서는 기탁된 정치자금의 지급시기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이후 1973년 6월 14일 공포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6733호)에서는 지급일을 국회의장이 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개정 정치자금법은 1973년 6월 5일 제 86회 임시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6월 14일 법률 제2619호로 공포되었다.

라. 제3차 개정(1980. 12. 31)

1980년 10월 27일 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신헌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치자금법 전문을 수정하는 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5공화국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제도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제도를 수용하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필요하였다. 한편 신헌법 제정에 따라 1980년 11월 25일 개정된 정당법에서 “정당의 재산과 수입·지출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33조)라고 규정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규정 일체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정당법 개정도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필요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치자금법 전문개정안이 1980년 12월 15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제안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그 개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헌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보조금의 지급 대상과 배분비율 등을 건전한 정당의 보호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새로 정하고,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정당의 당원이 납입하는 당비, 후원회의 후원금, 기탁금 등 모든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는 한편 그 회계는 공개하여 정치자금을 양성화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명화를 촉진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전면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1980년 12월 16일 국회 기능을 대행하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1일 법률 3302호로 공포되었다. 개정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후원회 지정·설치, 정치자금의 회계 공개, 소속 당원으로부터의 당비 수수, 기탁금의 배분 비율 변경, 정당과 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의 회계 보고, 정당과 후원회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이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지급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후 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연 1회 이상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보조금의 배분비율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이 다수인 순으로 4당까지 5%씩 균등 지급하고 그 잔여분 중 50%는 지급 당시 정당의 국회의석 비율, 최종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조금액을 법정화하지 않고 지급시기도 1회 이상으로 비정기화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당 육성이라는 일반적 목적보다 정부가 야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유희책으로 채택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게 하되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각 1개의 후원회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후원회 회원은 1,000인을 초과할 수 없게 하였고, 당해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나 법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비지정 기탁금의 경우 기탁 당시 정당의 국회의석 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지정 기탁금의 경우 기탁자가 원내 정당 또는 배분비율을 정한 대로 지급하되 지구당만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지구당에 대한 배분 비율이 기탁금 총액의 50%를 초과한 때에는 50%만 당해 지구당에 지급하고 잔여분은 당해 정당의 중앙당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당(중앙당, 지구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지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및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와 결산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선거인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정치자금제도 주요 변천내용(1965~1987)

구분	일자	주요 내용	처리 형태	비고
법 제정	65. 2. 9	기탁금 규정	47회 임시국회 표결	경제단체 주도
제1차 개정(일부개정)	69. 1. 23	기탁금 배분방법 · 시기 변경	67회 임시국회 표결	여야합의
제2차 개정(전문개정)	73. 6. 14	기탁금 배분방법 변경 (무소속 교섭단체에도 배분)	86회 임시국회 표결	유신헌법 제정
제3차 개정(전문개정)	80. 12. 31	후원회, 국고보조금 제도 신설	국가보위입법회의 의결	국회해산

2. 1988년 이후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노태우 정부 5년 동안 정치자금법은 모두 3차례 개정되었다. 우선 1989년 12월 30일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한 후원회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가 대폭 변화된 제4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1991년 12월 31일에는 기탁한도 인상, 국고보조금 인상, 의석 없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 규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제5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5차 개정은 여당인 민주자유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이어 1992년에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둔 11월 11일 여야합의를 통해 6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6차 개정은 선거보조금 계상기준을 1인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100% 증액하고 후원회를 확대하는 한편, 100만 원 이내의 금품은 익명으로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가. 제4차 개정(1989. 12. 30)

1) 개정과정

1989년 12월 18일 이춘구 의원 등 293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의 핵심은 국고보조금 제도와 후원회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었다. 제출된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이와 같은 개정 목적이 명확히 명시되었다.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정치자금의 공정분배로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정당의 중앙 및 지구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치자금을 공개하며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제도 및 후원회 제도를 개선하고 기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법률안은 12월 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내무위원회는 심의과정을 통해 정당의 중앙당이나 시·도지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지구당, 국회의원 입후보등록을 한 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원안에 국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추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수정안은 1989년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30일 법률 제4186호로 공포되었다.

2) 주요 개정내용

제4차 개정 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은 ①후원회 제도의 개선 ②국고보조금의 정액화 ③기탁금 배분 비율의 변경 및 기탁 한도의 법정화 ④기타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당비·회계보고 및 벌칙규정의 미비점 보완 등이었다.

먼저 후원회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 정치자금법에서는 그 범위를 시·도지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지구당·후보자를 포함한 국회의원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후원회 회원수 규정도 중앙당

1,000명, 시·도지부 300명, 지구당 등 100명 이내로 세분화하였다.

후원회의 모금활동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후원인의 1회 최저 납입 한도도 종전의 5만 원 이상(「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81. 1. 5, 대통령령 제 10129호)에서 1만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어 다수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한편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의 경우 개인은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을 후원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 지구당의 경우 개인 1,000만 원, 법인 3,000만 원의 연간납입한도액 규정을 신설하여 전체 기부 또는 납입한도액은 이를 합하여 개인과 법인 각각 6,000만 원과 1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규정이 없던 각급 후원회의 모금한도와 관련하여서도 연간 징수 또는 모금한 정치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한 때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원회는 기부한도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부한도액의 2배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금품모집 횟수에 대한 규정도 새로이 마련하여 평년 1회, 대통령·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2회로 한정하였다.

후원회 제도와 함께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부분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였다. 우선 ‘예산 범위 안 지급’이라는 기존의 막연한 규정을 개정하여 보조금을 정액화하고 매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의 보조금액에 대한 정부결정주의와는 차별되는 법정주의로써 정부(집권당)의 자의성을 배제하도록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보조금 기준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당 400원으로 산출하여 확정된 금액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지급방법에 있어서의 기본비율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이 다수인 순으로 4개 정당까지 5%씩(총20%) 지급하던 것을 10%씩(총40%)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한편 보조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인건비,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비, 사무소 유지비, 공공요금,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비와 당원교육훈련비 이외에는 정당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제4차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1980. 12. 31 법률 제3302호)	개정 후(1989. 12. 30 법률 제4186호)
후원회	지정권자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중앙당(중앙당 창준위 포함) ○시·도지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지구당 ○국회의원(후보자 포함)
	회원자격	○당해 정당의 당원이 아닌 개인, 법인	○개인(당원도 가능), 법인
	회원수	○1,000인 이하	○중앙당 : 1,000인 이하 ○시·도지부 : 300인 이하 ○지구당 등 : 100인 이하
	후원인의 납입한도	○1회 최저 5만 원 이상(영) ○개인 : 연간 5,000만 원(영) ○법인 : 연간 1억 원(영)	○최저 1만 원 이상 ○중앙당 및 시·도지부 · 개인 : 5,000만 원, 법인 : 1억 원 ○지구당 등 · 개인 : 1,000만 원, 법인 : 3,000만 원
	후원회 모금한도	○기부한도액의 초과 모금 시 다음해 이월하여 기부 가능(영)	○기부한도액의 1.5배
	금품모집 방법 등	○허가받은 장소에서 옥내의 파티, 바자,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영)	○신고한 옥내 집회와 광고에 의한 방법 · 평년 : 1회 · 대통령·국회의원선거년도 : 2회
보조금	예산계상 범위	○예산의 범위 안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 × 400원
	지급시기	○연 1회 이상 지급(영)	○분기별 균등 분할 지급
	지급방법	○지급 당시 국회의석이 다수인 순으로 4정당까지 5%씩, 잔여분 중 50%는 의석수 비율, 나머지는 득표수 비율	○지급 당시 국회의석이 다수인 순으로 4정당까지 10%씩, 나머지는 왼쪽 내용과 같음
	용도제한	○인건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유지비, 공공요금(영)	○인건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유지비, 공공요금,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비, 당원교육훈련비
기탁금	기탁한도	○1회 최저 5만 원 이상(영) ○개인 : 연간 5,000만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다액(영) ○법인(단체) : 1억 원 또는 전년도말 자본금(운영자산)의 2% 중 다액(영)	○1회 최저 5,000원 이상 ○개인 :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다액 ○법인(단체) : 5억 원 또는 전 사업연도 말 자본총계의 2% 중 다액
	비지정 기탁금 배분지급	○기탁 당시 정당의 의석수 비율	○기탁 당시 국고보조금 배분율
당비	당비규정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대통령령 위임 조항 삭제
정치자금 공개	회계보고	○다음해 2월 15일까지 정당,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가 보고 ○공직선거일 후 15일까지 보고(대선 제외)	○다음해 2월 15일까지 정당,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가 보고 ○공직선거일 후 15일까지 회계 보고 폐지

※ ()의 '영'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며 동령에 규정된 내용임을 표시함.

기탁한도와 비지정기탁금의 배분방식도 개정되었다. 우선 현금기탁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기탁금의 하한액을 1회 5만 원 이상(동법 시행령에 규정)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기탁금 납부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반면 5,000만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다액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한 종전의 개인 연간 기탁상한액 규정(동법 시행령 규정)은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다액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법인과 단체의 경우에도 1억 원 또는 전년도 말 자본금(운영자산) 2% 중 다액이었던 것을 5억 원 또는 전 사업년도 말 자본총계의 2% 중 다액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비지정기탁금의 경우 의석수에 따라 분배하던 기존 배분방법을 수정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이외 당비와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종전의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공직선거에 따른 회계보고는 각종 선거법에 의한 선거비용 보고와 중복되어 폐지하였다.

나. 제5차 개정(1991. 12. 31)

1) 개정과정

1989년 12월 국고보조금의 정액화와 분기별 균등배분 및 다수참여를 위한 후원회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4차 개정이 있는 지 2년이 지난 1991년 12월 31일 정치자금법은 또 한번 개정되었다. 김윤환 등 214명의 의원이 12월 10일 제출한 개정 법률안에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 적정분배, 정당 간 균형발전, 소수당의 보호·육성,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 등이 주요 개정이유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제안설명에서 나타난 명분과는 달리 핵심적인 개정 목적은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있었다. 그 결과 주요 개정내용도 지구당후원회의 회원수 상향조정, 국고보조금 대폭 증액 및 배분방식 수정 등이었다.

제안된 법률안은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선거가 있는 해의 국고보조금 배분과

후원회 모금액 조정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한 위원회수정안으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여당에 일방적으로 편중된 지정기탁금제 폐지와 익명기탁제 도입 문제, 후원회 회원수의 상향조정, 쿠폰제 도입 등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수정안은 큰 충돌 없이 표결에 의해 의결되어 12월 17일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제156회 정기국회 제19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3호로 공포되었다.

2) 주요 개정내용

제5차 개정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증액이었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 1인당 400원을 기준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이하 '경상보조금' 이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유권자 1인당 계상 기준 금액을 600원으로 50% 증액하였다. 한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시·도의회의원 및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따라 선거마다 유권자 1인당 300원을 추가하여 계상토록 하였다. 또한 이 선거로 인하여 추가되는 보조금(이하 '선거보조금' 이라 함)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하되, 당해 대통령선거 등의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보조금 배분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40%를 균등하게 배분·지급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정당 중 5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 5%씩을 배분·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해서는 ①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 득표한 정당 ②2% 미만 득표하였으나 의석이 있는 경우 최근 전국 단위 시·도의회의원 또는 시·도지사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0.5% 이상 득표한 정당 ③최근 국회의원선거에 불참한 정당으로 최근 전국 단위 시·도의회의원 또는 시·도지사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0.5% 이상 득표한 정당 등 세 가지 경우에 2%씩을 배분·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 및 국회의석을 갖지 못한 소수당의 경우도 최근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단체장선거 등에서 일정한 득표율을 획득한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지구당·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이하 '지구당 등' 이라 함)의 후원회 회원수를 기존 100인 이내에서 200인 이내로 증원하였다. 지구당의 대표자로 있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 등록을 한 자가 후원회를 둔 경우 그 지구당은 후원회 설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국회의원과 지구당이 일치하는 정당구조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입후보 등록을 한 자가 당선된 경우 그 후원회는 대의기관 등의 존속결의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국회의원후보자 후원회를 해산·신고하고 새로이 국회의원 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

제5차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1989. 12. 30 법률 제4186호)	개정 후(1991. 12. 31 법률 제4463호)
후원회	회원수	○중앙당 : 1,000인 이하 ○시·도지부 : 300인 이하 ○지구당 등 : 100인 이하	○중앙당 : 1,000인 이하 ○시·도지부 : 300인 이하 ○지구당 등 : 200인 이하
	계상	○경상보조금 :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 × 400원	○경상보조금 :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 × 600원 ○선거보조금 : 선거권자당 300원 추가
보조금	지급시기	○경상보조금 : 분기별 균등분할 지급 ○선거보조금 : 규정 없음	○경상보조금 : 분기별 균등분할 지급 ○선거보조금 :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 지급
	지급비율	○국회의석 다수 순 4개 정당까지 10%씩 ○잔여분 중 50%는 정당별 의석비율, 나머지 50%는 최근 국회의원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40%는 국회교섭단체 구성 정당 균등분할 ○국회의석이 5석 이상인 비교섭단체 정당에 5%씩 배분 ○국회의석이 5석 미만인 정당 중 국회의원선거 시 유효 투표 총수의 2% 이상(또는 시·도지사 선거시 0.5% 이상) 득표한 정당에 2%씩 배분 ○잔여분 배분은 기존과 동일
	용도제한	○인건비,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유지비, 공공요금,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비, 당원교육훈련비	○총선6개 항목 외 선거보조금에 한하여 '선거관계비용' 추가

다. 제6차 개정(1992. 11. 11)

1) 개정과정

1991년 12월 제5차 개정이 있는 이후 1992년 11월 11일 정치자금법이 여섯 번째로 개정되었다. 제6차 개정은 제14대 대통령선거를 1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자금 확보의 성격이 강하였고,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국고보조금 증액이었다. 개정 법률안은 1992년 11월 3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통해 제안되었으며, 제안 설명을 통해 제시한 개정 이유는 명목상 선거 공영화를 내세우면서도 선거 시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모금을 위하여 후원회의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 시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발전과 각종 주요 공직선거의 공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거 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개정 법률안은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 간 만장일치로 합의한 안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논쟁 없이 제159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1월 4일 의결되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1992년 11월 11일 법률 제4497호로 공포되었다.

2) 주요 개정내용

국고보조금은 유권자 1인당 600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배분·지급하던 기존의 규정은 동일하지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 및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계상기준을 각 선거마다 1인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100% 증액하였다.

국고보조금 증액과 더불어 후원회 제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의 익명기탁이 채택된 것도 주요한 변화였다. 익명기탁제는 앞선 5차 개정 과정에서 여당의 후원금 독식

문제로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여당이 거부하여 수용되지 못한 제도였다. 개정 법률은 이를 채택하여 후원회 회원이 아닌 자가 후원회의 금품 모집 시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제6차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1991. 12. 31 법률 제4463호)	개정 후(1992. 11. 11 법률 제4497호)
후원회	익명기부	○규정 없음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금품모집 시 1회 100만 원 이내의 금품은 익명기부 가능
보조금	선거보조금 계상	○선거권자당 300원	○선거권자당 600원



제3장

정당의 성립과 변화

제1절 _ 기존정당

제2절 _ 신설정당

제1절 기존정당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88년 제13대국회의원선거 이후까지 유지되던 기존 정당은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평화민주당, 한겨레민주당 등 모두 5개 정당이었다. 이 가운데 민주정의당은 5공화국 출범 이후 성립되어 1990년 2월까지 지속되어 온 정당이며,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평화민주당은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형성된 정당들이었다. 한겨레민주당은 제13대국회의원선거 직전에 형성된 정당이었다.

1. 민주정의당(1981. 1. 17~1990. 2. 15)

민주정의당은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 의한 제5공화국 헌법 개정, 11월 25일 정당법 개정, 11월 21일 계엄포고 15호 발표 등으로 1980년 5월 17일 계엄포고 10호에 의해 중단되어 왔던 정치활동이 재개되면서 1981년 1월 17일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 세력이 중심이 되어 창당한 정당이다. 이후 1981년 2월 25일 실시된 제12대 대통령선거에서 전두환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데 이어 3월 25일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과반수를 확보하여 제5공화국 기간에 집권 여당으로 활동하였다. 민주정의당은 1987년 민주화운동이 거세게 일면서 한때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6·29 선언과 헌법 개정에 의해 1987년 12월 16일 국민직선제로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수습하였다.

1988년 2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정의당은 그리 오래지 않아 또다시 정

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정의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한국 의정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고, 정국주도권을 야 3당에 내줌으로써 국정 운영의 위기를 맞았다.

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와 조직 정비

민주정의당은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체 299석 중 지역구 87석, 전국구 38석 등 원내 과반수에 25석 모자라는 125석을 차지하였다. 그 결과 의정사상 최초로 집권당이 원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참패하자 민주정의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직 개편을 단행하여 변화된 정국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채문식 대표위원과 중앙집행위원 전원



▲ 민주정의당 신임 대표위원으로 임명된 윤길중 의원이 채문식 전임 대표로부터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1988년 5월 2일).

이 국회의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 당직개편은 선거 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신속하게 단행되었다. 또한 개편 범위도 대표위원 등 당3역과 원내총무 및 대변인 교체 뿐 아니라 서울 등 10개 시·도지부 위원장을 새로이 임명하는 등 상당히 전면적이었다. 당직개편 결과 대표위원에 윤길중 의원,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박준병 의원과 이한동 의원이 각각 임명되



▲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관용을 호소하고 있다(1988년 11월 26일).

었다. 또한 원내총무에 김윤환 제1정무장관, 대변인에 김종위 의원이 임명되었다. 임방현 중앙위원회 의장은 유임되었다.

여소야대의 정국 운영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제13대 국회 초반 원 구성 문제에서부터 5공화국 청산 작업과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 여러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정의당은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 3당의 공조로 인하여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6개 상임

위원회 가운데 9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어야 하였다. 특히 제13대국회 출범 이후 핵심 논쟁점이었던 5공화국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과거의 과오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정치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한편 국민들의 비판여론도 진정시켜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였다. 이에 정부와 민주정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백담사 은둔생활, 5공화국 청산의 종결을 촉구하는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담화, 특별수사부 설치와 5공비리 인사 처벌 등 다방면의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 비판적 국민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고, 정치적 타협점 또한 쉽게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정의당은 ‘민심수습’이라는 명분 아래 1988년 12월 8일 또다시 당 조직을 개편하였다.

12월 8일 단행된 당직개편의 핵심은 박준규 상임고문의 대표위원 임명과 새로운 지도체제 구성이었다. 박준규 대표위원은 신임인사를 통해 앞으로 야 3당과 정책제

휴나 연립관계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각책임제 개헌도 구상해 나갈 수 있음을 밝혔다. 박준규 대표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정의당은 정책 수립 및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 같은 협력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을 것이다. (……) 정책 제휴 혹은 정책 연립이 더 발전돼 연정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당장 연정을 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하였다.

12·8 당직개편에서는 대표위원 외에도 주요 당직자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졌다. 사무총장에 이종찬 의원, 정책위의장에 이승윤 의원, 대변인에 박희태 의원이 임명되었다. 정책조정실장과 기획조정실장도 김중위 의원과 손주환 의원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임방현 중앙위의장과 김윤환 원내총무, 총재비서실의 김영구 실장과 김중권 제1사무차장 및 구용상 제2사무차장은 유임되었다. 그 외에 국책평가위원장 박정수 의원, 국책연구소 정세분석실장 조강목 의원, 국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나창주 의원 등이 새로이 기용되었다. 이병용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각각 당윤리위원장과 당예결 위원장에 임명되었고, 기타 주요 당직도 대폭 개편되었다. 그러나 12·8 당직개편은 단합과 결속을 통해 침체된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정의당 주요 간부 변경(1988. 5~1988. 12)

직책	기존	변경(1988. 5)	변경(1988. 12)
대표위원	채문식	윤길중	박준규
사무총장	심명보	박준병	이종찬
정책위의장	남재희	이한동	이승윤
원내총무	이대순	김윤환	김윤환
대변인	유경연	김중위	박희태
중앙위원회 의장	임방현	임방현	임방현

나. 중간평가 유보와 당내 갈등

1988년 말 당 조직을 정비한 민주정의당이 당면한 정치적 과제는 중간평가 문제였다. 중간평가는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면 집권 기간에 국민들로부터 그의 업적에 대해 평가를 받겠다고 공언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정부와 민주정의당은 중간평가에 대해 유보를 주장하는 온건파와 강행을 주장하는 강경파로 이분되기 시작하였다.

강경파는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5공화국 청산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등 야당 공세에 끌려가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신임을 묻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김영삼·김대중·김종필 야 3당 총재는 1989년 3월 초 회담을 통하여 5공화국 청산 등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에 중가평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야 3당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평가 실시 여부,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2월 11일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3월 7일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 3월 10일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 등 야 3당 총재들과 연이어 청와대 단독회담을 열고 그들의 의견을 들은 후 3월 20일 특별담화를 통해 중간평가 유보를 발표하였다.

1989년 3월 중간평가의 유보 선언 이후 민주정의당은 4월과 8월의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였고, 문익환 목사와 서경원 의원 등의 방북 여파로 공안정국 분위기가 대두되면서 야당 주도의 정세도 변화하는 듯하였다. 특히 중간평가 유보 선언 이후 야 3당 공조에 균열이 시작되면서 민주정의당은 정국 주도권 회복을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의당은 여전히 당내·외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여소 구도로 인하여 주도적인 정책 입안이 어려웠고, 야당의 반대와 견제를 극복해 내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민주정의당은 좀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하여 정계개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정계개편 반대와 당풍 쇠신을 내세우는 당내 반대세력의 출현으로 당내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당내 갈등은 1989년 8월 2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세미나에서 표면화되었다.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이종찬 당시 사무총장은 정계개편 반대와 당풍 쇠신을 주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당내에서는 불협화음과 갈등이 계속하여 증폭되었다. 특히 중간평가와 당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지기 시작한 당내 내분 현상은 5공비리 청산의 핵심과제인 정호용 의원의 공직 사퇴를 계기로 더욱 혼란에 빠졌다. 게다가 야 3당이 5공비리 청산 문제를 두고 공조체제를 복원하여 다시 민주정의당에 압력을 가해오면서 회복양상을 보이던 정국 주도권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내분과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자 민주정의당은 1989년 8월 30일 또 한 번의 대폭적인 당직개편을 단행하였다. 8·30 당직개편으로 사무총장과 원내총무가 각각 이춘구 의원과 이한동 의원으로 교체되었다. 이는 당내 각 세력 간 갈등과 불협화음을 수습하고, 5공비리 청산 문제를 둘러싼 야당과의 막후 협상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중앙위원회 의장에 남재희 의원, 총재비서실장에 김진재 의원이 각각 임명되었다. 임방현 전 중앙위원회 의장은 상임고문으로 임명되었다.

8월 당직개편을 계기로 민주정의당은 9월 ‘연내 5공화국 청산’이라는 대명제를 해결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핵심 당직자들은 야당과 막후 협상을 통해 5공비리 청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전력하였다. 그러나 큰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5공비리 청산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인 정호용 의원에 대한 대구시민의 지지 서명 파동이 일어나면서 당내 갈등과 분열이 더 심화되었다. 5공비리 청산과 관련하여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12월 15일 야 3당 총재와 4자 회담을 개최하고, 정호용 의원 사퇴와 전두환 전 대통령 증언, 5공화국 핵심인사 처리 등 11개 항에 합의하고 5공

비리 청산 문제를 연내에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³⁾ 이러한 합의에 따라 민주정의당은 5공비리 청산 마무리 작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던 중 12월 28일 박준규 대표위원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양당제 등 정계개편을 주장하여 정계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박준규 대표위원은 인터뷰에서 “4당체제를 양당체제로 재편하고, 정계개편 과정에서 민주정의당의 기득권은 고집하지 않으며, 노태우 대통령은 중립적인 위치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정의당의 해체와 노태우 대통령의 당적 이탈로 해석되는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자 당 지도부와 긴장 관계에 있던 정호용 의원 지지 세력이 크게 반발하였다. 결국 박준규 대표위원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2월 29일 사표를 제출하고 대표위원직에서 물러났다.



▲ 민주정의당 박태준 대표위원이 노태우 총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다(1990년 1월 6일).

그러나 민주정의당은 박준규 파문으로 공식이 된 대표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않았으며, 남재희 의원이 대표위원을 대행하는 선에서 파문을 정리하였다. 공식적인 당적 개편은 1989년 12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을 끝으로 5공비리 청산을 사

3) 여야 4당 총재의 합의는 2가지 평가로 극명하게 대별되었다. 일면에서는 '대타협'이라는 극찬이 나오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보수대야합'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실상 마무리한 후 1990년 1월 6일에야 이루어졌다. 5공비리 청산을 매듭지은 민주정의당은 1월 6일 당직개편을 통해 박태준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임명하고 박준병 의원과 정동성 의원을 사무총장과 원내총무에 각각 기용하는 등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민주정의당 주요 간부 변경(1989.8~1990.1)

직책	기존	변경(1989. 8)	변경(1990. 1)
대표위원	박준규	유임	박태준
사무총장	이중찬	이춘구	박준병
원내총무	김윤환	이한동	정동성
중앙위원회 의장	임방현	남재희	유임

다. 통일민주당 · 신민주공화당과의 신설합당

중간평가 문제와 5공청산 문제가 일단락되자 정계개편 문제가 민주정의당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2년 가까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을 운영해 오던 민주정의당은 4당체제가 갖는 구조적 한계를 실감하고 있었다. 국정운영 능력은 현저히 저하되었고,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국 운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없었다. 1989년 말의 정계개편 분위기는 12월 28일 민주정의당 박준규 대표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양당제 등의 정계개편을 주장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4당체제의 문제점과 정계개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계개편을 둘러싼 협상이 표면화되고 가속화되었다. 결국 1월 22일 민주정의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은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와 청와대에서 9시간에 걸친 마라톤회담 끝에 3당합당에 합의하였다. 이후 민주정의당은 1990년 2월 1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통일민주당 및 신민주공화당과의 합당을 결의하였으며, 합당 수임기구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지정하였다.

합당 결의를 위한 임시전당대회에서 남재희 중앙위원회 의장이 제안 설명을 통해 내세운 민주정의당의 공식적인 합당 목적은 ‘새로운 범국민정당 창당’이었다. 그러나 내면적 배경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이 강조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임시전당대회 치사를 통해 3당합당을 ‘민주·번영·통일의 벽찬 과업을 완결하기 위한 엄숙한 결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지역 중심의 4당체제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 민주자유당 임시전당대회(1990년 2월 1일).

합당수임기구 위원

박태준, 채문식, 윤길중, 박준규, 유학성, 김정례, 임방현, 남재희, 박준병, 이승윤, 정동성, 박철언, 김진재, 김종위, 이태섭, 서장화, 박정수, 오유방, 정석모, 이종찬, 김윤환, 이춘구, 이한동, 이도선, 이동진, 이윤자, 정재철, 장성만, 이자현, 심재철, 심명보, 김종호, 심현욱, 양창식, 지연태, 정순덕

당원 결의문

우리 민주정의당은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이룩한 자부심을 지닌 집권정당으로서 창당 이래 국가 발전을 주도하여 왔다. 우리는 오늘 3당통합에 즈음하여 노태우 총재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민족 운명의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노태우 총재와 함께 전 당원이 굳게 뭉쳐 국가 발전을 주도할 새로운 정치문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선다.
- 우리는 모든 중도, 온건, 민주 세력을 결집시킨 신당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하고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한다.
- 우리는 지속적인 개혁과 경제 발전을 통해 민주, 번영, 통일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1990년 2월 1일

민주정의당 당원 일동

통합의 위기와 경제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4당체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명확히 표명하였다. 대의원들은 박수를 통해 3당합당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합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당원들의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임시전당대회는 폐회되었다.

이후 민주정의당은 민주자유당이 공식 출범하기 하루 전인 1990년 2월 14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구 민주정의당 중앙당사에서 박태준 최고위원대행 등 전임 당직자와 사무처 요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기 하기식과 당 간판 하강식을 가졌다. 이로써 1981년 1월에 창당된 집권여당 민주정의당은 1990년 2월 15일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여당과 야당이 신설합당 하는 선례를 남기고 소멸되었다.

2. 통일민주당(1987. 5. 6~1990. 2. 15)

통일민주당은 1987년 4월 8일 신한민주당 소속 의원 중 김영삼·김대중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70여 명이 탈당하여 양 김씨를 중심으로 5월 1일 서울 홍사단 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5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공식 출범하였다. 통일민주당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장하였고,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그해 12월 국민직선의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직면하게 되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일민주당은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상임고문의 대통령후보 단일화 요구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으로 내분 사태를 맞게 되었다. 김영삼 총재가 10월 10일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자 김대중 고문은 국민투표 다음날인 10월 28일 통일민주당을 탈당하여 신당 창당 및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다.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후 통일민주당은 김영삼 총재를 대통령후보로 내세워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에게 패하였다.

가. 김영삼 체제의 재정비와 재·보선 패배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김대중 당시 상임고문과의 후보단일화 실패 때문임이 현실로 나타나자 김영삼 총재는 1988년 2월 8일 야권통합을 위해 총재직을 사퇴하고 평당원으로서의 백의종군을 선언하였다. 이후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평화민주당과 야당통합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당을 시도하였으나 통합할 신당의 대표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이로 무산되었다.

이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통일민주당은 224개 선거구 가운데 민주정의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02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였으나 전체 의석 중 59석밖에 얻지 못하여 평화민주당에 이어 제2야당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획득한 의석수와 달리 득표율에 있어서는 민주정의당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선거 직후인 4월 29일 통일민주당 김영삼 전 총재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1당이냐 2당이냐는 큰 의미가 없으며, 야당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던져준 국민에게 감사한다” 라며 득표율 2위 정당임을 강조하였다.

선거를 마친 통일민주당은 1988년 5월 12일 전당대회를 통해 김영삼 총재 체제로당을 재정비하였다. 대의원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는 단일지도체제의 당헌을 채택하는 한편 김영삼 전 총재를 만장일치로 총재에 추대하였다. 이로써 김영삼 총재는 대통령선거 패배 후 1988년 2월 8일 야권통합의 길을 연다는 명분으로 총재직을 자진 사퇴한 뒤 94일 만에 다시 통일민주당 총재로 복귀하였다. 김영삼 총재는 수락연설을 통해 “통일민주당은 산업사회를 이끌어 가는 건전한 중산층으로부터 합리적인 진보 세력까지를 골고루 대표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당이며, 야당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올렸고, 젊은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면서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책정당화와 더불어 당내민주화를 강력히 추구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전당대회에서는 총재 선출과 함께 당 조직 또한 새롭게 정비되었다. 우선 당

헌에 따라 경선을 실시하여 김동영, 황명수, 이기택, 김상현, 김현규 등 5명을 부총재로 선출하였고, 김영삼 총재가 지명권을 가진 부총재 1명은 강인섭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영입·지명함으로써 모두 6인의 부총재단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김명윤 총재직 무대행은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었고, 김재광 고문은 국회 부의장에 내정되었다.



▲ 통일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재로 선출된 김영삼 총재가 인사하고 있다(1988년 5월 12일).

전당대회에 이어 5월 13일에는 전면적인 당직개편이 단행되었다. 김영삼 총재는 당직개편을 통해 서석재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하는 한편 원내총무에 최형우, 정책심의회 의장에 황병태 의원을 각각 임명하고 서청원 의원을 대변인에 기용하였다. 또 원내부총무에는 김정길(수석)·강삼재·장석화·이인제·박태권 의원 등 5명을 임명하였다. 이 밖에 중앙정치훈련원장에 김동규 의원, 당기위원장에 강보성 의원, 인권옹호위원장에 강신옥 의원, 대외협력위원장에 양해준 의원, 국제위원장에 정재문 의원, 총재비서실장에 최기선 의원을 임명하였다.

연이어 5월 14일에는 정무위원 35명을 임명함으로써 새로운 당의 기본 골격 구성 작업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신임 정무위원단은 총재단, 당8역, 전당대회회장 등 당연직 16명과 김재광·황낙주·신상우·박용만·박종률·김정수·박관용 의원

등 3선 이상 다선의원 7명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하였다. 나머지 12명 가운데 김덕룡·김성룡 의원 등 두 초선 당선자를 제외한 10명은 모두 원외로 채웠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통일민주당은 야 3당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정국을 운영하고, 1988년 9월 5일에는 중앙당사를 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마포구 공덕동으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정당활동을 해 나갔다. 1989년 들어 중간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국회의원재선거가 임박해 오자 김영삼 총재는 3월 16일 부분적인 당직개편을 단행하고 당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서청원 의원을 총재비서실장에 새로이 임명하는 동시에 대변인도 이인제 의원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기획조정실을 신설하여 김광일 의원을 실장으로 기용하는 한편 대외협력위원장에 정정훈 의원을 임명하고, 재외동포협력위원장에 김동영 부총재를 임명하여 겸임토록 하였다. 3·16 당직개편은 변호사 출신의 신세대 의원들로 당력을 보강하고, 노태우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불신임 투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통일민주당은 1989년 실시된 두 차례의 재선거를 치르면서 중대 위기를 맞았다. 1989년 4월에 실시된 동해시 국회의원재선거에서 서석재 사무총장이 신민주공화당 이홍섭 후보를 매수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통일민주당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서석재 사무총장은 탈당 후 구속되었고, 당8역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김영삼 총재는 대국민사과를 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간평가 유보 결정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던 통일민주당의 입지는 매우 위축되었다. 그러나 후보매수 사건 이후 대폭적인 당직개편이 예상되었음에도 김영삼 총재는 4월 19일 서석재 사무총장의 궤석을 김정수 의원으로 보임하는 선에서 후보매수 과문을 일단락하는 대신 소련 방문 등 초당적 외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뒤이어 실시된 1989년 8월 영등포구를 국회의원재선거에서 또다시 패하면서 그 빛이 바랬다. 연이은 재선거 패배와 재선거 과정에서의 악재 등으로 통일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는 제13대 국회 전반기에 비해 상당히 위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9년 8월 25일 김영삼 총재는 정국 주도권 회복의 계기

를 마련하고 흔들리는 당의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당내 중량급 인사를 주요 당직에 대거 기용하는 등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기택 부총재와 김동영 부총재를 원내총무와 사무총장에 전격 임명하는 한편 정책심의회 의장에 김동규 훈련위원장, 대변인에 강삼재 의원을 각각 임명하였다. 한편 훈련위원장에는 강보성 당기위원장, 당기위원장에는 김태룡 전 의원을 각각 새로이 임명하였다.

통일민주당 주요 간부 변경(1988. 5~1989. 8)

직책	기존	변경(1988. 5)	변경(1989. 3)	변경(1989. 8)
대표자	직무대행 김명윤	김영삼	-	-
상임고문	-	김명윤	-	-
부총재	이중재, 최형우, 양순직, 박용만, 노승환, 김동영, 이용희	김동영, 황명수, 이기택, 김상현, 김현규, 강인섭	-	-
전당대회 의장	유제연	정상구	-	-
사무총장	김영배	서석재	김정수	김동영(4. 19)
원내총무	김현규	최형우	-	이기택
정책심의회 의장	박찬중	황병태	-	김동규
대변인	김태룡	서청원	이인제	강삼재

나. 민주정의당 · 신민주공화당과의 신설합당

1989년 8월 영등포구를 국회의원재선거가 끝난 후 공안정국의 상황 속에 당내 일부 의원들의 야권통합 주장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다소의 기복은 있었으나 통합론은 연말까지 이어져 갔다. 야권통합론 확산에 부심해 온 김영삼 총재는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와의 수차례 골프 회동에 이어 1989년 12월 15일 청와대 영수회담을 마친 후 연초에 정계개편에 대한 단안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를 계기로 정계개편론은 과열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총재는 신년 TV 인터뷰와 당 시무식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정계개

편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1월 6일에는 서울 근교 뉴코리아골프장에서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와 골프회동을 하고 정계개편과 새해 정국운영을 논의하였다. 이후 양당 대변인을 통해 “현재의 4당체제는 정치 안정과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데 부적당하며, 새로운 정치환경과 질서를 엮어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의논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전하였다.

한편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 양당의 통합문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간의 통합을 주장하는 이상수·이해찬(이상 평화민주당), 김정길·장석화·노무현(이상 통일민주당), 이철(무소속) 등 소장의원들은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본격적인 서명작업을 벌였다. 이러한 가운데 통일민주당 중앙당 국장 3명 등 민주당원 9명이 1월 10일 의원회관으로 찾아가 야권통합을 추진해온 김정길 의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이에 항의하는 보좌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당내 반발은 점차 고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총재는 1월 13일 정무위원·의원합동회의에서 “온건·민주·중도 노선을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하여 정계개편을 이루겠다”라며 신당추진 구상을 처음으로 공식화하였다. 김영삼 총재는 세계가 급속히 달라져 가는 상황에서 민주·반민주 구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민주공화당과의 통합에 대한 비판론을 견제하였다.

결국 김영삼 총재는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와 청와대에서 3자회동을 갖고 3당의 통합원칙은 물론 신당창당 일정, 당의 권력구조, 인적구성 등 신당창당의 대강에 일괄 합의하고 전격적으로 3당합당을 선언하였다. 이후 통일민주당은 1월 25일 정무회의를 통하여 합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총재에게 일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어 1월 30일에는 중앙당사에서 대의원 1,164명 중 8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민주정의당·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민주자유당(가칭)을 창당하기로 결의하고, 수임기구 구성 등 합당에 관한 모든 권한을 김영삼 총재에게 위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임시전당대회에서 김영삼 총재는 치사를 통

해 “4당체제로 지방의원선거를 하였다면 지역갈등으로 종말이 올 뻔하였다.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 야당인도 구세기적 사고에 머물 수만은 없다. 신사고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며 3당합당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3당합당이 위대한 혁명이며 구국의 결단임을 강조하면서 악법 개폐, 구속자의 대담한 석방,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대의원들은 민주자유당 창당과 김영삼 총재 중심의 결속 등 5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임시전당대회를 통한 합당결의 과정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수임기구 구성을 김영삼 총재에게 위임하자는 황명수 의원의 동의를 정상구 전당대회장이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들의 박수로 통과시키려 하자 합당에 반대하는 김상현 부총재, 노무현 의원 등 일부 대의원들이 격렬히 항의하며 반발하였다. 이에 청년당원들이 이들을 제지하는 가운데 임시전당대회는 35분 만에 서둘러 폐회되었다.⁴⁾ 김상현 부총재와 노무현 의원은 임시전당대회 이후 “찬반토론의 기회를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 임시전당대회에서 김상현 부총재와 노무현 의원이 3당합당 결의에 격렬히 항의하고 있다(1990년 1월 30일).

4) 찬반토론 없이 박수로 합당을 의결하려 하자 합당 반대파 대의원들은 ‘반대토론 하라’ ‘투표로 결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으나 정상구 의장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자 ‘날치기다’ ‘무효다’라고 소리치며 반발하였다. 김상현 부총재, 노무현 의원 등은 “여당도 하기 전에 날치기부터 실습이나”라며 대회 무효를 외치고 항의하다 김영삼 총재 측 청년 당원들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끌려 나가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90년 1월 30일자 2면).

김영삼, 김명윤, 김재광, 김동영, 정상구, 황명수, 강인섭, 김동규, 강보성, 김태룡, 강신옥, 정정훈, 정재문, 최형우, 김정수, 황병태, 박용만, 권오태, 황낙주, 박 일, 박종률, 김수한, 박관용, 박 찬, 조홍래, 조병봉, 김성룡, 김덕룡, 김영관, 신상우, 서청원, 김동주, 문정수, 심원구, 강삼재, 백찬기, 김봉조, 황대봉, 유성환, 조종익, 최정식, 김현수, 박태권, 최용안, 문준식, 반형식

한편 임시전당대회 하루 전에 신당참여를 반대하는 지구당위원장 및 당원들은 서울 서교호텔에서 ‘정통야당 민주당 사수 대의원대회’를 열고 합당결의 저지의 의지를 확인하고, 임시전당대회에서 3당합당 결의 여부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당합류를 결심하고 15인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통일민주당 중진 이기택 의원도 임시전당대회 날 김현규 부총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자유당 참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임시전당대회 직전에 마음을 바꾼 이기택 의원은 “집권당으로의 이주 대신 민주 수호세력의 법통을 잇는 데 헌신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밝히며 잔류파 등과 함께 야권 신당창당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였다.

통일민주당은 합당 반대파의 반발 속에 임시전당대회를 마치면서 형식적 합당절차만을 남겨둔 채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후 통일민주당은 김영삼 총재 중심의 통합신당 참여파와 이기택 의원 중심의 잔류파 간에 동조세력 확보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양측으로 갈라져 해체 과정을 밟았다.

3. 신민주공화당(1987. 11. 11~1990. 2. 15)

신민주공화당은 1987년 6·29 선언과 개헌협상이 종료된 이후 9월 28일 김종필 전 민주공화당총재가 정계복귀를 선언하면서 구 민주공화당 출신 정치인과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한 정당이다. 신민주공화당은 1987년 10월 30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김종필을 당 총재 및 제13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하여 독자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였으나 4위로 낙선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득표율을 보이면서 지역주의 구도 속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정치적 입지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와 조직정비

신민주공화당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충청지역에서 신민주공화당 바람을 일으키며 총의석의 11.7%에 해당하는 35석을 획득하고 원내 제4당으로 부상하였다. 제4당의 지위는 산술적 측면에서 보면 정국운영에 있어 영향력이 타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어느 정당도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소위 황금분할로 불리는 4당체제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신민주공화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캐스팅보트(Casting Vote)’⁵⁾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면서 정국운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신민주공화당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도 ‘제4당’의 힘을 십분 발휘하여 2개 상임위원회와 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당받았다.

선거 후 신민주공화당은 5월 10일 당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여소야대 정국과 제13대 국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당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김종필 총재는 이종근 의원을 부총재에 임명하는 한편 사무총장에 최각규 의원, 원내총무에 김용채 의원을 각각 임명하였다. 또한 전당대회회장 김효영과 중앙위원회 의장 신철균을 유임시키고 중앙훈련원장에 오용운, 신설된 종합기획실장에 이희일, 총재비서실장에 편

신민주공화당 주요 간부 변경(1989. 5)

직책	기존	변경	비고
부총재	이병희, 최재구, 장영순, 최정기, 구자춘, 김영자	이종근(신임)	장영순, 최정기 당직사퇴
사무총장	김용채	최각규	5. 10 당직개편
원내총무	-	김용채	
정책위의장	김용환	유임	
대변인	조용직	김문원	

5) 합의체 의회에서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란드 대사를 지낸 김동근을 각각 임명하였다. 또 당기위원장에 박병선, 인권옹호위원장에 신오철, 국토통일위원장에 이재연, 재해대책위원장에 김종식, 재정위원장에 권오석을 임명하였다.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신민주공화당은 정국운영의 기초를 안정에 두고 때로는 정부·여당, 때로는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과 협력함으로써 여야 간 정면충돌에 따른 정국 혼란을 막는 완충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처음으로 야 3당 총재회담을 주선하여 야권공조체제를 구축하였고, 5공화국 청산을 위한 특위 정국을 출범시키는 데도 당력을 모았다. 반면 신민주공화당은 1988년 12월 강영훈 내각의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는 찬성 당론을 결정하여 정부·여당을 지원하였다. 또한 1989년 초 노태우 대통령 중간평가 문제에서도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나.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과의 신설합당

신민주공화당은 1989년 4월과 8월 실시된 두 차례의 국회의원재선거에서 모두 패배함에 따라 김종필 총재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의 진로와 관련하여 심각한 고민을 안게 되었다. 김종필 총재는 9월 한 달 동안 당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장기구상 끝에 10월 2일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골프회동을 하고 5공화국 청산의 연내 마무리와 야권공조 등 7개 항에 합의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수 차례의 골프회동을 통해 5공화국 청산과 정계개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마침내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김종필 총재는 청와대 3자회담에서 3당의 통합원칙과 신당창당 일정, 당의 권력구조, 인적구성 등 신당창당의 대강에 일괄합의 하였다.

3당 합당이 합의되면서 신민주공화당은 즉각적으로 합당 작업에 돌입하였다. 합당선언 다음날인 1월 23일에는 원외지구당회의를 개최하여 합당을 지지하는 절차를 밟았고, 1월 25일에는 당무회의를 통해 합당결의를 승인하였다. 한편 2월 5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대의원 1,795명 중 1,5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전당대

회를 열어 통일민주당 및 민주정의당과의 합당을 기립박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의하였다. 더불어 합당에 관한 모든 권한과 잔무처리의 수임기관으로 당무회의를 지정·의결하였다.

합당수입기구 위원

김종필, 이병희, 구자춘, 이종근, 최재구, 김영자, 김효영, 신철균, 김용환, 최각규, 김용채, 박형규, 조의일, 오용운, 오치성, 이대협, 이인근, 정시봉, 연제원, 박병선, 김문원, 신진수, 김인권, 옥만호, 이인구, 김두운, 이승홍, 조용직, 이성수, 조일제

전당대회에서 김종필 총재는 치사를 통해 “4당구조가 극심한 지역주의와 분과주의로 말미암아 민주화는커녕 아무것도 성사시킬 수 없었으며, 새로운 경제도약과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가경영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온건보수의 민주세력이 대연합하는 미래지향적이며 통일 지향적인 통합신당의 창건만이 가능하다”라며 합당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임시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진 당무보고에서 3당 합당은 김종필 총재의 소위 ‘JP구상’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지적하며, 신민주공화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 왔음을 내세웠다. JP구상은 “김종필 총재가 4당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걱정하면서 다가올 민주화시대와 조국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치가 색깔과 이념에 따른 보혁구도로 재편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 신민주공화당 현판 하강식(1990년 2월 14일).

김종필 총재는 이 구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치권과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되었으며, 결국 아무 조건 없이 합당할 것을 합의하고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합당을 결의한 신민주공화당은 1990년 2월 14일 정당의 간판을 내리는 하강식을 중앙당사 및 전국 각 지구당사에서 일제히 실시하였다. 이로써 1987년 11월 11일 구 민주공화당 승계를 자임하며 창당된 신민주공화당은 2년 3개월 만에 민주자유당으로 신설합당하여 소멸되었다.

4. 평화민주당(1987. 11. 13~1991. 9. 16 : 1991. 4. 15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 변경)

평화민주당은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상임고문이 대통령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하는 과정에서 통일민주당을 이탈한 김대중을 중심으로 1987년 11월 13일 창당된 정당이다. 평화민주당은 11월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김대중을 당 총재 및 제13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추대하여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이후 평화민주당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통일민주당과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통합신당의 지도체제와 관련하여 양당이 대립하면서 실패하였다.

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와 당 체제 정비

평화민주당은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70석을 차지하는 선전으로 통일민주당을 누르고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그 결과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국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 후 평화민주당은 5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단일 지도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당헌을 채택하고 김대중 전 총재를 만장일치로 재추대하여

당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로써 김대중 총재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기 전인 3월 17일 야권통합 추진과정에서 사퇴 압력을 받아 총재직을 떠난 이후 51일 만에 제1야당으로 부상한 평화민주당 총재로 복귀하였다. 김대중 총재는 총재직 수락연설을 통하여 평화민주당의 기본목표가 ‘안정 속의 개혁’임을 명확히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혼란도, 파국도 바라지 않는다. 노태우 정권이 민주화의 길에 나선다면 그에 상응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대야 투쟁방식의 변화를 암시하였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등 5공화국 유산 청산과 새로운 민주질서 수립을 위한 제반 입법의 수행 등에 있어서 야 3당 공조체제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이날 평화민주당은 문동환(수석부총재)·박영숙·최영근·조운형·손주항·박영록을 부총재로 지명하여 전당대회에서 인준을 받았으며, 1석의 부총재는 재야인사 영입을 위해 지명을 보류하였다.

전당대회 이틀 후인 5월 9일에는 새로운 당조직 정비를 위한 전면적인 당직개편이 단행되었다. 사무총장에 이재근 의원, 원내총무에 김원기 의원, 정책심의회 의장에 정대철 의원이 각각 임명되었다. 한편 대변인에 이상수 의원, 총재비서실장에 한광옥 의원을 기용하고 신설된 기획조정실장에 장영달을 임명하였다. 그 외 중앙정치연수원장에 임채정 의원, 인권위원장에 조승형 의원, 대외협력위원장에 이길재 의원, 국제위원장에 조세형 의원, 당기관지위원장에 박실 의원, 중앙당기위원장에 최훈 의원을 각각 임명하였다. 또한 홍영기·박종태 의원을 상임고문에 임명하고, 당무지도위원장에 이용희, 부의장에 김태욱을 각각 추천하였다.

평화민주당 주요 간부 변경(1988. 5)

직책	기존	변경	비고
총재	박영숙	김대중	임시전당대회 선출
부총재	이중재, 이용희, 유제연, 양순직, 최영근, 박영록	문동환, 박영숙, 조운형, 손주항, 박영록, 최영근	-
사무총장	김영배	이재근	5·9 당직개편
정책심의회 의장	김봉호	정대철(김봉호)*	
원내총무	허경만	김원기	
대변인	김경재	이상수	

※ 정대철 의원이 제13대 국회에서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정책심의회 의장은 김봉호 의원으로 교체되었다.

이후 평화민주당은 1988년 5월 30일 제13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야 3당 공조를 통해 정국주도권을 행사하며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펼쳤다. 그러나 1989년 들어 공안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평화민주당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989년 3월 말 문익환 목사의 불법 방북으로 공안정국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평화민주당 서경원 의원이 1988년 서울올림픽 직전 비밀리에 방북하여 김일성과 면담한 사실이 드러나 1989년 6월 27일 긴급 구속되었다. 이로 인하여 김대중 총재가 서울 중부경찰서로 구인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평화민주당은 공안정국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김대중 총재가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였다. 당사자였던 서경원 의원을 평화민주통일연구회에서 제명하는 한편 출당 조치하였고, 문동환 부총재와 김원기 원내총무는 사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김대중 총재의 대북친서전달설 등이 제기되자 “평화민주당을 와해시키고 5공 청산을 회피하기 위한 파렴치한 조작극”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고 사실무근임을 주장하였다.

공안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화민주당은 1989년에 실시된 동해시와 영등포구를 등 두 차례 국회의원재선거에서 모두 패배하였다. 또한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의 3당 공조체제마저 중간평가 유보 합의과정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는 제13대 국회 초기에 비해 상당히 좁아졌다. 이후 평화민주당은 1989년 말 5공 비리 청산의 연내처리 문제가 대두하면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공안정국과 재선거 패배로 인하여 위축된 야 3당은 5공화국 청산 문제를 계기로 균열되었던 3당 공조체제를 일부 복원하였다. 평화민주당 또한 1989년 정기국회를 통해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나. 신민주연합당으로의 재편

평화민주당은 1990년 3당합당이라는 대반전의 정세 속에서 1년 내내 내각제 개헌 지지와 지방자치제 쟁취에 전력을 기울였다. 1990년 1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

민주공화당이 3당합당을 선언하고 거대여당으로 전환하자 평화민주당은 한순간에 열세의 야당으로 전락하였다. 상황이 급반전되자 김대중 총재는 1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한 여당에 맞서기 위한 당 체제 개편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당3역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여 사무총장에 신순범 의원, 원내총무에 김영배 의원, 정책위의장에 조세형 의원을 각각 임명하였다. 또한 거대여당의 등장에 따라 대두된 야권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평화민주당의 야권통합 논의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합당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1990년 1월 10일 최영근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민주통합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내 소장파들은 민주당 소장파들과 함께 통합을 위한 서명작업을 벌이는 등 1990년 초부터 야권통합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당이 전격적으로 합당에 합의하면서 야권통합의 구도가 달라졌고, 이에 평화민주당도 더욱 적극적으로 야권통합에 임하게 되었다.

평화민주당은 3당합당 선언 이후 2월 1일 범민주통합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중도민주세력 통합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야권통합 노선을 수정하였다. 야권통합의 일차적 대상은 3당 합당을 거부하며 통일민주당에 잔류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창당을 준비하고 있던 소위 ‘꼬마민주당’이었다. 평화민주당은 자당을 중심으로 통일민주당 잔류세력과 재야인사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평화민주당은 창당준비위원회 상태에 있던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하지 않고 평화민주당과 통합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을 진행하던 가운데 1990년 4월 3일 보궐선거에 참여하여 선전하면서 공식 창당 후 당 대 당 통합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는 4월 10일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과 당명개칭 용의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야권통합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김대중 총재의 2선 후퇴와 당 대 당 통합정신이 명시되지 않은

집단지도체제 및 당명개칭 등의 제안은 사실상의 흡수통합방안이라고 결론짓고 '선창당 후통합'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통합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민주당은 4월 18일 당무지도합동위원회 및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 4월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민주당 창당대회 이후로 연기하는 등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와의 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4월 19일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야권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선창당 후통합' 원칙을 유보하고 '야권통합추진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야권통합 방안을 논의하면서 야권통합은 또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이에 평화민주당은 1990년 4월 24일 김원기·이재근·한영수·유준상·한광옥 의원 등으로 평화민주당 야권통합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5월 8일과 14일 평민·민주 양당통합 협상대표단 회담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와의 통합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양 측이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6월 15일 창당대회를 통해 공식 출범하였고, 양당 간 통합협상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 평화민주당과 민주당(가칭) 통합협상대표들이 협상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1990년 6월 10일).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불투명해지자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노동·농민계 등 각계 재야인사들은 6월 28일 재야세력 통합을 통한 범야권통합을 촉구하는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를 결성하여 야권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에는 박형규 목사 등 종교계 원로 외에 제정구·이부영·유인태·여익구·박계동·이호웅·김부겸 등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 탈퇴파와 오충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공동의장, 법조계의 박세경·유현석 변호사, 여성계의 이우정 등 재야 대표급 인사 133명이 참여하였다.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는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에 통합방안 발표를 유보하고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와 함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수권정당을 목표로 한 야권통합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 발족으로 무산되어가던 야권통합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 결성으로 야권통합 작업이 재가동된 이후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 민주당 이기택 총재,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 김관석 상임 공동대표는 1990년 7월 20일 3자회담을 통해 범민주정당을 추진하기 위한 총론적 차원의 야권통합에 합의하였다. 또한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된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통합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평화민주당·민주당·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는 15인 통합추진협의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국회해산과 국회의원선거 실시를 주장하며 야권 장외 공동투쟁을 전개하였고, 서울 지역 570명의 인사들이 범민주통합정당 결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김상헌 전 민주당 부총재, 김형래·이길범 전 의원 등 7명의 정치계 인사가 3자통합을 적극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이 결성되면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 평화민주당은 연기되어 왔던 정기전당대회를 1990년 7월 27일 개최하였다. 대의원 1,805명 중 1,7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 제1차 정기전당대회에서 평화민주당은 김대중 총재를 만장일치의 기립박수로 총재에 재추대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총재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로 선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무기명 비밀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참석 대의원 중 1,519명이 투표하여 1,399명의 찬성으로 김대중을 총재로 선출하였다. 개표결과 반대는 112표였으며, 234명이 기권하였고 8표는 무효처리 되었다. 한편 통합야당 건설을 위한 수임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당무회의를 합당에 관한 수임 기관으로 구성하는 한편 '범민주 통합수권정당 건설에 대한 특별 결의문' 을 채택하였다.

범민주 통합수권정당 건설에 대한 특별 결의문 中

범민주세력이 하나로 뭉쳐 수권정당을 건설하라는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야합과 변절을 용납하지 않고 민주화의 대의를 지켜온 '민주당' 과 반독재 민주 운동의 기수로 투쟁의 대열을 이루어 온 재야 민주인사들의 '통합추진회' 와 함께 범민주 단일 수권정당을 건설할 것을 선언하며…….

그러나 총론적 차원의 야권통합에는 합의하였지만 그 추진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우선 통합절차에 대한 이견이 심하였다. 평화민주당은 당무회의를 통해 '선통합 후정비' 원칙을 확정하였고,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도 같은 입장을 보였으나 민주당은 선험상을 주장하였다. 지도체제와 지분문제에서도 이견이 심하였다. 지도체제를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김관석 공동대표는 3인 공동대표체제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여 '집단지도체제와 대표 제3자 옹립안' 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는 평화민주당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9월 들어 민주당은 정무회의에서 이기택 총재에게 야권통합 전권을 위임하였다. 이에 이기택 총재는 3자 회동에서 통합협상을 일괄타결 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야권통합이 안되면 총재직을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또한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의 공동대표제 수용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 김관석 공동대표는 김대중·이기택 총재와 연쇄 접촉하는 등 야권통합을 위한 절충을 시도하였고, 15인 통합추진협의회도 간사회

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민주당·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절충에 실패하였다.

야권통합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1990년 10월 8일 김대중 총재는 내각제개헌 포기, 지자체 실시 약속의 이행, 물가안정과 민생 치안확립 등 민생문제 해결, 보안사 해체와 정치사찰 금지 등 4개 항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하였다. 여야 간에는 극한 대치상황이 전개되었고, 야권통합 논의 또한 사실상 중단되었다. 단식정국 속에 10월 22일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는 대표경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야권통합 방안을 제시하며 양당에 최후통첩식 서한을 전달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이를 수락하였으나 민주당은 대표경선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고, 결국 야권통합은 결렬되었다.



▲ 김종필 민주자유당 대표가 단식중인 김대중 평민당 총재를 방문하여 위문하고 있다(1990년 10월 17일).

야권통합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평화민주당·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의 일부 세력과 제휴하여 제2의 야권통합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평화민주당 서명과 의원 10여명은 '선이견 조정 후통합 선언'의 독자적인 새 통합안을 당론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관석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의 공동대표는 야권통합 조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으며, 12월 21일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는 평화민주당·

민주당과의 3자 통합협상이 결렬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다. 결국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는 내부갈등으로 인한 분열 속에 1990년 6월 야권통합 중재기구로 출범한 지 6개월 만에 해체되었다.

야권통합 실패 이후 평화민주당은 1990년 12월 29일 사무총장에 김봉호 국회경제과 학위원장, 중앙정치연수원장에 유준상 의원, 인권위원장에 이상수 의원, 중앙당기위원장에 허만기 의원을 각각 임명하는 등 일부 당직을 개편하는 한편 1991년 들어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독자적으로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하였다. 1991년 1월 초 이부영 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의장과 고영구 변호사, 제정구·유인태·여익구 등 민주연합파 인사 60명이 ‘정치세력화로서의 자기선언’을 통해 통합개혁 수권정당 건설을 위한 비상정치협상을 제안하였으나 평화민주당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민중당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합공천 문제 또한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월 들어 재야·종교계·학계·여성계·법조계 등 친 평화민주당 인사들을 주축으로 범민주 수권정당 결성을 위한 신당창당이 추진되면서 평화민주당의 야권통합 논의는 다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 해체 이후 재야의 친 평화민주당 인사들은 활로를



▲ 이부영 등 재야 민주연합 인사들이 야권통합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1991년 1월 5일).

모색하는 과정에서 범민주수권정당추진모임을 구성하였다. 이 모임은 1991년 2월 11일 공식적으로 창당을 선언하고 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3월 23일 신민주연합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2,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발기인대회에서 이들은 이우정 전 여성단체연합회장을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박일·김말룡·최성묵·강창덕·이광우 등 5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우정 창당발기준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시기 야권통합의 실패를 거울삼아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야권통합의 토대를 닦고 아울러 우리의 새로운 결의와 각오의 표현으로서 오늘 발기인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라며 창당 목적이 야권통합에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신민주연합당(가칭)이 내세운 야권통합의 실질적인 목적은 평화민주당과의 통합에 있었고, 이는 발기인대회 이전에 이미 김대중 총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3월 20일 열린 평화민주당 당원단합대회에서 김대중 총재는 “평화민주당은 23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치르는 재야의 신민주연합당과 4월 초·중순께 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대중 총재가 신민주연합당(가칭) 발기인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사를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결국 형식상으로는 통합과정의 절차를 거쳤으나 내용상으로는 평화민주당이 신민주연합 인사들을 흡수하는 것이었다. 신민주연합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지구당 창당 등 완전한 창당 없이 ‘창당준비위원회’ 상태에서 통합을 추진하였고,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양측의 통합은 지역정당으로 인식되던 평화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신민주연합당(가칭)의 발기인대회가 개최되자 이후 통합협상은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신민주연합당(가칭)은 창당발기인대회가 개최된 지 5일 후 제1차 창당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평화민주당과의 통합을 결정하였다. 평화민주당 또한 3월 29일 당무회의와 당무지도·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 신민주연합당(가칭)과의 통합을 결의하였다. 통합결의 다음날인 3월 30일에는 16인 범야권통합협상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4월 1일 3개 소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어 당명을 신민주연합당으로 하고 4월 9일 통합야당 출범 전당대회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4월 4일에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와 이우정 신민주연합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양당통합을 선언하였다.⁶⁾ 양 측은 통합선언을 통해 ‘중도개혁주의 정당’을 표방하였으며, ①참여민주주의 ②도덕정치구현 ③정의로운 시장경제 ④인권의 완전한 보장 ⑤생명존중과 교육입국의 사회문화 ⑥차별 없는 국민화합 ⑦건전한 복지사회 ⑧공화국 연방제 통일 ⑨전방위 자주의교와 도덕적 선진국 등 9가지 기본정책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양측의 통합에 대해 평화민주당 조운형·이교성 의원 등 일부 야권통합 서명과 의원들은 평화민주당과 신민주연합당(가칭) 창당발기인모임 양자만의 통합에 반발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1991년 4월 9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신민주연합당(가칭)과 통합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통합전당대회 전 평화민주당은 재적대의원 총 1,528명 중 1,4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당대회를 먼저 개최하여



▲ 신민주연합당(가칭) 창당준비발기인대회(1991년 3월 23일).

6) 통합선언 당시 신민주연합당(가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정당 간 통합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발표에서 양측은 정당통합으로 표현하였다.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고 당명을 신민주연합당으로 변경하였다. 이어 신민주연합당 (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중 1,500명이 입당하는 형식을 거쳐 재적대의원 총 3,000명 중 2,947명이 참석한 통합전당대회가 개최되었다. 따라서 통합전당대회는 당헌 부칙 2조의 규정에 따라 오전의 평화민주당 정기전당대회에 이어서 당명이 개정된 신민주연합당의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통합전당대회에서는 단일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여 김대중 전 평화민주당 총재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신민주연합당 신임총재로 선출하였다. 한편 김대중 총재가 지명한 이우정 수석최고위원과 최영근·박영숙·노승환·이용희·박영록·박일·김말룡·최성묵 최고위원을 인준하였다. 이들은 통합선언문을 통하여 “범민주 수권 통합야당

개정 강령 및 당헌 주요내용

【 강 령 】

- 참여 민주주의, 도덕정치의 구현, 정의로운 시장경제, 인권 및 생명존중의 사회순화와 교육입국, 차별없는 국민회합, 공화국연방제의 추진, 전방위 자주외교와 도덕적 선진국 등 명시.

【 당 헌 】

- 당명은 신민주연합당으로 변경.
- 중앙당상무위원회를 신설, 전당대회·중앙위원회와 함께 3중으로 함.
- 전당대회 대의원수를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함.
- 부총재 제도를 폐지하고 총재, 수석최고위원, 8인 이내의 최고위원으로 결성하는 최고위원회를 설치하여 총재는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무를 집행하도록 함.
- 당무회의를 당무위원회로 개칭하고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증가.
- 대통령후보자는 대의원 3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중앙당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당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명 추천.
- 국회의원, 시·도지사 후보자는 당무회의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가 추천.

※ 부 칙

- 이 당헌은 전당대회의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이 당헌을 개정한 전당대회는 이를 정기전당대회로 본다.
- 이 당헌 발효 후 1991. 4. 9 입당원서를 제출한 ‘(가칭)신민주연합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은 즉시 당원이 되고, 그 중 동위원장이 지명하는 1,500인 이내의 사람은 이 당헌을 개정한 전당대회에 한하여 이 당헌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대의원이 된다. 이 경우에 제67조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당헌 개정 당시의 시·도지부장과 지구당 위원장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총재의 개편대회 지지를 받아 1991. 8. 31까지 각 시·도지부 및 지구당 개편대회를 완료하여야 한다.

건설과 민간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민족사적 부름에 답해 신민당으로 통합한다”고 밝히고 군사문화 청산, 공안통치 종식, 지역 계층 세대 남녀 도농 간 차별철폐, 공화국 연방제에 의한 단계적 통일실현 등을 정치과제로 내세웠다. 이로써 평화민주당은 1987년 11월 창당한 이후 3년 반 만에 통합전당대회를 통해 당명과 지도부를 바꾸고 신민주연합당으로 재편되었다.

평화민주당에서 당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 신민주연합당은 통합전당대회 직후 당 조직도 새롭게 정비하였다. 전당대회 이틀 뒤인 4월 11일 김대중 신민주연합당 총재는 구 신민주연합 강창덕 창당준비위원을 당 중앙위원회 의장에 임명하는 한편 김종완 의원을 중앙상무위원회 의장에 임명하였다. 또한 13일에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문동환·박종태 의원, 조남기·신도성 등 4명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는 한편 구 평화민주당 당무위원 전원을 유임하고 구 신민주연합 측 인사 18명을 새로이 당무위원에 임명하는 등 총 72명으로 당무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구 신민주연합 측에서 임명된 당무위원 18명은 이우정 박일 김말룡 최성묵 강창덕 이광우 오충일 김자동 박종화 김병욱 신계륜 김정강 김창환 이원범 정병두 강명준 김영주 안상임 등이었다.



▲ 신민주연합당 현판식(1990년 4월 11일).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부 록

평화민주당(신민주연합당) 주요 간부 변경(1990. 1~1991. 9)

직책	기존	변경(1990. 1)	변경(1991. 3)	변경(1991. 4)	변경(1991. 9)	비고
수석부총재	-	-	최영근	-	-	
부총재	박영숙, 문동환, 조윤형, 손주항, 박영록, 최영근	-	최영근, 박영숙, 홍영기, 허경만, 노승환, 박영록, 이용희	-	-	
수석 최고위원	-	-	-	이우정	-	1991. 4. 9 통합전당대회 인준
최고위원	-	-	-	최영근, 박영숙, 노승환, 박일, 박영록, 김말룡, 이용희, 최성목	-	
사무총장	이재근	신순범	김봉호	-	김원기	
원내총무	김원기	김영배	김영배	-	허경만	
정책위의장	정대철	조세형	조세형	-	유준상	
대변인	이상수	김태식(1989.11)	박상천	-	유임	

다. 민주당과의 신설 합당

1990년 범야권통합 실패 이후 평화민주당은 1991년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민주연합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와 통합하여 당명을 신민주연합당으로 개명한 후 독자적으로 지방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 신민주연합당은 참패하였다. 호남 지역은 석권하였으나 전체 의석 866석 중 165석만을 차지하는 저조한 성적이었다. 선거 후 박상천 대변인은 즉각 선거 패배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성명과 함께 야권의 재정비와 통합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광역의회의원선거 참패의 후유증은 심각하였다. 6월 22일 이우정 수석최고위원 등 최고위원 전원과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등 당3역을 비롯한 9역, 당 고문 등 총재를 제외한 신민주연합당의 지도부가 시·도의회의원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뿐 아니라 김대중 총재의 2선 후퇴를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인책론이 제기되었고, 지역구에서 한 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의 집단탈당이 거론되는가 하면 신민주연합당의 한계를 지적하며 야당 재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단지 신민주연합당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며, 참패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를 아울러 또다시 야권통합이 제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민주연합당의 야권통합 추진 움직임은 즉각적이었고, 6월 24일 제9차 당무위원회와 제6차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통해 야권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야권통합추진특별위원회는 6월 26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이우정 수석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광옥 의원(간사), 서명파인 노승환·정대철·김종완 의원, 이용희·박일 최고위원, 신기하·문동환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야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우선 조운형 국회부의장을 중심으로 노승환 최고위원, 정대철·이상수·이형배·박실 의원, 한영수·오홍석 당무위원 등 소위 통합서명파 인사들의 독자적인 행동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해소해야 했다. 서명파 의원들은 야권통합 추진을 위해 김대중 총재의 2선 후퇴를 주장하는 동시에 ‘정치발전연구회’라는 계파 모임을 발족하여 주류파를 압박하였다. 야권통합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조성되는 가운데 신민주연합당은 서명파의 이상수 의원과 한영수 당무위원, 비서명파의 김원기 의원과 임채정 당무위원 등 4명을 추가로 야권통합추진위원으로 임명하고 서명파의 참여 비율을 확대시켜 야권통합추진위원회를 총13명으로 확대하는 대신 공식적인 야권통합 논의는 통합추진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그러나 주류파와 서명파 사이의 이견과 갈등은 이후에도 봉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어 갔다.

1991년 7월 불거진 공천 관련 금품수수설은 신민주연합당 내부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언론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남원 지역 공천과 관련하여 김대중 총재 측근의 거액 금품수수설을 제기하였다. 이에 신민주연합당은 최초 발설자로 이형배 의원(전국구·제13대공천탈락자)을 지목하고 중앙당기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후 통합서명파 리더인 조운형 국회부의장이 “남원 지역 공천과 관련해 김대중 총재의 가족이 개입해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주류파가 격분하면서 사태가 악화되었다. 주류 측은 조운형 국회부의장을 중앙당기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의원총회를 통해 통합서명파들의 ‘정치발전연구회’가 분파적 활동으로 당 기강을 문란케 하고 국민적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며 해체 지시를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991년 7월 29일 중앙당기위원회는 정치발전연구회 회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조운형 국회부의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고 당무회의에 넘겼다. 결국 1991년 8월 5일 당무회의에서 조운형 국회부의장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조운형 부의장에 대한 당권정지가 결정되자 정치발전연구회 측 당무위원들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제히 퇴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대철·이상수 등 정치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당 사무처 간부들에 의해 폭행·감금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신민주연합당의 내부 균열은 더욱 심화되었다.

당 내분과 더불어 민주당과의 협상 또한 지도체제에 대한 이견으로 순탄하지 못하였다. 1991년 7월말 민주당이 ‘공동대표제’ 통합안을 제시하였으나 통합추진특별위원회 내에서는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그 결과 1991년 8월 6일 민주당 통합안과 다른 총재·대표최고위원 등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신민주연합당 통합안으로 역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동대표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런 가운데 정치발전연구회가 공동대표제를 수용하는 독자적 통합안, 즉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동대표제를 채택하고 국회의원선거 후 경선을 통해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신민주연합당은 1992년 8월 2일 당무회의, 8월 3일 야권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상임공동대표의 법적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공동대표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처럼 3개의 정파가 각자 독자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며 이견을 보이면서 통합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였다.

지도체제 문제가 통합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1991년 8월 17일 김대중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순수 집단지도체제, 상임대표의 공동대표제 등 3개 방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이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다.⁷⁾ 그러나 8월 26일 민주당과 신민주연합당 정치발전연구회 소속 의원 등 19명은 야권

7) 김대중 총재의 제안에는 몇 가지 단서가 붙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선택할 경우 총재,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 형태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총재와 대표최고위원 ‘합의제’로 운영할 것을 단서로 내세웠고, 공동대표제인 경우에는 상임대표가 당을 법적으로 대표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동아일보, 1991년 8월 17일자 1면).

통합을 위해 공동대표제를 수용하라며 김대중 총재의 양보와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지도체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야권통합이 결렬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자 정치발전연구회는 집단 탈당 등 거취 문제로 논란을 벌이며 분란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신민주연합당 정치발전연구회와 민주당 소통합과가 독자적으로 모색하던 원내교섭단체 구성 또한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민주연합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1991년 8월 23일 야권통합 문제 등을 둘러싼 소모전을 막고 광역의회의 원선거 이후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당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당직 개편은 당3역을 포함하여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사무총장에 김원기 의원, 원내총무에 허경만 의원, 정책위의장에 유준상 의원이 각각 임명되었다.

통합협상이 의견대립과 분란 속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야권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야권통합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에 신민주연합당은 9월 5일 야권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정기국회 개최 이후라도 순수집단지도체제와 상임공동대표제 2가지 통합방안으로 민주당과 협상을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민주당 역시 지도체제에 대한 내부 논쟁을 전개하였고, 이로써 무산되어 가던 양당 간 통합협상이 재개되었다.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의 통합협상은 막후협상을 통해 지도체제 문제를 합의하면서 급진전되었다. 계속하여 입장 차이를 보이던 지도체제 문제는 김대중·이기택 총재를 공동대표로 하되 김대중 총재의 법적 대표성을 인정하는 타협안을 통해 해결되었다. 협상과정 막바지에 민주당이 법적 공동대표를 주장하여 난관에 봉착하였지만 최고위원 수를 양당 동수로 구성하자는 타협안이 수용되면서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에 신민주연합당은 1991년 9월 10일 제20차 당무위원회와의 제11차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위한 5개 합의사항과 합당 수임기구 구성을 위한 임시전당대회 소집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또한 같은 날 김대중 총재는 이기택 총재와 함께 통합을 공식 선언하였다. 통합선언 다음날 신민주연합당은 민주당 소속의원들과 함께 '민주회'라는 이름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민주당

김정길 원내총무를 대표의원으로 등록하였다.

통합선언 이후 신민주연합당은 1991년 9월 14일 63빌딩에서 대의원 2,691명 중 2,2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민주당과의 합당을 공식 결의하였다. 또한 합당 수임기구는 30명으로 구성하되 수임기구 위원 선출권과 새로이 출범할 통합신당 민주당의 최고위원 4명에 대한 선출권을 총재에게 위임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당명결정, 당헌제정, 대표자 선출 등 합당에 관한 일체의 권한도 수임기구에 위임되었다.



▲ 신민주연합당 임시전당대회(1991년 9월 14일)

합당수임기구 위원

김대중, 이우정, 최영근, 박영숙, 노승환, 박 일, 박영록, 김말룡, 최성목, 문동환, 박종태, 조남기, 신도성, 홍영기, 강창덕, 김종원, 신순범, 조세형, 한광옥, 김원기, 허경만, 유준상, 허만기, 이길재, 이상수, 정대철, 김영배, 이재근, 손주향, 신기하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합당을 결의한 신민주연합당은 결의문에서 “민주세력의 총 집결을 통해 국민정당·수권정당으로 성장하여 1992년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쟁취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후 신민주연합당은 9월 16일 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거쳐 민주당으로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마쳤다.

결의문 요지

- 우리는 통합민주당이 통합정신에 입각하여 상호존중과 호양의 정신 위에서 합당작업이 이룬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국민의 열망에 따라 모든 민주세력을 총집결하여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진정한 민간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 우리는 3당 야합 이후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장기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온 반민주적 수구세력의 공안통치와 망국적인 지역분열 책동 및 내각제 개헌을 통한 영구집권 음모를 온 국민과 더불어 과감히 분쇄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 우리는 어떠한 폭력도 단호히 배격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토대로 통합민주당이 정책정당, 과학정당, 민주정당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 길로 매진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 우리 통합민주당은 안정 속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민주화의 토대를 튼튼히 하면서 자주적인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동시에 남북 간에 있어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에 따라 금세기 초에 조국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는 주체세력이 될 것을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히 결의한다.

1991년 9월 14일
신민당 대의원 일동

5. 한겨레민주당(1988. 4. 6~1991. 3. 13)

한겨레민주당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전 2월 17일 한겨레민주당(가칭) 창당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야권통합을 위해 창당을 미루어오다 민주당과 평화민주당과의 통합이 무산되면서 선거를 불과 20일 남겨둔 1988년 4월 6일 정당등록을 마치면서 창당된 정당이다. 이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석을 얻어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법정 지구당 수(45개)를 충족하지 못하여 정당법에 따라 1991년 3월 13일 등록이 취소되어 소멸되었다.

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와 정당 쇠퇴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직전에 성립된 한겨레민주당은 창당 및 선거준비 과정에서 야권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독자적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다. 총 68명의 후보자를 등록시켰지만 선거결과 전체의 1.2%만을 득표하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구 후보 중 신안군선거구에 출마한 박형오 후보가 유일하게 당선되어 선거 후 명맥은 유지할 수 있었다.

선거 이후 한겨레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특히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박형오 당선자가 당선 직후 탈당하여 평화민주당에 입당함으로써 한겨레민주당은 의석 없는 원외정당이 되었다.

선거 이후 당 핵심 인사들의 활동 또한 한겨레민주당의 재건과는 거리가 있었다. 예춘호 대표는 4·26 국회의원선거 이후 거의 당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제정구 등 당의 핵심인사들 또한 재야세력들과 함께 ‘진보정치연합’ 등 진보적 정당 결성에 주력하였고, 자체 당무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겨레민주당은 국회의원선거 이후 법적 조건만 갖춘채 사실상의 정당활동은 중지되었다.

나. 당 조직 와해와 정당 소멸

박형오 당선자의 탈당으로 원외정당이 된 한겨레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벌이지 못하면서 당 조직이 급속하게 와해되었다. 1990년 12월 11일 전북 남원시·남원군 지구당이 자진 해산 신고에 의하여 등록말소 되면서 지구당 총수는 44개로 줄었다. 이로써 한겨레민주당은 정당법 상 존속요건이었던 법정 지구당 수 45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당 조직의 정비나 재건은 없었으며, 오히려 조직 와해가 가속화되었다.

이후 무안군 지구당을 비롯한 4개 지구당이 추가로 등록말소 내지는 등록취소 되면서 잔존하는 지구당 수는 총 40개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당 주요 인사들의 이탈이 이어졌다. 대표위원 조순형을 비롯하여 회계책임자 이수인과 일부 지구당 위원장이 탈당하여 민주당과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였다. 진보정당 결성 및 야권통합을 위해 구성된 ‘민주연합파’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이강철·최병욱 최고위원 등 당직자 및 고영하·김부겸·원혜영 등 일부 지구당 위원장들은 1991년 2월 3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민주당에 대거 입당하였다.

이처럼 법정 지구당 수 부족 등 정당법이 정하는 기본적인 정당의 존속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무 관계자는 흠결을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당법

상 등록취소규정에 의거하여 당을 해체할 뜻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결국 1988년 4월 재야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꿈꾸며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직전 출범한 한겨레민주당은 뚜렷한 정당활동을 벌이지 못한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1991년 3월 13일 등록이 취소되어 소멸하였다.

제2절 신설정당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노태우 정부 기간 동안 모두 42개의 창당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성을 신고하였고, 여러 차례의 정당통합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실제 정당등록을 완료한 신설정당은 민주자유당 등 11개 정당이었다. 이 중 민주자유당과 민주당(1991.9.16)은 기존 정당 간의 신설합당을 통하여 창당되었다. 그 외 민주당(1990.6.18)과 공명민주당은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민중당·통일국민당·신정치개혁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창당되었다. 그 외 진리평화당·친민당·대한정의당·새한국당 등 4개 정당은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창당되었다.

1. 민주자유당(1990. 2. 15~1997. 11. 24: 1996. 2. 7 신한국당으로 당명변경)

민주자유당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형성된 여소야대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제2·3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신설합당하여 창당된 여야통합 신당이다. 1990년 2월 15일 정당등록을 완료하면서 공식 출범한 민주자유당은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여당과 야당 간 통합을 이루어 냈고 동시에 여소야대의 상황을 일거에 해소하고 총 216석의 거대 여당으로 거듭났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후 정당 명칭을 신한국당으로 변경하였다.

가. 민주자유당 신설합당

1) 합당 배경 : 정계개편 논의와 3당 합당 선언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정계개편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던 이슈였다. 특히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던 야 3당에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내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정부와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정계개편이 정국반전을 위한 돌파구였다. 제13대 국회 출범 초기 야 3당은 공조를 통해 5공비리 청산 문제, 중간평가 문제 등을 비롯하여 정부조직의 구성과 정책입안 등 국회의 동의와 의결을 요하는 다양한 부문에 있어 민주정의당을 견제하고 압박하였다. 이에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이 굳건한 공조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계개편을 모색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초 중간평가 유보를 두고 평화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수용하지는 입장을 보인 반면 통일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굳건하던 야 3당의 공조체제는 서서히 붕괴되어 갔다. 1989년에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은 1988년 서경원 의원의 밀입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축되었고, 동해시 재선거에서 발생한 서석재 의원의 후보매수 사건은 통일민주당을 곤경에 빠뜨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시된 두 번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승리를 거두었고, 야 3당이 공조를 통해 주도권을 행사하던 정국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정기국회를 통해 야 3당은 외형적인 공조체제를 복원하였다. 그러나 중간평가 유보를 기점으로 야 3당이 현실적인 위상과 한계를 재확인하면서 정계개편 논의가 공식·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1989년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4당 체제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민주정의당은 '4당 공존이냐, 대결과 갈등의 과거 회귀냐' 라는 선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여소야대의 역기능과 정계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야 3당 또한 조금씩 차이를 보이긴 하였지만 정계개편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평화민주당은 모든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고, 통일민주당은 1990년대 새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의 경우에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야당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처럼 4당 체제에 대한 각 정당의 불만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 들어 각 정당은 나름의 정계개편에 대한 구상을 본격화하였다.

1989년 말 5공비리 청산 문제가 마무리되고 1990년에 접어들자 정계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각 정당의 주요 인사들 간 비공식 접촉이 시작되었다. 각 정당의 총재와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정계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언급되는 가운데 1990년 1월 12일과 13일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와의 연이은 회동을 통해 정계개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얼마 후 1990년 1월 18일 통일민주당 강삼재 대변인이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양당 총재가 24일경 공식회동을 하고 양당을 주축으로 하는 온건중도세력의 신당 창당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힌 뒤 본격적인 신당 창당에 들어간다”라고 전하면서 정계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민주정의당은 1990년 1월 20일 박준병 사무총장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 임기 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정계개편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마침내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는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장시간의 협상을 벌인 끝에 3당 합당에 전격 합의하였다. 회동 후 노태우 대통령은 3당 총재의 대표 자격으로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위한 공동선언’이라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정계개편은 평화민주당이 제외된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3당의 합당으로 일단락되었다.

2) 정당등록(신설합당)

3당 총재의 합당선언 이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각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 해체 및 합당 결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하였다. 3당 총재의 합의 과정에서 채택된 합당합의문에는 모두 5개의 합의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 합당의 방법은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신설합당 하고, 신당의 명칭은 민주자유당(가칭)으로 하며, 각 정당에서 5인씩의 대표를 내어 모두 15명의 통합추진실무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당대회까지는 3당 총재가 공동대표를 맡으며, 합당등록 절차는 2월말 이내에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창당 전당대회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합의사항에 따라 3당은 1990년 1월 23일 각 당 대표 5명씩으로 15인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자유당(가칭) 창당작업에 들어갔다.⁸⁾ 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박준병 민주정의당 사무총장이 맡았고, 위원회 운영은 15인 완전 합의제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통합추진위원회는 8차례의 회의를 통해 정당의 강령과 기본정책,



▲ 민주자유당(가칭) 통합추진위원회 현판식(1990년 1월 24일).

8) 15인의 통합추진위원회는 민주정의당 박준병 사무총장, 이승윤 정책위의장, 정동성 총무, 박철언 정무제1장관, 김종권 사무처장 등 5인과 통일민주당 김동영 사무총장, 이기택 총무, 김동규 정책위의장, 황병태 총재특보, 김덕룡 의원 등 5인,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최각규 사무총장, 김용환 정책위의장, 김용채 총무, 신오철 인권위원장, 이택석부 총무 등 5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통일민주당의 경우에는 이후 이기택 총무가 3당 합당 불참과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이탈하여 박관용 의원으로 교체되었다.



▲ 3당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1990년 2월 9일).

당헌 및 창당선언문의 골격을 마련하고, 1월 30일 각 정당에서 7명씩 21명의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실무절차를 처리하였다.

이후 통일민주당이 1월 30일, 민주정의당이 2월 1일, 신민주공화당이 2월 5일 전당대회를 통해 수임기구를 선정하였다. 3당의 수임기구는 2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을 민주자유당으로 신설합당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3당은 정당 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당을 이루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보유하는 거대 여당의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3당 수임기구의 수임위원 111명 중 10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합당을 공식 결의한 뒤, 새 당헌(전문 7장 73조 부칙 8조)을 의결하는 한편 5대 강령 및 25개 기본정책으로 이루어진 정강정책, 창당선언문 및 대국민메시지도 채택하였다.

민주자유당은 강령과 기본정책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형평·복지·통일 등 개혁 추구를 당의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였다. 당헌 2조에 서도 “우리당은 민족의 자주·자존의 바탕 위에서 민주·번영·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정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이념을 구현하고 꾸준한 개혁을 통하여 국민복지와 사회정의를 신장하며(……)”라고 명시하여 당의 이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당헌 규정 중 “당을 대표하는 최초의 최고위원 3인은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에서 선출한다”라는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등 3당 총재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이날 선출된 3인의 공동 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한결같이 3당 합당이 ‘구국적 결단’임을 강조하는 한편 합당에 대한 평가는 후세 역사의 몫으로 미루면서도 “후세가 우리의 결단과 선택을 나라와 경제를 살린 위대한 정치혁명으로 평가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창당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민주·번영·통일의 새로운 민족사를 위한 중추적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민족민주세력을 총결집하여 ‘민주자유당’의 깃발을 올린다”라고 밝히며 창당을 선포하였다. 또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의 재편은 21세기를 향해 우리나라를 고도의 선진국가로 발전시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임을 내세우며 3당 합당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번영된 조국의 미래를 위해 새정치 시대를 열고자 하는 민주자유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 후 민주자유당은 1990년 2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합당(신설합당) 등록을 신청하였다. 등록 신청에서 민주자유당은 노태우·김영삼·김종필 3인을 대표자로, 최고위원대행에 박태준, 사무총장에 박준병, 원내총무에 김동영, 정책위의장에 김용환, 대변인에 박희태 의원을 지정하였다. 단 합당등록 신청 당시 간부와 합당에 따른 지구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정당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내용을 120일 이내에 보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2월 15일 공식 출범하였다.

민주자유당 정당등록 내용

구분	등록 내용				
대표자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 13-13 대원빌딩				
주요 간부	최고위원대행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위의장	대변인
	박태준	박준병	김동영	김용환	박희태

합당하는 3정당의 전당대회 및 수입기구

정당명	등록 연월일	대표자	지구당 수	합당 결의 전당대회				비고
				일자	장소	성원	권한위임(수입기구)	
민주정의당	81. 1. 17	노태우	224	90. 2. 1	한국종합전시장	9,072명 중 8,076명	중앙집행위원회(35명)	
통일민주당	87. 5. 6	김영삼	203	90. 1. 30	중앙당사	1,167명 중 881명	총재	총재 선임(재위임)
신민주공화당	87. 11. 11	김종필	182	90. 2. 5	세종문화회관 별관	1,795명 중 1,582명	당무회의	

[강 령]

- 제1항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폭넓은 정치참여를 통하여 진취적이며 화합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성숙한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 제2항 우리는 국민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형평과 균형을 통하여 모두가 잘 사는 복지경제를 실현한다.
- 제3항 우리는 도의를 바탕으로 서로 돕는 미덕을 함양하고, 정의와 양심이 지배하며 법과 질서가 존중되어 모두가 믿고 살 수 있는 공동체 사회를 이룩한다.
- 제4항 우리는 교육의 자율성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스스로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케 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민족문화를 창달한다.
- 제5항 우리는 국력을 배양하고 민주역량을 발휘하여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앞당기며 자주적인 외교세력과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주역이 된다.

[주요 정책]

- | | | |
|-----------------------|----------------------|----------------------|
| 제1장 책임정치 구현 | 제10장 해양개발 촉진 | 제19장 장애자 복지 증진 |
| 제2장 성숙한 정치문화 정착 | 제11장 국민복지 증진 | 제20장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 제3장 고도과학기술의 선진산업국가 건설 | 제12장 공존·공영의 노사관계 정착 | 제21장 교통난 해소 |
| 제4장 경제정의 실현 | 제13장 중소기업 육성·지원 | 제22장 주택문제 해결 |
| 제5장 건전한 사회 이룩 | 제14장 농어민 소득 증대 | 제23장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
| 제6장 교육개혁 실현 | 제15장 근로자의 중산층화 도모 | 제24장 국가안전보장체제 확립 |
| 제7장 민족문화 창달, 문화생활 향상 | 제16장 청소년이 꿈을 가지고 성장 | 제25장 한민족공동체 구성과 조국통일 |
| 제8장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제17장 여성권의 확충 | |
| 제9장 국토이용 극대화 | 제18장 노인복지의 사회적 기반 확충 |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나. 제1차 전당대회와 단일지도체제로의 변화

1990년 2월 15일 정당등록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한 민주자유당은 다음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등록과 함께 합당 후 첫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김동영 원내총무를 인준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민주자유당은 완전한 하나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및 조직정비에 착수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당규 확정, 당직자 인선, 지구당 조직책 선정과 개편대회 등 조직정비 과정과 당헌 및 당규 변경 과정을 거쳐 5월 9일 제1차 전당



▲ 민주자유당 현판식(1990년 2월 15일).

대회를 개최하고 합당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정당 내에 3개의 정파가 존재하는 신설정당의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기까지의 행로는 계속된 계파 간 갈등과 경쟁으로 인하여 순탄하지 못하였다.

당 조직 정비는 당의 중추조직인 중앙사무처와 정책위원회, 원내대책위원회 등 3개 기구의 당규를 확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5인 통합추진위원회는 정당등록 직후인 2월 17일 사무총장 아래에 4명의 사무부총장을 두고, 정책위원회 산하에는 4개의 정책조정실을, 그리고 원내대책기구에는 9명의 부총무를 두는 한편 원내기획실과 원내대책위원

회를 설치토록 하는 당규를 확정하였다.⁹⁾ 이에 따라 2월 19일 구 민주정의당 출신(이하 민정계) 5명, 구 통일민주당 출신(이하 민주계) 2명, 구 신민주공화당 출신(이하 공화계) 2명 등 원내부총무단 9명을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당무위원, 사무부총장, 정책조정실장, 사무처와 정책위원회 실·국장 등에 대한 인선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직배분을 둘러싼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정과 간지분다툼과 계파 내 경쟁으로 인하여 인선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월 27일에 이르러 중하위 당직자 인선을 확정·발표하고 1차 당직인선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인선된 중간 당직자는 국책연구원장 나옹배, 중앙당기위원장 옥만호, 재정위원장 노인환, 평화통일위원장 정정훈, 중앙정치교육원장 이도선, 기타 사무부총장, 기조실장, 정책조정실장 등 23명이었으며, 세 계파의 의석비율에 따라 5대 3대 2의 비율로 배분되었다.

당직 인선 이후 민주자유당은 3월 6일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하고 지구당 조직책 인선작업에 착수하였다. 조직강화특위는 박준병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정계 박철언 정무장관과 정동성 의원, 민주계 김덕룡·박관용 의원, 공화계 최각규·김문원 의원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지구당 조직책 인선 기준은 현역 의원과 지역구 의원 우선 원칙이 적용되었다. 3월 17일 1단계 지구당 개편대회를 시작으로 4월 23일 원외 45개 지구당 조직책을 확정·발표함으로써 총 205개의 지구당 조직책을 확정하였고, 5월 5일까지 지구당 개편대회를 마쳤다. 또한 5월 7일 시·도지부 개편대회를 마치고 전국적인 조직정비를 완료하였다.¹⁰⁾ 조직정비 결과 합당 전 민주정의당 224개, 통일민주당 203개, 신민주공화당 182개였던 지구당 가운데 단일 지구당으로 개편대회가 불필요하였던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구당을 포함하여 206개의 지구당이 개편·변경등록(존속)되었다. 그러나 18개 지구당은 조직책 미선정(17개)과 조직책 선임 후 개편대회 미개최(1개) 등으로 소멸되었다.

9) 확정된 당규는 3개의 정파에 대한 배분이 고려되었고, 그 결과 중앙당 조직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비대화되었다. 합당 전 최대 조직을 가진 민주정의당의 경우 중앙당 조직은 17개 실·국이었는데 비해 민주자유당의 31개 실·국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10) 계파별 배분 문제로 이견을 보였던 시·도지부장 인선은 절충 끝에 강원을 제외한 13개 지부를 민정계 7, 민주계 4, 공화계 2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민정계는 서울·충남·충북·전남·전북·대구·경북지부를, 민주계는 부산·경남·인천·광주지부를, 그리고 공화계는 대전·경기지부를 맡게 되었다. 강원지부의 경우에는 민정계와 민주계가 자파 몫을 강하게 주장하며 맞서 전당대회 이후 결정하는 것으로 미뤘다(동아일보, 1990년 5월 2일자).

한편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회의의 구성은 창당 후 2개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당무회의의 구성 전까지 그 기능은 1990년 2월 창당대회 결정에 따라 한시적 기구인 15인 통합추진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었다. 당무회의는 그 지위상 지도체제 변경문제 등 당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각 계파는 보다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당무회의의 위원 구성 비율과 시기 등과 관련하여 이견을 보였다. 민정계는 의석비율과 계파 세력에 근거하여 총 50석의 당무위원 중 당연직과 외부 영입 인사를 위한 5석을 제외한 45석 가운데 최소한 과반수에 해당하는 23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계는 민정계가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다른 계파가 종속적인 위치에 처하는 것을 의미하며 흡수합당 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합당 전 민정·민주·공화당 지구당 현황

구분	선거구수	1개 지구당	2개 지구당		3개 지구당	각 정당의 지구당 수			보원등록 신청현황 (1990. 6. 13)
		민정	민정·민주	민정·공화	민정·민주·공화	민정	민주	공화	
합계	224	7	35	14	168	224	203	182	206
서울	42	-	-	-	42	42	42	42	37
부산	15	-	1	-	14	15	15	14	10
대구	8	-	-	1	7	8	7	8	5
인천	7	-	-	-	7	7	7	7	6
광주	5	-	3	2	-	5	3	2	5
대전	4	-	-	-	4	4	4	4	3
경기	28	-	4	-	24	28	28	24	28
강원	14	-	2	1	11	14	13	12	14
충북	9	-	-	1	8	9	8	9	9
충남	14	-	1	1	12	14	13	13	14
전북	14	3	3	1	7	14	10	8	13
전남	18	4	6	5	3	18	9	8	15
경북	21	-	8	2	11	21	19	13	21
경남	22	-	6	-	16	22	22	16	20
제주	3	-	1	-	2	3	3	2	3

시·도지부 및 지구당 개편 현황

구분	개편 현황
시·도지부	서울(김중위), 부산(문정수), 인천(정정훈), 대구(유수호), 대전(이인규), 광주(문준식), 경기(김문원), 충북(정종택), 충남(김현욱), 전북(조남조), 전남(이도선), 경북(황병우), 경남(김봉조)
지 구 당	서울(37) 종로구(이중찬), 중구(장기홍), 용산구(서정화), 성동구갑(이세기), 성동구을(심의석), 성동구병(박용만), 동대문구갑(노승우), 동대문구을(김영규), 성북구갑(김정례), 성북구을(강성재), 도봉구갑(신오철), 노원구갑(백남치), 노원구을(김용재), 은평구갑(오유방), 은평구을(김재광), 서대문구갑(강성모), 서대문구을(안성혁), 마포구갑(박명환), 마포구을(강신욱), 양천구을(최후집), 강서구갑(이원중), 강서구을(남재희), 구로구갑(김기배), 구로구을(유기수), 영등포구갑(연재원), 영등포구을(나용배), 동작구갑(사청원), 관악구갑(이상현), 관악구을(김수현), 서초구갑(이종률), 서초구을(김덕룡), 강남구갑(황병태), 강남구을(이태섭), 송파구갑(김우석), 송파구을(김병태), 강동구갑(김동규), 강동구을(김중위)
	부산(10) 남구갑(허재홍), 남구을(정상규), 북구갑(문정수), 북구을(신상우), 금정구(김진재), 서구(김영삼), 부산진구갑(정재운), 부산진구을(김정수), 동래구갑(박관용), 동래구을(최형우)
	인천(6) 중구·동구(서정화), 남구갑(심정규), 남구을(이강희), 남동구(강우혁), 북구갑(정정훈), 서구(조영장)
	대구(8) 중구(유수호), 동구(박준규), 서구갑(문화갑), 서구을(최운지), 남구(이정무), 북구(김용태), 수성구(이치호), 달서구(김한규)
	광주(5) 동구(고귀남), 서구갑(이영일), 서구을(문준식), 북구(지대섭), 광산구(김용호)
	대전(3) 동구을(윤성환), 중구(김홍만), 서구(박춘순)
	경기(28) 수원시갑(김인영), 수원시을(이병희), 성남시갑(이대엽), 성남시을(오세웅), 의정부시(김문원), 안양시갑(이인제), 안양시을(신하철), 부천시중구(임우영), 부천시남구(최기선), 광명시(김병용), 송탄시·평택시(권달수), 동두천시·양주군(이덕호), 안산시·옹진군(장경우), 과천시·시흥시(황철수), 구리시(전용원), 남양주군(이성호), 여주군(정동성), 평택군(이재현), 화성군(박지원), 파주군(최무룡), 고양군(이택석), 광주군(유기준), 연천군·포천군(이한동), 가평군·양평군(김영선), 이천군(이영문), 용인군(이용희), 안성군(이해규), 김포군·강화군(정해남)
	강원(14) 춘천시(한승수), 원주시(함중환), 강릉시(최각규), 동해시(홍희표), 태백시(유승규), 명주군·양양군(김문기), 삼척시(김일동), 홍천군(이응선), 춘성군·양구군·인제군(이민섭), 횡성군·원성군(박경수), 영월군·평창군(심명보), 정선군(박우병), 속초시·고성군(최정식), 철원군·화천군(김재순)
	충북(9) 청주시갑(정종택), 청주시을(오용운), 청원군(신경식), 충주시·증원군(이종근), 제천시(이춘구), 제원군·단양군(안영기), 영동군·옥천군·보은군(박준병), 괴산군(김중호), 진천군·음성군(민태구)
	충남(14) 천안시(정일영), 공주시·군(윤재기), 대천시·보령군(김용환), 온양시·아산군(황명수), 금산군(유한열), 대덕군·연기군(이인규), 논산군(김제태), 부여군(김종필), 서천군(이금규), 청양군·홍성군(조부영), 예산군(박병선), 서산군(박태권), 당진군(김현욱), 천원군(김종식)
	전북(12) 전주시을(임방현), 전주시갑(태기표), 이리시(공천섭), 정주시·정읍군(윤규영), 남원시·군(양창식), 김제군(조철권), 완주군(신동욱), 임실군·순창군(최용안), 고창군(이호중), 부안군(유홍열), 옥구군(최지선), 익산군(조남조)
	전남(15) 목포시(최영철), 여수시(김선규), 순천시(김우경), 나주시·군(나창주), 여천시·군(황하택), 담양군·장성군(이상하), 구례군·승주군(유경현), 광양군(이도선), 고흥군(지연태), 보성군(이용석), 강진군·완도군(김식), 해남군·진도군(정사채), 영암군(이환의), 함평군·영광군(조기상), 신안군(김복수)
	경북(20) 포항시(이진우), 경주시(김일윤), 김천시·금릉군(박정수), 안동시(오경의), 구미시(박재홍), 영주시·영풍군(김진영), 영천시·군(정동윤), 상주시·군(김근수), 점촌시·문경군(신영국), 달성군·고령군(구자춘), 의성군(정창화), 안동군(류돈우), 청송군·영덕군(황병우), 영양군·봉화군(오한규), 영일군·울릉군(이상득), 월성군(황윤기), 경산군·청도군(이재연), 성주군·칠곡군(장영철), 예천군(유학성), 울진군(김중권)
	경남(20) 창원시(황낙주), 울산시중구(김태호), 울산시남구(심원규), 울산시동구(정몽준), 마산시갑(백찬기), 마산시을(강삼재), 진주시(조만후), 충무시·통영군·고성군(정순덕), 삼천포시·사천군(황성규), 진양군(안병규), 의령군·함안군(정동호), 창녕군(신재기), 밀양시·군(신상식), 양산군(김동주), 울주군(박진규), 거제군(김봉조), 남해군·하동군(박희태), 함양군·산청군(노인환), 거창군(김동영), 합천군(권해욱)
제주(3) 제주시(고세진), 북제주군(이기빈), 서귀포시·남제주군(강보성)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4.5 대 3.5대 3의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견 대립 속에 민주자유당은 창당 후 40여 일이 지난 3월 19일에서야 외부 인사 영입에 대비한 5석을 제외한 45석의 당무위원을 민정계 24명, 민주계 13명, 공화계 8명의 비율로 확정하였다. 또한 민주자유당은 당무위원 확정과 함께 채문식 박준규 윤길중 유학성 김정래 김명윤 권오태 최재구 김효영 등 9명의 상임고문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임시기구였던 15인 통합추진위원회는 해체되었다.

민주자유당 당무위원(1990. 3. 19)

구분	당연직(7)	원내(35)	원외(3)
당무위원	김영삼, 김종필, 박태준, 박준병, 김용환, 김동영, 박철언	김재광, 이병희, 이종근, 김용채, 김중기, 남재희, 이자현, 정상구, 정석모, 최형우, 김윤환, 김종호, 박관용, 박종률, 신상식, 심명보, 안병규, 오유방, 이종찬, 이춘구, 이치호, 이태섭, 이한동, 정순덕, 황명수, 김동규, 서정화, 지연태, 최운지, 구자춘, 김덕룡, 김인근, 나창주, 최각규, 황병태	김수환, 임방현, 강인섭

당무회의를 구성하고 지구당 조직정비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당내 마지막 논쟁점은 지도체제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개정 문제였다. 그러나 4월 3일 실시된 충북 진천군·음성군선거구 국회의원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민정계와 민주계의 당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민주자유당은 당헌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할 시점임에도 오히려 내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무진행은 차질을 빚었고, 4월 25일로 예정되었던 전당대회 또한 5월로 연기되었다.

민정계와 민주계의 갈등은 김영삼 최고위원과 박철언 정무1장관의 대립으로 표면화되었다. 김영삼 최고위원은 진천군·음성군 보궐선거 패배 후 박철언 장관의 독주와 노태우 대통령의 개혁의지 후퇴 등을 이유로 1990년 4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직자회의에 불참하는 등 민정계의 당 운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이를 계기로 민주계는 민정계에 대한 비판과 박철언 장관에 대한 사퇴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박철언 장관이 김영삼 최고위원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면서 당내 갈등은 심화되었다. 박철언 장관은 4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계의 ‘당 운영 전횡’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한편 김영삼 최고위원에 대한 비난발언을 쏟아내었다. 특히 “내가 반격

을 가할 경우 김영삼 최고위원의 정치생명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다”라는 위협성 발언으로 인하여 민주계가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또한 박철언 장관의 비난발언에 대해 김영삼 최고위원이 “당에 위 아래가 없고 순서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당 기강을 바로잡겠다”라며 정면으로 맞서면서 당 내분은 더욱 악화되었다.

사태가 심각한 상태로 치닫자 박철언 장관은 “의도적 공격이나 선전포고 등의 의미는 아니었다”며 해명하였고, 청와대와 당 중진들 또한 내분사태 수습을 위한 조정 작업에 나섰다. 결국 1990년 4월 13일 박철언 장관이 정무장관직을 자진 사퇴하고 김영삼·김종필 최고위원이 내분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합의하면서 일단락되었다. 박철언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정무장관은 이후 김윤환 의원으로 교체되었고, 조직강화 특위 위원은 김종권 의원으로 교체되었다.

당 내분이 외형적으로 진정되자 민주자유당은 연기되었던 전당대회 일정을 5월 9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당헌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당헌개정에 있어 가장 핵심문제는 지도체제였다. 민주자유당은 출범 당시 3인의 최고위원제를 총재 1인과 최고위원 5인(1인은 대표최고위원)의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쟁점은 총재·대표최고위원·최고위원 간 권한과 역할 설정, 그리고 대표최고위원 선출방법 등이었다. 그러나 지도체제 관련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 또한 소위 ‘대권각서설’¹¹⁾ 파문으로 인하여 또다시 당내 분규가 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대권각서설로 인한 내분사태는 김영삼 최고위원이 당무회의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민정계가 파문확산을 자제하면서 조기에 진정되었다.

이후 지도체제 문제는 1990년 4월 26일 김영삼·김종필 최고위원과 박태준 최고위원대행이 참여한 청와대 4자회담을 통해 결론지어졌다. 4자회담에서는 국정현안에 대한 7개

11) 대권각서설은 ‘1990년 1월 22일 3당합당을 발표한 청와대회담 이후 3당 총재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면 사실상 대권 후계자 위치인 당 총재직을 김영삼 최고위원이 맡기로 하고, 이를 보장하는 각서를 세 사람이 각각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영삼 최고위원의 당 총재 취임과 동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명예총재로 물러나고, 1992년까지는 노태우 대통령이 당 총재를 맡으며 김영삼은 대표최고위원, 김종필은 최고위원을 맡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합의사항과는 별도로 지도체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4개항을 명문화하였다. 4가지 합의 내용은 ①지도체제는 당을 대표하는 총재제의 단일지도체제로 하고 ②총재는 최고위원과 협의해 당무를 통할하며 ③최고위원은 5인 이내로 하여 이중 1인이 대표최고위원이 되며 ④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과 합의하여 당무집행을 총괄한다는 것이다.

이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헌개정실무소위를 통해 논의되었다. 그러나 총재 임기와 대표최고위원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계파 간 의견이 맞섰다. 특히 대표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청와대 4차회담에서 '전당대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총재지명이나 호선방식에 의해 선출'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¹²⁾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다. 대표최고위원 선출방법과 관련하여 민정·공화계는 '대통령지명제'를, 민주계는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출제'를 주장하였다. 한편 총재 임기에 있어서는 민주계가 2년을 주장하는 반면 민정계는 대통령이 총재일 경우 그 임기는 2년이 아닌 대통령 임기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민주자유당은 당헌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당대회 이틀 전까지 진통을 겪은 후 1990년 5월 7일 당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 민주자유당 제1차 전당대회(1990년 5월 9일).

12) 총재 지명이나 호선에 의한 선출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합의문 발표 후 이수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해졌다.

이처럼 계파 간 갈등과 내분으로 인하여 민주자유당은 합당 이후 3개월이 지난 5월 9일에서야 첫 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전당대회에서 민주자유당은 ‘의회와 내각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로 명문화하여 내각제 개헌의사를 밝힌 강령개정안을 채택하는 한편 공동대표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민주자유당 주요 간부 변경(1990. 5)

직책	기존	변경	비고
대표자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90. 5. 9 전당대회에서 선출
대표최고위원	-	김영삼	
최고위원	-	김종필 박태준	

민주자유당 개정 강령 주요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항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폭넓은 정치참여를 통하여 진취적이며 화합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성숙한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폭넓은 정치참여를 통하여 진취적이며 화합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의회와 내각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

민주자유당 1차·2차 개정 당헌 주요내용

제1차 개정(1990. 4. 25 제4차 당무회의)	제2차 개정(1990. 5. 7 제6차 당무회의)
가. 전당대회의 기능 중 상무위원 및 중앙위원의 선출권을 삭제하되, 중앙위원은 당무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함.	가. 당의 대표자를 3인의 최고위원에서 총재로 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함.
나. 최초 전당대회를 구성하는 당무회의의 선임대의원의 임기는 당해 전당대회 종료 시까지로 함.	나. 대표최고위원은 총재가 지명하되, 최고위원(5인 이내)을 대표하며, 최고위원과 합의하여 당무의 집행을 총괄함.
다. 최초 전당대회 대의원에 당의 고문, 지구당대회에서 선출된 상무위원, 지역구 당선 국회의원이 추천한 대의원을 추가함.	다. 최고위원대행직을 폐지함.
	라. 상무위원회의의 기능 중 총재 권위 시 전당대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총재의 선출권을 추가함.
	마. 당무회의의 구성 위원 중 중앙위원회 의장을 추가하고 당무회의의 기능 중 총재 후보자의 제청권을 추가함.
	바. 20개의 특별위원회에 문화예술위원회를 추가하여 21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또한 개정된 당헌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을 총재로 선출하고 김영삼 최고위원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한편 김종필 최고위원과 박태준 최고위원대행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총재 및 최고위원단은 표결 없이 구두호천과 지명, 그리고 박수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합당 3개월 만에 당의 골격을 완성하고,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하였다.

다. 당 내분과 계속된 당직개편

1990년 5월 9일 전당대회를 통해 단일지도체제를 구성하고 본격 출발한 민주자유당은 거대여당의 위력을 발휘하며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 7월 14일 쟁점법안에 대한 민주자유당의 국회 단독처리 파동과 이후 지방자치제 논쟁으로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민주자유당은 파행정국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10월 12일 첫 번째 당직개편을 실시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 논쟁이 진행 중이던 10월 10일 김용환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지방자치제특별위원회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직자들이 중구난방으로 지자체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한 이후 잠적하였다. 이를 계기로 10월 11일 박준병 사무총장과 김동영 원내총무가 일괄 사의를 표명하였고 민주자유당 지도부는 정국쇄신을 위한 당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당3역에 대한 인사는 10월 12일 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최고위원 3인의 청와대 회동에서 결정되었다. 당직개편 결과 김윤환 정무제1장관은 원내총무에, 최각규 의원은 정책위의장에, 김동영 원내총무는 정무제1장관에 임명되었다. 사의를 표명한 박준병 사무총장은 유임되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당직개편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불거진 내각제 합의 각서 파동으로 오히려 당내 갈등 상황에 직면하였다. 1990년 10월 25일 중앙일보는 노태우·김영삼·김종필 3인이 1990년 5월 6일자로 자필서명한 내각제 합의 각서를 보도하였고, 이를 계기로 각서유출 경위와 그 내용을 둘러싼 3계파 간 갈등은 노골화되었다. 민정계와 공화계는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 민주계에 대해 문서화한 정치적 합의

를 배신하였다고 공격하는 한편 연내에 논의하지 않기로 한 개헌문제를 공론화하려 는 움직임을 보였다. 반면 민주계에서는 각서 서명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국 민이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각서파동으로 인한 내분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10월 27일 박준병 사무총장은 각서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였고,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내각제 완전 포기 선언’과 ‘대표 권한 강화’ 등 요구사항을 내걸고 노태우 대통령과의 청와대 단 독면담을 요구하며 10월 29일부터 당무 거부에 돌입하였다. 이에 10월 30일 노태우 대통령은 “전 당원은 개헌 논의 유보 당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4개 항의 수습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반대 투쟁 의사를 천명하는 동시에 당 지도부가 확실한 개헌포 기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시 계속하여 당무 집행을 거부할 것임을 밝힌 후 고향인 경 남 마산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러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행보에 대해 김종필 최고 위원은 ‘3김동반퇴진론’과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며 공개적으로 비난하였고, 이를 계기로 당내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었다.

각서파동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이 분당위기로 치달을 만큼 심화되자 결국 노태우 대 통령이 수습에 나섰다. 노태우 대통령은 11월 2일 김윤환 원내총무를 마산으로 보내 사실 상의 내각제 개헌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당무복귀를 요청하였다. 이에 김영삼 대표최고위 원이 당권 일원화를 요구하자 11월 4일 다시 민주계 김동영 정무장관을 마산으로 보내 김 영삼 대표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수습안을 제시하는 한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 고위원의 회동을 합의하였다. 이후 11월 6일 청와대 단독회동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과 김 영삼 대표최고위원은 내각제 포기와 대표 중심의 당 결속, 당 기강 강화 및 개혁입법 추 진 등을 합의하였고,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11월 7일 당무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이 과 정에서 박준병 총장은 내각제 각서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1월 7일 사퇴하였고, 사무 총장은 정순덕 의원으로 교체되었다. 이로써 각서파동은 일단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민주자유당 내 계파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고,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이르는 과정에서 잠재된 갈등은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은 1월 국회의원들의 뇌물외유 파문으로 혼란스럽게 시작되었고, 2월 수서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여야는 연일 이를 둘러싼 논쟁을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자유당은 2월 18일 또 한번 당3역을 경질하는 고위당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사무총장은 김윤환 원내총무로 교체하였고, 원내총무에는 김종호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나용배 의원을 임명하면서 당3역을 새로이 정비하고 분위기를 쇄신에 나섰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1991년 3월 26일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991년 6월 20일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하였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승리로 종결되자 또다시 대통령후보 선출 등 당내문제가 제기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당내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7월 11일과 12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의 연이은 청와대 주례회동과 김윤환 사무총장의 당무보고 과정에서 정치일정,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도 문제, 차기 대통령후보 선출 문제에 대해 연말까지 일절 언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7월 26일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는 야당식 자유경선에 의해 선출될 것이며, 양김이 언젠가 내각제를 선택할지도 모른다”라는 최영철 대통령정치담당 특보의 소위 제주발언을 계기로 당내갈등은 다시 확산되었다. 당내갈등은 1991년 8월 9일 청와대 정례회동과 10일 최고위원 3인과 대통령의 오찬회동에서 정치일정에 대해 연말까지 논의를 중단할 것을 합의하면서 일단 진정되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자 정기국회 폐회를 즈음하여 민주계가 대통령후보 선출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민주계는 국회의원선거 전 대통령후보 확정을 요구하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후보 선출 문제를 둘러싼 당내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노태우 대통령은 조기 진화에 나섰다. 1992년 1월 9일 노태우 대통령은 최고위원 3인과 회동을 갖고 수습안을 논의한 후 다음날 연두기자회견을 열어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제14대국회의원선거를 치른 뒤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자유경선’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당내갈등 상황은 일단 진정되었다.

그러나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은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당내에는 선거결과를 둘러싼 책임공방으로 또 다시 계파 갈등이 표출되었다.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선거패배의 원인을 정부에 돌리는 한편 당책임부재론을 주장하였다. 반면 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은 사퇴의사를 밝히고 지도부공동책임론을 주장하며 맞섰다. 양측의 대립으로 내분이 증폭되자 노태우 대통령은 3월 27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 회동하여 당 내분 수습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당무 일체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에게 일임하는 한편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 지명을 위한 정기전당대회를 5월중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윤환 사무총장과 나웅배 정책위의장을 경질하고 각각 이춘구의원과 김용태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일부 고위당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하였다.

민주자유당 주요 간부 변경(1990.10~1992.3)

변경일자	직책	기존	변경	비고
1990. 10.	정책위의장	김용환	최각규	지자제 분리선거 논쟁
	원내총무	김동영	김윤환	
1990. 11.	사무총장	박준병	정순덕	내각제 각서 유출
1991. 2.	사무총장	정순덕	김윤환	수서비리 관련 당 쇄신
	정책위의장	최각규	나웅배	
	원내총무	김윤환	김중호	
1992. 3.	사무총장	김윤환	이춘구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패배
	정책위의장	나웅배	김용태	

라. 제14대 대통령선거와 김영삼 총재 체제의 성립

여당 사상 최초로 자유경선을 통한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5월 전당대회가 결정되자 1992년 3월 28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즉각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또한 1992년 4월 28일 '김영삼 민자당대통령후보 추대위원회'를 결성하여 김종필

최고위원을 명예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세 규합에 나섰다. 반면 뚜렷한 대권주자를 찾지 못한 민정계 인사들은 박태준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이종찬 이한동 심명보 박준병 박철언 등 6인의 중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통령후보 조정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민정계는 이종찬을 대통령후보로 단일화하였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김영삼과 이종찬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하며 본격적인 경선 경쟁에 돌입하였다.



▲ 민주자유당 전당대회(1992년 5월 19일).

그러나 여당 최초의 자유경선 도입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민주자유당은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내분의 상황을 맞았다. 경선과정에서 이종찬 후보는 전당대회를 불과 이틀 남겨둔 5월 17일 경선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선거부를 선언하였다. 이후 중앙정치교육원 매각 문제를 둘러싼 도덕성 시비와 소위 노태우 대통령의 '노심' 공방이 전개되면서 경선은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며 파행으로 치달았다. 민주자유당은 예정대로 5월 19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으나, 이종찬 후보 진영이 참석하지 않은 반쪽짜리 후보자선출대회로 진행되었다. 전당대회 후 민주자유당은 전당대회 후유증을 수습하고 대통령선거 준비를 위해 당체제를 정비하고자 5월 23일 당3역을 포함한 당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5·23 당직

개편에서는 김영구 의원이 사무총장에, 황인성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김용태 의원이 원내총무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경선 후유증으로 인해 민주자유당의 대통령선거 준비과정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특히 내분 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정계 인사들의 연이은 탈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야 하였다.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종



▲ 이종찬 의원이 민주자유당 탈당서를 작성하고 있다(1992년 8월 17일).

찬·장경우 의원이 1992년 8월 17일 처음으로 신당 창당을 주장하며 탈당을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민주자유당은 1992년 8월 28일 상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총재로 선출하고 김종필 최고위원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등 새로운 지도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안정을 찾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탈당과 함께 중립내각 구성을 발표하면서 민정계의 연쇄탈당을 촉발시켰다. 또한 1992년 8월 31일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관권개입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소위 ‘양심선언’을 발표하면서 부정선거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었고, 야당은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노 대통령은 1992년 9월 18일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통령선거 관리’를 표방하며 중립내각 구성을 발표하는 한편 1992년 10월 5일 공식적으로 민주자유당을 탈당하였다.

민주자유당 주요 간부 변경(1992. 5~8)

변경일자	직책	기존	변경	비고
92. 5.	사무총장	이춘구	김영구	5·23 당직개편
	정책위원장	김용태	황인성	
	원내총무	김중호	김용태	
92. 8.	총재	노태우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 결정은 민주자유당 내부적으로 큰 충격과 함께 당내 갈등을 심화시켰다. 우선 민정계를 대표하던 박태준 최고위원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총재가 광양제철소까지 방문하여 단독면담을 하고 박태준 최고위원의 요구 수용 의사를 전하며 잔류를 설득하는 노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태준 최고위원은 10월 9일 민주자유당 최고위원 사퇴를 발표하고 장기외유를 떠나버렸다.



▲ 김영삼 총재와 박태준 최고위원이 광양담판 결렬 후 각자 차에 오르고 있다(1992년 10월 10일).



▲ 원외 지구당위원장 11명이 민주자유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1992년 10월 13일).

이후 10월 11일과 12일 긴급중진대책회의와 당무위원 및 고문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김영삼 총재가 당의 단합을 호소하였으나 연쇄탈당을 막지는 못하였다. 10월 13일 채문식·윤길중 고문 등 원외지구당위원장 11명이 탈당선언 한 것을 시작으로, 10월 14일 박철언·유수호·김용환·이자현 의원이 김영삼 지도체제에 반발하여 탈당하였다. 11월 17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처남인 김복동 의원이 노태우 대통령의 만류와 납치과문을 거치면서도 결국 탈당하여 통일국민당에 입당하였고,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12월 15일에는 박구일 의원이 탈당하였다. 이처럼 민주자유당 내 연쇄탈당 파문은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이어져 3계파가 공존하는 정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개되던 대통령후보 경쟁과 당내갈등에도 불구하고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민정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 혼란스러웠던 민주자유당의 당내 상황도 대통령선거 승리로 인하여 명실상부한 김영삼 친권체제로 재정비되었다.

2. 민주당(1990. 6. 18~1991. 9. 16)

민주당은 1990년 초 3당합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당에 반발한 소수의 통일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1990년 6월 18일 창당한 정당이다. ‘꼬마 민주당’으로 불리던 민주당은 창당 이후 거대여당에 저항하기 위해 야권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독자적으로 1991년 2차례의 지방선거에 참여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민주당은 야권통합 요구 속에 지속적으로 통합협상을 벌인 결과 1991년 9월 16일 신민주연합당과 신설합당하여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면서 소멸하였다.

가. 창당준비위원회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세 총재가 합당에 합의하고 통합신당 창당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통일민주당 내 소장파 의원들은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를 3당 합당을 통해 파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야당을 팔아먹는 배신행위이며, 당원의 의견 수렴 없이 3당 총재 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는 밀실야합에 불과하다”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동시에 합당 동참을 거부하고, 3당 합당에 저항하는 세력을 규합하여 새로운 정당 창당을 모색하였다.

3당 합당에 반발한 구 통일민주당 소속 이기택·김정길·김광일·노무현·장석화 의원 등은 1990년 2월 3일 서울 홀리데이호텔에 모여 ‘민주세력 통합을 위한 신야당 추진모임’을 결성하고 실무 작업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여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이들은 무소속의 박찬중·이철 의원, 조순형·김현규·홍사덕 전 의원 등 3당 합당에 반대한 전·현직 의원들과 재야세력을 결집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2월 6일에는 이기택, 김현규, 박찬중, 조순형, 이철, 김정길, 김광일, 노무현, 장석화, 장기욱, 홍사덕이 ‘임시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의도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2월 7일에는 서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지지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야당 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2월 8일에는 임시집행위원회의 사무처 직제를 확정하고 홍사덕 전 의원을

임시집행위원장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민주세력의 대동단결, 당 운영 체질개선, 세대교체, 야권통합 노력 등 창당의 4대 원칙(창당발기 취지)을 결정하였다. 이어 2월 12일에는 이기택을 위원장으로 창당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명을 민주당(가칭)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민주당(가칭)창당발기준비위원회는 1990년 2월 27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900여 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발기인 대회에서 채택된 창당발기취지문에는 첫 머리에 “우리는 궤멸상태의 야당을 다시 세우고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민주세력의 결집을 위하여 민주당 창당을 발기한다”라고 창당의 목적을 밝혔다. 한편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기택 의원이 선출되었다. 발기인대회 이후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2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81인의 발기인 명단을 첨부하여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치고 공식적인 창당절차에 착수하였다.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내용

구분	신고 내용		
대표자	이기택	회계책임자	김정길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 14-27(대산빌딩 9층)		
발기인 명단	구 영, 김광일, 김규도, 김기우, 김노식, 김동훈, 김선홍, 김성범, 김성식, 김영백, 김유진, 김장근, 김재천, 김정강, 김정길, 김종원, 김찬영, 김창환, 김현규, 김형광, 김희완, 노경규, 노무현, 두병우, 명화섭, 목요상, 박기환, 박순기, 박영희, 박원규, 박왕식, 박준호, 박진중, 박희동, 성만현, 손광운, 손태인, 송천영, 심재필, 엄해명, 오문웅, 유재희, 윤창환, 이규택, 이근봉, 이기택, 이대일, 이동열, 이동일, 이병현, 이상두, 이상민, 이수호, 이인배, 이인하, 이종희, 이철, 이택영, 이필선, 이효영, 이희원, 임대윤, 임인철, 장기욱, 장문영, 장석화, 전대열, 정기호, 정동현, 정병원, 정석교, 정호근, 제정훈, 조순형, 최두환, 최병찬, 최수환, 최주영, 홍사덕, 홍성표, 황규선		
발기취지문 (요약)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민주세력의 결집 ○민주화를 통한 민족화합과 통일대업 성취	○야당통합 노력의 지속적 전개 ○당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토론의 체질화	

나. 정당등록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결성신고 이후 1990년 4월 3일 실시된 대구 서구갑선거구와 진천군·음성군선거구 2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천하여 진천·음성군 선거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무된 분위기 속에 창당을 준비해 가던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990년 6월 15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민주

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의 양당체제의 틀 속에서 제3당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창당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거대여당에 맞서기 위한 야권통합 노력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4월 12일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평화민주당 및 재야와 통합협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통합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창당 작업마저 지연되었다. 이에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야권통합 병행 원칙은 유지하되 '선창당 후통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4월 25일부터 50여 개의 지구당 조직책 명단을 발표하는 한편 충남 예산지구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구당 창당 작업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야권통합 협상은 병행하여 진행해 나갔다. 그러나 통합협상 내용에 있어 평화민주당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되었고, 그 결과 창당대회 전 통합협상은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결국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990년 6월 15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대의원 757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창당대회를 우선 개최하였다.



▲ 민주당 창당전당대회(1990년 6월 15일).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선언문을 통해 “헌정사를 오욕으로 얼룩지게 한 독재세력을 타파, 민주주의를 되찾아 국민의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경제정의와 사회윤리를 확립, 국민을 불안과 갈등 속에서 구하고 나아가 민족대통일의 위대한 성업을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을 창당한다. (……) 독재세력의 장기집권 구도에 불과한 집권당과 분열과 사당화로 취약한 야권 때문에 배신감과 정치혐오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장을 펼쳐나갈 것을 천명한다”라는 내용으로 창당 목적과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민직선제에 의한 대통령중심제의 유지발전과 정당추천제·주민직선제에 의한 지방자치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강정책을 채택하였다. 또한 본문 66조 부칙 9조로 구성된 당헌을 제정하는 한편 통일·인권·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된 강령과 기본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날 채택된 당헌에는 임기 2년의 총재가 부총재와 합의하여 당무를 통괄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또한 야권통합에 대비하여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정무회의로 지정하는 규정을 당헌의 부칙에 두어 야권통합의 경우 별도의 전당대회를 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한편 창당대회에서는 이날 확정된 당헌규정에 따라 경선을 통해 지도부를 선출하였다. 초대 총재 경선에는 이기택·박찬중·김광일 의원 등 3명이 입후보하였다. 경선 결과 이기택 후보가 투표자 수 754명 중 507표를 얻어 201표를 얻은 박찬중 후보와 41표를 얻은 김광일 후보를 누르고 초대 총재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3인의 부총재 선출과정에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었다. 총재 선출 이후 부총재 조정을 위한 지도부 회동에서 이기택 총재는 박찬중 의원과 김현규·조순형 전 의원을 추대하자고 주장하였으나 홍사덕 전 의원이 경선을 고집하여 절충에 실패하였다. 논란 속에 속개된 대회에서도 원칙론을 주장하는 대의원들이 계속하여 경선을 주장하면서 부총재선출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총재 낙선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부총재후보 자격을 얻은 박찬중·김광일 의원이 부총재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뒤이어 이철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무투표 추대 여부에 대한 기립 찬반표결 끝에 다수결로 김현규, 홍사덕 두 사람을 부총재로 추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머지 1명은 정무회의에서

추후 지명키로 결정하였다.¹³⁾

지도부 선출 후 이기택 위원장은 총재수락연설을 통해 민주자유당 영구집권 분쇄, 야권통합, 당내 민주주의 확립 등을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후보 공천이나 정치자금, 당의 정책결정 등에 있어서 놀라운 체질개선을 이룩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창당대회를 마친 민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990년 6월 18일 정당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공식 출범하였다.

민주당 정당등록 내용

구분	등록 내용			
대표자	이기택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 14-27 대산빌딩 9층			
주요간부	부총재	김현규·홍사덕	회계책임자	김형중
지구당 등록현황(50)				
서울(8)	성동구병 (강수림), 동대문구을 (김창환), 은평구을 (김유진), 강서구을 (최두환), 영등포구갑 (장석화), 서초구을 (안동수), 강남구을 (홍사덕), 강동구을 (홍성표)			
부산(6)	중구 (김광일), 영도구 (김정길), 동래구을 (노경규), 남구을 (손태인), 해운대구 (이기택), 사하구 (김영백),			
대구(3)	서구갑 (백승홍), 남구 (성만현), 수성구 (여동영)			
인천(1)	남구갑 (명화섭)			
대전(2)	서구 (이희원), 동구을 (송천영)			
경기(8)	수원시갑 (박왕식), 의정부시 (목요상), 부천시남구 (박규식), 송탄시·평택시 (강기천), 동두천시·양주군 (김형광), 화성군 (정동호), 파주군 (윤승중), 김포군·강화군 (김선홍)			
강원(6)	원주시 (원광호), 강릉시 (김필기), 동해시 (지일웅), 명주군·양양군 (최옥철), 춘성군·양구군·인제군 (박영석), 횡성군·원성군 (정봉철)			
충북(2)	청주시을 (정기호), 진천군·음성군 (허탁)			
충남(4)	운양시·안산군 (이진구), 논산군 (김형중), 청양군·홍성군 (홍문표), 예산군 (김성식)			
경북(4)	포항시 (박기환), 점촌시·문경군 (최주영), 예천군 (정대수), 울진군 (이동일)			
경남(6)	마산시갑 (김호일), 진주시 (김재천), 진해시·의창군 (정치두), 충무시·통영군·고성군 (제정훈), 창녕군 (구자호), 울주군 (권기술)			

정당등록신청에서 민주당은 대표자에 이기택 총재, 주요 간부에 홍사덕·김현규 부총재와 명화섭 전당대회 의장을, 그리고 회계책임자에 김형중을 각각 신고하였다. 당원은 법정당원 1,709명과 일반당원 4만 8,200명을 합해 총 4만 9,909명으로 신고하

13)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립 찬반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부총재 출마를 포기한 박찬중 의원이 나서서 김현규·홍사덕 전 의원의 추대에 하자가 없다며 이를 추진해 줄 것을 대의원들에게 호소하였고, 이기택 총재가 이에 동조하면서 가능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일보, 1990년 6월 16일자 3면).

였다. 또한 정당등록 주요 요건 중 하나인 지구당은 서울 8개, 경기 8개, 부산 6개 등 모두 50개를 신청하였으며,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개 지역의 지구당은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강 령】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우리 거래의 염원인 통일을 성취, 희망한 민족사를 창조
-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제도나 행위도 단호히 배격, 인간존엄 수호
- 어떤 형태의 독재 거부, 국민적 지지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한 민간 민주정부를 수립
- 자유경제체제 보장, 부의 공정한 분배 추진, 정의로운 경제질서 확립
-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 자주외교 추진

【기본정책】

- 통일 : 남북간의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 교차승인 유엔 동시기입, 군비축소 등을 추진 평화 정착, 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여 통일기반 구축
- 인권 :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 국민의 기본권 신장
- 정치 : 군사독재정권 종식, 민간 민주정부를 수립, 참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확립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중심제 유지·발전, 정당추천제와 주민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전면적 실시
- 경제 :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실명제와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토지의 투기수단화 봉쇄 토지소유의 편중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빈부격차의 심화 방지, 토지이용의 공익성 증대
- 사회 : 사회보장제도 확충,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문화적 혜택, 맑고 깨끗한 환경, 건강한 삶 노동관계법 전면 재정비, 노동3권 실질적 보장, 자율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정립 노동자 권익신장
- 교육·문화 : 입시가능 위주 교육 탈피, 전인교육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자치제를 실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립
- 외교·국방 : 대미·대일 편중외교를 지양, 전방위 외교 추진, 대외 자주외교 확립반반도 핵무기 개발·배치 금지, 핵전쟁으로 인한 민족절멸의 위협 제거

정당등록 신고를 완료한 민주당은 이후 6월 29일 이기택 총재와 김현규·홍사덕 부총재를 포함한 24명의 정무위원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어 7월 3일에는 정무회의를 열고 박찬중 의원과 조순형 전 의원을 부총재로 추가로 선출하여 총재단 구성을 마쳤다. 7월 4일에는 총재단 회의를 열어 사무총장에 이철 의원, 원내총무에 김정길 의원, 정책심의회 의장에 김광일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에 노무현 의원, 중앙정치연수원장에 허탁 의원, 대변인에 장석화 의원을 임명하는 한편 당기위원장에게 송천영 전 의원, 대외협력위원장에게 장기욱 전 의원, 홍보위원장에게 박왕식 전 의원을, 인권위원장에게 안동수 변호사를 각각 선임하였다. 이로써 민주당은 창당 이후 주요 당직인선을 완료하였다.

다. 평화민주당과의 합당 실패와 제2의 창당

민주당은 창당 전부터 보궐선거에 참여하여 선전하는 등 가능성을 보이며 출범하였다. 그러나 이후 담보상태를 유지하며 그 위세를 확장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에 맞설 야권통합을 추진하였으나 통합협상은 평화민주당과의 이견으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 7월 20일 평화민주당·민주당·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 등 세 통합주체 대표자 회의에서 최단 시일 내에 통합 수권정당을 결성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통합협상은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각 측에서 5인씩 15인의 협상대표단이 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마라톤 협상을 벌이는 등 통합을 위한 절충에 전력하였다.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은 ‘선 당지도체제 및 지구당 조직책의 지분비율 결정, 후통합’을 주장한 반면 평화민주당은 ‘선통합, 후조직정비’를 주장하면서 근본적인 협상방침의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의 중재역할에도 불구하고 야권통합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민주당은 당 내부에서도 통합방안을 놓고 지속적인 갈등을 노출하면서 8인 8색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였고, 통합실패 이후 이기택 총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90년 11월 16일 총재직을 사퇴하였다.

야권통합에 실패하자 민주당은 김현규 총재권한대행 체제를 출범시키고 재야인사를 영입하는 등 당세확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1991년 2월 이부영·고영구 등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던 ‘민주연합’과 통합하고,¹⁴⁾ 2월 3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제2창당을 내세운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은 당헌을 새롭게 개정하고, 정강정책을 변경하는 대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날 개정된 당헌 전문에서도 “(……) 전 민주세력의 대단합과 민주정부 수립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 ‘새정치와 개혁을 위한 제2창당’의 정신에 기초하여 당의 기본규범을 개정한다”라고 밝혀 제2창당의 의미를 명시하였다.

14)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는 김관석 상임대표가 통합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월 25일 사임한 뒤 박형규 목사의 권한대행체제로 유지되었으나, 결국 1990년 12월 18일 완전 해체되고 말았다. 이들 중 이부영 등 70여 명은 ‘민주연합’을 결성하여 정치활동을 전개하였다.



▲ 제2창당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1991년 2월 3일).

한편 민주당은 임시전당대회에서 야권통합 실패의 책임을 지고 2선으로 물러난 이기택 전 총재를 다시 총재로 추대하였다. 더불어 민주연합과의 합의에 따라 부총재단 6석 중 2석을 '민주연합'에 할당하여 이부영·고영구를 부총재로 추대하여 우선 선출하였다. 민주당 지분으로 할당된 3석은 연기명 투표 방법에 의해 경선을 통해 선출하였다. 경선에는 김현규·박찬종·조순형·홍사덕 등 4명이 입후보하였고, 총 대의원 796명 중 612명이 투표하여 414표를 얻은 김현규, 387표를 얻은 조순형, 320표를 얻은 박찬종 후보가 부총재로 선출되었다. 낙선한 홍사덕 후보는 250표를 얻는 데 그쳤다. 나머지 부총재 1석은 재야인사 영입을 위해 공식으로 남겨두었다. 또한 장기옥 전 문교부차관 등 20여 명의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제2창당에 걸맞은 변화를 추구하였다.

제2의 창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은 이기택 총재 측과 민주연합과의 공조 속에 이기택 총재를 지지하는 주류파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112개의 조직책 중 23개 지역이 '민주연합' 인사에게 배정되었고, 박찬종 부총재·홍사덕 전 부총재의 소위 비주류파는 조직책 인선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2의 창당과 조직 재정비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개정 당헌 주요내용 】

- 전문에 제2창당의 정신을 표현함
- 총재단, 총재단 회의를 당헌상 기구로 하고, 집단지도체제를 강화
- 부총재 수를 6인으로 확대하고, 다만 1인은 외부인사 영입을 위해 선출을 유보함
- 당무 관여권 있는 상임고문제 신설함
- 지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당무의 자문, 유권해석 등 직능을 부여함
- 재정위원회, 국제위원회, 평화통일위원회, 민생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를 당헌상 기구로 신설함
- 정무회의를 의결기관의 장으로 하고, 정무위원 상한선을 35인으로 하며 정책심의회를 집행기관의 장으로 하고, 명칭을 '정책위원회'로 하는 등 체계상 또는 조문순서를 수정함
- 부칙
 - 선출되는 총재단의 임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 개최될 정기전당대회까지로 함
 - 지지제후보 추천 등에 관하여는 당헌과 다른 당규 제정이 가능토록 함

민주당 주요 간부 변경(1990. 7~1991. 2)

변경일자	직책	기존	변경	비고
90. 7.	부총재	김현규, 홍사덕	김현규, 홍사덕, 박찬중, 조순형	추가 선출
	사무총장	-	이 철	신임
	원내총무	-	김정길	
	정책심의회 의장	-	김광일	
	대변인	-	장석화	
91. 2.	부총재	김현규, 홍사덕, 박찬중, 조순형	김현규, 고영구, 박찬중, 이부영, 조순형	91. 2. 3 전당대회 선출

※ 1990년 6월 정당등록 시 사무총장, 원내총무, 정책심의회 의장, 대변인은 신고하지 않았음.

라. 신민주연합당과의 신설합당

민주당은 제2의 창당을 계기로 1991년 3월과 6월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희망과는 달리 민주당은 3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참패하였다. 특히 정당공천이 허용된 6월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2.4%만 당선되는 극히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연이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또다시 야당통합의 필요성과 여론의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가올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부적으로도 야권통합 없이 민주자유당을 대적하는 것은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 그리고 재야세력들은 또다시 통합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야권통합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도체제 등 신민주연합당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당내 갈등으로 인하여 난항을 거듭하였다.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시·도의회의원선거 참패 직후부터 나타났다. 6월 25일 정무회의에서 박찬종·김현규 부총재, 홍사덕 정무위원, 장석화 대변인 등 비주류 중진들은 이기택 총재의 사퇴를 요구하며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기택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통합을 위해 당 지도부가 총재직을 포함한 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통합을 위해 먼저 총재직을 사퇴하는 것보다 당 전열을 정비한 뒤 통합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퇴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선 당체제 정비 후 통합추진’ 입장을 밝혀 입장차이를 보였다.

내부 갈등 속에 민주당은 7월 10일 범야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조순형(위원장), 김정길 김광일 노무현 장석화 이교성 장기욱 이석용 김성식 송천영 목효상 유인태 이호웅(위원)으로 ‘범민주세력 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야권통합에 착수하였다. 1991년 7월 31일에는 범민주세력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통해 신민주연합당 김대중 총재와 민주당 이기택 총재를 공동대표로 하는 최고위원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고 최고위원·정무위원·지구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은 신민주연합당·민주당·재야(당외인사)에 6 대 4 대 2로 배분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방안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신민주연합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통합방안, 특히 공동대표제를 거부하고 대신 상임공동대표제를 역제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총재는 8월 17일 지도체제 문제와 관련하여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의 선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민주연합당 내 정치발전연구회 그룹과 더불어 공동대표제 채택을 촉구하였고, 신민주연합당이 공동대표제 채택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통합협상은 좌절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통합에 실패할 경우 신민주연합당 내 정치발전연구회 그룹과 연합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신민주연합당 정치발전연구회 그룹이 탈당 문제와 관련하여

내분을 일으키면서 행동통일을 이루지 못해 이 계획마저도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참패, 통합여론의 압박, 그리고 내부적인 위기감 등이 야당통합의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였고, 민주당은 신민주연합당과의 통합을 위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민주당은 신민주연합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임공동대표제의 수용 문제에 대한 내부 논의를 재개하였고, 당내 민주연합 측을 중심으로 절충된 공동대표제를 구상하였다. 즉 김대중·이기택 총재를 공동대표로 하여 전반적인 당무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연장자인 김대중 총재를 당대표로 등록하도록 하지는 것이었다. 양당은 막후협상을 통하여 새롭게 제안된 공동대표제를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박찬종·김광일 의원과 일부 원외 지구당위원장이 통합정당 참여 거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적 반발이 있었다. 두 의원은 양당 총재가 통합을 선언하는 같은 시각 참여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신민·민주통합은 민주당의 창당이념인 체질개선과 세대교체를 포기하고 김대중 총재의 1인 지배체제에 민주당이 흡수통합 되는 것이며, 통합 과정에서의 절차와 방법이 비민주적이고 밀실야합식이어서 민주자유당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민주정당으로서의 수권능력 창출마저 기대할 수 없다”라고 비난하였다.

이후 민주당은 9월 9일 당내의 범민주세력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열고 통합에 대한 전권을 총재단과 공식 통합협상팀에 위임한 후 위원회를 해체하였다. 협상권한을 이어받은 실무협상팀이 9월 9일 지도체제 문제와 지분문제를 최종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9월 10일 양당 총재의 통합 선언이 이루어졌다. 통합선언 이후 민주당 당무회의는 양당의 통합을 결의하였으며, 당헌에 따라 통합수입기구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통합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다. 민주당 당헌 부칙 제6조는 합당에 관한 전당대회 권한을 정무회의에 위임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수입기관 구성을 위한 별도의 전당대회 소집은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통합을 위한 수입기관의 구성은 정무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기택, 김현규, 조순형, 박찬중, 고영구, 이부영, 명화섭, 목요상, 이 철, 김정길, 김광일, 노무현, 장석화, 허 탁, 이교성, 홍시덕, 장기욱, 김형광, 김성식, 송천영, 안동수, 최병욱, 임정남, 여익구, 유인태, 이강철, 이호용, 이석용, 장기욱, 차화준

이후 합당수입기관은 9월 16일 신민주연합당 수입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합당을 결의하였고, 당명을 민주당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민주당은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에 반발하여 1990년 통일민주당 잔류파를 중심으로 창당된 이후 1년 3개월의 소위 ‘꼬마민주당’ 활동을 끝내고 새로운 민주당으로 신설합당하였다.

3. (신설합당) 민주당(1991. 9. 16~1995. 12. 21)

민주당은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신민주연합당이 신설합당하여 창당된 정당이다. 기존의 민주당과 구별하기 위하여 소위 ‘통합민주당’으로 불리던 민주당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패배로 김대중 공동대표가 정계를 은퇴한 이후 심각한 당내 계파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분당사태를 맞으면서 제2야당으로 전락하였고, 1995년 12월 21일 반3김 지향의 시민운동단체들이 만든 개혁신당과 신설합당하여 통합민주당으로 재탄생할 때까지 4년 3개월여 동안 존속하였다.

가. 민주당 신설합당

1) 합당 배경

1991년도 실시된 두 번의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야당들이 연이어 참패를 당하자 야권통합에 대한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분열되어 있는 야당으

로서는 3당 합당을 통하여 거대여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에 맞서기에 그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또 다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였다. 이러한 우려와 통합에 대한 대외적 압박 속에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야권 통합을 이루지 않고 14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게 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두 정당의 통합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신민주연합당은 1991년 6월 24일 당무위원회와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야권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민주당은 7월 10일 정무회의에서 범야권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협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여론의 압력과 양당의 통합 필요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추진된 통합협상이었음에도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지분 문제와 지도체제 문제를 둘러싸고 두 정당 간 그리고 각 정당 내부세력 간 이견으로 인한 갈등은 협상을 교착상태로 몰고 갔다. 급기야 1991년 9월에 들어서는 신민주연합당 내 통합서명과 모임인 '정치발전연구회'¹⁵⁾ 회원들이 민주당과의 통합을 위해 탈당불사의 자세를 보이는 상황도 연출되었다.

이처럼 통합협상이 교착상태를 지속하며 난항을 보이자 신민주연합당 김대중 총재와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는 9월 9일 회동을 통해 지도체제와 지분 문제 등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모색하였다. 두 총재는 '당 대 당 통합, 공동대표제'라는 절충안을 통해 통합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1991년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양 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당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합의결과 당명은 민주당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도체제는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제로 하되 법적 등록은 김대중 총재로 하기로 절충하였다. 한편 양 정당에서 5명씩 10명의 최고위원을 두는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였고, 지분(조직비율)은 신민주연합당이 6, 민주당이 4로 하되 전체에서 2의 비중을 차지하는 재야 지분은 각자의 지분

15) 정치발전연구회는 신민주연합당 내 노승환·조윤형·정대철·박실·김덕규·이형배·김득수 의원과 원외지구당위원장 40여 명 등 당내 통합 서명파가 중심이 되어 야권통합과 당내 민주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1991년 7월 3일 발족하였다.



▲ 신민주연합당 김대중 총재와 민주당 이기택 총재가 합당을 선언한 후 인사하고 있다(1991년 9월 10일).

에서 영입하도록 하였다. 양 정당은 통합선언을 통해 ‘민주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시대적 소명, 범민주세력의 통합야당을 요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통합야당을 결성하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신민주연합당 · 민주당 합당 합의 주요 내용

- 당명 : 통합당의 당명은 ‘민주당’으로 한다.
- 지도체제 : 지도체제는 최고위원 동수의 집단지도체제로 하되 양당의 현 총재는 공동대표가 된다. 공동대표는 합의로 당무를 처리한다.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당을 대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최고위원수는 10명으로 한다.
- 당직배분 : 중앙당의 당직배분은 신민 6 대 민주 4 비율로 하고 재야는 각기 지분 내에서 영입한다.
- 조직책선정 : 당대당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양당 동수 대표에 의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한다. 조직책은 인물 분위로 선정한다. 단, 서울시의 조직책 선정은 필요할 시 신민 6 대 민주 4의 비율의 정신을 존중해서 선정한다.

2) 정당등록(신설합당)

통합야당 민주당(가칭)은 창당등록에 앞서 1991년 9월 11일 우선 7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원내교섭단체를 국회에 등록하였다. 그 후 닷새 뒤 9월 16일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임기구 위원 60명 중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당수임기구합동회의를 열어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신설합당할 것을 의결하였다. 통합야당

민주당은 합당선언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과학정당,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개혁적 정책을 실천하는 정책정당,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정당'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합당준비위원회에서 조정을 통해 마련한 강령 및 기본정책을 채택하고 당헌을 확정하였다. 정강정책에서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발전시킨다'로만 명시해 그동안 신민주연합당이 주장해 온 부통령제 조항은 삽입되지 않았다. 통일방안에 있어서는 신민주연합당이 주장해 온 '공화국연방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되 통일방안의 자구는 '상호화해와 공존의 민족통일 추진'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양당 간 합의에 따라 김대중과 이기택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하였고, 신민주연합당 소속 이우정, 박영록, 박영숙, 허경만과 민주당 소속 조순형, 김현규, 이부영, 목요상 등 총 8인의 최고위원을 선출하였다.

1991년 9월 16일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은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합당을 결의하고, 통합된 민주당 명의로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설합당 등록을 신청하였다. 정당등록 신청에서 통합야당 민주당은 김대중 대표최고위원을 대표자로 지정하였으며, 당원 59만 8,862명(법정당원 8,899명), 9개 항의 강령과 13개 분야 140개



▲ 신민주연합당·민주당 합당수임기구 합동회의(1991년 9월 16일).

항의 방대한 기본정책과 당헌 등을 신고하였다. 또한 주요 간부로 이기택 대표최고위원과 수임기관합동회의에서 선출된 8인의 최고위원 외에 사무총장으로 김원기 의원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등록신청 당시 합당에 따른 지구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12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기로 하고 정당등록신청을 완료하였다. 민주당의 공식출범으로 14대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당구도는 민주당 유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로 재편되었다.

민주당 정당등록 내용

구분		등록 내용					
대표자		김 대 중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 13-13 대원빌딩					
주요 간부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	
	이기택	이우정 박영록 박영숙 허경만 조순형 김현규 이부영 목요상				김원기	
합당하는 정당의 전당대회 및 수임기관							
정당명	등록 연월일	대표자	지구당 수	합당결의기관			
				일자	장소	성원상황	비고
신민주연합당	87. 11. 13	김대중	186	91. 9. 14	영등포구 여의동 63빌딩 국제회의장	2,691명 중 2,235명 참석	총재 ※ 총재가 30명 선임(재위임)
민주당	90. 6. 18	이기택	124	당헌부칙 제6조에 의하여 합당에 관한 전당대회 권한을 정무회의에 위임			

【 강 령 】

-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이끌어 나갈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합리적 국민정당.
- 참여민주주의, 정의로운 시장경제, 복지사회의 이념을 바탕으로 중산층, 중소기업인, 노동자, 농어민, 도시서민 기타 모든 소외 계층의 이익을 대변.
- 부단한 개혁과 실천으로 모든 민족구성원의 인간다운 삶 보장.

【 기본정책 】

-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대통령중심제 유지·발전
- 민족안보, 자주외교 태세의 확립
- 상호존중의 민족통일 추진, 정의 경제의 실현
-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사회,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

나. 계파 갈등과 당 체제 정비 난항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신설합당에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거대 여당에 맞설 수 있는 수권 야당 창당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통합야당으로 새롭게 출범한 민주당의 당면과제는 결국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 직전 두 야당과 재야세력이 아우러져 이뤄진 통합야당 민주당의 현실적 한계는 국회의원선거 준비과정에서부터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조직책 선정 과정에서부터 계파 간 갈등을 노출하였다. 통합된 정당으로서 양당이 가진 지구당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으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직책 선정은 곧 후보자 공천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조직책 선정 초반부터 구 신민주연합 출신(이하 신민계)과 구 민주당 출신(이하 민주계)은 선정시기와 지분배분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갈등양상을 보였다. 조직책 선정은 당무회의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당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직강화특위)에서 이루어졌는데,¹⁶⁾ 1차 회의부터 신민주계와 민주계는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였다. 신민계는 현역 위주로 1차 조직책을 선정하고 영입작업의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별로 인선을 매듭짓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민주계는 1차 선정은 최소화하고 영입이 완전히 끝난 이후 조직책을 일괄 발표하자는 상충되는 입장이었다.

지분비율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였다. 통합 당시 양 측은 ‘서울은 인물 본위로 하되 6대 4의 지분 비율을 존중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신민계는 인물 본위로 조직책을 선정하다 보면 지분비율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계는 지분비율에 근거해 인물 본위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맞섰다. 한편 현역 의원의 교체 문제도 갈등을 야기하였다. 신민계

16) 당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신민계와 민주계 각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김원기 사무총장이 맡았고, 신민계로는 유준상 정책위의장, 권노갑 의원, 이길재 대외협력위원장, 김말룡 당무위원이 참여하였고, 민주계로는 김정길 원내총무, 이철 정치연수원장, 노무현 대변인, 김성식·유인태 당무위원이 참여하였다.

는 현역 의원들을 일단 조직책으로 선정하고 이후 공천단계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계는 통합야당의 도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비리관련 의원을 조직책 선정 단계에서부터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파 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조직책 선정 갈등은 12월 초 당내 현역 의원 탈락자 명단이 적힌 괴문서가 유출되는 파동이 일면서 더욱 표면화되었고, 이후 조직분규의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갈등양상이 심화되자 결국 민주당은 '선 조직책인선, 후 공천'이라는 수순을 포기하고 공천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조직책 선정 발표 또한 1992년 1월로 연기하였다. 특히 통합 당시 신민주연합당은 등록 지구당 수가 186개, 민주당은 124개로 같은 지역에 중첩된 지구당 수가 106개나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공동대표로 있는 106개 지구당의 조직책을 새로 선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더구나 중첩된 지구당이 서울 31개, 경기 18개로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 수도권에 집중되어 조직책 선정과정은 난항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정당법 상 민주당은 신설합당 등록 후 120일 이내에 지구당·당지부 및 당 연락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신고해야 하였다. 특히 법정지구당수 224개의 4분의 1인 56개 이상의 지구당을 5개 시·도 이상에 분산하여 등록하는 중앙당 성립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완하여야 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합당 후 지구당 조직책 인선은 마무리하지 못하고 합당 전에 상호 중첩되지 않던 98개의 지구당 중 중앙당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57개 지구당의 소재지, 명칭, 대표자 그리고 시·도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1992년 1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합당 전 신민·민주당 지구당 현황

구분	신민당	민주당	신민·민주당(※변경등록 대상 지구당)
합계	80	18	106
서울	중구, 종랑구갑, 성북구를, 도봉구를, 서대문구를, 마포구갑, 영등포구를, 관악구를, 강남구갑, 송파구를		용산구, 성동구갑, 성동구를, 성동구병, 동대문구갑, 동대문구를, 종랑구를, 성북구갑, 도봉구갑, 노원구갑, 노원구를, 은평구갑, 은평구를, 서대문구갑, 마포구를, 양천구갑, 양천구를, 강서구갑, 강서구를, 구로구갑, 구로구를, 영등포구갑, 동작구갑, 동작구를, 관악구갑, 서초구갑, 서초구를, 강남구을, 송파구갑, 강동구갑, 강동구를
부산	남구갑, 중구	남구를, 북구갑, 금정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갑, 부산진구를, 동래구를, 북구를, 해운대구, 사하구
대구		서구를, 북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갑, 남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중구·동구, 남구갑, 남구를, 북구갑, 북구를, 서구
광주	동구, 서구갑, 서구를,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갑		동구를, 중구, 서구
경기	성남시갑, 성남시을, 과천시·시흥군, 남양주군, 연천군·포천군, 용인군, 안성군	여주군, 화성군, 가평군·양평군	수원시갑, 수원시을, 의정부시, 안양시갑, 안양시을, 부천시중구, 부천시남구, 광명시, 송탄시·평택시, 동두천시·양주군, 안산시·옹진군, 구리시, 평택군, 파주군, 고양군, 광주군, 이천군, 김포군·강화군
강원	철원군·화천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명주군·양양군, 삼척시·삼척군, 홍천군, 춘성군·양구군·인제군, 횡성군·원성군, 영월군·평창군, 정선군
충북	충주시·증원군, 괴산군, 제원군·단양군		청주시갑, 청주시을, 청원군,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진천군·음성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천원군	청양군·홍성군	천안시, 공주시·공주군, 온양시·아산군, 대덕군·연기군, 논산군, 예산군, 서산군, 당진군
전북	전주시갑, 전주시을, 군산시, 이리시, 정주시·정읍군, 남원시·남원군, 원주군,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임실군·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김제군, 옥구군, 익산군		
전남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나주군, 여천시·여천군, 담양군·장성군, 곡성군·화순군, 구례군·승주군, 광양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완도군, 해남군·진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영광군, 신안군		
경북	김천시·금릉군, 안동시, 영천시·영천군, 청송군·영덕군, 영일군·울릉군	점촌시·문경군, 의성군	포항시, 경주시, 영양군·봉화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	울산시동구, 밀양군, 양산군, 거제군, 남해군·하동군, 산청군·함양군, 거창군	울산시중구, 울산시남구, 마산시갑, 진해시·의창군, 진양군, 울주군	창원시, 마산시을, 진주시, 충무시·통영군·고성군, 김해시·김해군, 창원군
제주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		

지구당 개편 현황 (57)

구분	개편 현황
서울(7)	중구 (정대철), 중랑구갑 (이상수), 성북구를 (조윤형), 서대문구를 (임춘원), 마포구갑 (노승환), 영등포구를 (이용희), 송파구를 (김중완)
부산(4)	남구갑 (윤소년), 남구를 (손태인), 북구갑 (안경률), 금정구 (김재규)
대구(1)	서구를 (서중현)
광주(5)	동구 (신기하), 서구갑 (정상용), 서구를 (박중태), 북구 (정웅), 광산구 (조홍규)
대전(1)	동구갑 (송좌빈)
경기(8)	성남시수정구 (이윤수), 성남시중원구 · 분당구 (이찬구), 과천시 · 의왕시 (이희숙), 용인군 (나진우), 안성군 (오우영), 여주군 (이규택), 오산시 · 화성군 (정동호), 가평군 · 양평군 (이병대)
충북(1)	제천군 · 단양군 (박주진)
충남(3)	금산군 (박천중), 부여군 (박경신), 청양군 · 홍성군 (홍문표)
전북(13)	전주시덕진구 (오탄), 전주시원산구 (손주향), 군산시 (채영석), 이리시 (이협), 정주시 · 정읍군 (김원기), 원주군 (김태식), 무주군 · 진안군 · 정수군 (이상욱), 임실군 · 순창군 (홍영기), 고창군 (정균환), 부안군 (이희천), 김제시 · 군 (최락도), 옥구군 (김봉욱), 익산군 (김득수)
전남(3)	순천시 (허경만), 여천시 · 군 (신순범), 고흥군 (박상천)
경북(1)	점촌시 · 문경군 (최주영)
경남(9)	밀양시 · 군 (이태권), 장승포시 · 거제군 (윤병환), 남해군 · 하동군 (박승휴), 산청군 · 함양군 (정영모), 거창군 (이종천), 울산시남구 (서동우), 마산시합포구 (김호일), 진양군 (강갑중), 울산군 (권기술)
제주(1)	제주시 (김태화)

※ 개편 현황은 1992년 1월 15일 신설합당 보원등록시 신고한 지구당 및 지구당위원장임.

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천과 집단탈당

잠복된 갈등 속에 정당등록 보완신청을 마친 민주당은 조직강화특위를 열고 1992년 1월 15일부터 4박 5일 동안 합숙을 통해 본격적인 조직책 및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심사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합숙심사 과정에서도 영입인사 문제, 경합지역 처리문제 등과 관련하여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특히 경합지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는 논란 끝에 애초 예정되지 않았던 면담조사방식의 심사를 벌이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애초 1992년 1월 20일로 계획되었던 1차 공천자 발표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1월 말 일괄발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민주당은 1월 22일 당무회의를 통해 조직강화특위가 공천심사 기능을 겸하도록 조직강화특위를 공천심사위원회로 대체하는 한편 조직책을 공천자로 확정하기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2차 합숙심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였고, 1월 25일에는 계과별 의견을 재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합숙을 해제하였다. 그 결과 1월 29일 종료가 예정되었던 합숙심사는 30일까지 연장되었고, 결국 1월 31일 임시최고위원회에 합숙심사 결과를 보고한 이후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의 절충을 거친 뒤 2월 1일 1차 공천자 78명을 발표하였다. 공동대표, 특위위원장, 원내총무가 막판 절충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합의되지 못한 다수의 공천 지역은 발표가 연기되었고, 2월 6일에서야 제2차 공천자 29명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천자 발표 후 내부 반발이 심하게 일었다. 특히 공동대표가 이해찬 의원의 탈락을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김정길·이철·노무현·유인태 의원 등 소장파의 반발이 거세었다. 이들은 조직강화특위가 사실상 공천자로 확정해 올린 인선 내용을 두 대표가 뒤집은 것은 절차 및 조직강화특위의 존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반발하였고, 심지어 탈당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결국 민주당은 2월 7일 이해찬 의원을 다시 공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외에도 2월 10일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이형배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 주민들과 10일째 단식 중이던 이상욱 의원의 지역구인 무주 주민들이 공천탈락에 항의하여 민주당사 앞 도로에서 시위를 벌였다.

공천갈등은 조직책 선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전국구 후보자 공천과정에서도 당내·외의 심한 비판 속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였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공천심사 과정과 결과에 반발하여 탈당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이 다른 정당에 입당하거나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하여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더욱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1월 18일 이찬구 의원이 공천과정에 반발하여 탈당을 선언한 이후 조윤형 부의장을 비롯하여 손주항 정웅 박형오 이형배 조희철 등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들이 집단탈당 하였다. 또한 목요상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탈당 이후 통일국민당에 입당하여 지구당조직책으로 임명되었다. 이처럼 민주당은 당내 갈등과 반발 속에 어렵게 공천작업을 마무리하였고, 2월 8일에 이르러서야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공천 후유증을 어느 정도 수습한 2월 말에서야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민주당은 공천갈등과 후유증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전하였다. 합당 당시 신민주연합당 67석, 민주당 8석 등 통합야당 민주당은 총75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합당 시 의석에 비해 22석이 많은 97석을 획득하는 한편 집권여당 민주자유당의 과반의 석 획득도 저지하여 제1 야당의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 득표율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29.2%를 획득하여 전신인 평화민주당이 제13대국회의원선거에서 19.26%를 획득한 것과 비교할 때 통합야당의 효과를 어느 정도 발휘하였다. 특히 서울에서 민주자유당이 16석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25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둔 점도 의미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그 이외 지역에서는 광주와 전남·전북에 당선자가 집중되어 지역정당의 오명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김정길 원내총무, 노무현 대변인이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 당직을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1992년 4월 3일 당 대변인이 장석화 의원으로 교체되었으며, 원내총무는 김덕규 수석부총무가 대행하도록 하였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전한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갈등과 잡음을 뒤로 한 채 대통령선거의 청신호로 받아들였고, 향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당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라. 김대중 대표의 정계은퇴와 이기택 단일대표체제의 출범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전하며 가능성을 확인한 민주당은 같은 해 12월 실시되는 제14대 대통령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세우고 국회의원선거 직후 조직정비와 후보자 선출 등 대통령선거 준비를 시작하였다. 우선 민주당은 4월 25일 열린 임시당무회의를 열고 당 지도부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동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은 분리하여 자유경선을 통해 선출하되 대표최고위원선거는 단기명 투표방법, 최고위원선거는 4인 연기명 투표방법에

따르도록 한 것이 핵심이었다. 또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입후보 요건은 각각 대의원 100명 이상 300명 이하, 100명 이상 150명 이하로 조정하였다. 대통령후보의 입후보 요건은 재적 대의원 10분의1 이상 7분의1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이전 당헌에는 대통령후보가 되고자 할 경우 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다고만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정기전당대회는 1992년 5월 25일과 26일 양일 간 개최하기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선거를 7개월여 남겨둔 1992년 5월 25일과 26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대통령후보 지명 및 제1차 정기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완전자유경선으로 실시된 대통령후보 경선에는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가 출마하여 경쟁을 벌였다. 선거결과 60.2%를 획득한 김대중 후보가 제14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었다. 공동 대표최고위원선거에서는 김대중·이기택 후보가 최고 지도부에 의해 만장일치로 재선출되었다.



▲ 민주당 대통령후보지명 및 제1차 정기전당대회(1992년 5월 25일~26일).

한편 총 8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는 모두 1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고, 2,426명의 대의원 중 2,372명의 대의원이 참여하여 97.8%의 높은 투표

을을 보였다. 선거 결과 김상현(1,028표)·김영배(890표)·조세형(853표)·박영숙(794표)·김정길(773표)·정대철(729표)·김원기(700표)·이부영(636표) 후보가 당선되었다. 반면 장기욱·조순형·김현규·박영록·이우정·박일 후보는 탈락하였다. 그 외 전당대회 의장에 김말용 전 최고위원, 부의장에 김형중(논산)·윤완정(공주) 대의원을 선출하고, 중앙위원회 의장에 김형광(동두천·양주), 부의장에 안영배(정선)와 정영모(산청·함양)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후보 및 지도부 선출과 함께 강령과 당헌을 개정하였다. 개정 강령에서는 통일방안을 구체화하여 3단계 통일방안을 적시하였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1단계 1연합 2독립정부(공화국연합), 2단계 1연방 2지역 자치정부, 3단계 1민족 1국가 1정부로 명기하였다. 한편 당헌개정에 있어서는 당무회의에서 결정된 지도부 구성의 세부 규정이 핵심 내용을 이루었다. 한편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후 6월 2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주요당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6·2 당직개편에서는 사무총장에 한광옥 의원, 원내총무에 이철 의원, 정책위의장에 장재식 의원이 임명되었다. 또한 정치연수원장에는 유인태 의원, 인권위원장에는 강수림 의원, 대외협력위원장에는 이길재 의원, 통일국제위원장에는 손세일 의원, 당무기획실장에는 이해찬 의원이 새로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장석화 대변인과 장기욱 당기위원장, 유종근 홍보위원장은 유임되었다.

전당대회를 통해 김대중 대표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하는 한편 새로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 민주당은 정권교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대통령선거에 임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고, 김대중 대표는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오랫동안 야당의 대표적 지도자였던 김대중 대표의 정계은퇴 선언으로 민주당은 일대 충격에 빠졌다. 또한 창당이후 유지되어 오던 공동대표체제는 1993년 2월 15일 이기택 대표의 단일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민주당 주요 간부 변경(92. 4.~93. 2.)

변경일자	직책	기존	변경	비고
92. 4.	원내총무	김정길	김정길(김덕규)*	일부 당직개편
	정책위의장	유준상	유준상	
	대변인	노무현	노무현(장석화)*	
92. 5.	대표최고위원	김대중	김대중 · 이기택	정기전당대회 선출
	최고위원	이우정, 박영록, 박영숙, 허경만, 조순형, 김현규, 이부영, 목요상	김상현, 김영배, 김원기, 김정길, 박영숙, 정대철, 조세형, 이부영	
92. 6.	사무총장	김원기	한광옥	6·2 당직개편
	정책위의장	유준상	장재식	
	원내총무	김덕규	이철	
	대변인	장석화	유임	
93. 2.	대표최고위원	김대중 · 이기택	이기택	교체
	사무총장	한광옥	김덕규	

* 김정길 원내총무와 노무현 대변인은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낙선 후 사직하여 교체됨.

4. 통일국민당(1992. 2. 10~1994. 7. 8)

통일국민당은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계진출을 선언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중심이 되어 창당한 정당이다. 통일국민당은 창당 직후 급조된 신설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한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와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한편 기존정당에서 이탈한 주요 인사들을 영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세를 확장하였다. 이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며 제2야당의 입지를 구축하고 민주자유당 · 민주당의 양당구도를 3당구도로 변화시키는 등 일거에 정치과정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국민당은 국회의원선거 9개월 후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주영 대표의 정계은퇴, 당내 갈등과 소속 의원들의 연쇄탈당 등으로 인하여

창당 1년 만에 급속히 쇠퇴하여 1993년 초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당내 혼란을 겪은 후 1994년 7월 신정치개혁당과 신설합당 하여 신민당으로 거듭나면서 소멸되었다.

가. 창당준비위원회

1992년 새해 초 정주영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은 정치풍토 쇄신을 내세우며 정계 진출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정계 진출은 1991년 12월 2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인클럽에서 열린 경제4단체장 초청 송년회에서 이미 그 가능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날 정주영 전 명예회장은 “참신한 뜻을 가진 정치인이 나서면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신당 창당의 의지를 내비쳤다. 정주영 전 명예회장은 신당 창당 의사 반복 등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1992년 1월 3일과 4일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떠나 새로운 일을 하겠다. (……) 1월 말까지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오랫동안 나돌던 정치 참여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였다. 그가 내세운 창당의 명분은 부패정치 개혁과 새로운 정치 구현이었다.

정주영 전 명예회장은 정계 진출 선언 1주일 후인 1월 10일 통일국민당(가칭)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통일국민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는 발기인 152명 중 법정발기인 40명을 포함하여 총 126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진빌딩에서 개최되었다. 통일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시대가 절실히 요청하는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꺾기하였다. (……) 노동자·농어민·기업인 등 모든 국민에게 꿈을 갖게 해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다”라고 창당취지를 밝히는 한편 합리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공개주의, 책임주의, 통일성취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여 부정부패의 온상을 척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부패 금권정치를 개혁하며 국민경제의 질을 개선한다. 우리는 토지소유권은 인정하되

일련의 토지공개념 관계 법률을 합리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의 근원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세계개혁과 분배균형을 통하여 경제정의 실현한다”라고 밝혀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실시, 금권정치 척결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 통일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현판식(1992년 1월 10일).

한편 통일국민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에서는 구두호친과 박수를 통해 발기인 전원일치로 정주영 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발기인대회를 마친 통일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992년 1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마친 뒤 전국 57개 지역에서 지구당을 창당하는 한편 창당대회 개최를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등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통일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구분	신고 내용		
대표자	정주영	회계책임자	이용준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69 경진빌라 다 102		
발기인 명단	강달수, 강홍순, 김광일, 김규벽, 김달수, 김양식, 김용호, 김윤근, 남기일, 민병철, 박노경, 박동운, 박병순, 박병욱, 박재승, 박주성, 박한상, 송태희, 신창동, 양순직, 양준호, 윤만중, 윤하정, 이건영, 이내흔, 이상주, 이용준, 이종순, 이치업, 정몽준, 정순빈, 정을병, 정재경, 정주영, 지용우, 차병기, 채의석, 최만립, 한근수, 함병선		
발기취지문(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합리주의 원칙을 지킨다. ○우리는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킨다. ○우리는 공개주의를 철저히 지킨다. ○우리는 책임주의를 신봉한다. ○우리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성취한다. 		

나. 새한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와의 통합과 정당등록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이후 창당 작업은 현대그룹 관계자와 그동안 정치권에서 소외된 정치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정당등록의 구비조건인 법정지구당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조직책 신청자는 대부분 기존 정당에서 이탈한 정객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창당 과정 초기부터 현대당·재벌당 등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을 받아오던 통일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신속하게 조직을 구축하고 외세를 확장하여 정치세력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당세를 확장하고 현대당·재벌당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일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가 선택한 방법은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를 대표자로 하여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새한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와의 통합이었다.¹⁷⁾

창당과정에 있던 두 창당준비위원회는 정치세력화의 현실적 한계 앞에서 효과적인 원내 진출을 목표로 통합협상에 나서게 되었다. 특히 통일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정주영 위원장은 통합협상에 적극적이



▲ 통일국민당(가칭) 정주영 대표와 새한당(가칭) 김동길 대표가 통합선언 후 인사하고 있다(1992년 3월 24일).

였고, 그러한 통합노력으로 양 측은 1992년 2월 7일 통합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두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선언을 통해 “구국의 일념으로 정치를 한다는 목적과 취지가 같기 때문에 무조건 당을 합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¹⁸⁾ 통합정당의 당명은 ‘통일국민당’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대표최고위원은 정주영 위원장이 맡기로 합의하였다.

17)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가 주도하는 태평양시대위원회는 1992년 1월 2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197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새한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통일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와 통합하기 전인 2월 6일 신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 이태구)와의 통합을 선언하며 세를 확대하였다.

18) 통일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와 새한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한당(가칭) 창당에 동참하고 있던 정치개혁협의회 박찬중 의원은 양당 통합에 반발하여 독자적 창당 노선을 내세우며 이탈하였다.

새한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와의 통합 합의로 힘을 얻은 통일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1992년 2월 8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대의원 7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창당대회에서 통일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대표 최고위원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최고위원을 두는 집단지도체제를 골자로 하는 당헌을 채택하고, 채택된 당헌에 근거하여 최고위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최고위원 선출에서는 정주영 창당준비위원장을 대표최고위원에, 김광일·김동길 등 2명을 최고위원에 각각 선출하였고, 나머지 4명의 최고위원은 이후 구성될 당무회의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전당대회 의장에는 봉두완 전 의원을 선출하고, 양순직·박한상 부위원장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였다.

최고위원 선출 이후 통일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선언문을 통해 “우리 당은 서민층과 중간계층을 대변하는 중도개혁의 국민정당이다. (……) 우리는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을 일소하며 동시에 정당의 사당화·지역당화를 배제하면서 정직한 정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통일국민당을 창당한다”라는 창당취지를 밝혔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정 혁신, 상호보완적 남북 경제교류에 의한 신뢰 회



▲ 통일국민당 창당대회(1992년 2월 8일).

복과 통일 주도, 세계평화에의 기여,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유지·발전, 국민복지 및 경제정의 실현 등 8개 항의 강령을 채택하였다.

통일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2월 8일 창당대회를 마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 신청을 하였다. 등록 신청에서 통일국민당은 법정당원 2,021명을 포함하여 총 4만 716명의 당원을 신고하였고, 지구당은 법정지구당 구성 요건인 48개 보다 9개 많은 57개를 신고하였다. 한편 창당대회를 통해 채택된 8개 항의 강령 외에 8개 부문 62개 항의 기본정책과 본문 67조 및 부칙의 당헌을 신고하였다. 통일국민당은 2월 10일 법적 등록절차가 완료되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통일국민당 정당등록 내용

구 분	등록 내용			
대 표 자	정 주 영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49-1 서진빌딩			
주요간부	최고위원	전당대회 의장	사무총장(회계책임자)	대변인
	김광일 김동길	봉두원	이용준	이인원
지구당 등록 현황(57)				
서울(12)	종로구 (이내흔), 용산구 (봉두원), 성동구 (정진화), 도봉구 (송태희), 도봉구 (김충섭), 노원구 (윤만중), 노원구 (홍성우), 양천구 (박수복), 강서구 (유영), 강서구 (박한상), 구로구 (정순주), 서초구 (이충우)			
부산(5)	중구 (김광일), 영도구 (박순석), 동래구 (노경규), 남구 (이영근), 강서구 (기우탁)			
대구(1)	수성구 (이상희)			
인천(1)	서구 (이현재)			
광주(3)	서구 (최운용), 서구 (박행삼), 북구 (조영진)			
경기(2)	부천시남구 (김정웅), 동두천시·양주군 (김국환)			
강원(5)	원주시 (원광호), 춘성군·양구군·인제군 (홍종욱), 영월군·평창군 (신민선), 속초시·고성군 (김용현), 철원군·화천군 (이경희)			
충북(3)	청주시갑 (김진영), 제천시 (신영식), 진천군·음성군 (정우택)			
충남(3)	대천시·보령군 (박창규), 서천군 (김종갑), 서산시·서산군·태안군 (박성호)			
전북(5)	군산시 (신동안), 완주군 (송주인), 부안군 (김중수), 옥구군 (채의석), 익산군 (류재석)			
전남(6)	목포시 (안철), 순천시 (박강근), 곡성군·구례군 (김문일), 화순군 (양동희), 해남군·진도군 (최장현), 무안군 (정남식)			
경북(5)	점촌시·문경군 (최주영), 군위군·선산군 (권천문), 의성군 (김동호), 청송군·영덕군 (황위섭), 경주군 (황한수)			
경남(6)	울산시중구 (차화준), 울산시동구 (정몽준), 진해시·창원군 (정차두), 밀양시·군 (박성규), 창원군 (구자호), 울산군 (박진구)			

【강 령】

-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아 공정하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국정을 혁신
- 상호보완적 남북경제 교류에 의한 신뢰구축과 민족동질성 회복으로 통일을 주도
- UN헌장 정신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세계평화에 능동적으로 기여
-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발전시켜 건실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국민복지 향상으로 경제정의를 실현
- 법질서를 준수하고 근면과 정직을 존중하는 사회, 민생이 안정된 복지사회를 이룩
-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으로 시민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며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21세기에 대비
- 평등한 사회구조 정착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 모든 생명의 근원인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 향상

【기본정책】

- 단힌 정치에서 열린 정치로
- 정권유지를 위한 남북관계의 악용 반대
- 한민족 경제생활권 확보를 위한 외교 노력
- 정부 관여 최소화로 활력 있는 국민경제
- 서로 돕는 인간존중 사회
- 정직하고 진취적인 인간 형성
- 여성의 국가발전 참여
- 쾌적한 환경으로 행복한 삶 추구

다.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당 체제 정비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고 출범한 통일국민당은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의 양당 경쟁구도의 틈바구니 속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내걸고 전체 237개 선거구에 189명의 후보자를 입후보시키며 선거에 참여하였다. 선거 결과 통일국민당은 총 유효투표 수의 17.4%를 득표하여 지역구 24석, 전국구 7석 등 모두 31석을 얻는 예상 밖의 돌풍을 일으켰다. 이로써 무난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함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제3당의 입지를 마련하였다. 이는 창당한 지 한 달 남짓 된 정당이 얻은 결과로는 놀랄 만한 성과였으며, 정국운영에 있어서도 3당구도의 한 축을 차지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 이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된 통일국민당은 선거 직후인 1992년 3월 30일 강원도 삼척시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정남 당선자를 영입하여 원내총무로 내정하는 등 중앙당 조직과 인선을 재정비하였다. 당직 인선에서는 윤영탁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선임되었다. 또한 사무총장은 이용준에서 김효영으로, 대변인은 이인원에서 조순환으로 각각 교체되었다. 5월 14일에는 무소속 변정일 의원이 추가로 통일국민당에 입당하면서 원내의석수는 총 33석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공천



▲ 통일국민당 제14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당사 현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992년 3월 28일).

에서 탈락한 뒤 통일국민당에 입당하여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전국구위원으로 당선된 조윤형 의원은 제14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 탈당하여 의원직 사퇴 없이 민주당에 재입당하였다.¹⁹⁾ 이로써 통일국민당은 6월 13일 총 32명의 의원으로 제14대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공식적으로 등록하였다.

통일국민당 주요간부 변경(1992. 3~5)

변경일자	직 책	기 존	변 경	비 고
92. 3. 10	최고위원	-	조윤형	선임
92. 4. 9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	이용준	김효영	교체
	원내총무	-	김정남	선임
	정책위의장	-	윤영탁	선임
	대변인	이인원	조순환	교체

19) 조윤형 의원은 탈당 이유로 "기업 출신 측근 중심으로 당을 사당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남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에도 전국구의원직 사퇴 없이 민주당에 재입당함으로써 비난을 받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당적이동에 특별한 규제가 없었던 전국구의원제도에 대한 법리논쟁이 야기되었다.

라. 제14대 대통령선거 패배와 연쇄탈당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마무리하며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한 통일국민당은 3당 중 가장 먼저 대통령선거 준비에 나서는 등 1992년 12월 실시될 대통령선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통일국민당은 제14대 대통령선거를 7개월 남짓 남겨둔 1992년 5월 15일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대통령선거체제를 구축하였다.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임시전당대회는 대의원 1,796명 중 1,738명과 내빈 및 일반당원 1,500여 명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대통령후보는 정주영 대표최고위원이 13개 시·도 대의원 296명의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입후보하였으며, 기립표결을 통해 통일국민당 제14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었다. 한편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후보 선출과 함께 후보 특별보좌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당무위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한편 3개의 사무부총장직을 신설하는 당헌·당규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원내 3당 중 가장 먼저 대통령후보를 선출한 통일국민당은 서둘러 대통령선거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준비과정은 당내 불화설과 의원 탈당설로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민주자유당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타당 의원 영입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당세 확장에 나서면서 통일국민당은 인물과 조직을 지켜내기 위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였다. 9월 1일에는 김호일 의원이 통일국민당을 탈당하여 민주자유당에 입당하였고, 과거 민주자유당 당원이었으나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천 과정에서 낙천한 뒤 통일국민당에 입당한 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김찬우·박희부 의원도 각각 9월 22일과 10월 1일 탈당을 선언하고 11월 6일 민주자유당에 재입당하였다. 이로써 통일국민당은 원내 의석이 29석으로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김찬우 의원의 경우 금품살포에 따른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던 중 ‘지역구 및 개인사정’을 이유로 탈당하였고, 박희부 의원은 정주영 대표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탈당하였다. 박희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주영 대표가 당론을 수시로

뒤집는 독선을 행사하는가 하면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한 게 하나도 없어 탈당하게 되었다. (……) 앞으로 무소속으로 남아 올바른 민주화 투쟁에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의원의 탈당과 민주자유당 입당에 타격을 받은 통일국민당은 당내 갈등으로 대거 탈당한 민주자유당 인사 영입을 통해 그 후유증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민주자유당은 당 운영과 대통령후보 선출 과정에서 심각한 계파 간 갈등 양상을 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주자유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선 이종찬 의원을 비롯하여 박철언 등 민정계 소속 의원 및 인사들이 연이어 탈당하였다. 이후 통일국민당은 민주자유당 탈당 인사들에 대한 영입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11월 16일 이종찬 의원, 채문식 전 국회의장 등 민주자유당 탈당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발기한 새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와의 통합선언을 이끌어내었다. 그 결과 11월 17일에는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이자현·김용환·박철언·유수호 의원 등 4인과 민주당을 탈당한 한영수 의원이 입당한 데 이어 11월 21일에는 민주자유당 탈당 후 납치파동을 일으킨 김복동 의원이 입당하였다. 그러나 새한국당(가칭) 소속 민주자유당 탈당 의원들이 입당하는 과정에서 통일국민당 차화준 의원은 이에 반발하여 오히려 통일국민당을 탈당하였다. 11월 19일 탈당 기자회견에서 차화준 의원은 “국민당의 당 운영방식이 비민주적이며 무분별한 외부인사 영입 등으로 창당이념이 변질돼 탈당한다”라고 밝히고 이후 민주자유당에 입당하였다. 양당 간 혼란스러운 관계는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12월 4일 새한국당 이종찬 대표가 통일국민당과 합당을 선언하면서 일단락되었다. 탈당과 입당 등 파동을 겪으면서 통일국민당은 원내의석이 다시 34석으로 늘면서 당세가 확장되었다.

통일국민당 주요 간부 변경(1992.10~11)

변경일자	직책	기존	변경	비고
92.10.	최고위원	조윤희	조연하	선임(탈당)
	대변인	조순환	변정일	교체
92.11.	최고위원	-	양순직	선임(11. 8 제1차 중앙상무위)

그러나 통일국민당은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였고, 그 결과 향후 진로와 생존에 대한 내부 고민으로 혼란에 휘말렸다. 채문식 대표는 정계은퇴를 선언하였고, 전체 당직자가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일괄사표를 제출하면서 당무는 공백상태에 빠졌다. 이에 통일국민당은 12월 23일 정주영 대표 주재로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정주영 대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당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체제 내 개혁’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선거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새한국당의 부채 50억 원 청산설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등 당 생존을 위한 향후 진로 모색을 두고 불안정한 양상이 전개되었다.

1993년에도 통일국민당은 대통령선거 패배 후유증을 쉽게 해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당내 분란으로 인하여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연초에 새한국당과의 통합협상이 전개되었지만 새한국당이 요구한 당 대 당 통합을 통일국민당이 거절하면서 통합은 무산되었다. 1월 6일에는 김동길 최고위원이 정주영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당내 갈등과 위기가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현대중공업 비자금의 통일국민당 유입 및 대통령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정주영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고,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야기되면서 통일국민당의 내부 분열은 가속화되었다.

선거패배의 충격에 빠져 있던 통일국민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소속 의원들의 연속적인 탈당이였다. 혼란에 휘말려 있던 1993년 초 정주영 대표는 2월 8일 열린 창당 1주년 기념식 행사에 불참하였고, 다음날인 2월 9일 전격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당내 혼란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후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탈당을 선언함으로써 통일국민당은 해체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연쇄탈당은 이호정 의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호정 의원은 2월 8일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정주영 대표의 잇따른 실책성 돌발행동으로 통일국민당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이 악화되어 더 이상 당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당을 떠나기로 하였다”라는 성명과 함께 탈당하였다. 이후 2월 27일까지 모두 17명이 추가로 연쇄 탈당하였다.



▲ 전국 지구당위원장회의에서 당 와해 위기 수습을 위한 임시전당대회 조기개최를 결의했으나 참석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1993년 2월 11일).

특히 2월 20일에는 무려 7명이 집단탈당하면서 제14대 대통령선거 직전에 35명이던 소속 국회의원은 16명으로 감소하였고, 원내교섭단체 지위도 상실하게 되었다.

집단탈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념이나 추구하는 가치관이 각각 다른 이질적인 구성원들 간의 불화는 당의 결속은 물론 개인의 정치적 소신까지 성취할 수 없을 만큼 당을 분열시켰다. (……) 이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대의를 쫓고 개인의 정치적 소신을 성취하기 위해 탈당한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통일국민당은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1석을 획득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에 진출한 이래 11개월 만에 원내교섭단체 구성 자격 상실과 함께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다.

통일국민당 연쇄탈당 현황(1993. 2)

탈당일	탈당의원	잔여의석	탈당일	탈당의원	잔여의석
2. 8	이호정	34	2. 15	김범명	27
2. 9	송영진	33	2. 17	정몽준	26
2. 10	이학원 정태영	31	2. 18	정장현 최영한	24
2. 11	정주영	30	2. 20	김효영, 송광호, 김해석, 박제상, 김진영, 김두섭, 이건영	17
2. 13	차수명 원광호	28	2. 23	변정일	16

통일국민당은 연쇄탈당이 이어지던 2월 15일 최고위원·당직자연석회의를 열고 당 대표에 김동길 최고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였지만 계속된 연쇄 탈당 및 원내교섭단체 자격 상실 등으로 인한 당내 갈등과 당세 위축을 해결할 대안을 쉽게 찾지 못하였다.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과정에 있던 통일국민당은 당 해체 위기 속에 추가 탈당 저지와 당 조직 재건 등 힘든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을 맞아야 하였다.

5. 신정치개혁당(1992. 3. 4~1994. 7. 8)

신정치개혁당은 ‘정치개혁협의회’를 이끌던 박찬중 의원이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던 ‘태평양시대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정치세력 규합을 모색하며 새한당(가칭) 창당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김동길 교수 측이 통일국민당과 통합선언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1992년 3월 독자적으로 창당한 정당이다. 창당 직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4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는 등 독자생존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연이은 선거패배로 위기를 맞았다. 이후 자금난 등 현실적 한계에 봉착하여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1994년 7월 통일국민당과 신설합당하면서 소멸되었다.

가. 창당준비위원회

1991년 11월 19일 무소속 박찬중·김광일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야권세력 중 일부는 제 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정치개혁협의회는 향후 창당을 통해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또는 김영삼·김대중의 양김 구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모색하였다. 전·현직 정치인 70여 명이 참여한 정치개혁협의회는 발족 회견을 통해 “차기 총선을 맞아 새로운 인물들의 정계 진출을 적극 돕고 대안적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자 한다”는 정당결성의 뜻을 밝혔다. 또한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도 개혁적 정치세력의 대표자를 내세우겠다”라며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정치개혁협의회는 이후 창당 준비과정에서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던 또 다른 야권 그룹인 김동길 교수 중심의 ‘태평양시대위원회’와 연대하여 새한당(가칭) 창당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창당 과정에서 김동길 교수가 박찬중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주영을 중심으로 창당과정에 있던 통일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와의 통합을 추진하자 결국 정치개혁협의회는 새한당(가칭)에서 이탈하여 독자적 창당에 나섰다. 박찬중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독자노선의 이유를 “정개혁은 5공 세력에 수천억 원의 정치자금을 헌납하고 정경유착으로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과 일절 제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새한당(가칭)과 통일국민당(가칭) 통합에 대한 반발로 독자노선을 천명한 정치개혁협의회는 1992년 1월 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213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개혁협의회 (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열었다. 이어 이틀 뒤인 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장인 박찬중을 대표자로 하여 정치개혁협의회 (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완료하였다.

정치개혁협의회(가칭)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구분	신고 내용		
대표자	박찬중	회계책임자	이재환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회관		
발기인 명단	강광호, 강만희, 권정수, 김경기, 김경민, 김동주, 김일택, 남주현, 민민기, 박용태, 박종구, 박찬중, 성만현, 송차갑, 안성수, 이경표, 이기수, 이무역, 이신범, 이영희, 이재환, 임연택, 정용출, 주장선, 홍범식, 홍순오, 황병호		
발기취지문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족통일과 민주개혁으로 국민시대의 새로운 정치사 개막 ○농·어민 및 저소득계층 회복 ○금권·부정선거 추방, 선거정의 확립 ○정치의 도덕성 회복, 국민의 신뢰회복 ○민생경제 활성화, 인간다운 삶의 공동체 추구 		

나. 정당등록

발기인대회 이후 정치개혁협의회(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2월 7일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칭을 신정치개혁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창당활동에 들어

갔다. 전국 48개 지역에서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법정지구당 수를 확보하고 2월 18일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이어 2월 25일에는 서울 63빌딩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대표최고위원에 박찬중 의원을 선출하였다. 1,3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창당대회에서 신정치개혁당(가칭)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정책실현”의 창당정신과 “양김 구도 타파를 통한 새정치질서 구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본격 출범을 선언하였다. 또한 화합과 단결의 사회, 정직한 사회, 평등한 사회, 자유로운 사회, 복지사회, 안전한 사회, 발전적인 사회, 선진 사회, 능률적인 사회 건설 등 9개 사회목표 추진을 담은 강령과 9개 부문 65개 항의 기본정책 및 77조의 당헌을 채택하였다.



▲ 신정치개혁당 중앙당 창당대회(1992년 2월 25일).

창당대회 이후 신정치개혁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1992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박찬중, 최고위원 김봉옥·김득수·김기한·정용출 등 주요 간부와 48개 지구당 및 1,610명(법정당원 1,440명 포함)을 당원으로 정당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날 정당등록 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신정치개혁당은 3월 4일 공식 출범하였다.

신정치개혁당 정당등록 내용

구 분	등록 내용	
대 표 자	박 찬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 13-5 오성빌딩 9층	
주요 간부	최고위원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
	김기한 · 김득수 · 김봉욱 · 정용출	송현섭
지구당 등록 현황(48)		
서울(10)	서초구갑 (박찬중), 용산구 (김동주), 성동구병 (이기수), 동대문구갑 (송차갑), 도봉구병 (류양), 강남구을 (이신범), 마포구을 (이익균), 강서구갑 (진형욱), 강서구을 (이경표), 송파구를 (김정호)	
부산(3)	서구 (신순기), 영도구 (이영희), 사하구 (홍순오)	
대구(2)	남구 (성만현), 북구 (진원규)	
인천(2)	중구 · 동구 (민만기), 남동구 (조의춘)	
광주(1)	서구을 (최순자)	
대전(1)	중구 (장윤각)	
경기(6)	성남시중원구 · 분당구 (김기평), 부천시남구 (한상운), 광명시 (김은배), 동두천시 · 양주군 (윤근용), 하남시 · 광주군 (강광호), 안성군 (이무역)	
강원(2)	정선군 (정연송), 삼척시 · 군 (심재정)	
충북(6)	충주시 · 증원군 (김순태), 청주시갑 (이윤영), 청주시을 (류병두), 진천군 · 음성군 (이인수),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최옥중), 청원군 (이규택)	
충남(3)	천안시 (박종구), 공주시 · 군 (이종길), 논산군 (조주형)	
전북(1)	전주시덕진구 (홍범식)	
전남(3)	목포시 (김영필), 해남군 · 진도군 (곽봉근), 여천시 · 군 (신장호)	
경북(1)	청송군 · 영덕군 (김호연)	
경남(7)	창원시를 (강청응), 남해군 · 하동군 (김종채), 양산군 (김대오), 울산시남구 (박인), 밀양시 · 군 (박상웅), 진주시 (김기환), 충무시 · 통영군 · 고성군 (송기태)	

【 강 령 】

- 국민적 합의와 단결된 힘으로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개혁을 이룸
-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정책실현에 정당정신이 있음을 천명
-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반민주적 행위도 단호히 배격
- 모든 양심적 민주세력과 연합하여 민족통일의 성취와 세계평화에 이바지

【 기본정책 】

- 남북 간의 전 분야에 걸친 교류를 확대하여 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완수
-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구현, 정책대결을 통한 정당정치, 정치개혁을 통한 도덕정치 이룩
- 자주 · 실리외교를 추진하며 세계평화에 이바지
-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정의로고 풍요로운 경제사회 이룩
- 농 · 어업의 증흥을 통하여 정치 · 경제 · 사회적 안정을 도모
- 민생불안과 사회혼란을 방지
- 건전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
- 남녀평등의 사회구조를 정착
- 쾌적한 삶의 터전을 보장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다. 연이은 선거 부진과 당세 약화

신정치개혁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일을 불과 20일 남겨두고 공식 출범한 정당이다. 그러나 이미 선거를 겨냥하여 창당과 정치세력화를 준비해온 신정치개혁당은 11명의 후보를 공천하고 박찬중 대표를 앞세워 ‘깨끗한 정치’와 ‘무공해 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1992년 3월 24일 국회의원선거에 독자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 신정치개혁당은 서울 서초구갑선거구에 출마한 박찬중 대표 한사람만 당선되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유효득표에 있어서도 1.8%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1인 당선으로 인해 간신히 당의 명맥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선거 이후 신정치개혁당은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구당 위원장들이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박찬중 대표가 당체제 정비를 요구하는 지구당 위원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당의 조직과 운영체계가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집단 탈당하는 등 내부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6월 9일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박찬중 대표를 제14대 대통령후보로 선출하고 선거에 참여하였다. 선거전이 전개되면서 신정치개혁당의 박찬중 후보는 노상토론회를 하루 3~4차례 개최하는 등 강행군하면서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각종 여론조사에서



▲ 신정치개혁당 박찬중 대표위원이 서울역 앞에서 노상강연을 하고 있다(1992년 7월 30일).

차세대 지도자 가운데 상위에 꼽히기도 하였으나 당선에는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군 소정당의 후보로서 151만여 표(6.4%)를 획득하는 쾌거를 올려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둔 신정치개혁당은 1993년으로 접어들면서 4월에 실시될 부산시 동래구갑, 부산시 사하구, 광명시 등 3개 지역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선거 돌풍을 재현하고 원내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에 부심하였다. 2월 9일 당 운영 관리의 개선과 지구당 개편을 위해 정용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2월 19일에는 양창병 부대변인을 대구시 수성구를 지구당 조직책으로 임명하는 등 6개 지역에 대한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신정당발전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당 이념 및 정책개발소위, 조직강화소위, 당 운영 및 재정관리소위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5개실 11개국 9개 특위로 구성되어 있던 당 조직을 더욱 경량화하였다. 이처럼 신정치개혁당은 대통령선거 패배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전한 대통령선거 결과를 근거로 보궐선거를 통한 도약의 기대감을 가지고 김영삼 정부의 출범을 맞았다.

6. 새한국당(1992. 11. 26~1995. 3. 7)

새한국당은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이종찬 의원이 중심이 되어 제14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1992년 8월 17일 창당한 정당이다. 창당 이후 이종찬 대표는 새한국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어 입후보하였으나 대통령선거일 직전에 통일국민당과 통합에 합의한 뒤 합당을 선언하고 정주영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며 후보를 사퇴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패배 후에 통일국민당이 일방적으로 새한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을 거부함에 따라 통합은 무산되었다. 이후 두드러진 정당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채 2년여의 시간을 보내던 중 1995년 3월 민주당에 흡수(합당)되면서 소멸되었다.

가. 창당준비위원회

1992년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은 자유경선 원칙을 내세우며 제14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국면에 돌입하였다. 박태준 의원의 경선 포기로 민주자유당 경선은 김영삼과 이종찬의 대결로 압축되었다. 열세에 있던 이종찬후보는 박태준의 불출마 선언에 관한 외압설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모양만 갖춘 경선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선언하며 합동연설회와 TV토론 실시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삼 측이 당내 계파를 망라한 김영삼후보추대위원회를 발족하자 이종찬 의원은 대통령의 중립성 의문, 외압 등 불공정 경선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였다. 경선거부 등 강경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1992년 5월 19일 경선은 강행되었으며, 경선 결과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자 이종찬은 경선의 원인무효와 후보선출 불인정 등을 내세우며 당에 남아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경선불복 등 경선과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종찬에 대한 당내 징계문제와 이에 대한 반발로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대통령선거 출마를 겨냥한 이종찬 의원의 독자노선이 제기되었다. 1992년 6월 26일 이종찬 의원이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와 회동한 뒤 대통령선거 출마 포기와 당내 잔류를 선언하기도 하였으나 지분문제 등을 둘러싼 이종찬 의원의 탈당설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8월 17일 이종찬 의원은 “개혁의 새정치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주자유당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하였다”면서 민주자유당 탈당을 선언하고 독자행보에 나섰다.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무소속의 이종찬 의원은 1992년 9월 3일 서울 동숭동 우당기념관에서 ‘새정치 국민연합 결성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신당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결성대회에는 이종찬 의원을 포함한 김득수, 오유방, 윤석순, 이규정, 이영일, 이찬구, 조희철 등 전·현직 의원 16명과 지방의회의원 21명 및 각계 인사 715명이 참석하였다. 신당 추진세력은 박태준 전 민주자유당 최고위원을 대통령선거 후보로 영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박태준 전 최고위원은 불참을 선언하였다.



▲ 새한국당 창당발기인대회(1992년 10월 23일).

이후 이종찬 의원은 채문식 전 국회의장과 이자현·한영수·김용환·박철언·장경우·유수호 의원 등 신당 추진 원내의 인사 20여 명과 함께 10월 2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신당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신당 명칭을 ‘새한국당’ (가칭)으로 결정하였다. 신당 추진 세력은 애초 성균관대 내 유림회관에서 발기인대회를 치르려 하였으나 10월 22일 성균관대에 대회를 반대하는 대자보가 나붙고 참석 인원도 2배가량 늘어나는 바람에 급히 장소를 변경하여야 하였다. 결국 10월 23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에서 1,900여 명의 참관 아래 179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새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새한국당(가칭)의 창당을 발기하면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하여 “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의 갈등 해소, 활기찬 경제 성취, 건강사회 건설, 자주·평화·민주를 토대로 한 민족통일 완수”라는 발기취지를 주창하였다. 또한 채문식 전 국회의장을 대표자로 선출하였다. 새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1992년 10월 23일 채문식 전 국회의장을 대표자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였다.

새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구분	신고 내용		
대표자	채문식	회계책임자	장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49-1 대일빌딩 5층		
발기인 명단	강상원, 강성태, 고경수, 고민석, 고세진, 공진규, 권기팔, 김경택, 김규문, 김기선, 김기호, 김동진, 김락환, 김려생, 김명자, 김병열, 김복해, 김상민, 김상홍, 김상훈, 김영자, 김영진, 김영택, 김용환, 김원근, 김 일, 김종서, 김창현, 김춘식, 김현식, 김현욱, 김호수, 김홍식, 나대웅, 나석권, 나영택, 노만석, 류재원, 류중람, 류화남, 모세원, 문용식, 문용주, 문정식, 박두중, 박명선, 박복순, 박연수, 박영문, 박종태, 박종기, 박창두, 박천우, 박철언, 박충식, 박현진, 박호성, 박홍래, 박희자, 박희철, 백경원, 백석두, 백승완, 백학림, 변관수, 봉필수, 서성택, 성관실, 소진철, 손득후, 손연옥, 손주형, 송덕빈, 신나계, 신동순, 신호양, 심종섭, 안종열, 오교필, 오남수, 오유방, 오창욱, 오창환, 우창수, 위례룡, 유수호, 유호근, 윤길중, 윤선웅, 윤성자, 윤영한, 윤재기, 윤정식, 윤 철, 이강선, 이강용, 이건선, 이경식, 이근규, 이길연, 이 단, 이동진, 이두선, 이병대, 이상락, 이상욱, 이승세, 이양수, 이영일, 이영재, 이용보, 이용욱, 이용길, 이자현, 이재봉, 이재정, 이종덕, 이종찬, 이종철, 이종필, 이종환, 이준오, 이찬호, 이충교, 이형렬, 이형채, 임경민, 임경순, 임승길, 임영순, 장경우, 장세훈, 장영호, 장이출, 장치덕, 장홍백, 전성규, 전팔봉, 전희동, 정경심, 정구국, 정상덕, 정옥성, 정옥주, 정원섭, 정진관, 정하춘, 정희원, 조병수, 조석환, 조홍룡, 주익환, 지강자, 진성범, 진영환, 채문식, 채수원, 최광필, 최길현, 최동수, 최면섭, 최명실, 최병재, 최영은, 최용빈, 최중두, 최태봉, 한규창, 한기정, 한영수, 한정자, 한희석, 허 석, 허 응, 허위남, 홍대원, 홍석진, 황평우, 황한섭		
발기취지문(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 계층간 · 세대간의 갈등을 말끔히 해소한다. ○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활기찬 경제를 이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과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 자주 · 평화 · 민주를 토대로 민족통일을 이룩한다. 	

나. 정당등록

새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1992년 10월 2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 종로구 등 51개 지구당에 대한 1차 조직책을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창당작업을 추진해 나갔다. 그러다 11월부터 시작된 통일국민당과의 통합작업이 통일국민당의 당 대 당 통합 거부로 무산되면서 이종찬을 대통령후보로 결정하는 의견조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후 새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의 통합파들은 통합협상을 계속하여 결국 다수는 11월 14일 통일국민당과의 통합일정에 합의하였다. 이어 11월 16일에는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대표와 새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채문식 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국민당과 새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의 통합을 선언하였다. 이에 이종찬 · 장경우 의원 등 반대파는 11월 16일 새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회의실에서 125명의 발기인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통합선언과 관련하여 합당이 아닌 일부 세력의 개별입당으로 규정하는 한편 통일국민당에 입당한 채문식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불신임 처리하였다. 또한 윤길중 의원을 새로이 창당준비위원장

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새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11월 17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총 대의원 680명 중 5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치르고 이종찬 의원을 제14대 대통령선거 후보 겸 당 대표로 선출하였다. 이종찬 의원은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비로소 국민과 함께 새정치를 할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 정치가 요구하는 새 바람과 역동에 부응해 이 땅에 새 정치의 기적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새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창당선언문과 함께 집단지도체제와 내각제, 중·소선거구제 등을 골자로 한 당헌 및 정강정책을 채택하였다.

새한국당 정당등록 내용

구 분		등록 내용				
대 표 자		이 종 찬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49-1 대일빌딩 5층				
주요 간부	사무총장	중앙위의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회계책임자	
	장경우	김현욱	오유방	이영일	장경우	
지구당 등록 현황(51)						
서울(13)	종로구(이종찬), 용산구(최용번), 동대문구갑(이근규), 성북구갑(유인현), 성북구를(목정량), 노원구를(홍성우), 은평구를(김득수), 마포구를(신효영), 강서구갑(이상락), 구로구병(장영호), 영등포구를(송현섭), 송파구갑(황한섭), 송파구를(안남영)					
부산(6)	동구(김창현), 동래구갑(김상훈), 동래구를(전한도), 북구를(최윤기), 사하구(조승남), 금정구(이병태)					
대구(1)	북구(진원규)					
인천(2)	남구갑(박희철), 서구(백석두)					
광주(3)	동구(박오주), 서구갑(이영일), 북구를(임경순)					
경기(5)	부천시중구를(변관수), 안산시·옹진군(장경우), 고양시(허석), 연천군·포천군(김형희), 가평군·양평군(이병대)					
강원(3)	삼척시·군(조복형), 정선군(엄창호), 속초시·고성군(조영두)					
충북(4)	청주시(김춘식), 충주시·증원군(유재홍),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동진), 괴산군(고경수)					
충남(1)	당진군(김현욱)					
전북(3)	고창군(임동갑), 부안군(이재환), 옥구군(김봉욱)					
전남(3)	담양군·장성군(김사석), 화순군(안종열), 영암군(황규돈)					
경북(2)	안동군(신영규), 성주군·칠곡군(박정영)					
경남(4)	마산사회원구(이상기), 진주시(강일만), 충무시·고성군·통영군(제정훈), 남해군·하동군(홍재표)					
제주(1)	제주시(고세진)					

【강 령】

- 우리는 통합과 개혁의 새정치를 이룩한다.
- 우리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달성한다.
- 우리는 진취적인 새한국인을 창조하는 교육 및 문화정책을 추진한다.
- 우리는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
- 우리는 인간다운 삶, 서로 믿는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 우리는 통일조국과 더불어 잘사는 민족공동체를 이룩한다.
- 우리는 민족자강과 인류공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을 펼친다.

【기본정책】

- | | |
|----------------------|-------------------------|
| ○통합과 개혁의 새정치 | ○인간다운 삶, 서로 믿는 삶 |
|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 | ○통일조국, 함께 잘사는 민족공동체 |
| ○새한국을 창조하는 교육 · 문화정책 | ○민족자강과 인류공영을 위한 외교 · 국방 |
|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 |

창당대회를 마친 새한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1992년 11월 19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51개 지구당과 1만 9,049명의 당원(법정당원 1,923명 포함) 등 창당 요건을 갖추어 정당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11월 26일 법적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공식 출범하였다.

다. 통일국민당과의 통합 무산과 당세 약화

공식 출범한 새한국당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통령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통일국민당과의 통합원칙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1992년 12월 12일 이종찬 대표가 대통령후보를 사퇴하는 동시에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종찬 의원은 잦은 의사결정 번복으로 참신한 이미지에 큰 손상을 받았다.

제14대 대통령선거 후 새한국당은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의 대통령선거 패배와 일방적 통합 파기 선언으로 곤경에 처하였다.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1993년 1월 초 통일국민당 정주영 대표는 기자회견담회를 통해 “당시 통합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이 의원도 이미 백의중군 의사를 밝힌 만큼 새한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절차를 밟을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개별입당한다면 이를 받아주겠다” 고 새한국당이 요구하는 당 대 당 통합을 거부하였다. 이에 새한국당은

“정 대표가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이 의원의 개별입당만을 고집한다면 굳이 통합절차를 밟지 않겠다. 새한국당은 이종찬 의원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진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맞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양김시대’의 청산을 내세우며 통합을 선언하였던 양당은 통합선언 20여 일 만에 통합 합의를 무산시키고 원상대로 돌아갔다.

두 정당 간 통합 무산으로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주영 대표가 통합선언 당시 새한국당의 부채 청산을 위해 50억 원을 제공하였다고 밝히면서 대립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새한국당은 50억 원 제공설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처하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 후 새한국당은 통합 무산과 50억 원 수수설 시비 등 어려움 속에서 독자생존의 새로운 진로 모색에 고심해야 하였다.

7. 기타정당

가. 공명민주당(1990. 8. 3~1992. 3. 30)

1) 창당준비위원회

공명민주당은 1990년 1월 29일 23명의 발기인이 공명민주당(가칭) 창당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고태만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창당 과정에 돌입하였다. 공명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취지문을 통해 “민생 안정에 힘써 국민생활에 직결하는 정경의 제도적 확립으로 경제회복을 기하고자 한다. 구국정당으로서 참된 복지국가 건설의 밑알이 되어 정책정당이 되고자 창당하는 바이다”라고 창당의 취지를 밝혔다. 발기인대회를 마친 공명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1990년 2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태만을 대표로 하여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였다.

공명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구분	신고 내용		
대표자	고태만	회계책임자	김종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0·2 삼영빌딩 905		
발기인 명단	고태만, 김진옥, 하옥란, 이태운, 김명주, 현응수, 윤명임, 김현숙, 김문섭, 김종표, 장수억, 김영남, 최호형, 김종태, 김종성, 이갑택, 한영호, 김화자, 이영택, 고태준, 장주원, 김백숙, 전승룡		
발기취지문(요약)	경제 부흥을 기하고 상공업 및 농정 쇄신, 균형 있는 생활문화 향상 등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선구적인 정책정당이 되고자 함.		

2) 정당등록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창당 작업을 추진해 가던 공명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1990년 7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대의원 116명 중 115명이 참석한 중앙당 창당대회에서는 ‘진보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와 풍요한 경제적 민주주의, 조국의 평화적 남북통일 쟁취’ 등을 기본 정책으로 하는 창당취지문과 함께 ‘국토통일과 민족통일’을 기본 목표로 한 정강·정책, 본문 58조, 부칙 5조의 당헌 등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인 고태만을 총재로 선출하는 한편 고순복·곽형환 등 2명을 부총재로 선출하였다. 고태만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의 근본적이며 진보적인 개선책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치안 유지의 근본 대책을 강구하면서 국민민복에 주안점을 두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 건설을 위해 신명을 바쳐 나갈 것”임을 주장하였다.

창당대회를 마친 공명민주당(가칭)은 이틀 뒤인 7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신청을 하고 8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을 수리하면서 공식 출범하였다. 공명민주당이 등록한 지구당은 모두 46개였으며, 당원은 법정당원 1,393명을 포함하여 모두 3,255명이었다.

공명민주당 정당등록 내용

구 분		등록 내용		
대 표 자		고 태 만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0-2 삼영빌딩 905호		
주요 간부	부총재	대변인	회계책임자	
	고순복 광형환	고순복	이채숙	
지구당 등록 현황(46)				
서울(11)	종로구 (고영준), 중구 (김명주), 서대문구갑 (구홍서), 마포구갑 (김문섭), 마포구를 (고태만), 양천구갑 (고순복), 성북구갑 (염재섭), 강동구를 (성경환), 강서구를 (임현택), 관악구를 (박종승), 동작구갑 (김진욱)			
부산(10)	남구갑 (박성룡), 남구를 (최수대), 영도구 (송정두), 서구 (김정수), 금정구 (양태식), 부산진구를 (김병인), 동구 (이판대), 동래구갑 (김해곤), 동래구를 (주우식), 북구갑 (김성한)			
대구(1)	달서구 (나용택)			
대전(1)	동구갑 (문금산)			
경기(6)	수원시를 (이응철), 성남시갑 (고석봉), 성남시를 (문석영), 구리시 (노병열), 부천시남구 (김성기), 부천시중구 (정흥권)			
충남(2)	대전시 · 보령군 (복영윤), 논산군 (김관수)			
전남(1)	해남군 · 진도군 (곽연면)			
경북(1)	포항시 (김학선)			
경남(10)	마산시갑 (정삼식), 마산시를 (노해택), 창원시 (김교하), 밀양군 (남권우), 의령군 · 함안군 (조재식), 김해시 · 군 (송화래), 진주시 (서종열), 창원군 (김종철), 거제군 (김성정), 충무시 · 통영군 · 고성군 (박우진)			
제주(3)	제주시 (안병기), 북제주군 (강양홍), 서귀포시 · 남제주군 (정동국)			

【 강령 및 기본정책 】

- 진보적,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민족 화합과 번영 및 평화통일 운동 전개
- 풍요한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선진 산업사회 성장 촉구
- 균형 있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위한 도시사회와 농촌사회의 격차를 좁히는 지방화시대 개막과 도덕적 가치관 정립
- 사해동포애에 입각한 국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자우외교 및 신기원의 교육문화 창달
- 남과 북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 체제 확립

3) 변화와 소멸

1990년 8월 출범한 공명민주당의 일차적 목표는 1991년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두는 것이었다. 군소정당이라는 한계 속에 1991년 광역의회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선거에 참여한 공명민주당은 866곳의 선거구 중 3곳에 후보자를 공천하였고, 1,954표라는 미미한 득표로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극도로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12명의 후보자를 공천하는 등 꾸준히 정당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출마한 12명의 후보가 전원 낙선하였다. 또한 득표율도 총 유효투표수의 0.1%에 불과하였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함에 따라 공명민주당은 창당된 지 불과 1년 7개월 만에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1992년 3월 30일 등록이 취소되어 소멸하였다.

공명민주당 주요 간부 변경(1990. 8~1991. 5)

변경일자	직책	기존	변경	비고
1990. 8	대표자	고태만	-	정당등록
	부총재	고순복 곽형환	-	
	대변인	고순복	-	
	회계책임자	이재숙	-	
1990.12	수석부총재	-	고순복	선임
1991. 3	회계책임자	이재숙	복영윤	교체
1991. 4	대변인	고순복	김성옥	교체
1991. 5	수석부총재	고순복	곽형환	교체
	부총재	-	고순복	
1991. 5	사무총장	-	노해택	선임

나. 민중당(1990. 11. 19~1992. 3. 30)

1) 창당준비위원회

1989년 11월 10일 재야 세력은 진보정당 건설을 위하여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약칭 진보정당준비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모임이 이후 민중당의 모태가

되었다. 진보정당준비모임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취소된 민중의당 잔류 인사와 한겨레민주당이 민중정당 건설을 위해 1988년 9월에 결성한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연합’ 그리고 1989년 10월 4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을 탈퇴한 이우재, 장기표, 조춘구 등 핵심 인사들이 민중정당 건설의 주체들을 결집하기 위해 설치한 ‘새정당 창당을 위한 임시연락사무소’ 등의 통합으로 결성되었다. 진보정당준비모임은 대표 이우재, 집행위원장 조춘구, 대변인 박계동, 기획실장 정문화, 정책실장 정태운, 조직국장 장기표, 선전국장 이석원, 사무국장 원혜영 등으로 본부 조직체계를 갖추고 15개 지역 준비모임을 결성하여 민중정당 건설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0년 3월 12일 백기완, 계훈제, 박형규, 이소선 등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고문 4명이 민중민주당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3월 20일에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대의원대회에서 ‘합법 정당 건설안’이 부결되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을 탈퇴한 이부영, 홍성우, 고영구, 백낙청 등 각계 인사 16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 결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3월 21일 진보정당준비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중의 정당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 결성사업에 동참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4월 13일 447명의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 추진위원들은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백기완, 이우재, 고영구를 공동대표로 선출하면서 공식 출범하였다.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의 출범으로 창당 작업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야권통합을 둘러싼 내부적 갈등이 불거졌다. 선 야권통합을 주장하던 고영구, 이부영, 박계동, 제정구 등 14명은 독자적인 민중정당 건설을 위한 창당준비위원회로의 전환을 반대하고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는 이들의 반대에도 1990년 5월 30일 제2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중앙위원 절대다수의 결의로 6월 중 창당준비위원회로 전환하고 9월 안에 창당할 것을 결정함과 동시에 이들의 사퇴서를 수리하였다.²⁰⁾ 결국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는 정당 명칭 공모를 통하여 채택한 ‘민중당’을 가칭 당명

으로 하여 6월 21일 서울 YMCA 대강당에서 민중정당 창당에 동의하는 노동계 등 각 계 각층 1,010명의 발기인 중 5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민중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발기인대회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여성, 중간계층, 중소 상공인 등 민중이 수탈과 억압의 존재를 박차고 일어나 정치의 주인 됨을 선언하는 것이며, 분단과 예측의 체제를 타파하여 자주·민주·통일·민중복지의 민족사를 개척하는 주체가 됨을 선포하는 것이다”고 창당 발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우재와 김상기를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백기완, 권처홍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였다. 또 창당의 6대 원칙으로 ①민중주체의 원칙 ②민주쟁취의 원칙 ③민권수호의 원칙 ④민주세력 연합주도의 원칙 ⑤민중재정 확립의 원칙 ⑥진취적 당풍 확립의 원칙을 확정하였다. 민중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6월 25일 이우재·김상기를 공동대표자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성신고를 완료하였다.

민중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구 분	신고 내용		
대표자	이우재·김상기	회계책임자	이재오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4-6 신영빌딩 4층		
발기인 명단	권오창, 김 결, 김광수, 김문수, 김상기, 김영수, 김성식, 김종신, 김철수, 박귀현, 박방희, 서기화, 서정훈, 손병선, 송경평, 송운학, 안희대, 염만숙, 오세철, 유인철, 이석원, 이우재, 이인근, 이재오, 장기표, 장영근, 정문화, 정병문, 정수일, 정운환, 정태윤, 조근대, 조무하, 조춘구, 지은희, 천영초, 최상천, 최영준, 최 윤, 한창호		
발기취지문(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민주·통일·민중복지의 민족사를 개척하는 주체가 되고자 함 ○외세와 군사독재의 통치를 종식시켜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정부 수립 ○한반도 긴장 완화와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매진 		

2) 정당등록

1990년 6월 25일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친 민중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집단지도체를 구성하고 산하에 조직책임사소위, 정강정책기초위원회, 당헌당규기초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인권위원회, 부문위원회, 특별위원회,

20) 사퇴서를 제출한 선 아권통합파는 이후 민중의 정당 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를 이탈하여 평화민주당 및 민주당과의 통합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범민주 통합 수권정당 촉구를 위한 추진회'를 결성하였다.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조직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착수하였다. 중앙위원회를 통해 조직책 임명권을 위임받은 상임위원회는 총 55명의 조직책을 임명하는 등 창당을 위해 필요한 지구당 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중앙당 창당대회 일자를 1990년 11월 10일로 결정하였다. 한편 11월 5일에는 중앙위원회를 통해 창당대회에서 채택할 당 강령과 당헌의 초안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 일정에 따라 1990년 11월 10일 서울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대의원 1,108명 중 7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민중당(가칭)은 창당대회에서 “우리는 이 땅에 민중 주체의 참다운 민주세상을 건설하고 7천만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당을 창당한다”라는 창당 취지로 시작되는 당헌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공식적인 창당을 선포하였다.

한편 창당대회에서는 공동대표에 이우재·김상기·김낙중, 전당대회 의장에 장영근, 부의장에 김종신·이윤석을 각각 선출하고 중앙집행위원 등 간부 선출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에 위임하였다. 이우재 상임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광복 이후 외세와 독재 권력의 지배로 민족과 자주, 민주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절된 채 사회적 정체와 혼돈에 빠져든 시대상황을 돌파하고 민중해방, 통일의 참민주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 (……) 민중당의 창당은 역사의 필연이자 순리”라고 주장하며 창당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창당대회를 마친 직후 1990년 11월 16일 민중당은 대표자에 이우재 상임대표위원, 주요 간부에 김상기·김낙중 대표위원과 장영근 전당대회 의장 및 이재오 사무총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당등록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지구당은 법정요건인 45개보다 3개 많은 48개였고,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정부의 수립’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 등 12개 부문의 강령과 정치·행정, 통일·외교 등 14개 분야의 기본정책, 전문을 포함하여 본문 69조와 부칙 6조로 구성된 당헌을 등록하였다. 당원은 총 6,235명으로 신고하였다. 민중당은 1990년 11월 19일 법적 등록절차가 완료되면서 공식 출범하였다.



▲ 민중당 창당대회(1990년 11월 10일).

민중당 정당등록 내용

구 분	등록 내용			
대 표 자	이 우 재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4-6 신영빌딩 4층			
주요 간부	대표위원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	정책위원장	대변인
	김낙중 김상기	이재오	장기표	정문화
지구당 등록 현황(48)				
서울(12)	성동구갑 (김철수), 성동구병 (유윤석), 도봉구갑 (조춘구), 노원구을 (오세철), 은평구을 (이재오), 마포구을 (이우재), 구로구갑 (김문수), 구로구을 (정태윤), 동작구갑 (장기표), 송파구을 (박용일), 서초구을 (손병선), 서대문구갑 (지은희)			
부산(1)	부산진구을 (김영수)			
대구(3)	동구 (이윤석), 서구갑 (김현근), 서구을 (이윤기)			
인천(6)	중구·동구 (서기화), 남구을 (안영근), 남동구 (박귀현), 북구갑 (김영규), 북구을 (송경평), 서구 (김중용)			
광주(1)	서구을 (김결)			
경기(8)	안양시갑 (송운학), 안양시을 (정문화), 성남시을 (임동현), 부천시중구 (이병현), 부천시남구 (양창욱), 화성군 (김장희), 광명시 (유인렬), 안산시·웅진군 (이두백)			
강원(2)	춘천시 (최윤), 정선군 (정운환)			
충북(1)	청원군 (한기달)			
전북(1)	이리시 (최갑선)			
전남(1)	강진군·원도군 (장영근)			
경북(8)	포항시 (김병구), 구미시 (김종길), 영주시·영풍군 (차무정), 안동시 (김석현), 안동군 (김신태), 울진군 (황윤길), 예천군 (김휘대), 영양군·봉화군 (권영일)			
경남(4)	마산시갑 임수태, 거제군 (이만구), 울산시중구 (정병문), 진해시·의창군 (손성기)			

【 강 령 】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정부의 수립	○계획적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 주요 기간산업·금융기관 및 천연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보장 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의기구 창	자원의 국유화, 농지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국유화 및 국유
출, 제3세계 발전도상국들과 협력하여 비동맹운동 적극 참여, 해	토지 임대제
외의 평화애호세력 및 진보세력과의 연대 강화	○자본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적 노동세계
○민중의 해방된 삶을 구현하는 민족공동체 형성, 민중이 주도적으	창조
로 참여하는 통일운동 활성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	○민중에 의하여 전개되는 문화활동과 문화운동의 장려·지원
군과 핵무기 철수 및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남북 간의 군축과 불	○민중 주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교육을 통한 민중의 의식과 실천
가침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 이룩	력 향상, 교사·학생·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원 자치

【 기본정책 】		
정치 행정	○ 의회 · 민중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의회제도 정착 · 국민의 발안권, 소환권, 청원권 완전 보장 및 특별검사 임명권 부여	○ 행정 ·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탄핵소추권 부여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정당 참여
	○ 정당 · 정당등록 절차 폐지, 자진 해산 외의 등록취소·해산 금지, 정당 운영자금의 국고 부담	· 병력 규모 감축 및 군인의 복무기간 단축, 보안사 해체 및 군 수사 기관의 민간에 대한 관여 금지
교육	○ 선거제도 · 선거공영제 및 선거비용 국가 부담, 선거운동의 자유 최대한 보장 · 사표 방지를 위한 정당연기명 투표제 실현	· 예비군·민방위제도 폐지, 안기부의 해체 및 정보기관의 정치사찰 금지
	○ 교원의 노동3권, 정치활동 자유 보장	○ 사법부에 예산편성권, 법률안 제출권 부여
통일 외교	○ 2단계 평화통일 방안으로 민중주체 통일 이룩 · 평화정착 단계: 남북 간의 군사력 감축, 미군 철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 남북의 군사력을 단계적으로 20만 명 이하로 감축 ○ 통일 논의와 실천의 주체로 민중의 참여 보장 및 북한에 관한 정보 개방
	· 연방제 통합단계: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 창출, 남북의 정부·정당· 사회단체·개별 인사를 망라한 추진기구 결성	○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개인이 참여하는 민족통일 정책협의회 구성 ○ 해외의 평화애호세력 및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와의 교류 촉진
경제	○ 계획적 시장경제 체제 확립	○ 독점 재벌 해체, 주요 기간산업과 금융기관의 국영화
노동	○ 주40시간 근무, 주5일 근무제 실시, 노동자의 경영 참가와 이윤 참가 보장	○ 대기업과 국영기업에서 노동공동체 자주관리 실시
언론	○ 정보자유법 제정 및 언론의 공정성 감시를 위한 언론평의회 설립	○ 언론인의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자유 보장

3) 한국노동당(가칭)과의 통합

민중당은 출범 직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선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 1월 초에 재야의 민주연합은 야권 통합을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하며 평화민주당·민주당·민중당 등 야권 3당이 득권을 포기하고 통합 수권정당을 결성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민중당은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는 막강한 여당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야권이 단합하여 반민주자유당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시

급하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평화민주당·민주당 양당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의 연합공천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합공천을 거부하였고, 2월 3일 민주당이 민주연합을 통합하여 선거에 임하면서 범야권 통합은 실질적으로 실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수서비리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야당 및 재야세력의 대야 투쟁이 확산되었다. 민중당은 “수서 문제의 호도책으로 치러지는 지방의회선거 분리 실시를 철회하라”라고 주장하면서 기초의회선거 불참 선언과 함께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민중당은 6월 시·도의회의원선거가 닥쳐오자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제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위해 시·도의회의원선거를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하였다. 민중당은 정치권 진입의 교두보로 설정한 수도권과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43명의 후보자를 출마시켰다. 그러나 부산·대전·충북·충남·제주에서는 한 명의 후보자도 입후보하지 않아 현실적 한계를 드러냈다. 더욱이 시·도의회의원선거 결과 민중당은 강원도 정선에서 단 1명만이 당선되고 모두 낙선하였으며, 득표율도 0.8%에 그쳤다. 특히 관심을 끌던 시민연대의 추천 인사 15명이 전원 낙선함으로써 민중당의 현실적 한계를 보여 주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던 민중당은 1992년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계기로 ‘원내 진출을 통한 진보세력의 제도권 진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민중당은 선거 국면이 전개되자 서둘러 후보자를 선출하며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범민주 단일후보 공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세력과의 다각적인 연합공천과 통합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이 무산되자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노동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와의 통합협상을 시도하였다.²¹⁾

21) 한국노동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민중당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에 실패하였으며, 민주적 정당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당원을 확대하며, 당세 확장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민중당을 통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새로이 한국노동당 창당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민중당과 그 강령이 대동소이하다는 점과 이후 선거 운동을 앞두고 단일 대오로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중당과의 통합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협상 초기에 한국노동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노동 세력에 대한 영향력이 민중당에 비해 더 강하다는 판단 아래 공세적인 협상조건을 제시하였다. 통합정당의 당명은 한국노동당으로 하고, 통합 후 3개월 이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며, 완전경선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되 공동대표제로 임시지도부를 구성할 것 등이 주요 조건이었다. 그러나 협상 전개 과정에서 한국노동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민주노동운동 진영 내의 비판, 대중적 호응도와 열기 미흡, 국회의원선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선거 2개월 이내에 지도체제 및 당명 문제를 재논의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민중당은 이 수정제안을 수용하고, 1992년 2월 7일 한국노동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와 통합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당명을 민중당으로 유지한 채 한국노동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와 통합하여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4) 국회의원선거 참패와 등록 취소

민중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원내 교두보 확보라는 기대 속에 52명의 지역구 후보와 4명의 전국구 후보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선거전에 참여하였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유효투표의 3% 이상만 득표하여도 전국구 1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되면서 민중당의 원내 진출에 대한 희망은 더욱 컸다. 그러나 최종적인 선거 결과는 참패로 나타났다.

52곳의 지역구 후보는 모두 낙선하였으며, 게다가 기대했던 유효득표율마저 1.5%에 불과하였다. 창당 당시 야심차게 내걸었던 ‘진보세력의 제도권 진입’ 목표는 좌절되었다. 민중당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도 못하면서 정당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당 1년 4개월 만인 1992년 3월 30일 등록이 취소되었다.

다. 진리평화당(1992.11.6~2004.2.13; 1993.1.18 신민주당으로 변경)

1) 창당준비위원회

1992년 4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홍일빌딩에서 허경영 전 신민주당(불민당) 부총재 등 24명은 진리자유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어 ‘균등한 복지 혜택, 국민계층 간 대립 해소, 민주복지정책 실현, 국민적 화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기취지문을 채택하고 창당준비위원장에 허경영 발기인을 선출하였다. 이후 5월 4일 허경영을 대표자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리자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창당작업 중이던 6월 9일 창당준비위원회(가칭)의 명칭을 ‘진리평화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로 변경하고 6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신고하였다.

진리자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구 분	신고 내용		
대표자	허경영	회계책임자	김준호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8-1 홍일빌딩 5층		
발기인 명단	고명준, 김승부, 김인자, 김준호, 서태희, 송태자, 안장동, 안재평, 양두승, 양신숙, 양천년, 우홍식, 이경표, 이경희, 이규범, 이규복, 이성수, 이창근, 임정임, 정영숙, 정학진, 최종규, 한복희, 허경영		
발기취지문(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모두의 균등한 복지 혜택 ○고도성장으로 인한 국민계층 간의 대립 해소 ○민주복지정책의 실현으로 화합과 내면적 단결 도모 ○우리 국가의 영원한 발전과 국민적 화합 		

2) 정당등록

변경 신고를 마친 ‘진리평화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전국 49개 지역에서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법정당원 1,502명을 확보한 뒤 10월 16일 창당대회 개최를 신문에 공고하였다. ‘진리평화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10월 24일 중앙당창당대회를 개최하여 허경영 창당준비위원장을 총재로 선출하는 등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출범을 선포하였다. 대의원 15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63빌딩 국제회

의장에서 개최된 중앙당창당대회에서 진리평화당은 민주화를 성취하는 ‘화합정치’의 이념을 기치로 내세우고 3개 항의 강령과 4개 항목 6개 부문의 기본정책 및 58개 조의 당헌을 채택하였다. 이후 진리평화당은 11월 6일 정당등록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공식 출범하였다.

진리평화당 정당등록 내용

구 분	등록 내용				
대표자	허경영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0-2 삼영빌딩 901호				
주요 간부	최고위원	사무총장	총무국장	회계책임자	대변인
	박종채 곽형환	노해택	김준호	정수원	박용주
지구당 등록 현황(49)					
서울(10)	성동구갑(박종채), 성동구병(양두승), 동대문구갑(정현기), 중랑구를(지연수), 노원구를(정재복), 은평구갑(여인구), 은평구를(양찬년), 구로구병(김상만), 관악구를(우대옥), 강동구갑(황귀근)				
부산(8)	서구(김진식), 동래구갑(이주환), 동래구를(이복순), 남구갑(이형림), 남구를(최수대), 해운대구(박진광), 사하구(문두순), 금정구(이수철)				
대전(5)	동구갑(박옥균), 동구를(정기영), 중구(김영철), 서구·유성구(서창원), 대덕구(김기상)				
경기(4)	광명시(김재희), 구리시(노병열), 평택군(정대승), 고양시(차금철)				
강원(8)	원주시(김정래), 강릉시(임광문), 동해시(박이용), 명주군·양양군(김용열), 삼척시·군(정명수), 횡성군·원주군(박광근), 정선군(김을기), 속초시·고성군(이강훈)				
충북(2)	충주시·충원군(민병철), 청주시을(김정년)				
전북(5)	전주시덕진구(김동욱), 전주시완산구(장오영), 군산시(송공섭), 남원시·군(양용식), 옥구군(유영)				
전남(1)	목포시(손지홍)				
경북(2)	안동시(이만규), 안동군(김윤식)				
경남(4)	창원시갑(차명철), 마산시합포구(박두철), 마산시회원구(노해택), 진주시(서종열)				

【 강 령 】

- 도덕의 파멸을 몰고 온 기성정치를 배격하고 새시대에 맞는 새정치를 창조한다.
-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세법을 개정하여 시민경제의 개혁을 이룬다.
- 실업자 해소, 실업수당 지급, 노후복지생활 보장,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국민복지를 향상한다.

【 기본정책 】

- 인류공존과 인도주의적 사명감으로, 진리도덕에 기초한 정치·경제·사회의 혁명으로, 세계경제와 정치·환경으로 세계평화를 구한다.
- 조선왕의 부활과 함께 도덕성 회복으로, 상호간 이질감 극소로 한민족의 의식과 지리의 통일 추구
- 지역구 국회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직능의원제도 신설
- 청렴결백한 정치인 상 정립
- 자주국방체제의 강화와 군의 정치적 중립 모색
- 자유국가는 물론 동구권 국가 및 비동맹 국가와의 교류 확대

3) 당명 변경

진리평화당은 창당 이후 오래지 않아 내홍을 겪으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식 출범 20일 만인 1992년 11월 26일 진리평화당은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허경영 총재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박종채 최고위원을 총재(권한대행)로 선출해 1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표자 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허경영 전 총재를 대통령 후보자로 내정하고 선거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후보자 등록 마감에 임박하여 현홍균 당 고문을 대통령 후보로 확정하는 등 혼란한 모습을 보였다. 이뿐 아니라 현홍균 당 고문 또한 기탁금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대통령후보 등록이 좌절되었다.

군소정당의 현실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진리평화당은 대통령선거 직후 박종채 총재 권한대행마저 사임하여 1992년 12월 23일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염중훈을 총재로 선출하였다. 또한 1993년 1월 4일에는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명을 신민주당으로 변경하였다.

진리평화당 주요 간부 변경(1992. 11~1993. 1)

변경일자	직책	기존	변경	비고
1992. 11. 6	총재	허경영	-	정당등록
	최고위원	박종채 곽형환	-	
	사무총장	노해택	-	
	회계책임자	장수원	-	
1992. 11. 26	총재 권한대행	허경영	박종채	제3차 임시전당대회 총재 불신임 의결
1992. 12. 29	총재 권한대행	박종채	염중훈	교체(제4차 임시전당대회)
1993. 2. 1	수석부총재	-	권순곤	신임
	부총재	-	김명환, 한건수	

라. 친민당(1992. 11. 19~1996. 4. 13)

1) 창당준비위원회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충남 논산의 권정수 외 37명은 1992년 9월 26일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158번지에서 친민당(가칭)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과 정치보복 청산, 홍익인간사상으로 국민교육 철저, 자유, 평화, 복지 수호”라는 창당 발기 취지를 밝힌 후 친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후 10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였다.

친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구 분	신고 내용		
	대표자	권정수	회계책임자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1-12		
발기인 명단	강만우, 강병영, 권정수, 김동진, 김란주, 김순옥, 김영자, 김영희, 김옥금, 김용주, 김우봉, 김초선, 노동식, 노진환, 문정자, 민기호, 서승환, 성원기, 소진숙, 오석재, 오정철, 유복엽, 유성창, 유정인, 유철환, 이기형, 이운영, 이일순, 이장우, 이종대, 이종욱, 정영권, 조은영, 지해선, 최규태, 최보심, 최복례, 황숙자		
발기취지문(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적인 정권 이양으로 정치보복시대 청산 ○ 홍익인간 사상으로 국민교육 철저 ○ 민주주의의 생명인 자유, 평화, 복지 수호 ○ 무슨 일이든 간에 참이고 진리이면 당의 사명을 충동원하여 참여 		

2) 정당등록

친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제14대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11월 11일까지 전국 51개 지역에서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법정지구당 수를 확보하고 신문공고를 게재하는 등 신속하게 창당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1992년 11월 15일 대의원 108명 중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중앙당 당사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권정수 창당준비위원장을 총재로 선출함과 동시에 제14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하였다.

이후 친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권정수는 법정지구당 수(51개 결성)와 당원수 1,722명(일반당원 110명 포함) 등 창당 요건을 갖추어 11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였고, 11월 19일 등록절차가 완료되어 공식 출범하였다. 그

러나 대통령선거에는 후보자를 공천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군소정당으로 1996년까지 명맥을 유지하였다.



▲ 친민당 창당대회(1992년 11월 15일).

친민당 정당등록 내용

구 분	등록 내용				
대표자	권정수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1-12				
주요 간부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회계책임자	대변인
	김종식 김중태 안도순	이종대	김용태	홍현희	박용주
지구당 등록 현황(51)					
서울(1)	도봉구를 최병호				
부산(3)	서구 이병환, 사하구 김재구, 금정구 유진원				
대구(11)	중구 박선옥, 동구갑 백찬우, 동구를 오철호, 서구갑 김태한, 서구를 이영윤, 남구 홍순성, 북구 문병호, 수성구갑 박종규, 수성구를 김용덕, 달서구갑 김옥순, 달서구를 엄양흠				
인천(5)	남구갑 권정주, 남구를 이규학, 남동구 최승수, 북구갑 채금례, 북구를 윤준의				
광주(1)	서구를 안동욱				
대전(4)	동구갑 손영복, 동구를 강완성, 중구 최영남, 서구·유성구 이종대				
경기(5)	수원시권선구갑 성경환, 수원시권선구를 전유병, 수원시장안구 전춘병, 기평군·양평군 신현기, 이천군 권봉식				
강원(1)	철원군·화천군 권혁주				
충남(3)	공주시·군 한득상, 논산군 유복엽, 부여군 강태식				
전북(2)	군산시 전범용, 남원시·군 김일수				
전남(9)	여수시 이주호, 순천시 이정현, 여천시·군 김기춘, 곡성군·구례군 김종덕, 고흥군 이형하, 강진군·완도군 권승철, 해남군·진도군 권용환, 영암군 권정채, 함평군·영광군 안도순				
경북(4)	포항시 김미자, 구미시 김두식, 영주시·영풍군 권오국, 경산시·경산군·청도군 권정복				
경남(2)	울산시남구 김영덕, 함안군·의령군 권기석				

【강 령】

- 도덕정치로 민족정기를 승화시킨다.
- 도덕문명으로 세계평화한다.
- 민족도의로 통일독립한다.

【기본정책】

- 도덕적 정치문화 형성
- 자유경제 원칙
- 평화통일 원칙
- 도덕적 인본주의 사회 이룩
- 전인교육으로 인재양성 원칙
- 쾌적하고 공해 없는 사회건설
- 법 이전에 도덕문화 발전
- 농업경영단 경영으로 산업농업화
- 교통체증 없애고 대중교통 개발

마. 대한정의당(1992. 11. 19~1994. 2. 15)

1) 창당준비위원회

대한정의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제14대 대통령선거 직전인 1992년 9월 7일 서울 종로구 대한재보험빌딩에서 이병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25명의 발기인으로 결성되었다. 대한정의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무책임한 정책과 정치적 배신행위의 배척,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부 및 발전적이고 정직한 정권 수립”이라는 창당발기취지문을 채택하고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병호 발기인을 선출하였다. 그 뒤 9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하였다.

대한정의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신고 내용

구 분	신고 내용		
대표자	이병호	회계책임자	허진영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219-404		
발기인 명단	강갑석, 강현철, 권영아, 권일중, 박태호, 소병문, 송영각, 송윤호, 심상례, 윤여빈, 이동순, 이병선, 이병호, 이종숙, 이혜숙, 임애경, 정영진, 정진해, 정충진, 조상민, 조숙희, 조승희, 허진영, 황선영, 황태성		
발기취지문(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만든 무책임한 정책과 정치적 배신행위를 배척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부, 발전적이고 정직한 정권 수립 ○정치, 경제, 사회를 일대 개혁하여 희망찬 새 시대 문을 열 		

2) 정당등록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친 대한정의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1992년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51개 지역에서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11월 11일에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알리는 신문 공고를 하는 등 신속하게 창당 준비를 마쳤다. 11월 18일에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진학회관에서 대의원 80명 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정의당(가칭)창당대회를 열고 당헌·당규를 채택한 다음 이병호 창당준비위원장을 대표최고위원, 박수용·허진영 대의원을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였다. 또한 제14대 대통령후보로 이병호 대표최고위원을 구두 호선에 의한 만장일치로 선출함으로써 대한정의당 창당대회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동시에 마쳤다. 대한정의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51개 지구당을 결성하고 법정당원 157명을 포함한 207명의 당원 확보 등 법정요건을 갖추어 1992년 11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등록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대한정의당 정당등록 내용

구 분	등록 내용				
대표자	이병호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회관				
주요 간부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회계책임자
	박수용 허진영	이병찬	조석준	이동순	박태호
지구당 등록 현황(51)					
서울(10)	성동구을(정승수), 도봉구을(박태호), 노원구을(허진영), 구로구을(황선영), 동작구을(김옥자), 관악구을(황연자), 서초구갑(김덕수), 서초구을(이혜선), 송파구을(이영실), 강동구을(김경식)				
부산(3)	부산진구갑(안성순), 동래구을(김충자), 해운대구(장광란)				
인천(4)	남구를(민항숙), 남동구(김현숙), 북구갑(남궁선), 북구를(이수실)				
경기(10)	안양시을(김호), 부천시중구갑(장태연), 부천시중구를(정경숙), 안산시(이우복), 과천시·의왕시(박인호), 고양시(이준형), 평택군(황동식), 파주군(이인숙), 안성군(진영숙), 광명시(박정욱)				
강원(1)	원주시(권기복)				
충북(9)	청주시갑(송춘성), 청주시을(홍지표), 충주시·종원군(강호성), 제천시(정인환),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복영), 청원군(김공기), 괴산군(김학수), 진천군·음성군(김남홍), 제천군·단양군(이규원)				
충남(2)	부여군(윤석원), 청양군·홍성군(권영철)				
전북(1)	익산군(임진택)				
전남(1)	동광양시·광양군(박완남)				
경북(2)	구미시(백순임), 김천시·금릉군(박홍하)				
경남(8)	창원시갑(이두걸), 창원시을(이영규), 마산시합포구(변재득), 마산시회원구(이정석), 진주시(이금철), 진해시·창원군(이강용), 의령군·함안군(이종규), 남해군·하동군(이상래)				

【강 령】

-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으로 신장되는 법치주의와 도덕정치 구현
- 정의롭고 풍요로운 경제질서 확립
- 민족 대화합과 민족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평화적 통일 방안 추진
-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 바탕 위에서 윤리정치 구현
- 국민경제의 발전과 복지향상

【기본정책】

- | | |
|---------------------|-----------------------|
| ○도덕정치 구현 | ○전과기록 말소 |
| ○지역감정 해소 | ○인기부 등의 수사권 폐지 |
| ○국가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
| ○선거공영제 확립 | ○수입개방으로부터 농민과 농촌경제 보호 |
| ○중소기업 육성 | ○소형 영구임대주택 실비 제공 |
| ○토지공개념 확립과 금융실명제 실시 | ○경찰·감사원·한국은행의 중립화 |
| ○노동재판소 신설 | |

3) 변화와 소멸

대한정의당은 창당 직후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를 입후보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대한정의당 이병호 후보는 3만 5,739표라는 미미한 득표로 7명의 후보자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후 대한정의당은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못하였다.



제4장

정당 활동

제1절 _ 선거활동

제2절 _ 원내활동

제3절 _ 당내활동

제1절 선거활동

1. 제13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 동해시 재선거(1989. 4. 14)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동해시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주정의당 김형배 후보는 1988년 5월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989년 3월 14일 대법원이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한 홍희표는 당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으므로 국회의원선거법을 위반한 것인데,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위법을 간과하고 투표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선거는 무효”라는 선거무효 판결을 내렸다.²²⁾ 이 결정으로 1989년 4월 14일 동해시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민주정의당은 재선거를 유발한 홍희표를 다시 공천하였으며, 평화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숙원을 공천하였다. 통일민주당에서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위 득표를 한 이관형을, 신민주공화당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위를 한 이홍섭을 각각 재공천하였다. 한편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평화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해 5위를 한 지일웅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각 정당은 정당 대표들이 지원연설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정의당은 동해시 재선거의 승리가 여소야대 정국 운영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고위당직자들의 수시 현지방문, 조직 동원 등 거당적 지원에 나섰다. 평화민주당 또한 박영록 부총재를 위원장, 소속 의

22) 「정당법」(1980. 11. 25 법률 제3263호)에 의하면 당원이 탈당하려면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해야 하고, 중앙당에 제출하였을 경우 그 탈당신고서가 소속 지구당으로 보내져 지구당이 접수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홍희표는 원래 민주정의당 당원이었으나 민주정의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후보자 등록 전에 탈당신고서를 속달 등기로 2회에 걸쳐 중앙당에 제출하였으므로 자신은 당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탈당신고서가 소속 지구당으로 보내져 지구당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결국 선거무효 판결이 났다.

원 전원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김대중 총재가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직접 선거전을 지휘하였다. 통일민주당도 김영삼 총재가 현지에서 국정보고대회를 열고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거 동원하는 등 거당적 지원에 나섰다. 신민주공화당도 최각규 사무총장을 선거대책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당과 도지부 요원들로 지원반을 편성하여 득표활동을 하는 한편 김종필 총재도 현지에서 지원활동을 벌였다. 이에 따라 정당 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4월 7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 10명 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재선거가 중앙당 대리전 양상으로 과열되면서 타락·불법선거운동이 극심해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회창 위원장은 4월 10일 노태우 민주정의당 총재 등 여야 4당 총재에게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동해시 재선거의 과열은 급기야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매수하는 사건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선거를 이틀 앞둔 4월 12일 신민주공화당 이홍섭 후보가 사퇴와 함께 통일민주당 이관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홍섭



▲ 통일민주당 서석재 사무총장이 후보매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고 있다(1989년 4월 20일).

후보의 사퇴는 동해시 현지에서 선거를 지휘하던 서석재 통일민주당 사무총장이 이홍섭 후보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선거가 끝난 뒤 1억 원을 더 주기로 하며 매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이홍섭 후보는 4월 15일 구속되었으며, 처음에는 매수 사실을 부인하던 서석재 통일민주당 사무총장도 통일민주당을 탈당한 뒤 4월 21일 구속되었고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중앙당의 대대적인 지원과 혼란 속에 치러진 4월 14일 동해시 재선거 결과 민주정의당 홍희표 후보가 2만 5,688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한편 통일민주당의 이관형 후보는 후보자 매수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신이 얻은 득표수보다 5,000여 표를 더한 1만 2,049표를 얻어 2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 김숙원 후보는 중앙당의 대대적인 지원에도 무소속 후보자에게마져 뒤진 2,543표만을 얻는 데 그쳤다.

나. 영등포구를 재선거(1989. 8. 18)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영등포구를 선거구에서 낙선한 평화민주당 이용희 후보는 1988년 5월 21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당선 및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1989년 5월 26일 대법원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한 민주정의당 김명섭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41명의 위장전입이 있었으므로 그 범위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김명섭이 합동연설회장에서 선거구민 2만여 명에게 비누 세트를 제공하였다고 공개리에 위법 행위를 밝혔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의무를 외면하고 묵인 방치한 것은 선거관리를 잘못된 것”이라며 선거무효를 판결하였다. 이로써 1989년 8월 18일 영등포구를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8월 5일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민주정의당은 경제기획원 장관과 제10·12대 국회의원을 지낸 나웅배를 공천하였고 평화민주당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위를 차지한 이용희를 다시 공천하였다.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 역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위와 4위를 차지한 이원범과 박상웅을 각각 재공천하였다.

동해시 재선거 이후 4개월여 만에 실시된 영등포구를 재선거는 평화민주당 서경원 의원의 밀입북으로 조성된 공안정국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선거일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표는 물론 현역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선거 열기 또한 한층 고조되었다. 민주정의당은 남재희 서울시 지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 외에 이종찬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별도 조직을 구

성하여 현지에 투입하는 한편 서울시 지구당위원장들에게 투표구별 책임제를 부여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선거 중반 이후에는 현역 의원, 지구당위원장은 물론 중앙당의 부장급 이상 당직자들까지 동원하여 조직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평화민주당은 공안정국으로 당이 위축된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임을 고려하여 영등포구를 재선거를 ‘제6공화국의 중간평가’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공안정국 돌파의 계기로 삼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선거에 임하였다. 한광옥 총재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실무위원회를 중앙당에 구성하여 선거 상황을 지휘·조정하는 한편 선거 중반 이후에는 김대중 총재가 현지에 체류하면서 유권자와 직접 대면하는 등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다. 중앙당도 총동원되어 소규모 그룹별 유권자 접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진력하였다.

반면에 동해시 재선거 후보 매수 사건 여파로 위축되어 있던 통일민주당은 선거 초반 김영삼 총재가 당락과 관계없이 공명선거를 강조하는 등 중앙당 차원의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선거 중반 이후에는 김영삼 총재가 선거대책위원회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현역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사랑방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신민주공화당 또한 최재구 부총재의 진두지휘 아래 중앙당 요원들을 투입하고 당원교육 등을 통하여 외연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김종필 총재뿐 아니라 현역의원들을 동원하여 유권자 대면 접촉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다.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각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의 부인까지 동원하여 득표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랑방좌담회 명목의 향응 제공’ ‘불법선거운동 감시 명목의 후보자 지지자들끼리의 편싸움’ ‘상대방 후보를 비난하는 흑색선전물 배포’ 등의 불법행위도 나타났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호별 방문, 금품 제공, 후보자 비방 유인물 배포, 가두행진, 합동연설회장 질서문란 행위 등의 위반 혐의로 민주정의당·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 후보자 및 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무소속 고영구 후보자를 8월 14일과 8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선거운동을 마치고 실시된 최종 투표결과 민주정의당 나용배 후보가 4만 5,187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평화민주당의 이용희 후보는 3만 5,089표로 2위를 차지하였고 뒤이어 통일민주당의 이원범 후보가 2만 1,945표, 신민주공화당의 박상웅 후보가 5,737표를 각각 얻었다. 민주정의당은 연이은 재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여당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평화민주당은 2위에 그쳤지만 제1야당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는 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통일민주당의 경우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2위를 차지한 이원범 후보를 재공천하였으나 오히려 3위로 뒤쳐진 결과를 보임으로써 당의 입지가 현저히 위축되었다.

다. 대구 서구갑 및 진천·음성군 보궐선거(1990. 4. 3)

대구 서구갑 국회의원보궐선거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 정호용이 1990년 1월 5일 사퇴함으로써 1990년 4월 3일 실시되었다. 정호용 의원의 사퇴는 1988년 6월 국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 3당이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의원을 발포 책임자로 지목하여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여론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충북 진천·음성군 보궐선거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 김완태가 1990년 1월 13일 사망함에 따라 실시되었다. 정부는 3월 16일 두 지역 보궐선거일을 4월 3일로 공고하였다.²³⁾

민주자유당은 대구 서구갑선거구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인 문희갑, 진천·음성군선거구에는 충북도지사 출신인 민태구를 각각 공천하였다. 그러나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은 두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대구 서구갑선거구에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2위를 차지한 백승홍을 내천하였다. 그러나 백승홍은 민주당이 창당 중이었기 때문에

23) 보궐선거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결원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18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정당추천 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진천·음성군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은 같은 이유로 허탁 후보를 내천하여 무소속으로 출마시켰다. 대구 서구갑선거구의 입후보자 4명 중 3명, 진천·음성군선거구의 입후보자 2명 중 1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은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다.

민주자유당은 4·3 보궐선거를 3당 합당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기반을 강화하는 선거로 그 의미를 규정하는 한편 대구 서구갑과 진천·음성군 선거구가 친여 성향이 강한 지역이므로 두 선거구 모두에서 승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선거에 임하였다. 그러나 대구 서구갑의 경우 정호용 전 의원이 다시 입후보함에 따라 당선 가능한 거물급 인사를 공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문희갑 대통령경제수석을 공천하였다. 또 중앙당 차원에서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선거 시작과 함께 경북·대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지원단이 현지에 머물며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선거 중반부터는 37개 투표구 책임자를 현역의원으로 임명한 데 이어 현역의원 40명을 직능별 책임자로 임명해 투입하고 중앙당 사무처 요원까지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선거 초반에는 민주자유당의 문희갑 후보와 무소속 정호용 후보 간의 경쟁이 선거 분위기를 압도하였다. 민주자유당에서는 선거일이 공고되기 이전부터 정호용의 출마를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호용은 “나는 5공청산의 희생양이므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계속 정호용의 사퇴를 설득하였으며, 마침내 3월 26일 정호용은 후보자 사퇴를 선언하였다. 그는 사퇴 이유로 “내가 보궐선거에 출마함으로써 고향 사람들끼리 반목하는 현상이 일어나 대구 사회가 분열되었으며, 대통령에게도 큰 걱정을 주어 후보를 사퇴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정호용의 후보 사퇴와 관련하여 평화민주당은 노태우 대통령이 정호용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선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 처사라고 비난하고 3월 28일 조세형 의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항의하였다. 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및 타인의 권리 행사 방해죄로 노태우 대통령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호용 후보의 사퇴로 대구 서구갑선거구는 민주자유당 문희갑 후보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의 내천후보였던 백승홍 후보 간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각 후보 진영은 승패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정호용 지지 성향의 표를 흡수하기 위해 정호용의 후보 사퇴 정당성 여부에 대한 공방을 선거운동의 주요전략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민주자유당은 진천·음성군선거구의 경우 상대적 우세지역으로 분류하고 선거 과열 시 오히려 야당세를 자극하여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조용한 선거운동을 전개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중앙당의 지원 없이 자체 조직을 활용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벌였으며, 선거 종반에 이르러서야 지역에 연고가 있는 현역 의원들과 중앙당 간부들로 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원활동을 벌였다.

이와 달리 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대구 서구갑과 진천·음성군 보궐선거에서 평화민주당에 연합공천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연합공천이 무산되면서 독자적인 후보 공천을 시도하였으며, '창당 과정에 있는 창당준비위원회는 후보자 추천권이 없다'는 선거법 규정으로 인하여 내천받은 후보가 무소속으로 후보자등록을 하였다. 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는 4·3 보궐선거를 신당창당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확고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로 보고 3당합당의 부당성과 노태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한편 야당 불모지에서 '신당바람'으로 여당의 조직에 맞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선거기간에 개최한 지구당창당대회에서 이기택 총재 등 중앙당 간부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당력을 집중하였다. 대구 서구갑선거구는 김현규 부총재, 진천·음성군선거구는 박찬중 의원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지원활동을 벌였으나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진천·음성군선거구에 치중하였다. 진천·음성군에는 박찬중·노무현·김정길 의원 등과 중앙당 기간

요원 30여 명으로 선거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사랑방좌담회 등을 통하여 정부의 농업 정책 실패를 집중 추궁하는 등 야당바람을 일으키는 데 진력하였다.

4월 3일 실시된 보궐선거 결과 대구 서구갑선거구에서는 4만 1,970표를 얻은 민주자유당 문희갑 후보가 3만 4,242표를 얻은 무소속 백승홍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진천·음성군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내친한 무소속 허탁 후보가 3만 7,441표를 얻어 3만 1,178표를 얻은 민주자유당 민태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다. 이러한 결과는 두 곳 모두 낙승을 예상한 민주자유당에 큰 충격을 주었다.



▲ 진천·음성군 보궐선거에서 허탁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 후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1990년 4월 4일).

라. 함평·영광군 보궐선거(1990. 11. 9)

함평·영광군 국회의원보궐선거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 서경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90년 8월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하면서 1990년 11월 9일 실시되었다. 민주자유당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민주정의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2위로 낙선한 조기상을, 평화민주당은 지역 감정 해소를 내세워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영남대학교 교수 출신 이수인을 각각 공천하였다. 이 밖에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의 이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난 김기수가 평화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농민운동가 출신의 노금노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영광·함평군 보궐선거는 평화민주당의 절대적인 우세가 예상된 선거였다. 따라서 지역감정 해소를 명분으로 한 평화민주당의 영남권 인사 공천은 당내는 물론 현지에서도 여론을 무시하였다는 반발이 일었고, 공천 탈락에 반발한 김기수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역성 타파 문제는 선거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평화민주당은 이용희 전 당무지도 합동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소속 의원 전원을 대책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현역의원 전원을 투입하면서 “한 지역의 선거가 아니라 노태우 정권의 지역 차별과 지역감정 악용을 반대하고 분노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선거”라고 홍보하며 반발을 무마하였다. 한편 무소속의 김기수 후보는 11월 6일 평화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후보를 사퇴하였다.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자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는 11월 4일부터 현지에 체류하면서 수십 명의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면 소재지까지 다니며 지역감정 해소와 평화민주당의 정권 쟁취를 위해 불가피한 공천이었음을 호소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한편 민주자유당은 중앙당 차원의 선거대책본부를 따로 두지 않고 현지에 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이종환 전남 장흥군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였다. 이를 통해 평화민주당의 영남 인사 공천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5,0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유권자와 1대 1로 대화하고 설득하는 등 다소 차별한 선거 활동을 전개하였다. 선거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중앙당 지도부가 현지에서 당원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당력을 집중하여 선거활동 지원에 나섰으나 민주자유당 입장에서는 평화민주당 이수인 후보가 정치 신인이며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김대중 총재의 영향력이 큰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승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민주자유당은 보궐선거 승리보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겨냥하겠다는 전략 아래 홍보에 치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평화민주당이 영남권 인사를 추천하면서 지역성 타파라는 쟁점이 부각되는 등

국민적 관심 속에 시작된 11·9 보궐선거는 선거기간에 민주자유당의 내각제 합의각서 파동 등 계파 간 내분과 야당의 국회 등원 거부 등으로 오히려 정치적 불신과 무관심이 조성된 상황 속에서 치러졌다. 선거 결과 또한 예상대로 5만 5,557표를 얻은 평화민주당 이수인 후보가 1만 6,581표를 얻은 민주자유당 조기상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2. 지방의회의원선거

가. 구·시·군 의회의원선거(1991. 3. 26)

1991년 3월 26일 30년 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를 위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애초 여야는 1990년 6월 이내에 시·도의회의원선거와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1990년 들어 정부와 여당은 선거 연기와 분리 선거를 주장하였다. 이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나 결국 정부와 여당은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분리하여 1991년 3월 26일 실시한다고 일방적으로 공고하였다.

선거일이 결정되자 평화민주당 등 야당은 선거 불참을 주장하는 한편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집권 구상의 시발 단계로 추진해 온 지방자치의 부활을 분리선거를 이유로 계속 외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선거에 불참하면 구·시·군의회를 여권 성향의 인물이 장악함으로써 1992년 실시될 제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결국 선거에 참여하였다. 민주당 역시 신생정당으로 취약한 정당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익을 고려하여 선거 불참 결정을 철회하였다. 이에 반해 민중당은 지방의회선거 분리 실시를 당시 정치쟁점으로 불거진 수서사건을 덮으려는 ‘정략선거’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이 선거 참여를 결정하면서 민중당은

참여 거부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였지만 결국 “이번 선거는 정치 불신을 증폭시켜 정치권의 판결이를 초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내부적 합의로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화민주당·민주당 양당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적 이해를 떠나 노태우 정부의 정국구도를 거들게 될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참여를 철회하고 노태우 정부 퇴진 투쟁에 동참하라”고 촉구하였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1990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공천 등 정당의 선거 참여가 금지되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각 정당도 비공식적으로 후보자를 내천하는 등 선거활동에 참여하였다. 민주자유당의 경우 표면상 정당 불개입을 주장하면서도 지구당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와 관련한 각종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상의 내부 공천을 허용하였다. 또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당세 확장의 계기로 이용한다는 원칙과 달리 선거 초반부터 당직자의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를 허용하였으며, 선거사무원에 대한 자격 제한이 없는 규정을 이용하여 유력 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정당 내 선거 전문가들을 파견하였다. 이 밖에도 지구당 위원장들이 친여 후보를 지원하는 선거전략을 전개하였다. 3당합당 이전의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당원을 확인하는 작업과 새 당원 가입 작업으로 당세를 확장해 이를 시·도의회의원선거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거에 동원한다는 것이 민주자유당의 계획이었다.

평화민주당 역시 정당 내 공식기구인 총재단회의에서 선거 참여를 공식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각 지구당 위원장에게 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각종 지침, 선거운동 요령, 선전벽보 및 현수막 견본 등을 배부하며 선거지원체제를 구축하였다. 김대중 총재는 1990년 3월 7일 전국 지구당 대표자들에게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당세 확충의 계기로 삼아 시·도의회의원선거,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승리의 발판을 다져야 한다”라고 강조할 정도로 선거 참여를

강조하였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적인 당원집회를 개최하여 평화민주당 지원을 희망한 후보자들의 당색을 부각시키려는 선거 전략을 폈다. 특히 여권의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분리 실시가 수서사건을 회색시키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와대와 민주자유당의 선거 개입의혹을 쟁점화해 선거 이슈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민주당도 중앙당 내에 공식적으로 지방자치제 선거지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소속 당원인 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지원하였다. 지구당 창당대회를 겸한 옥내 집회 등을 통해 수서비리사건을 정치쟁점화 하고 이를 통한 민주당 열기를 확산하는 한편 민주당 당원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간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다. 특히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수서비리 규탄 열기를 고조시켜 비호남권에서 친여권 인사의 지방의회 진출을 최대한 저지하는 한편 평화민주당의 수서비리 연루 사실도 함께 부각시킨다는 '대 평화민주당 차별화 전략'도 폈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배제된 선거였지만 여러 방법으로 실제 정당의 내천이 이루어졌기에 선거 결과는 각 정당을 기준으로 언론 등을 통해 비공식 발표되었다. 다소 수치상 차이는 있었지만 선거 결과는 민주자유당이 내천한 후보나 친여 성향의 후보가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자유당은 자체 분석을 통해 총 4,303명의 당선자 중 민주자유당 당적 보유자가 2,142명으로 49.8%를 차지하였으며 친여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를 포함하면 친여 당선자가 전체 당선자수의 74%나 된다고 밝혔다. 또 민주자유당은 평화민주당이 785명으로 18.2%, 민주당이 33명으로 0.8%, 당적이 없는 당선자가 1,343명으로 31.2%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집계하였다.

한편 평화민주당의 집계는 민주자유당의 발표 내용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민주자유당이 전체적으로 승리하였다는 점에는 일치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자당이 지원한 후보가 901명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해 평화민주당은



▲ 기초의회의원선거 개표작업(1991년 3월 26일).

후보 등록이 끝났을 때부터 여권의 기습적인 선거 실시와 강압적인 선거 분위기 등을 들어 선거 결과가 여권 일변도로 흐를 것임을 예상하였고 주장하면서도 최종 결과가 예상보다 충격적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특히 평화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한 서울에서도 애초 목표한 40%에 크게 못 미치는 24.2% 선에 머물러 서울의 22개 구·시·군의회 중 야권 성향 의원이 더 많은 의

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평화민주당은 집계하였다. 민주당은 입당 예정자를 포함해 모두 126명의 당선자를 냈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당적 보유자는 33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나. 시·도의회의원선거(1991. 6. 20)

1991년 3월 26일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지 3개월 후인 6월 20일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연이어 실시되었다. 시·도의회의원선거는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총 866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이 선거에 총 2,885명이 출마하여 경쟁을 벌였다. 한편 구·시·군의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정당의 참여가 허용되어 5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였다.

1) 민주자유당

가) 후보자 공천

민주자유당은 1991년 5월 8일 시·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공천신청을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지구당별로 접수하고 22일 중앙당 당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공천 일정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선거구별 10명 이상의 지구당 당직자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경선 또는 심사를 거쳐 각 지구당 공천 추천자 명단을 17일까지 중앙당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5월 15일 당무회의에서는 김윤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의 당무위원으로 구성된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로써 본격적인 후보자 공천 작업을 시작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영남·강원·충청 등 여당 강세로 평가되는 지역은 지구당 추천에 일임하고, 서울·경기지역은 중앙당 차원에서 거물급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또한 호남은 정책지구로 선정하여 차별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다.



▲ 민주자유당 시·도의회의원선거 공천자 대회(1991년 6월 3일).

1991년 5월 12일 지구당별로 마감된 1차 공천신청 결과 866개 선거구에 모두 1,119명이 신청하여 1.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구당의 1차 공천심사 결과 추천된 공천심사 대상자 중 801명은 지구당위원장이 단수 추천하였고, 21개 선거구에서는 복수 추천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가운데 지구당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조정 한 경우는 427개 선거구였으며, 395개 선거구에서는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자를 중앙당에 추천하였다. 그러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일부 지구당의 경우 지구당위원장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공천 결과에 반발한 집단탈당, 공천신청 미달 등으로 인해 접수신청 및 심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다소 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중앙당의 후보공천심사위원회는 추천된 지역구 후보자들에 대한 심의 결과 5월 29일 1차로 확정된 공천자 821명을 발표하였다. 공천자를 확정하지 못한 45곳의 선거구는 대부분 공천신청이 부진했던 호남지역에 집중되었다. 민주자유당은 집권 여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고자 이후 후보자등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들 지역에 공천할 후보자를 모색하는 한편 계속하여 공천신청을 접수하였다. 그 결과 6월 3일 9개 선거구 후보자를 추가로 공천하였다. 그러나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남·전북 지역의 27개 선거구에는 후보자를 공천하지 못하였고, 6월 6일 840개 선거구의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나) 선거대책 및 전략

민주자유당은 1991년 5월 29일 1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한 직후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5월 30일에는 공천자대회를 통해 필승을 다짐하는 한편 5월 31일에는 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산하기구별로 역할 및 득표 전략 등을 검토하였다. 이어 6월 1일 선거일이 공고되자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와 김윤환 사무총장이 본부장을 맡은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하였다. 한편 기존의 실무대책위원회 외에도 수도권대책위원회·홍보대책위원회·공명선거추진본부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실무대책위원회는 산하에 홍보선전단, 기획단 등의 실무

집행기구를 두어 조직을 확대 편성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각 시·도지부 및 지구당도 지역 특성에 맞게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특히 수도권 득표력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수도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민주자유당의 시·도의회의원선거 목표는 전국적으로 55%의 유효득표와 866개 선거구 중 6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특히 최대 격전장이 될 수도권에서는 50% 이상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반면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호남지역에서는 10% 수준의 당선자를 배출하여 대통령선거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민주자유당이 내세운 기본전략은 정책 및 인물대결의 구도를 형성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4월 26일 발생한 명지대생 강경대 치사사건과 물가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 불안 등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을 고려하여 조용하고 깨끗한 선거를 강조하였다. 한편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제6공화국의 중간평가’로 규정하려는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6·29 선언의 완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맞섰고, ‘안정이나 혼란이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과반수의 ‘안정의석’ 확보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1991년 5월 1일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가능한 후보 등록을 조기에 완료하여 선거운동 기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홍보논리 개발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 제시로 초반 승세 분위기를 유도하라는 특별지침을 시달하였다. 한편 세부적 전략수행에 있어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도부들이 선거운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중부권은 김종필 최고위원, 호남권은 박대준 최고위원, 영남권은 김영삼 대표가 각각 책임을 맡아 각 권역의 도청 소재지급을 집중 순방하고 옥내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야권의 대도시 ‘바람몰이’를 차단한다는 전략을 전개하였다. 한편 최대 격전지인 서울 등 수도권 공략을 위해서는 해당 지구당 위원장뿐 아니라 전국선거구 국회의원 및 장·차관을 지낸 정책평가위원들을 총투입하여 중산층의 안정희구 심리를 득표로 연결하고자 노력하

였다. 특히 선거 막바지 수도권외 경쟁양상이 치열한 혼전양상을 보이자 최고위원 및 당 지도부가 대거 수도권 선거운동에 집중하며 부동산의 지지를 얻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다) 선거공약

민주자유당은 1991년 5월 29일 시·도의회의원 후보자 공천 발표와 함께 중앙과 지방 차원으로 나뉘어진 시·도의회의원선거 공약을 발표하였다. 제시된 선거공약의 기본방향은 지역 및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중앙차원의 공약은 물가·주택·교통·환경 등 11개 부문에 58개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15개 시·도별로 20개 안팎씩 모두 388개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택·교통·공해방지·도시영세민 생계대책 등 민생현안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사업·소득 증대 등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물가·주택·환경과 농어촌 발전 대책 등이 중점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경제정책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공약은 한 자리수 물가 달성과 부동산투기 근절이었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부동산 수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또 영농 규모 확대와 전업농 육성을 위해 농지소유 상한 대폭 완화 등을 약속하였다.

농어촌 발전대책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가운데 실리적인 협상전략으로 농민 입장을 최대한 살려나가되 쌀을 포함하여 구·시·군의 식량은 절대로 개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수입 개방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차액보상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환경·교통에 관한 정책으로는 환경개선 중장기 대책 추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주요 강 하류까지 수질 1급수로 개선, 경부·호남·동서고속전철 건설, 전 국토의 완

전포장, 새 국제공항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15개 시·도에 대한 지역 공약으로 도시지역은 주택·교통·영세민·공해 문제, 농어촌지역은 구조조정 사업·소득증대 사업에 각각 초점을 맞추었다.

라) 선거결과

총 866석을 두고 경쟁을 벌인 시·도의회의원선거 결과 민주자유당은 564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광주·전남·전북·제주 4개 의회를 제외한 11개 시·도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부산에서는 51석 중 50석을 석권함으로써 98%의 의회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가장 관심을 끈 서울에서도 민주자유당은 132석 중 110석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은 각각 21석과 1석을 얻는데 그쳤다.

시·도의회의원선거 결과로 민자·신민 양당 구도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으나 민주자유당은 압승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치 무대를 석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정당의 불균형 공존현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서울·부산·대구 등 3대 시 의회의 민주자유당 의석 점유율이 모두 80%를 넘어 정치통념상 ‘야도’의 개념이 사라졌으며, 전체적으로 일당독주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다.

민주자유당은 선거 후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중앙정치의 바람을 차단하고 조직적인



▲ 서울시의회 개원(1991년 7월 8일).

선거운동으로 정치 안정에 의한 '지역발전'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한 결과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정원식 총리 폭행사건' 등 선거운동 기간에 터진 일련의 시위 및 폭력 사태들도 호재가 되었으며, '반(反)민자당' 정서가 강한 젊은 층이 대거 기권한 것도 직·간접적으로 민주자유당의 승리에 유리하게 작용한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서울에서의 압승은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상 밖'의 성과를 냈다고 선거 후 자체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 신민주연합당

가) 후보자 공천

신민주연합당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호남권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호남권 등 취약지역의 후보자 발굴 문제로 고심하였다. 특히 19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기적인 선거전략 차원에서도 호남 대 비호남의 대결양상을 최대한 희석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민주연합당은 비호남권과 수도권 공략에 사활을 걸고 이 지역 공천에 있어 부족한 인적자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를 위해 신민주연합당은 1991년 4월 9일 재야의 '신민주연합'을 통합하여 1차적으로 당세를 확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4월 11일에는 최고위원회를 열고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공천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공천작업에 착수하였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김봉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김영배·정대철·최낙도·권노갑·이길재·오충일·김정강 등 8명으로 구성하였다.

4월 11일 이후 공천자 인선작업에 들어간 신민주연합당은 866개 전 선거구에 후보를 낸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예상대로 호남지역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는 다수의 인사들이 공천을 희망하여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경쟁이 치열했던 서울의 일부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와 호남지역에서는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중앙당과 지구당

이 대립하며 갈등하였고, 공천현금설 등을 둘러싼 잇단 잡음으로 진통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공천심사 과정에서는 구 평화민주당 출신과 신민주연합 측이 지분안배와 공천기준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반면 비호남지역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인물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신민주연합당은 인물난을 타개하기 위해 애초 4월 20일까지 끝내려던 후보자 인선작업을 상당 기간 늦추고 당선 가능한 인물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취약지역은 후보등록 마감 때까지 후보자 영입작업을 계속하였다.

1차 공천심사를 마친 신민주연합당은 5월 29일 공천자 565명의 명단을 발표하였고, 이어 6월 3일 19명의 추가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신민주연합 측 입당인사 중에



▲ 신민주연합당 공천자대회(5월 30일).

는 서울 18명, 부산 20명 등 모두 109명이 공천을 받았다.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255개 선거구 중 83명밖에 공천하지 못해 취약지역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한편 광주 및 전남지역 중 5개 선거구에는 재야인사를 위하여 공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민주연합당의 공천결과는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였다. 공천 결과에 반발한 일부 현역의원과 지구당 간부들이 탈당하였고, 공천 탈락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갈등을 겪어야 했다. 결국 신민주연합당은 6월 6일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866개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한다는 애초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557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나) 선거대책 및 전략

신민주연합당은 1991년 4월 13일 이우정 수석최고위원과 최고위원 9명을 각 출신

지역의 시·도의회의원선거 최고책임자로 임명하여 본격적인 득표전략 수립에 착수하였다. 신민주연합당은 영남과 충청 및 강원 등 취약지역에서의 교두보 확보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의 선전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의회의원선거를 노태우 정부 3년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그동안의 실정과 부패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특히 후보들의 합동연설회와 당 차원의 지원연설회 등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등 전국적으로 파상적인 집회 개최로 ‘신민당 바람’을 일으키면서 선거양상을 민자 대 반민자의 양극구도로 이끌어내 지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목표와 전략은 재야의 ‘신민주연합’ 세력을 통합하여 당세를 확장하면서 당명을 신민주연합당으로 바꾼 후 이전 평화민주당이 가졌던 지역당이라는 선입관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외부 인사 영입을 충실히 하면 상당한 기반 조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신민주연합당은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킨 신민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즉 신민주연합당이 지방자치제를 있게 하였으므로 신민주연합당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한 공안통치 종식과 내각제 개헌 포기²⁴⁾ 주장에 대해 여권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자 환경·교통·민생 문제 등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현 정권의 무력함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6월 1일 선거일이 공고되면서 신민주연합당은 당 체제와 기구를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부산에서 당원단합대회 형식의 정권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또 신민주연합당은 김대중 총재를 중심으로 한 총재반과 최고위원·국회의원 중심의 최고위원반을 편성하여 전국 순회·지원 유세에 나섰다. 특히 선거운동 초·중반에는 선거지원반이 영·호남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후반 무렵에는

24)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5월 28일 오전 9시 TV와 라디오로 생중계된 청와대의 당정회의 서두연설에서 “최근의 시위사태에 대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률도 개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대학 내의 불법 폭력행위에도 대학의 요청이 없는 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지금도 국민 다수가 내각책임제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은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추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혀 내각제 개헌 추진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에서 당원단합대회를 다발적으로 개최하여 전통야당·수권정당의 저력을 부각시키는 한편 공안통치를 쟁점화해 야당바람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선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신민주연합당은 경쟁구도를 민주자유당 대 신민주연합당의 양당 대결구도로 이끌어가는 한편 ‘신민주연합당에 표 몰아주기’를 호소하였다. 한편 선거 막바지에는 수도권에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신민주연합당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되던 20~30대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였다. 이를 위해 신민주연합당은 투표일 직전 김대중 총재의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현수막과 신문광고 등을 적극 활용하여 ‘기권방지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다) 선거공약

시·도의회의원선거를 맞아 신민주연합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은 민생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애초 초점을 맞춰온 강경대 치사사건 등 시국문제가 부각되지 못하면서 신민주연합당은 노태우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주요 전략으로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치안·물가·부동산·농촌문제 등이 현 정권의 실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금융실명제 도입 등 과감한 개혁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실명제의 즉각적인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1991년 3월 29일 발표된 신민주연합당의 선거공약은 도시형 공약과 농어촌형 공약으로 나뉘어 총 34개 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도시형 공약은 재벌기업금융 독점배제, 공공요금 동결 등 종합물가대책, 무주택자 위주의 주택정책, 맑은 물 대책 등 25개 항이었다. 한편 농어촌형 공약으로는 농수축산물 수출입특례법 제정·추하곡수매가 및 수매량 보장 등 9개가 제시되었다.

신민주연합당은 세부적으로 부동산투기 등에 의한 불로소득을 뿌리 뽑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고 최근 3년 사이에 연간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토지 관련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03% 수준에서 주요 외국 수준인 1% 선까지 끌어올릴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 오염유발부과금을 대폭 올리고 재벌의 주식분산과 기업공개를

강력히 추진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허용하는 등의 지원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8대 2비율인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인사권 등 각종 권한을 대폭 이양할 것을 약속하였다.

농어촌문제에 대해서는 “6공의 농업정책은 국내 농수산업의 과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살농정책”이라고 규탄하면서 농업회생을 위해 추·하곡 전량 수매, 농업보장제 신설 등의 정책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농수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농수산물수출입특례법, 농업보장법, 농수산물재해보상법 등 농정정책의 각종 입법도 약속하였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위기와 물가고를 잡기 위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환경·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남북 환경공동대책기구 설치,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교통 분야의 경우 권역별 시·도 교통행정, 모노레일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 개발, 도로·공원·학교 지하의 주차장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라) 선거결과

총 557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한 신민주연합당은 선거결과 165명이 당선되어 19.1%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내부적으로도 실패를 자인하는 저조한 성적이었다. 예상대로 호남지역에서는 광주 82.6%를 비롯하여 전남 98%, 전북 91%의 의석을 차지하여 압승을 기록하였지만 영남권 등 비호남권에선 민주자유당에 완패하였다. 부산·대구·경남·경북 등 영남지역에서는 단 1명만이 당선되어 여전히 지역적 한계를 실감해야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총력을 기울였던 서울에서조차 21석만을 획득하여 110석을 얻은 민주자유당에 참패하고 말았다.

신민주연합당은 자체 선거결과 분석을 통해 야권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야당 특유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 점을 들었다. 집권여당의 막강한 자금과 조직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야당 바람’을 타야 하는데 각종 집회에서 정치적 쟁점을 만들거나 청중을 동원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야당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즉 정당 참여가 허용된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애초 예상과는 달리 대중 집회에 대한 국민의 열기가 고조되지 않음으로써 야당 바람 조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였다.

3) 민주당

가) 후보자 공천

민주당은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조직과 자금력에 있어 민주자유당과 신민주연합당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인 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인물 대결로 선거전을 끌어간다는 기본방침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자 공천에서부터 전문직 능인 중심으로 공천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1991년 3월 말 당선 가능성과 자질을 기준으로 폭넓게 후보자를 물색하라는 후보선발 지침을 지구당에 내려 보냈다.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기존 68개 지구당의 개편대회와 44개 지구당의 창당대회를 통해 민주당 바람을 확산시키는 한편 개편대회 및 창당대회에서 후보를 선출해 일찌감치 지명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 선거전까지 지구당 조직을 150개로 확대하고 지구당 조직이 없는 곳은 시·도별로 관리를 맡아 모두 600여 명의 후보를 공천해 250명 정도를 당선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천신청 과정을 거치면서 입후보 희망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구당 위원장의 재량으로 지역 내 지명도 및 당선가능성 있는 인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지시하였다. 특히 후보자 공천을 통하여 민주당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참신한 인물 영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후보자 공천 및 외부인사 영입작업을 진행한 민주당은 5월 30일 1차 공천자 426명을 확정 발표하였다. 발표된 공천자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호남지역 공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취약성을 보였다. 특히 전북의 경우에는 공천자가 1명도 없었고, 광주·전남·제주에도 각각 1명의 후보만을 공천하는 데 그쳤다. 이후 민주당은 5월 31일 52명, 6월 3일 27명의 추가 공천자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민주당 공천으로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470명이었다.

나) 선거 대책 및 전략

민주당은 시·도의회의원선거를 제2창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에 참패하면 군소정당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가지고 선거에 임하였다. 선거에 앞서 민주당은 1차적으로 조직의 취약점을 극복해야 했다. 이에 따라 120여 개 지구당 창당을 4월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를 지명하는 등 조기선거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4월 16일 총재단회의를 열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부영 부총재, 대책본부장에 이철 사무총장, 기획위원장에 장기욱 인권위원장을 각각 임명하였다.

민주당의 기본전략은 전문 직능인 중심으로 후보자를 공천하여 인물대결로 선거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었다.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자유당의 금품수수와 신민주연합당 의원들의 탈당사태의 영향으로 젊은 층을 비롯한 상당수 유권자가 두 정당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으로 판단하고 각종 연설회 및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 젊은 층의 투표기권 방지에 주력하였다. 한편 3당 합당 이후 정당이 참여하는 첫 전국 선거인만큼 시·도의회의원선거에 민주자유당에 대한 ‘찬반투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민주자유당 심판, 정치 불신 해소, 희망과 대안 제시, 적극적인 선거 참여, 공명선거 실현 등을 시·도의회의원선거의 4대 목표로 내세우고 신생 소수정당의 특성을 살린 강도 높은 대야투쟁을 통한 선명성 부각과 당세 확장에 주력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새 정치와 개혁’ ‘도덕정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타 정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신생정당으로서의 조직과 열악한 당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선거쟁점을 ‘돈과 양심의 대결’로 몰고 가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기존 정치인들에 비해 깨끗한 이미지를 지닌 학생운동권 출신의 20대 후보를 상당수 공천한 점 등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깨끗한 한 표’를 호소하였다. 민주당은 이러한 후보자 차별화 전략을 통하여 서울에서 3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부산·영남지역에서는 민주자유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규탄하여 민심의 이탈을 유도하고, 반(反)민주자유당 전선이라는 기본구도 속에 신민주연합당과의 차별성을 내세워서 독자적인 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다) 선거공약

민주당은 1991년 5월 29일 시·도의회의원선거 공약 및 정책을 확정하고 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정책대결 의지를 과시하였다. 제시된 공약은 신민주연합당과 민중당 등 다른 야당과 유사하게 치안, 물가, 부동산, 농촌 문제 등 현 정권의 실정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영역의 과감한 개혁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예술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유선방송 허가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어 지역정보체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또 골프장 건립 금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방자치 보장을 위해 행정개혁위원회, 예산제도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를 도입하고 재벌기업의 금융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신민주연합당의 공약과 맥을 같이하였다. 농업정책으로는 농업에 대한 획기적 투자,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한 중과세, 유통구조 조정에 따른 농산물 값 안정 등을 제시하였다.

라) 선거결과

시·도의회의원선거를 통해 제2의 창당이라는 도약을 기대한 민주당은 총 470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14.3%를 득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석 확보에 있어서는 전체 의석의 2.4%인 2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25.1%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다득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따라 단 1석만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보였다. 한편 선전을 기대한 서울에서도 전체 132석 중 단 1석만 차지하는 등 저조한 성적을 보여 신민주연합당을 대신하는 대체 야당의 입지 확보에도 실패하였다.

선거 이후 민주당의 이부영 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 패배에 대하여 “투표율 저조와 창당 과정 중인 미니 정당으로서의 조직력 부족에 민주자유당의 거대한 금권 타락선거가 겹쳐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같은 당 장식화 대변인은 “분열된 야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대한 당내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4) 민중당

민중당은 수도권과 공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0여 명을 공천하여 제도권 정당으로서의 정착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1991년 4월 1일 이우재 상임위원을 상임대표로 하는 ‘지자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정의실천협의회, 한국노총 등 사회단체들과 후보자 인선을 협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구당 위원장들을 후보자로 내세워 의석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민중당은 5월 30일 40명의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대부분 노동운동가·농민·여성운동가 출신이었다. 그러나 인물난으로 인하여 애초 설정한 목표의 절반도 공천하지 못하면서 목표와 현실 간의 한계를 보였다. 또 민중당은 공천자 40명 중 30대는 23명이었으나 50대는 단 2명으로 민주자유당·신민주연합당·민주당에 비해 젊은층의 공천비율이 높았다.

민중당의 선거전략은 당의 노선과 진보정당의 창당 배경 등을 강연 등을 통해 직접 대중에게 알리고 과격한 이미지를 불식하는 데 진력하는 것이었다. 민중당 후보가 지역주민에게 가장 현신적이며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다는 ‘일꾼 체질’을 강조하였다. 서울 은평·동작·도봉구 등과 영남 공단지역, 강원 태백지역 등 자당 후보가 밀집한 지역을 집중 지원해 공천 후보 70% 이상을 당선시켜 진보정당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이었다. 공단지역 및 도시빈민집단 거주 지역에서는 ‘이념’을 내세워 당선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우재 상임대표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경인지역, 영남 공단지역 등 후보 밀집지역을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전국 순회 시국강연회를 병행해 민중당 지지를 넓혀가고자 하였다.

민중당은 금융실명제 실시, 토지 관련 세율 인상 등을 개혁공약의 근간으로 삼았다. 여기에 영구임대주택 대량 공급, 협동조합을 통한 생산유통 판매망 구축,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국유화 등 혁신적인 공약을 제시하였다. 또 경찰의 실질적인 중립화를 위해 시·도지사 소속 아래 시·도 공안위원회를 두어 경찰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발안권과 소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중당은 군소정당의 현실적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 선거 결과 강원지역에서 단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으며, 모두 12만 5,488표를 얻어 전체 유효투표수의 0.8%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3. 제14대 국회의원선거(1992. 3. 24)

1992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13개 지역구가 증설되어 237개 지역선거구와 13석이 줄어든 62석의 전국구 등 총 299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민주자유당·민주당·통일국민당·신정당·공명민주당·민중당 등 총 6개 정당이 참여하여 826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으며, 무소속 후보자 226명을 포함해 총 1,052명이 지역선거구에 입후보하였다. 그러나 등록무효·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1,047명이 경쟁을 벌였다. 전국선거구에는 각 정당이 총 154명의 후보를 공천하였다.

가. 민주자유당

1) 후보자 공천

민주자유당은 1992년 1월 17일부터 5일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설 후보자 공천 신청을 접수하면서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하였다. 접수마감 결과 전국 237개 지역구에 비공개 신청 26명을 포함하여 총 719명이 공천을 신청하여 평균 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5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 전남이 1.6 대 1의 최저 경쟁률을 보여 선호지역에 대한 편차가 명확히 나타났다.

공천신청 접수를 마친 후 민주자유당은 바로 다음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주일간의 공천심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지분문제 등 당내 계파 간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1월 27일까지 지연되었다. 결국 민주자유당은 계파지분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김윤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1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심사위원회에는 나웅배 정책위원회 의장, 이자현 원내총무, 최형우 정무1장관 등 당 3역과 서정화 김용채 김덕룡(서울) 김용태(대구) 이한동(경기) 심명보(강원) 이춘구(충북) 김용환(대전·충남) 임방현(전북) 지연태(광주·전남) 정순덕(경남) 등 지역 대표 11명이 참여하였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서울 올림픽호텔에서 4일 동안 합숙 심사를 실시해 1992년 1월 30일 210개 지역구의 후보를 사실상 확정하였다. 경합지역 심사 과정에서 계파 간 이견이 맞서는 곳은 복수로 추천해 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에 맡긴다는 방침을 정하고 심사작업을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를 최종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세 최고위원의

간담회에서 김종필 최고위원이 반발하여 협의가 중단되는 등 공천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주례회동과 김종필·박태준 두 최고위원이 합석하는 4자 회동을 통해 1월 31일 공천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공천심사를 마친 민주자유당은 1992년 2월 1일 전국 237개 전 지역구의 공천자 명단을 일괄 발표하였다. 공천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은 당선 가능성, 도덕성, 참신성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천심사 결과 수서사건 및 뇌물 외유 등 각종 비리사건²⁵⁾에 연루된 일부 현역의원들이 공천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역구 공천에서 탈당의원을 제외한 현역의원 교체율은 159명 가운데 24명으로 약 15%에 그쳤다. 또한 전체적으로도 237개 지구당 가운데 58곳만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어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평균 교체율 약 40%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3당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민주자유당의 소위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계파 간 지분배분에 치중한 결과였다. 결국 민주자유당 공천결과는 민정·민주·공화 3계파의 이해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할 수는 있었으나 자질이 떨어지는 현역의원들을 신진인사로 대폭 교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야만 하였다.

한편 지역구 공천이 계파 지분 및 현역의원 위주의 공천으로 참신성과 도덕성이라는 애초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여론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선거 공천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신진인사를 많이 기용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심사 과정을 거쳐 1992년 3월 5일 당무회의에서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전국선거구 후보자 54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공천 결과 전국선거구 후보 상위 10번 이내에는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박태준 최고위원, 김재광 국회부의장, 노재봉 전 총리, 권익현 전 민주정의당 대표, 이만섭 전 한국국민당 총재, 정석모 전국선거구 의원, 안무혁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이원조 전국선거구 의원, 최병렬 노동부 장관이 포함되었다.

25) 관련 내용은 4장 2절 원내 활동 중 1991년도 참조.

민주자유당은 전국선거구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집권당의 정치력 강화, 직능대표 영입을 통한 국민 대표성 확보, 전문인사 기용, 지역 대표성 보완, 당료 배려 등을 인선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전국선거구 후보 공천 결과에 대해서도 직능대표 발탁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전국선거구 공천제도에 대한 개선론이 당내·외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전국선거구 후보 공천이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인선 내용 또한 정치권의 물갈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결과였다. 결국 민주자

민주자유당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자

구분	공천자	비고	
전국	김영삼, 박태준, 김재광, 노재봉, 권익현, 이만섭, 정석모, 안무혁, 이원조, 최병열, 김종인, 김광수, 박재홍, 강춘자, 정시채, 최은지, 강용식, 김영수, 김영진, 강신욱, 서상목, 윤태균, 박구일, 곽영달, 이명박, 이환의, 강인섭, 김동근, 최상용, 주양자, 이현수, 노인도, 구천서, 조용직, 구창림, 박근호, 유성환, 이재명, 정옥순, 윤원중, 김찬두, 김사정, 이연석, 이민현, 김재석, 이수담, 배길량, 김정숙, 김현배, 김무성, 박승용, 진경탁, 허세욱, 김영순	번호순	
지역구	서울	종로구(이종찬), 중구(장기홍), 용산구(서정화), 성동구갑(이세기), 성동구를(김도현), 성동구병(박용만), 동대문구갑(노승우), 동대문구를(김영구), 중랑구갑(이순재), 중랑구를(김충일), 성북구갑(김정례), 성북구를(강성재), 도봉구갑(신오철), 도봉구를(김규원), 도봉구병(양경자), 노원구갑(백남치), 노원구를(김용재), 은평구갑(오유병), 은평구를(박완일), 서대문구갑(강성모), 서대문구를(안성혁), 마포구갑(박명환), 마포구를(박주천), 양천구갑(박범진), 양천구를(최후집), 강서구갑(이원중), 강서구를(남재희), 구로구갑(김기배), 구로구를(유기수), 구로구병(이신행), 영등포구갑(김명섭), 영등포구를(나용배), 동작구갑(서청원), 동작구를(유용태), 관악구갑(김우연), 관악구를(김수환), 서초구갑(이중률), 서초구를(김덕룡), 강남구갑(황병태), 강남구를(김만제), 송파구갑(김우석), 송파구를(김병태), 강동구갑(김동규), 강동구를(김중위)	
	부산	중구(정상천), 서구(곽정출), 동구(허삼수), 영도구(김형오), 부산진구갑(정재문), 부산진구를(김정수), 동래구갑(박관용), 동래구를(최형우), 남구갑(허재홍), 남구를(유홍수), 북구갑(문정수), 북구를(신상우), 해운대구(김운환), 사하구(이재국), 금정구(김진재), 강서구(송두호)	
	대구	중구(유수호), 동구갑(김복동), 동구를(박준규), 서구갑(문희갑), 서구를(강재섭), 남구(이정무), 북구(김용태), 수성구갑(박철언), 수성구를(이치호), 달서구갑(김한규), 달서구를(최재욱)	
	인천	중구·동구(서정화), 남구갑(심정규), 남구를(이강희), 남동구(강우혁), 북구갑(정정훈), 북구를(이승윤), 서구(조영장)	
	광주	동구(조규범), 서구갑(이영일), 서구를(문준식), 북구갑(지대섭), 북구를(차상록), 광산구(김용호)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부 록

지 역 구	대전	동구갑 (남재두), 동구을 (윤성환), 중구 (김홍만), 서구 · 유성구 (박충순), 대덕구 (이인구)	
	경기	수원시권선구갑 (김인영), 수원시권선구을 (남평우), 수원시정안구 (이병희), 성남시수정구 (이대엽), 성남시중원구(오세웅), 의정부시 (김문원), 안양시갑 (이인제), 안양시을 (신하철), 부천시중구갑(김길홍), 부천시중구을 (임무웅), 부천시남구 (최기선), 광명시 (김병용), 평택시 · 송탄군 (김영광), 동두천시 · 양주군 (임사빈), 안산시 · 용진군 (장경우), 과천시 · 의왕시 (조경택), 군포시 · 시흥시 (황철수), 구리시 (전용원), 미천시 · 남양주군 (이성호), 여주군 (정동성), 평택군 (이지현), 오산시 · 화성군 (정창현), 파주군 (박명근), 고양시 (이택석), 하남시 · 광주군 (정영훈), 포천군 · 연천군 (이한동), 양평군 · 가평군 (안천희), 이천군 (이영문), 용인군 (이웅희), 안성군 (이해구), 김포군 · 강화군 (정해남)	
	강원	춘천시 (한승수), 원주시(함종환), 강릉시(최종원), 동해시(홍희표), 태백시(류승규), 명주군 · 양양군(김문기), 삼척시 · 삼척군(김일동), 홍천군(이응선), 춘천군 · 양구군 · 인제군(이민섭), 원주군 · 횡성군(박경수), 영월군 · 평창군(심명보), 정선군(박우병), 속초시 · 고성군(정재철), 화천군 · 철원군(김재순)	
	충북	청주시갑 (정종택), 청주시을 (임광수), 충주시 · 증원군 (이중근), 제천시 (이춘구), 청원군 (신경식),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박준병), 괴산군 (김종호), 진천군 · 음성군 (민태구), 제천군 · 단양군 (안영기)	
	충남	천안시 (정일영), 공주시 · 공주군 (윤재기), 대천시 · 보령군 (김용환), 온양시 · 아산군 (황명수), 금산군 (유한열), 연기군 (임재길), 논산군 (김제태), 부여군 (김종필), 서천군 (이규규), 청양군 · 홍성군 (조부영), 예산군 (오장섭), 서산시 · 서산군 · 태안군 (박태권), 당진군 (김현욱), 천안군 (함석재)	
	전북	전주시완산구(이연택), 전주시덕진구(임방현), 군산시(김현욱), 이리시(공천섭), 정주시 · 정읍군(정원조), 남원시 · 남원군(양창식), 완주군(신동욱),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황인성), 임실군 · 순창군(최용안), 고창군(이호중), 부안군(고명승), 김제시 · 김제군(이건식), 옥구군(원형연), 익산군(조남조)	
	전남	목포시(배종덕), 여수시(김신규), 순천시(김우경), 나주시 · 나주군(나창주), 여천시 · 여천군(유길중), 담양군 · 장성군(이상하), 곡성군 · 구례군(심상준), 동광양시 · 광양군(이도선), 송주군(유경현), 고흥군(지연태), 보성군(이웅식), 화순군(구용삼), 장흥군(이중환), 강진군 · 완도군(김식), 해남군 · 진도군(김기식), 영암군(윤철영), 무안군(안희석), 함평군 · 영광군(조기상), 신안군(김복수)	
	경북	포항시(이진우), 경주시(서수중), 김천시 · 금릉군(박정수), 안동시(오경의), 구미시(박세직), 영주시 · 영풍군(김진호), 영천시 · 영천군(정동윤), 상주시 · 상주군(김근수), 점촌시 · 문경군(신영국), 달성군 · 고령군(구자춘), 군위군 · 선산군(김윤환), 의성군(김동권), 안동군(류돈우), 청송군 · 영덕군(황병우), 영암군 · 봉화군(김신조), 영일군 · 울릉군(이상득), 경주군(황윤기), 경산시 · 경산군 · 청도군(이영창), 성주군 · 칠곡군(장영철), 예천군(유학성), 울진군(김중권)	
	경남	창원시갑(김종하), 창원시을(황낙주), 울산시중구(김태호), 울산시남구(심완구), 울산시동구(서정의), 마산시합포구(백찬기), 마산시회원구(강삼재), 진주시(조만후), 진해시 · 창원군(배영국), 통영시 · 통영군 · 고성군(정순덕), 삼천포시 · 사천군(김기도), 김해시 · 김해군(김영일), 진양군(안병규), 의령군 · 함안군(정동호), 창녕군(신재기), 밀양시 · 밀양군(신상식), 양산군(나우연), 울산군(김재겸), 장승포시 거제군(김봉조), 남해군 · 하동군(박희태), 산청군 · 함양군(노인환), 거창군(이현택), 합천군(권해욱)	
	제주	제주시(고세진), 북제주군(이기빈), 서귀포시 · 남제주군(강보성)	

유당의 전국선거구 후보 공천은 지역선거구 후보 공천에 이어 다시 한번 정치적 이해 타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2) 선거대책 및 전략

민주자유당은 1992년 2월 25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김윤환 사무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하였다. 선거대책본부는 부분부장에 강용식 총리비서실장, 김영진 전 내무부 차관, 서상목 의원을 각각 임명하고 김윤환 이종찬 이춘구 이한동 심명보 정순덕 나옹배 이자현 이도선 최형우 박준병 김정수 김용채 김용환 등 의원 14명으로 선거대책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파 간 알력조정과 자문역을 담당토록 하였다.

민주자유당은 60% 의석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통일에 대비한 정치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내 안정의석 확보를 호소한다는 기본전략과 함께 당의 이미지 제고, 인물 본위의 선거캠페인, 부동층 흡수, 차별한 선거 분위기 유도 등을 선거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야당의 통합바람을 차단하고 인물과 조직을 기반으로 한 지역구 차원의 개별적 선거운동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제 부활, 남북 합의서 채택 등 민주화와 통일 분야에서의 제6공화국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권당의 안정 의석 확보가 불가결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야당 공세를 차단한다는 전략을 구상하였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24시간 선거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민주자유당은 전국 각 지역의 초반 선거 상황을 중간 점검하여 권역별 선거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득표활동에 돌입하였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서정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수도권대책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가동하였다. 또한 호남지역 공략에 있어서는 '호남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전남지역은

전략적으로 후순위에 두는 대신 전북지역의 경우 강현욱 전 경제기획원 차관 등 주요 인사를 투입하는 이원적 전략을 추진하였다. 한편 수도권 이외 지역은 김영삼·박태준·김종필 세 최고위원이 권역별 분담체계를 구축하였다.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국회의원선거 국면을 총괄 진두지휘하는 한편 아성인 부산·경남지역에서 완승을 목표로 진력하였다. 박태준 최고위원은 대구·경북에서, 김종필 최고위원은 대전·충청지역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는 전략으로 각각 선거에 임하였다.



▲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연설회(1992년 3월 19일).

3) 선거공약

민주자유당은 1992년 2월 18일 총 50개 항 180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제14대 국회의 원선거 공약을 제시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당 민주화와 국회기능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와 제14대 국회 구성 직후 관련법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 검토, 행정규제완화 특위 구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1996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1,000달러 달성, 토지공개념의 보완·발전, 금융실명제의 단계적 실시, 매년 50만 호 이상 주택 건설, 지방중소기업육성법 제정

등을 내세웠다. 사회 분야에서는 예비군훈련 면제 대상의 대폭 확대 및 훈련택일제 시행, 강제 임의동행과 밀폐수사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노동관계법 정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민주자유당의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은 집권당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민원 상 불편이나 지역경제 발전의 세밀한 부분 등을 개선사항으로 내세움으로써 '민원사항 개선'에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지역개발을 앞세운 '선심성' 공약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반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고 주요정책 또한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수사적 나열에 그친 부분이 많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경제 분야 공약은 상당수가 정부의 제7차 5개년계획에 이미 반영된 것이어서 정당의 공약이라기보다 당연한 정부시책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또 정치적 도덕성을 높이거나 민생현안 해결, 국민기본권 신장 등 인간다운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는 구체적 방안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자칫 구호에 그치는 공약이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정치 분야에서는 1992년으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사회 안정을 이유로 실시시기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주장하였고, 정치자금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국고보조금제도와 후원회제도에 대한 보완을 주장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와 기업후원회 및 지정기탁금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과는 대조되는 것이었다.

한편 보건·교육·주택 등 국민생활과 관련한 규제 342건, 인허가·조세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 420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기로 한 공약과 해마다 1억 5,000만 건 발급하는 증명민원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공약 등은 일반인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민생치안 문제에서 순찰력 강화, 조직폭력배 완전 검거, 전국 동시 수배·수사체계 구축, 주민자율방범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각종 교통표지판 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교통경찰 5,000명 이상 증원, 대대적인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등 '미시적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약 또한

정부투자의 우선순위 조정,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주장하는 야당의 ‘거시적 정책’ 접근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민주자유당은 교직원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모두 인정하지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만을 인정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학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 또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기는 방향의 근본적인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민주당과는 차이점을 보였다.

노사 분야에 있어서는 복수노조,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 등을 다루기 위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6급 이하 공무원노조 인정, 노조설립 자유 보장, 제3자 개입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개혁적 측면에서 대조를 보였다.

민주자유당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주요공약

구분	공약내용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당직 및 선거후보자 선출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 ○지방공사 및공단 설립과 지역개발금융기금법 제정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420건에 대한 개선 ○공무원의 명예퇴직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확대 및 후원회제도 보완 ○지방행정의 중앙통제 약화 ○일부 국제재원 지방세원으로서의 이양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 420건에 대한 개선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1천달러 달성 ○토지가격심사제도 폐지 ○부동산등기 의무화 실시 ○농지·산지 전용절차 간소화 ○2000년대까지 GNP 5%를 과학기술에 투자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지방중소기업육성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6년까지 1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공제기금 신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2억 원으로 확대 ○금리자유화의 단계적 추진 ○상속·증여세제 강화 ○세원에 대한 전산관리체제 확충
통일·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 구축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평화시 건설 ○남북협력기금을 9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통일기금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산~설악산 연계 국제관광단지 조성 ○경의선·경원선·금강선 등의 철로망 복원 ○남북간 항공기의 항로 ○남북평화협정 체결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년대 매년 50만채 이상 주택건설 ○임대주택산업의 육성 ○주택금융규모 확대,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 ○96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78%에서 85%로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대책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2001년까지 수도권 75%, 부산 40%, 대구·광주·인천·대전 25%로 확대 ○액화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추진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의료분쟁조정기금 및 의료분쟁조정위 설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년까지 실업계 고교생 100만 명으로 확대 ○기술대학제도 신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특례제도 개선 ○독자적인 교원 보수체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정부와 교원단체의 교섭·협약 규정 조속 제정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국민학교 전담교사제 실시 ○국민학교 학교급식 97년까지 전면실시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년부터 고용보험제 실시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장기근속 무주택 생산직 근로자 주택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위원회의 확대·개편 및 전문성 제고 ○노사분쟁에 대한 노동행정의 중립성·공평성 제고
기타	○교통경찰 96년까지 현재보다 5천명 이상 증원	○사업용 차량 운임수준의 적정화

4) 선거결과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민주자유당은 지역선거구 116석, 전국선거구 33석을 각각 차지하여 과반수에 1석 모자라는 149석을 획득함으로써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3당 합당 당시 보유했던 221석에 비하면 72석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선거에 앞서 목표로 설정한 180석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제13대 국회에 이어 다시 ‘여소야대’ 정국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역별로도 16개 선거구 중 15개를 석권한 부산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참패를 당하였다. 서울지역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44개 선거구 중 반수를 넘는 25석을 획득하였지만 민주자유당은 16석을 얻는 데 그쳤다. 또 전통적으로 여당의 강세지역으로 평가된 강원 및 충남·충북지역의 37개 선거구에서도 반수를 조금 넘는 21석을 차지하였다. 민주자유당의 아성인 대구·경북의 32개 선거구에서는 무려 10개, 경남의 23개 선거구에서 7개를 각각 통일국민당과 무소속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전략지역으로 설정한 전북에서 남원과 진안·무주·장수 선거구 등 두 곳에서 당선자를 내 호남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두었다.

민주자유당의 패배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었으나 계속된 계파 싸움과 잘못된 공천, 농정 및 경제정책의 실패, 안기부 직원의 선거 개입과 군 부재자투표 부정시비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기성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파괴하고 거대여당을 출현시킨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과 참신한 인물을 향한 기대심리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민주자유당에 패배를 안겨준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민주자유당 제14대 국회의원 당선자

구분	당선자 수	당선자 성명(가나다 순)
지역구	116	강삼재, 강신조, 강우혁, 강재섭, 광정출, 구자춘, 권해욱, 금진호, 김기도, 김기배, 김덕룡, 김동권, 김문기, 김복동, 김봉조, 김영광, 김영구, 김영일, 김용채, 김용태, 김용환, 김운환, 김윤환, 김인영, 김재순, 김정수, 김종필, 김종하, 김종호, 김종위, 김진재, 김채겸, 김한규, 김형오, 나오연, 나웅배, 남재두, 남평우, 노승우, 노인환, 류돈우, 문정수, 민태구, 박경수, 박관용, 박명근, 박명환, 박범진, 박세직, 박우병, 박정수, 박주천, 박준규, 박준병, 박철언, 박희태, 배명국, 백남치, 서수중, 서정화, 서정화, 서정원, 송두호, 신경식, 신상식, 신상우, 신재기, 심명보, 심정구, 안찬희, 양창식, 오세음, 오장섭, 유수호, 유승규, 유학성, 유희수, 이금규, 이민식, 이상득, 이성호, 이세기, 이순재, 이승윤, 이영문, 이영창, 이응희, 이인제, 이자현, 이종근, 이종찬, 이춘구, 이택석, 이한동, 이해구, 임사빈, 장경우, 장영철, 정동호, 정상천, 정순덕, 정영훈, 정재문, 정재철, 정창현, 조부영, 조영장, 최재욱, 최형우, 함석재, 허삼수, 허재홍, 황낙주, 황명수, 황윤기, 황인성
전국구	33명	강신욱, 강용식, 강인섭, 강춘자, 광영달, 구천서, 권익현, 김광수, 김동근, 김영삼, 김영수, 김영진, 김재광, 김종인, 노인도, 노재봉, 박구일, 박재홍, 박태준, 서상목, 안무혁, 윤태균, 이만식, 이명박, 이원조, 이현수, 이환의, 정석모, 정시제, 주양자, 최병렬, 최상용, 최운지

나. 민주당

1) 후보자 공천

민주당은 1992년 초부터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중앙당과 지구당의 모든 체제를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선거전략 수립과 공약 개발을 위해 국회의원선거실무기획단과 정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동시에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1992년 1월 중순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선거준비 과정은 통합에 따른 계파 간 지분문제, 공천탈락자의 탈당과 만류 등 공천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으면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애초 1992년 2월 1일 201명의 공천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고질적인 계파싸움 끝에 우선 178명의 명단을 발표하는 데 그쳤고, 2차로 2월 6일 29명의 공천자를

추가로 발표하였다.

신민계와 민주계 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된 공천심사 과정에서 양 계파는 지분확보에만 급급하였으며, 일방의 흑색모함이 난무하는 속에 영입인사가 탈락하는 등 부정적 양상을 보이면서 애초의 개혁의지가 상당 부분 실종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당 수뇌부가 통합야당의 이미지 일신을 위해 현역 의원의 30~40% 교체를 공언해 왔음에도 계파 간 갈등과 마찰 속에 20% 미만의 현역의원만이 탈락하였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 과정이 계속되면서 결국 계파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경합지역 등에 대하여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의 절충을 통해 추가로 공천자를 확정하면서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225개의 지역구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 결과에 대해 인물난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소위 ‘구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142명으로 공천자 중 79%를 차지하면서 통합야당으로서의 참신한 면모, 특히 개혁적 이미지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비판이었다. 다만 부분적으로 과거 운동권 출신, 재야인사, 변호사 및 전직 관료 등 외부인사들을 영입하여 기존 정치권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2년 3월 10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전국선거구 후보자 54명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당선권으로 설정한 후보자 명부 24번까지는 각각 1번과 2번을 배정받은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를 포함해 당료 8명과 영입자 8명, 특별당비 납부자 8명을 배치하였다. 애초 전국선거구 당선권은 21명으로 설정되었으나 24명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영입인사, 특별당비 납부자, 당 기여자로 나누어 각각 7명을 배정키로 한 방침을 각각 8명으로 증원해 배치하였다. 그러나 총 54명의 전국선거구 후보자 중 하위 순번에 배치된 일부 당직자가 전국선거구를 고사함으로써 최종 등록자는 50명이 되었다.

영입인사 가운데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 나병선 전 국방대학원장, 장준익 전 육사 교장 등 군 출신 인사들이 상위 순번에 배치되었다. 또 직능대표 성격으로 장재식

전 주택은행장(금융계), 박은태 미주산업 회장(재계), 양문희 의학협회 부회장(의학계), 김말용 전 최고위원(노동계), 박지원 전 뉴욕한인회장(재미교포) 등을 공천하였다. 특별당비 납부자는 신진욱 전 의원, 김옥천 무등산관광호텔 사장, 국종남 대일필름 대표, 강희찬 삼양실업 대표 등으로 이들은 당선 안정권에 해당하는 7~15번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전국선거구 공천은 관례상 전국선거구 후보자명부를 자기 몫으로 여겨온 고참 당료들이 영입자·특별당비 납부자에게 밀려 소외되는 결과가 파생되면서 당내갈등을 빚었으며, 직능대표 명분으로 영입한 공천자 중 상당수는 직능보다 돈과 연결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민주당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자

구분	공천자	비고	
전국구	김대중, 이기택, 강창성, 장재식, 이우정, 나병선, 신진욱, 김옥천, 장준익, 이동근, 국종남, 김충현, 강희찬, 박정훈, 박일, 김옥두, 박은태, 장기욱, 김말용, 양문희, 박지원, 이장희, 남궁진, 배기선, 최병욱, 장정근, 김유진, 서호석, 이준형, 이경배, 김대성, 최희원, 김삼용, 김방임, 장광근, 박명서, 한원석, 김용덕, 안상임, 정양숙, 고재득, 고희길, 조재환, 조상환, 조만진, 박천국, 최전권, 김창희, 김병욱, 김기석	번호순	
지역구	서울	종로구(김경재), 중구(정대철), 용산구(한영애), 성동구갑(강금식), 성동구를(조세형), 성동구병(강수림), 동대문구갑(최훈), 동대문구를(고광진), 중랑구갑(이상수), 중랑구를(김덕규), 성북구갑(이철), 성북구를(신계륜), 도봉구갑(유인태), 도봉구를(김원길), 도봉구병(조순형), 노원구갑(고영하), 노원구를(임채정), 은평구갑(손세일), 은평구를(이원형), 서대문구갑(김상현), 서대문구를(임춘원), 마포구갑(김용술), 마포구를(김현구), 양천구갑(양성우), 양천구를(김영배), 강서구갑(박계동), 강서구를(최두환), 구로구갑(정병원), 구로구를(이경재), 구로구병(김병오), 영등포구갑(장석화), 영등포구를(김민석), 동작구갑(박문수), 동작구를(박식), 관악구갑(한광욱), 관악구를(이해찬), 서초구갑(김호산), 서초구를(안동수), 강남구갑(이중재), 강남구를(홍사덕), 송파구갑(김희원), 송파구를(김종원), 강동구갑(이부영), 강동구를(장춘준)	
	부산	중구(조상태), 서구(최기복), 동구(노무현), 영도구(김정길), 부산진구갑(이홍록), 부산진구를(황백현), 동래구갑(정인조), 동래구를(노경규), 남구갑(송정섭), 남구를(손태인), 북구갑(안경률), 북구를(배갑상), 해운대구(최달웅), 사하구(김영백), 금정구(김재규), 강서구(오세호)	
	대구	중구(이강철), 동구갑(임대윤), 동구를(도영화), 서구갑(백승홍), 서구를(서중현), 남구(김진태), 북구(정병철), 수성구갑(권오선), 수성구를(송효익), 달서구갑(이상섭), 달서구를(이광수)	
	인천	중구·동구(신용석), 남구갑(명화섭), 남구를(하근수), 남동구(이호웅), 북구갑(송선근), 북구를(이병현), 서구(조철구)	
	광주	동구(신기하), 서구갑(정상용), 서구를(임복진), 북구갑(박광태), 북구를(이길재), 광산구(조홍규)	
	대전	동구갑(김현), 동구를(송천영), 중구(류인범), 서구·유성구(이희원), 대덕구(김원웅)	

지 역 구	경기	수원시권선구갑 (김정태), 수원시권선구을 (손민), 수원시장안구 (박만원), 성남시수정구 (이운수), 성남시중원구 (조성준), 의정부시 (문희상), 안양시갑 (이석용), 안양시을 (이석현), 부천시중구갑 (안동선), 부천시중구을 (원혜영), 부천시남구 (박규식), 광명시 (최정택), 평택시 · 송탄군 (장기천), 동두천시 · 양주군 (김형광), 안산시 · 옹진군 (김동현), 과천시 · 의왕시 (이희숙), 군포시 · 시흥시 (제정규), 구리시 (조정무), 미금시 · 남양주군 (신동균), 여주군 (이규택), 평택군 (서화택), 오산시 · 화성군 (정동호), 파주군 (이준희), 고양시 (이교성), 하남시 · 광주군 (곽옥식), 포천군 · 연천군 (손광운), 양평군 · 가평군 (조원석), 이천군 (황규선), 용인군 (나진우), 안성군 (오우영), 김포군 · 강화군 (김선홍)	
	강원	춘천시 (유남선), 원주시 (박영록), 강릉시 (함영희), 동해시 (지일웅), 태백시 (김성태), 명주군 · 양양군 (최옥철), 삼척시 · 삼척군 (김재철), 홍천군 (장만준), 춘천군 · 양구군 · 인제군 (허경구), 원주군 · 횡성군 (김천희), 영월군 · 평창군 (김경태), 정선군 (안영배), 속초시 · 고성군 (함종빈), 화천군 · 철원군 (김철배)	
	충북	청주시갑 (장한량), 청주시을 (정기호), 충주시 · 증원군 (정기영), 제천시 (권운성), 청원군 (신연관),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최국), 괴산군 (김동관), 진천군 · 음성군 (허택), 제천군 · 단양군 (박주진)	
	충남	천안시 (오대영), 공주시 · 공주군 (윤원중), 대천시 · 보령군 (백성남), 온양시 · 아산군 (이진구), 금산군 (송준빈), 연기군 (김준희), 논산군 (김형중), 부여군 (김택수), 서천군 (이상익), 청양군 · 홍성군 (홍문표), 예산군 (김성식), 서산시 · 서산군 · 태안군 (한영수), 당진군 (백종길), 천안군 (김종택)	
	전북	전주시완산구 (장영달), 전주시덕진구 (오탄), 군산시 (채영석), 이리시 (이협), 정주시 · 정읍군 (김원기), 남원시 · 남원군 (조찬형), 원주군 (김태식), 진안 · 무주 · 장수군 (오상현), 임실 · 순창군 (홍영기), 고창군 (정권환), 부안군 (이희천), 김제시 · 김제군 (최락도), 옥구군 (강철선), 익산군 (최재승)	
	전남	목포시 (권노갑), 여주시 (김충조), 순천시 (허경만), 나주시 · 나주군 (김장근), 여천시 · 여천군 (신순범), 담양군 · 장성군 (박태영), 곡성군 · 구례군 (황의성), 동광양시 · 광양군 (김명규), 승주군 (조순승), 고흥군 (박상천), 보성군 (유준상), 화순군 (홍기훈), 장흥군 (이영권), 강진군 · 원도군 (김영진), 해남군 · 진도군 (김봉호), 영암군 (유인학), 무안군 (박석무), 함평군 · 영광군 (김인근), 신안군 (한화갑)	
	경북	포항시 (박기환), 경주시 (이상두), 김천시 · 금릉군 (정정문), 안동시 (김성현), 영주시 · 영풍군 (우성구), 영천시 · 영천군 (이육만), 달성군 · 고령군 (김창문), 의성군 (이왕식), 안동군 (권혁구), 청송군 · 영덕군 (박종욱), 영양군 · 봉화군 (류상기), 영일군 · 울릉군 (김병구), 경주군 (김호길), 경산시 · 경산군 · 청도군 (김경윤), 성주군 · 칠곡군 (도호기), 예천군 (안희대), 울진군 (장소택)	
	경남	창원시갑 (이상익), 창원시을 (성중대), 울산시중구 (송철호), 울산시남구 (서동우), 마산시회원구 (박창규), 진주시 (김재천), 진해시 · 창원군 (김종준), 통무시 · 통영군 · 고성군 (홍순우), 삼천포시 · 사천군 (유홍재), 김해시 · 김해군 (이광희), 진양군 (강갑중), 의령군 · 함안군 (강정주), 창녕군 (박상근), 밀양시 · 밀양군 (이태권), 울산군 (권기술), 장승포시 · 거제군 (윤병한), 남해군 · 하동군 (이수중), 산청군 · 함양군 (정영모), 거창군 (백신중), 합천군 (공정무)	
	제주	제주시 (양승부), 서귀포시 · 남제주군 (강승훈)	

2) 선거대책 및 전략

민주당은 1992년 2월 20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대책기구 인선을 확정해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부위원장에는 이우정 박영록 박영숙 허경만 조순형 김현규 이부영 등 최고위원 7명을 선임하였다. 또 선거대책본부에는 이기택 공동대표를 본부장으로 하고 총무위원장 조승형, 조직위원장 박일, 정책위원장 장기욱, 홍보·유세위원장 유종근, 대변인에 한광옥을 각각 선임하였다. 시·도지부별로는 서울 조세형, 부산 김정길, 대구 백승홍, 인천 신용석, 광주 신기하, 대전 유인범, 경기 이석용, 강원 박영록, 충북 허탁, 충남 한영수, 전북 홍영기, 전남 유준상, 경북 박기환, 경남 권기술, 제주 양승부를 책임자로 각각 선임하였다.

민주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확보해 ‘견제와 균형’의 구도를 형성한다는 목표 아래 ‘거대여당 견제론’과 ‘통합야당의 바람몰이’를 선거 전략의 기본 골격으로 설정하였다. 즉,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거대여당이 지나치게 독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견제의 힘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여러 개의 야당보다는 하나의 강력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권자를 설득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격을 ‘노태우정권 4년을 심판하는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를 지양하는 대신 민주자유당의 실정을 집중부각하고 수권능력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선거운동과정에서도 3당 합당의 부도덕성, 최악의 물가고, 민생치안의 부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수서비리 등 여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물가불안’ 문제를 최우선의 쟁점으로 부각하며 ‘정책정당으로서의 민주당’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도 진력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통한 안정, 경제 활성화, 민생문제 해결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는 한편, 물가·치안·교통 문제는 물론 추곡수매 등 농업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책대안을 갖고 접근함으로써 ‘대안 정당으로서의 민주당’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 부천시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민주당 정당연설회(1992년 3월 8일).

통합야당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에 있어서는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수뇌부가 권역별로 나누어 순회연설을 실시하고 수도권 등 중요지역은 두 대표가 함께 참가해 수권 대체세력으로서 통합야당에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하였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관건으로 보고 서울에서만 권역별로 4회의 정당연설회와 선거 직전 통합집회를 거듭 개최하면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키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6·29 선언의 주체 문제, 청와대 정치헌금 문제, 수서비리 등 3대 의혹사건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대구·경북 세력의 독점현상 타파,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등을 주제로 대야 공세를 전개하였다.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 또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요인으로 판단해 기권 방지와 투표참여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3) 선거공약

민주당은 1992년 2월 18일 '정직한 정치' 등 5대 정치공약과 세계개혁, 금융실명제 전면실시 등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7대 정책공약 등 모두 152개 항의 정책과제를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홍보자료로 배분된 '민주당과 민자당의 정

책 어떻게 다룬가'란 소책자를 통해 정직한 정치의 실천, 물가의 안정, 민생치안의 회복, 단계적 통일정책의 추진 등을 1992년 4대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공무원 인사의 지역차별성 완전 배제, 특별검사제 실시, 지방의회 소속의 행정감찰관(옴부즈맨)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제 도입,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 인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한일협정의 재검토, 민족통일 범국민협의체 구성, 민방위훈련 연령 40세로 축소, 전면적인 남북교류 추진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되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조기 실시, 토지공개념 제도 확대, 경부고속전철 사업 중지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교육자치제 전면 실시, 교원단체 노조결성 보장, 골프대중화 정책 배제, 농어촌과 도시 영세민의 KBS 시청료 면제,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민주당의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은 사회 각 분야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제도 정착'에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을 발표하면서 후보자 공천과 함께 공약부문에서도 '물같이'가 이루어졌다고 자평하는 동시에 과거 야당의 구호적 선심공약에서 벗어나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약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선거공약 중 상당 부분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집권을 목표로 하는 야당으로서의 '정치공세용'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경제실정을 비판하며 물가상승 등을 바로잡고 수출회복과 왜곡된 경제구조를 개선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토지공개념이나 금융실명제 실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정치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내 실시와 개인후원회 이외 기업후원회 및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를 중심공약으로 제시해 민주자유당과 상충되는 입장을 보였다.

이 밖에 민생치안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이 시위진압·경호·경비·대공·정보 등 시국치안에 집중된 탓으로 민생치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인사·예산 등 모든 경찰행정력을 민생치안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서·파출소에 인력·예산을 보강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제도적인 민생치안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전교조 인정과 학생선발에 관한 대학자율권을 인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수준의 노동관계법 개정, 예컨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6급 이하 공무원노조 인정, 노조설립 자유보장, 제3자 개입 허용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민주당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주요공약

구분	공약내용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급 단체장선거 실시를 통한 지방자치제 정착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정부의 고유사업 비중을 높여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 ○지방의회 소속의 행정감찰관(읍부조만)제도 도입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실시 ○정보공개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개행정 지향 ○행정절차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보참가권 실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국가보안법 폐지 ○변호인 수사참여권 보장 및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서신 검열과 도청 금지 ○특별감사제를 도입해 수서·정치자금 등 권력형 비리 수사 ○일부 국제재원 지방세원으로의 이양 ·감사원 회계기능의 국회 이관 ○행정개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실현 ○임용과 승진·전직·전보에서 지역차별성 배제 ○6급 이하 공무원노조 인정(노동2권보장) ○안기부·경찰·군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 준수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전산망의 조기가동으로 부동산투기 뿌리뽑기 ○적정 통화량 유지와 정부예산의 긴축 운용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한 수출 간접비용의 절감 ○토지공개념 확대 강화 ○토지거래실명제 도입 및 국공유지 비율 확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영역 침식 방지 ○주택청약 예금·저축·부금 가입자를 위한 공공·민간주택 건설 공급확대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 교통 관련 재원을 전액 도시교통난 해결에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요금인상 억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필품가격 안정 도모 ○금융실명제의 즉각 실시 ○과학기술분야에 GNP 5% 이상 투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지하철 중심 대중교통시설 확충 ○개인택시 면허제를 신고제로 개방 ○추곡수매 보장제도의 계속 유지 ○농어업 보호 위한 10년 시한의 '농어업보장제' 신설
통일·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합의서 이행에 맞추어 신뢰구축과 병행한 군축 단행 ○예비군 복무연한 현행 33살에서 30살 또는 전역 뒤 5년간으로 축소 ○65년 한일협정의 재검토·사병복무기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방위제도 현행 50살에서 40살로 단축, 훈련시간 단축 ○일제하의 강제연행(정신대·징용·징병) 및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추진

사회 · 문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공직선거 및 공공기관에 '여성할당제' 도입
	○양로원 · 보육원 등의 사회복지시설 확충	○여성경찰관제 확대
	○통합의료보험 실시	○골프장 건설 억제 · 녹지보전지역 확대
	○대학에 전면적 학생선발권 부여	○환경영향평가 제도 강화
	○최저임금제도 시행기관을 현재 10명 이상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개정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 시청료 폐지
	○남북한 방송개방 촉진(북한 불응시 남한의 선도적 개방)	

4) 선거 결과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75석, 전국선거구 22석을 합쳐 전체의석 가운데 32.4%에 해당하는 97석을 획득하였다. 이는 선거 기간에 끊임없이 강조해 온 독자적 개헌 지지선인 100석 확보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였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결과를 이끌어내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은 광주 · 전남지역을 석권하고 전북지역에서도 절대적인 우세를 보인 반면 강원과 부산 · 대구 · 경북 · 경남 등 영남지역에서는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해 여전히 지역적 한계를 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44개 지역구 중 25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민주당 제14대 국회의원 당선자

구분	당선자 수	당선자 성명(가나다 순)
지역구	75	강수림, 강철선, 권노갑, 김덕규, 김명규, 김병오, 김봉호, 김상현, 김영배, 김영진, 김원기, 김원길, 김원웅, 김인곤, 김장근, 김종완, 김충조, 김태식, 문희상, 박계동, 박광태, 박규식, 박상천, 박석무, 박 실, 박태영, 손세일, 송천영, 신계륜, 신기하, 신순범, 안동선, 오 탄, 원혜영, 유인태, 유인환, 유준상, 이경재, 이규택, 이길재, 이부영, 이석현, 이영권, 이원형, 이윤수, 이 철, 이해찬, 이 협, 이희천, 임복진, 임춘원, 장석화, 장영달, 정균환, 정기호, 정대철, 정상용, 제정구, 조세형, 조순승, 조순형, 조흥규, 채영석, 최두환, 최리도, 최재승, 허근수, 한광옥, 한영수, 한화갑, 허경만, 홍기훈, 홍사덕, 홍영기, 황의성
전국구	22	강창성, 강희찬, 국종남, 김대중, 김말용, 김옥두, 김옥천, 김충현, 나병선, 박은태, 박 일, 박정훈, 박지원, 신진욱, 양문희, 이기택, 이동근, 이우정, 이장희, 장기욱, 장재식, 장준익

민주당의 선전은 노태우 대통령 집권 4년 동안의 경제실정 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자극하면서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호소한 점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이부영 · 박계동 · 신계륜 · 유인태 후보 등 재야출신 인사들이 당선됨으로써 일부 개혁세력이 원내 진출에 성공하게 된 점도 주목을 받는 결과 중 하나였다.

다. 통일국민당

1) 후보자 공천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둔 1992년 2월 창당된 통일국민당은 창당과정에서의 지역구 조직책 선정이 곧 후보자 공천과 직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일국민당은 조직책 선정과정에서 인물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월 12일부터 시작된 조직책 신청접수 결과 759명이 지원해 평균 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1월 20일 1차 발표에서는 50명의 지구당 조직책만을 발표하였다.

1992년 2월 8일 창당대회 이후 통일국민당은 본격적인 인사영입과 후보자 공천 작업을 시작하였다. 통일국민당은 애초 후보자 공천에 있어 정치신인을 기용하고 정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공언하였다. 또 경력·학력 등 이른바 ‘간판’을 배제하고 철저히 ‘득표력’을 공천 기준으로 적용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일국민당은 신생정당이 갖는 인적 한계를 극복하고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영입작업을 시도하였다. 현역의원을 포함해 전직의원 및 정부 고위관료 출신 인사뿐 아니라 민주자유당·민주당 공천 탈락자 또한 통일국민당의 영입 대상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당히 많은 인사가 통일국민당에 영입되었고, 현역 의원으로는 민주당의 조윤형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이찬구 의원 등이 입당하였다.

그러나 구시대 정치인에 대한 무차별적 영입으로 인해 ‘잡탕식 영입으로 소화불량에 걸릴 것’이라는 비난과 텔런트나 코미디언, 기존정당 공천 탈락자의 기회주의적 가세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국민당은 2월 20일 공천자 대회를 갖고 122명의 공천자를 1차적으로 확정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직책 선정과 공천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237개 지역구 중 189개의 지역구에 공천자를 확정·발표함으로써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하였다.

한편 전국선거구 후보자는 모두 32명을 공천하였다. 그러나 전국구 후보자 공천

통일국민당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자

구분	공천자	비고	
전국구	문창모, 양순지, 정주영, 조유희, 최영한, 이건영, 정장현, 강부자, 노병덕, 강달수, 이웅준, 이인원, 이병규, 윤하정, 박노경, 김윤근, 최만립, 김규벽, 김랑식, 정순빈, 이치업, 강칙모, 유지준, 송창달, 윤만중, 김민환, 안만호, 김병수, 사성문, 박호영, 서원석, 박성고	번호순	
지역구	서울	종로구 (이내훈), 용산구 (봉두원), 성동구갑 (박병호), 성동구를 (설영주), 성동구병 (최운상), 동대문구갑 (유중열), 동대문구를 (윤금중), 중랑구갑 (김상두), 중랑구를 (김병진), 성북구갑 (유인현), 성북구를 (이필선), 도봉구갑 (한호상), 도봉구를 (김충섭), 도봉구병 (송태희), 노원구갑 (박병일), 노원구를 (홍성우), 은평구갑 (임인재), 은평구를 (노양학), 서대문구갑 (류갑중), 서대문구를 (이근봉), 마포구갑 (김재영), 마포구를 (정덕환), 양천구갑 (박수복), 양천구를 (고병환), 강서구갑 (유영), 강서구를 (박한상), 구로구갑 (정순주), 구로구를 (나이균), 구로구병 (이홍배), 영등포구갑 (김수일), 영등포구를 (유중현), 동작구갑 (박완규), 동작구를 (김한길), 관악구를 (권태오), 서초구갑 (이충우), 서초구를 (왕제광), 강남구갑 (김동길), 송파구갑 (조순환), 송파구를 (김중태), 강동구갑 (정진길), 강동구를 (정남)	
	부산	중구 (김광일), 서구 (임정남), 동구 (윤소년), 부산진구갑 (신현기), 남구갑 (이영근), 북구갑 (김갑주), 북구를 (최윤기), 해운대구 (이병희), 사하구 (유강열), 금정구 (박창중), 강서구 (기우탁)	
	대구	중구 (박양식), 동구갑 (최규태), 동구를 (서훈), 남구 (김해석), 북구 (송화섭), 수성구갑 (이상해), 수성구를 (윤영탁), 달서구갑 (임갑수), 달서구를 (서병환)	
	인천	중구·동구 (구자현), 남구갑 (정의성), 남구를 (김갑영), 남동구 (이원복), 북구갑 (이정대), 북구를 (김숙현), 서구 (이현재)	
	광주	동구 (윤재걸), 서구갑 (최운용), 서구를 (박행삼), 북구를 (조영진), 광산구 (김면중)	
	대전	동구갑 (이대형), 동구를 (오윤배), 중구 (송두영), 서구·유성구 (김태룡), 대덕구 (구자윤)	
	경기	수원시권선구갑 (이일구), 수원시권선구를 (박왕식), 수원시장안구 (이호정), 성남시중원구 (이찬구), 의정부시 (똥오삼), 안양시갑 (박두철), 안양시를 (김일주), 부천시남구 (김정웅), 광명시 (윤형렬), 평택시·송탄군 (조성진), 동두천시·양주군 (김국환), 안산시·옹진군 (송진섭), 과천시·의왕시 (박제상), 군포시·시흥시 (장학수), 구리시 (정주일), 미금시·남양주군 (이용근), 오산시·화성군 (김인규), 하남시·광주군 (김용원), 포천군·연천군 (홍찬기), 양평군·가평군 (홍성표), 이천군 (이희규), 안성군 (정진환), 김포군·강화군 (김두섭)	
	강원	춘천시 (손승덕), 원주시 (원광호), 동해시 (김효영), 태백시 (김상봉), 명주군·양양군 (최각길), 홍천군 (조일현), 춘천군·양구군·인제군 (홍종욱), 원주군·횡성군 (김용호), 영월군·평창군 (신민선), 정선군 (엄영달), 속초시·고성군 (김용현), 화천군·철원군 (이경희)	
	충북	청주시갑 (김진영), 충주시·증원군 (진치범), 제천시 (신영식), 청원군 (김현수),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어준선), 괴산군 (고경수), 진천군·음성군 (정종택), 제천시·단양군 (송광호)	
	충남	공주시·공주군 (이성구), 대천시·보령군 (박창규), 온양시·아산군 (박인재), 금산군 (정태영), 연기군 (박희부), 논산군 (김범명), 부여군 (조종구), 예산군 (박병선), 서산시·서산군·태안군 (박성호), 당진군 (송영진), 천안군 (박동민)	
	전북	전주시덕진구 (임광순), 군산시 (신동인), 원주군 (송주인),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이상욱), 고창군 (노동태), 부안군 (최규환), 옥구군 (채의석), 익산군 (유재석)	
	전남	목포시 (안철), 여수시 (박정웅), 순천시 (박강근), 나주시·나주군 (김덕영), 여천시·여천군 (김용일), 곡성군·구례군 (김문일), 동광양시·광양군 (이문만), 고흥군 (신귀재), 장흥군 (김인규), 해남군·진도군 (최장현), 함평군·영광군 (이진연), 신안군 (김인태)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경북	경주시(황한수), 김천시·금릉군(정휘동), 영주시·영풍군(김두영), 상주시·상주군(이재욱), 점촌시·문경군 최주영, 달성군·고령군(이용택), 군위군·선산군(권천문), 의성군(김동호), 안동군(김시명), 청송군·영덕군 김찬우, 영양군·봉화군(이철희), 영일군·울릉군(박경석), 경주군(임진출), 경산시·경산군·청도군(염길정), 예천군(황병호), 울진군(이학원)
경남	창원시갑(황성권), 창원시을(서선호), 울산시중구(차화준), 울산시남구(차수명), 울산시동구(정몽준), 마산시합 포구(이영창), 진주시(이원근), 진해시·창원군(정차두), 진양군(박영식), 창원군(구자호), 밀양시·밀양군 박성규, 양산군(오근섭), 울산군(박진구), 남해군·하동군(김옥태), 산청군·함양군(임채홍), 거창군(최태현), 합천군(유상호)

또한 본래 취지인 직능대표성이 무시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었다. 최종 확정된 전국선거구 후보명단에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직능대표보다 정주영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통일국민당의 전국선거구 후보자 1번과 2번에는 문창모 전 세브란스병원장과 양순직 고문, 3번과 4번에는 정주영 대표와 조윤형 최고위원이 각각 배정되었다. 이처럼 통일국민당의 전국선거구 공천은 참신성과 비중을 갖춘 거물 영입보다는 당내인사를 당선권에 대거 배치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신생정당의 한계를 드러낸 인선이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탤런트 최불암(본명 최영한)과 강부자가 당선권으로 평가된 5번과 8번에 각각 배정된 것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인기 위주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 선거 대책 및 전략

통일국민당은 1992년 2월 22일 당무회의를 열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정주영 대표, 부위원장에 조윤형·김광일·김동길 최고위원을 각각 임명하였다. 시·도별 대책위원장에는 서울 봉두완, 부산 김광일, 인천·경기 목요상, 대구·경북 염길정, 강원 김용호, 충북 김현수, 대전·충남 김태용, 전북 채의석, 광주·전남 이진연, 경남 박진구를 각각 선임하였다. 이어 2월 27일에는 조윤형의원을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선거대책본부를 발족하고, 3월 4일에는 수도권, 경인권, 동해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선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통일국민당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참가하는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 최고 35석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양김체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고헌력의 젊은층과 여성층 중심의 반민자당·반민주당 표를 최대한 획득하고 민생·물가·무역역조·외채·주택·부동산 등 경제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해 정주영 대표의 실물경제 운용 경험을 최대한 강조·활용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즉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며 물가불안과 경기침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아는 정당’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반민자당·반민주당 표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 초반에 통일국민당은 고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지층이 여권과 겹치고 있는 점과 ‘정주영당’ 또는 ‘재벌당’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통일국민당 참여인사 대부분이 도덕성·참신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부정적 평가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후 선거전이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통일국민당은 심각한 경제난과 물가고, 집권당의 대권다툼, 양김체제에 대한 국민의 식상함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그 결과 점차 ‘통일국민당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 후반에는 다른 정당으로부터 부패한 ‘재벌당’이라는 비난과 함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양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통일국민당은 서울·경기·충청·강원 등 중부권에서 바람을 일으켜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전략에 따라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강원지역을 집중 공략해 원내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였으며, 현대그룹의 지역기반인 울산도 주요 공략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또 기존 정치권의 비리와 경제문제를 집중 부각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인 출신 정주영 대표가 이끄는 통일국민당의 의식 확보가 필요하다는 홍보전략과 함께 다양한 지역공약을 제시하는 정주영 대표의 유세지원을 통해 전개되었다. 특히 40·50대를



▲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통일국민당 정당연설회(1992년 3월 28일).

겨냥하여 경제의 난맥상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민자·민주 양당체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감을 이용해 양당구도의 폐해를 집중 홍보하고 제3의 선택으로 통일국민당의 위상을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3) 선거공약

통일국민당이 제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은 경제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정주영 대표가 경제계의 ‘얼굴’ 임과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문제 해결 능력을 부각하려는 전략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제시된 경제공약은 여신관리제도 철폐, 통화공급의 2배 확대, 중소기업 전용공단 운용, 기술개발 보험제 실시, 제2중소기업은행 설립, 업종별 전담금융기관 신설, 금융실명제 실시, 토지공개념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것은 ‘반값 아파트 공급’ 공약이었다. 통일국민당은 아파트를 현재의 반값으로 대량 공급하고 300만 명의 주택청약 가입자가 최단 시일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 사회 분야에서는 교통난 해소,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입시의 완

전자유희를 각각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통일국민당은 공약사항을 신문지상에 정책광고 시리즈로 게재하면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통일국민당의 선거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국민의 관심을 자극하는 일시적인 방안일 뿐 근본적인 정책공약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4) 선거결과

통일국민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1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다. 창당한 지 불과 두 달 남짓 지난 신생정당으로 선거에 참여하였음에도 선거 결과 지역선거구에서 24석, 전국선거구에서 7석을 각각 차지하며 총 31석으로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하였다. 이로써 정당구도를 새로운 3당체제로 이끌어 내었다. 통일국민당은 부산과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골고루 당선자를 배출해 애초 목표인 교섭단체 구성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로써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일국민당의 예상외 선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제기된 승리의 요인은 현대그룹이라는 막강한 조직과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의 힘이었다. 한편 경력·학력 등 간판보다 득표력을 공천 기준으로 설정해 여야 공천 탈락자라 하더라도 득표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공천한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느낀 유권자들의 틈새를 정주영 대표의 경륜과 공약으로 파고든 점, 통일국민당에 대한 정부·여당의 지나친 견제로 야기된 관권개입 시비와 동정론 등이 역풍으로 작용해 반민자·반민주표가 대거 통일국민당에 몰린 점 등이 예상외의 쾌거를 올린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도 선전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다.

통일국민당 제14대 국회의원 당선자

구분	당선자 수	당선자 성명(가나다 순)
전국구	7	문창모, 양순직, 이건영, 정장현, 정주영, 조윤형, 최영한
지역구	24	김동길, 김두섭, 김범명, 김진영, 김천우, 김해석, 김효영, 박제상, 박희부, 손승덕, 송광호, 송영진, 원광호, 윤영탁, 윤항렬, 이학원, 이호정, 정몽준, 정주일, 정태영, 조순환, 조일현, 차수명, 차화준

라. 기타정당

1) 신정치개혁당

신정치개혁당은 박찬종 의원이 중심이 되어 김영삼·김대중의 소위 ‘양김’ 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세대교체를 위한 유일한 ‘새정치 세력’임을 자임하면서 1992년 3월 4일 공식 출범하였다.

신정치개혁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초구갑 선거구에 박찬종 대표를 공천하는 등 모두 111명의 지역구 후보자를 공천하고, 전국선거구에는 14명의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그러나 전국선거구 공천은 참신성과 개혁을 표방하는 당의 지향점과는 달리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송현섭·김봉욱 의원을 1번과 2번에 각각 배치함으로써 새 정치보다 정치자금 조달에 역점을 둔 공천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정치개혁당은 선거대책본부장에 김옥선 전 의원을 선임하고 서울 이신범, 부산 이영희 등 13명의 시·도 선거대책본부장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신정치개혁당은 ‘도덕정치’와 ‘무공해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최소 목표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하였다. 군소정당으로서 조직과 자금·인적자원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정당에 크게 뒤처져 있는 만큼 합동유세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 신정치개혁당의 기본 선거전략이었다. 한편 전략 계층을 발판으로 의욕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여 이번을 연출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 신정치개혁당은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박찬종 대표 1명만이 당선되었다. 원내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정당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전체 득표

율에서는 전국선거구 의석 확보가 가능한 3% 득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1.8%의 득표율을 보였다.

신정치개혁당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자

구분	공천자	비고
전국구	송헌섭 김태욱 정웅 이재환 김재위 이상윤 김동성 이강선 강만희 주장선 양창병 이재승 이강욱 조석환	번호순
지역구	서울 종로구 (심재섭), 중구 (진성범), 용산구 (김동주), 성동구갑 (김옥선), 성동구병 (이기수), 동대문구갑 (송차갑), 동대문구을 (박상일), 성북구갑 (송영기), 성북구을 (송수강), 도봉구갑 (윤응순), 도봉구을 (조수취), 도봉구병 (유양), 노원구을 (전대열), 은평구을 (김진택), 마포구갑 (김경민), 마포구을 (이익균), 양천구갑 (정호근), 강서구갑 (진형욱), 강서구을 (이경표), 구로구갑 (김기선), 영등포구갑 (백철), 동작구갑 (신나계), 관악구을 (이상열), 서초구갑 (박찬중), 서초구을 (정대균), 강남구을 (이신범), 송파구을 (김정호), 강동구을 (손은봉)	
	부산 서구 (신순기), 영도구 (이영희), 부산진구갑 (심상국), 북구을 (박한기), 사하구 (홍순오)	
	대구 동구갑 (윤창한), 남구 (성만현), 북구 (진원규), 달서구을 (배재연)	
	인천 중구 · 동구 (민만기), 남구갑 (성관실), 남동구 (조의춘), 북구갑 (이수일)	
	대전 동구을 (김석기), 중구 (정희원), 서구 · 유성구 (류관석)	
	경기 수원시권선구갑 (김문병), 성남시수정구 (최상면), 성남시중원구 (김기평), 안양시갑 (김선배), 부천시중구갑 (이은재), 부천시중구을 (김재석), 부천시남구 (한상윤), 광명시 (김은배), 동두천시 · 양주군 (윤근웅), 군포시 · 시흥시 (이강원), 고양시 (최성권), 하남시 · 광주군 (강광호), 포천군 · 연천군 (김만), 양평군 · 가평군 (지순기), 안성군 (이무역)	
	강원 춘천시 (박태열), 강릉시 (김필기), 동해시 (조대형), 태백시 (배진), 명주군 · 양양군 (김시환), 삼척시 · 삼척군 (심재정), 홍천군 (이만연), 춘천군 · 양구군 · 인제군 (박영석), 영월군 · 평창군 (이상춘), 정선군 (정연승)	
	충북 청주시갑 (이윤영), 청주시을 (류병두), 충주시 · 증원군 (김순태), 제천시 (김대환), 청원군 (이규택),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최옥중), 진천군 · 음성군 (이인수)	
	충남 천안시 (박종구), 공주시 · 공주군 (이종길), 대천시 · 보령군 (이문규), 온양시 · 아산군 (박창호), 연기군 (김홍식), 논산군 (조주형), 부여군 (김홍조), 서천군 (임연택), 예산군 (김동분), 당진군 (유제연)	
	전북 전주시완산구 (허위남), 전주시덕진구 (홍범식, 이리시 (김득수, 김제시 · 김제군 (노귀철, 익산군 (오승엽)	
	전남 나주시 · 나주군 (이계대), 여천시 · 여천군 (신장호), 담양군 · 장성군 (김사석), 해남군 · 진도군 (곽봉근), 함평군 · 영광군 (김기수)	
	경북 김천시 · 금릉군 (박희동), 영주시 · 영풍군 (박성만), 청송군 · 영덕군 (김호연), 영양군 · 봉화군 (김경기), 영일군 · 울릉군 (이재열), 경산시 · 경산군 · 청도군 (이경희)	
	경남 창원시을 (강청웅), 울산시중구 (이규정), 울산시남구 (박인), 진주시 (김기환), 충무시 · 통영군 · 고성군 (송기태), 삼천포시 · 사천군 (이순근), 밀양시 · 밀양군 (박상웅), 남해군 · 하동군 (김종채), 산청군 · 함양군 (하상영), 거창군 (정태인)	

2) 공명민주당

1990년 8월 3일 진보적인 민주정부 수립과 선진정치문화 창달을 목표로 출범한 공명민주당은 7~8명의 당선자 확보를 목표로 50명의 후보를 내기로 계획하였으나 현실적 한계로 단 12명의 지역선거구 후보자만 공천하고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조직·자금·인적자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취약한 군소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유권자들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공명민주당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자

구분	공천자	비고
지역구	서울 동대문구갑 (정재복), 부산 금정구 (문용환), 인천 남구갑 (장효진), 대전 동구를 (김성옥), 경기 안양시를 (이경호), 광명시 (유주봉), 파주군 (윤승중), 전북 전주시덕진구 (신금철), 경남 울산시남구 (이복), 김해시·김해군 (홍의표), 밀양시·밀양군 (박종역), 울산군 (이해형)	

최종적인 선거 결과에서 단 한 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득표율 또한 0.1%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공명민주당은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 규정에 따라 1992년 3월 30일 소멸되었다.

3) 민중당

민중당은 1990년 11월 ‘민중주체 민주주의’라는 진보적 이념정당을 표방하면서 출범한 진보정당이다. 민중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반드시 진보세력의 원내 진입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52개 지역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전국적으로 3% 이상의 득표율과 5석 이상의 지역선거구 당선을 목표로 설정하여 선거에 참여하였다. 한편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3%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도 전국선거구 의석을 배분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한 민중당의 제도권 진입 여부도 주목을 받았다.

민중당은 기존 정당의 보수 성향을 공격하는 한편 진보정당으로서의 대중성 확보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관건이라 판단하고 선거에 임하였다.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 어간 민주당은 1992년 2월 19일 이우재 상임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재오 사무총장, 장기표 정책위원장, 황선진 기 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한편 선거대책본부장에 김낙중 공동대표를 선임하였다. 이후 민주당은 52개 지역선거구와 4명의 전국선거구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에 참여하였다.

민주당은 예비군과 민방위제도 폐지, 군복무 기간 18개월로의 단축, 재벌 해체와 노동자의 경영 참여, 금융실명제 실시, 부동산투기 토지 환수, 대통령선거의 결선투 표 실시,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안전기획부·국군기무사·경찰의 정치 개입과 대국 민 사찰 금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활발한 득표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세 부족과 진보혁신 정당으로서의 역할 및 주장을 부각시키지 못하였으며,

민주당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자

구분	공천자	비고
전국구	김낙중, 지은희, 김문수, 정태윤	번호순
지 역 구	서울	성동구갑(김철수), 성동구병(유윤석), 은평구를(이재오), 구로구를(이우재), 구로구병(김경은), 영등포구를(나덕주), 동작구갑(장기표), 관악구를(류민용)
	부산	부산진구를(김영수), 북구를(윤도혁), 해운대구(이동환), 금정구(김용규)
	대구	서구갑(김현근), 서구를(이종섭), 북구(서상학)
	인천	중구·동구(이원주), 남동구(박귀현), 북구갑(전희식), 북구를(송경평), 서구(황선진)
	광주	동구(황광우), 서구갑(정봉희), 서구를(김걸), 광산구(조진태)
	대전	대덕구(선재규)
	경기	수원시권선구갑(이판돌), 성남시중원구(임동현), 안양시갑(송운학), 부천시중구갑(신철영), 부천시중구를(임동섭), 광명시(유인렬), 안산시·웅진군(전성), 군포시·시흥시(박재영), 미금시·남양주군(전광표), 오산시·화성군(박용준), 이천군(장홍석)
	강원	춘천시(최윤), 원주시(이정구), 정선군(정운환)
	충북	청주시을(이효식)
	전북	전주시덕진구(최형재), 군산시(김종철), 이리시(손인범)
	전남	고흥군(김범태)
	경북	구미시(윤상규), 청송군·영덕군(이무호), 영양군·봉화군(권영일)
	경남	창원시을(이학용), 마산시회원구(임수태), 장승포시·거제군(장대현), 남해군·하동군(박중선)

국민들의 무관심과 거부감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결국 민주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1석도 얻지 못하고 득표율도 1.5%에 불과해 정당법 규정에 따라 1992년 3월 30일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4. 제14대 대통령선거(1992. 12. 18)

1992년 3월 24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이후 같은 해 12월 18일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민주당의 김대중,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신정치개혁당의 박찬중, 대한정의당의 이병호, 무소속의 김옥선·백기완 등 총 7명이 참여하였다.²⁶⁾ 그러나 실제 경쟁은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의 3파전으로 전개되었으며,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김영삼·김대중의 양자대결로 진행되었다.

가. 민주자유당

1) 후보자 공천

민주자유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이전부터 대통령후보 선출시기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직전인 1992년 1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자유경선을 통한 대통령후보 선출을 천명하고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제13대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경선을 통한 대통령후보 선출이 이루어졌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직후인 3월 28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5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설 것임을 발표하였고, 이를 계기로 민주자유당은 본격적인

26) 후보자 등록 결과 8명이 입후보하였으나, 새한국당 이종찬 후보는 통일국민당과 합당에 합의한 이후 12월 14일 후보를 사퇴하였다.

대통령후보 경선국면에 돌입하였다. 경선은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민주계와 이에 맞서는 민정계의 대결구도로 전개되었다. 민주계는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출마선언으로 일찍이 후보를 내세웠고 민정계는 박태준 최고위원, 이종찬·이한동 의원 등이 출마를 검토하였다.

민정계에서는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에 맞서기 위해 후보단일화를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1992년 3월 15일 박태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이종찬·이한동·심명보·박준병·박철언 의원 등 6인 협의회(이후 양창식 의원 추가)를 구성하여 후보단일화를 위한 협의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박태준 최고위원과 이종찬·이한동 의원이 출마를 고수하면서 민정계의 후보단일화는 진통을 겪어야 하였다. 박태준 최고위원과 이종찬·이한동 의원 등은 민정계의 수장이기도 한 노태우 대통령을 단독 면담한 뒤 이른바 ‘노심’이 자기한테 있다고 주장하였고, 민정계 내부에서조차 ‘노심’을 둘러싼 출마 희망자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 민주자유당 '7인 모임' (1992년 4월 15일).

결국 민정계 중진협의회는 박태준 최고위원 출마포기의 외압 시비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4월 18일 이종찬 의원을 단일후보로 결정하고 전당대회에서 이종찬 의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후보단일화에 성공하였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지시파와 반김영삼파로 양분되어 본격적으로 경선에 돌입하였다.

경선은 김영삼 후보 측의 일방적인 우위 속에 전개되었다. 김영삼 후보 측은 4월 28일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통령후보 추대위원회'를 결성하고 명예위원장에 김종필 최고위원, 공동위원장에 권익현·김재광 의원과 이병희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대세론에 입각한 세몰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체 지구당위원장 중 71%인 172명이 김영삼 후보추대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전국선거구 당선자중앙위원회 분과위원장 대부분도 가세하였다.

이에 반해 이종찬 후보는 김영삼 후보 측의 지구당위원장 독점과 김종필 최고위원의 가세 등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종찬 후보 측은 경선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였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자유당 경선은 난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종찬 후보 측은 김영삼 후보와 합동연설회를 요구하는 한편 중앙정치교육원 매각 문제 등을 거론하며 김영삼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양 진영은 인신공격·비방·흑색선전 등 여야 대결을 방불케 하는 혼탁 과열 양상의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경선기간 내내 노태우 대통령의 '노심'을 둘러싼 공방도 지속하였다. 또 이종찬 후보 측은 손주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자유당 의원들을 상대로 김영삼 후보의 지지를 설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개입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은 손주환 수석을 경질하였다.

그럼에도 경선은 파행을 피할 수 없었다. 이종찬 후보는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과의 면담에서 경선에서의 엄정 중립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공정한 경선 분위기가 계속된다고 주장하며 전당대회를 불과 이틀 앞둔 5월 17일 일방적으로 경선거부를 선언하였다.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긴급당직자회의를 소집하고 이종찬 후보의 징계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전당대회는 이종찬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5월 19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예정대로 개최되었으며, 6,660명의 투표자 중 66.3%인 4,418명의 지지를 얻은 김영삼 후보가 민주자유당 제14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었다.

2) 선거대책과 전략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뒤 하루에 한 차례 이상 각종 직능 단체 및 이익단체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지세를 넓혀갔다. 1992년 8월 16일에는 김영구 사무총장을 총괄기획단장으로 13개의 하위기구를 둔 대통령선거기획단을 발족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준비를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황인성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일반·경제·사회·지역개발 등 4개 소위원회로 구성된 공약개발특별위원회와 박관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언론계 출신 국회의원 및 당직자 16명으로 구성된 홍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0월 17일에는 당무회의를 통해 선거대책위원장에 정원식 전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한편 선거전략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할 상근부위원장에 민정계 김윤환·이춘구·이한동 의원을 임명하였다. 또 54명의 당무위원급 인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본부를 운영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실무를 담당할 선거대책본부 산하에는 종합상황실·조직·직능·유세본부를 두고 그 아래 모두 24개단을 편성해 매일 오전 정원식 선거대책위원장과 3명의 상근 부위원장, 당3역이 참석하는 7인 고위선거대책회의와 본부장 주재의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선거전략을 점검해 나갔다. 특히 선거종합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가동하였다.

선거체제로 전환한 민주자유당은 10월 25일 한국청년지도자협의회 전국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당 청년조직인 민주자유당청년봉사단 전진대회(민청대회), 사고 지구당 개편대회 및 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 민청대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당 조직을 정비하는 등 소위 'YS 붐' 조성과 확산에 노력하였다. 또 '개혁과 안정'이라는 선거구호를 내세우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청년층과 부동산 흡수에 충력을 기울인다는 기본전략을 전개하였다. 즉 노태우 대통령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원내 1당이 집권해야 국정운영의 일관성 및 정국안정이 보장된다는 점을 부각해 여권의 고정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중산층을 공략함과 동시에 김영삼 후보의 민주화투쟁 경력과 개혁 이미지를 내세워 야당 성향의 청년층 지지를 유도한다는 전략이었다. 특히

정치적 쟁점보다 후보 이미지가 대세를 결정한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홍보기술 개발을 시도하였다. ‘0303 직통전화’ ‘한국과 결혼한 남자’ ‘마음이 통하는 남자와 만나고 싶다’ 등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홍보물 및 비디오를 제작한 것도 이 같은 전략에 기반을 둔 결과물이었다.



▲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평택역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92. 12. 13).

민주자유당은 전국 유세를 통해 김영삼 후보의 비전 제시와 특히 ‘안정 속의 개혁’ 논리를 강조하는 한편 상대 후보를 겨냥해 지도자 건강과 지도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전개하였다.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이전까지의 선거에서 일반적이었던 군중동원 세몰이 유세를 지양하는 대신 유권자를 직접 찾아다니는 소규모 집회 중심의 연설회를 개최하는 데 진력하였다. 또 비중이 높아진 TV 연설 및 광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선거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2년 10월 5일 노태우 대통령의 탈당 및 중립내각 구성으로 인해 이른바 여권 프리미엄을 상실한 민주자유당은 선거 초반부터 ‘안정이나 혼란이냐’ 를 내세워 안정희구세력을 겨냥한 전술을 구사하였다. 특히 ‘한국병 치유’ 와 ‘신한국 건설’ 이라는 선거구호로 변화 추구 세력의 바람을 수용하는 양면 전략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 민주당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 색깔론으로,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에 대해

서는 현대조직을 이용한 금권타락선거의 주범으로 비난하기도 하였다. 한편 당의 공조직뿐 아니라 김영삼 후보가 야당생활을 통해 다져온 민주산악회 등 사조직을 적절히 활용하여 고정 지지기반을 넓혀 갔다. 이 같은 전략은 김영삼 후보의 30년 야당 생활과 민주화 의지 및 3년간의 집권여당 생활을 통한 국정운영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자 한 것이다.

3) 선거공약

민주자유당은 11월 3일 중앙선거대책위 상임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공약개발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제14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확정·발표하였다. 민주자유당의 대통령 선거공약은 ‘깨끗한 정치 강력한 정부의 실현’을 골자로 10대 과제, 77개 항목, 292개 세부실천 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정치 분야에서는 깨끗한 정치 실현을 내세우며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또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 취임 즉시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외에 1995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행정쇄신위원회 설치,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등도 정치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을 가장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민주자유당은 2년 이내에 물가 3% 수준의 안정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였다. 1994년부터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금리를 한 자리수 이내로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였다. 또 증권시장 활성화, 불건전한 금융관행 시정, 금융실명제 조기 실시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 1998년까지 32만 명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정부예산 중 과학기술 투자 5% 확보,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42조 원 투입, 중소기업지원대책 강화 등을 공약하였다. 기타 국방, 교육, 환경·문화, 복지·노동, 농어촌 분야에서는 맑은 물 공급,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근로복지기금 조성, 남북협력기금 확충, 대도시 교통난 해소, 대학입시 및 교육 개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4) 선거결과

제14대 대통령선거는 전체 유권자 2,942만 2,658명 중 2,409만 5,170명이 투표해 투표율 81.9%를 기록한 가운데 김영삼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의 42%인 997만 7,332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영삼 후보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영남권에서 평균 68%를 얻었으며 서울과 호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득표해 예상을 훨씬 웃도는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이로써 민주자유당은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선거 후 김영삼 후보의 당선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었지만 다수 언론은 3당합당의 효과, 지역주의 투표 성향, 보수계층 지지 등 3가지를 승리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나. 민주당

1) 후보자 공천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전당대회 대의원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92년 5월 25~26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민주당 대통령후보에는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가 출마하여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예상대로 김대중 공동대표가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2,348명 중 60.2%인 1,413표를 획득하여 925표로 39.4%를 얻은 이기택 공동대표를 누르고 제14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김대중 대표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많은 국민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 “반드시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어 당원과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 “집권하면 각계 각층, 지역, 모든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면서 “다음 정권은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민주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정권이 될 것”임을 역설하였다.



▲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대중 공동대표가 이기택 공동대표와 함께 손을들어 답례하고 있다(1992년 5월 26일).

2) 선거대책 및 전략

민주당은 1992년 10월 9일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현판식을 치르고 당 공식기구를 선거체제로 전환하였다. 선거체제로 전환되면서 민주당은 이기택 공동대표를 위원장, 최고위원 등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김영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선거기획단, 한광옥 사무처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선거대책본부를 각각 구성하였다. 중앙선거대책본부는 이철 원내총무, 장재식 정책위의장, 홍사덕 대변인을 부분부장으로 임명하는 한편 총무(이경제), 조직(박일), 정책(장재식), 연수(유인태), 공명선거(강수림), 대외협력(이길재), 홍보(손세일), 유세(신순범) 등 산하에 8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민주당은 제13대 대통령선거와 다른 새로운 선거전략을 수립하였다. 과거의 바람몰이보다는 조직과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유세도 대규모 집회보다 중·소형 집회를 다발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으로 전환하였다. 또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해 젊은 유권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새로운 선거운동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기본 전략은 ‘뉴 DJ 플랜’과 ‘뉴 민주당 플랜’으로 명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야당 투사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김대중 대표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부드러운 면을 부각시켜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김대중 후보는 이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유세나 토론 및 광고에서 양복과 넥타이 색깔, 웃는 얼굴 등을 통해 부드러운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김대중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전략은 선거유세에 있어서도 반복되었다. 유권자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기법을 사용하였고, 시장 등지를 찾아가 상인·주부들과 접촉하며 친근감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였다.

‘뉴 민주당 플랜’의 일환으로는 ‘이번에는 바뀌보자’를 선거구호로 내세워 국민의 정권교체 심리를 자극하고 나섰다. 진정한 안정은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특히 유권자의 60%에 해당하는 20·30대 젊은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기간 시작 전부터 ‘출발 20, 30대 물결’과 같은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또 민주당 청년특위가 주도하는 각종 ‘젊은이와의 대화’와 ‘4대강 살리기 운동’ 등 환경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비정치적 행사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전파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100대 공약을 앞세워 개혁과 변화를 약속하며 민주자유당의 공세에 맞섰으며, 선거운동 막바지에 이른 12월 14일에는 김대중 후보가 당 대표직을 사임하는 배수진을 치며 최종 득표에 총력을 쏟았다. 선거 하루 전인 12월 17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32년 동안 계속된 독재와 특권과 부패의 정치를 청산하고 자율과 번영과 복지의 정치로 변화를 바란다면 정권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바뀔시다’라는 선거구호를 거듭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또 선거 중반까지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폭로한 조직적인 관권선거운동, 정부의 7대 의혹 사업 등 제6공화국의 비리와 실정, 부산기관장 모임의 특정후보 지원방안 논의, ‘김영삼 시계’를 비롯한 각종 금품살포 등 금권·관권 부정선거 등을 쟁점화해 정부와 민주자유당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국민의 정권교체 심리를 자극하였다.



▲ 민주당 김대중 후보가 마산역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1992년 11월 29일).

3) 선거공약

민주당은 1992년 11월 2일 선거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대통령정책공약개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제14대 대통령선거 100대 중점 공약을 확정·발표하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선거공약의 주제를 ‘화합으로 안정과 번영의 실현’, 국정 의 4대 지표를 ‘대화합의 정치 구현, 세계 8강 경제 진입 달성, 문화 복지국가의 건설, 평화와 통일의 기반 구축’으로 각각 결정하였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화합의 정치구현’이라는 기조 아래 거국내각 구성, 공정한 인재 등용,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감정 해소, 정치보복 금지, 대사면 실시와 전과기록 말소, 특별검사제 도입, 공무원 보수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인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경제공약으로는 민주자유당과 같은 2년 이내 3% 물가인상 억제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1993년까지 금융실명제 도입, 한국은행 및 금융인사권 독립, 근로소득세의 40% 경감, 중소기업기금 5년간 5조 원 지원, 농어가 부채 탕감, 농업보장제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 중학교의 의무교육 전면 실시, 과외가 없는 교육제도 신설, 사립학교 재정 지원 확대, 총액임금제 폐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사회·복지·교육 분야의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다.

4) 선거결과

선거 결과 김대중 후보는 804만 1,284표를 얻는 데 그쳐 997만 7,332표를 획득한 김영삼 후보에게 패하였다. 김대중 후보는 서울·광주·전남·전북 등 4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외 11개 지역에서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에게 패하였다. 이로써 세 차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대중 후보는 또 다시 낙선하였고, 결국 12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여러분의 신임을 얻는 데 실패한 것을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패배를 겸허한 심정으로 인정한다”며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국회의원직 사퇴 및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김대중 후보는 강연과 연구 등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였다. 민주당 또한 선거 후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선거 패배의 후유증과 함께 김대중 총재의 정계은퇴에 따른 당내 혼란을 겪어야 했다.

다. 통일국민당

1) 후보자 공천

통일국민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제14대 대통령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였다.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고무된 통일국민당은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5월 15일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 대통령후보 선출에 나섰다. 그러나 후보 선출에는 정주영 대표가 단독으로 입후보하였으며, 전당대회에서는 기립 표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정주영 대표를 통일국민당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정주영 대표최고위원은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을 통해 “국민당은 우리나라 근대화 20년이 길러낸 새로운 정치세력이다. (……) 경제활성화의 주축을 중소기업 위주로

개혁하여 집권 5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로 도약시키겠다. (……)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해 국가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고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기필코 이룩해 내겠다”라며 대통령후보로서의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후보 선출 과정에서 다소의 혼란이 일기도 하였다. 전당대회 중 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기립표결 방식이 결정되자 정주일 대의원이 긴급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사무총장이 만류하고 의장이 이를 기각하여 무산되었다. 이후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이 진행되었으나 다시 서울 서대문구갑 지역구의 유갑중 대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정주일 대의원의 긴급동의 기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정당으로서 의사진행의 비민주적 행태를 지적하고 임시전당대회 의장의 사과를 요청하였다. 이에 봉두완 의장의 사과가 있는 뒤 전당대회는 계속 진행되어 마무리되었다.



▲ 통일국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정주영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인사하고 있다(1992년 5월 15일).

2) 선거대책 및 전략

통일국민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서둘러 대통령선거 준비에 돌입하였다. 민주당과 민주자유당보다 이른 7월 중순에 이미 김광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대통령선거기획단을 발족하였다. 이어 10월 중순에는 김동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

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였다.

통일국민당은 국민 숙원인 ‘통일’을 궁극적인 국가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경제대통령’을 내세우고 선거전략의 기본방향도 ‘경제문제’ 해결에 두고 있었다. 재벌의 정계 진출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던 통일국민당은 부정적 이미지를 장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전문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다. 통일국민당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지적하며 경제전문가인 정주영 후보가 나서서 이를 되살릴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통일국민당이 ‘경제’를 특히 강조한 것은 정주영 후보가 실물경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흔히 ‘민주투사’로 인식되어 온 김영삼·김대중 후보에 맞설 수 있는 이념적 무기는 ‘경제’ 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었다. 정주영 후보 스스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은 경제전쟁의 시대로, 민주투사들이 가치를 갖는 시대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제전문가 전략의 일환으로 정주영 후보는 ‘아파트 반값 공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서민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득표전략을 전개하였다.

통일국민당의 선거운동은 철저하게 조직선거에 기초를 두고 있었으며, 특히 현대그룹이라는 막강한 조직과 자금을 동원하여 지지기반을 확대하면서 득표활동을 전개하였다. 통일국민당은 당원을 상대로 울산 현대산업기지 및 서산간척지 시찰을 통해 당원의 이탈을 막고 결속력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정주영 후보가 조직해 운영해오던 지역사회학교협의회·국민산악회·통일봉사대 등 당 외곽조직도 대폭 확대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책광고 시리즈로 효과를 본 통일국민당은 특유의 기획력과 첨단기법에 많은 기대를 걸고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를 통한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 홍보방식에 있어서도 후보자 및 정당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만화광고 등 새로운 양식의 홍보물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과는 다른, 타 정당과 차별화한 새로운 홍보전략으로

평가되며 주목을 받았다.

홍보 핵심은 역시 정주영 후보가 통치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즉 경제뿐 아니라 정치에도 능하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할 줄 알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 정주영 후보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외에 각종 만화와 비디오테이프, 팸플릿 등을 만들어 대량 배포하였다. 홍보정책의 근간은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기존 정책광고 시리즈와 함께 통일국민당의 대통령선거공약을 새로운 홍보기법으로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알리는 것이었다.



▲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 선거 유세(1992년 12월 17일).

3) 선거공약

제14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통일국민당은 50대 공약을 제시하였다. ‘경제대통령’을 내건 정주영 후보는 50대 공약 중 경제 분야 공약을 다른 분야에 비해 편중된 것으로 인식될 만큼 강조하였다. 경제공약의 주요 내용은 민간 주도로 1년 이내 3% 물가 억제, 3년 이내 300억 달러 무역흑자 달성, 5년 이내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등이었다. 특히 채권입찰제를 폐지함으로써 아파트를 수도권외의 경우 반값, 지방의 경우 3분의 2 값에 각각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다. 정치 분야 공약에서는

거국내각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1993년 실시,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개정, 도청방지법 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1992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파악한 지역별 숙원사업에 대한 공약도 제시하였다. 서울의 경우 경제 활성화와 교통·교육 문제 해결 및 공무원의 처우개선, 충남·충북의 경우 지역감정 해소 대책과 중앙 부처의 이전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책을 각각 내놓았다. 전남·전북의 경우 화합의 정치 및 지역개발 등 농어촌 대책을 주로 공약하였으며, 대구와 경남·경북의 경우 환경 및 공해 문제 해결 대책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4) 선거결과

제14대 대통령선거 결과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통일국민당의 돌풍은 재현되지 않았다. 정주영 후보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통일국민당이 획득한 득표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388만여 표(16.3%)를 획득하여 3위를 차지하였다. 정주영 후보는 대통령선거 패배 후 선거 전에 약속한 새한국당과의 통합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신이 약속한 2,000억 원 정치발전기금 조성도 백지화하는 등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였으며, 통일국민당은 심각한 내부진통을 겪어야 하였다. 결국 정주영 대표는 이듬해 2월 9일 정계은퇴를 선언하였고, 이후 소속 의원들이 연쇄 탈당하여 통일국민당은 창당 1년 만에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다.

라. 기타정당

제14대 대통령선거에는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등 3개 원내정당 외에 새한국당, 신정치개혁당, 대한정의당 등 3개 정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새한국당의 경우 이종찬을 대통령후보자로 선출하고 후보 등록을 하였으나 선거과정에서 통일국민당과 선거 후 합당하기로 합의하면서 후보를 사퇴하였다.

양김구도 타파를 통한 '새 정치 질서 구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992년 2월 출범

한 신정치개혁당은 1992년 6월 9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박찬중 의원을 만장일치로 대통령후보로 지명하였다. 박찬중 후보가 내세운 선거 전략은 ‘세대교체론’ 과 ‘도덕정치’ 라는 두 가지 구호로 압축되었다. 박찬중 후보는 주요 3당 대통령후보들의 도덕성을 공격하면서 이에 대비되는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함으로써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김영삼·김대중 후보에 대하여는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 정치질서의 최대 장애물로 평가되는 지역감정을 유발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비판하였다. 정주영 후보에 대해서도 ‘경제대통령’ 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경유착으로 한국 최대 재벌을 일구어 온 장본인으로서 한국 정치관을 금권정치 무대로 타락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와 함께 제5·6공화국을 뇌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집권하면 권력형 비리를 다룬 범국민적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감사제를 도입해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정치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박찬중 후보는 노상토론회와 거리유세라는 차별적인 선거운동을 통해서도 주목을 받았다. 5월 7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정식으로 선언한 이후 선거기간 중 하루에 노상 토론회를 3~4회 개최하는 강행군과 계속된 거리유세를 통해 직접 유권자를 설득하기



▲ 박찬중 신정치개혁당 대표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1992년 5월 7일).

위해 노력하였다. 김영삼·김대중·정주영 후보의 3파전으로 전개되는 선거구도 속에서 세대교체와 깨끗한 정치를 내세우며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을 전개한 결과는 예상외로 주목을 받았다. 또 실질적인 선거 결과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150여만 표를 획득하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선전으로 박찬중 후보는 차세대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특히 20·30대층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 박찬중 후보가 주장한 김영삼·김대중의 퇴진과 깨끗한 정치가 젊은층의 큰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대통령선거 기간에 보여준 깨끗한 선거운동 방식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이 선거 후 언론 등의 공통적인 평이었다.

대한정의당은 이병호 대표를 대통령후보로 공천하였다. 이병호 후보는 법치주의 실현을 통한 도덕과 정의가 지배하는 정치를 구축하여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지역감정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또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공권력에 의하지 않은 노사 관계 조성, 군축과 병역의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인구의 지방분산화 실시, 근로소득세 감면, 세제 개혁 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 3만 5,739표(0.1%)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제2절 원내활동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1. 1988년도



▲ 제13대 국회개원식(1988년 5월 30일).

1988년은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야 299명의 국회의원이 5월 30일부터 1992년 5월 29일까지 4년간의 임기로 제13대 국회를 구성한 첫해였다. 5월 30일 제141회 임시국회를 통해 개원한

제13대 국회는 1988년 한 해 동안 제142회(6. 10~7. 9), 제143회(7. 18~7. 23) 임시국회와 제144회(9. 10~12. 18) 정기국회 등 4차례 개최되었다. 제13대 국회는 제142회 임시국회에서 5공화국 비리 조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사 등 쟁점이 되었던 7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1988년 각 정당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과거 5공화국의 권력형 비리와 광주 시민의 무력진압 실상 등을 밝혀내는 활동에 주력하였고 부활된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여러가지 진실을 밝혀내었다. 또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쟁 중지 기간을 갖는 등 팽팽한 대립 속에서도 과거 공화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대화와 타협의 정치행태를 보여 새로운 국회활동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가. 제13대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제41회)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여야 4당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개원국회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각 정당의 입장은 여야 간은 물론 야당 간에도 차이를 보였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개원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였다. 즉, 개원국회를 통해 단순히 제13대 국회를 개원하고 의장단만을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개원국회에서부터 5공화국 비리청산 문제 등을 다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쟁점이 되는 현안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협상의 쟁점이었다.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우선 개원한 후 별도의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일민주당은 국회 개원 논의 때부터 국회 원 구성과 정치쟁점 처리문제를 협상대상으로 병행한다는 상충된 입장을 견지하였다. 한편 평화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면서도 개원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 신축적인 입장이었다.

국회 개원을 둘러싸고 각 정당의 의견차가 표출된 가운데 1차 협상은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 3당을 통해 이루어졌다. 야 3당은 1988년 5월 14일 첫 원내총무회담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후 5월 18일 야 3당 총재회담을 열고 5월 25일 국회를 소집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야 3당 총재는 야당공조 방침을 확인하며 개원 국회에서 5공화국 비리, 광주사태, 비민주 악법, 양대 선거부정, 지역감정 등에 관한 조사 및 해결을 위한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야 3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의당은 개원국회에서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따라 여야는 계속된 총무협상에도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개원협상의 난항으로 제13대 국회 개원이 지연되는 가운데 야 3당은 총무회담을 통하여 개원국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만이라도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5월 24일 4당은 총무회담을 통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 우선 개원국회를 연 후 의장단을 선출하고 국회법 개정 특별위원회만을 구성 결의한 후 일주일 이내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또 임시국회 개최까지 논란이 되는 특별위원회 명칭과



▲ 국회개원 축하연(1988년 5월 30일).

운영방법 등을 절충해 임시국회에서 의결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제13대 국회는 선거가 실시된 후 34일이 지난 5월 30일에서야 첫 임시국회(제141회)를 개최하여 개원하였고, 제13대 국회의원의 임기도 시작되었다.²⁷⁾ 5월 30일 여야는 개회식을 개최한 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정의당의 김재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평화민주당 노승환 의원과 통일민주당 김재광 의원을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의장단을 구성하였다.

나. 정당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제142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민주정의당·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은 1988년 6월 7일 원내총무회담을 통해 기존 13개의 상임위원회를 16개로 3개 증설하고 상임위원장은 민주정의당 7, 평화민주당 4, 통일민주당 3, 신민주공화당 2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상임위원회 이외에 7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하였다.

27) 1987년 개정된 6공화국 헌법은 부칙규정을 통하여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13대 국회의원의 4년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되었다.

쟁점은 상임위원장 배분방식과 특별위원회 명칭 및 구성방식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당 간 대립과 공방이 지속되면서 국회는 일주일 이상 공전되었다.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에 있어서 민주정의당은 아무리 여소야대 국회라도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야 3당은 중요 상임위원장 자리 또한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야 3당 간에도 중요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전개되었다. 특위 구성시기에 있어서도 평화민주당은 선 특위구성을 주장하였으나,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은 국회를 정상 가동한 후 구성하자고 주장하였다.

정당 간 의견차와 갈등으로 인하여 국회공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여야 4당은 계속된 협상을 통해 의석비율에 따라 주요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갔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민주정의당과 평화민주당은 농림수산위원장 배분을 두고 마지막까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6월 17일 4당 총무회담에서 평화민주당이 농림수산위원장 배분을 양보하고서야 최종 합의되었다. 이후 여야는 6월 20일 본회의를 통해 일제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고 이어 위원회별로 간사를 선출하면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역대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야당이 9개 이상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5대 국회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제13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정당	상임위원회(위원장)	배출 비율
민주정의당	운영위원장(김윤환), 법사위원장(이치호), 외무통일위원장(김현욱), 내무위원장(정동성), 재무위원장(정순덕), 국방위원장(유학성), 농림수산위원장(김종기)	7
평화민주당	경제과학위원장(유준상), 문화공보위원장(정대철), 상공위원장(허경만), 노동위원장(김영배)	4
통일민주당	행정위원장(박용만), 동력자원위원장(황낙주), 보건사회위원장(신상우)	3
신민주공화당	교통체신위원장(이대엽), 건설위원장(오용운)	2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광주문제 진상조사, 제5공화국 비리조사, 각종 법령 개폐, 부정선거 조사, 지역감정 해소 등을 처리하기 위해 야 3당이 구성을 원하였던 5개

특별위원회와 88서울올림픽 지원 및 남북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정의당이 추가로 구성을 희망하였던 2개를 포함해 모두 7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명칭과 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여야 간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사안의 접근방식과 성격이 달라지고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주도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는 쉽지 않았다.

명칭문제에 있어 야 3당은 합의를 통해 5공화국 비리 문제와 관련해 ‘5공화국비리조사특위’를 주장한 반면 민주정의당은 ‘5공화국정치비리조사특위 또는 권력형비리조사특위’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광주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평화민주당이 ‘광주사태’라는 명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야 3당은 ‘광주 민주화투쟁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의당은 성격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거’로 부를 수 없다며 ‘광주사태진상조사특위’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야 4당은 계속된 원내총무 협상을 통해 논란이 된 두 특별위원회 명칭을 5공화국 비리의 경우 권력형 비리로, 광주문제의 경우 타협안으로 제시된 민주화운동으로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광주특위와 관련해 평화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민주화투쟁’을 계속 고집하였다. 그 결과 공조를 취하던 야 3당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일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특별위원회 명칭문제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4당 원내총무는 6월 27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또다시 협상에 나섰고 결국 ‘민주화운동’ 명칭을 수용하는 대신 범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5·18’을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특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이 확정되었다.

한편 또 다른 쟁점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분과 관련하여 애초 야 3당은 광주문제, 5공화국 비리, 법령 개폐, 부정선거 등 4개 현안 관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민주정의당은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제1당으로서

광주문제, 5공화국 비리, 법령
 개폐 등 주요 3개 특별위원회
 중 1개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
 고 맞섰다. 이에 여야 4당은 협
 상을 통해 각 정당이 가장 초
 점을 두고 있는 특별위원회 위



▲ 김재순 국회의장이 제13대 국회 7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1988년 6월 27일).

원장을 하나씩 나누는 데 합의하였다. 그 결과 4개 핵심 특별위원회 중 민주정의당이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원회, 평화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통일민주당이 제5공화국에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신민주공화당이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나머지 3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정의당·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이 1명씩 배정받았다. 구성된 7개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선임된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제13대 국회 상반기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정당	위원장
○ 통일정책특별위원회	통일민주당	박관용
○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평화민주당	문동환
○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특별위원회	통일민주당	이기택
○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회	민주정의당	오유방
○ 지역감정해소특별위원회	평화민주당	최영근
○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	신민주공화당	이종근
○ 올림픽특별위원회	민주정의당	강영훈

다. 국회법 개정 합의(제142회)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에는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라는 국회운영 기간제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하는 등 국회의 권한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여야는 제13대 국회 개원 후 변화된 헌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였다. 이에 여야 4당은 원 구성 이후 국회법 개정을 위해 1988년 5월 31일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국회법개정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 국회법개정특별위원회(1988년 5월 31일).

국회법개정특위는 6월 1일 민주정의당 정창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4당 간사를 선임하고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협상이 시작되자 여야는 근본적인 개정방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야 3당은 기존 국회법을 대폭 개정해 권위주의적 요소를 과감히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과거 비상국무회의, 입법회의 등 정통성 없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대신하던 기구에서 만든 독소조항을 제거해 국회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야 3당의 주장과는 달리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지나친 국회법 개정은 오히려 의정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헌법개정 내용의 보완, 상임위원회 재편 등 최소한의 개정만을 희망하였다.

이처럼 여야 간의 입장이 상충하는 가운데 1988년 6월 11일 각 정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가 시작되었다. 민주정의당의 개정안은 43개 조문을 개정

하고 3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총 46개 조문에 걸친 개정안이었다. 반면 야 3당은 71개 조문을 개정하고 3개 조문을 신설하여 총 74개의 조문을 개정하는 단일개정안을 마련하였다. 5인소위원회는 이 두 개정안을 토대로 축조·심의 과정을 통해 협상을 전개하였다. 개정 내용 중 국정감사 대상, 상임위원회 증설, 국회의장의 권한 축소, 청문회 도입, 회의 TV 생중계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국회법개정특위는 6월 1일 소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3차례의 전체회의와 5차례의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6월 13일 최종 합의된 개정안을 확정·의결하였다.

쟁점이 되었던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 사항은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구체적 사항을 위임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상임위원회 증설 문제는 민주정의당 개정안을 수용하여 13개에서 16개로 증설하였다. 한편, 국회의장의 권한축소와 관련해서는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의장권한 관련 조항을 대폭 축소하거나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야 3당과 권한축소를 인정하되 최소한의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민주정의당의 입장이 맞았으나 야당의 의견이 다수 수용되어 회의록 정정 규정(110조) 등 8개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 청문회 도입 문제는 각 정당이 운영방식에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도입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어 의정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제도를 도입하는 데 합의하였다. 여야는 국회법개정특위의 국회법 개정안 의결 직후 같은 날 제142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를 연이어 개의하고 합의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처리(제142회)

1988년 7월 1일 대통령은 대법원장 정기승과 감사원장 김영준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였다. 2건의 임명동의안은 다음 날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가 실시되었다. 이 중 대법원장 정기승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상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도 출석의원 295명의 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41명의 의원만이 찬성하여 부결되었다. 반대는 6표, 기권이 134표, 무효가 14표였다.

당시 법조계는 물론 종교계 등 각계에서 정기승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은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대 이유는 정기승이 5공화국과 유신시절 시국사범 재판에서 정부 측에 동조하는 강경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었다. 당시 평화민주당 대변인 이상수가 발표한 성명은 이러한 야당의 반대 이유를 명확히 전하고 있었다.

“사법부의 민주적 개혁과 사법권 독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이때에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시국사건 처리 등에 있어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에 일조해 사법부 자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정부가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을 보고 실망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의 임명동의 요청 후 단 하루 만에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통일민주당 김광일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명백하게 동의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사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함을 전하며 충분히 토론한 후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민주정의당은 찬성 입장을 보였던 신민주공화당과 친여 성향의 무소속



▲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1988년 7월 2일).

의원들이 찬성할 것을 기대하고 정기승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표결과정에서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의원들은 투표함에 백지투표지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기권표를 던졌고 결국 동의안은 부결되었다.

마. 증인구인제도 및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에 대한 여야 대립과 합의(제142회)

여야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청문회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법 개정 과정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따라서 여야는 제142회 임시국회에서 국회법개정특위를 통하여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제정·개정을 추진하였다.

두 법률안과 관련하여 민주정의당 안과 야 3당의 단일안 등 각각 두 개의 법률안이 제안되었고 여야는 국회법개정특위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와 협상을 전개하였다.



▲ 민주정의당 관계자들이 야3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정감사관련법 중 구인제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민정신문 호외를 발행하여, 시민들에 배포하고 있다(1988년 7월 16일).

그러나 여당과 야 3당은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며 쉽게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핵심쟁점은 ‘구인제’와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이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중 구인제는 증인이 정당한



▲ 국회에서 통과된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제를 요구하는 의안(1988년 7월 15일).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동행을 거절한 때에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구인제가 국정감사나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제도이며 국민의 대변자역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의당은 신체 자유에 관

한 모든 조치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헌법정신과 삼권분립에 반한다며 인권침해와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중 국정조사권 발동요건 문제는 야 3당이 본회의에서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점이 대립을 유발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정의당은 다수결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였다.

두 핵심쟁점에 대해 민주정의당과 야 3당은 국회법개정특위 소위원회를 통해 계속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야 3당은 7월 9일 본회의에서 민주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법률안을 표결로 가결하였다. 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관련 법률을 야당안대로 강행 통과시키자 민주정의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였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은 7월 15일 거부권을 행사하여 두 법률안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 보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며 반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야 갈등은 심화되었다. 그러나 7월 18일 국회에서 재의된 두 법률안은 모두 부결되었다.

구인제 파동으로 심각한 대립 상태를 유지하던 여야는 정기국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국정감사 실시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제143회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 두 법률안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또다시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관계법 개정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의창구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여야 4당은 폐기된 두 법률안에 대한 수정 대안 협상을 재개하였다.

재개된 협상과정에서는 단일안을 마련하였던 야 3당 사이에 의견이 나뉘는 변화를 보였다. 야 3당 간 이견이 나타난 쟁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라는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이었다. 평화민주당은 애초 안을 계속 주장하였다. 그러나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 등 두 야당은 두 법률안의 처리를 위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요건을 담은 민주정의당의 주장을 수용하지는 입장변화를 보였다. 이처럼 두 법률안에 대한 정당 간 입장변화 속에 여야는 절충안을 모색하였고 결국 7월 22일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합의를 통해 단일안을 확정하였다.

쟁점 사항 중 ‘증인구인제’는 ‘동행명령제’로 바꾸는 대신 동행 명령에 불응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입법조치를 보완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국정조사권 발동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요건은 유지하는 대신 본회의 의결 문제는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절충안을 통해 합의하였다. 합의안을 통해 수정대안을 마련한 여야는 7월 23일 제143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두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대통령거부권까지 행사된 구인제 파동은 마무리되었다.

바. 주요 특별위원회 활동(제143회)

1988년 6월 27일 제142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13대 국회 초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서 각 특별위원회는 7월 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야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운영방식과 의제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표출하였다. 특히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제5공화국 비리 문제, 5·18 광주 문제, 반민주악법 개정 문제 등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많은 논쟁을 벌였다.

1)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조사 특별위원회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비리조사 특별위원회(이하 5공비리특위)는 1988년 7월 7일 첫 회의를 열고 통일민주당 이기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조속하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산하에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직구성을 마친 5공비리특위는 조사대상 선정, 현장조사, 문서검증, 증인채택 등의 과정을 통해 조사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각 과정마다 여야는 견해차로 대립하면서 지속적인 갈등양상을 보였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인 조사대상 선정에서부터 여야는 의견차를 보였다. 4당이 제출한 조사대상은 총 163건이었다. 이 중 민주정의당은 30건만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야 3당은 30건을 추가해 60건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자며 맞섰다. 4당은 이들간의 논쟁 끝에 조사대상을 조정해 8월 3일 전체회의를 통해 44건을 1차 조사대상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선정 이후 갑자기 통일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모두 16명의 해당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동의안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정의당은 “조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정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 3당이 단독으로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이처럼 5공비리특위는 여야 간 의견차와 대립으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다.



▲ 국회 5공비리특위 위원들이 청남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1988년 8월 28일).

1988년 8월 9일 시작된 현장조사에서도 여야 간 논란은 계속되었다. 청남대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현장조사 거절과 전남도지사 공관 내 대통령 숙소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전남도 측의 호화집기 사전은폐 문제가 불거졌다. 통일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증언청취를 위한 증인채택안을 발의하였으나 민주정의당이 이의를 제기하며 대립하였다. 절충안을 통해 내무부 장관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졌으나 내무부 장관의 출석보고에서도 의혹이 해결되지 않자 민주정의당은 회의에



▲ 국회 5공비리특위 위원들이 전남지사 공관을 조사하고 있다(1988년 8월 28일).

배석한 전남도지사 증인채택 동의안을 예정에 없이 발의하였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이에 대한 표결 결과 증인채택은 무산되었다.

현장조사 이후 후속 대책으로 진행된 문서검증에서는 검증대상의 범위, 절차 등을 두고 대립하였다. 9월 12일 이루어진 5공화국 권력형 비리의 대표적 조사대상인 일해재단에 대한 수검착수 과정에서 일해재단 측은 5공비리특위에 수검 준비기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야 3당은 서류조작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비리조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정의당은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허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준비기간을 놓고 대립하였던 여야는 절충 끝에 9월 14일 수검을 시작하자면 민주정의당의 절충안을 야당이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여야는 일해재단 문서검증과 관련한 증인채택에서 가장 심한 갈등을 빚었다. 9월 21일 문서검증반 회의에서도 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5공화국 핵심인사 13명의 증인채택을 주장하였지만 민주정의당은 7명 또는 9명의 증인을 먼저 채택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하자며 맞섰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야 3당은 민주정의당 의원 다수가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증인채택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민주정의당은

증인채택 결의는 5공비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문서검증반에서 야 3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증인채택의 부당성을 비난하며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야 3당은 증인채택이 위임된 권한 내의 적법한 행위임을 강조하는 한편 일해재단의 총대표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 아닌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정의당의 원인무효 주장을 일축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일해재단과 거래한 금융기관에 대한 문서검증도 야당은 즉각 검증을 실시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민주정의당은 야당의 일방적 특위운영에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정회를 요청한 후 회의장을 이탈하는 등 갈등을 표출하였다.

민주정의당은 부당성과 위법성을 거듭 제기하며 문서검증반의 증인채택의 결의결은 월권행위이므로 전체회의를 통해 다시 상정해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절차에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 5공비리특위 활동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 추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소위원회에서 시작된 증인채택 공방은 전체회의로 이어졌다. 논의과정에서 민주정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러 사안이 걸려 있는 만큼 증인채택에서 일단 제외하고 우선 그 외 20명의 증언을 들은 후 추후에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야 3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증인인 만큼 처음부터 명단에 배제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명단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증인을 채택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대신 증언 시기는 추후 상황을 보고 정하자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거듭된 공방과 협상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포함 여부 및 출석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유보되었다.

많은 논란 속에 확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현장조사와 문서검증을 통해 1차 조사활동을 벌인 5공비리특위는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5공화국 권력비리의 핵심적인 조사 대상인 일해재단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²⁸⁾

28) 청문회 관련 내용은 p. 292-300 참조.

2)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 특별위원회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광주특위)는 7월 8일 첫 위원회의를 열고 평화민주당 문동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광주특위는 시작부터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난항을 겪었다. 민주정의당은 진상조사도 시작하기 전 ‘의거’ 나 ‘학살’ 이니 하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광주문제에 대한 문동환 위원장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 광주특위 위원 중 평화민주당 정웅 의원과 정상용 의원의 자격 시비도 여야 공방의 대상이었다. 민주정의당은 5·18 당시 향토사단장인 정웅 의원과 5·18 당사자였던 정상용 의원은 직접적인 5·18 관련 인사이므로 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여야는 광주사태 관련자로서의 경험이 위원회 조사 활동 추진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현실론과 조사활동이 백지상태로 출발해야지 어떤 선입견이나 경험자의 오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신상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2차 회의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었다. 결국 두 의원은 공정성 시비 끝에 8월 12일 제3차 회의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특위활동 초반부터 여야가 대립양상을 보였던 광주특위는 이후 증인채택과 증언일정 등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표출하였다.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초반 특위 과정에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정의당은 증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증언의 시기와 형식에 있어 신중하게 배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야 3당은 당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군의 통수권자로서 광주사태에 대한 정치도의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계엄 확대 조치를 결정한 배경 등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책임 있는 증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논란만 거듭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야 3당은 8월 12일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정의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의결하였다. 이후

광주특위는 야 3당의 단독운영에 대한 여당의 비판과 야당의 대응으로 공방이 전개 되었으나 88서울올림픽과 16년 만에 부활한 국정감사가 이어지면서 더는 진척 없이 활동을 일시 중단하였다.

야 3당이 요구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과 증언일정에 있어서 여야는 더욱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표출하였다. 야 3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증인 채택과 우선적인 증언을 주장하였으나 민주정의당은 다른 증인의 증언청취 후 결정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여야 간의 대립 속에 위원장 및 4당 간사들의 협상이 반복 되었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이견은 쉽게 조정되지 못하였고 민주정의당 위원들이 불참 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3)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 특별위원회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 특별위원회(이하 법률개폐특위)는 7월 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민주정의당 오유방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법률개폐 특위는 민주화와 6공화국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나 법 제도의 운영 면에서 민주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법률들을 바로잡기 위해 구성되었다. 따라서 핵심적인 쟁점은 어떠한 법률을 개폐대상으로 선정하느냐였다.

법률개폐특위는 조직구성 이후 3차례의 4당 간사회의를 통해 각 정당이 제출한 심사대상 법률을 논의해 31개의 심사대상 법률을 선정하였다. 또 심사대상 법률 중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사문화된 법률을 우선 처리하고 여야 간의 견차가 심한 국가보안법이나 국가안전기획부법 등 2개 법률은 늦추어 처리한다는 것에도 합의하였다. 여야는 이러한 합의에 기초해 7월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법률안 개폐심사를 위해 3개의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10개의 정치관계법률안은 제1소위원회에, 12개의 경제관계 법률안은 제2소위원회에, 7개의 사회관계 법률안은 제3소위원회에 배정해 심사토록 하였다.

초반 법률개폐특위의 운영은 순조로웠다. 7월 28일 3차 회의에서 여야는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 폐지 법률안과 「형법개정 법률안」등 2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후 법률개폐특위는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의가 지연되면서 1988년 마지막 회의인 12월 28일 제11차 회의까지 25건의 법률안이 계류되는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게 전개되자 각 정당에서는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을 신속히 개정해 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심사를 촉진하고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일부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지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결국 여야 4당은 해를 넘겨 1989년 1월 10일 원내총무회담을 통해 법률개폐특위의 심사대상 법률 중 일부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해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개폐특위도 간사협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등 16개 법률안은 특별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 그 외 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외무통일위원회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행정위원회로, 「엽연초생산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엽연초생산조합법」은 재무위원회로,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국민운동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무위원회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법률안 심사 부담을 덜어 낸 법률개폐특위는 이후 1990년 7월 14일 마지막 제27차 회의를 끝낼 때까지 2년 여간 운영되었다.

법률개폐특위 활동결과 형법 중 국가모독죄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사회안전법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전향 사상범을 풀어주는 등 개혁법안이 여야합의로 처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사회보호법」과 「농수축협법」이 개정되었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달리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중요한 쟁점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법률개폐특위는 9개의 쟁점법안은 미처리로 남겨둔 채 별도 심의 기구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1990년 7월 활동을 종결하였다.

사. 16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사(제144회)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1988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중앙 및 지방 기관 등 577개 기관을 대상으로 16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에 돌입하였다. 국정감사는 1972년 유신선포로 중단된 이래 16년 만에 부활되었으며, 최초의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하여 제5공화국의 각종 비리와 의혹 등 그동안 누적된 폐단들을 들춰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다.

1988년 국정감사는 전체적으로 정치감사의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는 5공화국 청산 문제를 핵심주제로 설정하였고 그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부정·비리가 주요 감사대상으로 상정되었다. 특히 군의 정치개입 등 5공화국 출범 과정상의 문제, 수사·정보·공안기관의 인권유린 상황,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와 그 친인척 비리, 정경유착으로 말미암은 권력형 비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하였다.

10월 10일 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이, 10월 19일 상공위원회의 포항종합제철 감사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이, 그리고 내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 전기환이 증인으로 불려나와 특혜와 비리에 대한 추궁을 받았다. 이외에도 내무위원회에서는 김근태 고문사건, 최루탄 제조, 삼청교육대 인권유린사건 등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고, 문공위원회에서



▲ 전두환의 친형 전기환과 김근태가 내무위원회 내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있다(1988년 10월 19일).

는 언론통폐합사건의 진상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가 관여하고 있던 새세대육영회의 부정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새세대육영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기부금 모금

과정의 강제성과 운영상 탈법 사례를 추궁한 결과 청와대에서 접수한 고액 찬조금 79건의 내용을 밝혀내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을 증인으로 불러 소값 파동과 외국 소 도입 과정에서의 부정을 감사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부친성고문사건, 박종철고문사건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검찰권의 정치권력 개입 여부를 추궁하였다. 국정감사 과정에는 130여 명의 증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일부 증인이 한결같이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 문제는 나의 소신에 따른 것이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해 5공화국 비리의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였다.



▲ 이순자 새세대육영회 회장이 사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1988년 10월 30일).

16년 만의 부활로 기대를 모았던 1988년 국정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증언대에 불러 세워 5공화국 비리를 부각시켰다. 또한 그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었던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비롯하여 육·해·공군본부, 보안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각급 군부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일의 짧은 감사 기간, 577개 기관이라는 방대한 감사대상 등 무리한 일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또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중복질문의 난무, 자료수집 미흡, 연구 부실 등도 부활된 국정감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10월 24일 국정감사를 마친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였다. 감사결과 나타난 증언거부, 국회모독, 위증혐의자는 상임 위원회별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고 제도개선 사항은 정부 측에 시정 및 처리를 요구 하였다. 또 입법을 통해 구조적 모순을 시정해야 하는 부분은 정당별로 입법사항을 마련하였다. 13개 상임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에 기초해 여야 간 협의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여 1988년 12월 17일 제14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여야는 마지막 보고서 처리문제를 놓고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공방의 핵심은 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과정에 대한 민주정의당의 이의제기였다. 민주정의당은 본회의 상정을 위한 건설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임받은 위원장 및 간사회의가 구체적인 협의 없이 보고서를 건설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였다며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였다. 건설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하였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사유로 민주정의당 의원들은 보고서 상정보류 및 환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야당이 표결처리를 주장하면서 공방이 전개되었다. 결국 민주정의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였고 그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1989년 국회로 이월되었다. 이후 감사결과보고서는 청문회 정국, 검찰의 5공화국비리 수사 등 쟁점에 밀려 제13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1992년 5월 29일까지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로써 1988년 국정감사는 결국 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채 미완의 상태로 종료되었다.

아. 농어촌부채탕감 예산에 대한 여야 간 협상과 표결처리(제144회)

1988년 정기국회 중 198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핵심쟁점은 농어촌부채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공조를 이루던 야 3당도 의견차를 보이며 대립하였다. 정부에

산안에 가장 크게 반대한 정당은 평화민주당이었다. 평화민주당은 농어촌부채 문제에 대해 일괄 탕감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1989년도 예산에 1조 원을 책정하고 추가경정예산에 8,000억 원을 계상하거나 새로 농어촌부채 탕감에 소요되는 1조 원을 확보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였다. 또 1989년부터 향후 5년간 1조 원씩 분할면제 조치하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은 정부여당의 조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농어촌부채 탕감을 위해 1989년도 일반예산에 2,000억 원을 계상한다는 조정안을 수용하였고, 이에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은 「농어촌부채 조정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 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사용하자는 입장이었다. 특히 신민주공화당의 경우 예산심의 문제가 청문회 정국에 가려 있는 상황에서 당력을 집중해 민생문제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예산처리에 의욕을 보였다.

농어촌부채 문제를 둘러싼 정당 간 의견대립 속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 1989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과 농어촌부채 경감에 대한 견해차로 예산안 처리를 반대하는 평화민주당이 맞선 상황에서 양측의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의 농어촌부채 탕감 주장은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 등 두 야당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 본회의에서도 4당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해 결국 예산안은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규모보다 1,428억 원이 삭감된 19조 2,284억 원 규모의 조정안이 표결 처리되었고 평화민주당을 제외한 3당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1989년도 예산안은 4당의 완전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법정기한 내에 의결될 수 있었다. 특히 예산안 처리가 수년 만에 야당 측의 불참이나 여당 측의 강행처리가 아닌 표결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다.

자. 5공화국 비리조사 특위 등 청문회 활동(제144회)

1988년 정기국회는 청문회국회로 불릴 만큼 각 정당은 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하였고

여야 간에도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었다. 11월 3일 일해재단 청문회를 시작으로 개시된 청문회는 12월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청문회와 언론문제 진상 규명에 관한 청문회 등 3개의 청문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회의가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를 변경한 것을 포함하면 일해재단 청문회 7회,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12회, 언론문제 진상 규명 청문회 5회 등 청문회 횟수만도 모두 24회였고 3개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도 100여 명에 달하였다. TV로 생중계된 3개 청문회는 당시 개최된 88서울올림픽의 시청률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 일해재단 청문회

일해재단은 1983년 10월 9일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발사건으로 순직한 희생자들의 유족에 대한 지원과 장학사업을 목표로 1983년 12월 발족한 재단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인 일해를 붙여 명명된 이 재단은 제13대 국회 5공비리특위에서 대표적인 5공화국의 권력형 비리재단으로 지목되면서 청문회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주요 쟁점은 5공화국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일해재단의 자금조성 과정의 의혹, 일해재단 설립기금 모금배경 및 모금과정의 강제성 여부, 88정권교체준비연구서 작성배경,²⁹⁾ 일해재단 부지매입 과정 등이었다.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5공비리특위는 5공화국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장세동을 비롯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 20명의 정·재계의 거물급 인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상한 쟁점은 일해재단 기금 모금의 강제성 문제였다. 이와 관련해 야당의원들은 11월 3일 첫 청문회에서 조성희 전 일해재단 총무부장으로부터 부분적으로 강제모금이 있었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야당의원들은 11월 7일 청문회에서 당시 권력의 핵심인사였던 전 청와대 경호실장인 장세동이 증인으로 참석하자 강제모금에 대한 집중적인 질

29) '88정권교체준비연구서'는 일해재단에서 작성한 정책연구서로 "88년 이후에도 전두환 대통령이 계속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각자가 후계자를 육성해 현 헌법에 따라 승계한다"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다.

문공세를 펼쳤다. 장세동은 조성희와 달리 “강제모금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강제모금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틀 뒤 정주영이 출석하여 “100억 원까진 없었고 그 이상은 강제성이 있었다”라는 엇갈린 답변을 내놓았다. 이 문제는 12월 14일 청문회 마지막 날 장세동과 정주영을 함께 출석시켜 대질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장세동과 “정신적으로, 분위기적으로 강제성을 느꼈다”는 정주영의 상반된 주장이 반복되었다.



▲ 5공화국 청문회 일해재단 관련 증인들이 청문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1988년 12월 14일).

한편 11월 9일 청문회 이후 향후 일정과 추가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하면서 청문회가 일시 중단되었다. 그런 가운데 11월 23일 전국에 TV로 중계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해명·사과발표가 이루어졌고 뒤이어 노태우 대통령의 담화발표가 예정되면서 청문회는 4당 총무 간 합의로 12월 8일과 9일로 연기되었다. 또 논란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출석일정이 민주정의당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를 거쳐 12월 10일로 확정되었다.

이후 5공비리청산특위는 12월 8일 청문회를 속개하고 정구호 전 경향신문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88년정권교체준비연구서’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청문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은 보고서 내용과 민주정의당 정치가 일치하고 있음을 내세워

연구서가 “전두환 씨의 장기집권을 노린 문서”라고 주장하며 당정보고 등에 대해 작성자인 정구호를 집중 추궁하였다. 그러나 정구호는 야당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폐기해 버렸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더이상 사실규명을 하지 못하였다.

일해재단 청문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관심은 12월 10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2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재출석이 요구된 12월 22일에도 역시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여야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보고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해재단청문회’를 종료하였다.

청문회 종료 이후에도 여야는 5공화국 비리조사에 대한 마무리와 관련하여 상이한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였다. 민주정의당은 청문회 종결을 끝으로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조사를 마무리하려 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은 사실규명 미흡을 이유로 비리조사 종결 수용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 직접증언과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끈질기게 주장하였다. 결국, 제5공화국 비리 청산 문제는 1988년 마무리되지 못하였고, 이듬해 국회까지 이어졌다.

2) 5·18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이하 광주청문회)는 1988년 11월 18일부터 1989년 2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7회의 청문이 이루어졌고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66명의 증인이 채택되었다. 광주청문회의 쟁점 주제는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조작 여부, 5·17 계엄확대조치의 합법성, 정확한 사망자 수,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공수부대의 지휘책임, 발포 명령자 등이었다.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5·18 광주특위는 청문회 초반부터 당시 최고 실권자였던 최규하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2, 3차례의

증인채택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1988년 이들에 대한 청문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1988년도로 청문회에서는 전두환·최규하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 등 20여 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다.

광주청문회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광주에 지역연고를 가진 평화민주당이었다. 특히 평화민주당은 일해재단청문회에서 정당 간 경쟁과 대결 양상으로 사실규명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제1야당으로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매진하는 자세를 보였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11월 17일에는 철야작업을 통해 대책회의와 예행연습을 하는 한편 첫 증인으로 채택된 자당 총재 김대중에 대한 질의자도 민주정의당으로 바꾸고 호칭도 ‘증인’으로 결정하는 의지를 보였다. 통일민주당도 청문회의 성패가 5공화국의 정통성을 규명하는 데 달려 있다는 방침을 세우고 합숙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쟁점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광주청문회는 11월 18일 김대중과 이희성 등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시작되었다. 1차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조작에 집중한 반면 민주정의당은 김대중의 학생 선동과 사상문제를 제기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또 12·12의 불법성, 광주에서의 발포문제에 대해서도 신문하는 위원과 증인 간, 그리고 여야 간의 공방이 전개되었다. 야당의원들은 증인신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 책임자임을 확인하려는 공격적 입장을 보인 반면 여당의원들은 김대중 증인에게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명령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묻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5·17 비상계엄 확대의 불법성, 12·12 당시 군 병력 서울 진입의 잘못 등 일부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발포문제는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였다.

계속되는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은 정승화(당시 계엄사령관) 증인 등의 증언을 통해 12·12의 불법성을 부각시켜 나갔다. 특히 정승화 증인이 “계엄사령관으로서 9사단과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전두환의 지시로 추측한다”라고 증언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12·12 관련자들이 다수 소속된 정부와 여당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노태우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미화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증시비를 제기하는 한편 12·12 모의과정이 내란예비죄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핵심적인 쟁점인 군부의 발포명령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대립하였다. 야당 측은 정호용(당시 특전사령관)을 현장 총지휘자로 지목하는 등 신군부 세력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 그러나 진압군 측 증인들은 발포 명령자는 없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의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지휘체계의 이원화 여부와 사망자 수에 대해서도 피해자 측 증인과 군인 측 증인 간의 증언이 엇갈려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의 과잉진압이 있었던 점, 이것이 사태악화의 요인이었다는 사실 등은 여러 증인의 증언과 야당의원들의 질문을 통하여 드러났다.

한편 광주청문회에서 핵심쟁점이자 여야 간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였던 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증인출석 문제였다. 5·18 광주특위에서 야당은 첫 청문회부터 두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실상 최고 실권자였던 최규하·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2, 3차례의 증인채택에도 불구하고 끝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23일 대국민사과를 발표하고 백담사에 들어가 은둔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5·18 광주특위는 11월 28일 제12차 위원회의에서 최규하·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12월 10일 열린 제18차 위원회의에서 추가 증인채택의 건을 논의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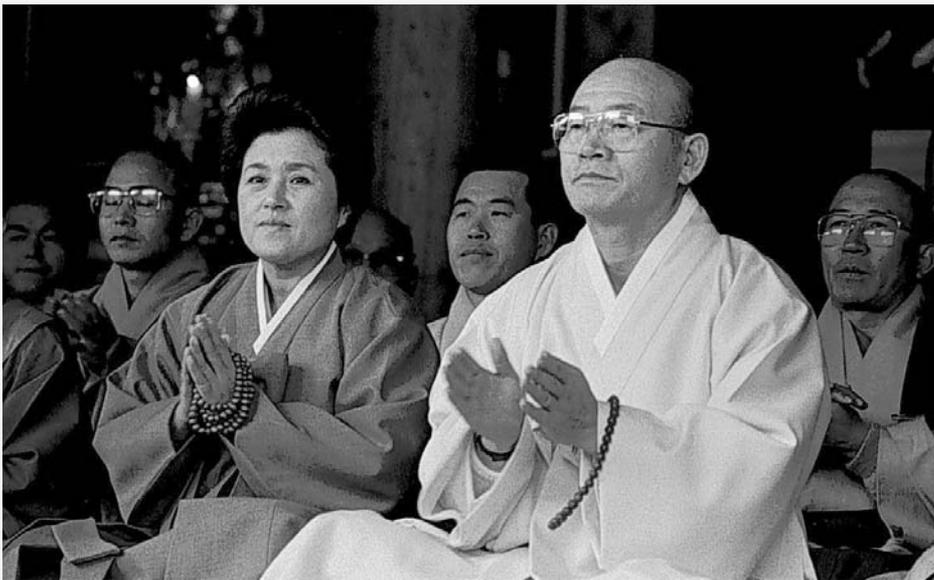


▲ 국회 광주특위청문회에서 정승화 증인이 증언하고 있다(1988년 11월 30일).



▲ 국회 광주특위청문회에서 정호용 증인이 증언하고 있다(1988년 12월 7일).

과정에서 민주정의당이 최규하·전두환 증인의 출석요구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여야는 또다시 대립하였다. 결국 최규하·전두환 증인의 출석요구의 건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 3당만으로 의결되었다. 5·18 광주특위의 출석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두 전직 대통령은 청문회 증인출석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12월 19일 열린 제9차 청문회에 앞서 5·18 광주특위 문동환 위원장은 최규하·전두환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연기를 표명하였다. 이로써 1988년 광주청문회는 핵심증인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지 못한 채 12월 21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종료되었다.



▲ 백담사에서 은둔생활을 하고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1988년 11월 23일).

3) 언론문제 진상규명에 관한 청문회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0년 말 신군부가 언론에 대한 강압적이고 대대적인 개편 조치로 단행한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대량해직에 관한 실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98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언론문제 진상규명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언론문제청문회의 핵심쟁점은 언론인 해직, 언론통폐합, 언론통제 등 3가지였다. 야당의원들은 1980년 말의 언론통폐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언론인 대량해직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총지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는 데 진력하였다. 그 결과 이상재(당시 보안사 언론검열단 보좌관) 증인에 대한 청문을 통해 보도검열 업무에 저항하는 언론인, 체제 도전 성향 기자, 일부 부정비리 언론인 등 90여 명의 명단이 상부에 제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 그 대상자는 숙정 주도세력에 의해 주어진 기준과 언론사 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별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언론사 자율에 의한 것처럼 위장된 사실도 밝혀졌다.

12월 12일과 13일 강제 해직 기자, 5공 언론정책 주도자, 언론사 사주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청문회에서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언론인 해직,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 보도지침 시행 등을 통해 언론장악을 시도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 계속된 의원들의 추궁과 증인들의 증언으로 신군부의 언론장악 의도는 심정적 확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체류 중인 권정달 등 핵심증인의 증언을 듣지 못해 언론통폐합 과정에서 권력 핵심부의 구체적 역할은 조명되지 못하였다. 또 언론인 해직 당시 해직 대상자가 대량으로 늘어난 이유와 언론사 사주들의 협력방법 등도 사주와 피해 당사자들의 증언이 엇갈려 진상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 언론통폐합 관련 언론사 대표들이 언론문제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1988년 12월 13일).

청문회를 종료한 여야 4당은 청문회 결과를 백서나 보고서로 작성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허문도 등 위증자에 대한 처리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야 3당은 위증자를 고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언론사 사주 등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청문회를 열어 명백히 밝힌 후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의당은 국정감사에서 부인하던 것을 청문회에서 자백하였으므로 위증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으니 청문회는 이만 끝내자고 주장하였다.

보고서 작성으로 청문회 종료를 주장하는 민주정의당과 허문도·이상재 등을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주장하는 야당은 고발대상자 선정문제와 위증죄 외의 직권남용 부분 적용에 있어서도 법적 논리 공방을 벌였다. 이후 여야는 1989년 2월 17일 회의에서 고발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여 위증죄를 적용해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허문도와 이상재 두 증인을 1989년 3월 9일 고발하였다.

2. 1989년도

1989년 국회는 1988년부터 시작된 5공화국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조기 종결을 원하는 여당과 전직 대통령을 국회증인으로 내세워 진상을 더 많이 규명하고자 하는 야당과의 힘겨루기 속에 진행되었다. 1월 말 5공화국 비리와 관련하여 전 새마을운동본부장 전경환의 구속 등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전반기부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다. 정기국회를 포함하여 단 3차례만 소집된 1989년 국회에서 여야는 연말에 이르러 정치적 타협을 통해 5공화국 청산 문제를 마무리하였다.

가. 정치 쟁점에 대한 여야 공방과 민생법안 처리 지연(제145회)

1989년 첫 임시국회(제145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13일 개최되었다. 제145회

임시국회는 1988년 국회에서 여야가 5공화국 청산 문제 등 정치적 쟁점에 집중하면서 심의하지 못하고 누적된 민생현안을 처리할 목적으로 소집되었다. 각 정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전후해 민생법안 처리를 특히 강조하였고 따라서 제145회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될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개최되자 여야는 애초 기대와 달리 5공화국 청산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중간평가 실시 문제를 둘러싸고 정쟁에 몰두하였고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은 정치현안에 밀려났다. 여야는 임시국회 개최 전인 1월 31일 검찰이 5공화국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정치공방을 시작하고 있었다. 검찰은 5공비리와 관련하여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본부장 등 47명을 구속하고, 이원조 전 은행감독원장 등 29명을 불구속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수용하고 5공화국 청산 관련 특위 정국을 조기에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원내 다수를 이루고 있던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 3당은 검찰수사가 축소되어 그 결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야 3당이 해결책으로 합의한 것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입법화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정의당은 특별검사제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 독선적인 발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야 3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또 야당과 5공화국 청산 협상을 진행하되 절충에 실패하면 5공화국 청산과 노태우 대통령 신임을 연계한 중간평가를 조기에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임시국회가 개최되자 특별검사제와 중간평가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여야는 두 문제에 대한 공방을 재개하였다. 야 3당은 특별검사제와 관련하여 단일안을 발의하는 한편 5·18 광주특위의 청문회, 5공화국 비리특위의 조사활동계획 의결 등을 민주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야 3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에 민주정의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중간평가 조기실시로 맞섰다. 그러나 야 3당은 이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는 5공화국 청산이 마무리



▲ 광주특위청문회에서 민주정의당 의원석이 텅빈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1989년 2월 22일).

된 후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정의당이 강행한다면 ‘불신임 공동투쟁’을 전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여야는 임시국회 내내 특별검사제 도입과 중간평가 문제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회기 내에 어떠한 절충점도 찾지 못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농어가부채경감법」 등 관심을 모았던 정치 및 민생 관련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의를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여야 모두 정쟁으로 민생문제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여론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여야는 각종 민생관련 현안과 정치관계 안건 처리를 위한 시간부족을 이유로 임시국회의 회기를 5일간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여야는 제145회 임시국회를 통해 46건의 법률안만을 처리하였고, 130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해 다음 임시국회로 이월하였다. 이처럼 1989년 첫 임시국회는 1988년에 이어 5공화국 청산에 대한 여야 공방의 재개만을 알린 채 3월 9일 폐회되었다.

나. 여야 중진회의가 주도한 제146회 임시국회(제146회)

제145회 임시국회 폐회 이후 정국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1989년 3월에는 문익환 목사의 밀입북사건을 계기로 공안정국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4월에는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서석재 민주당 사무총장이 신민주공화당 후보를 매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당 간 갈등이 증폭되었다. 또 5월 3일 경찰관 7명이 불에 타 숨진 동의대 참사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국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여야는 정부의 현황을 청취하고 쟁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5월 9일 제146회 임시국회를 열었다.

여야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치적 상황과 산적해 있는 시국현안을 풀어나가는 해법으로 중진회의의 구성을 선택하였다. 중진회의는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제의한 것으로 임시국회를 개최하면서 여야 4당이 총무 접촉을 통해 수용하여 각 정당의 3역을 중심으로 민주정의당 5명,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각 3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로써 제146회 임시국회는 중진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중진회의는 산적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5월 16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중진회의는 각 정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단의 성격을 표방하였다.³⁰⁾ 모든 중요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여야 4당은 총무협상을 통해 5공화국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문제, 두 전직 대통령의 국회증언, 이철규 변사 사건, 파괴방지법 및 경찰 중립화 문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된 4개 법률안, 일산·분당 신도시개발 문제 등을 핵심의제로 선정하였다. 또 여야는 중진회의의 운영을 위해 ‘비공개·합의제·임시국회 회기 내 한시적 운영’ 등 3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중진회의는 초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첫 회의에서 논란이 되어 온 이철규 변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합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단일 사건에 대한 국정조

30) 첫 회의 후 4당 총무가 함께한 결과 발표에서 민주정의당 김윤환 총무는 “중진회의는 영수회담의 정치작업을 하기 위한 예비회담이 아니다. 모든 문제를 이곳에서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한 뒤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영수회담으로 넘긴다는 것”이라고 중진회의의 성격을 설명하며 독자성을 강조하였다(한국일보, 1989년 5월 17일자).



▲ 여야14인 중진회의(1989년 5월 26일).

사권 발동 합의는 1972년 유신 이후 처음이었다. 이어 5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는 과
과방지법 제정, 공안합수부의 조속한 해체, 내각총사퇴건의안 제출, 영수회담, 신도시
개발 계획 등 우선과제인 시국현안 5개 항을 일괄 타결하는 진전을 보였다. 이뿐만 아
니라 가장 어려운 쟁점 중 하나였던 5공화국 청산문제와 관련해서도 5월 19일 제4차
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에 합의하는 등 연이은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순탄하게 진행되던 중진회의는 5공비리 청산 문제와 관련된 핵심인사 처리문제
논의 과정에서 정당 간 의견이 대립해 일차 난관에 봉착하였다. 특히 5·18 당시 특
전사령관이었던 민주정의당 정호용 의원의 공직사퇴 문제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
언문제에 있어서 야 3당은 적극적이고 공세적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정의당은 소극
적이고 수세적 입장을 보이며 갈등하였다. 여야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최규
하 전 대통령의 증언과 5공화국 관련 미해결 현안을 영수회담으로 넘기기로 합의하
면서 다른 의제에 대한 협상이 재개되었다.

고비를 넘긴 중진회의는 기타 의제에 대한 협상과 합의를 진척시켜 나갔다.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자제 2단계 실시에 대한 합의³¹⁾를 이끌어 내었고, 「노동쟁의조정법」과 관련하여 노동쟁의가 금지된 방위산업체에 대해 산업별 및 공장별로 지정대상을 줄인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또 「사회안전법」을 폐지하고 「보안관찰법」으로 대체한다는 것, 도청 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등에 합의하고 이를 법률개폐특위로 넘겼다. 회기 내 폭력추방에 대한 공동결의문 채택, 신도시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건설위원회의 대정부 주택정책쇄신 촉구 결의문 채택 등도 주요 합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농어촌부채 정리문제 등 민생문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의료보험법안, 노동조합법안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제146회 임시국회를 이끌었던 중진회의는 10일간 계속하여 개최되었고 5월 26일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종결되었다. 중진회의는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등 주요 법률 개폐와 5공화국 핵심인사 처리 협상 등 몇 가지 중요 쟁점 의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4당 간의 대화와 타협의 소산이라는 점은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또 일괄타결식 운영이긴 하였지만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회가 중진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활동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중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측면과 중진회의에 밀려 적극적인 국회활동이 미진하였던 양면적 모습을 보인 제146회 임시국회는 5월 29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되었다.

다. 조선대생 이철규 변사 사건 국정조사(제146회)

제146회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중진회의를 통해 조선대생 이철규 변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에 합의하였다. 이 사건은 조선대학교 교지 「민주조선」 창간호의 북한 동조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교지 편

31) 2단계 실시는 1990년 상반기 중 시·도의회의원선거와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1991년 상반기 중 시·도 및 구·시·군의 장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집위원장 이철규가 1989년 5월 10일 전남 광주시 북구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었다. 이철규의 사망 이후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면서 국회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다. 이후 진상조사단은 국회 차원에서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진회의는 국정조사권 발동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여야는 5월 22일 조선대생 이철규 변사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였다.

여야 4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주정의당 5명, 평화민주당 3명,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각 2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조선대생 이철규 군 변사사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27일 제6차 본회의의 조사계획서 승인 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국정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대상은 광주지방검찰청, 전라남도경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선정되었다. 특별위원회는 광주 현지 조사활동, 사건 기록 및 자료 검토, 참고인과 증인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검문 당시 상황보고 누락 원인, 익사·실족사·자살로 초점을 맞추는 듯한 수사 태도, 검문 당시 도주한 이철규를 체포하지 못한 이유와 이를 은폐한 사실, 이철규를 놓친 후 근무규정 시간을 어기고 조기 철수한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조사기간에 14차례의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에 재부검을 의뢰하는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기존의 검찰수사 결과를 뒤엎을 결정



▲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이철규의 빈소를 방문하여 연설하고 있다 (1989년 6월 3일).

적인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특히 고문에 의한 타살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제보나 증거 및 객관적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만 실족 장소에 관한 다소의 의문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 결국, 특별위원회는 이철규의 사인에 대해서 실족사라는 검찰의 발표내용을 수용하였고 조사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조사활동을 마친 특별위원회는 6월 24일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당별로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합의하고 국정조사 활동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의결은 쟁점사항 처리 문제, 3당 합당, 5공화국 관련 특별위원회 해체 문제 등으로 여야가 갈등하면서 장기간 지연되었다. 결국 조사결과보고서는 해를 넘겨 1990년 7월 13일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에 의해 제150회 임시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조선대생 이철규 군 변사사건 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된 지 1년 1개월여 만에 자동 해체되었다.

라. 제147회 정기국회와 5공화국 청산(제147회)

1989년 국회활동은 1988년에 이어 5공화국 청산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월과 5월 두 차례의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여야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대치하였고 두 전직 대통령의 국회증언 문제 등 핵심쟁점에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안정국으로 새로운 갈등국면이 형성되면서 여야는 제146회 임시국회 이후 3개월여 동안 국회활동에 있어 담보상태를 지속하였다.

공안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환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제147회 정기국회였다.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9월 10일 개최하게 되어 있는 정기국회가 다가오자 8월 28일 4당 총무회담을 열고 공안정국 종식과 정기국회 운영 일정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제147회 정기국회는 여야가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식적인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견해차와 갈등을 표출하고 있었지만 정치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었다.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은 5공화국 청산 문제였다. 여야는 모두 5공화국 청산 문제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정의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5공화국 청산의 연내 마무리를 발표하였다. 한편,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도 국회대표 연설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연내 5공화국 청산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 10월 6일 여야 4당이 총무회담을 통해 핵심 난제 중 하나였던 5공화국 관련 핵심인사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정호용·이원조·이희성을 공직에서 사퇴시키고 허문도·장세동·안무혁은 국회 고발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여야 간의 합의는 정호용의 공직 사퇴 거부 의사표명으로 이행이 불투명해졌고 5공화국 청산문제는 여야 간 뿐만 아니라 민주정의당 내부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로써 연내 청산작업을 완료하려던 각 정당의 국회활동은 다시 난관에 부딪혔고 12월 초 5공화국 청산 문제를 종결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몰두하던 민주정의당 또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난항을 겪던 5공화국 청산 문제는 12월에 들어서면서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정호용의 사퇴를 설득하던 민주정의당은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야 3당 총재를 순방하여 정호용의 사퇴를 전제로 축소 청산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퇴거부를 고집하던 정호용도 12월 들어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의 동반퇴진이나 본인의 사퇴를 통한 5공화국 청산 문제 종결을 조건으로 공직을 사퇴할 수 있다는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 민주정의당은 담보상태에 있던 5공화국 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권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위임하였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방문해 국회증언에 관한 여당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결국 야 3당은 12월 15일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열고 5공화국 청산 문제 처리에 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합의내용의 핵심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을 통한 5공 청산 마무리, 정호용과 이희성의 공직사퇴를 통한 인적 청산 등이었다.

영수회담을 통한 여야 총재 간 합의는 5공화국 청산 방법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가속화시켰다. 여야는 146회 임시국회에서 구성되었던 여야 중진회의를 재가동하는

한편 두 전직 대통령의 국회증언을 12월 30일과 31일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또 사전에 작성된 서면질의서를 두 전직 대통령에게 보내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 답변한다는 국회증언 형식도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12월 19일 제147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여야는 5공비리특위와 5·18 광주특위를 통해 세부절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 4당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 출석 거부에 따른 고발 문제 등 몇몇 사안에 대한 견해차로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12월 30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5공 청산 문제를 종결할 제5공화국 관련 특별위원회의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청문회의 핵심은 12월 30일 최규하 전 대통령,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이었다. 그러나 첫날 청문회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국회증언은 전례가 없다는 등 몇 가지 이유를 내용으로 하는 서면 회신을 전하고,³²⁾ 증언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불참사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며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고발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의당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 제출, 서면증언의 유효성, 전직 대통령 고발이 가져올 역사적 오점 등을 내세우며 고발결의에 반대하였다. 견해차를 보이며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는 절충점을 모색하였으나 의견 절충에 실패하였다. 이에 민주정의당 의원들은 5·18 광주특위 불참의사를 밝히며 퇴장하였다. 결국, 야 3당은 민주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5·18 광주특위를 속개해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출국정지 요청을 가결하였다.

12월 30일 실시된 광주특위청문회가 최규하 전 대통령의 증언 불참과 그에 대한 5·18 광주특위의 검찰고발로 마무리되자 국민의 관심은 12월 31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에 집중되었다. 청문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언선서, 서면질의에 대한 일괄 구두답변, 여야 4당 각 1명의 구두 보충질의 및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

32) 12월 29일 최규하 전 대통령 측이 보내온 회신에 의하면 청문회 불출석 이유는 본인의 국회출석 증언이 광주문제의 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이미 관계 인사들의 증언과 설명으로 진상이 밝혀졌다는 점, 전직 대통령의 국회출석 및 증언은 국익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한편 회신에는 진상조사 협조 의사와 함께 서면에 의한 질의·답변의 협조방식이 담겨 있었다. 제147회 정기국회 제32차 광주특위회의록(12, 30) 참조.

되었으며 TV를 통해 녹화 중계되었다. 그러나 청문회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하였다. 여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선서할 때 손을 들지 않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일민주당 장석화 의원이 국회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4당의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위원장에 의해 거부되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고 있다(1989년 12월 31일).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괄답변이 진행되면서 청문회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나의 부덕한 소치와 업보”라는 인사말로 시작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괄답변은 사죄의 내용보다 해명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에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였고 청문회장은 일순간 소란스러워졌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과 관련하여 발포문제를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답변하자 야당의원들이 물리적 행동에 나서 청문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야당의원들은 의혹이 제기된 비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또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라는 답변이 나올 때마다 고함을 지르며 위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회의는 수차례 정회되었고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

령의 진실한 답변을 거듭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답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답변과정에서 위원장의 수차례 경고와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변명과 부인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이에 청문회에 참석하였던 특별위원회 소속이 아닌 일부 야당 의원까지 청문회 도중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항의에 가세하였고 청문회장 밖에서도 일부 민주정의당 의원과 야당 의원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 결과 청문회는 장내소란을 이유로 정회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민주당 의원이 증인석을 향해 자신의 명패를 내던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민주정의당은 이를 계기로 노무현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청문회 참석을 거부하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상황이 어렵게 되자 여야 4당의 합의 없는 더는 국회증언을 하지 않겠다며 추가적인 증언을 거부하였고, 위원회의 출석 촉구 및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의 속개 후 증인석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14시간으로 예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은 완료되지 못한 채 끝났다.

이후 청문회는 본래 취지와 달리 여야 간 공방 속에 밤 12시까지 진행되었고, 급기야 민주정의당 의원들은 대부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연석회의를 통해 청문회를 진행하였던 5공화국비리특위와 5·18 광주특위는 해를 넘겨 1990년 0시 44분 회의를 속개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문동환 위원장은 파행으로 종료된 청문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연석회의의 산회를 선포하였고,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었던 청문회는 큰 성과 없이 끝났다. 청문회 이후 야 3당은 이구동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답변과 민주정의당의 회의 불참을 비난하는 성명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정의당은 야당의 청문회 폭력사태를 비난하였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회증언으로 5공화국 청산의 막이 내렸다고 종결을 선언하였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하였음에도 이후 5공화국 청산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이로써 2년에 걸쳐 여야가 공방을 벌여왔던 5공화국 청산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마. 노태우 정부의 실정 조사에 집중한 1989년 국정감사(제47회)

1989년 5월 29일 제146회 임시국회가 폐회된 이후 공안정국 등 혼란스러운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2개월여간 답보상태에 있던 여야의 국회활동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재개되었다. 정기국회 초반 여야의 국회활동은 1988년 부활된 이후 두 번째를 맞는 국정감사에 집중되었다. 애초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12일에서 10월 1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야는 감사 준비 일정과 보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서 송달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감사 시작일을 9월 18일로 합의·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국정감사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75개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총 331개의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1989년 국정감사는 부활 후 첫 번째로 실시된 1988년 국정감사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즉, 1988년도 국정감사가 철저하게 제5공화국에 대한 정치감사의 양상을 보였다면 1989년도 국정감사는 제6공화국 실정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었다. 각 상임위원회는 국정 비리나 예산집행의 부적절성을 부각하는 등 감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충실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제5공화국 관련 문제보다는 노태우 정부의 현안과 실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노태우 정부 현안 중 가장 대표적으로 부상한 쟁점은 정기국회 이전까지 2개월여의 기간동안 지속되어 온 공안정국과 관련된 문제였다. 1989년 6월 구속된 서경원의원의 입북사건³³⁾은 공안정국을 심화시켰고,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에 대한 불구속 기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평화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검찰과 국가안전기획부 등 공안관계 기관에 대한 권력남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다. 특히 평화민주당은 9월 23일 실시된 대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서울지방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총재 기소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공안사건 수사에

33) 평화민주당 서경원 의원이 1988년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밀입북하여 김일성 등과 면담한 사건으로, 안기부는 1989년 6월 27일 서경원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있어서의 고문시비 등' 인권유린 문제를 집중 추궁하였고, 나아가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국회 노동위원회에서는 공안정국 하에서 대규모 노동자 구속 문제를 두고 검찰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야 3당과 이를 반대하는 민주정의당이 대립한 가운데 9월 18일 야 3당이 표결을 강행하여 증인출석을 의결하고 9월 28일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준사법적 기능³⁴⁾과 정치중립 저해를 이유로 검찰총장이 증인출석 불응 방침을 천명하자 야 3당은 파면 요구와 해임결의안 제출 등에 합의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야 3당은 10월 6일 또다시 노동위원회를 통해 동행명령장발부 동의안을 발의하였고 민주정의당의 반대 속에 표결이 강행되었다. 그러나 동의안은 신민주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7대 7로 맞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38명의 현역 의원이 사법처리 대상이라는 검찰의 답변으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이 국정감사 중 이를 발표한 것은 국정감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저의라며 반발하였다.³⁵⁾

한편 행정위원회의 정무1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철언 장관의 방북설 및 대북 비밀 접촉설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진위공개를 요구하는 야당과 국가 기밀임을 내세워 비공개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이 팽팽히 맞섰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제6공화국 주요 현안 중 하나였던 전교조 문제와 관련하여 무소속 이철 의원이 '정부 내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협의기구 구성 비밀문서'를 폭로하면서 논란을 벌였다. 야당은 폭로문서에 근거하여 "안기부, 전경련, 심지어 주부교실과 반상회까지 동원된 전 국가체계가 전교조 탄압을 위한 기구로 사용되었다"라며 정부와 여당을

34) 준사법적 기능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될 경우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일선 검사들에게까지 곧바로 정치적 영향이 미치게 되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중립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견해였다.

35)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수는 민주정의당 9명, 평화민주당 9명, 민주당 3명 등 21명이었고 이외에도 현역 의원 중 17명이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공격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의당 의원들은 불법단체인 전교조에 대해 정부가 대체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맞섰다. 재무위원회에서는 김덕룡 통일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 억제 공문을 폭로하면서 정부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야당은 “국정감사 방해공작이자 국민 알권리 봉쇄”라며 정부를 공격하였다.

이외에도 야 3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설계용역 수의계약의 문제, 재벌들의 부동산 과다보유와 한국은행 특별융자 회수 문제³⁶⁾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권노갑 평화민주당 의원이 장비 및 부속품 구입 등 4가지 분야에서 나타난 정부의 국방비 낭비를 질책하는 등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국방예산 사용 문제를 추궁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은 사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이는 국민을 현혹하고 국군을 모독하는 무책임한 감사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방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공안정국, 전교조 문제, 경제난, 각종 비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제6공화국 정치현안과 실정에 초점이 집중되어 진행된 1989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 20일간의 일정을 마친 후 12월 1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종료되었다.

바.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1990년도 예산안(제147회)

제147회 정기국회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199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기국회의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였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보름 이상 넘겨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에서야 여야합의로 처리되었다. 이같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원인은 정부예산안에 대한 여당의 원안처리와 야당의 삭감처리라는 견해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야 3당이

36) 특별융자는 부실기업들을 재벌들이 인수할 때 엄청난 특혜를 주었던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부도가 나게 되자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에 또 다시 특혜대출을 한 것을 말한다.

5공화국 청산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소극적 대처에 반발하여 예산안 심의와 5공화국 청산 문제를 연계한 대여투쟁을 전개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구성이 지연되어 여야 간 협상 자체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9월 29일 1989년보다 19.7% 증가한 23조 254억 원 규모의 1990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당정협의를 통하여 정부 측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야 3당은 정부예산안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비판의 핵심은 팽창예산이 재정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경제의 안정기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야 3당은 팽창예산이 지난 두 차례의 선거에서 계획 없이 남발하였던 정치적 공약사업과 다가올 지방자치선거를 겨냥한 당리당략적 졸속예산이며,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1980년도 이래 최대의 팽창예산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야 3당은 내부적으로 평화민주당이 1조 6,798억 원, 통일민주당이 1조 5,646억 원, 신민주공화당이 7,000억 원을 삭감액으로 설정하였다.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삭감 주장은 예결특위 구성 이전부터 정기국회 과정에서 이미 표출되었다. 10월 16일과 17일 실시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예산안이 팽창예산임을 질타하였다. 또 야 3당은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 등 세제개혁 단행을 요구하며 세제개편 단일안을 마련하는 등 세제감면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였다. 야 3당은 예산안 중 방위비, 예비비 및 정부출연금 절감 등 대폭적인 예산안 수정 및 삭감에 합의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감한 예산삭감 투쟁을 위해 공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만이 아니었다. 예산안 심의 및 처리를 지연하는 더욱 중요한 요인은 오히려 5공화국 청산 문제에 대한 여야의 갈등이었다. 강경한 예산삭감 투쟁을 내세운 야 3당은 10월 19일 총재회담을 통해 통일민주당이 내세운 예산안 심의와 5공화국 청산 문제를 연계해 투쟁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민주정의당은 야당공조가 “민생과 직결된 국가예산을 정치투쟁의 볼모로

삼켰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반발하였다. 오히려 연내에 5공화국 청산 문제를 처리한다는 기존입장 고수를 확인하는 한편 예산처리 관련 8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예산안과 5공화국 청산 문제의 연계를 두고 여야가 양보 없이 대립해 10월 10일 본회의에서 이미 예결특위구성안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결특위 구성은 지연되었고, 예산안 심의와 처리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대립상황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여야 중진회의였다. 여야는 5공화국 청산 문제 등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중진회의를 재가동하였고, 중진회의에 따라 구성안이 의결된 지 1개월여가 지난 11월 13일 뒤늦게 예결특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예결특위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는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여전히 5공화국 청산 문제에 대한 여야갈등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야 3당은 예결특위가 구성된 후에도 예산안 심의와 5공화국 청산 문제를 연계하여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5공화국 청산 문제는 여야 간에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갈등을 보이며 진전이 없었다. 오히려 5공화국 청산 문제의 연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야 3당은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여야중진회담 결과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 하에 민주정의당의 예산안 심의 일정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다. 나아가 야 3당 소속의원 전원이 정책질의를 신청하는 등 지연작전까지 전개하는 바람에 1990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에 처리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5공 청산 문제와 맞물려 장기간의 여야대립을 지속해 오던 1990년도 예산안은 결국 12월 15일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김영삼·김종필 총재 등 야 3당 총재가 4자회담을 통해 연내 5공화국 청산에 합의하고서야 실마리를 찾았다. 영수회담에서 4당 총재는 5공화국 청산 문제와 더불어 1990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4당은 11월 17일 정책위의장, 조순 부총리, 이규성 재무부 장관과의 회동을 통하여 정부예산안 중 3,360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의 계수조정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한 뒤 12월 19일



▲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계수조정작업 등으로 심야작업을 치른 후 회기종료 30분을 남긴 밤 11시 30분 정기국회를 폐회하고 국회를 나서고 있다(1989년 12월 19일).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여야는 조정된 1990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마감일인 12월 19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로써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는 우여곡절 끝에 그나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힘겹게 처리되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했던 경직성 경비,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은 막판 시한에 쫓겨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폭 삭감에 그쳤다. 처리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제147회 정기국회는 예산안에 대한 부실심사와 졸속심사라는 비판 속에 폐회하였다.

3. 1990년도

1990년 국회는 2월 민주정의당 · 통일민주당 · 신민주공화당의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출범하면서 여소야대 구조가 여대야소로 바뀐 환경 속에 운영되었다. 그 결과 국

회는 정계개편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다수의 논리를 앞세운 거대여당의 일방적 독주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90년 국회는 2월 제148회 임시국회(2.20~3.16)를 시작으로 제149회(5.29), 제150회(6.18~7.17) 임시국회와 제151회 정기국회(9.10~12.18)까지 모두 4회 개최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단독처리와 야당의 등원 거부 및 의원직 총사퇴 결의가 충돌하는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파행국회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의회정치가 실종되었다. 이처럼 1990년 각 정당의 원내활동은 여대야소의 변화된 정치구조 속에 제13대 국회 전반기와는 다른 대립과 갈등양상을 보였다.

가. 3당 합당에 대한 여야 공방(제148회)

1990년 첫 임시국회가 여야 공동 소집요구로 2월 20일 개최되었다. 제148회 임시국회는 3당 합당에 의해 형성된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이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하고 열린 첫 번째 국회였다. 민주자유당은 개혁입법 및 민생처리 문제에 있어 거대여당의 힘을 활용해 생산적인 국회활동을 보여주는 한편 개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방침으로 임시국회를 맞았다. 이와 달리 일순간 약세의 야당으로 전략한 제1야당 평화민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3당 합당에 의한 '보혁구도'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전환하기 위해 전면적인 대여공세를 펼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평화민주당은 3당 합당에 대한 부당성과 부도덕성, 비민주성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고 여기에 맞서 민주자유당도 3당 합당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결과 제148회 임시국회는 애초 민주자유당의 기대와는 달리 3당 합당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3당 합당에 대한 공방을 촉발시킨 것은 개회 첫날 김재순 국회의장의 개회사였다.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당 합당의 당위성을 언급하였고 야당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일부 평화민주당 의원은 개회식 도중 퇴장하였다. 야당은 국회의장의 발언 취소 및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였고, 이로써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공전사태를 맞았다. 이후 여야는 임시국회 내내 3당 합당에 대한 당위성을 놓고



▲ 제148회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평화민주당 의원들이 김재순 의장의 개회사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1990년 2월 20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3당 합당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부터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었다.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은 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과거 4당 정치구조가 “분열의 정치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정치형태이며 구조”라고 지적하는 한편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뛰어넘어 역사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합당을 택하였다”라

며 합당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반면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는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해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을 것을 주장하는 등 대어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대중 총재는 3당 합당을 “국민 배신행위이며 보수와 반동수구세력의 합작”이라고 주장하며 3당 합당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한편 “민주자유당과 현 정권이 수와 힘을 무기로 3당 합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데만 고집하면 국민의 무서운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대립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진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는 3당 합당에 대한 공방으로 일관하였고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평화민주당은 3월 8일과 9일 확대간부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운영 결과 민주자유당의 일당독재의 저의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난하였다. 평화민주당은 3당 합당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해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비록

총사퇴 결의안은 민주자유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여야의 대결 구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여야는 제148회 임시국회 회기 내내 3당 합당에 대한 당위성과 부당성에 대한 논쟁을 반복하였고, 임시국회는 여야대립 상황에서 3월 16일 폐회되었다.

나. 민주자유당의 국군조직법안 변칙처리 파동(제148회)

정계개편을 통해 출범한 거대여당 민주자유당과 힘의 정치를 경고하며 반발하는 평화민주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1990년 3월 12일 제148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자유당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변칙 처리하여 국회가 파행되는 파문이 일어났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1989년 11월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 기존의 육·해·공군 등 3군 외에 합동군제인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국방참모총장제를 신설하여 3군을 통합 지휘하는 군령권(작전지휘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민주자유당은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자주적 군사지휘체제 구축의 일환이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군권을 국방참모총장 1명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또다시 군의 정치개입의 불안을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군제는 3당 합당 이후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정계개편을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을 하며 반대하였다. 실시시기에 있어서도 정부와 여당은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해 7월 1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해 야당은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님을 강조하며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통제형 합참의장제를 골자로 한 대안이 평화민주당에 의해 제시되었다. 통제형 합참의장제는 ‘전쟁 등 유사시에만 합참의장이 3군의 통괄 지휘권을 행사하고 평시에는 통제권만 갖는 미국식 통제형 합참의장제’를 모델로 한 것으로 종래에 자문역할만 담당하는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되 3군 참모총장들도 제한적인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평화민주당의 대안제시를 계기로 여야는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후 여야는 3월 10일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정부와 민주자유당은

국방참모총장 명칭을 합참의장으로 바꾸고 실시시기를 10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양당은 타협에 실패하였다.

민주자유당은 3월 1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평화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반토론 및 표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다. 평화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처리를 연기하고 여야중진회의에서 절충을 벌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유학성 위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표결처리를 시도하였고 야당의원들은 실력저지로 맞섰다. 이에 위원장은 표결 절차도 생략한 채 이의 여부만을 묻고 개정 법률안 통과와 산회를 선포하였다. 평화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 평화민주당 의원들이 국군조직법안 변칙처리와 관련하여 유학성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1990년 3월 12일).

이후 평화민주당은 강력대응에 나섰다. 국군조직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3당 합당의 반민주적 실체를 국민에게 실감케 한 사례’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제148회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경우 법적 투쟁은 물론 장외투쟁 등

무효화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또한 다른 법안의 기습 변칙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저지조를 편성하는 등 실력저지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물리력 일변도의 투쟁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우려하여 원내총무 접촉을 통해 쟁점법안의 절충을 위한 중진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등 양면적 방법을 병행해갔다.

이러한 야당의 강경한 저항과 함께 강행처리에 대한 비난여론이 제기되면서 민주자유당도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 강행처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군조직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절차상의 잘못과 미숙함을 인정하였다. 민주자유당은 평화민주당과의 극한 대결이 가져올 국회운영 및 정국운영의 정치적 부담과 강행처리를 통한 당의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평화민주당과 절충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재심의하는 절차를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양당은 원내총무 협의를 통해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재협상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이로써 국군조직법 강행처리 파문은 일단락되었으며 국회는 정상화되었다.

다. 민주자유당의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과 하반기 원 구성(제149회)

1990년 3월 제148회 임시국회 폐회 이후 5월에 접어들면서 여야는 제13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문제에 직면하였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임시국회 소집시기와 상임위원장직 배분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거대여당으로 변화한 민주자유당은 “원내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상임위원장 전부를 맡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고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주장하며 16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자당에서 맡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제13대 국회 전반기 여소야대의 4당 구도에서 야당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의석비율에 따라 여당에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였던 점을 지적하며 의석비율에 따라 4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해 주지 않으면 후반기 원 구성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첨예한 견해차 속에 민주자유당은 5월 29일 하루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고 우선 의장단만을 선출한 후 6월 18일 이전에 다시 국회를 소집하여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5월 말에 25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임시국회 소집 시기와 방법, 상임위원장직 배분 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민주자유당의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실력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워 두 정당 간 갈등이 고조되었다. 여야는 5월 25일 원내총무 협상을 통해 국회소집 문제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되었다.

민주자유당은 “입법부가 정당한 사유나 천재지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장단 선출을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계획대로 5월 29일 하루 회기의 제149회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개최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민생문제 해결과 개혁입법 등을 위해 소집되어야 할 임시국회가 원 구성을 위한 1일 국회로 민주자유당에 의해 단독 강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임시국회 불참을 결정하였다. 또 군소야당인 민주당(가칭)이 임시국회 불참에 동조하면서 국회는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았다. 민주자유당은 단독으로 자당의 박준규 의원과 김재광 의원을 제13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다만 관례상 야당에 할애된 부의장 1명은 선출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



▲ 평화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자유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제149회 임시국회를 진행하고 있다(1990년 5월 26일).

야당의 국회 불참과 여당의 국회의장단 단독선출로 이어진 국회파행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여전히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입장변화 없이 대립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여야 대립은 이후 민주자유당이 조건부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았다. 민주자유당은 평화민주당의 4개 상임위원장 배분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장 권한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의안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 국회법 규정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24시간 이상 사회를 거부할 때는 위원장이 속해 있지 않은 원내교섭단체 간사가 사회를 맡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조건부 조정안을 두고 여야는 공식·비공식 협상을 벌였고, 평화민주당이 이에 동의하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6월 18일 제150회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6월 19일 1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이로써 제13대 국회는 시한 내에 하반기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었다.

라. 서울시 예산전용에 대한 평화민주당의 정치쟁점화(제150회)

제150회 임시국회 초반 여야는 서울시의 예산전용 문제를 두고 대립하면서 국회가 공전되는 파행을 겪었다. 평화민주당은 1990년 6월 25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198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산 일부를 전용하여 지역사업 명목으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총재 명의로 구청장들에게 격려금이 지급되었음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평화민주당은 서울시에·결산 서류를 통해 1986년과 1988년 1억여 원에 지나지 않았던 환경정화 사업비가 1987년 28억여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금액 중 12억 원이 선거를 앞두고 월동기 저소득층 생계보호 명목으로 구청장에게 배분된 점을 제시하였다. 또 1987년 대통령선거와 1988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울시 예산에서 88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밝혀냈다는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의 법정진술도 제시하였다. 이외에 노태우 총재 명의로 격려금이 구청장과 동장들에게 지출된 사실이 적시된 1987년도와 1988

년도 ‘주요 사업 관련 예산 집행 내역’ 사본도 공개하였다.

이러한 평화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6월 28일 대정부질문에서 강영훈 국무총리는 소규모 지역 민원사업을 위해 민원해결사업비를 계상해왔으나 선거와 관련해 조성된 특별기금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총리의 답변이 미흡하다며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특히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답변에서 특별기금 조성 자체를 부인한 점을 들어 반복된 답변에 대한 위증사과를 주장하는 한편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민주자유당은 제5공화국에서 발생한 문제를 은폐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정부에서 자체 조사하도록 시일을 준 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론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은 격렬한 논란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국회 본회의는 밤 12시가 넘어설 때까지 정회를 거듭하다 결국 자동 유회되었다.



▲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가 '서울시 예산전용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소속의원들을 자신의 의석으로 불러 대책을 지시하고 있다(1990년 6월 29일).

이후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은 총무회담을 통해 국회정상화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정부조사 후 진상공개' 주장과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총리의 사과'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실패하였고 국회는 7월 2일까지 공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자유당은 조속한 사실 확인과 온당한 처리방안 마련을 통해 국회정상화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한편 국고유용 및 공금횡령 부분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하였고, 민주자유당이 ‘국정조사권 공동발의’와 ‘국무총리의 시인과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본회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강경방침을 정하였다. 여기에 민주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를 결정하고 대여 공세에 동참하면서 여야갈등은 심화되었다.

국회공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7월 2일 국회정상화를 위해 또다시 협상에 나섰다. 민주자유당은 정부에서 조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시간이 필요하며, 추후 조사 결과를 서면답변과 함께 행정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여전히 정부의 사실 시인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보장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국 여야는 난항 속에 세 차례의 총무회담을 거친 후에야 국무총리가 예산전용 사실을 시인 및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로 하는 한편 행정위원회에서 실태파악소위를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권 발동을 재검토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로써 국회는 7월 3일 정상화되었고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987년도 특별기금 확보계획서에 명시된 바, 국가예산 중 552억원의 지역사업비가 선거년도에 선심용 지역사업비로 쓰인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사과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예산전용 문제는 7월 4일 강영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이루어진 전용 시인과 사과 답변을 반복하면서 또다시 파문이 일었다. 강영훈 총리는 전날 자신의 국회답변이 국회운영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일 뿐 정부의 진의가 아님을 밝히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상황이 반전되면서 평화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행정위원회에서 7월 9일 정부의 진상조사반의 보고를 들은 후 상임위원회 차원의 실태조사반을 구성하기로 민주자유당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7월 9일 행정위원회에서는 실태파악을 위

한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할 것을 주장하는 평화민주당과 정부보고를 우선 청취하자는 민주자유당이 갈등을 빚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였고, 정부보고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된 특별진상조사반은 노태우 총재가 서울시를 방문하여 회사한 구청장 격려금 500만 원에 서울시가 정보사업비 1,200만 원을 추가하여 노태우 총재 명의로 지급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보사업비는 기관장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으므로 불법 전용은 아니라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평화민주당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격려금을 회사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노태우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또다시 서울시 예산전용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였다. 그러나 이후 제150회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민주자유당의 일방적인 단독처리 파문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마. 민주자유당의 쟁점법안 단독처리와 여야의 물리적 충돌(제150회)

제150회 임시국회가 진행되던 7월 민주자유당이 쟁점법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자 이에 반발한 야당이 국회의원 총사퇴로 맞서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제150회 임시국회 개최 당시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은 국군조직법, 방송관계법, 추가경정예산 등 쟁점의안에 대해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쟁점법안을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강경 방침이었고 평화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대여당으로 변모한 민주자유당이 원내 다수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들에 대한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시도해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국회파행을 불러온 계기는 7월 7일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민주자유당이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 폭력사태였다. 방송법, 한국방송공사(KBS)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 등 3개 방송관계법 개정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

으로 인하여 국무회의 의결 직후부터 야당은 물론 재야단체와 방송관계자들이 이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평화민주당은 방송관계법 개정을 내각제 개헌 등 장기집권 기도의 일환으로 보고 국회통과를 반드시 저지한다는 입장이었다. 7월 7일 방송관계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문화공보위원회 회의가 열리자 의안상정을 반대하는 평화민주당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동원하여 회의진행을 실력으로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독으로라도 상정하려던 민주자유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평화민주당 의원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민주자유당 최재욱 의원이 부상을 당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물리적 충돌이 동반된 첨예한 대립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민주자유당은 “쟁점법안은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강경방침을 변경하지 않았다. 민주자유당은 7월 10일 문화공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송관계법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평화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기습 상정하였다. 이어 7월 11일에는 문화공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평화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저지를 물리치고 방송법 개정안과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이 국무총리의 ‘서울시 예산전용 번복 발언’을 문제 삼아 회의장을 퇴장한 틈을 이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기습 통과시켰다. 또 민주자유당 단독으로 5공비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5공 비리 조사보고서’를 의결하고 사실상 특위를 해체하였다.

상임위원회에서 민주자유당이 일방적으로 쟁점법안들을 처리해 나가자 평화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최종 의결을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강경방침을 세우고 맞섰다. 평화민주당은 7월 12일과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의장을 점거하고 위원장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는 등 민주자유당의 일방적인 쟁점법안 상정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였다. 그러자 민주자유당은 7월 14일 국회법 규정에 의거하여 자당 소속 박준규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이에 평화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박준규 국회의장의 본회



▲ KBS노조원들이 방송관계법개정안 변칙통과에 항의하여 제작거부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1990년 7월 13일).

의장 입장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미리 본회의장에 들어와 일반 의원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민주자유당 소속 김재광 국회 부의장은 휴대용 마이크로 의사봉도 없이 본회의 개의를 선포한 직후 국군조직법 등 26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이의 여부를 물은 다음 곧바로 의결을 선포하였다.

본회의 개의선포에서 산회선포에까지 소요된 시간은 2분여에 불과하였다. 평화민주당 의원들은 김재광 국회 부의장의 기습 사회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민주자유당 의원들의 저지에 막혀 실패하였다. 결국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쟁점법안들은 민주자유당에 의해 일방 처리되었다. 이후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제150회 임시국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공전되는 파행 속에 폐회하였다.

바. 야당의 의원직 총사퇴와 국회 장기공전(제151회)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민주자유당이 쟁점법안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자 야당은 의원직 총사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쟁점법안 단독처리 직후 7월 13일 이해찬 평화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의 김정길·이철·노무현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7월 23일 평화민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무소속 의원 2명도 총사퇴에 동참하였다. 이후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은 후속대책으로 소속의원들의 의원회관 철수, 세비 수령 거부를 결의하는 한편 제13대 국회해산과 조기 국회의원선거를 주장하였다.



▲ 평화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자유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항의하여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있다(1990년 7월 23일).

야당은 대여 공세에 있어 의원직 총사퇴 등 정치적 투쟁뿐만 아니라 사법적 무효화 투쟁도 전개하였다.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한 민주자유당의 일방적 처리가 법률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8월 10일 양당 소속의원 공동명의로 ‘입법권 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어 8월 11일에는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박준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남용해 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야당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자유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제13대 국회해산과 조기 국회의원선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대화로 난국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야당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하여 여야 간에는 대화통로마저 차단되면서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고, 공전상태에 빠진

국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까지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여당만의 단독국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민주자유당은 9월 7일 박준규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의원들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원내복귀를 촉구하는 공한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오히려 내각제 포기 선언,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제13대 국회해산 후 국회의원선거 실시, 날치기 처리 법안 철회, 민생문제 해결 등 국회정상화를 위한 5개안을 제시하며 민주자유당을 압박하였다. 또 민주자유당의 실질적인 반성과 행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국회정상화와 관련한 대화와 국회등원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도 사퇴의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등원을 거부할 것을 결정하면서 여야의 갈등은 해소될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제151회 정기국회는 야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9월 10일 민주자유당 단독으로 개최되었다. 민주자유당은 정기국회 개최 후 단독국회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애초 방침에 따라 개최 다음 날 국회의 휴회를 의결하였고 국정감사도 야당의원들이 등원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여야는 이후 수차례의 등원협상에도 불구하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였고, 오히려 국군보안사령부의 불법사찰 폭로 파문으로 인하여 정국은 더욱 경색되었다. 특히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4가지 조건 이행을 촉구하며 10월 8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 제151회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야당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여 의원석이 비어있다(1990년 9월 10일).

그 결과 국회는 정기회를 개최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장기 공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와 국회정상화(제151회)

여야 갈등으로 1990년 정기국회가 장기 공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민주당 의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더욱 강경한 대야 공세를 취하자 민주자유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10월 11일에는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이 단식 중인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를 방문해 평화민주당이 요구하는 정국정상화 방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히며 단식 중단 및 국회 등원을 요청하였다. 이어 10월 16일에도 김윤환 민주자유당 원내총무가 김대중 총재를 예방하여 요담을 갖는 등 정국타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평화민주당은 10월 20일 민주자유당이 지방자치제 문제를 포함한 정국타결안을 제시한 것을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단식 종료와 민주자유당과의 등원협상을 결정하였다.

여야 간 등원협상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지방자치 실시 문제였다. 유신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의 부활은 1989년 12월 15일 여야 4당 영수회담에서 이루어진 조기 실시 합의와 지방자치법(법률 제4162호) 개정으로 이미 확정돼 있었다. 그러나 1990년 들어 민주자유당이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지방의회의원선거를 하반기에 실시하거나, 1991년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1992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여야 간 논란이 시작되었다. 평화민주당은 애초 합의된 대로 지방자치선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등원조건으로 내세웠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여부와 비례대표제 허용 문제를 두고도 양당은 대립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를 모두 배제하자고 주장하였고 평화민주당은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평화민주당과 민주자유당은 각각 1990년 3월 5일과 7일 자당의 주장을 담은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의견이 대립해 애초 예정되었던 1990년 상반기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는 무산되었다. 이후 양당은 계속하여

쟁점사항을 두고 대립하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1990년 하반기 들어서는 국회공전이 지속돼 지방자치 관련 법안에 대한 협상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등원협상이 본격화되기 전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은 일차적으로 1991년 3월까지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고 1992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하며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의 정당추천은 허용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따라서 협상의 쟁점은 기초의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여부 문제였다.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은 1년 동안 고집해오던 자당의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아 재개된 등원협상도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개최한 지 두 달이 지나서도 정기국회는 여전히 공전하였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자 민생외면에 대한 국민의 비난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였다. 이에 민주자유당은 수해복구비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평화민주당 또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등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등원 시기와 절차를 당 지도부에 일임하였다. 그 결과 11월 17일 열린 원내총무회담에서 평화민주당은 기초의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민주자유당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고, 이후 1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여야 간 등원협상이 완료되면서 평화민주당은 11월 19일 국회에 등원하였고, 이로써 7월 이후 여당의 쟁점법안 일방 처리와 야당의 국회의원 총사퇴로 파행을 거듭해 온 국회는 128일 만에 정상화되었다.

이후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은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법안의 처리 시기와 방법을 두고 또다시 대립하였다. 그러나 12월 11일 평화민주당이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 요구조건을 모두 포기하고 민주자유당 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적인 양보를 선언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등 지방자치 관련 법안은 12월 15일 여야합의로 일괄 처리되었다. 이로써 제13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1년에 걸쳐 의견대립과 갈등을 보여 왔던 지방자치 실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4. 1991년도

1991년 국회는 4차례의 임시국회를 포함하여 정기국회까지 모두 5차례 열렸다. 그러나 제152회(1. 21~2. 9) 첫 임시국회부터 수서지구택지공급 특혜의혹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회와 정부 간, 그리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개최된 제153회(3. 7~4. 5) 임시국회는 수서사건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해 야당이 단독으로 소집하였으나 민주자유당이 불참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되지 못하였다. 제154회(4. 19~5. 11) 임시국회에서는 여야대립으로 난항을 거듭하던 개혁입법안을 민주자유당이 단독 처리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제13대 마지막 정기국회(9.10~12.18)에서는 국정감사를 위한 야당의 증인 신청을 여당이 계속 거부하면서 국정감사 후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또 쟁점법안에 대한 민주자유당의 단독 강행처리로 야당의 농성과 국회 파행이 이어졌고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민주자유당의 쟁점법안 강행처리와 여야의 물리적 충돌 속에 정기국회가 폐회되었다.

가. 민주자유당의 경찰법 단독 처리와 야당의 반발(제152회)

여야는 1991년 초부터 개혁입법안 처리를 표방해 왔으며, 이에 따라 1991년 1월 21일 개혁입법안과 걸프전 의료지원단 파견동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제152회 임시국회가 20일간의 회기로 개최되었다. 개혁입법안 중에는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경찰법」 등 3가지 법안의 처리 문제가 제152회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한 뚜렷한 견해차를 보여 정당 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특히 민주자유당은 내부적으로도 쟁점법안에 대해 계파 간 의견이 대립해 정당 간 협상에 어려움을 더하였다.

임시국회가 개최하자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은 쟁점법안 협상을 위해 양당 4명씩 8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총 8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해 협상은 지지부진하였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입법형태에서부터 소폭 개정을 주장하는 민주자유당과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평화민주당이 기존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대립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경우에도 수사권 범위를 두고 민주자유당은 기존 범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한 반면, 평화민주당은 국가안전기획부가 간첩죄만 수사하도록 하고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감독권을 박탈하는 대신 국가안전기획부의 상위기구로 정보조정협의회를 신설해 그 권한을 부여하자는 상충되는 입장을 내세웠다. 경찰법에 있어서는 경찰위원회 기능과 관련해 경무관 이상의 임명동의권을 쥐야 한다는 평화민주당과, 경찰청장 임명동의권만을 부여해야 한다는 민주자유당 입장이 대립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여야 간 의견대립으로 협상이 성과를 이루지 못하자 민주자유당은 임시국회 소집 취지에 부응하고 여당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경찰법 등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법안의 단독처리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월 6일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민주자유당은 야당의원들의 실력저지 속에 4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경찰법 개정안을 질의, 축조심 의, 소위심사, 찬반토론, 표결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기습 상정하여 20여 초 만에 의결 처리하였다. 민주자유당의 경찰법안 단독처리에 대해 평화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원천봉쇄할 것을 결의하며 반발하였다.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결양상이 심화된 가운데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은 개혁입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모색하였다. 애초 평화민주당은 제152회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개혁입법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민주자유당은 시간을 갖고 협상을 계속하자는 입장이었다. 협상과정에서 양당은 민주자유당이 강행 처리한 경찰법은 내무위원회에 계류시키고, 개혁입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강행처리와 물리적 저지로 대립하던 개혁입법안은 논란 끝에 다음 임시국회로 이월되었다.

나. 의원 뇌물외유 사건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정(제152회)

1991년 1월 22일 제152회 임시국회가 개최된 다음 날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북미지역을 여행하였다는 뇌물외유 시비가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루어져 온 오랜 관행이라는 상공위원회 위원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뇌물외유사건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혐오감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민주자유당과 평화민주당은 총무회담을 통해 재발방지 등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등 과장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외유 관련 의원 3명 중 2명이 소속된 평화민주당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재근 의원의 국회상공위원장직 사퇴를 결정하였다. 민주자유당도 검찰의 수사결과 관련 의원의 뇌물외유 사실이 확인되면 제명 등 중징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여야는 국회의 자정노력 차원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윤리위원회 신설 등 이와 관련된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민주자유당·평화민주당·민주당 등 여야는 1월 29일 8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윤리강령 등 법제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마련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여야는 협상과정에서 구체적 내용, 특히 강제성을 규정하는 실천규범에 있어서 현격한 견해차를 보였다. 핵심쟁점이 되었던 윤리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제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이 여야 동수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결국 여야는 합의를 통해 제152회 임시국회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국회의원윤리강령만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실천규범 제정과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는 ‘윤리위원회’ 구성 논의는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한편 윤리강령에 포함할 내용에 있어서도 여야는 다소의 의견차를 보였다. 특히 평화민주당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적법 절차를 무시한 변칙적인 방법’, 소위 날치기 처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윤리강령에는 청렴의무 등 선언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천규범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을 보였다. 세부적인 강령 문구 작성에 있어서도 평화민주당은 제4조에 ‘원활한 정치활동을 위해 공정한 경제적 여건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민주자유당은 ‘공정한 기회보장’을 규정하는 수준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제4조 중 논란이 되었던 문구는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로 조정되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정한 여건과’라는 문구를 ‘공정한 경쟁과’로 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2월 7일 여야는 최종협의를 통해 전문과 5개항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확정해 2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로써 국회의원 뇌물외유사건의 발단을 계기로 제152회 임시국회에서 진행된 여야의 자정노력은 국회법 등 관계법의 구체적인 개정 없이 선언적 강령만 제정하고 일단락되었다.

다. 수서택지 특혜분양 시비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제152~153회)

제152회 임시국회가 개최된 1991년 1월 21일 서울시는 ‘수서택지 특별분양’을 발표하였다. 이 문제는 임시국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혜분양 시비로 이어졌고 그 결과 제152회 임시국회는 후반으로 가면서 애초 소집목적과 달리 수서택지 특별분양과 관련한 비리와 진상규명 논란에 휩싸였다.

1991년 이전 서울시는 공영개발의 원칙을 내세워 특별공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1991년 1월 박세직 서울시장이 새로 부임한 후 20여 일 만에 애초 방침을 변경해 특별공급을 결정하였고, 오히려 군사상의 이유로 3~5층으로 규제된 고도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사업 주체였던 (주)한보주택의 정치권 로비와 그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서울시가 방침변경의 이유를 국회 건설

위원회의 권유, 즉 주택조합 측이 제기한 청원에 대해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택지를 공급하라는 국회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혀 국회 건설위원회 의원들은 로비 의혹과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게 되었다.

임시국회 초반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로비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청원심사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수서택지 특별분양과 관련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주요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각 정당의 대응방식은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평화민주당은 서울시가 특혜분양 책임을 자당에 전가하기 위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건설부 등에 보냈던 당 총재 명의의 협조공문 사본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등 정치조작술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분양을 결정한 이유, 한보그룹에 대한 수서지구 택지개발 정보의 사전유출 여부, 청와대 개입문제 등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이뿐만 아니라 수서택지 분양사건을 청와대까지 개입된 권력형 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2월 5일 민주자유당과의 총무회담에서는 검찰의 수사 촉구, 수서택지 분양의 백지화 요구, 그리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제의하였다. 이와 달리 민주자유당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상임위원회 정책질의에 있어서도 건설위원회가 처리한 청원의 결정 절차를 설명하거나 기본적인 내용만을 질문하는 한편 평화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도 비리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수서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두 거대정당에 대한 관련의혹을 제기하면서 양당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조사에 대한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제152회 임시국회를 마감하였다.

제152회 임시국회가 폐회된 이후 평화민주당은 민주자유당과의 계속된 협상에서 개혁입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합의로 소집하기로 한 4월 임시국회와는 별도로 수서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임시국회를 2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소집하고자 제안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정조사권 발동을 거절하였다. 이처럼 국정조사권 발동 및 임시국회 개최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2월 16일 검찰은 여야 의원 5명이 특별분양 청탁과 한보비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관련 의원들은 구속되었다.



▲ 수서지구 특별분양 사건과 관련하여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1991년 2월 18일).

한보가 거액의 로비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하였음이 일부 드러나자 노태우 대통령은 2월 18일 부총리, 서울시장, 건설부 장관과 당3역 등을 경질하는 당정개편과 아울러 대국민사과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평화민주당도 수서택지 특별공급사건에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관련되었다는 등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음을 제기하는 한편 한보로부터 제공된 자금이 정치자금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부정한 자의 정치자금이 당에 유입된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민주자유당은 당면한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 문제 처리와 수서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하기 위해 평화민주당과의 협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수서사건 국정조사를 위한 임시국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임을 주장하는 한편 3월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의 구실을 위한 선거법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3월 3일 서울시는 특별공급 백지화를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와 민주자유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3월 26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3월 8일 선거일을 공고하였다. 야당은 이에 반발해 3월 7일 수서지구택지 특별분양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위한 제153회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임시국회가 여야의 합의 없이 소집되었고,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4월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3월 26일 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운영에 응할 수 없다며 개회식에만 참석하고 이후 임시국회 운영에는 불참하였다. 결국 제153회 임시국회는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계속하여 공전하다 자동 폐회되었고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개혁입법 재협상과 민주자유당의 강행처리(제154회)

민주자유당과 신민주연합당(평화민주당이 1991년 4월 15일 당명변경)은 2월 임시국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경찰법 등 개혁입법의 처리를 위해 4월 19일 제154회 임시국회를 개회하였다. 양당은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8인 실무협상대표회담을 통해 법안별 쟁점사항에 대한 재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현격한 견해 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양당은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민주자유당은 현행법의 골격 유지를, 신민주연합당은 현행법 자체 폐지와 대체입법을 주장해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대립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경우에도 여전히 국가안전기획부의 국내 수사권 범위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였다. 경찰법에 있어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방식과 권한에 관해 양당은 의견대립을 반복하였다. 개혁법안 실무협상대표회담이 진전이 없자 양당 정책위의장이 나서 비공식적인 협상을 벌였으나 역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여야 합의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개혁입법안의 회기 내 단독처리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

민주자유당의 강행처리 방침 통보에 신민주연합당은 “개혁입법 자체의 암매장 행위”라며 실력저지와 장외투쟁 불사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 방침을 변경하여 국가보안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안기부법 협상안을 새로 제시하는 등 극단적인 과국을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같이 신민주연합당이 새로운 개혁법안을 제시하면서 민주자유당과 신민주연합당의 협상이 재개되었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5월 6일 당정회의를 통해 국가보안법상의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등 대안을 확정해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이를 제시하였고, 신민주연합당도 수정안을 마련하여 막바지 협상에 임하였다. 또 양당은 개혁입법 협상을 위해 임시국회 회기도 2일간 연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당의 협상노력에도 개혁입법 협상은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에 민주자유당은 당의 방침에 따라 5월 10일 12차 본회의에서 단독처리를 시도하였다. 민주자유당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선 박준규 국회의장은 미리 준비한 메모지와 무선마이크를 꺼내 들고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을 일괄 상정하였다. 신민주연합당 의원들은 단상을 점거하는 등 실력으로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다수의 민주자유당 의원들의 저지로 인해 법안상정을 막지는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일부 의원이 입원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이 같은 물리적 대립 속에 경찰법과 국가보안법은 1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내에 표결 없이 민주자유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가결되었다. 개혁입법안의 단독처리는 이후 헌법소원 청구, 원외투쟁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마. 강경대 사망사건과 여야 공방(제154회)

제154회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던 4월 26일 명지대학교 1학년 강경대가 시위 도중 경찰의 구타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근본적 측면에서는 여야 모두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책임추궁의 수준과 구체적 대응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신민주연합당의 입장은 강경하였다. 신민주연합당 의원들은 사건발생 다음 날 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질타성 질의를 쏟아 놓으며 내무부 장관의 형사책임을 요구하는 한편 노태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였다. 내무부 장관의 국회 답변 때에는 살인자를 신성한 의사당에 세울 수 없다며 답변청취를 거부하였다. 이에 반해 민주자유당의 질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중문책이라는 당위적 수준에 머물렀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진상 및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는 시작부터 내무부가 제출한 '명지대 강경대 학생 상해치사 진상보고서' 명칭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신민주연합당은 살인사건 내지는 피살 사건이 분명한데도 보고서 명칭 중 '상해치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건을 축소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상해'를 빼고 '치사사건'으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 강경대 구타사망사건 규탄집회(1991년 4월 27일)

이후 계속된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신민주연합당은 강경대 사망사건을 집요하게 거론하며 공안통치에 의한 간접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의 공안통치가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진상은폐 의혹을 부각시키고 사복체포조 해체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정부 공세를 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주자유당 의원은 강경대 사망사건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이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신민주연합당이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경찰관들의 고의성을 문제 삼으면서 범리논쟁이 전개되었다. 또 문교체육위원회에서는 강경대 사망사건의 발단이 된 등록금 인상과 학생-재단 간 마찰, 근본적인 교육정책 부재, 학생운동 양상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강경대 사망사건에 대한 여야의 공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내무부 장관은 경질되었고, 여야는 신임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위진압에 투입된 전투경찰을 일반경찰로 전환할 것과 시위진압 방법을 공격적 질서유지 방법에서 방어적 질서유지 개념으로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방법의 개선, 시위진압 경찰의 행동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화염병처벌법」 및 「전투경찰법」의 개정 등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 199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공방(제155회)

정부는 제155회 임시국회가 개최하기 직전인 1991년 7월 5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환경개선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1991년도 본예산의 15.5%에 이르는 4조 1,985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자유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신민주연합당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민주연합당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주장과 함께 예산팽창에 따른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철회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차 속에 제155회 임시국회가 개최되면서 여야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의 시급성과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차질에 따른 세입 결손 등을 들어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며 임시국회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민주연합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기존 예산에서 항목을 변경할 경우에만 예산심의에 임한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애초 7월 15일부터 상임위별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신민주연합당과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였다.

7월 13일 민주자유당은 신민주연합당이 기권한 가운데 자당 소속 의원들만의 의결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 7월 15일부터 1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을 다룬 각 상임위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예산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소관 부처장의 제안설명만 듣고 예비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답보상태에 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7월 16일 실시된 청와대 영수회담을 계기로 진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영수회담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신민주연합당 총재는 대화로 정국을 원만히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신민주연합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였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착수해 거의 정부 원안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고,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민주자유당과 신민주연합당은 삭감 폭을 두고 또다시 대립하였다. 민주자유당 의원들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였다. 국방비, 내무부 치안유지비 등에서 8,000억 원을 삭감하고 전북 새만금 간척사업비와 남해고속도로 확장사업비 등에서 2,000억 원을 추가해 전체적으로 6,000억 원을 순삭감하자는 것이 신민주연합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요구였다.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양측은 원안 통과와 6,000억 원 삭감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결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논란 속에 민주자유당은 신민주연합당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해 새만금간척사업비 200억 원 증액 등 694억 원에 대한 예산항목을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정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정당 간 의견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였다. 결국 여야는 찬반토론 끝에 전체 규모의 증감 없이 일부 항목만을 재조정하는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의결하였다.

사.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공방과 국정감사의 파행(제156회)

1991년 9월 10일 제13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최된 직후 여야는 9월 16일부터 2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정감사를 맞아 민주자유당은 물가와 국제수지 등 경제현안을 비롯한 민생관련 문제를 야당에 앞서 중점 거론해 야당의 정치공세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노태우 정부의 치적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1991년 9월 16일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신설합당)은 선명 통합야당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수서택지특혜분양 등 노태우 정부의 비리 규명, 물가 등 민생문제 해결, 팽창예산 삭감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해 정부 여당의 실정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국정감사 전략에 따른 쟁점공방이 전개되기도 전에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은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표출하였다. 그 결과 국회는 야당의 국정감사 불참과 여당의 단독 국정감사 실시가 대립하면서 파행을 맞았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내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오대양사건 관련 증인 14명을 민주자유당이 표결로 부결시키면서 국정감사 개시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후 9월 16일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각종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증인출석 요청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민주자유당은

불리한 증인채택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표결을 통해 거부하였다.

9월 16일 국회 재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는 수서분양특혜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증인채택을 두고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이 대립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수서사건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정태수의 증인채택이 어렵다고 거부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보특혜의 배후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여야 간 공방 속에 재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을 아무런 성과 없이 보냈다.

여야는 9월 17일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수의 증인채택에 대한 공방을 재연하였다. 9월 18일 열린 노동위원회 인천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이 제기한 부산 금호상사 블랙리스트³⁷⁾ 관련 증인 신청 등을 두고 대립하였다. 이러한 여야 대립 상황 속에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중인 9월 24일까지 쟁점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5개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21명의 증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야당의원들의 증인채택 요구를 계속 반대하며 증인채택을 지연하거나 부결 처리하였다. 9월 18일 농림수산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도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가 표결에 의해 부결되었고, 내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증인출석 요구를 민주자유당이 반대하면서 상임위원회 회의 자체가 산회되었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9월 28일 재무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재무위원회의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정태수에 대한 증인채택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이 동의안 발의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감사종결을 선포하였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도 못한 채 종료되었다. 한편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수산물 가격 폭등과 관련해 신청한 재벌기업 대표 6명에 대한 증인채택건이 민주자유당에 의해 부결되었고, 제주도 종묘장 허가와 관련해 제주

37) 전국 대학 운동권 출신과 시국사건 관련자, 위장 취업자 등 8,000여 명의 명단이 수록된 컴퓨터 디스켓을 부산 신발부품 제조업체인 금호상사의 한 근로자가 이 회사 전산실에서 입수, 공개하여 파문을 일으킨 사건.

도지사 등 3명에 대한 증인신청도 민주자유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끊임없이 증인채택이 거부당하자 민주당은 결국 국정감사 거부를 결정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이 아닌 사건과 관련된 증인은 출석시켜도 좋다. 그리고 수산물 매점매석에 관련된 재벌사의 사장, 골프장 산림훼손 관련 증인 등은 수용할 뜻이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보사건과 관련하여 요구자료를 내놓거나 누구라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타협안을 거절하였고, 10월 1일 전면적인 국정감사 거부에 돌입하였다.



▲ 민주당의 국정감사 불참으로 서울시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국정감사장이 비어있다(1991년 10월 1일).

국정감사 재개에 대한 절충이 실패한 후 민주자유당은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강행하였고 민주당은 국정감사 대신 자체 조사활동을 벌였다. 결국 제13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민주자유당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파행 국정감사로 종료되었다. 민주자유당은 단독 국정감사를 종료한 이후 종합평가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6공의 민주화 의지가 확인되었고 의원들과 수감기관의 자세로 미루어 정책감사로 정착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아. 쟁점법안에 대한 여당의 일방처리와 야당의 저항(제156회)

1991년 11월 민주자유당은 쟁점법안들에 대한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침예하게 대립하자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법안들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 강행처리 법안의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하였고, 제13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파행양상을 보였다.

민주자유당은 11월 25일 문화공보위원회에서부터 쟁점법안의 일방처리를 시작하였다.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정기국회 중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정부제출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의원 8명이 회의를 열어 단독 처리하였다. 11월 26일에는 건설위원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안을 질의도 생략한 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한편 토지수용법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일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3개 쟁점법안을 물리적 충돌 속에 30초 만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민주자유당 의원들이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의원들의 진입을 막은 채 민주자유당 간사 정몽준 의원이 위원장을 직무대행하여 단독으로 개의하고 3개 법률안과 199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일방 처리하였다. 정몽준 의원은 직무대행의 사유를 “위원장이 다수의원의 개의요구를 무시하여 위원회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부득이 국회법 규정에 의거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자유당은 교통체신위원회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들을 처리하였다. 농림수산위에서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기 중이던 야당의원들을 따돌린 채 민주자유당 의원들만 국회 145호실로 자리를 옮겨 정부추곡수매동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처럼 민주자유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잇따라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자 민주당은 일방 처리된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경 대응하였다. 이로써 국회는 극단적 파행으로 치달았다. 단독 법안처

리에 대한 야당의 비난 속에 국민여론도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에 민주자유당은 ‘단독 강행처리’라는 애초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민주당 등 야당들과의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모색하였다. 협상결과 11월 29일 여야는 파행의 원인이 되었던 단독처리와 관련해 민주자유당 원내총무가 대국민사과를 구두로 발표하고 단독 처리된 쟁점법안들은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국회정상화를 위한 7개항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또 1992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것에도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사당 농성을 해제하였고 국회는 정상화되었다.

국회가 정상화된 이후에도 여야는 정기국회의 폐회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12월 중순까지 추곡수매동의안, 제주도개발특별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 등 쟁점의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면대결 양상을 지속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쟁점의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였고, 민주당은 일부 쟁점의안은 본회의 처리를 미루어 1992년 1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대립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자유당은 제156회 정기국회 폐회를 앞둔 12월 18일 심야에 추곡수매동의안 등 3개 쟁점안건의 단독처



▲ 박준규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직전 의장석으로 몰려온 야당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1991년 12월 18일)

리를 강행하였다. 여야 간 극단적인 대치상황으로 인하여 의장석에서의 의사진행이 불가능하자 박준규 국회의장은 민주자유당 의석 중앙통로에서 밤 11시 45분 무선마이크를 통해 일방적으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자유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결국 3개의 쟁점의안은 20여 초 만에 가결이 선포되었다.

정기국회 폐회 직후 민주자유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예산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서 많은 양보를 하였으나 야당이 소수의 횡포와 아집만 계속해 어쩔 수 없었다며 단독처리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대여당의 횡포를 규탄하고 반민주자유당 투쟁을 결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로써 제13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여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항이 충돌한 파행 속에 폐회되었다.

5. 1992년도

1992년 제13대 국회는 잔여임기 5개월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한 차례도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1992년 5월 29일 4년의 임기를 마감하였다. 이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출된 29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제14대 국회가 1992년 5월 30일 시작되었다. 제14대 국회는 1992년 7개월의 기간동안 6월 29일 제157회 개원국회(6.29~7.28)를 시작으로 158회 임시국회(8.1~8.14)와 159회 정기국회(9.14~12.22) 등 3차례 소집되었다. 제14대 국회는 민주자유당·



▲ 제14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사무처 직원이 의원명패를 새로 만들고 회관 배정을 끝내는 등 개원준비를 하고 있다(1992년 5월 28일).

민주당과 함께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새롭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통일국민당 등 3개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제14대 개원국회 공전(제157회)

1992년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제14대 국회는 개원국회부터 민주자유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등 순탄하지 않은 출발을 보였다. 또 의정사상 처음으로 개원 이후 한 달이 지날 때까지 원 구성하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처럼 제14대 국회가 원 구성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은 것은 1992년 초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문제에 대한 여야 간 논쟁이 핵심적인 이유였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은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경제와 사회 안정을 이유로 선거실시 연기를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0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야당은 임명된 단체장체제로 관권부정선거를 획책해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려는 의도라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연기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후 야당은 이 문제를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요한 선거쟁점으로 부각시켰고 선거 후에도 대통령선거 전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후 원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계투쟁 방침을 내세우며 여당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제14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인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시기를 1995년으로 결정하며 연기방침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법정 선거일 공고기한인 6월 12일에도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6월 30일 이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는 무산되었다.

법정기한 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가 무산되자 야당은 제14대 국회 개원과 원 구성을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원외투쟁을 선택하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특히 제1

야당인 민주당은 6월 19일 국회 개원과 관련한 대야협상을 전면 거부하기로 당론을 결정하는 한편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 6월 20일에는 “대통령이 6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이처럼 국회개원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와 연기’ 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야는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 개원 법정시한을 목전에 두고도 개원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법정 국회개원일이 다가오자 결국 민주자유당은 단독으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6월 29일 제157회 임시국회를 개최하였다.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마지막까지 집회요구에는 합의하지 않았으나 국회개원에는 참여하였다. 그러나 “개원국회에 등원하여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모든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관철한다” 라는 야당 간 합의에 따라 의장단 선출에만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개원 당일 여야는 민주자유당 박준규 의원을 국회의장에, 민주당 허경만 의원과 민주자유당 황낙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후 향후 국회운영에



▲ 여야 3당 사무총장회담(1992년 7월 8일).

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3일간의 휴회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휴회 기간 중 3당은 의사일정에 전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또다시 4일간의 본회의 휴회가 결정되었다. 여야는 3당 사무총장 회담 등 국회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절충을 시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내실시 불가’ 와 ‘연내실시 관철’ 의 상충된 기존 입장을 반복하여 확인할 뿐 절충점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 국회는 장기공전에 빠졌다.

국회의 공전상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정보사 터 매매의혹 사건 등 정치적인 쟁점

사안들이 불거지면서 한때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이라도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통일국민당은 정보사 터 매매의혹 사건과 노태우 정부의 의혹사업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통일국민당이 독자적으로 국회에 들어갈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가 관철되지 않는 한 등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처럼 공조를 취하던 야당 사이에 의견차가 발생하면서 민주자유당과 통일국민당은 7월 19일 이후 연이어 국회정상화를 위한 의견 절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양당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시기 등 쟁점현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결국 제157회 개원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공전만 거듭하다 상임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7월 28일 자동 폐회되었다.

나. 3당 대표회담과 제158회 임시국회 정상화(제158회)

제14대 개원국회가 의장단만을 구성하고 공전 끝에 폐회되자 민주자유당은 바로 다음 날 상임위원회 구성과 최대 정국현안인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을 목적으로 8월 1일 개최되는 제158회 임시국회를 또다시 단독으로 소집 요구하였다. 그러자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민주자유당의 일방적 국회소집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통일국민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8월에는 국회에 등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고, 민주당도 7월 29일 임시국회를 3당 합의로 소집한다면 민주자유당과의 대표회담에 응한다는 당론을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자 두 야당은 또다시 강경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해 민주자유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에는 불응하는 한편 원 구성과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안 일방처리를 저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국회정상화를 모색하던 정국은 또다시 급랭하기 시작하였다.

단독 국회소집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자유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단독소집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도 야당을 설득하되 야당이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운영하여 원 구성과 주요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소속의원들에게 국회 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주요 의안 처리에 대한 실력저지 입장을 보이면서 맞섰다. 제158회 임시국회는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8월 1일 개최되었다.

제158회 임시국회는 민주당과 통일국민당 의원들이 개회식에조차 참석하지 않으면서 파행으로 시작되었다. 비정상적으로 임시국회가 개최되자 박준규 국회의장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3당 대표회담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마저 여야 간 견해차로 진전이 없었다. 민주자유당은 무조건적인 대표회담 개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개최를 주장해 상충된 입장을 보였다. 통일국민당은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안 단독 강행처리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표회담을 선행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절충적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대표회담을 둘러싼 3당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 속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는 거듭 연기되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기농성을 벌이는 등 여야의 대치상황은 지속되었다.

3당 대표회담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가 연일 공전되자 민주당은 3당 대표회담 대신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김대중 대표의 3자회담을 역제의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민주당의 제의를 거절하였고, 통일국민당도 자당 대표가 배제된 3자회담 제의에 반발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다. 이러한 가운데 8월 5일 민주당이 3당 대표회담을 수용하였으나 8월 6일 열린 3당 대표회담에서도 3당은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협상의 핵심쟁점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해 김대중 대표와 정주영 대표는 구·시·군의 장과 시·도지사 중 하나만이라도 1992년에 실시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였으나 김영삼 대표가 현 상황에서는 불가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김영삼 대표가 국회정상화를 위해 원 구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두 야당 대표가 지방선거 관련 타협안의 수용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3당 대표회담의 결렬은 여야 대립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김영삼 대표는 8월 7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대중 대표와의 2차 회동을 거부하였고 민주자유당은 또다시



▲ 3당 대표회담 결렬(1992년 8월 6일).

단독 강행처리 방침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야당은 민주자유당이 원 구성을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하겠다는 강경 자세로 맞섰다. 8월 7일과 8일에는 본회의 개의를 시도하려는 민주자유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통일국민당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국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요원하게 보이던 국회정상화는 김영삼 대표가 김대중 대표와의 양당대표회담을 전격 수용하면서 또 한 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8월 11일 이루어진 회담 결과 두 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정국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합의점은 도출해 내지 못하였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를 포함해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 등 주요 정국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당면한 정치문제 타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원내에 설치하고 정기국회 전까지 운영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또 여야 갈등의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도 회기 내 처리방침을 철회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의 합의 이후 통일국민당을 포함한 원내3당은 8월 12일 대표 회담을 열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재합의하였고 이로써 공전하던 국회도 8월 12일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정상화되었다. 여야는 재개된 제5차 본회의에서 제14대 국회의 장단 선출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등 5개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국회 본연의 임무를 시작하였다. 제158회 임시 국회는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8월 14일 폐회되었으나 제14대 국회개원 이후 여야 간 갈등으로 끝없이 공전하던 국회를 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국회였다.

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과 미완의 협상(제158회)

제158회 임시국회가 폐회된 이후 국회에서 여야가 당면한 과제는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여야는 국정운영이 원만하지 못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실시시기 등 정치관계 사안에 대한 여야 간에 현저한 견해차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158회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이에 여야는 8월 17일 민주자유당 9명, 민주당 6명, 통일국민당 3명 등 총 18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아래 전원 합의제로 운영하는 3개의 ‘개정 심의반’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과행정국은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여야는 쟁점현안에 대한 의견차를 드러내었다. 민주당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는 어떤 경우에도 불가하며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에 중점을 둔다는 방향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즉,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야당안대로 최대한 양보하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타결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시기가 타결되지 않으면 대통령선거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애초부터 협상과정은 난항을 겪었다.

예상한 대로 가장 첨예한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시기 문제였다. 이 문제는 20여 일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여야 간 견해차만 재확인하는 담보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 관련법 등 개정 심의반은 총 12차례에 걸친 심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시 시기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8월 29일 김영삼 대표가 민주자유당 총재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 실시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특별위원회 협상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민주당·통일국민당 등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였고, 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이 마감된 8월 31일까지도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결국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은 9월 3일로 1차 연장되었다.



▲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관권 부정선거관련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1992년 8월 31일).

그러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8월 31일 “지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폭로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특별위원회에서도 관권선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문제와 연계되면서 여야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특별

위원회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제158회 임시국회 말 합의되었던 3당 대표회담 조기에 최를 제외하였고 민주자유당이 이를 수용하여 9월 14일 3당 대표회담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도 9월 9일까지로 재연장되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대표회담 이전까지 무엇인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고, 각 심의반은 2차례에 걸친 활동시한 연장 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고심하였다. 특히 활동시한 마감을 이틀 남겨둔 9월 7일 민주당이 “단체장선거 시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조항에 대한 협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수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중 선거시기를 제외한 일부 내용을 합의하는 진전을 보였다. 그 결과 재개된 협상과정을 통해 익명기탁금제 도입과 후보기탁금의 상향조정,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허용, 군부재자의 영외투표 허용, 선거운동 기간단축 등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일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럼에도 특별위원회 심의활동은 궁극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마지막까지 팽팽한 줄다리지만 지속하다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특별위원회는 9월 8일 실질적인 심의활동을 마감하고 9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3개 심의반의 협상결과를 합의사항과 미합의사항으로 정리한 활동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국회파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정치관계법심의 특별위원회는 결국 미완의 협상으로 법적 활동을 종료하였고, 해결되지 못한 핵심쟁점들은 3당 대표회담과 정기국회로 넘겨졌다.

라. 뒤늦은 제14대 국회 원 구성(제159회)

1992년 9월 14일 개최된 제14대 첫 정기국회는 늦었지만 원 구성을 완료하고 정상적인 국회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무감과 기대감을 지닌 국회였다. 그러나 계속된 여야갈등 정국 속에서 정기국회의 전망 또한 그리 밝지는 않았다. 잠복해 온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시기 문제뿐만 아니라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8월 말 불거진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부정선거 폭로사건이 여야 간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고 있었다. 비록 국회개회를 앞두고 여야 총무들이 국회정상화에 대비해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개회 이후 정상적인 국회운영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9월 14일 정기국회 개회 후 민주자유당은 국회정상화의 관건으로 여겨지던 3당 대표회담 연기를 통보하였다. 3당 총무협상에서도 민주자유당의 '선 원 구성' 주장과 민주당·통일국민당의 '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 확정' 주장이 맞서 의사일정 절충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여파로 정기국회는 9월 14일 개회식만 한 채 또다시 공전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또 다시 재연된 국회공전 상황에서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 바로 다음날 3당 대표회담을 9월 22일 개최하는 데 합의하며 국회정상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9월 16일에는 민주자유당 김영삼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연기군 관권선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표명하며,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중립적인 선거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갈등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 문제는 김영삼 총재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내 실시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데서 비롯되었다. 민주당은 당무회의, 원내대책회의, 주요 간부회의를 잇따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내 실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전면거부와 장외투쟁은 물론 의원직 사퇴도 불사한다는 초강경 방침을 밝혔다. 또한 김영삼 총재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내 실시 불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3당 대표회담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 국회정상화'를 거론하던 통일국민당마저도 3당 대표회담 거부 당론을 결정하고 민주자유당을 비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야당이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급속하게 냉각되어 가던 정국은 9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자유당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을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급반전되었다. '9·18선언'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민주당은 9월 21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 관철을 위해 국회운영을 거부해 온 당론을 변경하여 무조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변화를 공식발표하였다. 9월 22일에는 김대중 민주당 대표와 정주영

통일국민당 대표가 만나 3당 대표회담을 합의하는 한편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등 원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변화를 보였다. '9·18 선언' 과 야당의 입장 변화는 장기간 표류해오던 대결정국을 급속하게 정상화시켰고 공전되던 정기국회 또한 정상화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원내 3당은 사무총장과 원내총무 회담 등 연쇄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와 중립내각 인선문제에 관해 협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원 구성 문제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국회정상화는 9월 28일 실시된 3당 대표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대표 회담에서 김영삼 총재, 김대중 대표, 정주영 대표는 조속한 국회정상화와 더불어 쟁점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재구성 등 6개항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국회정상화 및 원 구성 협상이 급진전되어 9월 29일 3당은 의사일정 및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를 완료하였고 국회는 장기간의 공전을 마감하고 10월 2일 정상화되었다.

정기국회 개최 후 18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자 여야는 제14대 국회임기 개시 이후 3개월 이상 미뤄왔던 원 구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였다.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간 사전합의에 따라 민주자유당에 10개 위원회, 민주당에 5개 위원회, 통일국민당에 2개 위원회가 배분되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대전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등 5개를 신설하고, 이 중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에 할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내용에 따라 여야는 10월 2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였고 이로써 제14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원 구성을 완료하였다.

마.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과 쟁점법안 처리(제159회)

제14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제159회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의안 중 하나는 정치관계법의 개정 문제였다. 「대통령

령선거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경우 당장 실시되는 선거에 적용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였고 「지방자치법」도 계속되어 온 여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 문제는 지난 제158회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통해 9월 초까지 1차적으로 심의된 바 있으나 여야 간 의견차로 관계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로 이월되었다. 따라서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미완으로 끝난 「대통령선거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대한 심의와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심의도 더불어 수행하도록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여야는 10월 2일 여야 동수로 총 18명의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활동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확정하였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10월 31일로 정해진 것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안 등이 마련되어야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대통령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3당 합의에 따라 전원합의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10월 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또 5개 정치관계법안을 성안하기 위해 산하에 「지방자치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심의하는 제1법안심의반과 「대통령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심의하는 제2법안심의반을 구성해 세부적인 심의활동을 벌였다.

제1법안심의반 심의에서 여야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제출권의 명문화 등 대부분의 조항은 합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 시기 문제, 국정감사권의 지방의회로의 위임문제, 지방의회 직원 임명문제 등 3가지 핵심 쟁점은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성안하지 못하였다. 한편 제2법안심의반은 「대통령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통해 합의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가안전기획부법」은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범위, 지부설치, 직원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 국회에 대한 증언, 자료제출 또는 답변거부의 한계 등 많은 부분에서 교섭단체 간 이견이 커 조정에 실패하였다. 특히 반복적으로 논쟁해 왔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는 각 정당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등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7일간의 법안심의반 심의활동 결과를 보고 받은 후 5개 심의법안 중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성안된 3개의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 반면 성안하지 못한 「지방자치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 등 2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단체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내 상설기구 구성을 건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심의활동을 종결하였다. 이후 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3개 법안은 11월 4일 제12차 본회의에서 일괄 상정돼 의결되었고 개정된 법률은 1992년 12월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적용되었다.

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논쟁과 여야 합동감사(제159회)

국회정상화 이후 여야는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 제15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199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배제문제가 여야 간 대립을 야기하면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여야는 1991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1991년 까지만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정부도 1992년 6월 4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국회 초반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9월 19일 대구시의회가 처음으로 국정감사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 철회 요구 또는 거부 결의가 연이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 거부 움직임 속에 9월 23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거부를 선언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확산되었다. 지방

의회가 주장하는 국정감사 거부이유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갖고 있어 이중적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불필요하며 국정감사를 계속 받을 경우 정치인들이 이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 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철회문제가 정기국회에서 쟁점화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을 지방의회에 넘긴다는 민주자유당의 결정이었다. 민주자유당은 9월 23일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다. 따라서 이미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처리되기 이전이라도 개정안의 정신을 살려 국감을 실시하지 않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통일국민당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라며 국정감사 권한의 이양을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민주자유당의 결정을 국회의 직무 유기이자 6공화국 정권의 관련 부정선거 등 부정·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저의라며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민주자유당은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충청남도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연기군 관련 부정선거 사건을 최대한 정치쟁점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있다고 보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처럼 여당의 ‘불실시’와 야당의 ‘강행’이 맞서면서 1992년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과행을 꾀던 정기국회가 10월 2일 정상화되면서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 대상 포함 문제에 대한 협상을 본격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감사기간이 짧고 중복감사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반대하는 민주자유당의 입장을 고려하여 국정감사 대상 지방자치단체 수의 축소와 전례 없던 합동감사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전국 15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만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주관 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다른 상임위에서 현장감사반에 의원을 파견하여 합동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민주자유당은 애초 지방자치정신을 존중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론이었으나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이 이 문제에 심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협상과정에서 합동감사 방식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10월 6일 서울·부산·전남·충남 도청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며 강원도의 경우 동력자원위원회 주관하에 서울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한편 현장감사의 주관 상임위원회는 각각 서울 보건사회위원회, 부산 교통체신위원회, 전남 농림수산위원회, 충남 내무위원회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부분감사와 합동감사라는 여야 간의 절충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반발은 해소되지 않았다. 여야합의 다음 날인 10월 7일 서울시의회의 국정감사 거부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10월 8일 충남도의회 민주자유당 소속의원들과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연이어 국정감사 거부를 결의하였다. 10월 9일에는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거부를 공식 결의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성명을 통해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국감거부결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대응은 강경하였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감사 저지를 위한 농성을 벌이는 한편 국정감사를 수행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국회와 지방의회 간 대결양상으로 전개되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논쟁은 여야 3당이 199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하고서야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약속은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국정감사 저지투쟁으로 인하여 10월 16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의장, 국회 내무위원장 그리고 3당 간사들 간의 대책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민주자유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10월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수용하는 한편 ‘국정감사반대 투쟁위원회’ 해산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여야 간,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이중적 갈등을 야기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 서울시의 국정감사 거부에 김용태 국회운영위원장이 이영호 민주자유당 시의원협의회장 등 서울시의회 간부들을 만나 국감협조를 설득하고 있다(1992년 10월 16일).

사. 절반으로 단축된 국정감사(제159회)

정기국회 개회 후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 시기 변경이 결정된 1992년 국정감사는 이후 국회 공전으로 감사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여야는 10월 2일 국회를 정상화하고서야 협의를 통해 국정감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10월 15일부터 10일간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지연되던 1992년 국정감사가 총 290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15일 시작되었다.

국정감사는 축소된 감사 기간으로 인한 부실 감사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장기간의 공백 후 재개되었다는 점, 중립내각 구성으로 여야가 없어졌다는 점, 자치단체장 선거 불이행, 연기군 관권선거 폭로, 대규모 간첩단 사건 등 쟁점이 될 만한 정치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국정감사는 긴장감이 떨어진 채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총 3만 432건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

국정감사의 대표적인 성과로 지적되는 것은 건설위원회의 (주)건영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였다. 10월 20일 서울시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송천영 의원은 건설부가 토지개발공사에 보낸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조합주택 공급추진’이라는 1989년 1월 23일자 공문을 폭로하였다. 이 공문에 근거한 송천영 의원의 주장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내세워 택지개발 사업자의 땅을 조합주택 용지로 매각할 수 있게 관계 규정을 개정하도록 토지개발공사에 지시해 건설회사인 (주)건영에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문제는 ‘제2의 수서비리사건’으로 불리며 주요 의혹 사건으로 부상하였으나 이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 국회 활동에서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보건사회위원회의 농약밀가루 수입 폭로, 교통체신위원회의 대형 국책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포함하여 경제·환경·교통·건설 등 민생문제에 대한 실무 중심 감사는 1992년 국정감사의 성과였다. 이외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선거관리 과정의 정치적 중립 문제, 연기군 관권 부정선거, 간첩단 사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각종 의혹 사건으로는 정권 말기 이권사업 의혹을 받은 정부고속철도·영종도 신공항 건설 문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의혹, 정보사 부지사기 사건 등이 거론되었다.

한편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감사에서 이전과 같은 여야 간 극심한 대결과 공방은 많이 줄어들었다. 반면 무소속 송천영 의원이 건영의 조합주택 부조리를 파헤친 것이나 민주당 김태식 의원의 ‘재벌의 은행소유허용 검토보고서’ 제시, 김충조 민주당 의원의 대아건설 낙찰률 98% 폭로 등 정책감사의 사례는 다소 늘어났다. 그러나 10일이라는 짧은 일정과 대통령선거 정국을 앞둔 시기적 상황으로 인하여 각 쟁점의 실정과 비리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또 국정감사 대상 기관인 정부 관계자들의 ‘원론적 답변과 일관된 부인’ 태도는 여전히 반복되었고, 일부 국회의원이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언론보도로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1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친 후 여야는 11월 11일과 20일 두 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가 상정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였고, 이로써 절반으로 단축 운영된 1992년 국정감사는 종료되었다.

아. 양곡수매안에 대한 여·야·정부 간 갈등(제159회)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여야 간 핵심 갈등이 되어왔던 양곡수매안과 예산안은 1992년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제159회 정기국회에서는 양곡수매안에 있어 여야뿐 아니라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새로운 갈등 양상을 표출하였다. 논란이 된 정부의 '93 양곡년도 정부관리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 및 수급계획 동의안'은 11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여야는 동의안이 제출되기 이전부터 양곡수매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10월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회동하여 '추곡수매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수매가격 15% 인상과 수매량 1,100만 섬'이라는 수매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민주자유당도 10월 23일 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매가격 8% 인상과 수매량 1,000만 섬'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의 양곡수매안은 수매가격과 양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양곡수매에 대한 의견차는 여당과 야당에 그치지 않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표출되었다. 정부는 이전과 같이 여당 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고, 10월 30일 '수매가격 5% 인상과 수매량 일반미 850만 섬, 이 가운데 250만 섬 농협수매'라는 여당안과 상이한 내용의 '92년도 추곡 및 93년도 하곡수매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야당이 주장하는 15% 선의 인상안과 거리가 먼 것일 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8% 인상안에도 미달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양곡수매안을 발표한 이후 여야 3당은 정부의 동의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를 통해 수매 내용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2일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농림수산위원회는 거듭하여 경고결의 및 동의안 수정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관되게 수정불가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에 야당은 11월 9일 제1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더 이상의 수정권고결의안이 무의미하다며 동의안 부결을 제기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회 대 정부의 논쟁은 농림수산위원회 내부 논쟁으로 전환되었다.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정부의 양곡수매동의안에 대한 '선 부결처리, 후 수정동의안 제출' 을 요구하는 권고결의안을 채택하지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정부안은 그대로 둔 채 권고결의안을 먼저 처리하지는 상충된 주장으로 맞섰다. 이러한 여야 대립 속에 제11차 농림수산물위원회는 정회가 선포된 이후 속개되지 못하면서 파행 운영되었다. 이를 계기로 양곡수매를 둘러싼 여야 간, 국회와 정부 간 갈등은 심화되었다.

민주당과 통일국민당 의원들은 11월 9일 밤부터 10일 오전까지 정부의 추곡정책과 정시채 농수산물위원장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에 항의하는 철야농성을 벌였다. 또 민주자유당 의원들이 "겉으로는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의 상향조정을 외치면서도 내심으로는 정부 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대통령선거 후인 내년으로 넘기려 한다"라고 비난하며 정시채 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하였다. 한편 여야 간 그리고 국회와 정부 사이의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을 비롯한 시위대가 정부청사에 난입하여 격렬한 농성을 벌이는 등 정부의 추곡수매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었다.

양곡수매안을 둘러싼 갈등은 3당 정책위의장 회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3당 정책위의장은 11월 10일부터 회동하여 '수매가 7~9% 인상, 수매량 950만~1,050만 섬' 이라는 수정안을 정부 측에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가 수매안 수정 시 필요한 재정조달 방안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수정안을 거부하자 여야 3당은 또다시 '7% 인상, 960만 섬 수매' 라는 수정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3당 합의안의 수용을 거부하며 기존 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국 여야는 11월 16일 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하여 '수매가 6% 인상, 수매량 960만 섬' 이라는 타협안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그 대신 정부가 요구해 왔던 추곡수매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 조달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2,460억 원 중 1,400억 원은 예산 순삭감분, 나머지 1,060억 원은 1993년도 양곡증권 발행을 통해 각각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여야는 11월 18일 농림수산물위원회에서 수정된 양곡수매안에 대해 정부 측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였다. 그러나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결 과정에서 양곡 수매가와 수매량 협상에 있어서 위원회가 적극적 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과 성도를 쏟아 내었다. 또 정부가 직접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여야 3당의 수정안에 동의하는 형식을 빌린 점도 추궁하였다. 이처럼 양곡수매안은 마지막 합의안에 대해서조차 갈등이 표출되는 가운데 11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자. 민주당 불참 속에 진행된 예산안 처리와 정기국회 조기 종료(제159회)

양곡수매안과 더불어 정기국회 막바지까지 여야 간에 심한 갈등을 불러온 또 하나의 쟁점은 1993년도 예산안이었다. 정부의 1993년도 예산안은 총 38조 500억 원 규모로 10월 2일 국회에 제안되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제14대 대통령선거 일정으로 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수밖에 없었다.

1993년 예산안에 대해 여야는 기본 입장에서부터 의견 차이를 보였다. 민주자유당은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대형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삭감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여야가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3당의 예산안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이뿐만 아니라 예산안 이외의 정치쟁점 또한 11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며 예산안 심의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간첩단사건에 대한 현승중 국무총리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였다. 이로 인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으로 예산안은 상정되지도 못하였다.³⁸⁾

38) 현승중 총리는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간첩과 접촉한 정치인이 적지 않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 인해 물의가 일자, 현승중 총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첩들이 정치인만 특별히 접촉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계·학계·언론계·예술계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였다.

이후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개하여 11월 7일까지 정책질의와 부별심사 활동을 벌인 후 11월 8일 제10차 회의를 통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까지 계수조정을 벌였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도 민주자유당은 원안 통과,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각각 1조 원과 5,000억 원의 순삭감을 주장하며 대립하였다. 이로 인하여 11월 11일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하려고 계획했던 애초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예정된 심의 일정을 넘기자 여야 3당 원내총무는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회기를 하루씩 연장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3당은 계속하여 예산안 절충을 시도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예산삭감액의 하향 조정, 민주자유당은 원안 대신 소폭 삭감을 제안하는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럼에도 3당은 추곡수매, 국책사업조정 등에 따른 예산안의 수정 규모와 내용에 관한 교섭단체 간 이견으로 단일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민주자유당은 11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의 반대 속에 표결을 강행하여 전체 규모는 변화 없이 항목만 조정한 38조 500억 원의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반대토론을 통해 수정안이 민주자유당의 일방적인 토론 종결과 표결 강행으로 처리되었으며, 다수의 횡포에 의해 자당의 뜻이 묵살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이러한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하여 1993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본회의 의결도 파행 속에 진행되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11월 19일 밤 11시 46분에 개의된 본회의는 밤 12시를 넘기면서 11월 20일 0시를 기해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다시 개최되었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에 앞서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11월 17일 발생한 소위 '김복동 의원 납치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특히 민주당은 차수 변경과 관련하여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의사 진행이라고 항의하는 한편 김복동 의원의 본회의 출석 및 신상발언,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등을 주장하며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공식 제안하였다. 그러나 표결에 의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고, 이에 반발하여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하였다. 이 결과 1993년도 예산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민주자유당과 통일국민당만의 표결로 의결되었다. 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여야는 12월 18일 예정된 제14대 대통령선거 일정에 돌입하였고, 이로써 12월 22일까지 100일 회기가 예정되어 있던 제14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32일이 단축된 68일간의 활동을 끝으로 사실상 조기 종료되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제3절 당내활동

1. 민주정의당

가. 1988년도

1) 민주발전을 위한 법령개선특위 구성

민주정의당은 야당과 재야가 비민주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 등 각종 불합리한 법령의 개폐를 추진하기 위하여 1988년 5월 9일 당직자 회의에서 당내에 '민주발전을 위한 법령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정의당은 이한동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헌법 부수법안 소위', '선거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개선 소위', '민주발전 저해 법령개정 소위' 등 3개 소위를 구성하였다. 이후 법령개선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야당 및 재야가 개폐를 주장하는 법률 외에도 1987년 개정헌법에 따라 개정을 필요로 하는 법령 및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국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법률에 대한 검토작업을 시작하였다.

2) 당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의원수련회 개최

민주정의당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1988년 6월 2일부터 1박 2일간 경기 양평군 남한강종합수련원에서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원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의원수련회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속의원 절반이상이 초선의원으로 바뀐에 따라 의원 상호간 소속감 내지 일체감이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당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어 수련회를 통해 당 분위기를 쇄신하고 향후 정국 운영의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련회에는 125명의 소속 의원 중 국회법개정특위 소속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수련회는 노재봉 서울대 교수, 김대중 조선일보 논설주간 등 외부 연사의 특강과 6개조로 나누어진 소속의원들의 분임토의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6개조로 나누어 진행된 의원들의 정국 운영과 당 운영 방향에 관한 분임토론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민주정의당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한 주장 및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기본적으로는 여소야대가 위기상황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도부의 대야전략 수립 및 민주정의당의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다. 그러나 “임시국회에 떳떳한 자세로 임하자, 자신감을 회복할 대책이 필요하다, 공세적 자세로 바뀌어 나가자, 국회 운영은 정공법으로 밀고나가야 하며 처음부터 싸우는 의원이 되자” 등 강경한 주장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구체적인 정치 현안에 대한 평가와 방안에 있어서는 5공 비리와 5·18 광주문제, 중간평가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제5공화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유·불리를 떠나 철저히 파헤치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5공 비리 대신 ‘정치성 비리’로 호칭해야 한다, 5공화국과 6공화국의 단절이 사실상 어려워니 단절 인상을 주는 행동을 지양하자,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되 새 공화국의 기초를 와해시키려는 야당의 음모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하자”는 다른 시각의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다. 중간평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약 실천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오도되고 국민투표에 의한 재신임 문제로 둔갑해 야당의 공세에 휘둘리게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3) 당직경선제 도입

민주정의당은 1988년 7월 30일 제134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위원회 각 분과위원장의 선출방법을 논의하였다. 회의결과 중앙집행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제 도입을 결정하였다. 더불어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 지구당위원장 23명 중에 충남 금산, 전북 정주·정읍 등 2개 지구당의 위원장을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는 8월 12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재정·금융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8월 30일까지 분과위원회별 전체회의를 열어 궐위 중인 15개 분과위원장에 대한 자유경선을 실시하고 신임 분과위원장을 선출하였다.

분과위원장 선출 결과

인권옹호(강동호), 수산(장원석), 여성 2(김창희), 교통·체신(차희영), 문화·예술(임정수), 국제(유석균), 농림·축산(김도용), 노동(이득복), 재정·금융(김동권), 자원개발(김천두), 국토개발(임광수), 교육(김성민), 체육·보건(김명호), 경제·과학(김웅길), 상공(황성박)

경선제를 통해 선출하기로 결정된 충남 금산과 전북 정주·정읍지구당 위원장 자유경선은 11월 10일 실시되었다. 18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읍 청산회관에서 열린 금산지구당대회에서는 박은영 후보가 김현근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95 대 90으로 당선되었다. 이어 11월 11일 314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서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정주·정읍지구당대회에서는 윤규영 후보가 215 대 87로 박종 후보를 누르고 새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곳의 지구당위원장 경선은 대의원 선출을 위한 당원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대의원의 성별·연령별 구성비가 불균형적이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민주정의당은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구당위원장 경선이 당내 민주화는 물론 정당정치에 참모습을 보인 가장 모범적이고 민주적인 정치행사였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4) 도시 저소득층 지원대책 마련

민주정의당은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988년 7월 25일 중앙당 통일관에서 ‘도시저소득층 대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발표자 2명, 토론참가자 10명을 비롯해 시민·학생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전남진 교수는 대리발표를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선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최일섭 교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확립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주제발표를 한 국토개발연구원 김정호 수석연구원은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생계비 최대한 억제, 도시재개발 억제, 임대주택 추가 건설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민주정의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에 이어 도시영세민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생생한 현장민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실태조사반을 파견하였다. 2개 반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반은 전국 6대 도시의 영세민을 조사 대상으로 시청·구청·동사무소 등 일선행정기관을 방문해 노고를 위로하고 현황을 청취하였다. 조사반은 특히 서울 월곡동, 인천 만석동·송연동, 대구 남산4동, 대전 대호1동 등 10곳의 영세민 집단주거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생업자금 융자금액 인상과 자금규모 확대, 영세민 자녀 학자금 지원을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 취로사업 기회 확대 등 건의사항을 들었다.

민주정의당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3개월간에 걸친 작업 끝에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도시영세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공유지의 무상증여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복잡한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특히 이 법안은 집중적인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992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조문화하였다.

5) 호우피해 복구 대책 마련

민주정의당은 1988년 7월 26일 중앙당사에서 박준병 사무총장, 이한동 정책위의장, 이승윤 정책조정실장과 정부 측의 나웅배 부총리, 윤근환 농림수산부 장관, 최동섭 건설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대책 당정회의를 갖고 호우피해 보상대책을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50% 이상 수확이 감소되는 농가에 대해 영농자금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지개량조합비 감면, 1ha 미만 경작농가로서 50% 이상 수확감소 농가에 중고등학생 2기분 수업료 면제, 농경지 복구 소요액의 70% 보조, 피해농가에 300만 원 이내 · 피해사업자에게 1,000만 원 이내의 서민생활안정금융 지원, 1.5ha 미만 50% 피해농가에게 2~5가마의 양곡무상지원 및 20~40만 원의 특별보조금 지급, 사망자 300만 원 · 실종자 280만 원의 위로금 지원,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시설 복구비 50%를 국고에서 보조 등의 보상대책을 마련하였다. 당정은 또 농어민신고 및 정밀조사 실시를 통한 피해 집계가 완료되면 예비비 및 추경예산을 책정하는 등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한편 윤길중 대표위원은 임방현 중앙위의장, 박범진 부대변인, 강성모 재해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7월 27일 충북 제원군 금성면과 단양군 매포읍을 방문해 금일봉을 전달하고 이재민을 위로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완전복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당부하였다.

6) 주요 당무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지구당위원장회의 개최

민주정의당은 1988년 8월 10일 서울 도봉구 수유동 소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전국 지구당위원장회의를 열고 주요 당무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윤길중 대표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의 원리원칙만을 따지는 점잖은 자세에서 탈피해 잡초와 같은 강인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당내 민주화를 위해 도지부 위원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여 이들을 중앙집행위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준병 사무총장은 당무보고를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지방의원의 공천 등에 있어서 각 지구당위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9월부터 원외지구 당에 유급직원 1명을 더 늘릴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당의 활성화를 위해 당직 경선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지구당위원장이 이들 소외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방현 중앙위의장의 중앙위분과위원장 경선 등에 대한 보고, 손주환 정세분석실장의 정국상황 보고, 이승윤 정책조정실장의 정책 보고, 정종택 예결위원장의 예산 관련 보고, 김중권 제1차장의 새 조직 모델 설명, 구용상 제2차장의 지역활동 지침 설명 등이 있었다. 정국상황을 보고한 손주환 정세분석실장은 “야당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5공화국을 최대한 평가절하하고 6공화국의 정통성과 도덕성에도 결정타를 가하려 하고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특히 평화민주당은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문제와 연계시켜 조기에 정권을 장악하려는 계기로 이용하려 하고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은 5·6공화국의 연계를 부각시켜 6공화국에 치명타를 가하려 하고 있다”라고 야당 측 전략을 설명하면서 하반기 정기국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7) 사무처요원 자세확립 연수대회 개최

민주정의당은 1988년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천마산수련장에서 사무처 직원을 4개 기로 나누어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회는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상황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사무처 직원의 새로운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민주정의당은 2박 3일간 진행된 연수회를 과거의 강의 위주 주입식 연수에서 탈피해 자율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분임토의로 활용하여 평소 생각하던 당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토의하도록 하였다.

분임토의에서는 ‘우리 민주정의당이 새롭게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 아래 ①민주정의당의 현 위상 ②민주정의당이 해야 할 과제 ③사무처 요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

등 소주제가 논의되었다. 사무처 요원들은 7개조로 편성되어 분임토의 주제에 대하여 난상토론을 실시한 후 소주제에 대한 토의내용을 채택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당 사무처 요원들은 당 지도부의 정국 운영에 대한 혁신적인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8) 하반기 정국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세미나 개최

민주정의당은 1988년 9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양평군의 남한강종합수련원에서 하반기 정국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5공화국 청산 대책과 관련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문제, 민주정의당의 위상 재정립 문제, 정기국회 대책 및 좌경급진 세력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소속 의원 전체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 되었던 5공화국 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청산과 단절’이 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토로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결단을 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한편 당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패배 후 당이 집권여당이면서도 정국 주도권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와 주요 당직 인선에 있어 경선제를 도입하는 등 당내 민주화를 통한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반기 정기국회 등 정국대처 방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지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좌경세력 확산에 대하여 당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야권 주장에 휩쓸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밖에 당의 주요 지지기반이 농촌지역임을 감안한 추곡수매가 인상이나 농가 부채 탕감 등 농업정책 개발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박준병 사무총장의 의견종합과 결론으로 세미나 토론은 마무리되었다. 박준병

사무총장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수개월간 과거에 얽매어 국가 발전을 위한 홍보의 진전도 없다는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과거 제5공화국 당시 부정적 요소를 척결하는 데에는 과감하고도 결연한 의지를 다져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과거는 언제나 국민의 거울이어야 할 뿐이지 보복 대상이나 발전에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1988년 말까지 과거정권 관련 각종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9) 삼청교육대 인권침해 등 진상조사

1988년 10월 6일 민주정의당은 중앙집행위원 간담회를 열고 1980년 당시의 삼청교육대 진상을 조사하고, 사망자 및 가해자에 대한 사후처리 등 전체적인 문제점을 당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정의당은 안병규 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이학봉·손주환 의원이 참여한 ‘삼청교육특별조사반’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삼청교육대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국회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진상을 규명해 대책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중앙집행위원 간담회에서는 삼청교육대에 의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삼청교육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합법적이었다는 시각을 전제하였다. 즉, 1980년 당시의 삼청교육대는 정치적·사회적 혼란기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조치로, 교육 자체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그 과정상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밝혀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10) 5공화국 비리 청산 문제 등 난국 타개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 개최

민주정의당은 1988년 11월 23일 중앙당사에서 5시간에 걸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5공화국 비리 청산과 관련하여 전임 대통령의 사과 및 은둔에 따른 향후 정국 대처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정의당 의원들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지양하고 과감한 민주화 조치로 난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이를 위해 의원직까지 내놓는다는 비장한 각오로 나설 것을 다짐하였다.

박준병 사무총장은 “우리는 오늘 6·29 이전의 정치 상황을 마감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출발선에서 있다. (……)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시인 및 사과하고 은둔생활에 들어간 전임 대통령의 뜻을 적극 수용해 이를 바탕으로 현안을 풀어 나가자”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윤환 원내총무는 “전임 대통령을 바르게 보필하지 못하고 정국을 올바르게 주도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 이번이 우리 당의 사활과 체제 수호의 마지막 기회임을 자각하고 정권을 내놓는다는 각오로 시국 수습에 나서자”라며 의원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호소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시국 수습을 위한 당의 결연한 자세 정립, 국민의 뜻에 따른 상황 대처, 대야 협상력 강화, 과감한 민주화 조치, 당 체제 혁신 등과 관련하여 토론을 벌였다. 의원들은 전임 대통령의 사과를 수용하고 더 이상의 처벌을 통한 정치보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는 한편 혁신적인 민주화 조치로 국민 대화해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윤길중 대표위원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들은 11월 24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시국 수습을 위한 당의 방안’을 보고하고 이른 시일 내에 단안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11) 당 개혁위원회의 발족과 체제 혁신

민주정의당은 1988년 11월 28일 당 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박준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당 개혁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열고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부정적 유산에 대한 단호한 청산과 단절, 6·29 선언 정신에 따라 당원의 주도로 민주개혁시대를 열어가는 체질 개선과 체제 구축, 모든 당원의 자신감과 사기 진작을 통한 당력 강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정당 구현 등을 당 개혁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당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는 확고한 개혁 의지와 신선한 이미지가 반영된 인사 쇄신, 과감한 당내 민주화 조기
실현, 6·29 선언 이후의 시대정신에 부응하도록 이념·정강·기본정책 수정 및 개
정 등이 설정되었다. 또 새로운 정치 상황 대응과 정치 현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 조직 개편, 당사 위치·당직 명칭·당 마크 등의 개편 검토, 정치자
금모금 방법의 개선과 정치도덕성 회복, 건전한 새 정치 풍토 조성, 농어민·도시영
세민·근로자·청소년 등에 대한 개혁적 방법으로서의 접근 등이 설정되었다. 각 분과위
원회는 이러한 당 개혁의 목표와 방향 설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였다.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2·3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를 지원하는 행정실,
제2분과 산하에 당헌개정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되는 개혁위원회는 1989년 1월 10
일까지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1989년 상반기 중에 당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편 당 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람직한 개
혁방안에 대한 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
웠다. 윤길중 대표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개혁위원회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이 지대하
다고 전제하면서 “기존의 당헌에서 탈피해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모든 부문에 걸친
과감한 개혁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박준병 사무총장도 인사말을 통해
“굳이 시간에 얽매일 필요 없이 당을 다시 만든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분과별 개혁위원은 제1분과위원회(당 이념·강령·기본정책)에 정석모(위원장)·
심명보·김중위·나창주·손주환 의원과 이상의·김종인 지구당위원장, 제2분과위
원회(당헌·당기구·인사쇄신)에 김중권(위원장)·이성호·이상하·강재섭·이윤
자 의원과 박범진·정선호·이종률 지구당위원장 및 구천서 중앙위원, 제3분과위원
회(당상징·당정관계·정치자금)에 이자현(위원장)·한승수·박희태 의원과 강성
재·조남희 지구당위원장 및 조영일 중앙위원 등이 각각 임명되었다.

12) 지구당위원장 · 국회의원 연석회의 및 중앙위원 결의대회 개최

민주정의당은 1988년 12월 26일 서울 가락동 중앙정치연수원에서 지구당위원장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귀향활동 대책과 향후 정국운영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한 데 이어 12월 27일 중앙당 통일관에서 중앙위원 결의대회를 갖고 노태우 총재의 ‘국민 대화해 선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대국민 홍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지구당위원장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는 박준규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23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박준규 대표위원은 격려사에서 “우리 당은 지난 한 해에 40년 묵은 권위주의 정치 형태를 탈피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진 채 시련도 많았으나 평화적 정부 이양,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북방외교 등 역사 발전에 기여한 것도 많았다”라고 회고하면서 “민주정의당의 살길은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종찬 사무총장은 당무보고를 통해 당의 당면과제로 과거유산의 과감한 청산, 과감한 당 개혁 및 당내 결속 강화, 당 조직 강화 및 확고한 당 기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위정국의 조기 마무리, 당 조직 운영의 민주화, 6·29 선언을 토대로 한 당내의 동질성 확보, 당 조직 정비 및 정예화, 범여권 결속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988년 12월 27일 민주정의당은 중앙당 통일관에서 임방현 중앙위원회 의장, 김중권 사무차장 등 당직자와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인권옹호분과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위원회 인권분과위원회(위원장 강동호) 주관으로 민주개혁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인권분과위원회는 선언문을 통해 민주정의당이 민주개혁에 앞장선다는 결심으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중앙위원은 비판과 불평에 앞서 국가와 당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당내 민주화를 통한 당 체질 개선과 인사정책의 쇄신, 회의체 중심의 당무 운영, 당직 경선 등 절차적 민주화와 조직 개편, 당내 권위주의적 잔재의 조속한 청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나. 1989년도

1) 노동대책협의회 구성

민주정의당은 각종 노동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89년 1월 12일 중앙당 통일관에서 '노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노인환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였다. 노동대책협의회는 노동문제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노사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대책협의회는 1월 13일 한국노총 의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당면 노동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측은 노동관계법 개정 등 각종 현안의 해결을 촉구하고 산별·노조별로 각종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민주정의당은 이들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근로자 측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에도 공권력을 강력히 행사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정의당에서 이종찬 사무총장과 노인환 노동대책협의회 의장 등 노동대책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노총 측은 박종근 위원장과 20개 산별 노조위원장이 참석하였다.

1월 26일에는 2차 회의를 열고 모토로라코리아 대책 소위원회와 아파트분규 대책 소위원회를 결성하고 남재희 의원, 김동인 의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이들 소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에 실태를 파악하여 노동대책협의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2) 대도시 교통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민주정의당은 교통체증 등 대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1989년 1월 25일 중앙당 통일관에서 중앙위원회 교통체신분과와 정책위원회 교통체신분과 공동주관으로 '대도시 교통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국토개발연구원 이건영 박사와 교통개발연구원 강승필 박사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건영 박사는 대도시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로 도시 기동성 향상, 시민통행권 보장,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교통에 수반된 사회비용의 최소화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첫째, 대도시 교통은 무엇보다 대중교통의 틀 위에서 세워져야 하며 둘째,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요관리체계가 이룩되어야 하며 셋째, 도시개발과 교통체계가 광역적 차원에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승필 박사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로의 소통화율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인구 100만 도시에는 도시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200만 이상의 도시에는 지하철·전철망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교통계획 수립의 체계화, 계획 실현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체계 확립, 교통행정체계 정비와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 교통문화 정착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정의당은 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서울·부산의 지하철 건설 확장, 지하철·버스의 연계수송과 지하철·전철 차량 증설 및 버스 운행개선 등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특별회계 또는 기금 설치를 통한 도시교통시설 재원 확보,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요금 및 주차장 건설 등의 개선, 광역교통관리기구 설치 등 5개항의 대안을 대도시 교통대책으로 우선 선정하였다.

3) 여성정책간담회 및 서울지역 초·중등 여교사와의 간담회 개최

민주정의당은 1989년 1월 25일 박준규 대표위원 등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커히 호텔에서 여성유권자연맹 등 각종 여성단체장 43명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미용사회는 미용실이 신고제로 바뀐에 따라 미용실의 난립으로 요금덤펍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고 미용실 설치 평수 하한선을 현행 3평에서 6평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새마을부녀회는 농가부채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학자금 융자 등의 방법에 의한 간접적 탕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밖의 여성단체장들은 가족법 통과와 여성의 정부고위직 공무원 참여 확대, 민간단체 육성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박준규 대표위원 등 민주정의당 참석자들은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민주정의당은 1월 27일과 1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지역 초·중등 여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계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과외 문제, 교장 선출 문제, 평교사협의회가 주장하는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문제, 빈곤가정 학생 문제, 여교사 처우 문제, 숙직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이종찬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교장을 선출제로 하는 나라가 없고 교사들의 순환근무제에 따라 각 학교의 인적구성원이 달라 매년 선거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교장선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평교사협의회 주장 가운데 수용할 부분은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함중환 국회 문교공보위원은 민주정의당이 2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교육법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면서 빈곤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방송의 대폭적인 확충과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천 문교공보위원회 전문위원은 교무회의의 의결기구문제는 리비아를 제외하고 공산권 국가에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장기근속 교사의 상대적인 저봉급에 대해 호봉 간 급여 격차를 좀 더 크게 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민주정의당은 이날 제기된 각종 문제에 대해 사안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결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4) 5공비리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중앙집행위원회 특별성명 발표

민주정의당은 5공화국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1989년 1월 31일 중앙당사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제147차 회의를 열고 국회 관련 특별위원회 종결 등 향후 정국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검찰은 일해재단 비리 등 모두 34건의 수사결과에 대한 일괄발표를 통해 47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입건할 것이며, 이 가운데 44명은

구속기소, 20명은 불구속기소하였으며 나머지 12명은 수사를 계속하거나 지명수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정의당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궁하고 그동안의 특위정국을 매듭지을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법 테두리 내의 정치와 법의 공정한 집행이 존중되는 민주법치 국가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는 특별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 특별성명

오늘 5공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동안 검찰은 정치로부터의 중립,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 입장에서 수사에 임해온 것으로 안다. 우리 당은 진정한 민주화는 법에 의한 민주화이며, 법의 판단을 존중하는 민주화라는 믿음에 따라 그간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해 왔으며 이제 그 수사전모가 발표된 이상 국민과 여야 모두는 이번 검찰 수사결과를 수궁하고 그동안의 특위정국을 매듭지음으로써 법테두리 내의 정치와 법의 공정한 집행이 존중되는 민주법치국가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별검사제는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벗어난 위험적이고 독선적인 발상일뿐더러 국회나 정당의 영향력을 받는 국회임명의 특검제는 오히려 검찰의 정치오염을 초래할 것으로 보아 우리 당은 이를 반대하며 더 이상 정치보복이나 당리당락적 차원에서 이 제도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

이제 5공청산과 더불어 여야 모두는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민생문제에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고 지난 시대의 과오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한 전진의 발걸음을 재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89년 1월 31일

5)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입장 개제

민주정의당은 1989년 초부터 노태우 총재의 6·29 선언 8개항 중 하나이며 대통령선거 공약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1월 당내 지방자치제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제 연내 실시’ ‘야당과의 합의’ ‘단계별 실시’ 등의 방향을 확정하고 특위 내에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민주정의당은 2월 2일자 당보에 ‘지방자치제에 대한 민주정의당의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한 당의 의견을 게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민주정의당의 정책에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기본입장, 실시범위와 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시선거 문제, 정당 참여 문제, 지방자치를 위한 기반 보강 작업 등이 담겨 있었다.

지방자치제에 대한 민주정의당의 기본입장은 시·군·구는 물론 특별시·직할시·도의 지방의회를 먼저 구성하고 시장·군수·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선거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실시범위와 순서는 1988년 3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대로 먼저 시·군·구의 의회를 구성하고 광역단체인 특별시·직할시·도의 의회를 구성한 다음 군수·시장·도지사 등 단체장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국민이 특별시·직할시·도의 광역자치의회를 먼저 구성하자고 의견을 모을 경우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시선거 문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리를 잡은 다음 실시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는 문제는 정당 참여를 허용할 경우 지역별로 4당 분할 현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는 지방행정에 중앙정치의 영향이 곧바로 파급되는 현상을 가져온다는 점 등을 들어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된 후에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기반 보강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 이양 확대와 지방양여제도를 도입하여 자립도가 낮은 지방재정을 보강하고,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6)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민주정의당은 1989년 4월 27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박준규 대표위원을 비롯한 재계·노동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대표와 당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경제 불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당 정책위원회와 국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구본호 한국개발연구원장과 구석모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서상목 의원의 사회로 토론을 벌였다. 구본호 원장은 ‘우리경제의 좌표와 진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4반세기 동안 유례없는 대도약을 성취해 온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및 책임 분담, 대내적으로

국민의 균형발전과 형평 및 자율성 제고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런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공정성 확보와 형평 증진, 국제화 추진, 산업구조 조정 등 3가지의 중장기적 과제를 원만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석모 부원장은 ‘한국산업의 당면과제 및 정책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의 둔화는 노사분규와 임금상승, 원화절상,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산업구조조정 문제점 등 국내적·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저부가가치·저생산성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와 근로소득 비중을 높이는 저금리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증액, 노사 간 신뢰 구축, 노사 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 자제, 정치적 불안 해소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7) 국제민주정당연합(IDU) 가입과 당수대회 참가

민주정의당은 1989년 7월 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세계 보수민주정당 모임인 국제민주정당연합(IDU) 이사회 및 태평양민주연합(PDU) 총회에서 회원 정당의 만장일치로 민주정의당의 가입이 승인됨에 따라 준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 회의에 참석한 박준규 대표위원은 연설을 통해 “6·29 선언은 국민적 욕구를 수렴, 폭넓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토대 위에서 민주화를 시작한 최초의 선례”라고 말하고 “민주정의당의 IDU 가입 노력은 민주정치에 대한 당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정의당은 9월 21일부터 3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IDU 당수회의에 김윤환 의원을 비롯하여 박정수 의원(당 국제관계위원장), 이태섭 의원(당 정책연구소장), 임창림 국제국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대표단은 9월 23일 IDU 집행위원회에 참석해 노태우 대통령이 주창한 ‘한민족통일방안’ ‘공화국이 이룩한 민주화 업적’ 등을 홍보하고 민주정의당과 서방선진국 정당들 간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였다.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부 록

8) 5공청산 합의 설명을 위한 지구당위원장 · 국회의원 연석회의 개최

민주정의당은 1989년 12월 21일 청와대에서 12월 15일 노태우 대통령과 야 3당 총재가 합의한 '5공청산 합의내용' 설명을 위한 지구당위원장 ·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노태우 총재는 “15일 청와대 회담의 합의 결과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980년대 문제를 1990년대로 넘길 수 없다는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여망을 받아들여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라고 합의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당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모든 문제가 연내에 깨끗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거담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 노태우 총재는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해 과격한 노사분규와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는 등 정치 · 사회적 안정을 굳건히 하고, 1990년 실시 예정인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필승의 자신감으로 임하여 1990년대를 지속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들은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과거청산문제가 말끔히 매듭지어져 희망찬 1990년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회담의 합의사항 실천에 총력을 다하여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정책의 적극 추진,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성숙한 민주정치문화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 의 문

우리는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과거청산 문제가 청와대 회담으로 말끔히 매듭지어져 희망찬 90년대를 맞게 된 것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우리는 제17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번영과 민족통일의 대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노태우 총재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청와대 회담의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데 총력을 경주한다.
1. 우리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책임정당의 사명을 다한다.
1. 우리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성숙한 민주정치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며 다가온 90년대가 민족웅비의 연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1989년 12월 21일

민주정의당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일동

2. 통일민주당

가. 1988년도

1) 제13대 국회의원 당선자대회 및 낙선자대회

통일민주당은 1988년 5월 3일 제13대 국회의원 당선자대회를 열었다. 당선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통일민주당은 득표율 2위로 국민의 고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의석을 확보한 총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의 정치에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하기 위해 당의 전면적인 체질개선과 체제정비를 통해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라고 다짐하였다.

통일민주당은 당선자대회에 이어 5월 4일에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낙선자 위로를 겸한 전국지구당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김영삼 전 총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승리만을 할 수는 없고, 실패할 때도 있는 법”이라고 지적한 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라는 말을 믿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낙선자들을 위로하였다. 김영삼 전 총재는 또 “부산에서 지역구 출마로 발이 묶여 전국의 동지들을 돕지 못한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며 “자성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자”고 연설하였다. 이날 낙선자대회에는 김명윤 총재 직무대행, 김상현 부총재, 김수한 전 의원, 김태룡 대변인 등 낙선중진들도 대거 참석하였으며 모두들 재기하겠다는 의욕을 과시하였다.

2) 정책정당화를 위한 정책개발 활동 전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통일민주당은 1988년 5월 12일 전당대회를 열고 김영삼 총재를 당 총재에 재추대하는 등 당 체제를 정비하였다. 김영삼 총재는 수락연설을 통해 “통일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정책정당화를 강력히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따라 통일민주당은 정책개발을 위한 각종 토론회, 세미나 및 여론조사 등 적극적인 정책개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88년도 통일민주당 정책개발 주요활동

구분	일자	행사	비고
세미나	5. 20~21	국회의원 정책 세미나	아카데미하우스
세미나	6. 2	공인분야 제도 개선방안	중앙당사
토론회	6. 2	농·수·축산물수입개방의 문제점과 농어촌 보호 대책에 관한 정책 토론회	중앙당사
세미나	6. 4	증권시장 육성과 안정화 대책	중앙당사
세미나	6. 30	현행 방송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중앙당사
세미나	7. 4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과 통일방안	중앙당사
토론회	7. 16	5공화국비리척결의 역사적 의미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토론회	8. 29	현행 토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상공회의소
1차여론조사	5월 중	정당지도, 현 정국 관련 설문 조사	서울시 16개 대학의 교수대상
2차여론조사	9월 중	올림픽 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등	국민여론조사
3차여론조사	10월 중	국정감사 후 실효성, 특별검사제, 금융실명제, 야당외교, 지방자치제법, 반민주약법 등	국민여론조사
4차여론조사	11월 중	특위 및 청문회 문제점 등	국민여론조사
5차여론조사	12월 중	중간평가, 지방자치제 방식, 특별검사제, 청문회생중계 지속 여부, 두 전직 대통령 출석증언	국민여론조사

이를 위해 통일민주당은 1988년 한 해 동안 연이어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과거청산과 민생안정을 위한 경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뿐만 아니라 당 발전위원회 주관으로 1988년 한 해 동안 5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국정감사, 5공화국 비리 및 광주민주화 특위, 청문회 활동, 중간평가 등 정치 현안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였다.

1988년 5월 20일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학계·언론계 인사들의 강의를 듣고 정책토론을 벌였다. 통일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은 3개조로 나누어 각각 “당 이념과 좌표설정”, “정책정당화 방안”, “당내민주주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분임토의를 벌였다. 김영삼 총재도 실제로 하나의 분임에 소속되어 직접 토의에 참여하였다. 이어 1988년 6월 2일에는 중앙당사에서 수입개방과 농어촌 보호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농산물 가격 보장 정책 적극 추진, 수입충격의

완화와 보상대책 강구, 농가부채 탕감, 농업관계법 재정비, 공업무문 소득의 농업부문으로의 이전 등이 제기되었다.

한편 1988년 6월 4일에는 400만 명을 넘어 선 증권 인구를 겨냥하여 ‘증권시장 육성과 안정대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투쟁일변도였던 과거 야당의 모습과 달리 증권유권자에 대한 관심을 보여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3) 양심수 조기 전원석방 촉구

통일민주당은 1988년 5월 17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양심수 조기 전원석방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통일민주당은 민주화가 시대적 대세인 상황에서 국민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러한 당론 결정의 이유로 내세웠다.

이후 통일민주당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내 인권위원회를 통해 8월 3일부터 6일까지 6개 조사단을 구성하여 전국 16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를 방문하고 교도소 내 가혹행위와 양심수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등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조사단은 양심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 및 인도적 차원에서 장기·고령 복역자의 조속한 석방, 공안사범에 대한 형량의 비형평성 시정, 반공법·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사건 자체의 재검토, 형행제도의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통일민주당은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8월 9일 “양심수 석방 문제가 민주화 실천의 중대한 관건”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8월 15일까지 양심수 석방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안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4) 철도파업사태 관련 교통부 장관 등 인책 요구

1988년 7월 26일 건국 이래 최초로 전국 철도기관사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 전국의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통일민주당은 7월 27일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통일민주당은 정부의 공권력 개입과 농성 기관사 연행조치를 집중 성토했다. 한편 연행자 전원 석방을 관계당국에 촉구하기로 하였다. 또 파업이 종료된 7월 28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철도 운영이 정상화된 데 대해 환영을 표시하는 한편 철도기관사 파업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범준 교통부 장관과 최기덕 철도청장에 대한 인책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통일민주당은 서청원 대변인을 통해 “이범준 장관은 평소 기관사들의 불만내용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여 최악의 사태를 초래해 국민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최기덕 청장도 군대식의 강압적 조직관리로 기관사들의 불만을 폭발하게 하였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사태발생의 원인과 경과에 대한 분석이나 사후 정책적 대책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으며 특히 ‘공무원 파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5)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 전개

통일민주당은 1988년 7월에 열린 제143회 임시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통일민주당 소속 박경수 의원이 제기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보고 당 차원에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을 펼쳤다.

박경수 의원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본부장을 1987년 9월부터 맡아오면서 서울YWCA, 사단법인 가정문제연구소와 함께 2회에 걸쳐 사업을 벌여 55쌍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미혼여성 329명의 신청을 받아놓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통일민주당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회원제와 각계각층의 성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다.

6) 도시영세민 보호를 위한 주거 등 4개 부문 종합대책 마련

통일민주당은 1988년 8월 ‘도시영세민 보호대책 정책세미나’ 결과를 종합하여 영세민 보호를 위한 주거, 보건의료, 교육, 생계문제 등 4개 부문에 관한 정책 방안을 마련

하였다. 김영삼 총재는 “그동안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전시적인 경제정책이 소외된 영세민을 양산하였고, 영세민의 보호는 정부의 시혜적인 차원에만 머물렀으며,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제도적 방안이 전혀 강구되지 않았다” 라고 지적하였다. 통일민주당은 “열악한 도시영세민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민주화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이번 정책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라고 발표하였다.

도시영세민 보호를 위한 주거 등 4개 부문 종합대책

구분	내용
주거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주택관련법을 제정·개정하여 ①영세민 거주지역에 있어 각종 규제 완화 ②민간건설업체의 국민주택 건립 의무화 ③목돈 없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저당권 용자시장 제도' 개발 등 시행
보건의료	①영세민의 해산보호는 의료보호로 흡수 ②영세민 거주지역에 의료기관 설립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상 혜택 부여
교육	①영세민 자녀 학비지원 확대 ②영세민 거주지역에 탁아소·유치원 의무적 설치·운영
생계	①영세민을 위한 공동노점상 지역을 설정하여 전기료 및 수도료 감면 ②영세민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유도

7) 남북국회회담과 8·15 남북학생회담 대책 수립

통일민주당은 남북국회회담과 8·15 남북학생회담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1988년 8월 10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서는 북측이 제의한 8월 17일의 예비 접촉문제 등을 적극 수용하기로 당론을 집약하였다. 통일민주당의 김상현 부총재와 신상우·정재문 의원 등은 회의에서 “예비회담 문제에 대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본회담 장소 또한 실무회담 결과에 따르긴 하되 서울 평양 등 어디든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면서 북측 제안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통일민주당 소속인 박관용 국회 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주선한 정부와 학생 측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 “문교부가 제의한 학생교류와 남북한 학생회담이 동일한 목적임을 상호 확인하는 등 4개 항에 걸쳐 대단한 진전을 보았다” 면서 “지난 6·10대회 때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회의에서 보고하였다.

8) 전국 간부훈련 실시

통일민주당은 차기 수권정당으로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중앙정치훈련원(원장 김동규 의원) 주관으로 1989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남한강수련원에서 지구당 간부 266명을 대상으로 ‘제1기 전국 지구당간부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삼 총재는 특별강연을 통해 “우리는 일찍 경험하지 못한 야대여소의 4당 체제에서 민주당의 색조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어 갈 것인지 어렵고 벅찬 과업을 앞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 지난 날의 화려한 민주화 투쟁의 관록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의 내실을 갖추어 나가야 할 때이며, 제1기 전국 지구당간부 훈련이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간부훈련 첫날인 8월 29일에는 현 정세와 민주당의 진로(강인섭 부총재), 지방자치제의 의의와 전망(조창현 한양대 교수), 민주당의 이념(황병태 정책심의회 의장), 이틀째인 30일에는 당 조직의 특성과 관리(주관중 경희대 교수), 정치선전의 이론과 실제(이준일 중앙대 교수), 한국경제의 민주화(김동규 훈련원장), 정보화시대의 진전과 대응전략(윤은기 경영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여론 형성과정과 조사방법(오택섭 고려대 교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우리 당의 역사적 사명(김영삼 총재),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참가보고(김동영 부총재), 민족통일을 위한 민주당의 기본정책(박관용 민족통일특위 위원장), 지방자치제에 대한 민주당의 방안(문정수 의원) 등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제1기 당 간부 교육 후 통일민주당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제2기 당 간부 훈련을 연이어 실시하였다. 2기 훈련은 지구당별 1명 등 130명과 중앙당 당직자 20명을 포함한 모두 150명의 당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김영삼 총재는 치사에서 “국회 5공 비리 특위와 일해재단청문회를 통해 통일민주당은 4·26국회의 원선거 이후 최대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고 전제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민주당원, 책임지는 민주당원으로서 국민 앞에 설 때 시대와 국민은 통일민주당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9) 한국노총·재야 노동단체 연대 희망 간담회 개최

통일민주당은 1988년 10월 27일 한국노총 산하 22개 산별노조위원장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면서 노동운동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등 연대를 희망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김영삼 총재는 간담회에서 “노총이 백지상태에서 새 출발을 다짐하며 집행부 스스로 총사퇴기로 결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오는 11월 9일에 열릴 임시대의원대회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겠다”고 통일민주당의 입장을 전하였다. 또한 “그동안 노총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집권세력의 요구에 순응하는 어용적 활동을 해 왔으며, 이러한 어용성은 지난해 4·13 호헌조치 지지성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 노총은 이제 자기혁신의 가시적 행동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 민주노총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 재야 노동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하기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나. 1989년도

1) 제2차 정책세미나 개최

통일민주당은 김영삼 총재를 비롯한 소속 의원, 지구당위원장, 당 정책전문위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989년 1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1988년에 이어 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통일민주당은 세미나를 통해 5공청산·중간평가 등 정치 현안과 치안·교통·여성·주택·공해정책 등 민생복지 부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당의 정책노선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 주목을 받았다. 김영삼 총재는 인사말에서 “급년에는 남북문제·북방외교 등 급변하는 대외문제, 5공비리 청산,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명예회복관계, 중간평가, 지방자치제 등 정치 현안과 시장개방 압력 등의 경제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시대가 민주당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당의 위상을 정립하여 부응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자”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황병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위상과 진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현상관리 보수정당이라면 민주당은 개혁적·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개혁적 보수주의”라며 당이 설정하고 있는 노선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당의 노선 및 정책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지도부와 지구당위원장 간, 노장과 소장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등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2) 중간평가 실시 연기와 불신임 운동

1989년 3월 4일 야 3당 총재는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5공비리 청산 후 신임 국민투표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5공비리 청산 이전에 중간평가 강행 시에는 노태우정권 퇴진투쟁을 전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야 3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5공 청산 이전의 조기 중간평가 실시 움직임을 보이자 통일민주당은 불신임운동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김종필·김대중 총재와의 연이은 단독회담을 통해 중간평가의 무기한 연기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고, 이에 통일민주당은 중간평가 연기 합의를 성토했다는 장외집회에 나섰다.

3월 13일 강원 태백시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통일민주당은 “노태우정권이 공약한 중간평가는 결코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임연계³⁹⁾의 위헌론 및 정책평가 따위는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과 힘을 합쳐 끝까지 노태우정권 불신임 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3월 18일 개최된 충남 온양 집회에서도 “5공비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평가 실시를 반대하며,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태우정권 퇴진운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그동안 중간평가 실시 반대를 주장해 온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 및 신임연계 중간평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와의 협상을 토대로 3월 20일 “이 시기에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는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결국 중간평가 실시 유보를 선언하였다.

39) 신임연계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순 정책평가가 아닌 국민투표와 연계한 정권 불신임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것임.

3) 소비자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통일민주당은 1989년 2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당시 백화점 허위세일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통일민주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자유경제 질서를 파괴한다”라고 지적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와 소비자보호 제도의 정책이 미시적으로는 소비자의 고충을 처리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였다. 그러나 거시적으로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업 간 과도한 간접상호 출자는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산업합리화 계획 또는 공업발전법상 지나친 예외는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방법으로 ①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준사법적·준입법적 기관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②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3배 배상제도 도입 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위반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 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을 사업자뿐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해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품질 검사 및 그 결과의 공표 등 국가의 시책활동 강화와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기준 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 여성간부·청년정치지도자 등 교육·훈련 실시

통일민주당은 1989년 3월 7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남한강수련원에서 수권능력 강화를 위한 여성간부 대상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여성의 정치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하는 한편 수권 전열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정당사상 첫 여성훈련으로 평가되었다. 김영삼 총재는 인사말에서 “노태우정권은 철학이 없는 정권이며, 완전 무정부상태와 같은 무능한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노태우정권을 굴복시키기 위해 여성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김동규 훈련원장도 환영사에서 “투철한 당성으로 모든 당무에 앞장서서 여성의 정치 영역을 넓혀 국민정당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교육·훈련은 여성해방과 민주화(효성여대 송덕수 교수), 정당과 여성의 역할(이화여대 백영옥 교수), 한국경제구조와 개선책(김동규 훈련원장), 정보화사회의 대응 전략(경영정보전략연구소 윤은기 소장), 당 조직과 선전(경희대 주관중 교수), 한국 여성운동의 방향과 전망(한명숙 여성민우회 회장)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수료에 즈음하여 일부 여성간부는 “전국 여성조직 확대로 여권신장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한다”라는 취지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또 지방자치제 시대를 대비한 여성정치교육의 장으로 민주여성대학(통일민주당사 대회의실)을 개설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운영하였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정치참여에 관심이 많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여성대학을 통해 통일민주당은 여성의 정치참여 의식을 고양하고 이를 통한 여성인재 발굴과 지도능력을 함양해 올바른 여성정치문화 정립에 힘쓰고자 하였다.

한편 통일민주당은 청년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정치교육의 장으로 민주청년정치학교(통일민주당사 대회의실)를 통일민주당 중앙청년위원회 주관으로 개설하여 청년지도자, 청년정치지방생,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1차(6. 3~6. 24)와 2차(10. 28~11. 18)에 걸쳐 2차례 운영하고 청년정치지도자 육성을 도모하였다. 1차 민주청년정치학교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8개 강좌와 문화·체육·토론 등 총 12개 강좌를 개설하여 정회원 지부 및 지구당 간부, 일반시민 등 126명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4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 밖에 1988년 지구당 간부를 대상으로 한 1, 2차 당 간부 훈련과정에 이어 1989년에도 7월 3일부터 5일까지 당 간부 훈련을 통해 수권능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5) 노사분규 대책 활동

1989년 1월 초에 발생한 ‘현대중공업 노동자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통일민주당은 황명수 부총재를 단장으로 심완구·노무현·김운환 의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울산 현지에 급파하였다. 조사단은 테러행동책이 머문 울산 모 여관에서 안기부 관계자

등이 거명된 메모를 발견하고 “이 사건의 배후에 현대그룹 경영진과 안기부 및 경찰·노동부 등 공권력이 개입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당은 조사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1월 13일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공권력이 개입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진상을 추궁하는 한편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와 국회 차원의 현장조사단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농성을 강제 해산하기 위해 3월 30일 또다시 현대중공업에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되어 노동자 697명이 연행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통일민주당은 4월 4일 정무회의에서 7명의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위원장 황명수 부총재)를 구성하고 현지에 파견하는 등 노사분규 대책활동에 나섰다.

통일민주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투입된 경찰력의 즉각적인 철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공권력에 의지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지 말고 정주영 회장이 앞장서 대화를 통해 성실히 문제해결에 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여야는 4월 7일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주)노사분규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해 5월 16일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통일민주당은 경인지역 노사분규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하여 4월 21일 연쇄파업이 발생하고 있는 경인지역의 노사쟁의 실태를 조사하고 당 차원의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인지역 노사쟁의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였다. 최기선 의원이 반장을 맡은 조사반에는 심완구·신하철·이인제·노무현 의원과 이신범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여하였다.

6) 소련방문을 통한 북방외교 활동

통일민주당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제2야당으로 전락한 당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북방외교에 관심을 가져왔다. 김영삼 총재는 1988년 6월 제13대 개원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라면 평양은

물론이고 소련이든 중국이든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통일민주당은 일본 사회당과의 교류관계를 맺는 데 성공하여 1989년 1월 30일 김영삼 총재가 우리나라 정당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사회당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사회당과 양당 합동회의를 갖는 등 야당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더불어 방 일기간 중 주일본 소련대사관 측과의 접촉을 통해 소련 방문 계획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었다.

이를 계기로 통일민주당은 당 국제위원장인 정재문 의원을 극비리에 소련으로 보내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로부터 공식초청을 받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김영삼 총재는 1989년 6월 1일부터 소련을 방문하여 당시 IMEMO 소장인 프리마코프와 두 차례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폭력이나 혁명적 방법을 통한 남북통일 절대반대’라는 소련 측 입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일민주당의 소련 방문단은 IMEMO와 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선린 관계를 강화하고, 남북통일을 위한 대화증진을 지지하며, 이 지역에서 진행 중인 문제에 관해 정기적인 접촉을 갖고 협의한다는 내용의 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특히 김영삼 총재는 1989년 6월 6일 저녁 숙소인 모스크바 돔 푸루에모프 영빈관에서 김상현 부총재, 황병태 정책심의회 의장, 박관용 국회 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북한의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전금철 부위원장, 안병수 서기국장 등과 극비리에 회담을 가졌다. 김영삼 총재는 회담에서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북한 방문을 희망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대화창구인 한국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조 당적 외교의 기본적 입장을 보여주었다.

7) 5공화국 청산 이행 촉구

통일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5공화국 청산 연내 이행을 촉구하며 대여 강경투쟁을 결의하였다. 김영삼 총재는 1989년 9월 4일 부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노태

우정권이 5공청산과 민주화에 대한 야 3당 총재의 합의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통일민주당은 중대결단을 내릴 것”이며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를 거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정기국회에서 5공화국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 제 6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직무수행상의 모든 법률 위반을 들어 탄핵소추 발의를 준비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통일민주당은 10월 10일 당직자회의를 통해 5공화국 청산 이행을 위하여 이 문제를 국회 예산심의회와 연계한다는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이어 10월 12일에는 김영삼 총재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5공화국 청산 이행을 거듭 촉구하였다. 또한 10월 19일 열린 야 3당 총재회담에서는 “5공청산과 민주화가 올해 안에 실현되지 않으면 노태우정권 퇴진운동에 공동 투쟁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후 여야 영수는 12월 15일 회담을 통하여 5공화국 청산을 최종합의하였다.

3. 신민주공화당

가. 1988년도

1) 노점상 강제철거 피해보상대책 요구

신민주공화당은 1988년 6월 16일 김문원 대변인을 통하여 정부 측의 노점상 강제철거 조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은 성명에서 “시민생활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하루벌이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적절한 사후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올림픽을 이유로 강제철거만을 자행한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 낳은 공권력 남용이며, 이는 영세민의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였다. 김문원 대변인은 또 노점상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다.

2) 남북국회회담과 8·15 남북학생회담 대책 수립

신민주공화당은 1988년 8월 10일 당직자회의를 개최하고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당론을 정리하였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불가침선언, 올림픽 개최 문제 등 중요 사안을 다루기 위한 회담 형태로서의 대규모 연석회의는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결국 신민주공화당은 남북국회회담은 ‘대표회담’으로 한다는 당론을 결정하는 한편 다른 정당들과 의견을 조정하여 대북 회신문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당직자회의에서는 남북국회회담과 더불어 남북학생회담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도 정리하였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조건부이지만 회담제의를 국토종단 및 체육대회에 국한하기로 일단 후퇴한 데 대해 ‘그 의도가 순수한 것인지, 우선적인 회담의 성사를 위한 우회전술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잘못 전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감안하여 정부와 학생들이 일정을 조정하여 ‘8·15 이후에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3)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금융실명제 조기실시 촉구

신민주공화당은 1988년 8월 15일 금융자산 실명제와 종합토지세의 조기실시를 촉구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은 투기억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금융자산 실명제라고 지적하고, “전 은행구좌의 3.2%에 해당하는 극소수 특권층 및 불로소득자의 탈세·투기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였다. 이와 함께 신민주공화당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방법으로 서민용 아파트 건립에 대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수용, 채권입찰제 폐지, 토지종합과세를 제안하였다.

4)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지구당 조직 정비

신민주공화당은 88서울올림픽 이후 정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올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당 체질을 대폭강화하기 위해 1988년 9월 대대적인 지구당 조직정비 작업을 단행하였다. 이를 위해 신민주공화당은 8월 31일 15인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수석부총재)를 구성하고 첫 회의에서 ‘조직정비 기준’을 마련하였다. 마련된 정비기준에 의해 1988년 4월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권역별 평균득표를 미만 득표자, 선거구 유효표의 10% 미만 득표자, 대통령선거 때보다 적게 득표한 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구당이 우선적인 정비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이후 신민주공화당은 9월 들어 중앙당 심사팀을 파견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교체 및 신규조직책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84개 창당지구당 가운데 95개 지구당과 미공천 지구당 3개를 합쳐 모두 98개 지구당위원장을 교체하였다.

5) 정치자금 기탁 논의를 위한 당직자회의 개최

신민주공화당은 1988년 10월 27일 당직자회의를 열고 김용환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자금 기탁’에 관해 의견을 밝힌 구자경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의 발언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 김종필 총재는 “지금까지 기업인들은 야당 부근에 얼씬하기만 해도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은 여당에 집중적으로 흘러들어 갔다”라고 지적하고, 특히 “여당만 먹는” 후원회 제도를 비판하였다.

당직자들은 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이 특정정당을 지칭하며 “뜻에 맞는 정당에만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소식과 관련하여 “정당과 정치인들이 자신의 소신을 펴게 지원해 주어야지, 정치자금 기탁에 ‘이해의 끈’을 닿게 하면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창당 1주년 기념 행사 개최

신민주공화당은 1988년 10월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당 1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당의 재기를 자축하였다. 500여 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김종필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의 어려움을 회고한 뒤 “우리들을 사뭇 갈기갈기 찢기만 했던 사람들조차 오늘날의 민주화 단계를 있게 한 굳건한 토양을 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간접으로나마 시인한 것은 여러분들이 굳게 서 있기 때문이다”라며 노고를 치하하였다. 김종필 총재는 이어 “이제 나라가 참다운 민주화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복지국가를 이루어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두서너 단계가 더 있다. (……) 우리가 모자란 것은 반성하고 더욱 분발하자”라고 당부하였다.

나. 1989년도

1) 김종필 총재의 미국 방문과 정당외교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는 1989년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미국상원 외교위원회 초청으로 2주일간 미국을 방문하였다. 김종필 총재는 정당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미국 방문 기간에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과 한국 정국현황 및 북방외교, 통일문제, 무역마찰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2월 1일 뉴욕을 거쳐 워싱턴에 도착한 김종필 총재는 미국상원 외교분과위원회의 클레이본 펠 위원장, 앨런 크랜스틴 동아시아태평양 분과위원장 및 리사 머코스키 의원 등 중진들과 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북방정책 및 한반도 주변상황, 한국 내의 정치발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종필 총재의 방미에는 김용환 정책위의장, 김동근 총재비서실장, 신윤부 특별보좌역, 이기주 전 에콰도르대사 등이 수행을 위해 동참하였다.

2) 중간평가 연기 합의

신민주공화당은 1989년 초에 여당과 마찬가지로 최대 정치 현안인 중간평가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임기가 보장된 국민직선의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당 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2년 정도 지난 뒤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는 3월 7일 노태우 대통령과의 청와대 단독회담을 통해 “중간평가 실시 문제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정국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라고 중간평가 연기에 합의하였다.

3) 공안정국 규탄 장외투쟁 반대

1988년 6월의 문익환 목사 밀입북 사건과 서경원 의원의 1988년 밀입북 사실 폭로 사건으로 공안정국이 조성되자 이와 관련하여 신민주공화당은 평화민주당과 대치되는 입장을 보였다. 신민주공화당은 1988년 7월 29일 평화민주당이 김대중 총재에 대한 법원의 구인장 발부 등에 항의하면서 8월 초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려 하자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피력하였다.

김종필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대중 총재가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하였다면 구인 등의 사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법대로 처리될 사안을 정쟁거리로 삼아 장외투쟁을 벌이려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라며 신민주공화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또 서경원 의원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정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타협이 거론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였다.

4) 승용차 도심 통행료 징수 반대 논평

신민주공화당의 김문원 대변인은 1989년 9월 2일 정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자가용 승용차 도심통행료 징수방침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은 성명에서 “대중교통 연계수단 및 외곽지대 주차장 시설 등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무리한 탁상공론”이라며 정부 측에 방침철회를 촉구하였다. 김문원 대변인은 또 “교통난 해결은 세금중과나 통행료 징수 등 행정편의적 발상보다는 도로율, 주차장 확대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에서 모색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하였다.

5)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 등 입법화 추진

신민주공화당은 1989년 10월 23일 1980년 삼청교육 피해자 및 80년대 해직예비군 중 대장의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민주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마련하였다. 삼청교육 피해자 보상 특별조치법은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삼청교육과 관련한 사망자에게는 교육당시의 월급액에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액수 및 장례비를 보상하고 부상자에게는 치료경비와 치료 중 및 완치 후의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른 손실액을 산출해 보상토록 규정하였다. 해직예비군 중 대장 보상법은 1980년 6월말부터 1982년 3월말 사이에 해직된 사람에게 1988년 말까지 봉급액의 60%를 보상하도록 정하였다.

한편, 신민주공화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폐지를 주장해 온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자문위원 수를 현행 7,000명 이상에서 2,000명 이내로 축소하고, 대통령이 겸직하던 자문회의 의장을 자문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4. 평화민주당(1991. 4. 15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 변경)

가. 1988년도

1) 양심수 석방 촉구 활동

1988년 5월 15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던 중 ‘양심수 석방’을 외치며 조성만 군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야 3당은 양심수 전원 석방 등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일제히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가하였고, 양심수 등 구속자 석방문제가 주요 정치쟁점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부상한 이후 5월 전당대회를 통해 김대중 총재 단일지도체제를 재출범시킨

평화민주당은 5월 들어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평화민주당은 5월 11일 박영숙 부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6명의 ‘구속자석방 촉구단’을 구성하였다. 구속자석방 촉구단은 이현재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양심수 석방 문제는 단순한 법률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정부 구속자 중 스스로 공산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사람을 제외한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라고 촉구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김근태·장기표·이태복 등 주요 시국사범 관련자 및 장기수 석방, 사회안전법에 의해 장기 구금되어 있는 자에 대한 석방, 미결구금자에 대한 공소취소 등 과감한 석방조치를 요구하였다.

당 인권위원회에서는 석방대상자 553명의 명단을 확인하여 작성하였다. 평화민주당은 5월 18일 야 3당 총무들이 함께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이 명단을 전달하였다. 평화민주당은 확인된 명단 이외에도 미확인된 구속자가 4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5월 20일에는 서울 여의도 백인회관에서 100여 명의 양심수 가족과 김대중 총재를 비롯한 5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양심수 전원석방, 수배해제, 사면복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선별석방이 아닌 전면석방과 사면복권 및 수배해제를 촉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5월 28일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노태우 대통령 초청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김대중 총재는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였다.

2)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착수

광주 등 호남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던 평화민주당은 제13대 국회 개원 전부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평화민주당은 제13대 국회 개원 직전인 1988년 5월 12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개원국회에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등 5공청산 문제를 다룬다는 당론을 확정하였다. 같은 날 김대중 총재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13대 국회가 개원하면 “광주의거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를 본격

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확신을 전제로 하여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강조하는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리문제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실상을 명백히 밝힐 것임을 주장하였다.

국회개원 이후 평화민주당은 국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당내에 별도로 ‘광주의거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총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5월 12일 특별조사반(반장 조순승 의원), 현장조사반(반장 서경원 의원), 기획조사반(반장 허경만 의원) 등 3개 반으로 편성하고 관련자료와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기초조사 작업에 착수하였다.

기초조사의 주안점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원인규명과 진압 이후 진상의 왜곡조작 경위, 미국과 일본의 역할, 피해자들에 대한 대우 등이었다. 조사반은 이와 관련된 자료와 증거의 수집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제보를 취합하는 한편 조사 대상기관에 대해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3) 남북문제 관련 활동

평화민주당은 1988년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서 그동안 경직되어 있던 남북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평화민주당은 1988년 5월 20일 열린 평화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총재연설을 통해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와 북한의 실질적인 참여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평화민주당의 논리는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해야 올림픽의 안전 개최가 보장되며, 남북 간의 긴장고조 완화뿐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개방에도 이점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의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주장은 올림픽 공동개최라는 한정된 목적을 가진 것이긴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정계에는쟁을 불러일으켰다. 민주정의당과 신민주공화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제안 발언에 대한 반박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통일민주당도 공식논평을 내

지는 않았지만 대변인을 통하여 반대 입장을 표시하였다.

6월로 들어서서는 '6·10 남북학생회담' 이 정치권의 대북 관련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초기에 평화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6월 4일에는 무려 6시간 동안 내부 논의를 거쳤으면서도 “정부와 협의해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 바란다”라는 내부 성명만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평화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학생들과 재야 측은 불만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김대중 총재는 6월 6일 총재단회의에서 성명내용 중 ‘자제 촉구’의 뜻이 강하게 비친 것은 평화민주당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남북학생회담 자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의하는 등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 평화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이었다.

한편 남북통일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평화민주당은 6월 3일 총재단회의를 통해 통일문제는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여야 4당의 중진급이 참여하는 국회 내 ‘통일문제특위’ 구성을 제의하였다. 또 당내에 박영숙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문제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오다 중단된 남북국회회담이 7월 들어 다시 준비접촉을 재개하자⁴⁰⁾ 평화민주당은 8월 10일 당무지도위원 합동회의를 통해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남북국회회담 형식을 남북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석회담’으로 하자는 당론을 결정하였다. 이상수 대변인은 회의 후 “평화민주당은 회담의 성격을 국회의원 중 대표를 뽑아 일부만 참석하는 ‘국회 대표회담’으로 하지 않고 이름 그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국회회담 또는 연석회담으로 하기로 하였다”라며 당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김대중 총재도 “지난 4당 총재단 회담에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기로 하였으므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며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40) 남북국회회담은 1985년 4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제의로 첫 예비접촉을 진행해 오다 북한 측의 무기 연기 요청으로 열리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88년 7월 9일 대한민국 국회의 ‘서울올림픽대회에의 북한참가촉구결의문’ 채택과 이에 대한 북한의 ‘남북국회 연석회의’ 제의로 다시 준비접촉이 재개되었다.

4) 5공화국 비리 및 부정조사 착수

평화민주당은 제13대 국회 개원 전부터 5공청산과 관련해 비리 및 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당론을 정하였다. 특히 5공비리와 관련하여 제5공화국 당시 정보기관들의 정치공작, 인사개입, 행정·사법 종합 조정과 제5공화국 초창기의 ‘제도권 정당’ 창당과정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평화민주당은 손주향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씨 일가 등 제5공화국 비리조사특위’를 통해 자체적으로 5공비리 조사에 착수하였다.

5공화국 비리조사특위는 1988년 6월 13일 총재단의 재가를 통해 조사내용을 4개 부문 총 55개항으로 결정하였다. 조사내용이 확정되자 손주향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혐의사실이 조사될 때까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와 친척 및 관계자들의 국내거주를 계속 확인하고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도 출국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세종재단(구 일해재단) 비리와 관련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심문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5공청산과 관련한 또 다른 핵심쟁점 중 많은 논란을 야기한 ‘삼청교육대’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전국 25개 군부대에서 실시된 삼청교육대에 5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갔으며, 이들에 대한 인간 이하의 대우와 폭력행위로 인하여 상당수가 사망·부상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삼청교육대의 폭력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삼청교육을 시행한 책임자의 명단공개, 명예회복 등을 촉구하였다. 특히 삼청교육 수료자 명부, 교육 중 살해된 사람과 불구자가 된 사람들의 명단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던 10월 들어서 평화민주당은 삼청교육대 수용자 사망 사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10월 1일 당직자 간담회에서는 ‘삼청교육대 사망자 및 피해신고센터’ 설치를 결정하였다. 10월 3일에도 당무지도위원 합동회의를 열어 삼청교육대 사건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결의하였으며, 그 결과 당내에는 중앙당 차원의 조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지구당 차원의 피해자

신고센터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평화민주당은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삼청교육대 수용생 피해신고를 받고, 10월 12일 총 77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방부가 발표한 사망자 50명 외에 3명의 사망자와 실종자 4명이 추가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5) 노사문제특위 구성과 노사분규 중재활동

1988년 초반 노사 간에 갈등과 분규가 이어지면서 평화민주당에는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 대한 고발과 조정 요청, 민원 등이 많이 접수되었다. 이에 평화민주당은 노사분규 중재와 해결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88년 5월 16일에는 삼성 제약 노사분규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임금 10% 인상 등 3개항에 합의하도록 중재하였다. 5월 10일부터 평화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두산유리(주) 영남공장 근로자들도 5월 18일 11개항에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이처럼 노사분규가 심각해지자 평화민주당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6월 14일 ‘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노사분규 해결 노력에 나섰다. 노사문제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경기권, 호남권, 영남권, 충북·강원권 등 4개 활동반을 구성하여 상설기구로 운영되었다. 특위 구성과 함께 평화민주당은 성명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탄압과 방관은 6·29 선언과도 정면 배치되는 반사회적 폭거”라고 규탄하고 반민주적 노동악법 철폐, 구시대적 폭력 중단, 구속 노동자의 석방과 원직복직 등을 촉구하였다.

6) 필리핀 방문을 통한 야당 외교

김대중 총재는 필리핀의 ‘니노이 아키노 피살 추모회’ 초청으로 1988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야당외교를 수행하였다. 필리핀 방문에는 김대중 총재 내외 이외에 박영숙 부총재, 김원기 원내총무, 정대철 국회 문공위원장, 이상수 대변인, 권노갑 총재특보 등이 동행하였다.

평화민주당 노사분규 진상조사 파견 현황

일자	조사내용
6. 11	리비아 귀국 노동자 구속사태 진상조사단 파견, 충남 연기 국제정밀 부당해고사건 진상조사단 파견, 광주레미콘 노사분규 조사단 파견, 서울지하철노조 노동쟁의 조사
6. 16	대한광학 노동쟁의 조사단 파견, 서울지하철 노동쟁의 조사단 파견
6. 22	인천택시, 미미양행, 보양산업 노사분규 조사단 파견, 서울여객, 수색여객, 범양여객 노사분규 조사단 파견, 삼성조선 농성현장 조사, 웨스트팩은행 농성현장 조사
6. 27	경기 동두천 태원교통 부당해고사건 현지조사
6. 28	포항제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포항지구당사 농성에 대한 구사대폭력사건 조사단 파견, 대한마이크로 노동쟁의 조사

※ 출처 : 평화민주당보, 제18호(1988년 7월 4일자) 4면.

8월 19일 필리핀에 도착한 평화민주당 방문단은 “민주화의 공동목표에 도달함에 있어 여러분과 더불어 돈독한 우정과 협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김대중 총재의 도착성명을 발표하였다. 도착 후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대중 총재는 자유민주훈장을 수여받고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이 자리를 통해 김대중 총재는 “한국과 필리핀의 민주세력이 함께 뭉치는 아시아 민주정당회의를 열도록 하자”라며 ‘아시아 민주정당 연합’ 결성을 제의하였다. 아키노 대통령은 이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한국 무역역조 시정에 대한 김대중 총재의 특별지원을 요청하였다.

김대중 총재는 8월 20일 국립 필리핀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고, 이어 하이메 신 추기경을 방문하여 필리핀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추기경의 한국방문을 초청하였다. 또한 니노이 아키노 추모 ‘필리핀 청년상’ 수상식에 초청연사로 참석하여 니노이 아키노 전 상원의원의 비극적인 사망에 애도를 표하는 한편 아시아 민주세력의 단합을 촉구하였다. 8월 22일에는 필리핀 상·하원 의장을 각각 예방하고 하원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회의 광경을 참관하는 등의 일정을 보냈다. 8월 22일에는 미트라 하원의장, 라모스 국방장관, 위코 농지개혁장관 등 필리핀 인사 100여명을 만찬에 초청하였다. 만찬장 앞에서 수명의 괴한들과 현장 경호원들 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만찬이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8월 23일 귀국한 김대중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아 민주정당 간의 민주연합을 구성키로 합의하고 필리핀의 미니 마셜계획 참여 등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키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방문결과를 전하였다.

7) 중앙정치연수원 평민대학 개설

평화민주당은 당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해 중앙정치연수원 주관으로 ‘평민대학’을 개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8월 말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평화민주당은 평민대학 설립의 목적이 당직자와 당원을 전문요원으로 정예화하고 당 조직의 확대강화, 당 활동의 효율 극대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수권정당으로의 정립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평민대학은 1988년 9월 12일 양평 KBS 종합수련관에서 당원과 당직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상설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11월 12일까지 총 7차에 걸쳐 개강된 평민대학은 중앙당 당직자와 지구당 핵심요원 800여 명이 연수에 참가하였다. 연수는 강좌 8회와 총재특강, 당무·의정보고, 영화감상, 대동놀이 등으로 이루어졌다.

평민대학 개설 이후 한국 정당사상 초유의 당원교육기관을 개설한 것임을 강조했다. 평화민주당은 7기 연수를 마친 후 평민대학을 통해 수권정당 체제 정비와 일선당원 이론무장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또 평민대학이 한국정당사의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자평하였다.

8) 언론탄압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1988년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야당의 대표연설 과정에서 1980년대 언론통폐합 문제가 집중 추궁되면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평화민주당은 1988년 10월 27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언론통폐합 등 제5공화국 시대 언론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제5공화국 언론탄압에 대한 집중토론을 통해 언론통폐합 외에 1980년 당시 해직언론인 문제, 보도지침 등 언론인 탄압 문제, 172종에 달하였던 잡지 폐간 등 출판 탄압 문제에 이르기까지 4가지 모두를 ‘중대한 언론탄압’

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평화민주당은 박영숙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1980년 언론탄압 진상조사 및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1차적인 자료 수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평화민주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자료수집 결과를 문화공보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였다.

나. 1989년도

1) 정국 현안에 대한 정책세미나 개최

평화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면서 1989년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9년 1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남한강 종합수련원에서 실시된 정책세미나에서 평화민주당은 1989년 주요 정국 현안이 될 5공화국 청산, 노태우 대통령 중간평가, 지방자치제 실시, 남북문제의 북방정책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정치와 평화민주당’을 주제로 한 김대중 총재의 특강으로 시작된 정책세미나는 정치민주화와 지방자치제, 1989년 한국정치 전망과 민주화 정착의 과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북방정책 전망, 남북대화 전망과 통일추진정책의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들의 발표와 그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평화민주당은 정책세미나를 통해 정강정책에 명기된 온건개혁주의 노선을 재확인하였고, 보수와 혁신의 이분법적 시각에 대한 반발과 우려를 일관되게 표출하였다. 특히 김대중 총재는 특강을 통해 보·혁대결 개념이 갖는 민주화에서의 함정을 지적하며 모든 역량을 민주화에 총집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광식 교수도 보·혁대결 개념이 민주세력과 반민주세력의 대립을 오도하려는 의도적인 허구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민주세력이 단결해 민주대연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민생치안 특별위원회 구성

평화민주당은 1989년 1월 23일 총재단회의를 통해 민생치안 확보에 대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박영숙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문제 전담 ‘민생치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김대중 총재가 직접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평화민주당은 “정치, 경제, 북방외교보다 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이 짓밟히는 현실을 한시라도 유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반윤리사범에 대한 형량강화 등 관계 법규 개정을 촉구하였다. 또 하루빨리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 특정 계층만을 위해 봉사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한다는 불신을 씻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생치안대책특별위원회는 산하에 범사, 내무, 보사, 기획 등 4개 소위원회를 두어 민생전반에 관한 대책마련과 국회 및 타 정당과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는 1월 24일 야 3당 총재회담에서도 합의된 사항이었다. 특히 특별위원회 산하 기획위원회는 2월 2일 전국 지구당위원장 내외와 부녀부장들이 참석하는 ‘인신매매 및 성폭행 근절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 지구당이 지역 여성유권자와 공동으로 지역 윤락가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강제매춘피해자 자율귀가 조치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한편 민생치안대책특별위원회는 1월 23일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특별법 제정과 함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치안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강제매춘 피해자를 3월까지 자진 귀가시킨다면 업주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총리의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또 1월 24일에는 박영숙 위원장이 대구를 방문하여 여성단체 간부들과 대구 대연1동 경찰 성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민생치안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남 고흥군 호두면 참도에서 발생한 경찰 성폭행에 의한 부녀자 자살사건을 접수하고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착수하였다.

3) 김대중 총재 유럽 5개국 순방과 조선일보 왜곡보도 규탄

평화민주당은 1989년 1월 말 한국 민주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와

정당 의회지도자들과의 유대강화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김대중 총재의 유럽순방을 추진하였다. 순방은 1989년 1월 31일부터 2월 16일까지 17일간 스웨덴, 이탈리아, 바티칸, 네덜란드, 헝가리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헝가리 방문은 한국 정당 지도자로서는 처음이었다. 유럽순방에는 이용희 당무지도위원장, 허경만 부총재, 서경원 의원 등이 수행하였다. 김대중 총재는 순방 과정에서 잉바르 칼손 스웨덴 총리, 로마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각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협력증진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순방 이후 의도와는 달리 「주간조선」의 순방 관련 왜곡보도 시비에 휘말렸다. 『주간조선』은 제1039호를 통해 김대중 총재 일행의 유럽순방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수행원들의 행동에 대하여 “좌파에도 우파에도 손짓, 수행의원들 추태 만발”이라는 비판적 내용을 실었고, 이에 평화민주당은 허위·왜곡 보도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하였다. 평화민주당은 3월 4일 총재단회의를 통해 구성된 9인의 ‘조선일보대책특위’를 다음날 15인 특위로 확대하는 한편 실무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 조선일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후 특별위원회는 조선일보 불매운동, 해당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조선일보의 즉각적인 공개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언론자유 침해를 거론하며 반발하였고, 결국 평화민주당은 조선일보 측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고발당한 조선일보 측이 이에 대해 맞고소하면서 파문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후 평화민주당은 조선일보에 대해 전면적인 규탄에 나섰다. 당내 『평민신문』을 통하여 ‘독재의 나팔수-조선일보’ 등 자극적인 내용을 게재하며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한편 3월 9일자 「평민신문」 29호에는 「주간조선」의 기사내용을 사실과 비교하며 조모조목 비판하고 허위·왜곡보도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평화민주당과 조선일보 측의 고소·고발 파문은 8개월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었으며, 결국 10월 17일 평화민주당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서야 일단락되었다. 평화민주당은 고소취하와 관련하여 “배상보다 조선일보의 평화민주당에 대한 편파보도에 대한 항의와 주의 환기에

목적이 있었고,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4) 서울시 지부장 경선 부활

1989년 4월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평화민주당 서울시지부 결성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성대회의 백미는 서울시 지부장 선출이었다. 평화민주당 서울시 지부장은 유신 이래 18년 만에 정당사상 처음으로 자유경선을 통하여 선출되었다.

시지부위원장선거에는 조운형·조세형·임춘원 등 세 후보가 출마하였고, 재적 대의원 320명 중 316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결과 1차 투표에서 조운형 후보가 과반수인 174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대결을 벌인 조세형 후보와 임춘원 후보는 각각 86표, 56표를 얻는 데 그쳤다. 조운형 의원은 당선 인사를 통해 “다가 올 서울시장선거와 시의회의원선거에서의 승리를 쟁취해 군사독재정권이 29년간 자의적으로 휘둘러 온 서울시 행정과 예산집행을 바로잡겠다”라는 소감을 전하였다.

한편 서울시지부 결성대회 이후 평화민주당은 특히 ‘자유경선’에 의한 지부장 선출을 강조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재개되었음을 부각시켰다. 김대중 총재도 이날 경선치사를 통하여 경선의 의미를 부각하며 “유신 이래 처음으로 어떤 당보다 앞서 시지부 위원장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경선하는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며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5) 중간평가 연기 합의

1989년 3월 정가의 가장 큰 핵심 쟁점은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한 중간평가의 실시문제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평화민주당은 1989년 초 김대중 총재의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중간평가가 노태우 대통령의 약속대로 국민신임투표여야 함을 지적하고,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신임투표여야 한다는 평화민주당의 입장은 3월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실시 시기와 관련하

여서는 5공청산 및 민주화실천 등 국민이 평가할 만한 실적이 이루어진 후에 실시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평민신문」 제29호(1989년 3월 9일자)를 통해 민주화 이후 중간평가 실시라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거부할 경우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3월 10일 김대중 총재와 노태우 대통령의 단독회담을 계기로 변화하였다. 청와대 회동에서 두 사람은 중간평가가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경우 여야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중간평가 연기에 합의하였다. 회동 후 3월 15일 「평민신문」을 통해 전해진 김대중 총재의 회견문 기사 제목은 ‘정책평가가 최악을 막는 길’이었으며, 내용은 ‘때론 후퇴할 줄 아는 게 큰 정치’라는 것이었다. 이는 파국을 막는 차선책이 노태우 대통령의 신임을 연계시키지 않는 정책평가라는 평화민주당 측의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6)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과 공안정국에 대한 대응

평화민주당은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형성된 공안정국으로 1989년 3월 이후 상당한 곤경에 처하였다. 김대중 총재는 문익환 목사가 방북하기 전 3월 12일 만남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고 갈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5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 측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공안정국에 휘말린 평화민주당은 평화민주당 소속 서경원 의원이 1988년 8월 밀입북한 사실이 1989년 6월에 밝혀지면서 더욱 곤경에 처하였다. 이 사건으로 서경원 의원은 6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되었고, 평화민주당은 장기간에 걸친 공안정국에 휘말리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소속 의원이 밀입북으로 인해 구속되자 평화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속히 대응하여 사건이 확대·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평화민주당은 서경원 의원 구속 다음날 즉각적으로 총재성명을 통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서경원 의원의 출당을 결정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서경원 의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지고 문동환 부총재와 김원기 원내총무가 사표를 제출하자 이 또한 즉각적으로 수리하였다.

김대중 총재의 대국민 사과문

우리당은 서 의원의 경솔하고 국민 여망에 배치된 행동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서 의원을 뽑아준 함평·영광의 선거구민과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심정을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다. 지난 22일 본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김원기 총무가 들은 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하고 24일 서 의원을 김 총무와 동행해 수사당국에 자진 출두케 하였다. 서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였지만 중대한 잘못을 한 만큼 엄중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에 맡긴 의원직 사퇴서도 법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화민주당 이길재 대외협력위원장이 사전인지 혐의로 구속되었고, 평민련간첩단 사건설과 평화민주당 의원 추가 입북설, 김대중 총재의 대북 친서설 등 잇따른 악재가 언론을 통해 연이어 쏟아져 나왔다. 또한 평화민주당 이철용 의원에 대해서도 사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강제연행이 시도되었다.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평화민주당은 서경원 의원이 김원기 원내총무에게 방북 사실을 털어놓아 국가안전기획부에 즉시 신고하고 자진 출두하도록 협조하였음에도 당국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공안당국이 서경원 의원에 대한 공천과정 등을 조사하겠다는 김대중 총재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대북친서 전달설 등이 터져 나오자 “평화민주당을 와해시키고 5공청산을 회피하기 위한 파렴치한 조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의 파면 등을 요구하였다. 7월 25일에는 평화민주당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사무처 요원들이 중앙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국가안전기획부는 김대중 총재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였고, 결국 김대중 총재는 8월 2일 문동환 의원과 함께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서경원 의원의 공천경위와 밀입북 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대북친서 전달설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평화민주당은 장외집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8월 8일에는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고 김대중 총재의 혐의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는 한편 ‘5공청산과 중간평가’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8월 9일에는 공안통치 저지

중앙투쟁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정부 측에 5공화국 청산의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8월 12일 서울지방검찰청이 서경원 의원의 밀입북 사실을 알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 원내총무를 불고지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출석을 요구하자 평화민주당은 반박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였다. 평화민주당은 반박성명을 통해 김대중 총재의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검찰수사 내용이 평화민주당을 파괴하고 영등포구를 재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계략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총재는 8월 22일에도 김원기 총무와 함께 검찰청에 출두하여 서경원 의원으로부터 북한 공작금 중 1만 달러를 수령하였는지와 방북 사실을 알았는지를 또다시 조사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조사 후 혐의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완전 입증하였다는 김대중 총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대중 총재, 김원기 원내총무, 이철용 의원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에 평화민주당은 9월 23일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과 김대중 총재의 불구속 기소를 둘러싸고 변호인 접견 불가, 피의사실 유포 등 검찰의 인권유린 행위에 책임을 물어 김기춘 검찰총장과 사건을 담당한 안강민 서울지검 공안부장, 이상순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기로 결의하였다.

7)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1989년 하반기 극심한 물가폭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평화민주당은 1989년 7월 19일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정책 토론회’를 갖고 각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300여 명의 당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한국적인 인플레이의 원인과 그 대응방안’ ‘물가문제와 그 대책’ 등 2개 주제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양대 선거를 통한 각종 공약 남발,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대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과소비풍조 만연 등 구조적인 문제가

물가폭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김봉호 정책위의장은 물가안정 기조 구축을 위해 우선 잠정시한 조치로 각계 대표들을 망라하여 ‘범국민 물가안정대책협의회’를 초당적으로 구성하여 당면 경제 현안을 협의·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고 통화 환수를 위해 재벌기업 여신관리를 강화하며 정치성 보조금·출연금과 세계잉여금을 민생과 고용 촉진을 위해 중점 집행하도록 추진한다는 평화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당면 문제인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및 부동산 특별세무대책을 세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8) 전교조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청문회 추진 결정

1989년 7월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성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여기에 참가한 교사들이 대규모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관련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결정되었고, 그 결과 이에 항의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단식수업과 철야농성이 이어졌다. 또 1988년 국회 문화공보위원회 국정감사자료 유출과 관련하여 전교조 지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평화민주당은 7월 18일 당무지도회의를 열고 이러한 일련의 전교조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당내의 교원노조실태 조사위원회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은 당무지도회의는 정부와 전교조 양측이 물리적 대결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국회 문화공보위원회 차원에서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 후 평화민주당은 전교조를 인정하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당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또 정부가 전교조와 기존의 대한교육연합회(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명칭 변경)을 양립시켜 교육계 집회와 민주화에 경쟁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KAL기 사고 관련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1989년 11월 25일 김포공항에서 강릉으로 가는 대한항공(KAL)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평화민주당은 11월 27일 총재단회의를 열고 추락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 평화민주당은 감독책임을 물어 김창근 교통부 장관의 인책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항공기 안전운항 실태조사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여권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김태식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이 세계 10대 항공사 중 가장 높은 사고율을 보이는 것은 각종 경영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국민의 불안심리와 국제적으로 실추된 우리나라 항공기 산업의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관련 국정조사권은 발동되지 못하였다.

다. 1990년도

1) 3당합당 규탄과 대여투쟁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3당이 합당을 선언함으로써 일거에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평화민주당은 1990년 상반기동안 3당합당 규탄과 대여투쟁에 당력을 집중하였다. 3당합당에 대한 평화민주당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평화민주당은 1월 『평민신문』을 통하여 인위적 여대야소 획책은 쿠데타적 도전임을 경고하고 국민이 정한 여소야대를 변형할 때는 필연적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당합당이 선언되자 평화민주당은 2월 4일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지부 결성대회와 2월 17일 성남에서의 시국강연회를 통해 즉각적으로 합당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3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시국강연을 통해 김대중 총재는 “1노 2김은 악법개폐를 완전히 포기하고 사회정의 및 공정분배에 어긋나는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정책에 합의, 3당통합의 반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주장하며 3당합당 저지투쟁 방침을 밝혔다. 또 저지투쟁 방법으로

대국민홍보, 의원직 총사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결의안 국회 제출, 통합 지지 1,000만 명 서명운동 등 평화적 국민투쟁 전개, 지방선거에서의 국민심판을 통한 지지 등 4단계 투쟁방향도 제시하였다. 더불어 평화민주당이 지역 정당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수권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평화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2월 19일에는 총재단회의를 통해 임시국회 개회 후 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의원직 총사퇴 및 내각 총사퇴 결의안을 제출기로 결정하였고, 3월 9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안을 채택하여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4월 말로 접어들면서 평화민주당은 본격적인 대여 장외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3월 31일 '3당통합 지지 1천만 서명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장외투쟁에서 평화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에 의한 제13대 국회 해산과 조기 국회의원선거 실시, 1989년 여야 4당이 합의한 지방의회선거의 1990년 상반기 실시, 민생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였다. 이후 4월 1일과 21일에는 부천과 대전에서 국정보고대회를 겸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국 지구당별로 옥내·외 집회를 통해 1,000만 서명운동과 병행하여 3당합당 반대 대국민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4월 3일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이 고전 및 참패하자 평화민주당은 이러한 결과를 '3당합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국회 해산과 조기 국회의원선거 실시 촉구 등 기존의 대여 공세를 강화하였다.

이후에도 평화민주당은 3당합당을 통한 인위적인 여소야대 해체에 대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부당성을 제기하며 여당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5월 이후부터는 3당합당 규탄과 대여투쟁 외에도 거대여당에 대응하기 위한 야권통합 논의를 시작하면서, 통합을 위한 당내·외 조직구성 및 협상활동이 본격화되었다.

2) 금융실명제 실시 촉구

1991년 실시를 목표로 추진되어 오던 금융실명제 도입이 추진일정 지연 등 논란 속에서 1990년 3월 23일 정부와 민주자유당의 합의로 전면 유보되었다. 이에 평화민주당은

경제개혁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3월 23일에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금융실명제 어디로 가는가’ 라는 주제로 경제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에서 평화민주당 강금식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 유당의 경제정책 수정에 대한 평화민주당의 대책’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실명제 조기실시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부작용과 시기상조론, 금융정책 및 산업정책, 특히 세제의 정상화와 건전화 등을 두고 찬반토론이 전개되었다.

이후 4월 4일 정부가 금융실명제 전면실시 유보를 포함한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발표하자 평화민주당은 “금융실명제의 전면적인 실시 유보 등은 정권의 정경유착적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한편 경제정의 실현을 촉구하였다. 4월 20일에도 ‘정부의 4·4 경제종합대책의 배경과 문제점’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평화민주당은 금융실명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이후 금융실명제 실시 유보 논란은 9월 정기국회에까지 이어졌고, 평화민주당은 김대중 총재의 국회연설을 통해서도 금융실명제 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3) 부동산투기 억제 활동

1990년 4월 정부는 ‘4·4 경제활성화대책’ 발표 이후 첫 후속조치로 부동산등기의 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기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에 평화민주당은 5월 들어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5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부동산투기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재벌기업주 등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여당에 제의하였다.

이를 위해 평화민주당은 5월 14일 재벌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실상을 파악하고 토지투기의 근절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김봉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실태조사위원회’ 를 구성하고 15일부터 3개 반으로 나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부동산투기조사를 지속해 온 조사위원회는 8월

21일 영종도·용유도 등 신국제공항 및 국제해양종합관광단지 건설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한진·대우·두산 등 일부 재벌들이 개발계획을 사전에 입수해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였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편 8월 31일 정부가 ‘재벌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을 때도 부동산투기실태조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 후 정부의 보완방안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사위원회는 정부의 보완방안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벌기업들의 압력에 의해 대기업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이었다. 따라서 평화민주당은 조사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부의 보완방안을 적용할 경우 국세청이 조사를 통해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48개 여신관리 대상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7,296만 6,000평 중 78.3%에 해당하는 5,708만 5,000평이 처분공매에서 유찰되면 다시 장기보유가 가능해진다”라며 보완방안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 비업무용 판정기준 보완으로 5대 재벌들이 도심에 보유하고 있는 금싸라기 땅이 비업무용에서 제외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정부의 보완조치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 이면서도 업무용으로 위장된 부동산, 5대 재벌이 비업무용 판정을 면하기 위해 재심 청구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투기 감시기구를 구성하고 여야가 공동조사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의하였다.

4) 남북통일 및 북방외교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1989년 헝가리·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과의 국교수립으로 북방외교가 시작된 이후 1990년 6월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양국은 수교원칙에 합의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민족통일 및 북방외교정책 추진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평화민주당은 우선적으로 6월 11일 총재단회의를 통해 박종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족통일 및 북방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평화민주당은 북방정책의 목표로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남북 간의 개방·화해 및 민족통일로 연결시키는 민족자주’ 그리고 ‘북한 고립화 예방 조치’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일문제는 남북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북한의 고립화와 경직화 쪽으로 사태를 몰고 가지 않고, 정부와 협의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북방외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방정책은 어느 정파의 독점물이 될 수 없으며 전국민 앞에 민족 차원의 과제로서 공개되고 공론화되어야 하며, 그것이 국내정치에 악용될 경우 국민저항에 부닥쳐 실패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다.

평화민주당 민족통일및북방정책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첫 회의를 열고 소련의 대외무역 경직성,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미체결 등 한·소 경제교류의 장애요인 해소 없이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정부·기업 모두 양국 간의 경제교류에 신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7월 5일에는 ‘통일 및 북방정책의 전망’ 이라는 주제로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마련에 나섰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는 평화민주당 조순승 의원의 주제발표와 평화연구원 김남식 책임위원, 국제민간경제협의회 황인정 부회장, 숭실대 이삼열 교수, 국방연구원 지만원 전 책임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남북평화체제의 실현 방안과 준비축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평화민주당은 남북관계 정책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한반도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공화국 연방제’ 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조순승 의원의 발표를 통해 제시된 평화민주당의 3단계 평화통일안에서는 민족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자주·화해·민주화가 제시되었다. 또 오랫동안 대립관계에 있던 분단구조를 타파하고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공화국연방제의 과도기적 중간형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남북 공화국의 공존, 양 공화국 국민이 선출해 파견하는 대표로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구성, 유엔에 단일국호로 가입 또는 잠정적으로 남북 동시가입, 통일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연방의회 의결과 양 공화국에

건의 등의 단계를 거쳐 통일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북방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통일 여건 조성에 가치를 둔 우리의 북방정책과 북한의 대외정책의 필요성, 북방 경제교류와 관련한 외형적 정경분리와 실제적 경제 교류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평화체제 실현과 군축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통일방안 모색과 군축과 관련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정치적 결단 및 합의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5)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안의 입법화 반대

1990년 6월 14일 정부는 새 민간TV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관계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0년 만에 공·민영 혼합체제로 전환된 방송구조개편안을 둘러싸고 4개 방송노조와 PD연합이 ‘방송장악 저지 연대투쟁’을 선언하는 등 심각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민주당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발표한 방송관계법개정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방송관계법개정안에 대한 평화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정부와 여당이 방송 장악 음모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개정법률안의 입법화를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평화민주당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홍보하고, 국회에서 여당의 일방적인 의결을 막아내는 것에 집중하였다. 평화민주당은 6월 21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개편작업을 추진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는 한편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또 6월 25일 총재단회의를 열고 여론수렴 작업을 위해 정대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26일 당무지도합동회의와 방송대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방송관계법개정안 백지화를 요구하였다.

이어 7월 10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구조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하였다. 토론회에는 평화민주당의

박석무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대 추광영 교수, 건국대 유일상 교수, 교육개발원 김학천 부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이세용 협력국장 등이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제히 정부의 방송관계법개정안에 대한 비난에 나선 한편 방송구조개편안의 문제점을 질타하였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개정안이 철저한 비공개 속에 사회적 논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결정되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정권·정파적 이해가 우선되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도입하려는 민영 상업방송도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적 한계 때문에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저질·퇴폐 프로그램 양산을 가져 올 수밖에 없고, 질적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정치권력의 경제적 통제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6) 여당의 개정법률안 변칙 처리에 대한 저항

1990년 7월 14일 제1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자유당이 방송관계법개정안 등 26개 개정 법률안을 야당의 반대 속에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자 야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는 한편 조기 국회의원선거 실시를 촉구하며 반발하였다.

7월 14일 의원직 총사퇴를 결정한 평화민주당은 7월 21일 민주당과 재야의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 국민연합 등과 함께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민주자유당 규탄과 조기 국회의원선거 실시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군중집회를 개최하였다. ‘민주자유당 폭거규탄과 의원직 사퇴 선언 및 국회의원선거 촉구 결의대회’로 명명된 이 집회에서는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이기택 민주당 총재, 김관석 범민주통합수권정당추진회의 상임공동대표, 윤영규 국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연설자로 나섰다. 평화민주당 등 야권은 이 대회에서 조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제 동시 실시, 제150회 임시국회 처리 26개 안건의 무효화, 내각제 개헌의 거부, 범야권 수권정당 결성 노력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현 정권과의 타협을 거부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총재는 연설을 통하여 “지방자치제의 경우 1989년 5공청산 합의 때 약속된 사항을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한편 8월 10일 평화민주당 소속 의원 70명과 민주당 소속 의원 8명, 무소속 김현 의원 등 79명의 의원은 민주자유당이 변칙 의결한 26개 의안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의 청구 이유는 “속기사석과 의석에서 의장의 발언내용이 청취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진행이 이루어졌으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확인 없이 26개 의안이 가결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었다. 청구서에는 “이 같은 의안 처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청구인들의 질의·토론·표결권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는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행위”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이외에 당시 김재광 부의장에 대한 의장 직무대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 광주보상법과 부동산 등기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고유법안 심사를 거치지 않은 데다 본회의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도 없었던 점, 국군조직법·방송법·환경관계법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불법 처리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점 등 7개 항의 날치기 의안 처리를 위헌성의 근거로 적시하였다.

7) 우루과이라운드(UR) 반대운동

1990년 8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진행되면서 강대국들의 농산물 개방 압력이 증가하자 농산물가격 등 농어촌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평화민주당은 8월 28일 당무회의를 통해 여야 및 사회 각 단체를 망라하는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위기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면서 UR협상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평화민주당은 UR협정이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줄 것으로 판단하고 수입자유화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농업개도국으로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월 30일에는 마포 제2당사에서 UR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의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효과의

광범위성과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9월 19일에도 서울 홍사단 강당에서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업생산 기반의 조성을 위한 ‘농업보장(보전)세’ 신설과 ‘농수산물수출입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 외에도 평화민주당은 내각제 개헌과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문제로 국회 등원을 거부한 이후 장외집회와 국정보고대회를 통해 UR협상에 대한 정부 및 여당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평화민주당은 9월 20일 의정부와 23일 밀양을 시작으로 11월 18일 전주에 이르는 국정보고대회를 통해 UR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또 지구당별로 부당성을 호소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UR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장외투쟁을 통해 전개되던 UR반대운동은 11월 19일 평화민주당이 국회에 등원하여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원내 논쟁으로 이어졌다.

8)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관련 진상조사 촉구

10월 4일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윤석양 이병이 탈영 후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교수, 재야인사, 학생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보안사의 정치사찰과 동향파악 활동을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었다. 평화민주당은 폭로 다음날인 10월 5일 즉각적으로 이 사건의 진상조사와 관련 책임자 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화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군이 아직도 불법적으로 정치사찰을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사실에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난하고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밝혀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지금까지 사찰 내용의 전모를 공개하여 재발방지 등 군의 정치적 중립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 10월 6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보안사의 정치사찰과 관련하여 군 최고통수권자인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진상규명, 이상훈 국방부 장관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의 인책사퇴를 요구하였다. 한편 유신 이후 군사독재 강화를 위해

조직된 보안사를 해체하고 군 내부 본연의 임무만을 전담하는 3군 방첩대를 환원할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민정으로 위장한 군정의 종식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0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이상훈 국방부 장관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단순한 경질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보안사의 즉각적인 해체와 3군 방첩대 체제로의 제도적 개혁 단행을 거듭 촉구하였다. 또 10월 13일에는 민주당·민중당 등 다른 야당들과 재야단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종교단체와 함께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보안사 불법 정치사찰 규탄 및 군정청산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라. 1991년도

1) 걸프전 추가지원 결정에 대한 대응

1991년 1월 페르시아만에서 걸프전이 발발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월 30일 군수송기 5대와 2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지원 제공을 공식 발표하였다.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도 관련 동의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정부와 민주자유당이 군수송기 파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한 행위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행위라며 정부와 민주자유당을 비난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 나섰다.

평화민주당은 1월 3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국회 동의 없이 군 수송단 파건을 미국에 먼저 통보한 정부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집중 추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걸프전 파병에 대해서는 국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혀 파병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1월 31일에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가 군 수송단 파건과 관련하여 2월 1일 국무회의 의결 뒤 상임위원회에 정식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평화민

주당은 별다른 마찰 없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평화민주당은 2월 5일 당무회의에서 정부가 걸프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국적군에 보내기로 한 공군수송단은 실질적인 전투병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파견동의안에 대한 국회표결에서 군수송단 파견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확정하였다.

2) 수서택지 특혜분양 진상규명 활동

1991년 1월 서울 수서택지개발 예정지구를 특정 조합에 특혜 분양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은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평화민주당은 2월 초에 당내 조사단을 구성하고 수서 특혜분양 진상 확인에 착수하였다. 수서 특혜분양조사단은 2월 8일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수서사건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초기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청와대를 이 사건의 핵심으로 전제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진상조사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청와대가 소수의 청와대 인사와 관련 의원들에만 초점을 맞추자 평화민주당은 즉각적인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인 진상 확인작업을 진행하였다. 평화민주당은 2월 26일 당무회의를 통해 진상조사단을 조사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고, 조사대책위원회는 진상조사와 더불어 대책수립도 병행해 나갔다. 또 이러한 조사대책위원회 조사활동을 통해 나타난 의혹들을 계속 제기하며 이에 대한 검찰·정부·여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서특혜분양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월 13일 이 사건의 정점에 있던 한보그룹의 비자금 일부가 평화민주당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한보자금 당내 유입 논란이 확대되자 평화민주당은 2월 18일 국회에서 당무·당무지도의원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김대중 총재가 나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으로 유입된 한보자금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평화민주당의 한보자금 유입 논란은

이후 검찰조사 결과발표에서 해당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한다는 발표와 함께 일 단락되었다.

이후 평화민주당은 2월 21일 정부·민주자유당 고위당정회의에서 “청와대 관련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라는 회의 메모록을 입수·공개하며 또다시 청와대 개입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평화민주당은 이 메모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병조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이상의 청와대 고위층이 개입되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수석택지 개발 결정 문서에 민주자유당의 세 최고위원이 결재한 점을 들어 이 문건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을 개연성을 제기하였다.

평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계속된 의혹 제기와 진상규명 촉구에도 검찰은 3월 5일 구속된 평화민주당 이원배 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이규황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등 8명만을 서울형사지법에 기소하며 수사 착수 발표 27일 만에 수서비리사건을 종결하였다. 이에 평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재야단체들은 수서비리 규탄 옥외 집회 등을 개최하며 반발하였다. 특히 수서비리와 관련하여 청와대 개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평화민주당은 3월 9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수서비리 은폐 정권 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국민대회 연설자로 나선 김대중 총재는 수서비리의 청와대 개입, 정부의 은폐 의혹,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 등을 비난하면서 수서사건 전면 재조사, 국정조사권 발동,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이후 옥외집회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와 지방선거 정국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비리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대신 지방선거에서 수서비리 사건을 쟁점화 하였다.

3) 낙동강 폐놀오염 사건과 대여공세

1991년 3월 19일 낙동강 폐놀방류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구미 두산전자에서 조업 재개 5일 만인 4월 22일 또다시 폐놀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평화민주당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여당 및 정부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하였다. 낙동강 폐놀방류사건 발생

직후인 3월 23일 충남 온양에서 열린 당원 단합대회에 참석한 김대중 총재는 연설을 통해 전국 하천 오염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치를 지적하며 정권적 차원의 책임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노태우 대통령은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키는 동시에 환경 관계 법률을 개정하고 규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3월 25일 총재단회의에서는 낙동강 식수오염 사태를 논의한 끝에 노재봉 내각의 인책 총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내각이 사퇴하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에서 '노 내각 해임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같은 날 민주자유당과 총무회담을 열고 3월 28일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개최와 낙동강 등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사회위원회 내 소위원회 형태의 현지 조사단 구성에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여야조사단 활동과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양당은 대상 및 의제 설정 등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보였고, 결국 평화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조사단 활동에 불참하였다. 하지만 평화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4개 민간 환경단체와 함께 '낙동강 폐놀오염 합동조사단'을 조직하여 폐놀오염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에 주력하였다. 합동조사단은 3월 25일 두산전자를 방문하여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폐놀 원액의 재고관리가 허술해 누출을 제때 알지 못하였고 누출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 3월 16일 폐놀 원액 누출 사실을 발견하고도 3월 21일까지 관계당국에 알리지 않아 사태해결이 늦어졌음을 밝혀냈다. 3월 26일에는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김태욱 본부장을 통해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물금취수장이 폐놀 오염 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사고 3일 뒤인 3월 19일이며, 그것도 악취 사태의 진원지인 다사정수장이 아닌 내무부로부터의 연락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평화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 28일 낙동강의 폐놀오염 사태를 다룬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환경관리의 미비 등을 지적하는 한편 대구시장 구속과 노재봉내각 총사퇴 등 정치공세를 병행하였다.

4) 강경대 사망사건과 장외투쟁

1991년 4월 26일 등록금 인상 반대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던 명지대 1학년 강경대가 경찰 사복 체포조로부터 구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발생 직후 신민주연합당(1991년 4월 15일 평화민주당에서 당명변경)은 성명 발표를 통해 내무부장관 등 책임자 처벌과 사복체포조 해체 등을 촉구하였다. 한편 사건 발생 다음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였다. 또한 이우정 수석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강경대 군 사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민주연합당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고 미진하다는 재야단체와 학생들의 질책과 비난이 이어지면서 신민주연합당은 전날 여야가 구성한 내무위원회의 진상조사소위원회 활동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노재봉내각 사퇴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재야 및 학생들의 호응은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았다. 신민주연합당이 원내투쟁을 강조하며 제한적인 원외투쟁을 검토하는 한편 노태우정권 퇴진운동보다는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에 초점을 두는 등 소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민주연합당은 5월 10일 이루어진 보안법과 경찰법 등 개혁법안에 대한 민주자유당의 단독 강행처리를 계기로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적극적인 대외 저항으로 선회하였고, 5월 19일 대전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섰다.

정국혼란과 야당의 강경대응이 지속되는 가운데 결국 5월 25일 노재봉 국무총리가 취임 148일 만에 사퇴하였다. 그러나 후임으로 정원식 총리가 임명되면서 신민주연합당을 포함한 야당은 정원식의 총리 임명은 공안통치의 연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신민주연합당은 즉각적인 총리임명 철회와 내각 전면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노태우 정권 규탄, 공안통치 종식을 내세운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또다시 대외 장외투쟁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민주연합당의 장외투쟁은 6월 20일로 예정된 시·도의회의원선거로 인하여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였다.

5) 신도시 부실공사 조사활동

1991년 6월 신도시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가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무리한 신도시건설 추진과정에서 공기와 자재난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1989년 4월부터 4년 동안 분당·평촌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1,515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1995년까지 아파트 25만 8,000호를 지어 118만 명을 입주시키겠다는 중기 주택정책을 발표하고 신도시건설 공사를 진행해 왔다. 신도시아파트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신민주연합당은 6월 28일 홍영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문제 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신도시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7일간 조사활동을 벌인 신도시 부실공사문제 조사단은 7월 6일 중간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조사단은 부실공사 요인으로 정부의 업적 과시를 위한 불가능한 목표 설정, 정부의 공사감독 소홀, 실적 위주의 무리한 공사추진 등을 지적하고 건설부 장관의 문책 사임과 아파트 분양계획 연기를 정부 측에 요구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신민주연합당은 현장감리 의무화,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책임 강화, 불량건축자재 공급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정부의 공사감독 강화를 촉구하였다.

6) 한보특혜 조사활동

신민주연합당은 1991년 7월 5일 '수서지구 택지특별분양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수서사건이 일부 지도층 인사들의 단순 뇌물사건으로 결정되자 한보그룹 특혜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7월 12일 '한보금융특혜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활동에 착수하였다. 최영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춘원 의원 등 7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7월 1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특혜금융 내용, 특혜 배경, 한보그룹의 재산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특히 4개 거래은행이 조합주택 원리금 상환을 위해 167억 원을 신용 대출 해주는 과정에서 보증채무자인 서울신탁은행·산업

은행·상업은행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주 채무자인 조흥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출금을 4개 은행에 분담한 이유 등 은행감독원의 한보금융 지원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다.

이후 한보금융특혜진상조사단은 1개월 정도의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8월 7일 주요간부회의를 통해 중간결과를 정리·발표하였다. 발표된 결과의 핵심은 “서울신탁은행·산업은행·상업은행 등 3개 은행이 한보철강의 어음과 회사채 482억 원을 대신 갚아주고 한보철강의 운영자금으로 14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구속되기 직전에 신라호텔에서 당국과 밀약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신민주연합당은 정부 당국에 한보그룹 금융특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할 경우 정기국회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와 이용만 재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신민주연합당 조사단의 진상규명 노력은 이후 1991년 9월 16일 신설합당한 민주당에서도 이어졌으며, 10월에는 그 동안의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백서를 발표하였다.

5. 민주자유당

가. 1990년도

1)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 협의를 위한 당정회의

민주자유당은 1990년 2월 20일 김태호 내무부 장관과 허형구 법무부 장관, 민주자유당의 광주보상법심의 소위원회 위원인 유수호·강신옥·신오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광주보상법 처리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현지의 여론,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추정보상액, 여타 국가보훈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보상원칙을 논의하였다.

민주자유당은 평화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망·행방불명자들에 대한 3억 원 이상의 보상 수준은 형평에 맞지 않게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국민성금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보상액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의 광주보상법안심사 소위원회는 2월 22일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해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정부예산이나 국민성금으로 위자료와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시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은 시안에서 보상금이나 추가 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2) 김영삼 최고위원의 소련 방문과 한·소 수교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최고위원은 1990년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소련의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초청으로 소련을 공식 방문하였다. 1989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소련을 방문한 김영삼 최고위원은 소련 방문기간에 블라디미르 리슈코프 총리를 비롯하여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연방최고회의 의장,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 국제담당 정치국원, 블라들렌 마르티노프 IMEMO 소장 등을 만나 양국 간 국교 수립 등 한·소관계 증진과 경제 강화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3월 25일에는 소련 연방최고회의 외교분과위원회에서 ‘한·소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란 제목으로 연설하고, 모스크바대학교 IMEMO 등에서 강연하였다.

특히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최고위원이 3월 21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크렘린궁에서 전격 회동하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소련이 한국과의 수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개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김영삼 최고위원의 2차 소련 방문은 한국과 소련 수교의 디딤돌을 놓았을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공존·공영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무엇보다 한·소 양국 수교의

최대 장애인 '정치적 장벽' 을 허물고 수교 분위기를 고조시킨 것을 최대 성과로 내세웠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한국과 소련은 10월 1일 정식으로 수교를 맺었다.

김영삼 최고위원의 소련 방문에는 박철언 정무제1장관, 김용채·박종률·정재문·문정수·황병태·강삼재 의원 및 박희태 대변인과 김수한 전 의원,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구평희 럭키금성상사 회장 등 11명의 공식방문단을 비롯하여 김우석 비서실장과 오경의·신경식·김홍만·지연태·이행구 의원 등 10여 명의 비공식 방문단이 수행하였다.

3) 주택정책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개최

민주자유당은 주택정책 쇄신을 위하여 1990년 4월 27일 전경련회관에서 '주택정책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김영삼 최고위원 등 소속 의원과 주택 전문가, 업계 대표,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택개발연구원의 김정호 수석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김관영 연구위원이 각각 '주택공급 확대 촉진 방안' 과 '주택금융 확대 및 세제개선 방안' 을 주제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서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의 대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각종 시장규제 완화 등 제반적인 주택정책 재검토, 주택임대업의 기업화,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법규와 유관제도 정비 등이 주장되었다. 또 주택금융 확대를 통한 주택건설과 유통 촉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 서민의 소형 분양주택 구입자금의 2차 보전을 통한 초기상환 부담 경감, 주택금융 취급 기관의 확충 및 경쟁체제 도입, 주택채권 발행 확대, 주택공제조합 설립, 재산세 과표 현실화 등이 제안되었다.

4)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민주자유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 육성지원을 위해 1990년 5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2천년대를 향한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심포지엄' 을 개최

하였다. 민주자유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격려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그동안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돌진한 한국경제가 백화제방의 민주경제 시대를 맞아 재조정을 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자유당이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공장부지 해소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허상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제조업의 투자기피 현상, 기술 및 기능인력 확보문제, 공업의 수도권 편중문제 등을 당면문제로 지적하면서 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백낙기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중소기업 기반 확충과 구조 고도화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산업환경에의 적응과 고기술·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미래 지향적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절차 간소화, 지원 대상 확대, 창업지원자금 조성, 창업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5) 흉악범·누범 가중처벌 등 민생치안문제 재검토

민주자유당 민생치안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의원)는 민생안정과 사회기강 확립을 위하여 1990년 8월 21, 22일 양일간에 걸쳐 내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민생치안문제 재점검과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의 결과 민주자유당은 흉악범·누범(3~4범)자들의 재범증가율이 급증함에 따라 주요 범죄자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긴요하다는 판단아래 현행 「사회보호법」을 재검토하고 보호감호제도 확대 방안을 강구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갱생보호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찰청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주요 범죄자를 위한 취업알선협의회를 전국으로 확대·구성하는 한편 민간단체·자선단체·종교단체들도 범죄자 갱생보호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 조직폭력

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를 적용하여 초동수사에서 검거하여 가중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하였다.

민주자유당 민생치안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히 경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공정한 인사, 엄정한 신상필벌 등을 통해 경찰이 자부심을 갖고 치안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였다. 또한 읍에서 시로 승격되었으나 치안업무는 예전의 ‘지서’ 하나가 담당하는 등 수도권 일부 중소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관서와 치안관서의 수적 불균형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6)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추진

민주자유당은 1990년 10월 17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고 범죄·폭력에 대한 전쟁 선포와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선언한 노태우 대통령의 ‘10·13 특별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7개항에 걸친 당 차원의 실천방안을 확정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이날 범죄 소탕을 위한 정책 및 입법 사항에 대해 당 정책위가 정부와 협의하여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구체화하고,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에 대해서도 당 조직을 총동원해 솔선수범하는 등 실천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정치적 조속한 정상화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구축, 범죄와 사회악 근절, 10·13 특별선언의 후속조치 추진, 과소비와 사치향락 풍조 추방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당내에 ‘새질서·새생활운동 실천본부’(본부장 정순덕 사무총장)를 설치하는 한편 과소비 추방·우리상품 애용 등의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키로 하였다. 또한 당 행사 및 회의 시 호화시설 이용을 지양하고, 청년당원들도 자율방범단을 구성해 범죄와 폭력 소탕에 적극 참여키로 하였다. 또 실천본부 산하에 ‘정책민원신고센터’를 개설하고 11월 13일 관훈동 당사에서 발단식을 가졌다. 정책민원 신고센터는 11월 19일 관훈동 당사에서 정책민원 처리대책을 위한 실무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7) 집단민원에 대한 조사단 파견활동

민주자유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종 집단민원 현장에 당 차원의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고 실태조사 활동을 벌였다. 우선 민주자유당은 1990년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적조현상 등으로 수산양식 생산에 타격을 받은 전북지역에 조사단을 보내고 피해상황을 조사하였다. 당정 합동으로 구성된 조사단(단장 함중한 민원실장)은 전북 김제, 부안, 고창 등의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현장을 돌아보고 현지주민들을 면담한 뒤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피해지원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 민주자유당은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안면도에 11월 10일 조사단을 보내 진상조사 및 여론수렴 활동을 펼쳤다. 조부영 제2사 무부총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시위현장을 돌아보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떠한 추진계획도 없다는 정부발표를 믿도록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더 큰 불상사 없이 시위가 진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 밖에도 민주자유당은 육군항공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전북 고창에 11월 17일 조사단(단장 함중한 민원실장)을 파견하여 이전반대투쟁위원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진행상황을 조사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조사단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육군항공학교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부 측에 계획철회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주자유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육군항공학교 이전계획 백지화를 발표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이러한 각종 민원해결 노력에 대해 특정 지역 주민들의 불신의 벽을 허물고 당의 지지기반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나. 1991년도

1) 지방의회의원선거 관련 당규 개정

민주자유당은 1991년 1월 16일 제34차 당무회의를 열고 당규의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중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의결된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분야만 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추천 규정은 추후 보완하기로 결정하였다. 1990년 12월 15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의거하여 보완·확정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은 지방의회의원후보자 추천 규정 10개 조항을 신설하고 후보자 자격, 추천 신청, 추천 절차, 추천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시·직할시·도 등 광역의회의원 후보자 자격은 지방의회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당적을 보유해야 하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당원은 추천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해당 지구당위원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다. 한편 제출서류는 후보자추천신청서·당적확인서·서약서·이력서·기반진술서·주민등록초본·신원증명서 등을 구비하도록 하였으며,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하거나 피선거권이 없는 때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에는 신청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추천대상자는 해당 지구당위원장이 선거구별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10명 이상의 당직자로 구성되는 '추천대상선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및 관계 서류를 시·도지부를 경유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무총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무회의의 심의에 회부하도록 하였다.

당무회의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많거나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당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사회지도급 인사로서 덕망이 높으며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 등의 기준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추천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구당위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후보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고, 사고지구당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추천대상자를 따로 선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천자는 총재가 당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추천장을 교부토록 하였으며, 당무회의의 심의와 총재의 후보자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다.

민주자유당은 공천과정에서부터 과열 및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당 당직자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게 하는 등 공천 절차와 방법을 민주화 하였다는 데 개정된 후보자공천규정안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2) 걸프전 관련 비상체제 구축

민주자유당은 1991년 1월 17일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당내에 ‘걸프 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박태준 최고위원)와 ‘걸프대책상황반’ (반장 이우각 국제국장)을 구성하여 당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였다. 한편 임시국회를 조기소집하여 정부시책에 대한 국회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월 18일 민주자유당 여의도 당사에서 이상옥 외무부 장관, 이종구 국방부 장관, 이희일 동력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긴급 당무회의를 소집하여 이러한 내용을 결정하고 걸프사태가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 호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자유당은 애초 1월 24일부터 열기로 하였던 제152회 임시국회를 21일로 앞당겨 소집하고 균의료진 파견동의안을 조기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민주자유당은 페르시아만사태 악화에 따른 세계 원유가격 폭등으로 인해 유가 조절이 불가피해 질 경우에도 석유사업기금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국민생활에 오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물가수급 상황 및 동향을 매일 점검하여 국민들의 물가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가시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1월 21일 제152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할 국군 의료지원단 파견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자유당 권헌성 의원이 당론을 위배하고 반대표를 행사하여 징계에 회부되었으며, 민주자유당 당기위원회는 1월 28일 권헌성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한편 ‘걸프사태 특별대책위원회’와 ‘걸프대책상황반’을 운영하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민주자유당은 정부와의 관련 대책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 및 의안처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걸프대책상황반’은 정부 유관 부처와의 협조체제를 유지

하면서 물가·증시 등 각계의 국민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그 대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3) 창당1주년 기념식 개최와 당원윤리강령 실천선언문 채택

민주자유당은 1991년 2월 9일 서울 중앙정치교육원에서 당직자, 소속 의원, 사무처 요원, 당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1주년 기념식을 갖고 3당합당의 정신을 되새기는 한편 새정치 구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지방자치제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 필승을 거둘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4개항의 당원윤리강령 실천선언문을 채택하고 새정치 윤리 확립에 앞장서기로 결의하였다.

기념식에서 노태우 총재는 치사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이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는 한편 민주자유당이 깨끗한 정부와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개혁의 선봉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당의 결속을 강조하면서 “당내 민정계·민주계·공화계라는 말부터 없애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 김영삼 대표최고위원도 개식사를 통해 노태우 총재를 중심으로 한 당의 단합을 강조하는 한편 수서비리사건 등에 의한 정치불신에 대한 자성과 신뢰회복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당원윤리강령 실천선언문

우리 민주자유당은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새로운 정치윤리 확립에 앞장서고자 한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발전 과정에서의 정치적·사회적 불안과 도덕성 실종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면서 2000년대 민주, 번영, 통일, 밝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조에 우리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이제 우리당은 도덕성의 회복을 통해 정치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첫째, 당원은 청렴과 분수에 맞는 검소한 생활자세로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깨끗한 정치풍토와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앞장선다.

둘째, 당원은 안일과 타성을 떨쳐버리고 공인으로서의 권과 책임을 다하여 책임정치 구현에 앞장선다.

셋째, 당원은 공익을 앞세워 행동하고, 양보와 질서를 생활화하여 사회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넷째, 당원은 분파주의와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국민회합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앞장선다.

4)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민주자유당은 1991년 1월 발생한 국회의원의유사건 및 수서사건 등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집권여당으로서 겸허한 반성과 각고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치권의 신뢰회복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당내에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당내에 구성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제정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흡수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특별위원회 설치는 1991년 2월 19일 노태우 대통령 특별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풍토 쇄신을 통한 정치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 2월 20일 제39차 당무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다. 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선거제도 개선소위원회(위원장 이자현 의원), 정치자금법개정소위원회(위원장 신상우 의원), 국회법개정소위원회(위원장 남재희 의원) 등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국회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정치인의 의식개혁 등 새로운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3월 말까지 민주자유당안을 확정된 후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운영방향과 일정을 수립하였다.

한편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계 전문가 의견 및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및 정치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3월 16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성균관대 윤근식 교수, 서울대 박세일 교수와 박동서 교수가 각각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국회운영제도 영역을 맡아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윤근식 교수는 국민대표적 의회주의로부터 민주적인 정당국가에로의 구조적 개혁을 당면과제로 제기하면서 구속명부식 비례선거제와 다수제의 혼합, 인물선거권과 비례선거권 2표 행사, 돈트식 비례대표 의석배분 등을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선방안

으로 제안하였다. 한편 정치자금제도 개선에 관해 주제발표한 박세일 교수는 정치자금의 비공개성·과다성·불평등성이 야기하는 정치경제적 역기능을 지적하고 공개화(양성화) 및 합리성(적정성)을 강조하였다. 국회운영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박동서 교수는 양질의 후보 출마, 깨끗한 선거, 의정활동 업적평가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바람직한 의원 활동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5) 집회·시위 및 민생문제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당정 연석회의

민주자유당은 1991년 5월 28일 노태우 총재 주제 아래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등 당무위원 전원과 정원식 총리서리 등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당정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연석회의에서는 강경대 사망사건 등 일련의 소요사태에 대한 시국수습책과 물가, 주택문제 등 각종 민생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민주자유당은 이날 회의를 통해 강경대 사망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할 것임을 전제하고, 특히 폭력에 대해서는 정면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회와 시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법률을 개정할 것, 대학 내 불법폭력 행위 발생시 대학이 요청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할 것, 학사 등 대학의 일은 대학자율로 해야 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개헌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이 원하지 않는 내각제 추진은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한편 행정개혁과 관련하여 중앙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할 것과 당내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풍토 쇄신, 국민의 신뢰 회복을 다짐하였다. 또 물가를 잡아 경제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연간 50만 호 주택건설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농어촌문제와 관련하여 우루과이라운드(UR)를 잘사는 농어촌을 만드는 전기로 삼을 것임과 이를 위해 농업구조 조정, 농어촌 생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였다.

6) 시·도의회의원선거 공천자대회 개최

민주자유당은 1991년 5월 30일 서울 중앙정치교육원에서 시·도의회의원선거 공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노태우 총재를 비롯하여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 지구당위원장, 공천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공천자대회에서 민주자유당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솔선수범할 것과 전국적 압승을 거둘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공천자대회에서 노태우 총재는 치사를 통해 지방자치 실현이 6·29 선언의 마지막 약속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역공동체 안에서 주민복지와 내고장 발전을 이루는 ‘창조적 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더불어 시·도의회의원선거를 국민의 뜻과 힘을 다시 한번 뭉치는 결속의 전기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한편 돈 안 쓰는 선거, 깨끗한 공명선거를 강조하였다.

한편 민주자유당 공천자들은 불퇴전의 각오와 신념을 새롭게 다지면서 선거에서 필승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공천자들은 결의문에서 “이번 선거가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솔선수범함으로써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이른 또 한 번의 빛나는 선거문화를 창출, 바람직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선도역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민을 우리가족처럼, 지역을 우리가정처럼 돌보는 지역일꾼이 될 것임을 다짐하고 “이번 선거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일이 곧 정국안정과 6공화국 통치이념 구현의 디딤돌이 된다고 확신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하였다.

7) 농어촌발전기획단 발족과 농어촌구조개선책 마련

민주자유당은 1991년 2월 농어촌발전 중장기대책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현지실태 파악 및 농정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 발전대책 시행을 위한 지원조달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당내에 농어촌발전기획단(단장 나웅배 정책위의장)을 설치하였다. 기획단은 UR협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농수산 관계 전문가, 농어민 대표 등을 초청하여 4월 1일부터 11일까지 3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3차례의 토론회는 1일 ‘전업농 육성과 영농규모 확대’, 4일 ‘농어촌 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11일 ‘농어촌의 장기비전’ 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3차례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전업농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과학영농지원 확대방안이 제안되었으며,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농지소유 상한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 국토개발과 연계한 정주생활권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농어민연금’ 도입과 의료보험 부담 축소 등이 농어촌 복지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농어촌발전기획단은 정책토론회 이후 4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경기·강원, 충남·북, 전남, 경남·북 지역의 농어촌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농어민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농어촌발전기획단은 이후 6월 말까지 20여 차례 정책토론회, 세미나, 좌담회 및 농어촌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농어민 및 각계의 의견수렴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이후 농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수립·확정하였다. 이후 민주자유당은 7월 12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농·수·축협 등 전국 농어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 1,000여 명을 초청하여 그동안 추진한 ‘농어촌 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를 통해 민주자유당은 ‘농어촌 구조개선 촉진 특별회계법’ 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정을 약속하였다.

8) 전국 지구당 감사 실시

민주자유당은 1991년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4개 시·도지부 및 242개 지구당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하였다. 당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평가 및 보완책 마련과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한 지방조직의 운영실태 점검에 있었다. 당무감사반은 1개 반 3명씩 총 16개 반으로 구성하였고, 시·도지부 및 지구당의

조직실태, 지방의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9) 당 간부 연수교육

민주자유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당 조직정비 및 활성화와 당원들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 1991년 10월 7일부터 서울 중앙정치교육원에서 224개 지구당 주요 간부 1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수교육은 경기도 협의회장 430명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15개 시·도지부 3,700명의 협의회장을 8개조로 나눠 1박 2일간 실시하였다. 한편 협의회장 교육에 이어 10월 말부터는 청년회장과 여성회장 각 3,7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구당 부위원장·협의회 총무·홍보대책위원과 지역장·관리장에 대해서도 각각 시·도별, 지구당별로 1일씩 현지연수를 실시하였다. 당 간부연수는 12월 9일부터 19일까지 협의회 총무 연수를 마친 후 종료되었다.

중앙당 소집 연수에서는 김학준 청와대특보의 ‘한국의 내일’ 이란 강연과 함께 영화상영 및 당원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윤환 사무총장과의 시간에서는 각 지구당과 조직 활동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당 조직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10월 7일 첫날 연수에 앞서 “정당의 최고 목적이 선거에서의 승리에 있는 만큼 내년의 주요 선거에서 우리당이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10) 귀향활동 지침 시달

민주자유당은 1991년 12월 19일 서울 중앙정치교육원에서 의원·지구당위원장회의를 열어 12월 20일부터 1992년 1월 초까지의 1차 귀향활동 지침을 시달하였다. 시달된 활동지침에는 당원 확충,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리·통·반별 당원 단합대회 2, 3회 실시, 국회의원선거 운동원으로 지구당별 대학생 30명 확보, 각종 직능단체 간부들과의 접촉 강화 등 조직기반 확대 및 강화가 핵심 내용이었다.

한편 지구당 활동과정에서 야당의 폭로전술 및 사전 선거운동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아울러 지시하였고, 농촌 출신 의원들에게는 12월 18일의 추곡수매동 의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농촌 여론의 악화를 회색시키기 위해 야당 주장의 비현실적 측면을 부각시킬 것을 특별히 주문하였다.

다. 1992년도

1)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 7대 중점 추진 과제 선정

민주자유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3개월여 앞둔 1992년 1월 4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위의장, 정책조정실장 및 전문위원 등 당의 정책팀 전체가 참여하는 '정책목표 및 국회의원선거 공약 선정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 민주자유당은 1992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연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맞추어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국정 전반에 걸친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7대 중점 추진과제는 성숙된 민주정치문화 정착, 선진경제의 조기 실현, 젊고 활기찬 농어촌 건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법과 질서 확립을 통해 선진 민주시민사회 건설, 다가오는 통일의 기반 조성, 신국제질서 형성에 능동적 대처,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시대 주도 등이었다.

2)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장 수여식과 당원 전진대회 개최

민주자유당은 1992년 2월 7일 청와대에서 제14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장 수여식을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 중앙정치교육원에서 공천자대회를 열어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의 필승을 다짐하였다. 공천장 수여식에는 237명의 지역구 후보 공천자 전원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노태우 총재는 치사를 통해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에 “우리 모두는 지난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낳은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이 얼마나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정운영에 혼란을 초래하였는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라면서 원내 안정의식 확보를 위한 후보자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회의원선거 필승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 의 문

우리 민주자유당 공천자 일동은 다가오는 14대 국회의원선거가 국가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면서 미래로 통일로 함께 전진하느나, 아니면 정체와 혼돈의 나라으로 퇴보하느나의 여부를 가름하는 참으로 중차대한 선거임을 깊이 인식한다. 당의 부름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선거에 입후보할 우리들은 시대적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당과 국민 앞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깨끗한 선거, 공명선거를 숭선수범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불신을 씻고 밝은 정치, 맑은 정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필승의 신념으로 안정다수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정치, 사회적 안정과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다진다.
1. 우리는 민주, 번영, 통일의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하여 경제활력을 회생시키고, 민족통일과 선진조국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21세기 한민족 흥비의 시대를 활짝 열어간다.

1992. 2. 7.

민주자유당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자 일동

한편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 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 등을 비롯한 당직자 및 공천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천자대회에서는 국회의원선거 승리를 거듭 다짐하였다. 김영삼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및 대통령선거의 연장선상에 있고, 향후 정국안정과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우리 당이 반드시 승리하여 안정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고 역설하였다.

다음 날인 2월 8일에는 중앙정치교육원에서 당직자,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자, 사무처 요원, 당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필승·통일을 다짐하는 당원전진대회’ 라는 행사명으로 창당 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창당정신을 되새기고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 필승을 거둘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당기 입장을 시작으로 개식사, 당 약사 보고, 창당선언문 낭독, 당원 표창, 총재 치사, 공천자 필승결의 등의 순으로 35분 동안 진행되었다. 공천장 수여식과

당원전진대회를 마친 이후 민주자유당은 지구당 창당 및 개편대회를 개최하고 선거 대책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였다.

3) 국회의원 선거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민주자유당은 1992년 4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선거 민의,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선거 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3월 14일 실시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향후 정책활동에 반영하고, 당이 내놓았던 공약을 평가하고 보완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의장 김용태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 분야에 대해 윤영오 국민대 교수, 경제 분야에 대해 곽상경 고려대 교수, 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김경동 서울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다. 우선 정치 분야 주제발표를 한 윤영오 교수는 “향후 강조·실천되어야 할 공약사항으로 성숙된 민주정치, 화합의 정치, 6·29 선언 완성을 위한 제2의 민주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특히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과 공정한 인사정책, 인격적 상호존중 및 분배유통 개선을 통한 계층 간 화합, 의회정치 활성화에 의한 여야 간 대화, 권력기관의 정치중립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경제 분야 주제발표를 한 곽상경 교수는 국민은 선거를 통해 변화를 바라고 기대를 갈구하는 특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경제에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동시에 공존하지만 선거에서의 유권자는 부정적인 결과와 어두운 면을 내세워 정부여당을 불신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이 공약남발을 자제하였다는 면이 우수하였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사회·문화분야에서 김경동 교수는 “민자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정책과제들이 한층 더 구체적이면서 목표시기와 목표량 등의 사안을 수량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면서 “그러나 비전 제시 미흡과 수량화 강박으로 지나치게 물량적 측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짙었다”라고 지적하였다.

4)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한 무소속 의원 영입

민주자유당은 안정의석 확보를 내걸고 임하였던 1992년 3월 14일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116석, 전국구 33석을 합쳐 전체 299석 중 49.8%인 149석을 획득하여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다. 이에 민주자유당은 제14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 미달로 인한 정국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친여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를 선별적으로 영입하여 원내 안정의석 확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무소속은 예상을 뛰어넘어 21명이 당선되었고, 이러한 무소속의 약진은 민주자유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민주자유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 요인이었던 무소속의 약진은 역설적이게도 이후 영입을 통한 과반수 확보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민주자유당은 과반수 확보를 위해 무소속 당선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섭에 나섰다. 그 결과 다수의 무소속 당선자들이 입당하였고, 민주자유당은 6월 2일 무소속 당선자인 서석재(부산 사하), 김길홍(경북 안동), 최돈웅(강원 강릉), 하순봉(경남 진주), 박헌기(경북 영천), 이승무(경북 점촌·문경), 정필근(경남 남해) 의원, 6월 25일 현경대(제주), 양정규(북제주), 조진형(인천 북구갑) 의원에 대한 입당환영식을 가졌다. 또한 8월 25일 이상재(충남 공주), 9월 1일 김호일(마산 합포), 9월 7일 김상구(경북 상주), 9월 30일 허화평(경북 포항), 10월 24일 이재환(대전 서·유성), 11월 6일 김찬우(경북 청송·영덕), 박희부(충남 연기) 의원 등이 차례로 입당하였다.

5) 김영삼 총재,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

민주자유당 김영삼 총재는 1992년 11월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회동하였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회동은 한·러 간 경제 교류 등 양국 간의 관심사를 주제로 50여 분간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옐친 대통령은 “김영삼 총재의 대통령 당선을 확신하며, 김영삼 총재가 내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하면 공식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삼 총재가 러시아를 방문하면 KGB·공

산당·국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자료가 공개되면 양국 간의 신뢰성에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총재와 엘친 러시아 대통령의 단독회담에 대하여 민주당이 '내각의 중립성 의심' 등을 내세우며 비난하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의 사소한 개인서한까지 공개했던 사람들이 김영삼 총재와 엘친 대통령의 회동에 국민 반응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중립이고 불리하면 중립이 아니라는 논리"라고 반박하였다.

6. 민주당

가. 1990년도

1) 3당합당 규탄 및 창당 지지 시민 결의대회 개최

민주당(가칭)은 1990년 2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친 후 3당합당으로 야당이 전멸한 부산·영남지역의 야당 재건을 선언하였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은 3월 3일 첫 정당 집회인 '3당 통합 규탄 및 민주당 창당지지 시민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신야당 창당의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

민주당(가칭)은 부산집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부산 중구 지구당에 대책본부를 차리고 자원봉사자 등 실무자 400여 명이 부산지역 전역을 누비며 20여 만 장의 전단을 배포하였다. 또 포스터 5만여 장을 게시하고 승합차량 23대를 동원한 가두방송을 통해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였다. 민주당(가칭) 소속 이기택·박찬중·김정길·김광일·노무현 의원 등 부산 출신 의원들은 옛 부산상고 교정에 마련된 대회장에서 '1·22 정계개편'을 규탄하고 김영삼 전 통일민주당 총재의 여당행을 정치적 배신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새롭게 창당을 준비하는 영남지역 유일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집회를 마친 뒤 당원 및 시민·학생 등 500여 명은 오후 6시 20분부터 3당 통합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30여 분 동안 거리시위를 벌인 후 해산하였다.

2) 노태우 정권 퇴진운동 전개

1990년 10월 4일 보안사 탈영병 윤석양 이병이 기자회견을 통해 “보안사가 여야 정당지도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및 각계 주요 인사 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치사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보안사의 민간인 정치사찰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및 보안사령관의 처벌과 노태우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해명 및 사과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운동 전개도 불사한다는 초강경 대응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야당들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보안사령관을 경질하며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방부 장관 등의 경질은 미봉책이라고 주장하며 보안사 해체 등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특히 민주당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재차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사건 초기에 공언한 대로 당 차원의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였다.

민주당은 10월 10일 정무회의를 열고 민주자유당의 내각제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 분쇄와 조기 국회의원선거 쟁취 등 전면적인 노태우정권 퇴진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노태우정권의 무능과 부패는 이미 5공화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민주자유당의 일당 국회는 국가위기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서 “민주당은 6월항쟁 정신으로 전면적인 노태우정권 퇴진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민주당은 이 결의문에서 내각제 개헌 음모 분쇄 및 조기 국회의원선거 쟁취, 보안사 사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촉구, 군의 정치적 중립 선언과 보안사 해체, 우루과이라운드(UR) 반대투쟁의 전국적 개최, 야권통합 완수 등 5개항을 촉구하였다.

민주당은 노태우정권 퇴진 결의문 채택 이후 10월 13일 보라매공원에서 야권 공동으로 ‘보안사 불법사찰 규탄과 군정 청산 국민대회’, 10월 20일 ‘보안사 불법사찰 규탄과 군정 청산 인천시민대회’, 11월 1일 ‘홍성·청양 국민 대시국 강연회’, 11월 2일 ‘노정권 퇴진 촉구와 UR협상 반대 시국강연회’ 등을 개최하며 장외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권퇴진운동은 소속 의원이 8명에 불과해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한 군소정당의 한계와 야권통합 실패, 이기택 총재 사퇴, 평화민주당의 독자 등원 결정, 국회등원을 둘러싼 당내 갈등 등 복잡한 당 내외 사정으로 인해 정치적 효과를 불러오지 못하였다.

3) 국회 등원을 둘러싼 당내 갈등

1990년 11월 야당통합이 실패하자 민주당 이기택 총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1월 16일 총재직 사퇴를 선언하였다. 이기택 총재는 사퇴 선언에서 당의 분위기 쇄신을 통해 제2의 창당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야당의 국회 등원은 민주자유당 정권의 일당독재에 들러리를 서는 것에 불과하며 제13대 국회 해산과 조기 국회의원선거만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기택 총재의 사퇴와 등원 거부 당론에도 불구하고 장석화·김광일·허택 의원 등이 국회 등원과 관련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 즉각 등원하여 투쟁하는 것이 절대다수의 국민여론이라고 지적하면서 등원거부 당론이 변경되지 않으면 독자 등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여당을 감시·비판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 의무라고 주장하고 확고한 대안 제시도 없이 등원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등원을 둘러싼 민주당의 내용은 이기택 총재 사퇴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국회 등원 거부의 한계를 실감한 민주당은 결국 12월 24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991년 1월 임시국회에 등원키로 당론을 결정하였다.

나. 1991년도

1) 수서 비리 진상보고 및 규탄대회 개최

1991년 2월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이 확대되자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선명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였다. 민주당은 3월 6일 서울 홍사단 강당에서 당원·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서비리 진상보고 및 규탄대회’를 열고 수서비리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단이 확인한 사실들을 당원들에게 보고하고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민주당 자체 조사단이 확인한 한보그룹의 아산만 매립과 관련한 특혜 의혹들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기택 총재는 이날 대회에서 수서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적인 권력형 비리로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입증되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을 즉각 교체하고 전면 재수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주자유당이 임시국회에 참여해 국정조사권 발동과 특별검사제 도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수서비리 진상보고 및 규탄대회’ 개최 다음날인 3월 7일 민주당은 수서비리와 관련하여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 김종필·박태준 최고위원 및 서청원 의원을 문서 변조·위조 등으로 인한 증거인멸 및 교사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민주당은 노무현 의원(수서은폐조작 진상 조사단장) 이름으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서청원 의원 등은 1991년 2월 16일 수서택지 부정분양 사건에 관한 민주자유당의 민원처리 문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민원 내용을 수용기로 한 세 최고위원의 결재 사항을 삭제한 거짓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면서 “이는 민주자유당 고위책임자 또는 서 의원 자신의 개입 혐의 사실을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주자유당의 세 최고위원은 특별분양 민원 수용을 결재하였으므로 서청원 의원이 이들의 지시에 따라 결재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민주자유당의 최고위원 3명은 서청원 의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자유당 3명의 최고위원과 원내총무에 대한 고발장은 노무현 의원 등이 대검찰청에 직접 제출하였다.

2)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 진상백서 발간

민주당은 1991년 3월 13일 수서비리의 진상·문제점 및 재발 방지대책과 사건 관련 자료를 담은 약 400쪽 분량의 ‘수서지구택지 특혜공급사건 진상백서’를 발간하였다. 민주당은 수서사건이 문제시된 2월 3일부터 김광일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노무현·장석화·허탁 의원 등이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2개월여의 기간에 걸쳐 각종 사실을 수집·분석하고 자체조사 결과를 추가해 종합자료집 형태의 백서를 발간한 것이다.

김광일 단장은 백서를 발표하면서 “백서 발간은 수서사건의 종결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지난날 정치적 사건이 흐지부지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고 진상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하였다. 진상백서는 수서사건의 일지와 진상, 재발방지책 및 자료집 순으로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수사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사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수서사건은 청와대를 포함한 정·경·관이 유착된 ‘공 신종 비리’라는 결론을 내렸다.

7. (신설합당) 민주당

가. 1991년도

1) 간접세 인하 등 8개 세법개정안 마련

1991년 9월 16일 민주당과 신민주연합당이 신설합당하여 출범한 민주당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제개혁 관련 8개법 개정안(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조세감면규

제법·특별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10월 21일과 22일 제156회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세제개혁안의 8대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은 금융실명제 실시 및 종합소득세 추계 과세제도 도입,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세제 강화, 간접세 인하를 통한 물가안정 및 소득증대 효과, 중소기업 중점 육성, 주부 및 노령자 인력 활용을 위한 세제 지원, 농·축산·어민에 대한 세제 보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재원 증대 등이었다. 8대 기본방향 아래 마련된 8개의 세법개정안은 만성적인 세금의 초과징수와 역진적인 조세구조를 시정하고, 조세형평성과 응능부담(ability-to-pay)원칙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2) 6·29 선언 주체 진상규명 촉구 공개질의서 국회 제출

「월간조선」은 1992년 1월호에 ‘6·29 선언의 주체가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는 김성의 전 청와대 비서관(통치사료 담당)의 기록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991년 12월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를 ‘현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의 근거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6·29 선언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정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서면질의권을 규정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공개질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국회법」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발송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질의서는 12월 24일 질문서작성기초위원회를 구성(위원장 허경만 최고위원, 위원 유준상·조찬형·노무현·장석화 의원)해 작성되었다. 민주당은 질의서를 통해 “6·29 선언은 1987년 6월항쟁 당시 온 국민이 소망하였던 민간민주정부 수립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탄생한 노태우정권의 기반과 정통성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 선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특정 세력의 집권 연장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여 벌인 조작극이자 대국민 정치 사기극이었다면 이 선언의 직접 당사자인 노태우 대통령의 도덕성과 진실성은 물론 현 정권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모두 11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질문서는 6·29 선언이 노태우 대통령의 단독 작품인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 경위와 배경에 대해 밝혀 줄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또 선언의 주체가 바뀌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 청와대 비서관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이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고 사실여부 확인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이외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6·29 선언 진상공개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4·13 호헌조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견해는 무엇이었는지, 이 선언을 국민들에 대한 항복문서로 보는 데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견해는 무엇인지 등을 밝혀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질문서는 “김성익 전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6·29 선언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노태우 대통령의 모든 주장이 완전히 위선이자 거짓이었고, 국가원수이자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국민 기만의 부도덕한 통치 행위를 펼쳐왔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문제의 중대성을 지적하였다. 또 이 사건이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언론매체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보도관제’를 실시한 것인지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1992년도

1) 국회의원선거대책본부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 개최

민주당은 1992년 2월 24일 중앙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발대식 및 현판식을 갖고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승리를 결의하였다. 김대중 대표는 발대식 격려사에서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이 뿌리는 돈의 홍수 속에서 샌드위치식으로 짓눌리고 있으나 3당야합 이후 일당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세력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조직과 자금력에서 절대 열세인 야당이 봄을 일으키기 위해 필승의

신념에 과학적인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국회의원선거 전략으로 투표 기권 방지, 금권타락선거 타파, TK지배 타파 등 ‘3가지 호소’와 정직한 정치 실현, 물가안정 실현, 민생치안 회복, 교통문제 해결, 지방자치제 완전 실시 등 ‘5가지 정책약속’을 제시하였다.

이기택 대표는 선거본부장 인사말에서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노 정권의 4년 실정과 위약, 부정부패를 국민 앞에 고발하고 대통령선거의 교두보를 마련하자”면서 “민주당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출범하는 선대본부는 하루빨리 모든 계획을 수립,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차질 없는 지원을 하고, 필승의 마음가짐으로 단결해 이 자리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민주당은 3월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자대회’를 갖고 필승을 다짐하였다. 227명의 공천자와 지구당 선거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의 대회사 및 격려사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추천장 수여, 공천자 선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국회의원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 공약, 선거실무 및 홍보지침 해설 등 선거실무자 연수를 실시한 뒤 시·도별로 국회의원선거 대책을 수립하였다.

2) 물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1992년 초 우리나라 경제는 물가폭등, 기업 연쇄도산, 증시폭락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국면에 직면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1992년 4월 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기로 하고 당내에 조순형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물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마련에 나섰다.

물가대책특별위원회는 1992년도 소비자물가 억제선 달성, 생활물가지수 도입, 공공요금 동결, 통화량의 14~15% 축소관리 및 중소기업자금·전세금 융자 지원 방안,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에 따른 재정지출 억제 방안 등을 수립하였다. 또한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품목별 가격안정대책, 우루과이라운드(UR) 대처 방안, 무역수지 적자 대처, 세제 개편, 과소비 억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수립하여 4월 10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방문, 대안제시와 대책수립을 촉구하였다. 또 물가대책특별위원회는 경제기획원 등 물가 관련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을 각각 방문하여 각 기관의 실상과 당면문제를 파악하고 4월 29일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한편 물가대책특별위원회는 4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가불안,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경제의 희생과 물가문제 해결을 위한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대중 공동대표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대중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통화량 억제, 재정지출 축소, 투기 근절,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자유경쟁, 유통구조 개선 등을 물가안정 방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지도력의 필요성과 확고한 철학 및 민주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전환을 강조하였다.

한편 토론회에는 학계, 언론계, 정부 관료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본호 한양대 교수는 정부예산의 연중 심의, 토지공급 확대와 토지규제 완화, 중소기업 인허가제도 완화 등을 주장하였다. 박금순 한국부인회 명예회장은 생산·가공·저장·유통 과정의 농어민 참여 정책의 필요성과 소비자 협동조합의 조직·육성을 주장하였고, 배병휴 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은 정치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영태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은 안정적인 통화공급 유지와 관리라는 정부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는 농민이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반영하는 농민·소비자 조직체 구성과 소득계층별 물가지수 작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3) LA 흑인폭동 사태 피해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단 파견

민주당 김대중 공동대표최고위원은 1992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흑인폭동 사태로 피해를 본 교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실태를 파악하여 미국 측에 적절한 피해보상책 강구를 촉구하기 위해 이부영 최고위원, 정대철 의원, 강창성·강수림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박지원 대변인 등 ‘LA 교민 위문 및 피해실태 조사단’ 12명과 함께 5월 4일부터 7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였다. LA에 도착한 조사단은 유일한 한인 희생자인 고 이성재(19) 군 빈소를 조문하고 교민들을 위로하였다.

김대중 대표는 톰 브래들리 LA 시장과 면담을 갖고 피해복구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교민들과의 간담회에서 피해복구와 관련해 “정부와 함께 미국 정부가 정당한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초당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4)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 개최

민주당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992년 11월 7일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4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민주당 승리와 대화합의 의지를 다졌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대회사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화합과 변화의 정치”라고 전제한 후 “집권하면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각계 각층이 고루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해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실천한다는 원칙만 지켜지면 모든 세력 간의 화해와 용서의 주역이 되겠다”라고 다짐하였다.

또 김대중 대통령후보와 이기택 대표는 “대화합의 세상, 정의와 자유가 넘치는 새 조국 건설을 함께 이뤄내자”라고 격려하고 집권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어 장재식 정책위의장의 민주당 대통령선거 공약 개요 설명과 김상현·조세형 최고위원 등이 나서 민주당의 464개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 전진대회에 참석한 전국 2,657명의 대의원들은 ‘지구당, 시·도지부 대의원 증원과 여성 20% 이상 포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개정안을 의결하고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8. 통일국민당

1992년 2월 창당된 통일국민당은 출범 직후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직면하면서 한 해 동안 선거활동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1992년 통일국민당이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 없이 당 내부적으로 추진한 활동을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은 통일국민당은 선거 직후 4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책공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는 재벌그룹을 기반으로 탄생한 정당과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서민층의 경제이익을 옹호하는 시민단체의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통일국민당 측에서는 정주영 대표를 비롯하여 운영탁 정책위의장, 정몽준 정책위 부의장, 조순환 대변인 등 4명이 토론회에 참석하였고, 경실련 측에서는 서경석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 이진순 숭실대 교수, 장원석 단국대 교수, 최정표 건국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인 유재현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대부분 경실련 측 참석자들의 질문에 정주영 대표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금융실명제, 통화·금융 자율화, 토지·주택 정책, 농업정책,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노동정책 등 통일국민당이 국회의원선거에서 내건 공약과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통일국민당이 내세운 ‘아파트 반값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경실련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이날 토론회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통일국민당 측의 계산에서 성사되었을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하는 갈등해소 과정의 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이외 통일국민당의 당내 활동은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벌인 것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었다. 8월 22일 당직자회의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의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을 결정

한 통일국민당은 당 내 ‘6공화국 말기 의혹사업 조사특위’ 산하의 이동통신조사단을 확대 개편하여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 특혜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대국민 홍보를 계속하면서 기존의 ‘광화문토론회’와 ‘여성시사강좌’ 등 당내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9. 기타정당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기타 정당들 중 원내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한겨레민주당, 신정치개혁당, 새한국당 등 3개 정당이었으며, 그 외 공명민주당(대표 고태만), 민중당(대표 이우재·김상기·김낙중), 진리평화당(대표 허경영), 친민당(대표 권정수), 대한정의당(대표 이병호) 등이 있었다. 대부분의 군소정당들은 선거활동 이외에 언론 등을 통해 외부적으로 표출된 두드러진 당내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특히 진리평화당, 친민당, 대한정의당, 새한국당 등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직전 창당된 정당들은 창당과 함께 선거에 직면하면서 선거와 구분되는 당내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도 1992년 3월 창당된 신정치개혁당 또한 4월과 12월로 이어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매진하면서 당내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0년 8월 창당된 공명민주당 또한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후 소멸할 때까지 주로 당무회의 및 중앙위원회 개최를 통해 당내·외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지구당 창당대회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당내활동이었다. 그나마 1990년 11월 창당된 민중당의 경우 기타정당 중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정당 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기타 정당의 당내활동은 정당법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차례 이상 정당 활동 개황을 보고한 정당 중 한겨레민주당과 민중당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가. 한겨레민주당

한겨레민주당은 1988년 4월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다. 8월 18일과 9월 6일 2차례에 걸쳐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9월 14일에는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정치연합을 발족하였다. 한편 1988년 10월 20일에는 당 기관지 진보정치를 창간하였다. 그 이외에 1988년 11월 21일에는 “완전 자자체 실현을 위한 민주단체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11월 29일에는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89년에는 1월과 2월 마산, 울산, 대구, 광주 등의 지역을 돌며 전국순회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외에는 당 정치연수회와 당직자 정치연수회를 1989년과 1990년에도 걸쳐 실시한 것을 주요 정당 활동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1991년 3월 정당이 해산될 때까지 한겨레민주당은 수 차례의 중앙위원회와 몇 차례의 당원단합대회를 제외하고 두드러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민중당

1) 시국 관련 농성투쟁

민중당(가칭)은 1990년 7월 14일 국군조직법 등 26개 법안의 변칙처리 등 여당의 횡포 정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독재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하였다”고 비난하면서 국회의원 총사퇴와 국회해산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당사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을 벌였다.

민주자유당에 대해서는 유신독재나 5공화국 독재시절의 국회 모습을 재연하고 있으며, 장기집권을 위한 방송관계법·국군조직법 등 반민주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야당인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의 한계 및 무기력한 원내활동도 함께 비난하였다. 두 야당에 대해서는 독재정권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 국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 국회를 해산하고 온 국민과 함께 반민주자

유당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 복귀 반대 항의

1990년 12월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8년 11월 23일 백담사로 은둔생활에 들어간 지 2년 1개월 만에 서울 연희동 사저로 귀환하였다. 이에 민중당은 평화민주당·민주당 등 야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및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 대학의 총학생회 등과 함께 비판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직접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복귀를 항의하였다. 12월 31일 국무총리실로 항의 방문한 민중당의 이재오 사무총장, 장기표 정책위의장, 조춘구 대외협력위원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귀환을 반대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항의서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귀환은 5공화국 청산과 민주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처사”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3) 정치자금법 개정 청원서 제출

민중당은 진보정당 육성을 위해 원내에 진출하지 못한 정당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정치자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청원서를 1991년 1월 2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평화민주당의 문동환·이해찬 의원 등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된 이 청원서에서 민중당은 정치자금의 좀 더 공정한 배분을 위해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 한편 국고보조금의 경우 40%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 정당별 지구당 수를 감안해 분배 지급하고, 나머지는 30%씩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정당별 득표 비율과 각 정당의 국회의원 수에 따라 배분해 각각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북한 방문 신청

민중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등이 제외한 남한의 정당 초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1991년 2월 23일 국토통일원에 방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민중당은 방북대표단을 김낙중 공동대표, 손병선 조국통일위원장, 조춘구 대외협력위원장, 정문화 대변인 등으로 구성하고 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북한 정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국토통일원에 맡겼다.

이에 앞서 2월 6일 북한은 평양방송을 통해 북한의 여러 정당 요청에 따라 이성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대리 명의로 김상협 대한적십자 총재에게 한국의 각 정당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2월 8일 오전 10시 관문점에 연락관을 파견하겠다고 하며 대한적십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여러 정당이 우리 정당들에 보내는 제도권 정당 간의 편지임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편지를 접수하기로 하고, 2월 8일 관문점에서 북한의 조선노동당·사회민주당·천도교청우당 공동명의로 평화민주당·민주당·민중당 등 야 3당에 보내는 북한의 편지를 접수해 야 3당에 전달하였다.

5) 구·시·군의회의원선거 불참 선언

민중당은 1991년 3월 26일 실시되는 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우재 상임대표는 2월 9일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에 “노태우 정권은 분노에 찬 국민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수서비리 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하였다. 아울러 야당인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에 대해서도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참여를 결정한 것은 수서비리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당리당략적 이해를 떠나 노정권의 정국구도를 거들게 될 구·시·군의회의원선거 참여를 철회하고 노정권 퇴진투쟁에 동참하라”고 촉구하였다.

6) 금권정치 청산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

민중당은 1991년 3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권정치 청산을 위한 정책 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금권정치 청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남재희 민주자유당 의원, 조세형 평화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광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기표 민중당 정책위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최장집 교수는 직업정치인들의 부패·비리가 정치 및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원인을 6월민주항쟁 이후 정치적 대표의 체계가 극히 좁은 사회적 기반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찾았다. 따라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대표체계와 사회세력 및 그 요구간의 간격을 좁혀서 노동자·농민 등 소외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계층 운동이 활성화되고, 조직화된 정치세력에 의한 제약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대 정당 위주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총 득표에 비례하여 군소 정당도 정치자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 다수당 위주의 선거제도를 소수의견·신생정당·소외계층의 요구가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절반은 1인 1구 단수후보 기명 선출, 나머지는 주(州)를 단일 선거구로 해 대선거구·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서독식 선거제도 방법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장집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남재희 의원은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증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조세형 의원은 최장집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 사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투표하는 ‘1인 2표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한편 김광일 의원은 당내 민주화와 개방 정당의 모색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장기표 민중당 정책위의장은 후보 기탁금제도 폐지, 선거운동의 규제완화, 노동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등과 노동자·농민 등 소외세력의 정계진출이 용이한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주장하였다.

7) 수서특혜 은폐조작 부패정권 규탄대회 개최

민중당은 1991년 3월 2일 서울 과고다공원에서 당원과 학생 등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서특혜 은폐조작 부패정권 규탄대회’를 가졌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특별감사제 도입과 수서비리에 대한 전면 재수사 등을 요구하였다. 또 비리와 과행으로 얼룩진 제13대 국회를 즉각 해산할 것과 수서비리 주범은 국민의 힘으로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집회를 종료한 이후 참석자들은 곧바로 해산하지 않고 피켓과 만장 50여 개를 앞세워 시청 앞까지 행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저지하자 시위용구를 자체 수거하고 지하철 2호선 을지로역까지만 가두행진을 벌인 뒤 해산하였다.

8) 노태우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한 정치현안 논의

민중당은 1991년 11월 18일 건국 이래 진보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정치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면담은 민중당의 면담요청을 노태우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성사되었으며, 진보혁신정당의 존립 자체가 거부당해 왔던 과거를 고려하면 ‘체제’와 ‘혁신’ 정당의 첫 공식적인 대화란 점만으로도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되었다. 이날 면담에는 민중당의 이우재 상임대표, 이재오 사무총장, 장기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여 통일과 남북한 문제, 선거공영제 확대를 포함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 등에 관해 약 1시간 20분 동안 의견을 나눴다.

면담은 이우재 대표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진보정당의 대표와 간부들을 만나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이념대결을 넘는 민족화합의 소명에 대한 당부로 시작되었다. 면담 과정에서 민중당 간부들은 시국사범의 석방과 사면복권, 선거공영제 강화와 돈 안 쓰는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득표 비율에 따른 의석 배분 또는 정당투표제 도입, 원외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제도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초당적인 협조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위한 민중당의 역할을 요구하였다. 또한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간부들이 요구한 시국사범의 석방과 사면·복권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의사를 전하는 한편 정치자금 및 전국구 의석 배분방식의 개선 요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시사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우재 상임대표 등 민주당 일행은 청와대 면담을 마친 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대통령도 많은 부분에 공감을 표시하였다”고 면담결과를 전하였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제5장

정당의 수입과 지출

제1절 _ 정당의 수입 · 지출 총괄

제2절 _ 정당의 수입

제3절 _ 정당의 지출



1980년 12월 31일 우리나라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차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명세와 결산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 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36%의 저조한 득표율로 출범하였으며, 1988년에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여 여소야대의 국회를 맞았다. 따라서 1990년 3당합당 이전에 노태우 정부는 주요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으며, 야당은 이러한 노태우 정부 초기의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이용하여 여당인 민주정의당에 집중되었던 정치자금 수입구조의 개선을 통해 야당에도 정치자금 수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89년 12월 30일 공포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한 후원회제도와 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정되는 등 야당의 원활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 장치가 확대되었다.

1990년 2월 3당합당으로 거대 여당이 출범한 후 1991년 12월에는 기탁한도 인상, 국고보조금 인상 및 의석 없는 정당 배분가능 규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제5차 개정이 민주자유당의 단독처리로 이루어졌다. 1992년 11월에는 후원회를 확대하고 100만 원 이내의 금품은 익명으로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6차 개정이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노태우 정부 기간에 이루어진 3차례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은 각 정당의 원활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반복적인 법 개정은 개정 당사자인 여당과 야당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한 국고보조금 증액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러한 개정은 국민의 의사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었다. 물론 노태우 정부 아래에서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장부 비치 및 기재 대상자와 회계보고 대상자를 확대하고, 회계장부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 양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전두환 정부에서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구태는 재현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국책사업 시행과 관련한 불법헌금 시비, 공천헌금 시비, 현대그룹의 비자금 정치권 유입 시비, 대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정주영의 폭로 등 보고되지 않은 수많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비가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수된 불법 정치자금들은 정치자금의 공명정대한 운용과 정당회계의 공개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법 취지를 무색케 하였다.

제1절 정당의 수입 · 지출 총괄

1. 정당 수입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노태우 정부 기간 5년 동안 정당활동을 위해 각 정당에 유입된 공식적인 수입금액은 약 5,321억 원이었다.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1988년에 약 760억 원 규모였던 정당수입은 1989년 420억여 원 규모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2년에는 2,840억여 원으로 급등하였다. 이러한 정당수입 규모의 증가는 1989년 12월 제4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후원회를 활성화하고 선거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지급액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의 결과였다. 1992년의 경우 정당수입이 폭증한 것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면서 모든 영역의 수입, 특히 특별당비의 납부액이 특이하게 급증한 결과였다.

한편 노태우 정부 초 1988년 정당의 공식적인 수입원으로는 당비가 5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져 1990년에는 16%에 불과하였고, 1991년에도 정당수입 중 21.9%만이 당비를 통해 조달되었다. 1992년에는 2번의 전국단위 선거가 실시되면서 1,877억여 원이 당비로 납부되어 정당수입 중 66%를 차지하는 특이한 급증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를 보였다.

당비와 달리 국고보조금과 후원회기부금은 1988년 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여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변화를 보여 왔다. 1988년 정당수입 중 단 1.3%에 불과하던 보조금 비중은 1992년까지 매년 6.0%, 20.4%, 13.3%, 14.8%로 상승하였고, 1988년 2.6%를 차지하던 후원회기부금 또한 매년 4.8%, 16.8%, 14.0%, 6.2%로 상승세를 보였다. 규모면에서도 1988년에 약 10억 원 수준이던 보조금은 1992년에 420억여

원으로 40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후원회기부금도 1988년에 20억 원 규모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92년에는 170여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외 당비를 제외하고 정당의 가장 큰 수입원이던 기탁금의 경우 정당수입 중 29.2%를 차지하였던 1988년 이후 매년 41.7%, 33.0%, 37.5%, 7.9%로 변화되어 왔다.

연도별 정당수입 총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전년도 이월	279,194,838	980,338,506	3,180,563,551	4,358,882,200	5,550,807,533	14,349,786,628
당비	45,139,949,983	15,143,289,518	8,214,524,624	17,273,490,165	187,724,935,612	273,496,189,902
기탁금	22,150,430,000	17,528,940,000	16,910,665,943	29,548,953,450	22,345,671,779	108,484,661,172
보조금	999,999,990	2,499,999,900	10,479,281,910	10,479,281,950	42,007,427,780	66,465,991,530
후원회기부금	2,000,000,000	2,000,000,000	8,598,346,069	11,063,739,651	17,632,040,851	41,284,126,571
차입금	4,259,438,034	3,035,231,060	1,513,358,384	1,188,826,450	5,566,015,040	15,562,868,968
기관지발행수입	64,570,000	275,502,800	148,117,759	191,621,065	217,297,950	897,109,574
기타사업수입	1,101,259,486	537,611,554	2,271,295,815	4,700,486,466	2,969,991,526	11,580,644,847
계	75,994,842,331	42,000,913,338	51,316,154,055	78,795,281,397	284,014,188,071	532,121,379,192

※ 수입총액은 각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구·시·군연락소 분을 모두 합한 금액임.

정당별 수입 규모도 정당 총수입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해 왔다. 1988년에 323억여 원 규모이던 여당의 정당수입액은 1992년 997억여 원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제1야당이던 평화민주당(1991년 이후 민주당)도 1988년 158억여 원에서 1992년 719억여 원으로 4.6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여야 간 규모 차이에 있어서는 여당의 우위가 지속되어 왔으나 1991년 이후 그 차이는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1988년의 경우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정당수입은 약 120억~150억 원 규모이던 야 3당에 비해 2배 정도에 달하였다. 특히 1990년 3당합당으로 출범한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의 수입은 398억여 원으로 모든 정당의 수입총액 중 77.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1991년에는 전체 정당수입 중 68.8%로 그 비율이 다소 줄어들었고, 특히 1992년에는 997억여 원 규모의 정당수입을 거두었으나 1,002억여 원 규모의 수입을 올린 제3당 통일국민당에 수위자리를 내주었고, 전체 정당수입 비중에도 있어서도 3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990년 정당수입 규모가 민주자유당 수입액의 20% 남짓한 수준이던 평화민주당과도 그 격차가 매우 줄어들었다. 평화민주당은 1991년 민주당으로 야권통합을 이루어 낸 이후 민주자유당 수입액의 42% 수준으로 수입액이 증가하였고, 1992년에는 민주자유당 수입액의 72% 수준으로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국고보조금 증액과 국회의원선거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상당액의 특별당비를 납부한 결과였다. 민주당의 경우 1992년에 무려 519억여 원의 당비를 납부받아 전체 수입의 90%에 달하였다. 한편 통일국민당의 경우는 신생 정당이었음에도 여당보다 더 많은 정당수입액을 신고하여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 현대 비자금의 정당 유입 시비를 불러왔다.

정당별 연간 수입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32,369,756,581	23,605,603,065	-	-	-	55,975,359,646
통일민주당	14,239,802,288	5,736,880,268	-	-	-	19,976,682,556
신민주공화당	12,582,526,315	6,209,270,556	-	-	-	18,791,796,871
평화민주당	15,840,807,377	6,243,038,092	8,775,395,166	-	-	30,859,240,635
한겨레민주당	961,949,770	206,121,357	137,845,080	-	-	1,305,916,207
민주자유당	-	-	39,834,974,469	54,181,766,730	99,785,266,793	193,802,007,992
민주당	-	-	2,199,373,537	-	-	2,199,373,537
(신선험당)민주당	-	-	-	22,844,331,754	71,926,107,951	94,770,439,705
공명민주당	-	-	50,935,160	80,165,608	-	131,100,768
민중당	-	-	317,630,643	1,689,017,305	-	2,006,647,948
통일국민당	-	-	-	-	100,207,093,479	100,207,093,479
신정치개혁당	-	-	-	-	5,949,471,100	5,949,471,100
진리평화당	-	-	-	-	44,605,000	44,605,000
친민당	-	-	-	-	2,909,290	2,909,290
대한정의당	-	-	-	-	776,120,000	776,120,000
새한국당	-	-	-	-	5,322,614,458	5,322,614,458
계	75,994,842,331	42,000,913,338	51,316,154,055	78,795,281,397	284,014,188,071	532,121,379,192

※ 평화민주당은 1991년 4월 15일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변경 후 91년 9월 16일 민주당으로 신선험당

2. 정당 지출

1988년 이후 5년 동안 전체로 정당은 공식적인 활동비용으로 총 5,026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연간 지출 규모는 1988년 749억여 원에서 1992년에는 2,687억여 원으로 3.6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특히 1992년에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두 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면서 2,687억여 원을 지출하여 지출 규모가 급등하였다.

각 정당이 5년간의 활동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경비는 1,887억여 원을 사용한 선거비용이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1988년에는 전체 지출액 749억여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7억여 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고, 1992년에도 48.8%에 달하는 1,310억여 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1991년에도 159억여 원이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한편 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각 정당은 유급 당직자의 인건비, 사무용품비, 사무소유지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지출경비인 운영경비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출해 왔다. 이는 정당이 활성화되면서 각 정당 조직의 외연이 거대화된 결과였다. 1988년 약 173억원이던 정당 운영경비는 1989년 약 176억 원, 1990년 약 265억 원,

연도별 정당지출 총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운영경비	17,346,211,826	17,665,674,028	26,517,849,864	30,885,859,541	63,159,144,866	155,574,740,125	
정치활동비	조직활동비	7,694,210,551	8,455,301,708	10,760,534,545	14,868,188,780	39,825,642,293	81,603,877,877
	선거비용	40,756,082,775	457,588,105	499,098,478	15,940,690,766	131,094,671,958	188,748,132,082
	조사연구비	1,606,790,979	1,552,189,201	-	-	-	3,158,980,180
	선전비	4,112,497,073	4,658,954,732	4,238,099,197	5,633,576,886	24,290,089,447	42,933,217,335
	훈련비	1,135,161,312	1,020,580,718	-	-	-	2,155,742,030
	사업비	723,842,290	3,526,317,967	1,916,747,859	2,754,108,617	5,567,433,937	14,488,450,670
	기타경비	1,615,334,579	1,481,390,958	3,008,613,834	3,140,004,982	4,763,066,164	14,008,410,517
계	74,990,131,385	38,817,997,417	46,940,943,777	73,222,429,572	268,700,048,665	502,671,550,816	

※ 훈련비, 조사연구비는 1990년도 분 회계보고부터 운영경비에 포함됨.

※ 지출 총액은 각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구·시·군 연락소 모두 합한 금액임.

1991년 약 308억 원으로 점차 증가하여 1992년에 이르러서는 631억여 원이 지출되었다. 이는 1988년에 비해 약 3.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1989년부터 1990년까지는 총 지출액 중 평균 40~50% 정도를 운영경비로 지출하였다. 한편 1990년부터는 조사연구비와 훈련비가 운영경비에 포함되었다.

이외에 지출 영역으로는 조직활동비와 선전비가 5년 동안 각각 816억여 원과 429억여 원이 사용되어 주요 지출 영역으로 나타났다. 선전비의 경우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약 40억~50억 원 규모였으나 1992년에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두 차례의 대규모 선거를 치르면서 242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정당별 지출액에 있어서는 정당별 수입 규모와 비례하여 여당이 5년간 2,362억여

정당별 연간 지출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31,562,157,444	22,217,040,259	-	-	-	53,779,197,703
통일민주당	14,213,867,545	5,726,963,780	-	-	-	19,940,831,325
신민주공화당	12,457,309,549	4,488,881,598	-	-	-	16,946,191,147
평화민주당	15,796,516,434	6,180,899,123	8,666,712,545	-	-	30,644,128,102
한겨레민주당	960,280,413	204,212,657	137,845,080	-	-	1,302,338,150
민주자유당	-	-	35,743,210,259	49,250,592,178	97,491,076,484	182,484,878,921
민주당	-	-	2,042,999,770	-	-	2,042,999,770
(신설합당)민주당	-	-	-	22,224,698,773	71,315,993,615	93,540,692,388
공명민주당	-	-	50,362,052	71,406,897	-	121,768,949
민중당	-	-	299,814,071	1,675,731,724	-	1,975,545,795
통일국민당	-	-	-	-	88,037,480,267	88,037,480,267
신정치개혁당	-	-	-	-	5,736,342,040	5,736,342,040
진리평화당	-	-	-	-	42,325,000	42,325,000
천민당	-	-	-	-	2,909,290	2,909,290
대한정의당	-	-	-	-	775,258,771	775,258,771
새한국당	-	-	-	-	5,298,663,198	5,298,663,198
계	74,990,131,385	38,817,997,417	46,940,943,777	73,222,429,572	268,700,048,665	502,671,550,816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였으며, 1992년 창당된 통일국민당의 경우에는 단 1년 동안 880억여 원을 사용하여 지출 규모에 있어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지출액 증가 비율면에서는 민주정의당이 1988년도 약 316억 원에서 3당합당 이후 1992년 약 975억 원을 신고하여 5년 동안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평화민주당(1991년 이후 민주당)의 경우에도 1988년도 약 157억 원에서 1992년도 약 713억 원으로 4.5배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하여 수입 규모가 늘어난 결과였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제2절 정당의 수입

1. 당비

당비는 1980년 12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차 개정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이후 1989년 12월 제4차 개정에서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당비납부가 자율화되었다. 따라서 각 정당은 당헌·당규 등을 통해 납부의무와 기준 등을 규정하여 당비를 납부 받아 왔다.

민주정의당의 경우 당헌 제5조에서 당비의 납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당규에 당비규정을 마련하여 납부기준에 따른 납부액을 명시하였다. 당비는 월 단위 최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13개 직책별로 구분·구체화하여 제시되었으며, 대표의원 및 국회의장이 월 50만 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가장 많았고, 활동당원의 경우에는 매월 300 원 이상으로 가장 적은 금액을 납부하였다. 한편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은 월 15만 원 이상을 당비로 납부해야 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의 경우에도 당규에 당비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매월 납부를 원칙으로 납부 기준금액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은 당헌을 통하여 당원의 당비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규를 통해 구체적인 당비납부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1990년 민주자유당의 경우 일반당원 월 2,000원 이상에서부터 총재 월 100만 원 이상까지 9등급으로 구분하여 당비납부 기준을 규정하였다. 한편 1991년 야권통합으로 출범한 민주당의 경우 1992년 7월에 당규 개정을 통하여 당비 종류를 일반당비, 직책당비, 특별당비 등 3가지로 세분화하여 그 기준금액을 달리 규정하였다. 모든 당원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당비는 월 1,000원 이상이었으며, 직책당비는 중앙당

부장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5,000원 이상부터 대표최고위원 500만 원, 대통령후보 1,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기준금액을 차등화하였다. 이외에 국회의원선거 등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적정 절차에 의해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각 정당이 당헌·당규를 통해 당원의 당비납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금액까지 제시하고 있음에도 실제 당비는 평당원보다 당 총재와 간부들의 특별당비나 국회의원 전국구 후보자들의 현금이 당비 형식으로 납입되어 왔다. 당비를 납부하는 일반당원은 소수에 불과하였으며, 따라서 구성원 스스로가 납부하는 당비는 정당의 본질적인 목적상 가장 이상적인 수입원이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민주정의당에서 민주자유당으로 이어진 5년간 여당의 당비납부액은 1988년 약 73억 원, 1989년 약 20억 원, 1990년 약 22억 원, 1991년 약 28억 원, 1992년 약 360억 원 등 총 504억여 원이었다. 이는 전체 수입액 중 20.2%에 해당되는 액수였다. 이 가운데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년 동안의 당비납부액은 전체 수입액 중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5~8% 수준에 머물렀다.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1988년과 1992년에는 예외적으로 당비납부액이 정당수입총액 중 20~30% 수준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것은 국회의원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특별당비 납부가 많았던 결과였다. 이후 1995년 12월 대통령비자금사건 조사 과정에서 민주정의당 노태우 총재의 여당지원금이 약 790억 원⁴¹⁾에 달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시 여당의 정당수입이 당비 중심으로 조달되지 않았던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반면 야당은 여당과 달리 당비수입이 정당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반된 현상을 보였다. 1988년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은 각각 약 131억 원, 약 128억 원, 약 110억 원 등 정당수입 중 80% 이상을 당비로 조달하였다. 특히 통일민주당은 수입 중 무려 89.9%를 당비로 조달하였다. 이후 야당의 정당수입 중 당비

41) 한국일보, 1995년 12월 13일자 4면.

비중은 다소 낮아졌지만 10% 이하의 여당과 달리 여전히 당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1992년에 창당된 통일국민당의 경우 1년 동안 당비로 전체 수입의 90.9%에 달하는 910억여 원을 납부받아 당비 중심의 정당수입 조달이라는 외형적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당비 중심의 수입 조달이라는 외형적 특징과는 달리 야당의 경우에도 열악한 정당 수입의 현실적 한계 속에 선거마다 불법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주요 선거의 후보자 공천을 조건으로 특별당비를 받는 등 왜곡된 당비납부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협상에서 야당이 지속적으로 국고보조금 증액과 여당에 집중되는 지정기탁금제도 폐지를 주장해 온 것도 이러한 정당수입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정당별 당비 수입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7,340,395,440	2,001,704,285	-	-	-	9,342,099,725
통일민주당	12,802,008,075	4,713,277,315	-	-	-	17,515,285,390
신민주공화당	11,032,428,032	3,522,182,585	-	-	-	14,554,610,617
평화민주당	13,113,232,006	4,838,015,933	4,836,754,567	-	-	22,788,002,506
한겨레민주당	851,886,430	68,109,400	46,187,000	-	-	966,182,830
민주자유당	-	-	2,205,317,890	2,866,378,330	36,028,928,715	41,100,624,935
민주당	-	-	931,797,270	-	-	931,797,270
(신설합당)민주당	-	-	-	13,309,360,845	51,905,472,814	65,214,833,659
공명민주당	-	-	17,978,000	19,660,000	-	37,638,000
민중당	-	-	176,489,897	1,078,090,990	-	1,254,580,887
통일국민당	-	-	-	-	91,043,340,335	91,043,340,335
신정치개혁당	-	-	-	-	2,806,643,720	2,806,643,720
진리평화당	-	-	-	-	44,605,000	44,605,000
천민당	-	-	-	-	2,909,290	2,909,290
대한정의당	-	-	-	-	776,120,000	776,120,000
새한국당	-	-	-	-	5,116,915,738	5,116,915,738
계	45,139,949,983	15,143,289,518	8,214,524,624	17,273,490,165	187,724,935,612	273,496,189,902

2. 기탁금

1965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각 정당은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정하거나 비지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을 제공 받아 왔다. 법 제정 당시에는 기탁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 12월 제4차 개정 이후부터 1회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이 5,000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 이상의 금전, 유가증권, 이외 물건 등으로 한도가 규정되기 시작하였다. 연간 기탁상한액도 개인은 1년에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많은 금액 이내, 법인 및 단체는 5억 원 또는 직전 사업연도 자본총계의 100분의 2 중 많은 금액까지만 기탁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정당들은 총 1,084억여 원을 기탁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탁금은 여당에 일방적으로 지정기탁되는 특징을 보였다. 1988년과 1989년 2년간 기부된 395억여 원의 기탁금 중 1988년 신민주공화당이 기탁받은 1억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정의당에 지정기탁되었고, 1990년에도 169억여 원의 기탁금이 모두 여당인 민주자유당에 지정기탁되었다. 이후 일부 기탁금이 야당에 기부되는 변화를 보였으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여당의 기탁금 독식현상은 계속되었다. 1991년 총 기탁금은 295억여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258억여 원이 여당인 민주자유당에 집중된 반면 민주당에는 36억여 원만 기탁되었다. 그러나 야당에 대한 기탁금액이 전체 기탁금 중 12.4%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이전까지 야당은 거의 기탁금을 받지 못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특징적인 변화였다. 1992년에는 223억여 원 가운데 202억여 원이 여당인 민주자유당에 기탁되었고, 야당의 경우 민주당 15억여 원을 비롯하여 모두 21억여 원을 기부받았다. 그러나 이는 경제인단체 등에서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비지정으로 기탁한 약 50억 원의 기탁금이 배분된 것이었다.⁴²⁾

42) 한국일보, 1992년 8월 13일자 3면.

한편 기탁금 규모는 큰 변동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정당수입 중 기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여당의 경우 1988년과 1989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수입액 중 기탁금은 각각 68.1%와 74.3%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정당의 수입원이었다. 그러나 1990년과 1991년에는 그 비중이 42.5%와 47.8%로 줄어들었고, 1992년에 이르러서는 국회의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보조금이 대폭 증액되면서 기탁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기탁금 비중 축소는 1989년 이후 중앙당은 물론 지구당과 국회의원까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확대되면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활성화되었고,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액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정당별 기탁금 수입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22,050,430,000	17,528,940,000	-	-	-	39,579,370,000
통일민주당	0	0	-	-	-	0
신민주공화당	100,000,000	0	-	-	-	100,000,000
평화민주당	0	0	0	-	-	0
한겨레민주당	0	0	0	-	-	0
민주자유당	-	-	16,910,665,943	25,898,312,830	20,245,156,919	63,054,135,692
민주당	-	-	0	-	-	0
(신선합당)민주당	-	-	-	3,650,640,620	1,529,495,380	5,180,136,000
통일국민당	-	-	-	-	295,773,640	295,773,640
신정치개혁당	-	-	-	-	273,714,840	273,714,840
새한국당	-	-	-	-	1,513,000	1,513,000
계	22,150,430,000	17,528,940,000	16,910,665,943	29,548,953,450	22,345,653,779	108,484,643,172

※ 정당회계보고 시 1991년도까지는 지정·비지정 기탁금 구분 없이 기탁금 총액만을 보고하였음.

3. 국고보조금

1980년에 이루어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차 개정으로 국가는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개정 당시 국고보조금은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1988년 약 10억 원, 1989년 약 2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하였다.

이후 여야는 1989년 12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4차 개정을 통해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1인당 400원씩’을 예산에 반영하여 매년 정액화 하고 매 분기별로 정당에 보조한다는 국고(경상)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104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어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몇 달 앞둔 1991년 12월 여야는 제5차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금 계상기준 금액을 선거권자 1인당 600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특별시·직할시·도의회의원선거,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마다 선거권자 1인당 300원을 추가 계상하여 해당선거 후보자 등록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제도를 신설하였다. 연이어 제14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1992년 11월 여야는 또다시 제6차 개정을 통해 선거보조금 계상기준을 선거권자당 6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에는 경정보조금뿐 아니라 선거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420여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되었다. 이처럼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계상기준 금액의 상향조정과 경정보조금 이외에 선거보조금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급등세를 보이면서 1988년 약 10억 원이던 국고보조금은 5년 동안 무려 42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총 664억여 원의 보조금이 국고에서 지원되었다.

한편 국고보조금 증가는 정당의 수입구조에도 영향을 주었다. 예산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던 1988년과 1989년의 정당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던 비율은 각각 1%와 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계상기준이 변화하면서 1990년 국고보조금은 정당수입 중 20.4%를 차지하였으며, 1991년과 1992년에도 각각 13.3%와 14.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본 비율, 의석수 비율, 득표수 비율 등 3가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었다. 보조금을

신설할 당시 기본 비율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4당까지 5%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에는 10억 원의 보조금 중 2억 원이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4개 정당에 5,000만 원씩 우선 배분되었다. 이어 잔액 중 50%를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기준에 따라 4억 원이 한겨레민주당을 포함한 5개 정당에 의석 비율로 배분되었고, 나머지 잔액 4억 원은 득표수 비율 배분기준에 따라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한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1988과 1989년 민주정의당은 약 3억 6,000만 원과 9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통일민주당은 각각 약 2억 3,000만 원과 5억 8,000만 원, 평화민주당은 약 2억 2,000만 원과 5억 7,000만 원, 신민주공화당은 약 1억 6,000만 원과 4억 1,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평화민주당에 비해 의석수가 적었던 통일민주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더 많았던 것은 당선자는 적었지만 지역선거구에서 획득한 득표수가 많아 득표수 비율기준에 따른 배분 금액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외 한겨레민주당은 540여만 원과 1,360여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후 1989년 12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4차 개정에서 4당까지 5%씩 지급하던 국고보조금 배분 기본비율이 10%씩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변화된 기준에 따라 1990년 민주자유당은 68억여 원, 평화민주당은 27억여 원, 민주당은 8억여 원, 한겨레민주당은 5,170여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어 1991년 12월 제5차 개정에서도 여야는 4당까지 지급하던 기본 배분비율을 원내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40%를 균등분할하고, 그 이외에 5석 이상을 얻은 비교섭단체는 5%씩,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 득표한 정당 등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정당에 2%씩 지급하도록 또다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과 1992년에 민주자유당은 70억여 원과 197억여 원을, 민주당도 약 34억 원과 137억 원을 각각 배분받았다. 한편 1992년에 창당된 통일국민당은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1992년 76억여 원을, 그 외 군소정당인 신정치개혁당과 새한국당도 8억여 원과 약 4,200만 원을 각각 배분받았다.

정당별 국고보조금 수입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366,457,170	924,891,740	-	-	-	1,291,348,910
통일민주당	233,954,140	581,250,230	-	-	-	815,204,370
신민주공화당	164,514,070	410,160,130	-	-	-	574,674,200
평화민주당	229,627,080	570,079,000	2,735,458,440	-	-	3,535,164,520
한겨레민주당	5,447,530	13,618,000	51,734,380	-	-	70,799,910
민주자유당	-	-	6,831,880,140	7,056,783,350	19,759,579,870	33,648,243,360
민주당	-	-	860,208,950	-	-	860,208,950
(신선험당)민주당	-	-	-	3,422,498,600	13,701,737,420	17,124,236,020
통일국민당	-	-	-	-	7,640,568,380	7,640,568,380
신정치개혁당	-	-	-	-	861,298,990	861,298,990
새한국당	-	-	-	-	44,243,120	44,243,120
계	999,999,990	2,499,999,100	10,479,281,910	10,479,281,950	42,007,427,780	66,465,990,730

이처럼 지급규모가 늘어나면서 정당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각 정당의 입장에서도 점차 그 가치가 커져갔다. 특히 정당 수입원이 제한적이던 야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더욱 중요한 정치자금 조달 수단이었다. 1988년 전체 정당의 총수입 중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단 1.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89년 민주정의당 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중은 3.9%였으며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신민주공화당 등 야당의 경우 각각 정당수입의 10.1%, 9.1%, 6.6%로 비중이 증대되었다. 이어 1990년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의 경우 정당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중이 무려 31.2%와 39.1%로 급등하였으며, 여당인 민주자유당도 수입 중 17.2%가 국고보조금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1991년과 1992년에도 여야는 수입 중 약 13~19%를 국고보조금을 통해 조달하였다. 국고보조금은 1990년 이후 정치자금제도의 변화 과정을 통해 점차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변모해 갔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4. 후원회 기부금

1980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차 개정 과정에서 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각 정당은 중앙당에 후원회를 두고 후원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5년 동안 정당 후원회는 주로 여당을 중심으로 결성·기부되었으며, 야당의 후원회 모금활동은 미미하여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나마 1989년 12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4차 개정에서 후원회 결성이 가능한 범위를 중앙당뿐 아니라 당 지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지구당, 국회의원, 국회의원 후보자까지로 확대한 이후 야당의 후원회 결성도 작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8년과 1989년에는 민주정의당만이 후원회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매년 20억 원을 후원받았다. 1990년 후원회 결성 대상이 확대된 이후 민주자유당은 중앙당후원회를 포함하여 총 232개의 후원회를 결성하였으나 야당은 평화민주당이 중앙당후원회 없이 단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만 결성하였다. 그러나 후원금은 민주자유당에 85억여 원이 기부되었을 뿐 야당은 공식적인 후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1991년 들어 민주자유당의 후원회는 250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제1야당인 민주당은 중앙당후원회를 결성하지 못하고 1개의 지구당후원회와 3개의 국회의원후원회만 결성하였다. 민주자유당은 1991년에도 109억여 원의 후원금을 기부받아 여당 편중현상을 이어갔다. 다만 민중당이 야당으로는 처음으로 중앙당후원회를 결성하여 6,630여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받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당별 후원회 기부금 수입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2,000,000,000	2,000,000,000	-	-	-	4,000,000,000
민주자유당	-	-	8,598,346,069	10,987,421,651	17,423,120,851	37,008,888,571
민주당	-	-	-	0	208,920,000	208,920,000
민중당	-	-	-	66,318,000	-	66,318,000
계	2,000,000,000	2,000,000,000	8,598,346,069	11,053,739,651	17,632,048,851	41,284,126,571

1992년이 되면서 야당의 후원회 결성 상황은 다소 나아졌다. 민주당은 처음으로 중앙당후원회를 결성하는 한편 지구당 등 모두 10개의 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 외 통일국민당과 신정치개혁당, 새한국당 등도 중앙당후원회를 결성하지는 않았지만 9개의 국회의원후원회를 결성하고 모금활동을 벌였다. 한편 1992년 192개의 후원회를 결성한 민주자유당은 후원회를 통해 174억여 원을 모금하였고, 민주당도 처음으로 2억여 원을 기부받았다. 그러나 이외 정당들은 후원회를 통해 전혀 기부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야당의 후원회 모금활동은 저조하였다.

이처럼 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여당에 대한 기부집중현상이 지속되면서 공식적인 후원금은 야당의 정당수입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여당의 경우 5년간 총 후원금 412억여 원 중 99.3%인 410억여 원을 독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야당에 공개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극단적인 여당 편중 현상 속에 후원금은 여당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갔다. 1988년과 1989년에 여당의 수입 중 각각 6.2%와 8.5%를 차지하던 후원금은 이후 1990년에서 1992년까지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연도별 정당수입의 21.6%, 20.3%, 17.5%를 차지하였다.

5. 차입금

각 정당은 정당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차입금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 왔고, 차입금은 회계상 수입내역으로 처리되었지만 결국 갚아야 할 빚이었다. 따라서 정당수입 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 정당은 수입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였음을 의미하였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우리나라 정당들은 모두 155억여 원을 차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차입금의 대부분은 자금사정이 열악하였던 야당들에 의해 조달된 것이었다.

여당의 경우 5년 동안 전체 차입금 중 3.3%에 불과한 약 5억 원의 자금만을 차입한 반면 나머지 150억여 원은 모두 야당이 차입한 자금이었다.

각 정당의 수입내역 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도 여야의 상황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5년 동안 여당의 수입 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0%였다. 그러나 1988년에 평화민주당은 정당수입 중 13.5%가 차입금이었고, 1989년에도 9.9%를 차입금으로 조달하였다. 통일민주당 또한 1988년과 1989년에 정당수입 중 6.9%와 5.9%를 각각 차입하였으며, 신민주공화당의 경우 정당수입 중 차입금 비중이 1988년에 8.2%였으나 1989년에는 무려 32.8%였다.

정당별 차입금 수입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206,665	8,230,990	-	-	-	8,437,655
통일민주당	987,310,540	335,354,750	-	-	-	1,322,665,290
신민주공화당	1,027,998,799	2,033,270,420	-	-	-	3,061,269,219
평화민주당	2,145,268,220	617,014,900	923,469,614	-	-	3,685,752,734
한겨레민주당	98,653,810	41,360,000	10,560,000	-	-	150,573,810
민주자유당	-	-	166,944,770	155,505,000	188,555,000	511,004,770
민주당	-	-	283,939,840	-	-	283,939,840
(신설합당)민주당	-	-	-	679,756,200	2,853,016,390	3,532,772,590
공명민주당	-	-	32,657,160	59,932,500	-	92,589,660
민중당	-	-	95,787,000	293,632,750	-	389,419,750
통일국민당	-	-	-	-	912,694,980	912,694,980
신정치개혁당	-	-	-	-	1,483,709,960	1,483,709,960
새한국당	-	-	-	-	128,039,710	128,039,710
계	4,259,438,034	3,035,231,060	1,513,358,384	1,188,826,450	5,566,015,040	15,562,868,968

1990년에도 평화민주당이 정당수입 중 10.5%, 민주당이 12.9%를 각각 차입하였다. 반면 1991년에 야당통합으로 신설합당한 민주당의 경우 정당수입 중 차입금 비중이 3.0%로 줄었고, 1992년에도 수입 중 4.0%만을 차입을 통해 조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1991년 이후 기탁금 및 국고보조금에 의한 야당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이었으며, 민주당의 경우 1992년 차입금 규모는 5년 중 가장 많은 28억여 원이었다.

6. 기관지 발간사업 수입

수입규모는 작지만 기관지 발간 또한 각 정당의 또 다른 수입원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 동안 정당들이 기관지를 발간하여 조달한 수입액은 총 8억여 원에 불과하였으며, 전체 정당수입 가운데 0%에 가까운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정당별 기관지 발간사업 수입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50,500,000	102,740,000	-	-	-	153,240,000
통일민주당	150,000	11,704,000	-	-	-	11,854,000
신민주공화당	0	48,615,000	-	-	-	48,615,000
평화민주당	13,920,000	111,600,000	50,078,559	-	-	175,598,559
한겨레민주당	0	843,800	0	-	-	843,800
민주자유당	-	-	93,664,220	139,415,625	183,195,000	416,274,845
(신설합당)민주당	-	-	-	22,000,000	34,102,950	56,102,950
민중당	-	-	4,374,980	30,205,440	-	34,580,420
계	64,570,000	275,502,800	148,117,759	191,621,065	217,297,950	897,109,574

기관지 발간사업 수입금 역시 여당이 야당보다 더 많았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1988년 민주정의당은 평화민주당에 비해 3,650여만 원 더 많은 수익을 올렸으며, 이외 정당은 거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거나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이후 1990년부터 여당과 야당의 기관지 발간사업 수입금액 차이는 다소 커졌다. 1992년에 민주자유당은 민주당에 비해 약 1억 5,000만 원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7.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구체적으로 명목화된 수입 이외 예금이자, 자산매각 등의 수입이다. 기타 수입으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각 정당이 신고한 기타수입액은 약 115억 원이었다. 회계보고된 기타수입은 야당보다 여당이 월등히 많았다. 1988년 민주정의당의 기타수입은 4억여 원인 반면 야당은 평화민주당 3억여 원, 통일민주당 2억여 원, 신민주공화당 1억여 원 등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기타수입으로 거두어 들었다. 1989년에도 야 3당이 1억 원 이하의 기타수입을 거둔 반면 민주정의당은 2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다.

1990년에는 여당과 야당의 기타수입액 차이가 더욱 커졌다. 민주자유당이 19억여 원인 반면 제1야당이던 평화민주당은 불과 1억 6,740여만 원이었다. 1991년에 신설합당한 통합야당 민주당의 기타수입은 15억여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여당인 민주

정당별 기타수입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417,143,306	231,496,913	-	-	-	648,640,219
통일민주당	215,173,010	69,850,655	-	-	-	285,023,665
신민주공화당	155,465,554	93,706,670	-	-	-	249,172,224
평화민주당	307,515,616	62,037,316	167,495,017	-	-	537,047,949
한겨레민주당	5,962,000	80,520,000	28,710,000	-	-	115,192,000
민주자유당	-	-	1,910,384,555	2,986,185,734	1,025,555,886	5,922,126,175
민주당	-	-	123,427,477	-	-	123,427,477
(신설합당)민주당	-	-	-	1,511,347,179	1,073,730,016	2,585,077,195
공명민주당	-	-	300,000	0	-	300,000
민중당	-	-	40,978,766	202,953,553	-	243,932,319
통일국민당	-	-	-	-	314,716,144	314,716,144
신정치개혁당	-	-	-	-	524,103,590	524,103,590
새한국당	-	-	-	-	31,885,890	31,885,890
계	1,101,259,486	537,611,554	2,271,295,815	4,700,486,466	2,969,991,526	11,580,644,847

자유당과의 차이는 14억여 원이었다. 1992년에 이르러서는 두 정당 모두 10억여 원의 기타수입을 올렸으나 민주당이 약 5,000만 원 많아 역전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1992년 전체 정당수입총액 가운데 기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1% 수준의 미미한 것이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제3절 정당의 지출

1. 운영경비

정당의 지출비용 중 인건비,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 공공요금 등 정당 운영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운영경비는 5년 간 총 1,555억여 원이 지출되었다. 1988년 정당의 운영경비는 173억여 원 규모였다. 그러나 이후 운영경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대하였으며, 1992년에는 631억여 원이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

정당별 지출에 있어서는 좀 더 큰 규모의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 왔던 여당의 지출 규모가 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1988년 민주정의당의 경우 76억여 원을 운영경비로 지출하였으며, 평화민주당이 44억여 원,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각 27억여 원과 24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1989년 야당들의 운영경비는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든 반면 민주정의당은 오히려 97억여 원으로 증대하였다. 이어 1990년 3당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으로 변신한 민주자유당은 조직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196억여 원을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대폭적인 지출 증가가 있었다. 평화민주당의 경우도 1990년 운영경비 지출 규모는 52억여 원으로 이전 연도에 비해 약 2배 정도로 늘었으나 여당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조직 규모의 열세를 확연하게 드러내었다.

1991년에는 야당통합을 통해 신설합당한 민주당도 52억여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 반면 민주자유당은 또다시 250억여 원으로 지출액이 늘어 여야 간 지출액 차이가 약 5배로 커졌다. 그러나 1992년에는 민주자유당 운영경비가 다소 줄어든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2배 이상 늘어 109억여 원을 지출함으로써 두 정당 간 운영경비 지출액 차이는 약 2.3배로 줄어들었다. 이는 1992년 민주당이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열세에 있던 정당 조직을 확대·강화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1992년 창당된 통일국민당은 단 1년 만에 민주자유당보다 많은 262억 여 원을 운영경비로 지출하여 가장 많은 자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이 또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창당하면서 단기간에 조직을 구성하고 외연을 확대해 나간 결과였다. 1992년 정당지출액 중 운영경비의 비중이 민주당은 15.3%인 반면에 통일국민당은 29.9%라는 것은 이러한 점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다.

정당별 운영경비 지출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7,620,365,618	9,735,426,479	-	-	-	17,355,792,097
통일민주당	2,741,210,095	2,946,218,440	-	-	-	5,687,428,535
신민주공화당	2,417,372,391	2,210,635,904	-	-	-	4,628,008,295
평화민주당	4,437,616,192	2,668,380,198	5,203,968,860	-	-	12,309,965,250
한겨레민주당	129,647,530	105,013,007	105,802,000	-	-	340,462,537
민주자유당	-	-	19,638,523,345	25,066,132,061	24,649,962,241	69,354,617,647
민주당	-	-	1,347,233,752	-	-	1,347,233,752
(신설합당)민주당	-	-	-	5,284,923,302	10,930,298,559	16,215,221,861
공명민주당	-	-	33,509,852	46,895,493	-	80,405,345
민중당	-	-	188,812,055	487,908,685	-	676,720,740
통일국민당	-	-	-	-	26,281,025,286	26,281,025,286
신정치개혁당	-	-	-	-	716,591,890	716,591,890
진리평화당	-	-	-	-	13,728,000	13,728,000
친민당	-	-	-	-	2,909,290	2,909,290
대한정의당	-	-	-	-	38,827,790	38,827,790
새한국당	-	-	-	-	525,801,810	525,801,810
계	17,346,211,826	17,665,674,028	26,517,849,864	30,885,859,541	63,159,144,866	155,574,740,125

한편 민주정의당의 경우 1989년 지출액 중 43.8%, 민주자유당의 경우 1990년과 1991년에 54.9%와 50.9%를 운영경비로 각각 사용하였다. 이처럼 비선거연도에 정당 수입의 절반을 기본적인 운영경비로 지출한 것은 여당이 방대한 조직을 운영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규모와 비율 면에서 여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1

야당 또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지출액 중 43.2%, 60.1%, 23.8%를 매년 운영경비로 사용하여 조직운영에 많은 자금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군소 정당들은 비선거년도에 정당지출을 운영경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1989년과 1990년에 한겨레민주당은 지출액 중 51.4%와 76.8%, 민주당은 1990년에 65.9%, 공명민주당은 1990년과 1991년에 66.5%와 65.7%, 민중당은 63.0%와 29.1%를 각각 운영경비로 지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군소 정당들의 당 재정이 열악하였고, 그 영향으로 정당수입을 운영경비 중심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2. 조직활동비

조직활동비는 조직활동에 사용된 인건비, 조직활동을 위한 여비 및 판공비, 기타 필요한 경비, 대회비, 행사비, 조직대책비, 섭외비 등으로 사용되는 지출경비로 선거비·운영경비와 함께 각 정당이 지출하는 주요 항목이다. 노태우 정부 5년 동안 각 정당은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총 816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1988년 각 정당의 조직활동비 지출액은 민주정의당 29억여 원, 평화민주당 20억여 원, 통일민주당 14억여 원, 신민주공화당 11억여 원, 한겨레민주당 1억여 원 등이었다. 그러나 1989년 들어 야당의 조직활동비는 다소 줄어든 반면 여당은 50억여 원으로 약 1.7배 증가하였다. 특히 1990년에 3당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의 경우 14억여 원을 지출한 제1야당 평화민주당의 약 6배에 달하는 89억여 원을 조직활동비로 지출하여 야당에 비해 조직이 방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출 규모 증가세는 1991년에도 이어져 민주자유당은 106억여 원을 조직활동비로 지출하였고, 야당의 경우에도 통합을 이룬 민주당이 조직 규모를 확장하면서 40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활동비 지출 규모의 증가세와 여야 간 차이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1992년에 변화를 보였다. 1988년 이후 조직활동비 규모가 계속

증가한 여당은 1992년 처음으로 감소하여 17억여 원 줄어든 88억여 원을 지출하였다. 반면 민주당은 1991년에 비해 129억여 원 늘어난 169억여 원을 조직활동비로 지출하였다. 이는 민주자유당 지출 규모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한편 신생정당인 통일국민당도 민주자유당보다 43억여 원 많은 131억여 원을 조직활동비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원내 3당을 제외한 기타정당들의 경우에는 조직활동비 규모가 매우 작아 상대적으로 조직규모가 열세였음을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기타정당 중 가장 많은 조직활동비를 지출한 새한국당의 지출액이 6억여 원에 불과하였으며 신정치개혁당이 1억여 원, 대한정의당과 진리평화당이 약 2,000만원 정도를 조직활동비로 지출하였다. 특히 친민당은 조직활동비로 지출된 금액이 전혀 없었다고 신고하였다.

정당별 조직활동비 지출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2,977,102,177	5,097,279,488	-	-	-	8,074,381,665-
통일민주당	1,408,328,940	1,239,939,516	-	-	-	2,648,268,456
신민주공화당	1,159,556,135	782,603,079	-	-	-	1,942,159,214
평화민주당	2,032,440,559	1,281,755,895	1,495,258,504	-	-	4,809,454,958
한겨레민주당	116,782,740	53,723,730	12,912,200	-	-	183,418,670
민주자유당	-	-	8,950,763,718	10,626,141,108	8,864,227,716	28,441,132,542
민주당	-	-	272,908,973	-	-	272,908,973
(신설합당)민주당	-	-	-	4,051,401,164	16,991,922,305	21,043,323,469
공명민주당	-	-	10,405,000	8,174,610	-	18,579,610
민중당	-	-	18,286,150	182,471,898	-	200,758,048
통일국민당	-	-	-	-	13,164,744,446	13,164,744,446
신정치개혁당	-	-	-	-	110,694,270	110,694,270
진리평화당	-	-	-	-	26,665,000	26,665,000
친민당	-	-	-	-	0	0
대한정의당	-	-	-	-	21,763,726	21,763,726
새한국당	-	-	-	-	645,624,830	645,624,830
계	7,694,210,551	8,455,301,708	10,760,534,545	14,868,188,780	39,825,642,293	81,603,877,877

3. 선거비

선거비는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가장 중요한 지출 항목이다. 각 정당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하면서 임차료와 유지비를 지출해야 하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한다. 또 자동차·선박의 임차료와 유지비, 현수막 제작 및 게시에 필요한 경비, 후보자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비용이 선거비로 지출된다.

정당별 선거비 지출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16,978,830,824	131,421,540	-	-	-	17,110,252,364
통일민주당	8,367,652,898	91,346,220	-	-	-	8,458,999,118
신민주공화당	7,435,646,153	24,303,000	-	-	-	7,459,949,153
평화민주당	7,333,709,177	210,517,345	188,624,478	-	-	7,732,851,000
한겨레민주당	640,243,723	0	0	-	-	640,243,723
민주자유당	-	-	310,474,000	6,827,958,000	52,014,736,368	59,153,168,368
민주당	-	-	0	-	-	0
(신설합당)민주당	-	-	-	8,855,086,396	35,111,774,182	43,966,860,578
공명민주당	-	-	-	0	0	0
민중당	-	-	-	0	257,646,370	257,646,370
통일국민당	-	-	-	-	36,900,750,375	36,900,750,375
신정치개혁당	-	-	-	-	3,360,756,480	3,360,756,480
진리평화당	-	-	-	-	0	0
천민당	-	-	-	-	0	0
대한정의당	-	-	-	-	327,469,855	327,469,855
새한국당	-	-	-	-	3,379,184,698	3,379,184,698
계	40,756,082,775	457,588,105	499,098,478	15,940,690,766	131,094,671,958	188,748,132,082

노태우 정부 5년 동안 각 정당이 선거비로 지출한 총액은 1,887억여 원이었으며, 정당별 선거비 지출 규모 또한 점차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1988년에 민주정의당은 169억여 원, 야 3당도 70억~80억여 원을 선거비로 지

출하였다. 이후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었던 1989년과 1990년 각 정당들은 연간 약 4~5억 원을 선거비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된 1991년에는 159억여 원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1992년에는 1,310억여 원을 선거비로 지출하였다. 이 가운데 1991년의 경우 민주자유당이 68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한 데 반해 민주당은 88억여 원을 신고하여 여당보다 야당의 선거비 지출액이 더 많았다. 한편 1992년에는 민주자유당이 520억여 원, 민주당이 351억여 원, 통일국민당이 369억여 원을 선거비로 지출하여 여당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정당의 지출액 중 선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선거년인 1989년과 1990년은 1%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나, 선거가 있었던 1988년과 1991년 그리고 1992년은 각각 54.4%, 21.8%, 48.8%로 매우 높았다. 전체 정당의 총 지출액 중 전체 선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37.6%로 정당 지출의 3분의 1이상이 선거비로 사용되었다. 각 정당별로도 선거비의 비중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1988년 민주정의당은 지출액 중 약 53.8%를 선거비로 지출하였고, 야당의 경우 평화민주당 46.4%, 통일민주당 58.9%, 신민주공화당 59.7% 등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지출액 중 절반은 선거비로 지출하였다. 1992년의 경우에도 민주자유당이 지출액 중 약 53.4%를, 민주당이 약 49.2%를 선거비로 지출하여, 양당 모두 선거비 지출 비중이 전체 지출액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신고된 선거비 지출액은 선거 이후 선거자금에 대한 정당 간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신고액과 실제 지출액 사이의 괴리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4. 조사연구비

조사연구비는 각 정당이 정책개발을 위해 사용한 연수회·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 비용과 번역료, 서적구입비, 자료수집, 기타 조사연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한다.

정당은 국민에게 다양한 정책 및 공약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연구비는 정당이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그럼에도 노태우 정부 기간에 우리나라 정당들은 정책개발을 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용을 지출해 왔다.

각 정당의 조사연구비는 1988년과 1989년 2년 동안만 지출과목으로 구분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되었다. 1988년 민주정의당은 조사연구비로 약 10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야당의 경우 평화민주당이 약 2억 9,000만 원, 통일민주당이 약 9,000만 원, 신민주공화당이 약 1억 2,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다. 한겨레민주당의 조사연구비 지출액은 약 450만 원에 불과하였다. 1988년 각 정당이 지출한 조사연구비는 전체 지출비용 중 2% 남짓에 지나지 않았다. 정당별로도 민주정의당 3.4%, 평화민주당 1.9%, 통일민주당 0.7%, 신민주공화당 1.0%, 한겨레민주당 0.5%만이 조사연구비로 지출되었다.

정당별 조사연구비 지출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계
민주정의당	1,082,666,815	1,027,180,560	2,109,847,375
통일민주당	93,041,430	137,305,706	230,347,136
신민주공화당	127,459,354	231,929,085	359,388,439
평화민주당	299,117,060	153,658,070	452,775,130
한겨레민주당	4,506,320	2,115,780	6,622,100
계	1,606,790,979	1,552,189,201	3,158,980,180

※ 1990년 이후부터 별도 지출과목으로 구분하여 회계보고하지 않음

이처럼 각 정당이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비에 매우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현상은 1989년에도 이어져 전체지출 비용 중 총 4%만이 조사연구비로 사용되었다. 1988년에 비해 2 배로 늘었다고는 하나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여전히 극미한 수준이었다.

정당별로도 1.0~4.6%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1980년대 정당들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비 지출에 매우 인색하였으며, 국민에게 다양한 정책 및 공약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권획득을 추구하기보다 조직과 선전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더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5. 선전비

선전비는 선전광고, 선전을 위한 여비 및 관공비, 기타 필요한 경비와 기관지 발행 관련 경비를 포함한다. 각 정당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 동안 총 429억여 원을 정당 및 정책에 대한 선전비용으로 사용하였다. 5년간 총 지출액 중 선전비 비중은 약 8.5% 수준이었다. 연간 선전비 지출 비중은 1988년 5.5%에서 1989년 12.0%로 다소 높아졌지만 1990년 9.0%, 1991년 7.7%, 1992년 9.0% 수준에 각각 머물러 각 정당의 선전비는 전체 지출비용 중 10%를 넘지 않았다.

정당별 선전비 지출액은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여당이 더 많았지만 정당별 지출액 중 선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야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1989년 이후에는 야당의 선전비 지출비중이 더 높았다. 1988년 정당별 선전비 지출 규모는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민주정의당 약 20억 9,000만 원을 비롯하여 평화민주당 약 7억 원, 통일민주당 약 8억 원, 신민주공화당 약 4억 원, 한겨레민주당 약 3,000만 원 등으로 전체 지출액 중 3~6% 수준에서 선전비를 지출하였다. 1989년에 들어 각 정당은 1988년과 비슷한 지출액을 선전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정당들의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전체 지출액 중 선전비 지출 비중은 신민주공화당 9.5%를 제외하고 모두 10%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평화민주당과 한겨레민주당의 지출 비중은 각각 13.6%와 12.7%로 민주정의당 12.4%보다 높았다.

1990년에도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은 지출액 중 12.1%와 11.4%를 각각 선전비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신생 민중당은 13.4% 이상을 선전비로 지출하였다. 반면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8.1%만을 선전비로 사용하였으나 그 금액은 약 28억 9,000만 원으로 평화민주당의 2.8배에 달하였고, 민주당에 비해서는 무려 12배 이상 많아 실질적 지출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1992년에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두 차례의 전국단위 선거를 치르면서 각 정당의 선전비 규모는 급등하였다. 민주자유당은 1991년 33억여 원의 2.6배 이상에 달하는 86억여 원, 민주당도 1991년 18억여 원을 지출한 데 비해 2.9배 이상인 53억여 원을 선전비로 각각 지출하였다. 그러나 각 정당의 수입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지출액 대비 비중은 10% 수준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한 미미한 상승에 머물렀다.

정당별 선전비 지출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2,095,971,414	2,747,513,580	-	-	-	4,843,484,994
통일민주당	849,000,120	613,058,220	-	-	-	1,462,058,340
신민주공화당	405,809,860	429,276,840	-	-	-	835,086,700
평화민주당	730,845,279	843,183,902	1,052,099,325	-	-	2,626,128,506
한겨레민주당	30,870,400	25,922,190	8,635,000	-	-	65,427,590
민주자유당	-	-	2,899,951,754	3,315,910,630	8,661,767,275	14,877,629,659
민주당	-	-	234,034,109	-	-	234,034,109
(신선험당)민주당	-	-	-	1,827,619,696	5,330,118,461	7,157,738,157
공명민주당	-	-	3,320,000	3,701,700	-	7,021,700
민중당	-	-	40,059,009	486,344,860	-	526,403,869
통일국민당	-	-	-	-	9,268,555,581	9,268,555,581
신정치개혁당	-	-	-	-	597,054,730	597,054,730
진리평화당	-	-	-	-	0	0
천민당	-	-	-	-	0	0
대한정의당	-	-	-	-	46,197,400	46,197,400
새한국당	-	-	-	-	386,396,000	386,396,000
계	4,112,497,073	4,658,954,732	4,238,099,197	5,633,576,886	24,290,089,447	42,933,217,335

6. 훈련비

당원교육훈련비는 정당이 소속 당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회·강연회 등을 통해 정강·정책의 이해, 특정 현안에 대한 소속 정당의 대처방안 숙지, 당원의 능력개발 및 소속감 고취 등을 위해 소요되는 정당의 필수경비라 할 수 있다. 세부내역에는 교·강사료 및 특별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교육 및 연구자료 수집비, 피교육자에 대한 급식비·여비, 교육훈련을 위한 장소·시설 임차료 및 유지비,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등이 포함된다.

1988년과 1989년에 각 정당의 당원교육훈련비 지출내역은 민주정의당이 1988년 약 5억 6,000만 원과 1989년 6억 7,000만 원이었고, 평화민주당은 1988년 약 1억 2,000만 원과 1989년 1억 1,000만 원이었다. 이러한 지출규모는 전체 지출비중에 대비해 1% 남짓한 수준의 미미한 것이었다. 그 외 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도 1988년과 1989년 각각 약 3억 3,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 1억 1,000만 원과 6,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이 또한 전체 지출액 대비 3% 미만의 규모였다.

이러한 정당의 당원교육훈련비 지출액을 소속 당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민주정의당이 1988년 200원과 1989년 262원이었고, 평화민주당은 1988년 266원과 1989년 221원이었다.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평화민주당 등 야 3당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당원과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민주시민 의식 고양과 정당 정치 발전을 위하여 정치교육에 열성을 쏟음으로써 진성당원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각 정당은 지출 총액에서 3% 미만의 적은 금액만을 당원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지출하였다.

한편 당원교육훈련비는 1989년까지만 회계보고되었고, 1990년 이후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경비에 포함하여 보고하였다.

정당별 훈련비 지출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계
민주정의당	563,239,020	675,716,665	1,238,955,685
통일민주당	335,659,560	158,905,923	494,565,483
신민주공화당	111,081,052	68,258,400	179,339,452
평화민주당	121,944,280	112,521,330	234,465,610
한겨레민주당	3,237,400	5,178,400	8,415,800
계	1,135,161,312	1,020,580,718	2,155,742,030

※ 1990년 이후 훈련비는 별도 지출과목으로 구분하여 회계보고하지 않음.

7. 사업비(정책추진경비)

사업비는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비를 제외하고 정당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각 정당이 5년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144억여 원으로 전체 지출액 중 2.9%에 불과하였다. 연도별 정책추진 비용의 경우에도 1989년에 9.1%로 일시적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 외 연도에는 1988년 1.0%, 1990년 4.1%, 1991년 3.8%, 1992년 2.1%로 나타나 오히려 정책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지출비용은 감소세를 보였다.

정당별 정책추진 비용에 있어서는 1988년의 경우 야당이 여당인 민주정의당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특히 평화민주당은 민주정의당에 비해 8.7배에 달하는 비용을 정책추진경비로 사용하였고, 신민주공화당도 3.6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1989년을 기점으로 여당의 정책추진경비는 야당에 비해 월등히 많아졌다. 1989년에 민주정의당은 야당 중 가장 많은 정책추진경비를 지출한 평화민주당에 비해 6.9배 이상이 많은 약 26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1990년에도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평화민주당에 비해 8.8배 이상이 많은 약 16억 4,000만 원을 정책추진경비로 지출하였다. 이러한 여당의 절대우위 현상은 1991년까지 이어졌다.

1992년 들어서는 신설합당한 민주당이 약 23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약 21억 원 지출한 민주자유당보다 다소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1992년 원내 제1당, 제2당의 정책추진경비 지출 비중은 전체 지출비용 중 2~3%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1992년 창당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한 통일국민당의 경우 막대한 운영경비, 조직활동비, 선거비를 지출한 것과 달리 전체 지출비중 가운데 0.2% 수준인 약 1억 4,000만 원을 정책추진경비로 지출하였다. 반면 단 1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신정치개혁당은 전체 지출액 중 12.3%를 넘는 약 7억 원을 정책추진경비로 지출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정당별 사업비(정책추진경비) 지출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49,675,060	2,657,944,000	-	-	-	2,707,619,060
통일민주당	45,057,600	268,797,870	-	-	-	313,855,470
신민주공화당	179,670,780	203,840,547	-	-	-	383,511,327
평화민주당	430,077,100	387,869,850	187,802,084	-	-	1,005,749,034
한겨레민주당	19,361,750	7,865,700	3,700,000	-	-	30,927,450
민주자유당	-	-	1,647,264,572	1,909,583,973	2,105,146,030	5,661,994,575
민주당	-	-	75,075,223	-	-	75,075,223
(신설합당)민주당	-	-	-	659,000,514	2,361,052,308	3,020,052,822
공명민주당	-	-	850,000	1,000,000	-	1,850,000
민중당	-	-	2,055,980	184,524,130	-	186,580,110
통일국민당	-	-	-	-	140,126,599	140,126,599
신정치개혁당	-	-	-	-	704,780,000	704,780,000
진리평화당	-	-	-	-	0	0
친민당	-	-	-	-	0	0
대한정의당	-	-	-	-	0	0
새한국당	-	-	-	-	256,329,000	256,329,000
계	723,842,290	3,526,317,967	1,916,747,859	2,754,108,617	5,567,433,937	14,488,450,670

8. 기타경비

기타경비는 정당이 지출한 정치활동 비용 중 선거 관계 비용, 정책개발비 등 특정 항목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비용을 총칭하는 비용을 말한다. 노태우 정부 기간에 정당별 기타경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민주정의당(1990년 이후 민주자유당)은 1988년 약 1억 9,000만 원에서 1992년 약 11억 9,000만 원으로 지출금액 대비 6.3배로 증가하였고, 평화민주당(1991년 이후 민주당)도 1988년 약 4억 1,000만 원에서 1992년 약 5억 9,000만 원으로 지출금액 대비 1.4배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당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정당 경비 중 기타경비 지출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정당별 기타경비 지출액

(단위: 원)

구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민주정의당	194,306,516	144,557,947	-	-	-	338,864,463
통일민주당	373,916,902	271,391,885	-	-	-	645,308,787
신민주공화당	620,713,824	538,034,743	-	-	-	1,158,748,567
평화민주당	410,766,787	523,012,533	538,959,294	-	-	1,472,738,614
한겨레민주당	15,630,550	4,393,850	6,795,880	-	-	26,820,280
민주자유당	-	-	2,296,232,870	1,504,866,406	1,195,236,854	4,996,336,130
민주당	-	-	113,747,713	-	-	113,747,713
(신설합당)민주당	-	-	-	1,546,667,7015	590,827,800	2,137,495,501
공명민주당	-	-	2,277,200	11,635,094	-	13,912,294
민중당	-	-	50,600,877	76,835,781	-	127,436,658
통일국민당	-	-	-	-	2,282,277,980	2,282,277,980
신정치개혁당	-	-	-	-	246,464,670	246,464,670
진리평화당	-	-	-	-	1,932,000	1,932,000
친민당	-	-	-	-	0	0
대한정의당	-	-	-	-	341,000,000	341,000,000
새한국당	-	-	-	-	105,326,860	105,326,860
계	1,615,334,579	1,481,390,958	3,008,613,834	3,140,004,982	4,763,066,164	14,008,410,517

비록 기타경비의 지출비중이 총지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기타경비 지출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회계의 투명성이 그만큼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즉, 기타경비는 어디에 지출한 것인지를 일반당원이나 국민이 알 수 없으므로 지출통제가 곤란할 뿐 아니라 정당회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하여 정치권에서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기타경비 항목의 폐지가 논의 되기도 하였다.



부록

1. 정당의 변천과정표
2.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3. 중앙당 등록·말소 현황
4. 정당의 당원수
5. 정당의 활동연지
6. 창당발기취지문·창당 및 합당선언문
7. 정당의 강령·기본정책

1. 정당의 변천과정표

➡ 대표자 변경 등 ➡ 흡수 합당 ➡ 신설 합당 ■■■▶ 재창당 등

등록당시		변천과정																											
정당명	등록년월일 대표자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민주공화당	63.5.10 정구영	63.9.5 대표자변경 박정희																		79.11.16 대표자변경 김종필	80.10.27 해산 (헌법부칙 제7조)								
민정당	63.6.28 김병노	63.9.15 대표자변경 윤보선	64.11.27 자유민주당을 흡수합당	64.5.11 민중당으로 신설합당(소멸)																									
민주당	63.8.17 박순천	64.10.5 국민의당을 흡수합당		65.5.11 민중당으로 신설합당(소멸)																									
자유민주당	63.9.9 김준연	63.11.8 대표자변경 김도연	64.11.27 민정당으로 흡수합당(소멸)																										
국민의당	63.9.13 김병노	64.10.5 민주당으로 흡수합당(소멸)																											
자유당	63.10.9 장택상	64.5.8 대표자변경 남승학		66.12.18 대표자변경 이재학			70.1.26 신민당으로 흡수합당(소멸)																						
한국독립당	63.10.30 김홍일	64.6.24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조각산		67.3.25 대표자변경 신공제			68.3.28 대표자변경 이태구		70.2.3 신민당으로 흡수합당(소멸)																				
민중당	65.5.11 윤보선·박순천	65.5.11 신설합당 민중당			67.2.11 신민당으로 신설합당(소멸)																								
신한당	66.5.30 윤보선	66.5.30 등록 신한당				67.2.11 신민당으로 신설합당(소멸)																							
신민당	67.2.11 유진오	67.2.11 신설합당 신민당				69.9.8 해산 (정당법 제39조)																							
신민당	69.9.22 유진오	69.9.22 등록 신민당		자유당(70.1.26)과 한국독립당(70.2.3)을 흡수합당		70.2.17 대표자변경 유진산	71.5.12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김홍일	71.10.16 대표자변경 김홍일	72.9.28 대표자변경 유진산	74.5.8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김의택		74.8.27 대표자변경 김영삼	76.9.21 대표자변경 이철승		79.6.7 대표자변경 김영삼		80.10.27 해산 (헌법부칙 제7조)												
민주통일당	73.1.30 양일동											73.1.30 등록 민주통일당									80.10.27 해산 (헌법부칙 제7조)								
통일사회당	64.4.7 이봉학						67.4.7 등록 통일사회당	70.4.29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김철		71.1.19 대표자변경 김철	73.7.2 등록취소 (정당법 부칙2·3항)																		
통일사회당	74.1.21 안필수											74.1.21 등록 통일사회당									80.10.27 해산 (헌법부칙 제7조)								
추풍회 (통한당)	63.8.3 오재영						67.3.28 당명변경 통한당	71.5.3 등록취소 (정당법 부칙2·3항)																					
정민회 (정의당)	63.9.9 변영태	63.12.10 대표자변경 송중근					67.3.30 당명-대표자변경 정의당 이세진	69.1.21 대표자변경 진복기		71.5.4 등록취소 (정당법 부칙2·3항)																			
신흥당	63.9.13 장이석	63.10.31 대표자변경 표문화	65.2.1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																										
신민회 (민중당)	63.9.26 성보경						67.3.24 당명-대표자변경 민중당 김준연	67.5.6 대표자변경 성보경						73.7.2 등록취소 (정당법 부칙2·3항)															
보수당	63.10.28 김명윤						66.2.18 해산 (정당법 제39조)																						
대중당	67.3.22 서민호						67.3.22 등록 대중당	71.5.1 대표자변경 이몽		72.1.28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이동화	73.6.21 해산 (정당법 제39조)																		
자민당	67.4.27 이종윤						67.4.27 등록 자민당	71.5.3 등록취소 (정당법 부칙2·3항)																					
민주당	67.5.6 조재천						67.5.6 등록 민주당	70.12.15 해산 (정당법 제39조)																					
국민당	71.1.23 윤보선									71.1.23 등록 국민당	71.8.2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조중서	73.7.2 등록취소 (정당법 부칙2·3항)																	

등록당시		변천과정											
정당명	등록년월일 대표자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민주자유당	90. 2. 15 노태우·김영삼·김종필										90. 2. 15 신설합당 민주자유당	90. 5. 25 대표자변경 노태우	
공명민주당	90. 8. 3 고태만										90. 8. 3 등록 공명민주당		
민중당	90. 11. 19 이우재·김상기·김낙중										90. 11. 19 등록 민중당		
민주당	91. 9. 16 김대중											91. 9. 16 신설합당 민주당	
민주당	90. 6. 18 이기택										90. 6. 18 등록 민주당	91. 9. 16 민주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평화민주당 (신민주연합당)	87. 11. 13 김대중							87. 11. 13 등록 평화민주당	88. 3. 31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박영숙	88. 6. 20 대표자변경 김대중		91. 4. 15 평화민주당 신민주연합당	91. 9. 16 민주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민주정의당	81. 1. 17 전두환							87. 7. 11 대표자변경 권한대행 노태우	87. 8. 13 대표자변경 노태우		90. 2. 15 민주자유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통일민주당	87. 5. 6 김영삼							87. 5. 6 등록 통일민주당	88. 3. 14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김명윤	88. 6. 2 대표자변경 김영삼		90. 2. 15 민주자유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신민주공화당	87. 11. 11 김종필							87. 11. 11 등록 신민주공화당				90. 2. 15 민주자유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민주한국당	81. 1. 21 유치송					85. 4. 9 대표자변경 조윤필	85. 5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김중섭	85. 9. 19 대표자변경 유치송		88. 4. 29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민주사회당	81. 1. 23 고정훈		82. 3. 29 신정사회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한국국민당	81. 1. 24 김종철					85. 3. 29 대표자변경 이만섭				88. 4. 29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민권당	81. 1. 24 김의택			83. 2. 14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김경두	83. 22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조기형	83. 6. 3 대표자변경 임제홍	84. 7. 11 대표자변경 대표최고위원 최인수	85. 17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조기형	85. 12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김홍소	85. 2. 15 등록취소 (정당법 제21(2) 3)			
원일민립당	81. 1. 26 박재원	81. 3. 28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신정당	81. 1. 31 김갑수		82. 3. 29 신정사회당으로 신설 합당(소멸)										
안민당 (자유민주당)	81. 1. 31 용태영		82. 1. 12 당명변경 자유민주당			85. 2. 15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사회당	81. 2. 5 김철	81. 3. 28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한국기민당	81. 3. 5 이민국	81. 3. 28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통일민족당	81. 3. 6 양덕인	81. 3. 28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민주농민당 (근로농민당)	81. 3. 7 신중목	81. 12. 28 당명·대표자변경 근로농민당 이규정				85. 2. 15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불민당 (신민주당)	81. 8. 14 염중훈					85. 1. 7 당명변경 신민주당				88. 4. 18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2)			
신정사회당	82. 3. 29 고정훈		82. 3. 29 신설합당 신정사회당			85. 5. 3 대표자변경 이원형	85. 11. 5 대표자변경 대표최고위원 권대훈	86. 5. 28 사회민주당으로 흡수 합당(소멸)					
신한민주당	85. 1. 22 이민우					85. 1. 22 등록 신한민주당		87. 12. 3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이택희	88. 1. 20 대표자변경 신도환	88. 4. 6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서용승	88. 4. 29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사회민주당	85. 7. 15 김철					85. 7. 15 등록 사회민주당	86. 5. 28 신정사회당을 흡수 합당	86. 11. 18 대표자변경 권두영		88. 4. 29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기독교성민당	85. 11. 13 진복기					85. 7. 15 등록 기독교성민당				88. 4. 29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민중민주당	86. 9. 5 유한열						86. 9. 5 등록 민중민주당		87. 5. 2 자진해산 (정당법 제39조)				
제3세대당	87. 3. 13 한영수							87. 3. 13 등록 제3세대당	88. 4. 23 대표자변경 직무대행 공광덕	88. 4. 29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일체민주당	87. 6. 19 김선적							87. 6. 19 등록 일체민주당		88. 4. 18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2)			
한주의 통일한국당	87. 11. 5 신정일							87. 11. 5 등록 한주의통일한국당		88. 4. 29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한국민주당	88. 2. 10 정대영								88. 2. 10 등록 한국민주당	88. 2. 26 대표자변경 장병관	85. 4. 18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2)		
정의평화당 (우리정의당)	88. 3. 11 김상철								88. 3. 11 등록 정의평화당	88. 3. 31 당명변경 우리정의당	85. 4. 29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민중의당	88. 3. 11 정태윤								88. 3. 11 등록 민중의당		88. 4. 29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3)		
한겨레민주당	88. 4. 6 예춘호									88. 4. 6 등록 한겨레민주당		91. 3. 13 등록취소 (정당법 제38조(1) 1)	

2.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

(1988년도)

창당준비 위원회명	대표자	신고일	활동기간 만료일	소멸	
				일자	사유
정의평화당	김상철	1988. 01. 16	1988. 07. 16	1988. 03. 11	정당등록
민중의당	정태윤	1988. 02. 08	1988. 08. 08	1988. 03. 11	정당등록
민주산업당	강동준	1988. 02. 16	1988. 08. 16	1988. 08. 16	자진해산
한겨레민주당	예춘호	1988. 02. 17	1988. 08. 17	1988. 04. 06	정당등록

(1989년도)

창당준비 위원회명	대표자	신고일	활동기간 만료일	소멸	
				일자	사유
도덕민주당	박문수	1989. 02. 28	1989. 08. 28	1989. 09. 01	활동기간만료
사회노동당	이원근	1989. 03. 09	1989. 09. 09	1989. 09. 10	활동기간만료
기독교사회민주당	박태섭	1989. 03. 24	1989. 09. 24	1989. 09. 26	활동기간만료
국가민주당	성보경	1989. 07. 27	1990. 01. 27	1990. 01. 30	활동기간만료
기독교사회민주당	박태섭	1989. 10. 23	1990. 04. 23	1990. 04. 24	활동기간만료
조국수호당	최면창	1989. 11. 02	1989. 05. 02	1990. 05. 04	활동기간만료

(1990년도)

창당준비 위원회명	대표자	신고일	활동기간 만료일	소멸	
				일자	사유
대한녹색당	송순창	1990. 01. 12	1990. 07. 12	1990. 07. 13	활동기간만료
공명민주당	고태만	1990. 02. 08	1990. 08. 08	1990. 08. 03	정당등록
국가민주당	성보경	1990. 02. 08	1990. 08. 08	1990. 08. 09	활동기간만료
민주당	이기택	1990. 02. 28	1990. 08. 28	1990. 06. 18	정당등록
사회당	하기락	1990. 05. 07	1990. 11. 07	1990. 11. 08	활동기간만료
민중당	이우재 김상기	1990. 06. 25	1990. 12. 25	1990. 11. 19	정당등록
대한녹색당	송순창	1990. 07. 20	1991. 01. 20	1991. 01. 22	활동기간만료
사회당	하기락	1990. 11. 29	1991. 05. 29	1991. 05. 30	활동기간만료
새민주공화당	안상준	1990. 12. 18	1991. 06. 18	1991. 06. 19	활동기간만료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부 록

(1991년도)

창당준비 위원회명	대표자	신고일	활동기간 만료일	소멸	
				일자	사유
기독교민당	진복기	1991. 02. 05	1991. 08. 05	1991. 08. 06	활동기간만료
하나님당	김동주	1991. 07. 23	1992. 01. 23	1992. 01. 24	활동기간만료
기독교민당	진복기	1991. 08. 10	1992. 02. 10	1992. 02. 11	활동기간만료
대한민주당	유준하	1991. 10. 01	1992. 04. 01	1992. 04. 02	활동기간만료
도덕민주당	박문수	1991. 10. 14	1992. 04. 14	1992. 04. 15	활동기간만료

(1992년도)

창당준비 위원회명	대표자	신고일	활동기간 만료일	소멸	
				일자	사유
통일국민당	정주영	1992. 01. 10	1992. 07. 10	1992. 02. 10	정당등록
한국노동당	주대환	1992. 01. 20	1992. 07. 20	1992. 07. 21	활동기간만료
새한당	김동길	1992. 01. 24	1992. 07. 24	1992. 07. 25	활동기간만료
정치개혁협의회 (신정치개혁당)	박찬중	1992. 01. 29	1992. 07. 29	1992. 03. 04	정당등록
신신민당	이태구	1992. 01. 29	1992. 07. 29	1992. 07. 30	활동기간만료
하느님당	김동길	1992. 01. 31	1992. 07. 31	1992. 08. 01	활동기간만료
기독교민당	진복기	1992. 02. 12	1992. 08. 12	1992. 08. 13	활동기간만료
제1제산당	이상범	1992. 02. 13	1992. 08. 13	1992. 08. 14	활동기간만료
자유민주당	이병호	1992. 02. 20	1992. 08. 20	1992. 08. 21	활동기간만료
대한민주당	유준하	1992. 04. 09	1992. 10. 09	1992. 10. 10	활동기간만료
진리자유당 (진리평화당)	허경영	1992. 05. 04	1992. 11. 04	1992. 11. 06	정당등록
통일한국당	권오철	1992. 05. 15	1992. 11. 15	1992. 11. 17	활동기간만료
한국민권당	박영진	1992. 06. 17	1992. 12. 17	1992. 12. 19	활동기간만료
대정치진보당	정희원	1992. 06. 29	1992. 12. 29	1992. 12. 30	활동기간만료
하느님당	김동길	1992. 08. 12	1993. 02. 12	1993. 02. 13	활동기간만료
기독교민당	진복기	1992. 08. 14	1993. 02. 14	1993. 02. 16	활동기간만료
대한정의당	이병호	1992. 09. 23	1993. 03. 23	1992. 11. 19	정당등록
친민당	권정수	1992. 10. 12	1993. 04. 12	1992. 11. 19	정당등록
대한민주당	유준하	1992. 10. 14	1993. 04. 14	1993. 04. 15	활동기간만료
새한국당	채문식	1992. 10. 23	1993. 04. 23	1992. 11. 14	정당등록
세계평화통일가정당	박태경	1992. 12. 15	1993. 06. 15	1993. 06. 16	활동기간만료
대정치진보당	정희원	1993. 01. 19	1993. 07. 19	1993. 07. 20	활동기간만료

3. 중앙당 등록·말소 현황

정당명	대표자 (등록시)	등록연월일	소멸		비고
			사유	일자	
한국민주당	정대영	1988. 02. 10	등록취소	1988. 04. 18	· 말소사유: 정당법 § 38①2
정의평화당	정상철	1988. 03. 11	등록취소	1988. 04. 29	· 명칭변경: 정의평화당 ⇒ 우리정의당(88. 3. 31) · 말소사유: 정당법 § 38①3
민중의당	정태윤	1988. 03. 11	등록취소	1988. 04. 29	· 말소사유: 정당법 § 38①3
한겨레민주당	예춘호	1988. 04. 06	등록취소	1991. 03. 13	· 말소사유: 정당법 § 38①1
민주자유당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1990. 02. 15	신설합당	1997. 11. 24	·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신설 · 명칭변경: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96. 2. 7) · 말소사유: 민주당과 합당하여 한나라당으로 신설
민주당	이기택	1990. 06. 18	신설합당	1991. 09. 16	· 말소사유: 신민주연합당과 합당하여 민주당으로 신설
공명민주당	고태만	1990. 08. 03	등록취소	1992. 03. 30	· 말소사유: 정당법 § 38①3
민중당	이우재 김상기 김낙중	1990. 11. 19	등록취소	1992. 03. 30	· 말소사유: 정당법 § 38①3
민주당	김대중	1991. 09. 16	신설합당	1995. 12. 21	·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신설 · 새한국당을 흡수(95. 3. 7) · 말소사유: 개혁신당과 합당하여 통합민주당으로 신설
통일국민당	정주영	1992. 02. 10	신설합당	1994. 07. 08	· 말소사유: 신정치개혁당과 합당하여 신민당으로 신설
신정치개혁당	박찬중	1992. 03. 04	신설합당	1994. 07. 08	· 말소사유: 통일국민당과 합당하여 신민당으로 신설
진리평화당	허경영	1992. 11. 06	자진해산	2004. 02. 13	· 명칭변경: 진리평화당 ⇒ 신민주당(93. 1. 18) ⇒ 통일한국당(95/4/1) · 말소사유: 정당법 § 39
친민당	권정수	1992. 11. 19	등록취소	1996. 04. 13	· 말소사유: 정당법 § 38①3
대한정의당	이병호	1992. 11. 19	자진해산	1994. 02. 15	· 말소사유: 정당법 § 39
새한국당	이종찬	1992. 11. 19	흡수합당	1995. 03. 07	· 말소사유: 민주당에 흡수

4. 정당의 당원수

정당별 연도별 시도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1988	1989	1988	1989	1988	1989
계	2,804,476 (224)	2,578,665 (224)	419,291 (198)	482,462 (202)	606,954 (180)	639,888 (182)
서울	578,996 (42)	588,418 (42)	117,870 (40)	148,019 (42)	167,201 (41)	177,550 (42)
부산	183,481 (15)	115,562 (15)	46,385 (15)	43,772 (15)	33,051 (14)	36,518 (14)
대구	189,805 (8)	159,929 (8)	12,039 (7)	12,572 (7)	27,231 (8)	27,740 (8)
인천	106,732 (7)	114,003 (7)	16,319 (7)	19,978 (7)	8,765 (7)	8,774 (7)
광주	36,663 (5)	26,699 (5)	444 (2)	709 (3)	695 (2)	695 (2)
대전	96,375 (4)	96,375 (4)	6,462 (4)	7,785 (4)	27,493 (4)	28,068 (4)
경기	470,255 (28)	405,439 (28)	49,495 (28)	58,998 (28)	67,058 (23)	77,526 (24)
강원	176,046 (14)	159,520 (14)	12,831 (13)	15,671 (13)	39,272 (12)	40,430 (12)
충북	107,614 (9)	107,656 (9)	12,215 (7)	13,115 (8)	35,784 (9)	35,818 (9)
충남	175,672 (14)	151,843 (14)	58,332 (13)	54,775 (13)	103,210 (13)	103,517 (13)
전북	116,705 (14)	119,255 (14)	4,053 (9)	5,613 (9)	13,228 (8)	13,807 (8)
전남	119,379 (18)	118,336 (18)	2,937 (9)	3,026 (9)	15,278 (8)	15,310 (8)
경북	152,283 (21)	148,318 (21)	22,867 (19)	31,627 (19)	40,817 (13)	42,910 (13)
경남	248,811 (22)	242,343 (22)	51,777 (22)	61,195 (22)	26,235 (16)	30,174 (16)
제주	45,659 (3)	24,969 (3)	5,265 (3)	5,609 (3)	1,636 (2)	1,051 (2)

※ ()의 내서는 지구당수임 (이하 같음).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록

정당별 연도별 시도별	평화민주당			한겨레민주당		
	1988	1989	1990	1988	1989	1990
계	458,533 (169)	508,412 (178)	552,505 (183)	11,572 (61)	10,938 (50)	9,780 (44)
서울	113,995 (41)	158,597 (41)	181,851 (41)	4,950 (15)	4,548 (11)	4,031 (9)
부산	9,593 (8)	9,609 (8)	10,795 (10)	708 (4)	708 (4)	708 (4)
대구	1,237 (5)	1,266 (5)	1,257 (5)	315 (8)	153 (4)	197 (5)
인천	12,689 (7)	14,612 (7)	21,044 (7)	92 (2)	92 (2)	92 (2)
광주	46,596 (5)	49,227 (5)	49,585 (5)	63 (2)	35 (1)	35 (1)
대전	11,476 (4)	13,068 (4)	5,274 (4)	160 (2)	160 (2)	160 (2)
경기	73,564 (23)	54,606 (25)	65,333 (25)	935 (10)	965 (10)	893 (9)
강원	8,633 (10)	9,856 (11)	7,940 (12)	-	-	-
충북	3,592 (6)	4,673 (8)	4,777 (8)	-	-	-
충남	11,606 (8)	14,218 (9)	14,644 (9)	1,709 (5)	1,647 (3)	1,766 (3)
전북	81,478 (14)	86,069 (14)	89,102 (14)	88 (2)	88 (2)	30 (1)
전남	70,348 (18)	73,576 (18)	77,547 (18)	1,534 (2)	1,534 (2)	1,534 (2)
경북	3,437 (7)	6,150 (8)	7,433 (9)	587 (6)	577 (6)	136 (4)
경남	6,922 (10)	9,520 (12)	12,985 (13)	431 (3)	431 (3)	198 (2)
제주	3,367 (3)	3,365 (3)	2,938 (3)	-	-	-

정당별 연도별 시도별	민주자유당			민 주 당		
	1990	1991	1992	1990	1991	1992
계	2,352,005 (219)	3,067,656 (220)	4,960,665 (237)	50,868 (70)	376,446 (98)	935,419 (237)
서울	575,583 (41)	716,977 (42)	1,331,360 (44)	15,645 (17)	68,959 (10)	318,161 (44)
부산	67,787 (14)	168,874 (14)	292,588 (16)	4,876 (7)	3,232 (5)	25,967 (16)
대구	74,956 (8)	126,629 (8)	386,508 (11)	6,418 (5)	915 (3)	21,656 (11)
인천	120,399 (7)	227,876 (7)	313,804 (7)	3,758 (1)	987 (1)	28,286 (7)
광주	35,571 (5)	40,384 (5)	49,465 (6)	-	54,136 (5)	61,876 (6)
대전	15,075 (4)	56,238 (4)	170,889 (5)	848 (2)	2,393 (1)	22,636 (5)
경기	403,709 (28)	501,057 (28)	827,590 (31)	7,977 (13)	24,088 (10)	113,072 (31)
강원	161,594 (14)	167,556 (14)	224,767 (14)	2,718 (7)	217 (1)	14,946 (14)
충북	126,813 (9)	119,925 (9)	124,683 (9)	1,751 (2)	1,512 (3)	22,284 (9)
충남	205,333 (14)	253,259 (14)	192,455 (14)	2,117 (5)	2,268 (4)	48,189 (14)
전북	66,851 (14)	102,382 (14)	91,283 (14)	-	109,219 (14)	95,995 (14)
전남	70,131 (17)	121,101 (17)	125,884 (19)	-	82,698 (18)	90,481 (19)
경북	183,427 (21)	197,820 (21)	327,296 (21)	2,470 (4)	4,585 (7)	17,376 (21)
경남	218,176 (20)	241,974 (20)	475,987 (23)	2,290 (7)	18,677 (13)	50,881 (23)
제주	26,600 (3)	25,604 (3)	26,106 (3)	-	2,560 (3)	3,613 (3)

정당별 연도별 시도별	공명민주당		민중당		통일국민당
	1990	1991	1990	1991	1992
계	3,289 (49)	3,935 (55)	4,509 (49)	6,225 (58)	4,450,618 (237)
서울	606 (11)	591 (11)	1,494 (12)	2,153 (13)	1,270,191 (44)
부산	403 (10)	403 (10)	62 (1)	316 (2)	323,510 (16)
대구	51 (1)	51 (1)	150 (3)	195 (4)	244,715 (11)
인천	-	-	387 (6)	400 (6)	257,384 (7)
광주	-	40 (1)	83 (1)	126 (1)	92,151 (6)
대전	328 (2)	607 (2)	-	38 (1)	89,010 (5)
경기	433 (6)	433 (6)	805 (8)	1,036 (10)	593,571 (31)
강원	-	99 (2)	479 (2)	828 (3)	144,216 (14)
충북	-	58 (1)	68 (1)	66 (1)	136,831 (9)
충남	100 (2)	100 (2)	-	-	135,504 (14)
전북	47 (1)	55 (1)	58 (1)	133 (2)	203,719 (14)
전남	117 (2)	113 (2)	81 (1)	123 (2)	173,491 (19)
경북	52 (1)	52 (1)	645 (9)	555 (9)	253,619 (21)
경남	958 (10)	1,139 (12)	197 (4)	256 (4)	508,499 (23)
제주	194 (3)	194 (3)	-	-	24,207 (3)

정당별 연도별 시도별	신정치개혁당	신민주당	친 민 당	대한정의당	새한국당
	1992	1992	1992	1992	1992
계	17,248 (66)	2,178 (49)	1,737 (51)	2,079 (51)	39,369 (77)
서울	2,798 (13)	429 (10)	30 (1)	358 (10)	8,534 (19)
부산	2,398 (4)	460 (8)	105 (3)	106 (3)	1,847 (7)
대구	808 (3)	-	347 (11)	-	668 (2)
인천	148 (2)	-	154 (5)	129 (4)	4,577 (4)
광주	-	-	30 (1)	-	8,620 (5)
대전	352 (3)	157 (5)	146 (4)	-	2,559 (3)
경기	2,234 (8)	179 (4)	157 (5)	323 (10)	3,988 (10)
강원	802 (2)	369 (8)	30 (1)	31 (1)	602 (3)
충북	430 (7)	76 (2)	-	656 (9)	2,613 (5)
충남	933 (6)	-	102 (3)	62 (2)	818 (3)
전북	201 (2)	181 (5)	63 (2)	32 (1)	1,702 (5)
전남	1,747 (4)	46 (1)	289 (9)	60 (1)	815 (4)
경북	621 (3)	103 (2)	204 (4)	68 (2)	207 (2)
경남	3,776 (9)	178 (4)	80 (2)	254 (8)	1,465 (4)
제주	-	-	-	-	354 (1)

5. 정당의 활동연지

가. 1988년도

1) 민주정의당

연 월 일	주 요 활 동
1988. 1. 7	❖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의 - 당헌개정(대표위원제 부활)
1988. 1. 11	❖ 13대 총선 입후보자 공천 접수 마감
1988. 1. 15	❖ 창당 7주년 기념식
1988. 1. 19	❖ 의원총회
1988. 1. 27	❖ 13대 총선 입후보공천자 심사 착수
1988. 2. 2	❖ 당직자회의 - 경찰문제 연구 소위 구성
1988. 2. 9	❖ 홍보대책위원회의
1988. 2. 15	❖ 제123차 중앙집행위원회의
1988. 2. 22	❖ 제5차 임시전당대회 - 노태우총재 제3대 총재로 선출
1988. 2. 25	❖ 노태우 총재 제13대 대통령 취임
1988. 3. 5	❖ 제124차 중앙집행위원회
1988. 3. 8	❖ 의원총회
1988. 3. 10	❖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1988. 3. 18	❖ 제125차 중앙집행위원회의
1988. 3. 19	❖ 국회의원 입후보 공천자 대회
1988. 3. 23	❖ 다방조합과의 간담회
1988. 3. 30	❖ 수도권지역 홍보위원회의
1988. 4. 4	❖ 선거상황실발족, 지구당 임시대회 - 서울 마포울위원장 박주천등 23개 지구당
1988. 4. 12	❖ 제126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총선공약발표
1988. 4. 15	❖ 총선공약 추가발표 - 채문식 대표위원, 여·야 공명선거 추진대책위 구성제의
1988. 4. 18	❖ 선거대책본부 성명발표
1988. 5. 2	❖ 당직개편 - 전국 224개 지구당위원장 회의 및 총재예방 중앙집행 위원회 간담회 시·도지부위원장 개편 - 서울 남재희, 부산 장성만, 경기 이한동, 강원 심명보, 충북 정종택, 충남 김현욱, 전북 고건, 전남 김식, 경북 정호용, 경남 정순덕
1988. 5. 3	❖ 신·구당직자 이·취임식
1988. 5. 10	❖ 당직자회의
1988. 5. 12	❖ 원외 지구당위원장 회의
1988. 5. 13	❖ 국회의원 당선자 대회
1988. 5. 16	❖ 당·정 정책조정회의
1988. 5. 17	❖ 중앙집행위원회 개편

1988. 5. 19	❖ 총재, 신입당직자 및 중앙집행위원 임명장 수여
1988. 5. 20	❖ 제127차 중앙집행위원회
1988. 5. 24	❖ 의원총회 및 초선의원 오리엔테이션
1988. 5. 27	❖ 법령개선특위 회의
1988. 6. 1	❖ 국정감사제도 공청회
1988. 6. 2	❖ 의원세미나, 중소기업지원방안 심포지움
1988. 6. 7	❖ 제128차 중앙집행위원회의
1988. 6. 8	❖ “정치발전과 제13대 국회의 역할” 세미나
1988. 6. 13	❖ 통일문제특위 회의, 통일정책강좌
1988. 6. 16	❖ 평화통일위원회의, 학원문제 특별 분과위원회
1988. 6. 17	❖ 국회특위 구성에 따른 당대책위(7개) 구성
1988. 6. 20	❖ 분야별 민원상담위원 위촉, 노총 의장단 초청 간담회
1988. 6. 21	❖ 제129차 중앙집행위원회의, 도시시민대책 특별분과위원회의
1988. 6. 22	❖ 춘천계량기제작소 종업원 수은중독사건 실태조사반 현지조사 중소기업대책 당정협의
1988. 6. 27	❖ “남북통일을 위한 국민토론회” 개최, 6·29 선언 기념사진전(6. 27~7. 4)
1988. 6. 28	❖ 제130차 중앙집행위원회의
1988. 6. 29	❖ 당·정연석회의 - 6·29 선언 실천점검 및 경제민주화 선언 발표
1988. 7. 5	❖ 제13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1988. 7. 7	❖ 제132차 중앙집행위원회의, 노대통령 통일정책 특별선언보고회
1988. 7. 11	❖ 확대당직자회의
1988. 7. 12	❖ 제133차 중앙집행위원회의
1988. 7. 18	❖ 의원총회
1988. 7. 19	❖ 의회발전연구회 학생 당건학
1988. 7. 23	❖ 도시 저소득층 대책 정책토론회
1988. 7. 28	❖ 당·정 정책조정회의
1988. 7. 30	❖ 제134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윤길중 대표위원, 동남아 순방차 출국(7. 30~8. 7)
1988. 8. 1	❖ 평화통일위 학원문제특위 연석회의
1988. 8. 2	❖ 기초과학 육성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1988. 8. 9	❖ 제135차 중앙집행위원회의
1988. 8. 10	❖ 원외 지구당 위원장 회의
1988. 8. 14	❖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참관단(단장 박준병), 사무총장 출국(8. 14~22)
1988. 8. 16~30	❖ 중앙위 분과위원장 경선시작(17개 분과)
1988. 8. 17~9. 19	❖ 도시 저소득층 실태조사단 파견
1988. 8. 22~9. 3	❖ 전국사무처요원 연수시작
1988. 8. 25	❖ 올림픽자원봉사단 발대식
1988. 8. 30	❖ 제136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올림픽 이후의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
1988. 8. 31	❖ 수해 피해지역 재해대책기금 전달
1988. 9. 2	❖ 재일본 중국인 경제학자 초청 간담회

1988. 9. 5
 1988. 9. 8
 1988. 9. 13
 1988. 9. 15
 1988. 9. 16
 1988. 9. 20
 1988. 9. 22
 1988. 10. 4
 1988. 10. 8
 1988. 10. 15
 1988. 10. 18
 1988. 10. 20
 1988. 10. 22
 1988. 10. 25
 1988. 10. 26
 1988. 10. 28
 1988. 11. 1
 1988. 11. 3
 1988. 11. 4
 1988. 11. 5

 1988. 11. 7

 1988. 11. 8

 1988. 11. 10
 1988. 11. 11
 1988. 11. 12

 1988. 11. 14
 1988. 11. 17
 1988. 11. 23
 1988. 11. 30
 1988. 12. 5
 1988. 12. 14
 1988. 12. 20
 1988. 12. 23
 1988. 12. 26
 1988. 12. 27
 1988. 12. 29

- ❖ '89 예산안 관련 당 · 정협의회
- ❖ 고추가격대책 당 · 정협의
- ❖ 도서지역 의료보험 실시방안 토론회
- ❖ 제137차 중앙집행위원회의, 대학생 현상논문 심사결과 발표
- ❖ 지하철 노사분규 대책회의
- ❖ 당 소속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부인 세미나, 중추절 위문방문활동(9. 20~24)
- ❖ 확대당직자회의
- ❖ 당 · 정 정책 조정회의
- ❖ 장애인자 올림픽기금 전달, "AIDS 예방대책" 세미나
- ❖ 청년특별위원 임명장 수여식
- ❖ 제138차 중앙집행위원회의
- ❖ 올림픽후의 정책과제 세미나
- ❖ 한국개신교 교단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 ❖ 정책위 상임위원장단회의
- ❖ 장애인올림픽출전 한국선수단 축하행사, 전경련과 간담회
- ❖ 공무원노조 파업대책 간담회
- ❖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
- ❖ 중소기업연쇄점협회와의 간담회
- ❖ 서울 노원구를 지구당 임시대회(박은태 위원장 선출), 산림정책 세미나
- ❖ 전남나주, 담양 · 장성지구당 임시대회
(나주 : 나창주 위원장 선출, 담양 · 장성 이상하 위원장 선출)
- ❖ 경북 안동, 충남 대전 · 보령지구당 임시대회
(안동 : 김길홍 위원장 선출, 대전 · 보령 : 박창규 위원장 선출)
- ❖ 지구당 임시대회 (위원장 선출) - 전남 고흥 : 지연태,
- 서울 강남갑 : 이대순, - 충남 부여 : 조남옥, - 서울동작갑 : 한갑수
- ❖ 충남 금산지구당임시대회 (위원장 경선 : 박은영 위원장 선출)
- ❖ 전북 정주 · 정읍지구당임시대회 (위원장 경선 : 윤규정 위원장 선출)
- ❖ 강원 강릉지구당 임시대회 (최돈웅 위원장 선출)
대전 등을 지구당 임시대회 (김원웅위원장 선출)
- ❖ 일본 자민당 효고현 청년국방한단과의 간담회
- ❖ 21세기 선진사회에 적합한 노사관계 모델 정립을 위한 세미나
- ❖ 제139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정책위 문공 · 국방분과 연석회의
- ❖ 홍보책자 발간 - "국민 대화해만이 안정된 내일을 약속합니다."
- ❖ 제140차 중앙집행위원회의
- ❖ 청와대 당직자회의
- ❖ 제142차 중앙집행위원회의, 대표위원 일행 군부대 위문
- ❖ 주요 당직자 연말 위문활동
- ❖ 한국기독교청년지도자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 ❖ 제143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주요 당직자 연말 위문활동
- ❖ 정책위 노동분과 당 · 정협의

2) 통일민주당

연 월 일

1988. 1. 6
 1988. 1. 9
 1988. 1. 26
 1988. 2. 9
 1988. 2. 16
 1988. 2. 20
 1988. 2. 29
 1988. 3. 3
 1988. 3. 8
 1988. 3. 12
 1988. 4. 1
 1988. 4. 10
 1988. 4. 20
 1988. 4. 23
 1988. 5. 9
 1988. 5. 12

 1988. 5. 16
 1988. 5. 24
 1988. 5. 27
 1988. 5. 31
 1988. 6. 21
 1988. 6. 28
 1988. 7. 12
 1988. 7. 25
 1988. 8. 2
 1988. 8. 9
 1988. 8. 24
 1988. 8. 31
 1988. 9. 5
 1988. 9. 9
 1988. 9. 13
 1988. 9. 20
 1988. 9. 22

주 요 활 동

- ❖ 임시전당대회 - 중요당무의 심의결정(총재진 사퇴에 관한 건)
 - 당헌개정 및 기타사항
- ❖ 정무회의(선거법시안에 관한 토론)
- ❖ 정무회의(아권 통합에 관한 건)
- ❖ 정무회의(총재직 사퇴처리 건)
- ❖ 정무회의(합동의총 민주·평민에 관한 건)
- ❖ 정무회의(선거법에 관한 토론)
- ❖ 정무회의(아권통합관계 경과 설명)
- ❖ 임시전당대회 - 아권단일화를 위한 위임기구 구성에 관한 건
- ❖ 정무회의(국회의원선거법 날치기 통과에 관한 건)
- ❖ 정무회의(제13대 총선에 임하여)
- ❖ 민주신문 12호 4면 200만부 지구당별 보급
- ❖ 민주신문 13호 4면 200만부 지구당별 보급
- ❖ 민주신문 14호 4면 200만부 지구당별 보급
- ❖ 민주신문 14호 호외 2면 100만부 지구당별 보급
- ❖ 정무회의(전당대회 개최에 관한 토론)
- ❖ 정기전당대회 - 당헌개정관계
 - 총재선출의 건
 - 부총재 선출의 건
- ❖ 정무회의(총선이후 첫 정무회의에 임하여)
- ❖ 정무회의(30당 총재회담 보고 및 당비문제 결정)
- ❖ 정무회의(원내대책회의)
- ❖ 정무회의(5공 비리에 관한 토의)
- ❖ 정무회의(부정선거 관계에 관한 토론)
- ❖ 정무회의(특위의 정상적 활동에 관한 토론)
- ❖ 정무회의(사고당처리 국회의원선거 15% 미만)
- ❖ 정무회의(북한서신에 관한 토론)
- ❖ 정무회의(5공 광주특위 보고사항)
- ❖ 정무회의(총재 방일에 관한 보고)
- ❖ 정무회의(방일 결과에 관하여)
- ❖ 당사매입이전
- ❖ 정무회의(당사이전관련 증립동→마포)
- ❖ 신당사 입주기념 이웃잔치
- ❖ 올림픽지원에 관하여
- ❖ 올림픽경기 당차원의 최대한 지원결의
- ❖ 올림픽청소원 오찬 및 동내의 전달(140벌)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1988. 10. 11~16
 1988. 10. 15
 1988. 10. 28
 1988. 11. 4
 1988. 11. 5
 1988. 11. 7
 1988. 11. 12
 1988. 11. 13
 1988. 11. 16
 1988. 11. 18
 1988. 11. 21
 1988. 12. 16
 1988. 12. 20
 1988. 12. 22
 1988. 12. 29

- ❖ 총재초청 일본사회당 이사바시전위원장 내한
- ❖ 장애인올림픽 개막식 장애인 수송용 버스 6대 지원
- ❖ 전산실 설치(컴퓨터 단말기 구입)
- ❖ 국민정치시대 개막을 위한 공청회 참석
- ❖ 전 · 이구속 서울시민대회 상황파악
- ❖ 삼육재활원 관계자 접견
- ❖ 서부민주시민협의회 사무실 입주식
- ❖ 전태일 노동열사 18주기 추모식 참석
- ❖ 미문화원 사건 재판 항의 사건처리 상황파악을 위한 남대문서 방문
- ❖ 법정항의 사건관련 구속자 대책회의
- ❖ 법정항의 사건관련 구속 유가족 면회
- ❖ 연말연시 재활원 방문(에덴)
- ❖ 연말연시 양로원 방문(청운)
- ❖ 연말연시 도시 영세민(행당2동) 및 고아원(미아리 수녀회) 방문
- ❖ 연말연시 소년원 방문(시흥)

3) 신민주공화당

연 월 일

1988. 1. 6
 1988. 1. 8
 1988. 1. 11
 1988. 1. 25

 1988. 2. 10
 1988. 2. 16
 1988. 2. 26
 1988. 2. 29
 1988. 3. 5
 1988. 3. 8
 1988. 3. 22
 1988. 3. 25
 1988. 3. 29

주 요 활 동

- ❖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1차회의
- ❖ 동심회 정기총회 및 총재초청간담회 - 기청 공화기독인회 구성 운영방안 회의
- ❖ 여 · 야 사무총장 회담
- ❖ 정무회의 - 청산위원회 구성,
 - 민주공화당의 잔여 기본재산은 신민주공화당에 기증한다는 내용의
 의결서를 작성의결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특별위원회의 지방자치법 개정 1차 회의
- ❖ 제1차 정책 토론회 개최
- ❖ 공화당재산반환청구소송 제2차 공판 제17차 당무회의
- ❖ 창당 제25주년기념식(힐튼호텔)
- ❖ 공화기독인회 2월 정기 조찬예배(세종문화회관)
- ❖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의 제5차회의
- ❖ 국회의원후보 공천 신청자 접수
- ❖ 1차 공천자 발표(124명) - 제23차 당무회의
- ❖ 시 · 도지부 사무총장 회의
- ❖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후보 공천자대회(서울반도 유스호스텔)

1988. 4. 1	❖ 공명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여성당직자 교육 실시(제1차 교육)
1988. 4. 4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2차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1988. 4. 8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3차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1988. 4. 12	❖ 부정선거사례수집 실시 당 재산 반환청구 소송 제 4차 공판연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제5차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1988. 5. 6	❖ 원외지구당위원장 회의(한글회관)
1988. 5. 18	❖ 야3당 총재회담 - 국회특별위원회 구성 - 시국사범 석방 및 수배해제 - 80년 시국공직자의 복권 - 지방자치전면 실시 -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
	제28차 당무회의 5.18광주항쟁 추모대회(88체육관)
1988. 5. 20	❖ 여성당원 단합 체육대회(88체육관)
1988. 5. 28	❖ 청와대 4차 회담 개최
1988. 6. 1	❖ 제29차 당무회의
1988. 6. 3	❖ 연합철강 구사대 당사내방 농성(138명)
1988. 6. 9	❖ 공주사범대학생 당사 농성(72명)
1988. 6. 15	❖ 도시노점상 연합회 당사농성(200명)
1988. 6. 16	❖ 오대양채권단 집단내방(210명)
1988. 6. 24	❖ 80년 해직공직자 진정단 당사내방(650명)
1988. 6. 28	❖ 노동총연맹 산별 노련 여성부장 초청간담회 전상자 및 장애자 대책 특별위원회의 88장애자 올림픽 지원 및 참여계획
1988. 7. 16	❖ 제주도지부 현판식
1988. 7. 20	❖ 제32차 당무회의 북한측 답신접수(7. 18서한 회신)
1988. 7. 26	❖ 정책학술토론회(대한상공회의소)
1988. 7. 29	❖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야권 3당 합동공청회
1988. 8. 1	❖ 노점상 생존권을 탄압하는 악법철폐를 위한 대토론회 평화대행진
1988. 8. 3	❖ 제35차 당무회의
1988. 8. 4	❖ 국회통일 정책특위 개최
1988. 8. 5~19	❖ 정무장관실 주관 사무처간부 해외시찰
1988. 8. 13	❖ 중앙상임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 개최
1988. 8. 17	❖ 공화통신 제1호 발간
1988. 8. 26	❖ 태능선수촌 및 올림픽 조직위원회 방문
1988. 8. 30	❖ 8월 정례조찬기도회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분규 진상조사단 파견

1988. 8. 31

1988. 9. 6

1988. 9. 7

1988. 9. 8

1988. 9. 19~21

1988. 10. 5

1988. 10. 12

1988. 10. 15

1988. 10. 29

1988. 10.27~11.1

1988. 11. 7

1988. 11. 11

1988. 11. 17

1988. 11. 18

1988. 11. 23

1988. 11. 30

1988. 12. 1 ~ 15

1988. 12. 6

❖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1차회의

❖ 시·도지부 사무국장 회의 - 지구당 조직강화
- 지자체 대책협의

전상자 및 장애인특별위원회 회의

중앙상임위 축산분과위원회 회의

❖ 중앙상임위 민정분과위원회 회의

제37차 당무회의

❖ 중앙상임위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부정선거 소송 2차공판(대법원 301호법정)

(대구 서구갑, 대구 수성구, 인천 북구을)

❖ 국회의원 하계연수회(2박 3일)

❖ 제38차 당무회의

지역감정해소 국민운동협의회 의장단 총재 방문

❖ 제7차 야3당 정책위의장 회의

주한외교사절단 초빙 만찬회(힐튼호텔)

❖ 서울 장애인 올림픽대회 개최식 참가

공화통신 제8호 발간,

금오공대생 당사 방문(34명)

❖ 당재기 1주년 기념식(세종문화회관)

연합철강정상화추진위원회 당사 점거농성

❖ 전국가톨릭농민회 당사 점거농성

❖ 거창양민학살 유족회 당사방문

❖ 5대양사건 진상규명투쟁위원회의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농축산물 수입저지 및 제값 받기 전국농민대회 참석
(이종근 부총재)

선거소송 5차공판 - 인천북구를 지구당 : 대구 수성구 지구당

남북국회회담 제6차 예비 접촉

전국 농민단체 협의회 농축산물

수입저지 및 제값 받기대회 참석

❖ 금요강좌(정치사적 전환기의 의미)

크린랩(주) 간부노조원 당사 방문

서울지역 사범대학 학생협의회 대표 당사방문

❖ 미 영화 배포 저지 및 영화진흥법 개정을 위한 영화인 투쟁위원회 방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인권위원회 한국·일본대표방문

전국연근해오징어 채낚기 연합회 포항지부 회원 당사방문

5·18 광주민중항쟁 투쟁단체 간부 당사 방문

❖ 의원총회, 제13대 총선 선거소송 현장검증

❖ 지구당 실태조사(지역 선관위 사무과장)

❖ 한시택시 사업자 집단당사 방문

1988. 12. 15
1988. 12. 17
1988. 12. 23

- ❖ 당홍보 팜플릿 제작, 총재 연하장 발송,
제113 국회의원 선거소송 6차공판(인천 북구을, 대구 수성구)
- ❖ 당소속 국회의원 귀향 활동자료 제작
농·어가 부채 해결방안 홍보책자 발간 및 배포
- ❖ 중앙당사 이전

4) 평화민주당

연 월 일

주 요 활 동

1988. 1. 7
1988. 1. 8
1988. 1. 16
1988. 2. 3
1988. 3. 1
1988. 3. 3
1988. 3. 9
1988. 3. 15
1988. 3. 17
1988. 4. 8
1988. 4. 19
1988. 4. 24
1988. 4. 28
1988. 5. 7
1988. 5. 18
1988. 5. 20
1988. 5. 28
1988. 6. 1
1988. 6. 6
1988. 6. 8
1988. 6. 11
1988. 6. 15

- ❖ 선거대책위원장 회의
- ❖ 선거법개정 소위원회 구성
- ❖ 지지제법 소위원회 구성
- ❖ 재야인사 98명 입당식
- ❖ 제69주년 3·1절 기념행사
- ❖ 제1차 임시전당대회
- ❖ 총재 기자회견
- ❖ 조직강화 특위 구성
조직책 신청 접수
- ❖ 한·미 정책회담
김대중 총재 사퇴 기자회견
- ❖ 제13대 국회의원후보공천자대회
- ❖ 광주 대집회
- ❖ 여의도 대집회
- ❖ 제13대 국회의원 당선자 환영대회
- ❖ 제2차 임시 전당대회 - 김대중총재 선출, - 당헌, 당규 채택
- ❖ 제8주기 5·18광주민주항쟁 추도식
- ❖ 양심수 전원석방, 사면복권, 수배해제촉구 결의대회
- ❖ 3당총재 청와대 회담
- ❖ 국군통합병원 위로 방문
- ❖ 제33주년 현충일 추도식
- ❖ 야권3당 총재회담
- ❖ 태능선수촌 방문
- ❖ 국방부 안보브리핑 참석

1988. 7. 10
 1988. 7. 25
 1988. 7. 27
 1988. 7. 30
 1988. 8. 1
 1988. 8. 2
 1988. 8. 5
 1988. 8. 19~23
 1988. 8. 31
 1988. 9. 6
 1988. 9. 12
 1988. 9. 21
 1988. 9. 22
 1988. 9. 23
 1988. 10. 4
 1988. 10. 6
 1988. 10. 10
 1988. 10. 17
 1988. 10. 22

 1988. 10. 29
 1988. 11. 1
 1988. 11. 5
 1988. 11. 10~11
 1988. 11. 12
 1988. 11. 14
 1988. 12. 3
 1988. 12. 15
 1988. 12. 20

 1988. 12. 21
 1988. 12. 22

- ❖ 제1차 의원세미나
- ❖ 제1차 당직자 수련대회
- ❖ 증권거래소 방문
- ❖ 대전대학생 장애인 체육대회 방문
- ❖ 육군3사단방문
- ❖ 원외 지구당위원장 정책세미나
- ❖ 충남대덕연구단지 방문
- ❖ 필리핀방문(총재외 12명)
- ❖ 총재 청와대 영수회담
- ❖ 해군본부, 공군본부 방문
- ❖ 평민대학 개강
- ❖ 돈암동고개 한가위 잔치 참석
- ❖ 성나자로 마을, 난곡동 빈민촌 위로 방문
- ❖ 공주, 대전 교도소 방문
- ❖ 삼청교육대 비리조사특위구성 및 피해자 접수
- ❖ 4당 초청 올림픽선수단 환영만찬
- ❖ 서초동 꽃동네 화재현장 위로 방문
- ❖ 창당1주년기념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표어모집
- ❖ 소련 과학 아카데미소속 미국, 캐나다문제 연구소장 알버토프씨의 총재 소련 초청 발표
- ❖ 정책 대토론회(부산)
- ❖ 정책 대토론회(광주)
- ❖ 정책 대토론회(대구)
- ❖ 창당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 창당1주년기념 국정보고대회
- ❖ 당사이전 리셉션(각계인사 2,000명 참석)
- ❖ 삼청교육대 및 의문사 진상보고 대회
- ❖ 전국 원외지구당위원장 회의
- ❖ 8개 고아원, 양로원 위로방문(혜명, 상록, 명진, 우성, 성모자애, 흥파, 청운, 선덕원)
- ❖ 군부대 위로방문(육군26사, 해병2사단, 공군10전투비행단)
- ❖ 치안본부, 중부·마포서 방문
- ❖ 일선파출소 초소 위로방문

5) 한겨레민주당

연 월 일
1988. 2. 17
1988. 3. 19
1988. 8. 18
1988. 9. 6
1988. 9. 14
1988. 10. 15
1988. 10. 19
1988. 10. 20
1988. 11. 5
1988. 11. 6
1988. 11. 13
1988. 11. 19
1988. 11. 21
1988. 11. 29
1988. 12. 17
1988. 12. 18
1988. 12. 19-23

주 요 활 동
❖ 한겨레민주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 한겨레민주당 중앙당 창당
❖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공청회(제1차)
❖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공청회(제2차)
❖ 진보정당 결성을 위한 정치연합 발족
❖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및 석방자환영대회
❖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 당기관지 “진보정치” 창간
❖ 전두환, 이순자 체포 쫓기대회
진보정치 호외 발간
❖ 제2차 중앙위원회 개최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및 노동법 개정 전국대회 참가
❖ “진보정치” 2호 발간
❖ “완전 지지제 실현을 위한” 민주당체 공청회
❖ 시민토론회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개최
❖ 전국순회 강연회(1차~남해)
❖ 전국순회 강연회(2차~부산)
❖ 제1차 당 정치연수

나. 1989년도

1) 민주정의당 (90. 2. 15 민주자유당으로 신설합당)

연 월 일
1989. 1. 4
1989. 1. 10
1989. 1. 13
1989. 1. 14
1989. 1. 17
1989. 1. 24

주 요 활 동
❖ 시무식 및 주요당직자 청와대 신년 하례
❖ 제144차 중앙집행위원회의
❖ 중앙위 분과별 불우시설 위문활동
❖ 창당8주년 기념식 및 다과회, 청와대 만찬
❖ 제145차 중앙집행위원회의
❖ 민정신문 창당8주년 기념특집호 발간
❖ 제146차 중앙집행위원회의

1989. 1. 25
 1989. 1. 26
 1989. 1. 27
 1989. 1. 30
 1989. 1. 31
 1989. 2. 2

 1989. 2. 3
 1989. 2. 9
 1989. 2. 11
 1989. 2. 17
 1989. 2. 21
 1989. 2. 22
 1989. 2. 24
 1989. 2. 27
 1989. 2. 28

 1989. 3. 7

 1989. 3. 10
 1989. 3. 13
 1989. 3. 14
 1989. 3. 15
 1989. 3. 22
 1989. 3. 25
 1989. 3. 27

 1989. 3. 28
 1989. 3. 30
 1989. 3. 31
 1989. 4. 4
 1989. 4. 6

 1989. 4. 18
 1989. 4. 19
 1989. 4. 20
 1989. 4. 21
 1989. 4. 24

- ❖ 대도시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
- ❖ 교육관계법 개정에 관한 당 · 정협의
- ❖ 정책위 4개분과 당 · 정협의
- ❖ 대표위원 주한 캐나다대사 접견
- ❖ 제147차 중앙집행위원회의
- ❖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세미나
 대표위원, 주한 파키스탄대사 접견
 민정신문 84호 발간
- ❖ 일본 자민당 청년당원일행 당사 방문
- ❖ 임시국회 대책회의
- ❖ 당무감사결과 발표회
- ❖ 대표위원, 주한 포르투갈대사 접견
- ❖ 제148차 중앙집행위원회의
- ❖ 대통령 취임1주년기념 세미나
- ❖ 대통령 취임1주년기념 '보통사람의 밥' 행사
- ❖ 광주문제, 삼청교육, 해직공직자 대책당 · 정협의
- ❖ 제149차 중앙집행위원회의
 대표위원, 3.1운동대표 후손 및 광복회장단 초청간담회
- ❖ 제150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서민주택건설 당 · 정협의
- ❖ 농어촌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 ❖ 5대사회악 근절을 위한 당 · 정협의
- ❖ 제15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 ❖ 공약대책 당 · 정협의
- ❖ 지하철분규 대책회의
- ❖ 지지제법관련 당 · 정협의
- ❖ 제152차 중앙집행위원회의
 농어촌 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
- ❖ 교육관계법 관련 당 · 정협의
- ❖ 청와대 당직자 회의
- ❖ 대표위원, 소련 이스베스차지와의 인터뷰
- ❖ 제153차 중앙집행위원회의
- ❖ 학원문제 특별위원회의
 이동민원상담실 발대식
- ❖ 제154차 중앙집행위원회의
- ❖ 청와대 당직자회의
-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세미나
- ❖ 대표위원, 아시안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
- ❖ 주택문제 대책특위원회의

1989. 4. 25	대표위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
	❖ 제155차 중앙집행위원회의
	5대사회악 척결 중간결산 회의
1989. 5. 2	❖ 제156차 중앙집행위원회의
1989. 5. 3	❖ 동해안특정해역 조정대책 당 · 정협의
1989. 5. 10	❖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대표위원,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
	❖ 산업근로청년 위문활동
1989. 5. 16	❖ 성년의 날 기념 소년 · 소녀가장 격려행사
1989. 5. 20	❖ 의원총회
	대표위원, 뉴욕타임즈와의 회견
1989. 5. 23	❖ 제158차 중앙집행위원회의
1989. 5. 25	❖ 제159차 중앙집행위원회의
1989. 5. 26	❖ 농촌일손돕기 모내기 행사
1989. 5. 29	❖ 민정신문 제88호 발간
1989. 5. 30	❖ 제160차 중앙집행위원회의
1989. 6. 2	❖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정책세미나
1989. 6. 5	❖ 현충일기념 국립묘지 참배
1989. 6. 7	❖ 고려대 정외과학생 정당견학
1989. 6. 8	❖ 대표위원 주한 우루과이대사 및 모로코대사 접견
1989. 6. 9	❖ 대표위원, AP통신과의 인터뷰
1989. 6. 10	❖ 동경한국청년회의소 임원 초청간담회
1989. 6. 13	❖ 제16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1989. 6. 14	❖ 청와대 당직자회의
	대표위원, LA타임즈와의 인터뷰
1989. 6. 15	❖ 주요당직자 교통문제 캠페인
1989. 6. 16	❖ 의료보험수가 및 의약분업에 관한 당 · 정협의
1989. 6. 19	❖ 2000년대 국가발전 위원회의
1989. 6. 20	❖ 농촌지역오염 실태조사(경기 여주)
1989. 6. 23	❖ 여촌지역오염 실태조사(충남 서천)
1989. 6. 24	❖ 6 · 25 관련 특별강연
1989. 6. 27	❖ 제162차 중앙집행위원회의
1989. 6. 28	❖ 6 · 29 기념 사진전 개막식
1989. 6. 29	❖ 6 · 29 기념 리셉션
1989. 6. 30	❖ 농어가 부채경감 관련 당 · 정협의
	6 · 29 기념 토론회
1989. 7. 1	❖ 대표위원, 국제민주연합(IDU) 및 태평양민주연합(PDU)회의 참석차 출국
1989. 7. 18	❖ 조직폭력 척결대책 당 · 정협의
1989. 7. 19	❖ 교원지위법관련 당 · 정협의

1989. 7. 20
 1989. 7. 21
 1989. 7. 28
 1989. 8. 1
 1989. 8. 4
 1989. 8. 22
 1989. 8. 23
 1989. 8. 25
 1989. 9. 5

 1989. 9. 6
 1989. 9. 7
 1989. 9. 11

 1989. 9. 18
 1989. 9. 19

 1989. 9. 25

 1989. 9. 26

 1989. 9. 27
 1989. 9. 28
 1989. 9. 30
 1989. 10. 6
 1989. 10. 11
 1989. 10. 13

 1989. 10. 14

 1989. 10. 18
 1989. 10. 19
 1989. 10. 20
 1989. 10. 23
 1989. 10. 24
 1989. 10. 26

 1989. 10. 27

- ❖ 시내버스 파업대책 관련 당 · 정협의
- ❖ 재해대책 기금 마련 음악회
- ❖ 제163차 중앙집행위원회의
- ❖ 제164차 중앙집행위원회의
- ❖ 특허발명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 ❖ 제166차 중앙집행위원회의
- ❖ 대표위원, 유니세프 부총재 접견
- ❖ 분당 지하철노선 관련 당 · 정협의
- ❖ 청와대 당직자회의
 대표위원,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 ❖ 대표위원,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단 접견
- ❖ 주요당직자 중추절 위문활동
 대표위원, 중화민국 입법위원단 접견
- ❖ 대표위원, 오스트리아 외상초청 조찬
- ❖ 제167차 중앙집행위원회의
 대표위원, 미외교협회 아시아관계 선임연구원 접견
- ❖ 태평양민주연합(PDU)의장 당사방문
 스웨덴 보수당 사무총장 당사방문
- ❖ 국제민주연합(IDU)사무총장 당사방문
 대표위원, 미국 주의회여성의원단 접견
- ❖ 한 · 소관계 심포지엄
- ❖ 대표위원, 주한 아르헨티나대사 접견
- ❖ 중앙위 사회복지분과 장애자시설 위문
- ❖ 대표위원, 일본자민당 청년당원 접견
- ❖ 의원총회
- ❖ 수산업법개정(안) 설명회
 대표위원, 소련언론인 접견
- ❖ 산림법개정(안) 설명회
 농촌벼베기 일손돕기
- ❖ 한남대 정외과학생 정당견학
- ❖ 대표위원, 주한 콜롬비아대사 접견
- ❖ 농어촌 발전대책 추진법률제정을 위한 간담회
- ❖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입법추진을 위한 간담회
- ❖ 학원내 폭력근절을 위한 당 · 정협의
- ❖ 대표위원, 빌리브란트 전 서독수상 초청 조찬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당 · 정협의
- ❖ 대표위원, 헝가리 국영통신과의 회견
- ❖ 대표위원, 주한미국대사 접견

- 1989. 10. 28
- 1989. 10. 31
- 1989. 11. 6~10
- 1989. 11. 8
- 1989. 11. 9~11
- 1989. 11. 10
- 1989. 11. 14
- 1989. 11. 16
- 1989. 11. 21
- 1989. 11. 27
- 1989. 12. 6
- 1989. 12. 8
- 1989. 12. 11
- 1989. 12. 12
- 1989. 12. 16
- 1989. 12. 19
- 1989. 12. 26
- 1989. 12. 30

- ❖ 중앙위원 불교신자모임(정법회) 창립 총회
- ❖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확대를 위한 토론회
- ❖ 공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입법계획 설명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 충남대 정외과학생 정당견학
- ❖ 농어촌발전대책 추진법을 설명회(강원, 충남, 경남)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문화발전 대책 세미나
- ❖ 대표위원, 프랑스TV 및 영국 '인디펜던트' 지와의 회견
- ❖ 대표위원, 주한영국대사 접견
- ❖ 청와대 당·정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간담회
연세대 정외과학생 정당견학
- ❖ 제169차 중앙집행위원회의
'90년대의 전망과 국가발전전략 심포지엄
- ❖ 대표위원, 주한미국대사 초청 오찬
대표위원, 이란 국회의원 일행 접견
- ❖ 청와대 당직자회의
- ❖ 워싱턴타임즈 서울 지국장 북한방문기 청취회
- ❖ 환경오염대책관련 당·정협의
- ❖ 제170차 중앙집행위원회의
- ❖ 소년·소녀가장 초청 위로잔치
- ❖ 제17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 ❖ 연말위문활동
- ❖ '89 중무식

2) 통일민주당 (90. 2. 15 민주자유당으로 신설합당)

- 연 월 일
- 1989. 1. 1
 - 1989. 1. 6~7
 - 1989. 1. 10
 - 1989. 1. 17
 - 1989. 1. 24
 - 1989. 1. 30~2. 10
 - 1989. 1. 31

- 주 요 활 동
- ❖ 단배식 및 국립묘지 참배
 - ❖ 민주당 당간부 정책세미나(현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 ❖ 제78차 정무회의(국민투표법개정에 관한 토론)
 - ❖ 제79차 정무회의(교육법 개정법률 문제)
 - ❖ 제80차 정무회의(백화점 시기세일 진상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대책)
 - ❖ 김영삼 총재 일본 사회당 방문
 - ❖ 제81차 정무회의(노사문제에 관한 토론)

1989. 2. 4
 1989. 2. 8
 1989. 2. 10
 1989. 2. 11
 1989. 2. 22
 1989. 2. 23
 1989. 2. 25
 1989. 2. 28
 1989. 3. 7
 1989. 3. 7~9
 1989. 3. 13
 1989. 3. 14
 1989. 3. 16
 1989. 3. 18
 1989. 3. 20
 1989. 3. 27
 1989. 3. 28
 1989. 4. 1~14
 1989. 4. 1
 1989. 4. 4
 1989. 4. 17
 1989. 4. 19
 1989. 4. 20
 1989. 4. 25
 1989. 5. 2
 1989. 5. 8
 1989. 5. 16
 1989. 5. 23
 1989. 5. 30
 1989. 6. 1
 1989. 6. 5
 1989. 6. 7
 1989. 6. 22
 1989. 6. 26
 1989. 6. 27
 1989. 7. 4
 1989. 7. 5
 1989. 7. 11

- ❖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주선(세종병원 최지은)
- ❖ 제82차 정무회의(5공청산 문제에 관한 토론)
- ❖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야3당 합동공청회
- ❖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제83차 정무회의(북방외교에 관한 토론)
- ❖ 미국의 핵전략 및 한반도 평화 간담회
- ❖ 장애인(농아부부 20쌍) 합동 결혼식
- ❖ 제84차 정무회의(임시국회 대책논의)
- ❖ 제85차 정무회의(중간평가에 관한 토론)
- ❖ 제3기 여성당원 간부훈련
- ❖ 제86차 정무회의(중간평가에 관한 당의 입장발표)
강원도 태백시 국정보고대회
- ❖ 강원도 횡성군 국정보고대회
- ❖ 해외동포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김동영)
- ❖ 충남 온양시 및 아산군지구당 국정보고대회
- ❖ 제87차 정무회의(5공청산에 관한 토론)
- ❖ 강원도 동해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임명(이관형)
- ❖ 제88차 정무회의(동해시 재선거 대책 논의)
- ❖ 동해시 재선거 활동지원
- ❖ 강원도 동해시지구당 당원단합대회 및 삼척시지구당 국정보고대회
- ❖ 제89차 정무회의(동해시 재선거에 관한 토론)
- ❖ 제90차 정무회의(동해시 재선거 사건에 관한 결의문 채택)
- ❖ 4·19 묘소 참배(총재 외 전 당직자)
- ❖ 제91차 정무회의(한·미 통상에 관한 토의)
- ❖ 제92차 정무회의(30야당 총재회담에 관한 토론)
- ❖ 제93차 정무회의(노태우정권의 박해에 대한 우리의 진로)
- ❖ 제94차 정무회의(부산 동의대 사건과 내각 총사퇴에 관한 토론)
- ❖ 제95차 정무회의(중진회담에 관한 대책 숙의)
- ❖ 제96차 정무회의(민생치안대책 특별위원회 설치)
- ❖ 제97차 정무회의(소련방문 문제와 영등포구를 재선거 문제 토의)
- ❖ 김영삼 총재 소련방문: 소련 IMEMO 초청(북방외교관계)
- ❖ 국립묘지 참배(현충일 기념)
- ❖ 제98차 정무회의(5공청산문제에 관한 토론)
- ❖ 제99차 정무회의(방소 및 청와대 회담보고)
- ❖ 북방문제특별위원회 발족구성(위원장: 정재문)
- ❖ 제100차 정무회의(북방문제특별위원회 설치)
- ❖ 제101차 정무회의(서경원 의원 밀입북 관계 토의)
- ❖ 제1회 전국여성 국장단 회의
- ❖ 제102차 정무회의(서경원 의원 사건관련 당의 입장 발표)

1989. 7. 18	❖ 제103차 정무회의(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 발표후 당의 성명서 채택)
1989. 7. 26	❖ 특별위원회 위원장 회의 및 재해수습대책위원회 발족
1989. 7. 29~30	❖ 수해지역 위문(영호남 지역)
1989. 8. 1~18	❖ 영등포구를 재선거 활동지원
1989. 8. 8	❖ 제104차 정무회의(5공청산 문제와 영등포구를 선거전략 토론)
1989. 8. 22	❖ 제105차 정무회의(당풍쇄신일환 당직개편 토론)
1989. 8. 28	❖ 제106차 정무회의(토지공개념에 관한 토론)
1989. 9. 5	❖ 제107차 정무회의(동대총장 구속 및 토지공개념 등 현안문제 토론)
1989. 10. 10	❖ 제108차 정무회의(5공청산을 위한 예산심의 연계에 관한 토론)
1989. 10. 17	❖ 제109차 정무회의(상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토론)
1989. 10. 20	❖ 제110차 정무회의(5공청산과 예산연계문제 토론)
1989. 10. 23	❖ 소련 IMEMO의 마르티노프 소장일행 민주당 방문(북방외교 관계 및 한국 경제계 및 산업체 방문)
1989. 10. 25	❖ 제2회 전국 여성 국장단 회의
1989. 10. 28	❖ 소련 IMEMO방한단 기자회견
1989. 10. 31	❖ 제111차 정무회의(공화당 총재 회동에 관한 공조문제 토론)
1989. 11. 7	❖ 제112차 정무회의(예산결산위원회의의 대비 토론)
1989. 11. 13	❖ 제113차 정무회의(예산결산위원회위원 선출문제 토론)
1989. 11. 21	❖ 제114차 정무회의(해외동포 세미나에 관한 토론)
1989. 11. 22~29	❖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마르티노프” 소장을 단장으로 한 일행 12명 방한(김영삼총재 초청)
1989. 11. 28	❖ 제115차 정무회의(악법개폐에 관한 토론)
1989. 12. 5	❖ 제116차 정무회의(가족법 개정에 관한 토론)
1989. 12. 12	❖ 제117차 정무회의(민생치안, 가족법 등 처리에 관한 토론) 중앙당기위원회의(당기위원 임명)
1989. 12. 14	❖ 전방부대 위문(육군 3사단 외 2개지역)
1989. 12. 15	❖ 중앙당 국장단 일동 명의의 고발장 접수(박용만 위원 해당행위건)
1989. 12. 20	❖ 민주여성대학 동우회 정기 총회
1989. 12. 21	❖ 총재 및 당직자 연말연시 군부대 위문 방문 “아미구치” 일본 사회당 서기장 일행의 방한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
1989. 12. 22	❖ 박용만 의원 2차 소환장 발송 일본 사회당 “아미구치” 서기장 일행 민주당 방문
1989. 12. 26	❖ 송년회(12층 대회의실) 박용만 의원 3차 소환장 발송 제118차 정무회의(광주 및 5공특위 청문회 전략에 관한 토론)
1989. 12. 29	❖ 연말 소외계층 방문 위로 박용만 의원 징계피의조서 작성 중무식(12층 대회의실)
1989. 1. 1	❖ 국립묘지 참배 및 단배식

3) 신민주공화당 (90. 2. 15 민주자유당으로 신설합당)

연 월 일	주 요 활 동
1989. 1. 10	❖ 대한사법서사협회(협회장 조한록외 7명) 회장단 방문
1989. 1. 12	❖ 제13대 총선 선거소송 6차공판 - 대구 수성구지구당(위원장: 이상회) - 대구 서구갑지구당(위원장: 백승홍) 고추경작농민(대표 신희우외 35명) 집단방문 야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 개최
1989. 1. 13	❖ 삼청교육대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대표 방문 공화통신 제11호 발간(750부)
1989. 1. 17	❖ 당재산반환 청구소송 제11차공판 - 장소 : 서울민사지법 116호 법정
1989. 1. 18	❖ 제44차 당무회의 개최
1989. 1. 20	❖ 경북 경산지구당 제13대 총선투표 재검표 - 장소 : 대구지방방법원 1호법정 - 재검관 : 윤관, 김용준, 김상원 - 득표현황 : 공화당 이재연 의원 - 41,827표(108차), 민정당 박재욱 후보 - 41,719표
1989. 1. 21	❖ 충남 대전 해태 피해어민단 대표 김종근 외 16명 5일간 농성 공화 기독교회 이사회 개최(소회의실)
1989. 1. 25	❖ 전국 최루탄 부상자 지역별협회 대표단 방문 공화통신 12호 발간(2,000부)
1989. 1. 27	❖ 장애인고용촉진법 공청회 참석(김병룡 의원)
1989. 1. 30	❖ 노인복지법 개정시안 공청회(황옥성 전문위원 참석)
1989. 2. 1	❖ 제45차 당무회의 개최
1989. 2. 2	❖ 한국방송공사 노동조합대표 당사방문(김종훈 위원장 외 2명)
1989. 2. 8	❖ 민원봉사실 개설 및 업무개시
1989. 2. 10	❖ 경북 경산 · 청도지구당(이재연 의원) 재검표 공판 - 장소 : 대법원 대법정 301호 - 재검관 : 윤관 외 2명 - 내용 : 이재연 의원 - 41,825표(78표차), 박재욱 후보 - 41,747표
1989. 2. 13	❖ 공화통신 13호 발간(2,200부)
1989. 2. 15	❖ 제46차 당무회의 개최
1989. 2. 16	❖ 제13대 총선 선거소송 8차공판 - 대구 수성구, 서구갑, 인천 북구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89 정기대의원대회참석(이병희 부총재)
1989. 2. 17	❖ 한국노총간부 총재 방문(박종근 위원장 외 2명)
1989. 2. 18	❖ 울산 삼산 · 달동 분배농지 보상대책위 17명 당사 방문
1989. 2. 20	❖ 금강하구둑 피해어민 보상대책추진위 20명 당사방문 한시택시 사업자 40명 당사방문

1989. 2. 21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양건우 위원장 외 80명) 당사방문
1989. 2. 24	❖ 사회안전법폐지 추진위(강종선 외 5명) 당사방문 의료보험법개정 추진위 농민대표(유남선 외 40명) 당사방문
1989. 2. 25	❖ 창당 제26주년 기념행사(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989. 3. 2	❖ 선거소송 9차공판 - 대구서구갑(백승홍 위원장) 결심공판 - 대구수성구(이상희 위원장) - 인천북구을(허섭 위원장) 결심공판
1989. 3. 3	❖ 지역의료보험조합 전국노동조합협의회 30명 당사방문
1989. 3. 5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부녀자 25명 당사방문 부산화물연맹회원(서무수 외 25명) 당사방문 토지무상양도 전국대책위원회(80명) 당사방문(김광웅 서울대교수 외 연구원 15명)
1989. 3. 15	❖ 제47차 당무회의 개최
1989. 3. 28	❖ 동해시 재선거 후보자(이홍섭)공천
1989. 4. 14	❖ 제48차 임시당무회의에서 동해시 지구당위원장(이홍섭)징계동의안 의결 고다니 교수 초청강연회 개최 (한국의 북방정책과 동구권의 동향)
1989. 5. 3	❖ 동의대 경찰관 진압에 따른 순직사고 조문사절단 파견 제49차 당무회의 개최
1989. 5. 5	❖ 제9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 법회(김용채 원내총무 참석)
1989. 5. 10	❖ 공화통신 15호 발간(2,200부)
1989. 5. 17	❖ 제50차 당무회의 개최
1989. 5. 20	❖ 한일대학생 학술 심포지엄 참석자 초청간담회
1989. 5. 22	❖ 광주사태진상규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곤)회의 개최
1989. 6. 7	❖ 전상자 및 장애자대책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위원장 옥만호)
1989. 6. 15	❖ 보훈병원 위문(이병희 부총재 외 5명) 상이용사촌 위문(동산 · 신도) (이종근 부총재 외 4명)
1989. 6. 16	❖ 국립경찰병원 위문(구자춘 부총재 외 6명)
1989. 6. 19	❖ 영등포구를 재선거후보자 확정(박상웅)
1989. 6. 20	❖ 공화통신 26호 발간(2,200부) 보훈단체 대표초청 오찬
1989. 6. 21	❖ 제52차 당무회의 개최
1989. 6. 27	❖ 한국청년회의소 4당초청 청년정책 대토론회 참석 (구자춘 부총재, 신진수 의원)
1989. 6. 30	❖ 영등포구를 재선거종합대책(안) 심의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대표초청 오찬 대우조선 노조간부 당사방문 전국노점상(충청지역) 연합회 대표 당사방문 공화당보 발간(32만부)
1989. 7. 5	❖ 제53차 당무회의 개최
1989. 7. 6	❖ 서울 · 경인지역 JC회원 초청간담회

1989. 7. 18
 1989. 7. 19
 1989. 7. 21

 1989. 8. 2
 1989. 8. 3
 1989. 8. 12
 1989. 8. 16
 1989. 8. 29
 1989. 8. 30
 1989. 9. 6
 1989. 9. 7
 1989. 9. 9
 1989. 10. 4
 1989. 10. 5
 1989. 10. 12
 1989. 10. 13
 1989. 10. 17
 1989. 10. 18

 1989. 10. 19

 1989. 10. 20
 1989. 10. 24
 1989. 11. 1
 1989. 11. 15
 1989. 11. 17
 1989. 11. 20
 1989. 11. 22
 1989. 12. 6
 1989. 12. 13
 1989. 12. 15
 1989. 12. 20
 1989. 12. 22

 1989. 12. 23
 1989. 12. 27
 1989. 12. 30

-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당사방문(김광웅 서울대학교수 외 연구원 15명)
- ❖ 제54차 당무회의 개최
- ❖ 성폭행 및 인신매매 토론회 개최(당사 강당)
 전국화학노동조합대표단 당사방문(정춘택 위원장외 5명)
- ❖ 제55차 당무회의 개최
- ❖ 수해지역 위문활동(총재의 주요당직자)
- ❖ 공화당보 발간(35만부)
- ❖ 제56차 당무회의 개최
- ❖ 영등포구를 유권자에 대한 총제서한 발송(8,282명)
- ❖ 한국노총대표 초청간담회(노조집행부 및 20개 산별 위원장급 25명)
- ❖ 제57차 당무회의 개최
- ❖ 공화통신 17호 발간(2,200부)
- ❖ 정릉 노인대학초청 총재 강연회
- ❖ 제58차 당무회의 개최
- ❖ 홍보책자 발간(10,000부)
- ❖ 부산 동의대 구속학생 학부모 당사방문(40명)
- ❖ 여수 수산대 총학생회대표자 당사방문(6명)
- ❖ 거창 양민학살 희생자 위령추진위원회 대표단 당사방문(회장 문병현외 5명)
- ❖ 제59차 당무회의 개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원 당사방문(70명)
- ❖ 대한침구사 협회원 당사방문(200명)
 전국사범대학연합회 당사방문(50명)
- ❖ 농촌일손돕기(벼베기)지원
- ❖ 출판기념회 행사("고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생애")
- ❖ 제60차 당무회의 개최
- ❖ 제61차 당무회의 개최
- ❖ 대한유도대학생 초청 간담회
- ❖ 당직자 일본시찰단 파견(정원조 부대변인 외 5명)
-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대표 총재면담(정성철 단장 외 13명)
- ❖ 제62차 당무회의 개최
- ❖ 제63차 당무회의 개최
- ❖ 중앙사무처 여직원(수레바퀴)회 불우이웃돕기 행사
- ❖ 전국산재장애자협회 직영 자활공장 위문
- ❖ 일선장병 위문(육군 제6사단 19연대)
 송죽원(고아원) 방문
- ❖ 대한민국 상이군경 직할 대방동 특별지회 위문
- ❖ 공화당보 발간(30만부)
- ❖ 종무식(당사 강당) 및 정례조찬 기도회

4) 평화민주당

연 월 일

1989. 1. 1
 1989. 1. 27
 1989. 1. 31
 1989. 2. 17
 1989. 2. 28

 1989. 3. 10
 1989. 3. 18
 1989. 4. 3
 1989. 4. 8~11
 1989. 4. 19
 1989. 4. 21
 1989. 4. 24
 1989. 4. 26
 1989. 5. 4
 1989. 5. 5
 1989. 5. 8
 1989. 5. 27
 1989. 6. 3
 1989. 6. 6
 1989. 6. 22
 1989. 6. 28
 1989. 7. 7
 1989. 7. 19
 1989. 7. 25
 1989. 7. 26

 1989. 7. 30
 1989. 8. 2
 1989. 8. 8
 1989. 8. 12

 1989. 8. 13
 1989. 8. 22
 1989. 8. 25

주 요 활 동

- ❖ 국립묘지, 4·19 묘지 참배
- ❖ 교통문제 공개토론회에 따른 서울 시내차량 승차확인
- ❖ 유럽순방 환송인사 및 출국
- ❖ 유럽순방 귀국 및 보고회
- ❖ 신용협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 정기총회 참석
3·1독립운동 70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
- ❖ 청와대 영수회담 및 보고회
- ❖ 경기도지부 결성대회 및 시국강연
- ❖ 올림픽 조직위 해단식 참석
- ❖ 동해시 재선거 지원유세
- ❖ 4·19 묘소 참배
- ❖ 서울시지부 결성대회
- ❖ 지역감정해소 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참석
- ❖ 야3당 총재회담
- ❖ 동의대사건 사망자 분향소 조문
- ❖ 해공 신익희 선생 추도식 참석
- ❖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불우노인잔치 및 불우노인 50명 초청 국악공연 참관
- ❖ 당직자, 당원 헌혈
- ❖ 광주, 전주 시국강연회
- ❖ 국립묘지 참배
- ❖ 정책과 전망 자료집 출판기념회
- ❖ 시국대책 합동회의
- ❖ 시국관련 특별강연
- ❖ 물가정책 토론회
- ❖ 공안정국과 관련 의원, 당직자, 당원 등 농성
- ❖ 재해대책본부 방문 위로
서경원사건과 관련 구인장 접수
- ❖ 태풍 수해지역 방문
- ❖ 서경원 의원 사건관련 총재, 문동환 부총재 구인
- ❖ 보라매공원 시국대강연회
- ❖ 영등포구을지구당 재선거 1차유세
인천시지부 결성대회
- ❖ 영등포구을지구당 재선거 2차유세
- ❖ 서경원 의원 사건관련 검찰 자진출두 및 인사
- ❖ 을지연습 상황보고회 참석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1989. 9. 26
 1989. 10. 6
 1989. 10. 7
 1989. 10. 8
 1989. 10. 30
 1989. 11. 11
 1989. 11. 20
 1989. 11. 25
 1989. 11. 28
 1989. 11. 30
 1989. 12. 7

 1989. 12. 15
 1989. 12. 20
 1989. 12. 21
 1989. 12. 22
 1989. 12. 27
 1989. 12. 30

- ❖ 전국체육대회 참관
- ❖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참석
- ❖ 요한바오로2세 환영회 참석
- ❖ 성체대회 및 각국대표 환영리셉션 참석
- ❖ 서독 전 수상 빌리브란트 초청강연회
- ❖ 창당 2주년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 ❖ 아3당 총재회담
- ❖ 부산시지부 결성대회 및 시국강연회
- ❖ 김대중 전집 출판기념회
- ❖ 무역의 날 행사 참석
- ❖ 언론인의 밤 행사 참석
 - 한·일 협력위원회 행사 참석
- ❖ 3야당 총재 청와대 영수회담 및 보고회
- ❖ 정기국회 폐회 결과분석 보고회
- ❖ 군부대 위문 및 위문품
-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보고회
- ❖ 중앙당 송년회
- ❖ 5공특위, 광주특위 공청회

5) 한겨레민주당

연 월 일

1989. 1. 10
 1989. 1. 14
 1989. 1. 25
 1989. 2. 2
 1989. 2. 5~9
 1989. 2. 20
 1989. 2. 24
 1989. 3. 15
 1989. 3. 28
 1989. 4. 17
 1989. 5. 20

주 요 활 동

- ❖ 전국순회 강연회(마산)
- ❖ 전국순회 강연회(울산)
- ❖ 제3차 중앙위원회의
- ❖ 전국순회 강연회(대구)
- ❖ 제2차 당 정치연수회
- ❖ 전국순회 강연회(광주)
- ❖ "진보정치" 3호 발간
- ❖ 중앙청년위원회 구성
- ❖ 제4차 중앙위원회의
- ❖ "진보정치" 4호 발간
- ❖ 제5차 중앙위원회의

1989. 5. 25
1989. 6. 18
1989. 7. 17
1989. 8. 2
1989. 9. 18
1989. 10. 31
1989. 11. 2
1989. 11. 8

- ❖ 당 기금마련 서화전 개최
- ❖ 중앙당 당직자 정치연수회
- ❖ 제6차 중앙위원회의
- ❖ “진보정치” 5호 발간
- ❖ 제7차 중앙위원회의
- ❖ “진보정치” 6호 발간
- ❖ 제8차 중앙위원회의
- ❖ 당원단합대회 개최

다. 1990년도

1) 평화민주당 (91. 4. 15 신민주연합당 당명변경 : 91. 9. 16 민주당으로 신설합당)

연 월 일

주 요 활 동

1990. 1. 10
1990. 1. 29
1990. 2. 4
1990. 2. 14
1990. 2. 17

1990. 2. 27
1990. 2. 28
1990. 3. 1
1990. 3. 3
1990. 3. 10
1990. 3. 14
1990. 3. 15
1990. 3. 22
1990. 3. 31
1990. 4. 1
1990. 4. 2
1990. 4. 21
1990. 4. 27
1990. 5. 4

- ❖ 여·야 영수회담
- ❖ 당3역 교체(사무총장: 신순범, 원내총무: 김영배, 정책의장: 조세형)
- ❖ 경남도지부 결성대회 및 총재 국정보고대회(14:00 창원KBS 공개홀)
- ❖ 유석 조병옥박사 추모강연회(여성백인회관)
- ❖ 총재 시국강연회(성남 시민회관)
민생치안 봉사대 발대식(차량 5대구입)
- ❖ 국회 총재 대표연설
- ❖ 예비역장교 96명 입당식
- ❖ 3·1 절 71주년 기념식(중앙당)
- ❖ 평우회 보라매공원행사 총재 강연
- ❖ 노총 창립기념행사 총재 참석
- ❖ 원외지구당위원장 및 전당직자와 총재 시국토론
- ❖ 악법통과저지 국회의원 및 전당직자 농성돌입
- ❖ 매일경제 제24주년 기념식 참석
- ❖ 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 ❖ 국정보고대회(부천 시민운동장)
- ❖ 동아일보 창간 70주년행사 참석
- ❖ 대전 국정보고대회
- ❖ 마포당사 5층 증축공사 상량식
- ❖ 해공 신익희선생 추모식 총재강연
문동환 상임고문 교회 출판기념

1990. 5. 8
 1990. 5. 17
 1990. 5. 18
 1990. 5. 24
 1990. 5. 25
 1990. 6. 5
 1990. 6. 7
 1990. 6. 11
 1990. 6. 12
 1990. 6. 14
 1990. 6. 16
 1990. 6. 23
 1990. 6. 25
 1990. 6. 26
 1990. 6. 28
 1990. 7. 3
 1990. 7. 4
 1990. 7. 7
 1990. 7. 17
 1990. 7. 21
 1990. 7. 31
 1990. 8. 2
 1990. 8. 7
 1990. 8. 8
 1990. 8. 10
 1990. 8. 15
 1990. 8. 29
 1990. 9. 4
 1990. 9. 6
 1990. 9. 7
 1990. 9. 9
 1990. 9. 12
 1990. 9. 13
 1990. 9. 20
 1990. 9. 23
 1990. 9. 24

- ❖ 새누리신문 창간행사 참석
- ❖ 노르웨이 국경일행사 참석
- ❖ 5·18기념식 및 강연
- ❖ 천만인 서명운동 200만 돌파 1차 발표회 및 우수지구당 표창
- ❖ 아르헨틴 국경일행사 참석
- ❖ 스웨덴 국경일행사 참석
- ❖ 이문옥 감사관 석방촉구 결의대회
- ❖ 교통방송국 개국행사 참석
- ❖ 필리핀 국경일행사 참석
- ❖ 영국 엘리자베스 2세 탄생기념 행사 참석
- ❖ 영수회담 보고회
- ❖ 보훈의 달 병원 위문(통합병원, 경찰병원, 원호병원)
 이란 지진참사위로 이란대사관 조문
- ❖ 스페인 국경일행사 참석
 노르웨이대사 환송행사 참석
- ❖ 백범 김구선생 추모식 행사 참석
 제일경제신문 창간행사 참석
- ❖ 서독대사 초청 “독일통일의 교훈” 강연
- ❖ 변화하는 사회주의 국가 보도사진전 총재 참석
- ❖ 미 독립기념일행사 총재 참석
- ❖ 도봉(을)지구당 국정보고대회 총재 참석
- ❖ 제42주년 제헌절 행사
- ❖ 민자당 폭거규탄 의원직 사퇴선언 및 총선거 촉구 결의대회
- ❖ 수질오염 방제작업 격려차 총재 인천 방문
- ❖ 당무위원 임명 발표
- ❖ 총재 태릉선수촌 방문
- ❖ 15인 통합추진협의기구 회의
- ❖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 ❖ 제45주년 광복절기념식 마포당사 증축공사 준공식
- ❖ 5·18 광주민주항쟁 출판기념일 총재 참석
- ❖ 방송의 날 리셉션 총재 참석
- ❖ 남·북 고위급 대표단을 위한 만찬 총재 참석
- ❖ 브라질 국경일 리셉션 총재 참석
- ❖ 천문학박사 스티븐 호킹 교수를 위한 모임 참석
- ❖ 총재 과천 수해대책본부 방문
- ❖ 총재 고양군 수해지역 방문
- ❖ 국정보고대회(의정부시)
- ❖ 총재 정책강연회(밀양군 실내체육관)
- ❖ 대학교육협의회 6대총장 만찬(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한대, 이대)

- 1990. 9. 25
- 1990. 9. 28
- 1990. 10. 8

- 1990. 10. 13
- 1990. 10. 17
- 1990. 10. 20
- 1990. 11. 12
- 1990. 11. 17
- 1990. 11. 18
- 1990. 11. 22
- 1990. 11. 25
- 1990. 12. 1
- 1990. 12. 20
- 1990. 12. 21
- 1990. 12. 22
- 1990. 12. 27
- 1990. 12. 31

- ❖ 총재 “지역민주주의와 참여”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
- ❖ 국정보고대회(인천 공보관)
- ❖ 총재 단식돌입
중앙당직자 농성돌입
- ❖ 국군보안사 민간인 사찰 범국민 규탄대회(보라매공원)
- ❖ 원외지구당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 ❖ 총재 국회의원 원외지구당 위원장 단식 및 농성해제
- ❖ 창당3주년 기념식(마포당사)
- ❖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사반대 및 추곡수매가 인상 처량시위(전의원)
- ❖ 국정보고대회(전주, 고창)
- ❖ 총재 서울신문 창간40주년 리셉션 참석
- ❖ 영광·함평 보선 승리대회
- ❖ 화성 민생치안대 파견
- ❖ 총재 양로원 및 보육원 방문(과천, 안양, 광명)
- ❖ 총재 “환경문제에 관한 토론회” 참석하여 발표
- ❖ 총재 국군장병 위문(과천, 김포, 수원)
- ❖ 총재 화성살인사건 수사본부 및 피해자가족 방문
- ❖ 민생치안 봉사대 해단식

2) 한겨레민주당

연 월 일

- 1990. 2. 5~9
- 1990. 2. 25
- 1990. 4. 5~7
- 1990. 5. 25
- 1990. 7. 27~30
- 1990. 8. 25
- 1990. 11. 25

주 요 활 동

- ❖ 제3차 당 정치연수
- ❖ 제9차 중앙위원회
- ❖ 중앙당 당직자 정치연수
- ❖ 제10차 중앙위원회
- ❖ 하계 당원단합대회
- ❖ 제11차 중앙위원회
- ❖ 제12차 중앙위원회

3) 민주자유당 (90. 2. 15 민주정의당 · 통일민주당 · 신민주공화당이 신설합당)

연 월 일	주 요 활 동
1990. 2. 9	❖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통합추진위원회 (3당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 개최
1990. 2. 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당신설 합당 등록
1990. 2. 16	❖ 제1차 의원총회
1990. 2. 25 ~4. 8	❖ 당가 마크 현상공모
1990. 2. 26	❖ 민주자유보(제1호) 발행
1990. 3. 8	❖ 제2차 의원총회
1990. 3. 16	❖ 제3차 의원총회
1990. 3. 17	❖ 민주자유보 호외발행
1990. 4. 4	❖ 제2차 당무회의 과학기술진흥특위회의: 추경예산협의
1990. 4. 13	❖ 정책위원회 재무 당 · 정회의
1990. 4. 16	❖ 정책위원회 문공 당 · 정회의
1990. 4. 25	❖ 정책위원회 교체 당 · 정회의
1990. 4. 27	❖ 주택정책에 관한 국민토론회(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
1990. 4. 30	❖ 대도시교통 완화대책 정책회의
1990. 5. 1	❖ 당 배지 제작 배포
1990. 5. 3	❖ 2000년대를 향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
1990. 5. 7	❖ 제6차 당무회의
1990. 5. 9	❖ 제1차 전당대회
1990. 5. 12	❖ 민주자유보(제2호) 발행
1990. 5. 21	❖ 정책위원회 지자제관련 당 · 정회의
1990. 5. 24	❖ 대표최고위원 초청 한국노총과의 간담회
1990. 5. 25	❖ 대표최고위원 초청 여성단체장과의 간담회
1990. 5. 31	❖ 교육자치에 관한 토론회(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장)
1990. 6. 2	❖ 대민봉사활동(모심기): 3개지역
1990. 6. 7	❖ 제10차 당무회의
1990. 6. 13	❖ 원외지구당위원장 회의 민주자유보(제3호) 발행
1990. 6. 15 ~18	❖ 지방당 당직자 중앙연수
1990. 6. 19	❖ 제4차 의원총회
1990. 6. 20	❖ 정책위 농수산분과 당 · 정협의
1990. 6. 27 ~28	❖ 다수인관련 민원현지조사(고천암매립에 따른 주민 어장피해 노상민원)
1990. 7. 2	❖ 제12차 당무회의
1990. 7. 5	❖ 특별위원회 1차 구성(당헌54조 제1, 2항): 23개 특위

1990. 7. 6	❖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와의 간담회 시·도지부 민원부장회의
1990. 7. 9	❖ 재해대책 및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 제5차 의원총회
1990. 7. 13	❖ 노동문제특위회의(1차) 및 교육개혁특위회의(1차)
1990. 7. 14	❖ 제6차 의원총회
1990. 7. 16 ~8. 31	❖ 지구당원 당원하게 수련대회(45일간) 제헌동지회관 방문(대표최고위원)
1990. 7. 25	❖ 상무위원회 제1차회의(당 중앙정치교육원 대강당) 한국피코주 상황조사반 파견(2차)
1990. 8. 3	❖ 농어민 후계자대회 대책회의
1990. 8. 7	❖ 전국구의원 회의
1990. 8. 9	❖ 농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에 관한 농수산 당·정협의
1990. 8. 14	❖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당·정협의
1990. 8. 22	❖ 제18차 당무회의 정책평가위 경제분과 및 민생치안특위회의
1990. 8. 23	❖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세미나
1990. 8. 27	❖ '91년 예산관련 예결위 분과별 심의
1990. 8. 29	❖ 제19차 당무회의
1990. 8. 30	❖ 고위 당·정정책 조정회의
1990. 9. 4	❖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분야 관련 당·정협의
1990. 9. 8	❖ 대표최고위원 기자회견
1990. 9. 10	❖ 제7차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1990. 9. 11	❖ '93대전 EXPO지원 특위 당·정협의
1990. 9. 13	❖ 장애자복지기금마련을 위한 출판기념회(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990. 9. 15	❖ 중앙당직자 및 사무처요원 수해복구 활동
1990. 9. 17	❖ 제21차 당무회의
1990. 9. 18	❖ 전국 금융노련과의 중앙위의장 간담회
1990. 9. 20	❖ 부산지역 미술계인사와의 간담회
1990. 9. 21	❖ 제8차 의원총회
1990. 9. 24	❖ 의원정책 세미나
1990. 9. 26	❖ 의원부인 적십자 봉사활동
1990. 9. 27	❖ 제9차 의원총회
1990. 10. 16	❖ 제10차 의원총회 정책평가위 농수산분과 내외정세특위회의
1990. 10. 18	❖ 민자기독인회 10월 조찬 기도회
1990. 10. 22	❖ 제11차 의원총회 중앙위 문화예술분과 운영위원회
1990. 10. 25	❖ 전국자동차 노련과의 간담회

1990. 10. 29

❖ 북방정책특위 간담회

선거법개정특위회의

1990. 10. 30

❖ 정책위 행정 및 문공분과 당·정협의

1990. 11. 2

❖ 고위 당직자회의 및 실무당직자회의

1990. 11. 8

❖ 사무총장 이·취임식

1990. 11. 13

❖ 정책민원신고센터 발단식 및 현판식

1990. 11. 15

❖ 지구당 홍보대책위원 연구교육

시·도순방 단체장과의 간담회(대구지역)

1990. 11. 22

❖ 시·도지부 사무처장회의

1990. 11. 26

❖ 여성대토론회(전경련회관)

1990. 11. 28

❖ 새질서 새생활관련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의원부인 적십자 봉사활동

1990. 11. 30

❖ 고위당직자회의

중앙위 여성2분과 경기지역 순회 간담회

1990. 12. 5

❖ 제30차 당무회의

1990. 12. 10

❖ 해외동포학자 초청 간담회

1990. 12. 11

❖ 제12차 의원총회

1990. 12. 12

❖ 제31차 당무회의

1990. 12. 18

❖ 중앙위의장단 연말이웃돕기 위문활동

1990. 12. 19

❖ 제32차 당무회의

여성위원회 불우이웃돕기 연말행사

1990. 12. 20

❖ 정보·통신 진흥정책 토론회

1990. 12. 25

❖ 중앙위원회 전방군부대 위문활동

중앙사무처 송년회

1990. 12. 27

❖ 원외지구당위원장 회의

송년예배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위문행사

1990. 12. 29

❖ 증무식

4) 민주당 (91. 9. 16 민주당으로 신설합당)

연 월 일

주 요 활 동

1990. 6. 15

❖ 창당전당대회(잠실역도경기장)

1990. 6. 29

❖ 정무회의구성(24명)

1990. 7. 4
1990. 7. 14
1990. 7. 18
1990. 7. 20
1990. 7. 21
1990. 8. 8
1990. 8. 17
1990. 8. 24
1990. 9. 4
1990. 9. 8
1990. 9. 11
1990. 9. 12
1990. 9. 19
1990. 10. 11
1990. 10. 13
1990. 10. 20
1990. 11. 1
1990. 11. 2
1990. 11. 9
1990. 11. 16
1990. 12. 18

- ❖ 총재단 회의에서 당 10억 임명
- ❖ 제5차 정무회의 의원직 사퇴 추진
이기택 총재 등 의원 전원사퇴 결정
민주, 평민 양당총재회의 제의
제1차 중앙상무회의 개최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당규제정
- ❖ 아권통합을 위한 민주, 평민 총재회담(마포가든호텔)
- ❖ 민주, 평민, 통추회의 3자 대표회담(프레스센터)
- ❖ 민주, 평민, 통추회의, 국민연합 공동주최 보라매공원 규탄·결의대회
- ❖ 제1차 통합추진협상 15인회의(프레스센터)
- ❖ 제2차 통합추진협상 15인회의(여의도 대산빌딩)
- ❖ 제3차 통합추진협상 15인회의(여의도 대산빌딩)
- ❖ 제13차 정무회의, 아권통합당론 확정
- ❖ 인사위원회 구성 후 공채로 국장단, 부차장, 사무원등 78명 임명
- ❖ 중부권 집중호우 피해대책을 위한 중앙당 수해 대책본부 결성
- ❖ 이기택 총재 및 지도부 수해지역 강원, 경기방문
- ❖ 총재기자회견, 통합을 위한 3자회담 촉구
- ❖ 태국 잠룡시장 당사방문
- ❖ 보라매공원에서 「보안사 불법사찰규탄 및 군정청산 국민대회」개최
- ❖ 「보안사 불법사찰 규탄과 군정청산 인천시민대회」 개최
- ❖ 총재기자회견, 내각제 개헌 저지투쟁 선언
홍성·청양 국민 대시국강연회
- ❖ 「서·태안 농어민대회」에 지도부 참석, 노정권 퇴진촉구와 UR협상 반대 시국강연
- ❖ 안면도 핵처리장 문제 조사위원회 구성 및 현지파견
- ❖ 총재기자회견, 아권통합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기택 총재 사퇴
- ❖ 당 확대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중앙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대책 위원회(위원장 홍사덕) 및 선거대책본부(본부장 이철) 구성

5) 공명민주당

연 월 일
1990. 7. 18
1990. 8. 3

주요 활동

- ❖ 공명민주당 창당대회
- ❖ 공명민주당 중앙당등록

1990. 8. 11
 1990. 8. 25
 1990. 9. 1
 1990. 9. 8
 1990. 9. 10
 1990. 9. 17
 1990. 9. 22
 1990. 9. 29
 1990. 10. 23
 1990. 11. 3
 1990. 11. 8
 1990. 11. 23
 1990. 12. 15

- ❖ 제1차 중앙위원회 개최
- ❖ 제1차 당무회의 개최
- ❖ 제2차 당무회의 개최
- ❖ 제3차 당무회의 개최
- ❖ 함평군 · 영광군 지구당창당대회
- ❖ 제4차 당무회의 개최
- ❖ 제5차 당무회의 개최
- ❖ 제6차 당무회의 개최
- ❖ 전주시을지구당 창당대회
- ❖ 전주시을지구당 등록
- ❖ 대전시 동구을지구당 창당대회
- ❖ 대전시 동구을지구당 등록
- ❖ 제2차 중앙위원회 개최

6) 민중당

연 월 일

1990. 11. 10
 1990. 11. 17
 1990. 11. 21
 1990. 11. 27
 1990. 11. 30
 1990. 12. 3
 1990. 12. 5
 1990. 12. 7
 1990. 12. 9
 1990. 12. 17
 1990. 12. 20
 1990. 12. 21
 1990. 12. 21~22

주 요 활 동

- ❖ 창당대회
제1차 중앙위원회
- ❖ 상임집행위원 각 언론사 방문
- ❖ 중앙당 당직자 임명식
민중시대 제9호 발간
- ❖ 제2차 중앙위원회
- ❖ 상임집행위원 국무총리 방문
- ❖ 상임집행위원 법무부장관 방문
지하철 교통난에 대한 정책토론회
- ❖ UR 반대 단식 농성장 방문
- ❖ 전국교도소 양심수 일제 접견
- ❖ 현판식
- ❖ 물가문제에 관한 정책토론회
- ❖ 지하철 대책위 구성
- ❖ 민중시대 제10호 발간
- ❖ 지하철 대책 홍보

1990. 12. 26
1990. 12. 27
1990. 12. 28
1990. 12. 29

- ❖ 지자체 선거대책 특위 구성
- ❖ 3차 중앙위원회
- ❖ 중무식
- ❖ 상임집행위원 국무총리 방문

라. 1991년도

1) 민주자유당

연 월 일

1991. 1. 9
1991. 1. 15
1991. 1. 16
1991. 1. 18
1991. 1. 21
1991. 1. 22

1991. 1. 23

1991. 1. 24
1991. 1. 25

1991. 1. 28

1991. 1. 29

1991. 1. 30
1991. 2. 4

1991. 2. 5

주 요 활 동

- ❖ 제33차 당무회의
- ❖ 지방의회선거 대책회의
- ❖ 제34차 당무회의
- ❖ 제35차 당무회의
- ❖ 제13차 의원총회
- ❖ 제주도지부 창설대회
재무분과 당정회의
내외정세 특위회의
- ❖ 전국 농어민후계자 협의회장단 초청 간담회
시·도지부 및 지구당 사무처요원 연수
- ❖ 정책위 법사분과 당정회의
- ❖ 정책위 내무분과 당정회의
정책위 노동분과 당정회의
- ❖ 정평위 지역갈등 해소특위회의
정평위 수도권대책 특위회의
- ❖ 정책위 경제분과 당정회의
정평위 내외정세 특위회의
- ❖ 제36차 당무회의
- ❖ 지자체 실무대책반 회의
정책위 노동분과 당정회의
- ❖ 제14차 의원총회

1991. 2. 6
1991. 2. 8

1991. 2. 12
1991. 2. 13
1991. 2. 19
1991. 2. 20

1991. 2. 22
1991. 2. 25
1991. 2. 26
1991. 2. 27
1991. 2. 28
1991. 3. 4
1991. 3. 5
1991. 3. 7
1991. 3. 11

1991. 3. 13

1991. 3. 14

1991. 3. 15
1991. 3. 16
1991. 3. 18
1991. 3. 19
1991. 3. 20

1991. 3. 21
1991. 3. 23
1991. 3. 27
1991. 3. 28
1991. 3. 29
1991. 4. 2
1991. 4. 3
1991. 4. 4
1991. 4. 8
1991. 4. 10

- ❖ 제37차 당무회의
- ❖ 정평위 환경분과 회의
정평위 환경보전위원회의
- ❖ 농어촌발전기획단 회의
- ❖ 제38차 당무회의
- ❖ 2000년대 국가발전위원회의
- ❖ 제39차 당무회의
당3역 이·취임식
- ❖ 제15차 의원총회
- ❖ 인도네시아 국회부의장 당사방문
- ❖ 정책위 의장단 회의
- ❖ 의원 및 지구당 위원장 회의
- ❖ 제40차 당무회의
- ❖ 제41차 당무회의
- ❖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 제16차 의원총회
- ❖ 사무총장 기자회견
정책위 실장단회의
- ❖ 제42차 당무회의
정책위 실장단회의
여·야 사무총장 회담
- ❖ 국회법 개정 소위원회 회의
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 회의
- ❖ 주한 이태리대사 및 신임 주일대사 당사방문
- ❖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제도개선 대토론회
- ❖ 여·야 공명선거 협의회의
- ❖ 주한 영국대사 당사예방
- ❖ 국회법 개정 소위원회의
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의
- ❖ 국회법 개정 소위원회의
- ❖ 사무총장 기자회견
- ❖ 제43차 당무회의
- ❖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중소기업 육성정책 협의회의
- ❖ 여·야 총무회담
- ❖ 제44차 당무회의
- ❖ 여·야 당3역 회담
- ❖ 중앙위 의장단 회의
- ❖ 제45차 당무회의

1991. 4. 12	❖ 광역의회선거관련 실국장회의
1991. 4. 15	❖ 정책위 북방정책특위 회의
1991. 4. 17	❖ 제46차 당무회의
1991. 4. 19	❖ 제17차 의원총회
1991. 4. 20	❖ 농어촌발전기획단 전북지역 방문
1991. 4. 22	❖ 제47차 당무회의
1991. 4. 24	❖ 제48차 당무회의
1991. 4. 26	❖ 고위당직자 중앙위 지역지회 순방
1991. 4. 29	❖ 제18차 의원총회
1991. 4. 30	❖ 정평위 문화분과위원 회의 이북5도민 회장단과의 간담회
1991. 5. 1	❖ 제49차 당무회의 새마을단체 임원초청 간담회
1991. 5. 2	❖ 산업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1991. 5. 7	❖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
1991. 5. 10	❖ 제19차 의원총회
1991. 5. 14	❖ 21세기를 향한 지방화시대의 정책토론회
1991. 5. 15	❖ 제51차 당무회의
1991. 5. 27	❖ 정책위 실장단 회의
1991. 5. 29	❖ 제52차 당무회의
1991. 5. 30	❖ 고위당정회의
1991. 6. 5	❖ 고위당직자 공명선거 추진본부 전체회의
1991. 6. 7	❖ 고위당직자 회의
1991. 6. 13	❖ 여·야 중진회담
1991. 6. 25	❖ 시·도의회의원 당선자대회
1991. 6. 27	❖ 제53차 당무회의
1991. 7. 1	❖ 선거제도 개선 소위원회회의
1991. 7. 3	❖ 제54차 당무회의 정책위 실장단 회의
1991. 7. 5	❖ 여·야 사무총장 회담
1991. 7. 8	❖ 제20차 의원총회
1991. 7. 12	❖ 농정 쇄신방안 설명회
1991. 7. 15	❖ 정책위 실장단 회의
1991. 7. 16	❖ 제55차 당무회의
1991. 7. 19	❖ 정책위·외무통일, 법사, 행정분과 당정회의
1991. 7. 24	❖ 제56차 당무회의
1991. 8. 12	❖ 한일의원연맹 제19차 합동총회
1991. 8. 14	❖ 정책위 재해대책을 위한 당정회의
1991. 8. 21	❖ 제57차 당무회의

1991. 8. 22

❖ 남북교류협력 당정회의

1991. 8. 28

❖ 제58차 당무회의

1991. 8. 29

❖ '92예산관련 예결위 분과별 심의

1991. 8. 30

❖ 고위당직자 회의

1991. 9. 4

❖ 여·야 총무회담

1991. 9. 6

❖ 의원세미나

시·도의회의원 교육

제21차 의원총회

1991. 9. 7

❖ 고위당정회의

1991. 9. 9

❖ 당4역 회의, 확대당직자 회의

1991. 9. 11

❖ 제59차 당무회의

1991. 9. 13

❖ 고위당직자 회의

대학총장과의 오찬 간담회

1991. 9. 16

❖ 당4역 회의

1991. 9. 17

❖ 제23회 한일경제위원회 만찬

1991. 9. 20

❖ 노태우 총재 미국, 멕시코순방 출국

1991. 9. 25

❖ 노태우 총재 유엔 연설

국회의원부인 적십자 봉사활동

1991. 10. 2

❖ 정책위, 실장단 회의

1991. 10. 4

❖ 고위당직자 회의

1991. 10. 8

❖ 정책위, 실장단 회의

1991. 10. 9

❖ 당4역 회의

제60차 당무회의

제22차 의원총회

추곡수매관련 정책협의회 회의

1991. 10. 10

❖ 농·수·축협 회장과의 간담회

1991. 10. 12

❖ 고위당직자 회의

1991. 10. 14

❖ 정책위, 실장단 회의

지방자치법 개정 소위원회 2차회의

중앙 홍보대책위원회 회의

1991. 10. 15

❖ 정책위, 국방분과 당정회의

정책위, 체산분과 당정회의

의원 간담회

1991. 10. 16

❖ 제61차 당무회의

정책위, 보사분과 당정회의

1991. 10. 17

❖ 농수산 당정회의

여·야 사무총장 회담

1991. 10. 18

❖ 고위당직자 회의

인력난 해소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당정회의

1991. 10. 19	❖ 고위 당정회의
1991. 10. 22	❖ 노태우 총재, 호남지구당위원장과의 간담회 정평위, 내외정세특위 회의
1991. 10. 23	❖ 한국 노총간부와의 간담회
1991. 10. 24	❖ 협의회장 중앙연수
1991. 10. 25	❖ 대표최고위원 대한변호사협의회와의 간담회 추곡수매관련 당정회의
1991. 10. 26	❖ 정책위, 내무 당정회의
1991. 10. 28	❖ 농촌출신의원 62명, 당3역과의 간담회
1991. 10. 30	❖ 정책위 실장단 회의 여·야 정책위원장 회담
1991. 11. 1	❖ 재해대책기금 마련을 위한 가요의 밤
1991. 11. 4	❖ 정치관계법 협상 6인 실무소위회의
1991. 11. 6	❖ 제62차 당무회의 대학생 당사방문 및 사무총장과의 간담회
1991. 11. 7	❖ 정책위, 지방세법 관련 당정회의 평화통일위원회 회의
1991. 11. 11	❖ 정책위 실장단 회의- 산업기술육성법 제정협의 정책위, 산업기술 당정회의
1991. 11. 12	❖ 정책위, 건설 당정회의
1991. 11. 13	❖ 시·도의원 공천자대회
1991. 11. 14	❖ 시·도지부 지방자치요원 전체회의
1991. 11. 15	❖ 필리핀 외무장관 대표최고위원 예방
1991. 11. 20	❖ 제63차 당무회의
1991. 11. 21	❖ 당소속 시·군·구 의장단 간담회
1991. 11. 25	❖ 정책위, 중소기업대책 당정회의
1991. 11. 26	❖ 산업기술인력을 위한 정책토론회 당3역 회의
1991. 11. 28	❖ 여성정책 토론광장 제23차 의원총회
1991. 11. 29	❖ 고위당직자 회의
1991. 12. 2	❖ 당사이전 현판식
1991. 12. 4	❖ 사무총장 외신기자와의 간담회
1991. 12. 6	❖ 제64차 당무회의 제24차 의원총회
1991. 12. 7	❖ 여·야 원내총무 회담 - 정치관계법 개정 등 국회운영대책 협의
1991. 12. 9	❖ 여·야 총무회담
1991. 12. 10	❖ 인력난해소 및 산업인력양성 기획단 회의
1991. 12. 11	❖ 제65차 당무회의
1991. 12. 12	❖ 국제화·민주화시대의 경제 운용방법과 정치선택을 위한 토론회

1991. 12. 13

1991. 12. 16

1991. 12. 17

1991. 12. 18

1991. 12. 19

1991. 12. 23

1991. 12. 24

1991. 12. 26

1991. 12. 27

1991. 12. 31

- ❖ 고위당직자 회의
- ❖ 제25차 의원총회
해외동포 특위간담회
- ❖ 정책공약개발특위 회의
- ❖ 제66차 당무회의
- ❖ 소속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 ❖ 유관기관 민원담당자와의 간담회
공약개발특위 실무기획단 회의
- ❖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 ❖ 21세기 여성합참단 운영회의
- ❖ 정책위, 경제 당 · 정회의
- ❖ 증무식

2) 민주당 (91. 9. 16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신설합당)

연 월 일

1991. 9. 16

1991. 9. 17

1991. 9. 18

1991. 9. 20

1991. 9. 25

1991. 10. 4

1991. 10. 7

1991. 10. 9

1991. 10. 10

1991. 10. 12

1991. 10. 14

1991. 10. 15

주 요 활 동

- ❖ 신민당, 민주당 합동수입기관 합동회의
제1차 최고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등록, 등록증 교부
대표최고위원: 김대중, 이기택 선출
- ❖ 제2차 최고회의(장소: 국회 귀빈식당)
김대중 대표최고위원 소련, UN, 서독, 폴란드 등 방문차 출국
- ❖ 제3차 최고위원회의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 살해사건에 대해 성명서 발표, 진상조사단 구성
- ❖ 제1차 간부회의
- ❖ 제4차 최고위원회의
- ❖ 제2차 간부회의, 원내대책위원회의
- ❖ 제5차 최고위원회의
- ❖ 제6차 최고회의회의 - 인사위원회 구성
- ❖ 제7차 최고위원회의 - 선거법, 정치자금법 여야협상 실무대표 구성
- ❖ 제8차 최고위원회의 - 정책토론회 실시
- ❖ 제9차 최고위원회의
- ❖ 제10차 최고위원회의

1991. 10. 18
1991. 10. 21
1991. 10. 23
1991. 10. 25
1991. 10. 26
1991. 10. 28
1991. 10. 30
1991. 11. 1
1991. 11. 4
1991. 11. 6
1991. 11. 8
1991. 11. 9
1991. 11. 11
1991. 11. 12
1991. 11. 13
1991. 11. 15
1991. 11. 18
1991. 11. 20
1991. 11. 22
1991. 11. 27
1991. 11. 29
1991. 12. 2
1991. 12. 4
1991. 12. 6
1991. 12. 9
1991. 12. 11
1991. 12. 13
1991. 12. 16
1991. 12. 17
1991. 12. 19
1991. 12. 20
1991. 12. 23
1991. 12. 24
1991. 12. 27
1991. 12. 30

- ❖ 제3차 간부회의
- ❖ 제11차 최고위원회의
- ❖ 제12차 최고위원회의
- ❖ 제4차 간부회의
- ❖ 의원총회
- ❖ 제13차 최고위원회의 - 「농민과의 대화」 9개도 3개반
- ❖ 제14차 최고위원회의
- ❖ 제5차 간부회의 - 당무위원명단 발표
- ❖ 제15차 최고위원회의 - 전교조 서울지부 및 시국선언탄압 대책위원회 농성
- ❖ 제1차 당무회의
- ❖ 제6차 간부회의 - 정책토론회 「현행세제의 문제와 개혁의 방향」
- ❖ 제5차 젊은 직장인과의 대화
- ❖ 제16차 최고위원회의 - 제51회 정책토론회 「92년 상반기 3대 선거 동시실시방안」
- ❖ 개구리소년과 10만실종자 찾기 발대식 - 당보 가두배포, 전단배포
- ❖ 제2차 당무회의
- ❖ 제7차 간부회의
- ❖ 제17차 최고위원회의
- ❖ 제3차 당무회의
- ❖ 제8차 간부회의
- ❖ 제4차 당무회의 - 당 심블마크, 로고, 당가, 입상수여식
- ❖ 제9차 간부회의
- ❖ 제19차 최고위원회의
- ❖ 제5차 당무회의
- ❖ 제10차 간부회의
- ❖ 제20차 최고위원회의 - 당간부 연수
- ❖ 제6차 당무회의 - 범죄추방 캠페인 발대식 및 카퍼레이드
- ❖ 제11차 간부회의
- ❖ 제21차 최고위원회의
- ❖ 제7차 당무회의
- ❖ 전방장병 위문
- ❖ 제12차 간부회의
- ❖ 불우이웃 및 경찰위로 방문
- ❖ 제22차 최고위원회의 - 제1차 전당직자회의 임명장 수여식
- ❖ 제13차 간부회의
- ❖ 각 위원회별 종무식

3) 공명민주당

연 월 일

1991. 2. 2
 1991. 3. 15
 1991. 5. 24
 1991. 7. 20
 1991. 7. 21
 1991. 7. 24
 1991. 7. 26
 1991. 8. 3
 1991. 8. 19
 1991. 9. 10
 1991. 10. 1
 1991. 10. 20
 1991. 10. 24
 1991. 12. 30

주 요 활 동

- ❖ 울산시 남구지구당 창당대회
- ❖ 울산시 중구지구당 창당대회
- ❖ 임시전당대회
- ❖ 전국 지구당위원장 단합대회
- ❖ 충북 괴산군지구당 창당대회
- ❖ 양천갑지구당 개편대회
- ❖ 부천 중구지구당 개편대회
- ❖ 창당1주년 기념식
- ❖ 성남시 수정구지구당 개편대회
- ❖ 성남시 중원·분당지구당 개편대회
- ❖ 관악(갑)구지구당 창당대회
- ❖ 관악(을)구지구당 개편대회
- ❖ '91중무식 거행
- ❖ 광명시지구당 창당대회

4) 민중당

연 월 일

1991. 1. 12
 1991. 1. 23
 1991. 2. 5
 1991. 2. 8
 1991. 2. 19~21

 1991. 2. 23
 1991. 3. 8
 1991. 3. 11

 1991. 3. 22

주 요 활 동

- ❖ 대표위원 연두기자회견
- ❖ "정치자금법 개정청원서" 국회에 제출
- ❖ 제5차 정책토론회 개최
- ❖ 헌법재판소에 기탁금문제와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 ❖ 중앙당 및 전지구당 "수서특혜 전면재조사 및 노정권 퇴진촉구" 철야농성 및 항의집회
- ❖ 조선노동당의 남한 정당초청에 대응, 방북신청
- ❖ 제5차 중앙위원회 개최
- ❖ 민중당이 헌법소원한 기탁금문제에 대한 "헌법불일치" 판결 받아냄
- ❖ 제6차 정책토론회 개최
- ❖ 대구 폐놀오염사건과 관련 "낙동강 상수오염 진상조사단" 구성

1991. 4. 27
1991. 5. 4
1991. 5. 7
1991. 5. 9
1991. 5. 18
1991. 5. 25
1991. 6. 20
1991. 7. 25
1991. 8. 4 ~16
1991. 8. 5~9, 5
1991. 8. 21
1991. 9. 13
1991. 10. 21
1991. 10. 28~30
1991. 11. 9
1991. 11. 3~12
1991. 11. 10
1991. 11. 18
1991. 12. 21~22
1991. 12. 3

- ❖ 강경대군 폭력살인 시경앞 규탄시위
민중당후보회 주최로 “민중당 후원을 위한 민해경 디너쇼” 개최
- ❖ “백골단 해체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결기대회” 참가
- ❖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 사인규명 진상조사단 구성
- ❖ “민자당 해체와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국민대회” 참가
- ❖ 제3차 국민대회 참가
- ❖ 비상중앙위원회 개최
- ❖ 광역의회선거 참여
- ❖ 제7차 정책토론회 개최
- ❖ 장기표 정책위원장 길림성 사회과학연합회 초청으로 중국방문
- ❖ 지구당 당무감사 및 광역별 지구당 간부연수
- ❖ 제8차 정책토론회 개최
- ❖ 제9차 정책토론회 개최
- ❖ 제10차 정책토론회 개최
- ❖ “선거,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민중당 농성”
- ❖ 창당 1주년 기념식
- ❖ 성희직 강원도의회의원 단식농성
- ❖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 ❖ 이우재 상임대표, 장기표 정책위원장, 이재오 시무총장 등 3인 노태우 대통령 면담
- ❖ 제14대총선 집체교육실시
- ❖ 종무식

마. 1992년도

1) 민주자유당

연 월 일
1992. 1. 13
1992. 1. 14
1992. 1. 15
1992. 1. 17

- 주 요 활 동
- ❖ 여성정책개발 간담회
 - ❖ 정책공약 세미나
 - ❖ 제67차 당무회의
 -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 정책토론회

1992. 1. 21
 1992. 1. 22
 1992. 1. 23

 1992. 1. 25
 1992. 1. 27
 1992. 1. 28

 1992. 1. 29
 1992. 1. 30

 1992. 1. 31
 1992. 2. 1
 1992. 2. 7
 1992. 2. 8
 1992. 2. 11
 1992. 2. 12
 1992. 2. 13
 1992. 2. 17
 1992. 2. 18
 1992. 2. 19
 1992. 2. 20

 1992. 2. 24
 1992. 2. 25
 1992. 2. 27
 1992. 2. 28
 1992. 3. 1
 1992. 3. 4
 1992. 3. 5
 1992. 3. 6

 1992. 3. 10

 1992. 3. 12
 1992. 3. 13
 1992. 3. 15
 1992. 3. 21
 1992. 4. 7

- ❖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 정책토론회
- ❖ 제68차 당무회의
- ❖ 실질적인 여성지위 향상방안 정책토론회
시·도 및 지구당 여성부장 회의
- ❖ 저소득계층의 복지향상과 노인복지 정책토론회
- ❖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농수산업 구조조정 정책토론회
- ❖ 여성단체장과의 정책간담회
남북관계 정책토론회
- ❖ 토지정책 정책토론회
- ❖ 대학입시제도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국제노동 환경변화와 노사정책의 방향 정책토론회
- ❖ 지자체의 건전한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 제69차 당무회의
- ❖ 제14대 총선 공천자대회
- ❖ '92 정책백서 발간
- ❖ 수도권지역 지역장, 관리장 연수
- ❖ 서울지역 노점상연합회 간부진 간담회
- ❖ 국회의원후보자 부인 회의
- ❖ 새질서봉사단 운영위원 회의
- ❖ 성폭력특별법제정 실무당·정회의
- ❖ 사립유치원 연합회 임원 간담회
- ❖ "다시 뛰는 한국인 일하는 민자당" 총선 공약집 발간
정당초청 농정공약 토론회
- ❖ 수도권 교통대책 간담회
- ❖ 제14대 총선 선거대책본부 발족
- ❖ 총선공약 관련 전문지 언론인과의 간담회
- ❖ 당원단합대회
- ❖ 지방의원 간담회
- ❖ 정평위 환경분과 회의
- ❖ 정평위 교육, 여성, 문화분과 회의
- ❖ 제70차 당무회의
정평위 노동, 정치, 외교통일, 농수산 경제분과 회의
- ❖ 정평위 교육분과 대책회의
정평위 도시영세민 대책회의
- ❖ 정평위 문화분과 회의
- ❖ 정평위 경제·과학 기술분과 회의
- ❖ 정평위 외교통일, 사회분과 회의
- ❖ 정평위 경제·환경, 정치분과 회의
- ❖ 정평위 교육분과 회의

1992. 4. 9	❖ 제71차 당무회의
1992. 4. 14	❖ 시·도의회 의장단 및 의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1992. 4. 17	❖ 제72차 당무회의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회의
1992. 4. 20	❖ 공약평가 토론회
1992. 4. 21	❖ 행정규제완화특위 당·정회의 농수산분과 당·정회의 성폭력특별법 당·정간담회
1992. 4. 22	❖ 상공분과 당·정회의
1992. 4. 23	❖ 환경분과 당·정회의
1992. 4. 24	❖ 행정규제완화특위 당·정회의
1992. 4. 27	❖ 전국지구당 사무국장 회의
1992. 4. 30	❖ 시·도 조직부장 회의
1992. 5. 14	❖ 제73차 당무회의
1992. 5. 19	❖ 제2차 정기전당대회
1992. 5. 26	❖ 지자체법 개정관련 당·정회의
1992. 6. 3	❖ 의원총회
1992. 6. 9	❖ 정책위원회 회의 시·도시무처장 회의
1992. 6. 10	❖ 당총무단 전체회의
1992. 6. 11	❖ 시·도시무처장 회의
1992. 6. 13	❖ 대통령선거법개정 소위원회 구성
1992. 6. 17	❖ 제74차 당무회의 전국지구당 조직부장 및 홍보위원장 회의
1992. 6. 20	❖ 핵 관련 당·정회의 전국지구당 하계수련대회
1992. 6. 22	❖ 정책위원회 산하 중소기업육성특위 신설
1992. 6. 23	❖ 정평위 환경분과 회의
1992. 6. 24	❖ 제75차 당무회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
1992. 6. 27	❖ 6·29 선언 5주년기념 평가보고회의
1992. 6. 29	❖ 의원총회
1992. 6. 30	❖ 행정규제완화특위위원 회의
1992. 7. 2	❖ 고위당직자 회의 및 중소기업 대책회의 성폭력방지특별법 당·정회의
1992. 7. 3	❖ 대통령선거법 개정소위 회의
1992. 7. 6	❖ 예산편성관련 당·정회의
1992. 7. 10	❖ 제76차 당무회의
1992. 7. 13	❖ 교체위 당·정간담회

1992. 7. 14
1992. 7. 16
1992. 7. 20
1992. 7. 21

1992. 7. 22
1992. 7. 28
1992. 8. 4
1992. 8. 5
1992. 8. 6
1992. 8. 12
1992. 8. 13
1992. 8. 14
1992. 8. 18
1992. 8. 24
1992. 8. 25
1992. 8. 26
1992. 8. 28

1992. 8. 31
1992. 9. 1

1992. 9. 4
1992. 9. 8
1992. 9. 14
1992. 9. 18
1992. 9. 21
1992. 9. 30
1992. 10. 2
1992. 10. 7
1992. 10. 8
1992. 10. 13
1992. 10. 14
1992. 10. 17
1992. 10. 21
1992. 10. 23
1992. 10. 24
1992. 11. 3
1992. 11. 8

- ❖ 행정규제완화특위 간사회의
- ❖ 행정규제완화특위 회의
- ❖ 정책위의장단 회의
- ❖ 정책위 외교통일분과 회의
재정위원회 회의
- ❖ 제77차 당무회의
- ❖ 의원총회
- ❖ 농수산분과, 건설분과 당 · 정회의
- ❖ 제78차 당무회의
- ❖ 지방중소기업의 육성방안과 대책토론회
- ❖ 제79차 당무회의
- ❖ 세계개혁특위 회의
- ❖ 정치관계법심의특위 회의
- ❖ 행정규제완화특위 공청회
- ❖ 문화예술계 단체장과의 간담회
- ❖ 제80차 당무회의
- ❖ 농업구조개선과 농지제도 개선토론회
- ❖ 제81차 당무회의
제2차 상무위원회 회의
- ❖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합리적 방안 공청회
- ❖ 제82차 당무회의
국가운영과 리더십에 관한 토론회
- ❖ 수신단체와의 간담회
- ❖ 공업정비 및 공장설치규제 완화방안 토론회
- ❖ 의원총회
- ❖ 제83차 당무회의
- ❖ 제84차 당무회의
- ❖ 제85차 당무회의
- ❖ 의원총회
- ❖ 제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 ❖ 의원총회
- ❖ 의원총회
- ❖ 농수산단체, 이용사협회 간담회
- ❖ 제86차 당무회의
- ❖ 제14대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 ❖ 시 · 도의회의원 전체회의
- ❖ 대선정책공약 토론회
- ❖ 선대위 상임위원회 회의
- ❖ “다시 뛰는 한국인, 우리 함께 뛴시다” 여의도 행사

- 1992.11. 10
- 1992.11. 11
- 1992.11. 12
- 1992.11. 16
- 1992.11.18
- 1992.11. 19
- 1992.11. 20
- 1992. 12. 1
- 1992.12. 19
- 1992.12. 23
- 1992.12. 24
- 1992.12. 30

- ❖ 이동민원 상담실 발대식
- ❖ 불교정책 토론회
“신한국창조를 위한 김영삼의 실천약속” 대선공약집 발간
- ❖ 대선정책공약 설명회
- ❖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세미나
- ❖ 대선유세연사단 발대식
과학정책토론회
- ❖ 의원총회
- ❖ 선거사무소 현판식
- ❖ 관훈토론회
- ❖ 김영삼 총재 당선 기자회견
- ❖ 중앙당후원회 제2차 정기총회
- ❖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 ❖ 대통령직 인수위 발족
민청 대선평가회

2) 민주당

연 월 일

- 1992. 1. 6
- 1992. 1. 7
- 1992. 1. 8
- 1992. 1. 11
- 1992. 1. 13
- 1992. 1. 14
- 1992. 1. 15
- 1992. 1. 16
- 1992. 1. 22
- 1992. 1. 29

주 요 활 동

- ❖ 의원총회
- ❖ 제주도 개발법 철폐 범도민회대표 면담
- ❖ 제8차 당무회의
- ❖ 제9차 당무회의
- ❖ 공동대표 기자회견
- ❖ 정책토론회
지역감정해소 국민운동본부 의장단과 오찬
- ❖ 제10차 당무회의
- ❖ 헝가리대사초청 오찬
- ❖ 제11차 당무회의
한국여성유권자연맹간부 면담
- ❖ 제12차 당무회의
제2차 대전 중 일본에 의한 민간인피해자 및 유족들과의 간담회

1992. 2. 1
1992. 2. 6
1992. 2. 8
1992. 2. 12
1992. 2. 18
1992. 2. 20
1992. 2. 24
1992. 3. 2
1992. 3. 7
1992. 3. 11
1992. 3. 26
1992. 7. 1
1992. 7. 3
1992. 7. 6
1992. 7. 8
1992. 7. 11
1992. 7. 13
1992. 7. 14
1992. 7. 15
1992. 7. 20
1992. 7. 22
1992. 7. 23
1992. 7. 28
1992. 7. 29
1992. 7. 31
1992. 8. 1
1992. 8. 3
1992. 8. 4

1992. 8. 5
1992. 8. 6
1992. 8. 7

1992. 8. 11
1992. 8. 12

1992. 8. 14
1992. 8. 17
1992. 8. 25

- ❖ 제1차 조직책 발표
- ❖ 제2차 조직책 발표
- ❖ 민주광장 출판기념회
- ❖ 제13차 당무회의
- ❖ 지방신문 기자회견
- ❖ 제14대 총선대책기구 인선 임명
- ❖ 중앙선거대책본부 발대식
- ❖ 제14대 총선공천자대회
- ❖ 김대중, 이기택 대표 기자회견
- ❖ 20~30대후보 공동기자회견
- ❖ 군부재지투표 부정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
- ❖ 제22차 당무회의
- ❖ 농산물피해 진상대책위원회 회의
- ❖ 의원총회
- ❖ 제23차 당무회의
- ❖ 전국지구당위원장 연수
- ❖ 의원세미나
- ❖ 전국지구당위원장부인 및 의원부인 연수
- ❖ 제24차 당무회의
- ❖ 지구당 핵심 여성당원 연수
- ❖ 제25차 당무회의 및 의총연석회의
- ❖ 시·도지부 사무처장 및 지구당 사무국장 연수
- ❖ 민주승리 및 부정선거 진상보고대회
- ❖ 제26차 당무회의
- ❖ 의원총회
- ❖ 의원총회
- ❖ 의원총회
- ❖ 의원총회
- 중앙당 청년당원 및 지구당 청년당원 연수
- ❖ 의원총회
- ❖ 3당 대표회담
- ❖ 민주여성대학 개교식
- 의원총회
- ❖ 의원총회
- ❖ 3당 대표회담
- 의원총회
- ❖ 제27차 당무회의
- ❖ “한·일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관한 세미나
- ❖ 전국지구당부위원장 연수

1992. 8. 26	❖ 제28차 당무회의
1992. 8. 31	❖ 지구당위원장 및 국회의원 합동회의
1992. 9. 2	❖ 제29차 당무회의
	제65회 정책토론회
1992. 9. 4	❖ 전국지방의회의원 단합대회
1992. 9. 5	❖ 관권부정선거 규탄 국민대회
1992. 9. 8	❖ 김대중 대표 소련방문
1992. 9. 9	❖ 한준수 군수 연행 후 심야 긴급대책회의
1992. 9. 14	❖ 의원총회
	3당 총장회담
1992. 9. 15	❖ 노벨평화상 심사위원장 초청 리셉션
1992. 9. 16	❖ 제32차 당무회의
1992. 9. 17	❖ 제33차 당무회의
	의원총회
1992. 9. 19	❖ 한준수 군수 석방 및 관철 촉구대회
1992. 9. 21	❖ 의원총회
1992. 9. 23	❖ 제34차 당무회의
1992. 9. 25	❖ 김대중후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진 간담회
1995. 9. 27	❖ 3당대표회담
	의원총회
1992. 9. 29	❖ 전국지구당위원장 및 국회의원 합동회의 개최
1992. 10. 2	❖ 국회본회의 개최
1992. 10. 6	❖ 당헌·당규소위원회 회의
1992. 10. 7	❖ 제35차 당무회의
1992. 10. 8	❖ 의원총회
1992. 10. 12	❖ 여성정책토론회
1992. 10. 13	❖ 제14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1992. 10. 14	❖ 의원총회
1992. 10. 21	❖ 제36차 당무회의
1992. 10. 23	❖ 출발 20~30대 물결 문화행사
1992. 10. 26	❖ 의원총회
1992. 11. 5	❖ JC초청 3당후보 토론회
1992. 11. 7	❖ 임시전당대회 개최
1992. 11. 8	❖ 제37차 당무회의
1992. 11. 13	❖ 시·도지부장 회의
1992. 11. 17	❖ 경실련초청 토론회
1992. 11. 18	❖ 의원총회
1992. 11. 19	❖ 소련 열친대통령과 면담
	의원총회

1992. 11. 21
 1992. 12. 1
 1992. 12. 8
 1992. 12. 15
 1992. 12. 21
 1992. 12. 28

- ❖ 유세차량 출정식
- ❖ 일일평가회의 및 실무합동회의
- ❖ 선대위 상임위원회의
- ❖ 선대위 상임위원회의 및 실무합동회의
- ❖ 선대위 상임위원회의
- ❖ 최고위원회의

3) 통일국민당

연 월 일

1992. 1. 10
 1992. 2. 8
 1992. 2. 20

 1992. 2. 19
 1992. 3. 24

 1992. 4. 7
 1992. 4. 22
 1992. 5. 15
 1992. 5. 28
 1992. 7. 21
 1992. 7. 24
 1992. 8. 21
 1992. 10. 1
 1992. 11. 3
 1992. 11. 8
 1992. 11. 15
 1992. 11. 21

주 요 활 동

- ❖ 창당발기인대회
- ❖ 통일국민당 창당대회
- ❖ 당보창간호 발행
 14대 총선 공천자대회
- ❖ 정책광고 시리즈 게재(9회)
- ❖ 14대 총선 참여 - 지역구수 : 189개
 - 당선지수 : 31명(전국구 7명 포함)
- ❖ 군부재지투표 진상규명 서명운동
- ❖ 지구당위원장 단합대회
- ❖ 대통령후보선출 임시전당대회
- ❖ 의정활동과 관련한 당선자 세미나
- ❖ 광화문 토론회 개최(18회)
- ❖ 여성을 위한 시사강좌 개최(17회)
- ❖ 나라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모집(7회)
- ❖ 14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
- ❖ 3대 국민운동실천 당원결의대회
- ❖ 제1회 중앙상무위원회
- ❖ 전국 237개 지구당 창당완료
- ❖ 대선필승 전진대회

4) 신정치개혁당

연 월 일
1992. 2. 25
1992. 5. 21
1992. 5. 28
1992. 6. 9
1992. 8. 14
1992. 11. 13
1992. 11. 20

주 요 활 동
❖ 신정치개혁당 창당대회
❖ 신정당 시민토론회
❖ 대선법, 정치자금법 개정 국민청원 서명운동 노상시민토론회: 150회
❖ 임시전당대회 - 제14대 대통령후보 박찬종 대표 선출
❖ 당대표 클린턴 미국 대통령후보 환담
❖ 대선공약설명회
❖ 제14대 대통령후보 등록

5) 신민주당 (93. 1. 18 진리평화당에서 신민주당으로 당명변경)

연 월 일
1992. 5. 4
1992. 10. 24
1992. 11. 6
1992. 11. 18
1992. 11. 24
1992. 11. 26
1992. 12. 23

주 요 활 동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보고
❖ 중앙당 창당대회
❖ 중앙당 등록
❖ 제2차 임시전당대회
❖ 제3차 임시전당대회
❖ 제4차 임시전당대회
❖ 제5차 임시전당대회

6) 친민당

연 월 일
1992. 11. 24
1992. 12. 24

주 요 활 동
❖ 도덕성회복 추진을 위한 당원교육
❖ 도덕성회복 추진을 위한 당원교육

7) 대한정의당

연 월 일

1992. 11. 16
1992. 11. 25
1992. 12. 20

주 요 활 동

- ❖ 전국대의원대회 및 제14대 대선후보지명 대회
- ❖ 제14대 대선 대책본부발족 및 선거사무소 설치
- ❖ 선거대책본부 해산

8) 새한국당

연 월 일

1992. 10. 23
1992. 11. 12
1992. 11. 17
1992. 11. 19
1992. 11. 20
1992. 12. 12
1992. 12. 13
1992. 12. 14

주 요 활 동

- ❖ 새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및 신고
- ❖ 창당집회 개최 공고
- ❖ 새한국당 창당대회
- ❖ 새한국당 중앙당 등록
- ❖ 제14대 대선 이종찬 후보등록
- ❖ 제6차 당무회의
- ❖ 제7차 당무회의
- ❖ 이종찬후보 후보사퇴

6. 창당발기취지문·창당 및 합당선언문

가.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 창당선언문

우리는 오늘, 민주·번영·통일의 새로운 민족사를 위한 중추적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민족민주세력을 총결집하여 “민주자유당”의 깃발을 올린다. 2000년대의 여명 앞에 한민족이 새 세기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태세(態勢)가 필요하다는 자각아래 이제 우리는 신념에 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사를 얼룩지웠던 갈등과 반목의 기억을 역사의 대하속에 흘려 보내고 민주발전과 국민화합, 국리민복과 민족통일의 과업을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시급한 책무임을 확인한다. 세계질서가 재편성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자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정치가 창조적인 개혁으로 새로워 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청신(淸新)한 국민정당의 등장이어야말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 이러한 확신에서 우리는 나라와 겨레의 부름에 기꺼이 순응하여 온 나라의 민주세력을 하나로 결속시킨 “민주자유당”을 창당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위대한 새출발을 하는 우리 당원들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며 나라를 밝은 미래로 이끌 포부에 온 가슴이 벅차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나라의 기틀로 삼고, 조국의 민주적 통일을 주도하여 자주·자존의 바탕 위에서 세계 속에 우뚝 설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하려 한다.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참다운 민주발전을 이룩하는 정치, 지속적인 성장으로 국민복지를 뒷받침하는 경제,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정의와 양심이 살아 숨쉬는 사회, 그리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민족문화, 이 모든 것을 구현하는 데 온갖 힘과 정열을 다 쏟고자 한다.

우리는 지역간·계층간·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대화합을 실현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미래로’ 출발하는 선상에 스스로 서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국민적 역량을 한데 모으고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조국의 정치사에 신기원을 여는 오늘, 우리의 눈은 빛나고 발길은 당당하다.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국민의 우렁찬 박수가 우리를 성원해 주고 있다.

90년대의 서장을 열면서 영구히 민족과 함께 할 믿음직한 국민정당을 우리 손으로 출범시키게 된 것을 다시없는 영광으로 가슴에 새긴다. 우리의 이러한 보람이 곧 나라의 영광, 겨레의 영광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 새시대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정성을 기울일 것을 역사앞에 선언한다

1990. 2. 9

민주당 발기취지문

우리는 궤멸상태의 야당을 다시 세우고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민주세력의 결집을 위하여 민주당 창당을 발기한다.

3년전 대통령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총선이후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의 통합 마저도 끝내 이루지 못한 채, 급기야는 유신잔당인 신민주공화당의 부추김에 뇌동한 통일민주당 지도부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위헌적 범죄행위에 직면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무능과 무력에 대해 국민여러분에게 깊이 사과하는 바이다.

그러나 야합에 의한 민자당의 창당이 군사독재 세력의 장기집권 야욕과 부패한 야당 귀족들의 사리사욕, 그리고 유신 찌꺼기들의 잔명보전을 위한 반 역사적·반국민적 배신행위임을 엄숙히 밝히면서 이제 새로운 햇볕을 들고자 한다.

우리는 이들의 보수대야합이 필연적으로 야기시킬 민생파탄, 인권말살, 지역감정 격화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통한 민족화합과 통일대업 성취를 위하여 정통야당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정신을 계승하고 모든 민주세력을 통합하는 씨앗이 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야당의 통합에 대비하여 이를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우리당은 족벌주의자와 분파주의자들에 의해 사당화되어 짓밟혀 온 민주주의 원칙을 소생시켜 당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토론을 체질화 할 것이다.

우리는 또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정책정당을 건설하고 수권태세를 갖추어 국민속에 집권능력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질적 신진대사와 인적 세대교체를 끊임없이 단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제 분열된 야당의 일각이 장기집권구도에 편입, 용해되어 가는 현실을 개탄하여 좌절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힘찬 출발을 맞아 분연히 일어섰다.

법을 지키고 약속을 실천하며 폭력을 배격하는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이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며, 민주화와 민족번영의 풍성한 열매는 우리의 후손들이 딸 수 있도록 묵묵히 전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준엄한 질타와 격려를 삼가 당부드리는 바이다.

1990. 2. 27

민주당(가칭)창당발기준비위원회

다. 공명민주당

공명민주당(가칭) 발기취지문

동구공산권의 붕괴는 세계정치사상 일대이변으로 앞으로 민주발전에 커다란 새 장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발맞추어 국내 여야정당들은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로 여야합당이라는 우리 헌정사에 찾기 힘든 새 정치판도를 구축하려 들고 있어 자못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모름지기 한나라의 정치이상은 국민민복에 요약된다고 하겠으며, 그에 진정한 민주적 시책으로 그 억압된 민권을 어느 정도 신장해 나가고 있느냐에 민주정치를 논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작태는 말할 것 없이 소의적 당리당책에만 사로잡혀 그 국가민족이 지향하려는 정치적 미래상이 없다는데 큰 실망을 가져 온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때까지의 정치적 작태는 국민의 정치적 불감증으로 나타나 민생불안과 노사분규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일보직전에 멈추는 우를 범하고 있으니 그저 안타깝기 이를 때 없다.

이에 저희 공명민주당(가칭)은 이러한 정치적 작태를 일소하고 그 시급을 요하는 민생안정에 힘써 국민생활에 직결하는 정경의 제도적 확립으로 경제부흥에 기하고자 한다. 이에 그 정책적 일환으로 뒤진 농정을 쇄신하여 앞선 상공업에 발맞춰 균형있는 생활문화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특히 중소기업의 계열화와 활성책을 써, 중산층의 벽을 두텁게 마련하는 기초조성에 힘써, 앞으로 그 대변적 정당으로 자처하고자 한다.

또 그 정치적 이념은 그 선열들이 꾀기한 3.1운동정신에 뒤돌아가 하나의 구국정당으로서 참된 민주복지 국가 건설의 밑거름이 되어 선구적인 정책정당이 되고져 이 공명민주당(가칭)을 창당하는 바이다.

1990년 1월

공명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공명민주당 창당취지문

우리 민족은 하나의 종족과 문화로 이루어진 한겨레 단일민족으로서 수많은 외침과 성장속에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역사를 창조해 왔습니다.

오늘의 이데올로기적 냉전체제 속에 국토가 분단된 비극을 겪고 있으나 이에 절망하지 않고 민족통일의 후일을 기약하면서 국가번영에 모든 것을 바치는 적극적 자세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부 록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문화권을 보면 해방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권모술수로 빚어지는 당쟁정치에서 독재나 반독재나 영구집권이나 정권교체나 탄압이나 저항이나 관권횡포나 인권쟁취나 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좁쌀 정치에서 해탈하여 대오각성과 더불어 새시대 새정치 문화권으로 이정표를 바꾸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지난날까지의 정적이나 정우나 호남이나 영남이나 하는 지역 개념의 정계판도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역 감정을 초월한 진보된 때문지 않은 새 정치문화 형태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9년 말까지는 언필칭 5공청산 정국을 놓고 우리 정치사를 얼룩지게 한 반목과 갈등의 기억을 역사의 물보라에 흘려보내고 1990년대 부터는 민주정치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은 물론 치안질서 확립과 민생문제의 향상에 기여하는 정치를 전개해서 제반 위기 증상들의 극복과 구조적 난제들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남과 북을 의식하는 한겨레 통일국가 형성전략이 무엇이나 하는 선진적 정치문화 창달의 대전략수준에서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의 시국은 민족자각의 시대에서 남북통일의 시대를 개막해야 할 거시적이고도 이상적인 정치지표를 내걸고 자유주의나 보수주의나 진보혁신주의나 하는 역사의 물줄기를 따라 이 3대 조류를 적절히 혼용해서 선진적인 정치문화에 승화시켜야 할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에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과 나라와 겨레의 부름에 거기에 순응하여 그동안 좁쌀정치의 구도에 참여치 않았던 청렴결백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한 공명정대하고 청신한 민주세력의 규합으로 응집되는 공명민주당을 창당하고자 합니다.

우리당은 자유시장 경제를 나라의 기틀로 삼고 한겨레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한 어머니 배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와 같다는 동일 가치관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 진보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와 풍요한 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자치를 동반하는 균형있는 함께 잘 사는 민주주의와 지구촌 전체를 의식하고 민족아의 일원으로써의 사해동포애에 입각한 국제적 민주주의 등 새로운 정치발전을 통한 선진적인 정치문화 창달에 전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대의 여명 앞에 우뚝서서 영구히 한겨레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쌍둥이정치문화(Twin political culture)로 승화시켜 평화적 조국 통일을 쟁취하려는 공명민주당을 창건함으로써 새시대 새정치 발전의 주역을 담당하는 자긍심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온갖 정성을 기울일 것을 역사 앞에 다짐하면서 공명민주당의 깃발을 저 푸른 창공에 굳건히 올리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시대적 요청으로 민족과 국가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각 개인의 아름다운 삶과 기회 균등의 보장을 추구하고 성숙된 도덕사회를 구현하여 미래 우리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지향

할 비를 모색하고 민족정신을 재확인 정립함으로써 민족의 진로에 새로운 활기와 생명력을 갖게 하며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시대에 부과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제가 국민화해와 나라의 민주적 발전입니다.

우리는 대변혁과 웅비의 시운을 맞은 이 시기에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민족화해와 민주발전의 출발점임을 확신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땅에서 소외되고 가난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모든 이웃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그들의 고뇌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 보자”는 구호아래 국민적 역량을 총집결해 왔으나 이제는 “함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일체의 독단과 극단주의, 독재와 권위주의를 배격하며 다양한 견해, 대화와 양보, 상호 신뢰를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등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과 책임의식으로 결집하여 조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이익보다 도의와 사명감이 지배하는 공명정대한 사회를 지향하며 부정부패와 한탕주의 등은 영원히 근절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정당한 댓가를 받는 기회균등의 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갈망과 의지를 실현시킴에 있어 인간애를 그 바탕으로 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산업, 외교, 안보 등 국가 사회의 각 분야에 공명정대한 양심세력으로 적극 참여하고자 공명민주당을 창당하는 바입니다.

1990. 7. 18

라. 민중당

민중당(가칭) 발기취지문

우리는 오늘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국내·외 동포와 전세계 자유인들의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민중당'의 창당발기를 힘차게 선언한다. '민중당'의 출범선언은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여성, 중간계층, 중소기업인 등 민중이 수탈과 억압의 굴레를 박차고 일어나 정치의 주인 됨을 선언하는 것이며 분단과 예속의 체제를 타파하여 자주, 민주, 통일, 민중복지의 민족사를 개척하는 주체가 됨을 선포하는 것이다.

분단이후 우리의 정치사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외세와 군사독재에 의해 권력이 장악 되어 왔으며, 보수야당은 타협과 분열을 거듭하면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였다. 민중이 배제된 정치는 결국 가진 자들을 위한 야합의 정치였으며 민중억압의 정치였다.

이땅의 노동자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에 시달려왔으며, 농촌은 저곡가와 수입개방으로 황폐화되고 있다. 도시서민은 부동산투기로 보금자리를 잃고 있으며 중간계층은 향락과 퇴폐의 사회 속에서 참된 삶의 방향을 잃고 있다.

그러나 혹독한 탄압과 수탈 속에서도 민중은 굳세게 일어서고 있다. 4월혁명, 광주항쟁, 6월항쟁, 7·8월의 노동자 대투쟁 등 험난한 민족민주투쟁의 대오에 민중은 항시 선봉에 섰으며 빼앗긴 자유를 되찾고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여 왔다.

고난에 찬 투쟁의 가시밭길을 헤쳐오면서 민중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교사, 청년학생 등 전국적인 조직 대열을 갖춘 민중은 이제 사회운동 차원에서 더 나아가 민중의 이익과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고 민족민주운동을 국민적 차원에서 고양시킬 수 있는 민중의 정당 출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민족운동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민중정당을 출현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분단 이후 끊임없이 전개되어 온 민족민주운동의 찬란한 전통을 이어받아 80년대 이후 고도성장하고 있는 민중운동의 역량을 토대로 하면서 4월혁명 이래 축적된 각계각층의 민주세력을 결집하여 '민중당'을 창당하려 한다.

우리는 민중주체의 당을 건설할 것이며, 민주세력 연합의 실현을 통해 민주화투쟁과 민중기본권 수호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건전한 민중재정의 확립 등을 통해 진취적인 당 기풍을 확립할 것이다.

우리 당의 기본목표는 외세와 군사독재의 통치를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를 수립함에 있다. 또한 우리는 야당 및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내각제개헌 기도를 통해 노골화되고 있는 민자당의 장기집권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며 민중생존권투쟁에 대한 지원, 제반악법 개폐투쟁, 양심수 석방, 한반도 긴장완화와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우리 당의 주인은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여성, 중간계층, 중소기업인 등 민중 자신이다. 우리 당은 민중의 이익과 정치적 의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온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위력적인 대세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것

이다. 우리는 민중이 있는 곳에 항시 있으며 민중과 더불어 고통과 눈물을 나눌 것이며, 찬란한 민주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이제 그동안 정치적 들러리에 불과하였던 이땅의 민중은 '민중당'의 출범과 함께 정치의 주인이자 역사 발전의 주체가 되었다. 희망찬 민중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새 역사의 여명이 '민중당'과 함께 찬연히 밝아오고 있다.

온 국민의 참여와 격려, 성원을 바란다.

1990. 6. 21

민중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창 당 선 언 문

우리는 오늘 민주주체의 참다운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의 염원과 역량을 한데 모아 역사적인 민중당의 창당을 7천만 국내외 거레와 세계만방에 힘차게 선언한다.

민중당의 창당은 분단이후 외세와 군사독재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피어린 투쟁을 계속하여온 민족민주 운동의 빛나는 성과이자, 억압과 굴종의 삶을 떨치고 일어난 민중이 역사와 정치의 주인이 되어 자주, 민주, 통일의 민족사적 과업을 기필코 성취하고자 하는 굳센 의지의 결정체이다

세계사는 전후의 냉전과 억압체제를 청산하고 화해, 협력, 민주화의 새로운 민중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사의 진운과 발맞추어 우리 민중도 외세와 군사독재의 탄압과 수탈을 분쇄하고, 보수야당의 타협과 분열을 거부하면서 당당하게 역사와 정치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4월혁명, 광주항쟁, 6월항쟁, 7.8월의 노동자 대투쟁 등 민중은 항시 투쟁의 선봉에 서서 숭고한 희생과 영웅적인 투쟁으로 역사의 진보를 주도하며 힘차게 전진하여 왔다.

이제 민중은 자신들의 운명과 민족의 생존을 더 이상 기성 정치집단에 떠맡겨 둘 수는 없다. 바야흐로 민중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여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노동자, 농민, 빈민, 교사, 청년학생 등 각계민중의 전국적인 조직이 건설되고 있다. 공장과 농촌에서, 시장과 교실에서, 일터와 거리에서 해방을 향한 민중의 함성이 방방곡곡을 뒤덮고 있다.

역사무대에서의 민중의 전면적 진출과 성장하고 있는 민중운동역량은 기존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민중의 이익과 정치적 의사를 실현하고 민족민주운동을 국민적 차원에서 고양시킬 수 있는 민중정당의 창당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민중당은 분단이후 수없이 명멸한 또 하나의 야당이 아니라, 한국전쟁이후 민중이 직접 건설하는 최초의

진보적 정당이다. 우리는 분단이후 끊임없이 전개되어 온 민족민주운동의 찬란한 전통을 이어받아 8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민중운동역량을 토대로 4월혁명이래 축적된 각계각층의 민주세력을 결집하여 오늘 민중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민중당의 주인은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어민, 도시서민, 여성, 중간계층, 중소기업인 등 민중 자신이다. 우리 당의 기본 목표는 외세와 군사독재의 통치를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민중주체의 민주정부를 수립함에 있으며 민중주도의 자립경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달성에 있다. 우리 당은 건전한 민중재정의 확립 등을 통해 진취적이고 민주적인 당기풍을 확립할 것이며, 자유, 평등, 평화의 참다운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 정치이념과 정책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3당 아합이후 현 노태우정권은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강화하면서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다. 밀실아합, 민생파탄, 반민주약법 날치기통과, 보안사 불법사찰, 고문, 폭력 등 인권유린, 유래없는 양심수 투옥과 수배 등으로 현 정권의 반민주성, 부도덕성은 온 국민 앞에 폭로되었으며,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위한 범국민투쟁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우리 당은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노태우정권 퇴진투쟁, 평화통일, 양심수의 석방 등을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결연하게 싸워 나갈 것이다.

오늘의 이 감격스러운 순간은 민중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일하지 않고도 잘사는 자가 칭송을 받으며, 가진 자와 강자가 못 가진 자와 약자를 억누르고 주인행세를 하는 세상은 반드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주인되는 사회,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며 삶의 참된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해방된 통일조국이다. 민중, 이러한 역사적 대업을 성취해 나가는 이 땅 주인의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민중당, 바로 민중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시키는 자랑스러운 광장이다.

민중당은 아합과 부정으로 더럽혀진 정치사를 바로잡아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위력적인 대체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것이며, 민중당의 앞날을 방해하려는 국내외의 반민중적 세력의 탄압을 뚫고 찬란한 노동해방, 민중해방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민중과 함께 나아가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민중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 있으며, 민중과 더불어 고통과 눈물을 나눌 것이며, 찬란한 민주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이제 어떠한 장애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환멸의 한국정치사에 종지부를 찍고 희망의 정치, 민중의 새세상을 여는 자랑스러운 대열에 뜨거운 의지로 모두 함께 떨쳐 나서자.

1990. 11. 10

민주당 합당선언문

오늘 신민당과 민주당의 합당수입기관 합동회의는 민주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시대적 소명과 범민주 수권통합 국민정당 건설을 통한 민간민주정부 수립이라는 국민의 부름에 답하여 민주당으로의 통합을 온 국민과 7천만 겨레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1세기를 눈 앞에 둔 오늘의 국제정세는 지각변동에 가깝게 전개되고, 남북한 사이에는 급격한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동서독의 재통일과 동구 및 소련의 개방과 개혁은 세기적 변혁을 맞고 있으며, 남북한 UN동시가입은 남북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주체적이고도 탄력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권은 반민주적인 3당야합을 감행한 이래, 공안통치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이 나라 정치를 퇴화시키고 있다. 민자당은 기득권 확대를 위한 수구대연합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대들보인 의회정치를 말살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힘입어 이룩한 일정부분의 외교적 성과로 내치의 무능과 부패를 호도하는 일에 급급한 채,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양심적인 민주 세력을 박해함으로써 남북간에 조성된 통일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 이 뿐인가. 부동산 투기와 물가의 폭등, 집권세력의 부정부패와 민생치안의 부재, 무역적자와 외채의 증가 등 노태우 정권의 무능은 이제 치유 불가능의 한계점에 이르렀다. 사회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중산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을 절망과 질곡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주범은 과연 누구인가. 영구집권수단으로 망국적인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지배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은 국민적 통합과 화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오늘의 시국은 실로 엄중한 기로를 맞고 있다. 이제 우리는 노태우 정권과 민자당에게 더 이상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음을 통감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92년의 민간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수권통합야당을 갈망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오늘 우리 신민·민주 양당은 온 국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앞으로 있게 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여 기필코 민간민주정부 수립을 완수하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대통합 수권 국민정당을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범민주세력을 대통합 민주당의 깃발아래 총결집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수권 국민정당 민주당은 이제 희망과 대안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과학 정당,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개혁적 정책을 실천하는 정책정당,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정당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주인사와 지식인, 청년과 여성,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통합수권 국민정당 민주당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첫째, “국민에 의한 국민정치” 시대를 구현할 것이다. 30여년간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억압통치의 객체로 전락시켜 온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공안통치를 종식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 개개인이 자기 운명과 나라의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책임의 민주주의를 꽃피울 것이다. 또한 일체의 반민주적인 악법과 독소 조항을 개폐할 것이다.

둘째, 정의로운 자유경제에 기초하여 성실한 국민이 잘 사는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국민이 국민 경제의 주역으로서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고, 건전한 기업윤리를 진작시키며, 노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기업 발전에 동참하는 공존공영의 정의 경제를 지향한다.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그리고 세제개혁을 기필코 실현시켜 부의 소수집중을 봉쇄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것이다. 경제의 재벌대기업 편중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군사정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간, 계층간, 남녀간, 도시와 농어촌간에 엄존하는 일체의 차별을 해소하여 참된 국민 화합의 정치를 이룩해갈 것이다. 특히 국가발전과 민족사의 전진을 가로 막는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넷째, 중장기적인 21세기 번영전략에 따라 “교육과 첨단과학, 기술입국의 정치”를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집약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그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권위주의적인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는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정부와 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다섯째, 인간존중, 생명존중 그리고 도덕적 선진국가 실현이라는 “신인도주의 정치”를 이념으로 진정한 정의·복지사회를 구현할 것이다. 황금만능과 한탕주의를 일소하고 도덕적 개인과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실현시키며, 나아가 환경오염으로부터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고 전인류가 함께 발전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간의 통일의 길은 “세가지 원칙과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세 가지 원칙은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고 세 가지 단계는 1단계로 1연합2독립정부, 즉 공화국연합제, 2단계로 1연방2지역자치정부, 3단계로 1국가1정부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다.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통일의 길에 입각하여 금세기 내에 1단계의 공화국연합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일곱째, 우리의 외교는 국제간의 호혜평등과 국익 우선의 원칙하에서 자주노선을 견지해야 한다. 모든 국가와의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민주 우방과 더욱 굳건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희생 위에서 자국의 이익만 노리는 제국주의적 선진국가를 지양할 것이며, 후진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적극 협력하는 봉사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존경받는 도덕적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국민정당, 수권정당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 들고 다가올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여 이 땅에 참다운 민간민주정부를 기필코 이룩하라는 역사와 국민의 부름을 완수하기 위해 한 길로 매진할 것이다.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민주당의 이러한 충정을 따뜻한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1991년 9월 16일

민 주 당

바. 통일국민당

통일국민당(가칭) 발기취지문

우리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원치 않는다.

정치는 정직해야 하고, 경제는 풍요로워야 하며, 문화는 향기로워야 하고, 사회는 안정과 활기로 넘쳐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저버리고 경제가 쇠퇴하고 문화가 국민정서를 함양치 못할 때 그 사회는 당연히 어지럽기 마련이다.

동서의 냉전시대는 끝나고 세계는 냉혹한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크게 비약하여야 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평화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데 한군데로 힘을 집결하여야 할 국민의 힘은 분산되고 일할 의욕마저 상실한 채 구심점을 잃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뜻만 모으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힘과 슬기가 있다. 국민은 다만 밝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의 시대가 절실히 요청하는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궤기하였음을 만천하에 선언한다.

우리는 근로자, 농어민, 기업인 등 모든 국민에게 꿈을 갖게 하여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킨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국민이 주도해 온 경험이 없었다. 국민정치, 국민경제, 국민문화 그리고 국민사회의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합리주의 원칙을 지킨다.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국가경영을 쇄신하고 권위적 관료주의를 타파하여 인간다운 삶을 목표로 경제와 문화의 질을 높일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킨다.

이 땅에 과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있었던가를 성찰해 보면서 정치 민주주의, 경제 민주주의, 문화 민주주의, 교육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 할 것이다.

우리는 공개주의를 철저히 지킨다.

국민의 공감과 호응을 얻지 못하는 모든 정책은 과감히 버리고 공평무사한 떳떳한 공개정치를 지향한다.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여 부정부패의 온상을 척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부패 금권 정치를 개혁하며 국민경제의 질을 개선한다.

우리는 토지소유권은 인정하되 일련의 토지공개념, 관계법률을 합리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의 근원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세계개혁과 분배균형을 통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한다.

우리는 책임주의를 신봉한다.

국민복지와 생산적 경제활동 목표를 향해 뿔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고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우리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성취한다.

통일대업은 정권차원에서 모색되거나, 어느 한 사람의 공명의 방향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우리의 건전한 경제력 없이는 남북통일은 이룰 수 없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남북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상호 지원정신에 의하여 신뢰를 신속히 구축하고, 우선 남북 이산가족 재결합을 성공시켜야 한다.

무릇 정치란,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므로 그 힘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새롭고 원대한 꿈과 이상과 목표를 시급히 창출해 낼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창당이념에 대하여 온 국민의 격려와 지지를 겸허히 기대하면서 가칭 통일국민당의 창당발기를 선언한다.

1992년 1월 10일

통일국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신정치개혁당(가칭) 발기취지문

국민여러분,

지금 세계는 향후 1세기의 인류사를 가능할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의 민족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최근 동구와 소련에서 보듯 개혁이 하나의 물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로서 이데올로기 냉전 체제를 와해시키고 있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민족운동과 문화블록 현상은 세계각국의 생존양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움직임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민족통일과 민주 개혁을 국가최대 목표로 삼고 그동안 누적되어온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들을 하루 빨리 해소시키고,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한 기틀을 준비할 것을 역사적 소명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는 해를 거듭할 수록 잘못된 과거가 청산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희망보다는 좌절과 패배적 허무주의가 국민내부에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한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와 단결된 힘으로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개혁을 통해 그동안 적체 되어온 온갖 사회적 모순을 청산하고 새시대를 준비할 국민적 정치 중심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오를 책임지고 이땅의 화합과 평화를 위하여 역사의 장에서 사라져야 할 구약의 주역들은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하여 나라가 당장 붕괴될 지경인데도 부정직한 태도로 금권과 지역감정을 무기로 삼아 끝까지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사회의 공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는데 헌신해야 할 기성 정당은 국민에게 약속한 원래의 목적을 포기한 채 봉당구조와 지역성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사의 흐름 위에 민족의 번영과 화합을 추진할 지도력과 신뢰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13대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분열과 타락현상, 6공화국 4년의 통치기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시험되었고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민족통일과 민주개혁을 위해 유일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야권통합마저도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통일의 기본전제가 되는 민주적 국민정부 수립에 필수적인 국민화합과 단결력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상층부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밀실타협으로 말미암아 법률적의미의 합당으로 끝나버린 이상, 새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민주적 국민정당의 건설은 역사적 당위성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발기인 일동은 국민의 최대 염원인 민족통일과 민주개혁을 이루고 국민시대의 새로운 정치사를 개막하고자 정당결성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결성하려는 정당은 청산과 개혁, 자유와 평등, 번영과 조화를 위한 범 국민적 구국운동으로 아직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진행되고 있는 6월 국민항쟁에 그 정신적 뿌리를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민족통일과 민주개혁의 새시대 개혁에 기수가 될 이 정당은, 정치분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그동안 국민을 위한 정치에 성심성의를 다하지 못했던 점을 부끄러워 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서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왜곡된 정치를 바로잡아 우리 정치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창당의 목적을 둘 것입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이 땅을 뿌리째 썩게 만들고 있는 파행적 자본주의의 폐해를 타파하고 농·어민 및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며 노력에 따라 정당한 분배가 보장되는 건전한 자유경제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성장과 균형의 조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모든 정치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사회분야에서는 국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안전하고 정직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의 공동체를 함께 가꾸어 가는 사회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정책 목표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특히 국민운동을 정치활동의 기초로 삼는 이 정당은 국민지배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치신조로 삼고 국민과 함께 금권, 부정선거를 추방하고 선거정의를 확립하는데 신망을 바칠 것입니다.

우리 발기인 일동은 새로운 정당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방과 합리성의 모범이 되는 정치 집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치의 체질개선과 세대교체를 이루어 국민의 신뢰 속에서 민족통일과 민주개혁에 대한 희망과 도전의 새시대를 개척하는 전위로서 역사적 소명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1992년 1월 27일

아. 진리평화당 (진리자유당 ⇒ 진리평화당 ⇒ 신민주당)

진리자유당(가칭) 발기취지문

다양해져 가는 사회의 기능과 더불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 또한 그 참여도가 날로 넓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경제는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국민의 생활이 윤택하여져 가고 있는 바,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국민 전체의 실질적인 복지와 행복의 평형을 위해 민주복지 정책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으며, 빈부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 모두의 균등한 복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세계는 이제 동쪽끼리 분쟁에서 탈피하여 민족과 민족끼리의 경제적 분쟁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사상적 이데올로기의 싸움은 경제적 현실 앞에 엄청난 노도와 같이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고 있다.

우리의 경제발전은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더 남과 북의 경제적인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모두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라고 자부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고도성장으로 인한 국민 계층간의 대립의 문제점을 훌륭한 민주복지 정책의 실현으로 화합과 내면적 단결로 도모해 나가야 한다.

세계속의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국가의 영원한 발전과 국민적 화합을 위하여 우리는 민주복지 이념의 정당을 발기하게 되었다.

1992년 4월 28일

진리자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자. 친민당

친민당(가칭) 발기취지문

우리는 친민당이란 가치 아래 하나의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길은 한국으로 통하고 한국은 세계로 통하는 민족자강시대를 열어 온 인류가 한마음 한마당 차원에서 자유, 평화, 복지, 공영의 시대 공감대 형성주역으로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홍익인간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참 민주정치에 부름을 받자고 분원히 일어섰다. 새나라 새로운 세상 믿고 믿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건설에 고동을 울리고져 모여진 우리 친민당 동지들은 감히 조상에 웃기를 여미며 애국 애족동포 앞에 서는 거둬 태어나는 동방에 등불을 그늘진 곳 없이 복지사회국가를 위하여 밝히겠노라

반만년 역사속에 때로는 혼돈의 긴 여로에서 제 조상을 분별치 못하고 제 배달의 뜻을 저버리는 일도 있었다. 가슴아프게 감싸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 그 생명으로 오늘날 우리 인류가 갈망하는 자유, 평화, 복지와 안으로는 민족중흥과 평화통일로서 민족의 비운을 청산하고 선진민족의 소명을 다하고 자손만대에 희망과 꿈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살기좋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 친민당은

1. 세계 여명의 선두가 되는 문화국가건설
1.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고
1. 복지국가 건설
1. 민족사 정통성 재정립
1.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고
1. 신용사회국가 건설
1. 범죄없는사회 건설
1. 외제의 문화, 기술, 자본, 노예해방
1. 병어리, 불구자, 교육 청산
1. 부정, 부패, 부조리 청산
1. 낙하산식 인사 행정 청산
1. 국적없는 교육혁신
1. 군비경쟁없는 평화, 복지, 상부상조하는 선의의 경쟁사회 구현
1. 기술, 교육, 생산, 자원화 하고
1. 생산, 산업 자원화
1. 우주산업 자원화
1. 우주첨단과학기술 자원화
1. 자주정신혁명을 이룩하고
1. 인류를 계도하는 인격혁명을 이루고
1. 세계평화, 자유, 복지를 위한 민족자각시대를 열고
1. 농, 어, 상, 공, 과, 기, 국력 자원화
1. 세계도처 기아와 질병퇴치에 앞장서고

지난날 굴곡 많은 역사속에서 우리들에게 삶 의 목적과 가치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삶 그 자체가 목적일 수 밖에 없었다. 해방전 조선말의 실의와 일제식민 치하의 통분과 , 미군정하의 혼란과 동족상잔의 비극과 외제사상, 외제종교, 외제문화 범람으로 풍전등화같은 비운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슬기로운 지혜와 인내로 자손을 가르치고, 꺼질 수 없는 운명으로 제 몸을 녹여가며 생명줄을 불태웠다.

고달프고 가난한 나라를 청산하고, 조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왔고,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이토록 값진 주춧돌위에, 무엇을 세워야 할지 우리 세대들은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차대한 전환기가 아닌가.

오늘날 풍요롭게 산다고 하기 전에 피땀흘려 쌓은 경제발전을 지속적 고도의 성장기술 자원화가 시급한데, 사치, 낭비, 부정, 부패, 부조리, 이기주의, 적당주의, 한탕주의 등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멸행위는 세계의 불꽃튀는 경제전쟁에서 살아날 수 없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시공을 초월한 지구촌 시대의 주역으로서 모든 분야에 혁명적인 개혁을 위하여 우리 친민당은 창당발기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만천하에 공표한다.

당내 생활지표는 자주, 자립, 자존, 자강, 자족, 개혁, 창조, 전진, 양심, 박애의 원칙속에 새 민주질서 쇄신과 정치기풍 혁신으로 밝은사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 평화적인 정치이양에 정치보복시대를 청산하고,
1. 홍익인간사상으로 인물선정에 뜻을 둔다.
1. 사회정화 이전에 교육적이며 순리적인 국민교육에 철저한 뜻을 둔다.
1. 민주주의 생명은 자유, 평화, 복지수호에 두고,
1. 무슨 일이던 간에 참이고, 진리이면 당의 사명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인 박차를 가한다.

국내외 애국 애족 동포여러분

우리 모두가 민족자각시대에 동참하며, 경제노예나 기술노예나,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냉전에서 경제전

쟁인 시대속에 우리 민족은 남달리 살아온 민족답게 온전한 경제개념을 정립하여, 인류가 정말 한마음 한미당에서 마음놓고 상부상조하는 미풍의 시대를 이끌어 나아가야겠습니다.

낡은 정치풍토를 청산하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정직하지 못한 권모술수로 집권야욕의 정치작태를 청산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참신한 정치기풍진작에 다같이 매진해야겠다고, 우리 친민당은 창당에 고동을 울렸다.

이에 현명한 애국 애족 동포여러분의 꼭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열렬한 지지를 빌어마지 않으며, 믿고 믿을 수 있는 세상을 이룩하여 자손만대에 이정표가 되도록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친민당은 창당발기 취지를 만천하에 고한다.

1992. 9. 26

친민당(가칭)창당발기인 일동

차. 대한정의당

대한정의당(가칭) 발기취지문

지금 세계는 21세기를 향하여 실새없이 뛰고 있으며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나라도 이제 다가올 21세기의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고 선진도약의 터전을 다져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역대 정부와 정치인들의 탐욕에 의한 도덕적 타락으로 국민들에게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환멸을 느끼게 하였고 급기야는 이 나라를 최악의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이제는 우리 정치도 기성정당들의 공허하고 당리당락적인 정치논쟁과 미사여구의 나열에 불과한 구호에서 벗어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고 보살펴서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정치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만든 무책임한 정책과 정치적 배신행위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과 위기로 치닫는 이 나라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부, 발전적이고 정직한 정권수립이라는 국민 모두의 소망과 뜻있는 동지들의 의지를 한곳에 모아 정치, 경제, 사회를 일대 개혁하여 희망찬 새시대의 문을 열고자 대한정의당(가칭)창당발기를 역사와 국민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1992년 9월 7일

대한정의당(가칭)창당발기위원회

카. 새한국당

새한국당 창당선언문

우리 새한국당 당원 모두는 이 땅에 새 민족사를 창조해 나갈 새한국당의 창당을 결연히 선언한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거침없이 실천하여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소용돌이치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탈냉전의 기류는 조국통일의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동북아시아의 군사적·경제적 세력균형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국제질서를 판단하는 새로운 감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의 넓은 무대를 앞에 두고 우리는 분열과 갈등의 비생산적 정치로 인해 우리의 국력을 소모하는 안타까운 정치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어려울 때 서로 단합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화해하는 생산적인 정치를 펼쳐 국력을 극대화하여 이땅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와 6.25전란의 폐허를 딛고 피땀흘려 노력한 결과 중진국의 선두주자로까지 이 나라를 발전시킨 우리 국민 모두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사회, 힘차게 융성하는 나라에서 떳떳하게 살고자 한다. 방향을 상실한 위선의 정치에 의해, 선하고 근면한 내 이웃의 소박한 희망이 좌절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건전한 비판의식과 신진세력의 곳곳한 개혁의지를 하나로 모아,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민주정치의 참모습을 이땅에 선보이고자 새한국당의 창당을 엄숙히 선언한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이 더 이상 우리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새로운 정치문화를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부정과 비리에 때묻지 않은 깨끗한 정부를 구성하여 국민생활에 봉사하는 행정개혁을 이루어 낼 것이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여 남보다 앞서 생각하고 좀 더 땀을 많이 흘린 성실한 사람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시장경제를 이룩하여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넉넉한 삶의 모습을 제시할 것이다.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시킴에 정치가 앞장서게 할 것이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국가로부터 존중받는 참된 선진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새한국당은 민주·자주·평화에 입각하여 민족통일을 달성함으로써 민족의 대화합과 번영을 실현해 나가는 선봉에 설 것임을 다짐한다.

어렵고 힘든 길을 의연하게 걸어온 우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조국과 민족의 갈 길을 밝혀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창당은 어두운 정치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밝은 빛이 될 것을 확신한다. 새 정치를 위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은 새한국당의 이름과 함께 온 국민의 가슴에 늘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남을 것을 굳게 다짐한다.

1992. 11. 17

새한국당 당원일동

7. 정당의 강령 · 기본정책

가. 민주자유당

전문

우리당은 민주·자존의 바탕 위에서 민주·번영·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정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을 구현하고 꾸준한 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을 신장하며 성장과 형평의 조화를 통하여 복지사회를 이룩하고 나아가 조국의 통일을 앞당겨 한민족 웅비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을 우리의 강령 및 기본정책으로 삼는다.

제 1절 강령

1.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폭넓은 정치참여를 통하여 진취적이며 화합하는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고, 의회와 내각이 함께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한다.
2. 우리는 국민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형평과 균형을 통하여 모두가 잘 사는 복지경제를 실현한다.
3. 우리는 도의를 바탕으로 서로 돕는 미덕을 함양하고, 정의와 양심이 지배하며 법과 질서가 존중되어 모두가 믿고 살 수 있는 공동체사회를 이룩한다.
4. 우리는 교육의 자율성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스스로의 함성과 능력을 발휘케 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민족문화를 창달한다.
5. 우리는 국력을 배양하고 민주역량을 발휘하여 평화적 민족통일을 앞당기며 지속적인 외교노력과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주역이 된다.

제 2절 기본정책

1. 책임정치를 구현한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신장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한다.

2. 성숙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킨다.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타협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며 봉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민주원리가 체질화되도록 한다.

3. 고도과학기술의 선진산업국가를 건설한다.

수출과 기업의 투자욕을 북돋우고 과학기술의 획기적 진흥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90년대에 국민소득을 3배가 되게 한다.

4. 경제정의를 실현한다.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재정, 금융, 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계층간·지역간·산업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토지의 공공성을 제고하여 경제사회의 균형발전을 기한다.

5. 건전한 사회를 이룩한다.

법질서를 확립하여 폭력과 불법, 퇴폐 등 모든 사회악을 추방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맑고 밝은 사회가 되게 한다.

6. 교육개혁을 꾸준히 실천한다.

교육투자를 크게 늘려 교육환경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국민의 교육기회를 확충하며 스승이 존경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한다.

7.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외래문화의 창조적인 수용을 통해 자주·자존의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에서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 농간·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9. 국토의 이용을 극대화한다.

합리적인 국토이용체계의 확립으로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그 이용을 극대화하여 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한다.

10. 해양개발을 촉진한다.

연근해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고도의 해양기술을 진흥시켜 해양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11. 국민복지를 증진시킨다.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공적부조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12. 공존·공영의 노사관계를 정착시킨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이식을 함양하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적극 보장하며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정착시킨다.

13.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력과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한다.

14. 농어민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으로 농림수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외소득원의 적극개발로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농어촌을 건설한다.

15. 근로자의 중산층화를 도모한다.

근로자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중업원지주제 확대 등 근로자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며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16. 청소년이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나도록 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바탕으로 미래 국가발전의 주역이 되도록 한다.

17. 여성의 권익을 보장한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늘리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

18. 노인복지의 사회적 기반을 확충한다.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전승·발전시키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제도와 시설을 확충하여 안락한 노후생활과 보람있는 사회활동을 영위토록 한다.

19. 장애자의 복지를 증진시킨다.

장애자의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교육·취업 등을 통해 자립하도록 돕고 이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20.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공해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1. 교통난을 해소한다.

자하철 등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교통을 개선하고 지역간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교통을 기하도록 한다.

22. 주택문제를 해결한다.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특히 근로자들을 위한 사원주택과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23.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펼친다.

자유방과의 공고한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세계 모든 국가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여 국제사회에서 주역의 위치를 굳히고 해외동포의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24. 국가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한다.

자주국방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가안전보장을 더욱 공고히 한다.

25.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조국통일을 앞당긴다.

민족의 동질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화하고 정치·군사문제 등의 협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자주·민주·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긴다.

나. 민주당 (1990. 6. 18 정당등록)

전문

우리 민주당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여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이룩할 민주주의 국민정당임을 선언하면서 끊임없는 개혁으로 도덕과 신뢰를 정립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여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주체가 될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강령을 밝힌다.

강령

[통일]

우리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우리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성취하여 희망찬 민족사를 창조하는 주역이 된다.

[인권]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제도나 행위도 단호히 배격하여 인간존엄을 수호하는데 앞장선다.

[정치]

우리는 어떤 형태의 독재도 거부하고 국민적 지지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한 민간민주정부를 수립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도덕정치를 구현한다.

[경제]

우리는 자유경제체제를 보장하며 부의 공정한 분배를 강력히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정의로 운 경제질서를 확립한다.

[사회]

우리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부당한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문화]

우리는 교육의 자율성과 창작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민주화와 통일시대에 걸맞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민족문화를 꽃피운다.

[외교]

우리는 세계평화를 지향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 자주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기본정책

[통일]

1. 통일의 대원칙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 민족사의 제1과제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 지표로 삼아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2. 통일기반의 구축

남북간의 상호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교차승인, UN 동시가입, 군비축소 등을 추진하여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며 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요인을 제거하여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

3. 남북교류의 확대

남북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직접교류를 확대·강화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

4. 통일외교강화

한반도 주변 이해관계국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와 정치적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적극외교를 전개하여 자주적 통일 여건을 조성한다.

5. 국민적 통일운동의 추진

통일에 관한 정보와 창구를 개방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보장하여 통일노력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킨다.

[인권]

1. 기본권 보장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형태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최선을 다한다.

2. 자유언론 창달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책임있는 언론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비판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한다.

3. 인권침해 요소의 근절

인권을 침해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각종 법률 및 제도는 폐지 또는 개정한다.

4. 제도적 폭력의 척결

공권력의 부당행사와 남용 및 자의적 법집행에서 비롯되는 각종 제도적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고문 등의 반문명적·반인간적 폭력은 반드시 척결한다.

[정치]

1. 도덕정치의 실현

국민을 속이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왜곡된 정치문화를 청산하여 합리적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있고 신뢰받는 도덕정치를 실천한다.

2. 민간민주정부의 수립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간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참된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확립한다.

3. 대통령 중심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 발전시킨다.

4. 의회기능 강화

입법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문회, 공청회제도 등을 정착·발전시키며 국회의 인사와 예산편성권의 독립을 부여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한다.

5. 사법부의 독립

재판에 대한 권력의 간섭을 일체 배제하며 인사와 예산편성권을 사법부에 귀속시켜 사법부의 엄정한 독립을 보장한다.

6.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정당추천제와 주민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공고히 한다.

7. 검찰권의 독립

검찰권 행사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검찰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한다.

8. 경찰 중립

확실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경찰이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케한다.

9. 군의 중립

군의 정치적 중립이 민주화의 중요한 요건임을 인식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확고한 문민통치를 구현한다.

10.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확립하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며 국민봉사에 전념하도록 한다.

11. 공명선거 보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정·타락선거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2. 정당활동의 활성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기해 정경유착과 부패를 방지한다.

13. 정보·공작정치 근절

국가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부당한 정보사찰은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으며 정보기관의 활동은 설치목적에 엄격히 국한시킨다.

14.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권익옹호와 정치·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경제]**1. 경제의 민주화**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경제를 종식하고 공익과 조화를 이루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제질서를 확립한다.

2. 분배정의 실현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추구한다.

3. 재정운용의 합리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낭비성 재정지출을 제거하고 성장률을 초과하는 재정팽창을 억제하여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안정화를 기한다.

4. 세제 개혁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 직접세 중심의 세제를 확립하고 소득과 재산의 차이에 따른 누진율을 확대 적용하여 서민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며 세원의 양성화와 탈세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다.

5. 물가안정

투기붕쇄와 가격상승분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며, 재정지출과 금융운용을 내실화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독과점의 규제 및 유통구조의 개혁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한다.

6. 금융자율화

권력의 개입에 의한 금융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고 금융자율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배로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7. 금융실명제 실시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여 왜곡된 금융구조를 정상화하고 지하경제의 팽대로 인한 탈세·투기 등을 근절시켜 건전한 경제풍토를 조성한다.

8. 토지공개념의 도입

지목에 관계없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실명제와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토지가 투기의 수단인 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봉쇄하여 토지소유의 편중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빈부격차의 심화를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공익성을 높인다.

9. 지방경제의 활성화

경제의 중앙집중화를 지양하고 지방에 대한 금융, 세제, 행정지원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기해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킨다.

10. 농수축산물의 가격 보장

농·수·축산물의 적정 가격보장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를 개혁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기한다.

11. 경제력 집중의 완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상호출자를 악용한 무분별한 기업확장, 여신의 독점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해소시키고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한다.

1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원의 경영참여 및 이익참가제도, 환경오염의 방지,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경영의 민주화와 기업윤리를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한다.

13.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고유사업영역을 확대시키고 대기업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구조의 내실화를 기한다.

14.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과 합리적 인사제도를 기초로 경영을 내실화하며 국민지주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소유하고 정부가 경영하는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킨다.

15. 유통구조의 개혁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혁하여 중간단계의 폭리를 제거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한다.

16. 기금운용의 합리화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순수 민간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도록 하여 정부의 자의적 운용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공익목적 달성에 철저를 기한다.

17. 무역마찰의 극복

호혜주의 원칙아래 무역을 다변화하며 국내보호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의 촉진과 산업의 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의 자립도를 높혀 무역마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특히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은 농어민 생존권 보장의 차원에서 신중히 대처한다.

18. 과학기술의 진흥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기초·첨단과학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긴밀한 산학협동 연구체제를 구축하여 과학기술입국의 토대를 마련한다.

[사회]

1. 복지국가 건설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국민 모두가 경제적 안정과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한다.

2. 여성권익신장

여성의 권익을 제약하는 각종 관습과 제도를 개선하고 가정, 직장, 교육현장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며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여성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실질적 남녀 평등을 보장한다.

3. 청소년 보호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 미래지향적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킨다.

4. 노동자의 권익신장

노동관계법을 전면 재정비하여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자율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한다.

5. 산업재해 대책

산업안전 보건을 위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노동자에 의한 자체감시기구를 제도화 하는 등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해서는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보상책을 마련한다.

6. 영세민대책

영세민의 취업알선으로 생계를 도우며 집단거주지역의 사회·보건시설을 확충하며 생활보호 대상자의 범위와 보조를 확대한다.

7. 장애인의 보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시설을 일반화하고 효과적인 직업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며 취업을 확대하여 지립을 돕는다.

8. 노인복지 대책

국민연금제도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의 의무고용제와 노인직종선정제도를 정착시켜 근로를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9. 주택문제의 해결

원활한 택지공급과 세제·금융지원으로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것을 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며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여 주택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한다.

10. 교통대책

교통대책 특별기금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통부대시설을 확충하며, 도로 율을 대폭 높이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수립·실행한다.

11. 환경보호

환경보호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물질 사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공해방지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모든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녹색환경을 확보한다.

12. 국민보건 위생

식품과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은 엄격한 보건·위생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하고 모든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와 철저한 검사로 부정 식·의품을 추방한다.

식품과 의약품의 제조에는 인체유해 성분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농약·화학약품 등의 제조에 있어서도 인체에 잔류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성분은 사용을 금지한다.

13. 민생치안

조직폭력, 인신매매, 마약, 부정식품 등 반문명적, 반인류적 범죄는 기필코 근절한다. 이를 위해 시국치안에 동원돼 온 경찰력을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에 복귀시키며 국가권력의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비뚤어진 사회기강을 바로잡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14. 의료보장

합리적인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의료보장을 공고히 함으로써 복지사회건설의 토대를 마련한다.

15. 소비자 보호

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민간 소비자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공익차원에게 폭넓게 보장하여 각종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을 안정시킨다.

[교육문화]**1.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군사독재정권의 장기집권으로 파생된 권위주의와 기회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된 이기주의와 배금주의 등 전도된 가치관을 타파하고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과 문화의 창달을 통하여 정의와 진리를 존중하고 민족과 공익을 우선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한다.

2. 인간화 교육

입시·기능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홍익인간** 이념에 충실한 전인교육에 역점을 둬으로써 개성이 존중되고 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한다.

3. 국어교육 진흥

초·중등학교의 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에 오염된 국어를 순화·발전시켜 민족의 긍지와 주체성을 높이며 국어교육 및 언어생활에 대한 남북간의 공동연구와 교류를 추진하여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한다.

4. 교육의 자주성 확립

학문과 사상·연구·발표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재편찬과 선택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자치체를 실시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한다.

5. 학원의 자율보장

교육관계법을 전면 개정하여 정부의 학사운영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며 자주적인 교원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보장하고 교수협의회와 교무회의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참여권을 부여하며 초·중등교장의 임기제를 실시한다.

6. 사학운영의 합리화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교원의 신분보장을 확고히 하며 재단의 학사운영에 대한 간섭과 사유재산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건전한 사학운영을 도모한다.

7. 교육환경의 개선

교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과 교육시설의 확충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며 가정·학교·사회의 삼위 일체를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8. 교육제도의 개혁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의무교육의 년한을 연장하며 입시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학력간 임금격차와 취업기회의 차별을 줄여감으로써 입시과열과 고학력 선호풍조를 해소한다.

대학원 중심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다.

9.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민족의 문화유산을 발굴·보전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저급한 외래문화 침투에 대응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10. 민족사관의 정립

민족사를 왜곡시켜온 식민사관의 잔재를 일소하고 신사대주의를 청산하여 역동적인 민족정신을 재정립하고 민족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강화한다.

11. 창작·표현의 자유신장

사상이나 소재를 이유로 한 부당한 공권력 간섭을 배제하여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 등 지적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여 창작의욕을 높임으로써 창작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12. 문화시설의 확충

국민의 문화생활 공간인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시민공원 등의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13. 지방문화의 육성

각 지방의 향토문화를 발굴·육성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하며, 자생적인 지방문화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민의 문화수준을 고양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게 한다.

14. 사회체육의 진흥

우수선수 중심의 체육정책을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체육으로 전환하여 체육활동을 일상화 함으로써 국민체력을 증진시킨다.

[외교]**1. 자주외교 실현**

대미·대일 편중외교를 지양하고 전방위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민족의 자존과 이익을 추구하는 대외 자주외교를 확립한다.

2. 경제외교 강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새로운 경제협력을 통하여 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국제평화 증진에 기여한다.

3. 한·미행정 협정의 전면개정

대등하고 호혜적인 한미관계를 위해 한미간의 반목과 갈등을 야기시켜온 한미행정협정을 전면 개정한다.

4. 해외동포의 권익신장

해외동포를 위한 교육기관을 확충하여 민족문화를 전승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거주 동포의 모국방문과 상호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긍지를 드높이며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향상에 만전을 기한다.

5. 자주국방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상호군비축소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미군철수에 대비하여 자주국방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킨다.

6.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한반도에서는 일체의 핵무기 개발이나 배치를 금지하여 핵전쟁으로 인한 민족전멸의 위협을 제거한다.

다. 공명민주당

제1절 정강정책

◎ 기본목표

2000년대를 향한 우리의 진보된 정치문화 설계는 꿈에도 그리는 국토통일과 민족통일을 6000만 동포의 지상목표로 설정한다. 아직도 가슴앓이 하는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의 찌개놓은 가슴과 가슴을 포개어 그 마음과 마음을 잇는 한겨레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한 어머니 배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라는 동반관계 이념하에서의 나라 사랑과 겨레 사랑으로부터 파생되는 평화통일 개념에 입각한 안보, 외교, 경제, 사회, 교육문화, 예술 등을 종합 꽃피우는 선진적인 쌍둥이 정치문화 창달에 주안점을 둔다.

◎ 정책 개념

단군성조를 중심삼은 단일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쌍둥이와 같다는 동일 가치관에서 파생되는 진보적인 정치적 민주주의, 풍요한 경제적 민주주의, 균형있는 함께 잘사는 민주주의, 사해동포애(四海同胞愛)에 입각한 국제적 민주주의를 공명정대하게 쌍둥이 정치문화(Twin political culture)로 창달해 나감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남북통일을 쟁취하는데 기본이념을 두고자 한다.

◎ 기본 정책

- 진보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한 민족화합과 번영 및 평화통일운동 전개
- 풍요한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선진 산업사회 성장 촉구
- 균형있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위한 도시사회와 농촌사회의 격차를 좁히는 지방화 시대 개막과 도덕적 가치관 정립
- 사해동포애에 입각한 국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자주외교 및 신기원의 교육문화 창달
- 남과 북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共生, 共榮, 共義主義) 체제확립
- 2000년대를 향한 첨단기술과 성장 산업의 개발 및 육성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 기본 시책

- 국가보위(國家保衛)와 사회안전은 물론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정치문화 설계를 실현하는데 기본시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정치와 경제

-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수렴하여 선진적 정책을 마련하는데 국책의 기본으로 삼아 진보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민족 대 화합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 우리는 시대적 요구와 변천을 직시하고 극단적 대립을 지양하여 사회의 안전을 추구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고 지역감정과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산층의 벽을 두텁게 하여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서민대중들에게 함께 잘 사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공명정대한 개인이며 이웃,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건설해 가는 국민 대화합을 기필코 이룩한다.
-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 향상과 분배의 균형있는 조화로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도시 빈민의 생활 구조 개선을 통하여 복리증진을 기한다.

◎ 자주외교 및 조국통일

- 우리는 급변하고 있는 지구촌 전체를 의식하며 2,000년대의 민주우방과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비동맹국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국익을 위하고 민족생존권을 보장하는 대외적인 자주외교를 추진한다.
- 우리는 국력의 신장과 한겨레 단일 민족의 화합된 힘으로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고 좌익(左翼)과 우익(右翼)을 뛰어넘는 두익사상(頭翼思想)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긴다.

◎ 기본 강령

- 개인과 가정의 아름다운 삶과 질의 기회추구
- 성숙된 도덕사회 구현과 국민 대화합 촉구

- 민족정신의 재확인 과 국민상의 정립
-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타협과 조화의 민주적사고를 이상으로 하는 정치풍토 형성
- 보수정당 체제 거부로 민족, 민주, 진보된 개혁정치 전개
-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 청산과 의회 풍토개선
- 금권타락 선거의 배제를 위한 전반적인 선거 공영제 실시
- 젊은 세대와 여성들의 진취적인 정치참여 적극보장
- 국민민복을 위한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촉구
- 고도 선진 산업사회 성장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으로 모든 영역의 교육력 신장과 대중문화 창달
- 국내 민생치안 질서 확립과 국가 보위에 주안점
- 소외되고 고통받는 기층 민중들의 권리회복에 전력추구
- 집 없는 영세민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과 재개발 촉진
- 자질이 있으면 누구나 교육받는 사회 건설
- 건강한 사회구축을 위한 윤기 나는 선진적 민주사회 발전정책 개발
- 고도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제반 인간소외와 비인간화를 극복해소
- 인간성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인권옹호 정책 개발
- 지역감정과 세대 및 계층간의 대립등 제반 갈등문제 해결로 공감대 형성 및 지방화시대의 균형있는 발전책 강구
-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이끌 수 있는 두익사상운동 전개
- 남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승화시킨 쌍둥이 정치 문화 창달로 평화통일 기반조성

라. 민중당

제1절 강령

오늘의 세계와 한국사회

1. 오늘의 세계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섰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양 진영간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이룬 핵무장의 냉전적 세계질서는 더 이상 인류의 운명을 구제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세계는 이제 민중역량의 성장을 바탕으로 평화와 민족자주와 상호협력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여러 진통과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역할이 높아지고 민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체가 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현대 자본주의는 20세기 초중엽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단계에 있다. 전후 선진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위기를 겪으면서도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노동관계에 의한 착취와 억압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전후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의 성장, 사회주의권의 압력으로 선진자본주의는 사회적 개량이 확대되고 의회민주주의도 정착되었다. 7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은 생산의 국제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제분업구조와 경제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자본 소유구조와 임노동의 내부구조에도 현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자본주의의 지배세력은 새로운 생산력을 바탕으로 민중진영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본성 또한 다국적기업의 세계경제 지배, 국가권력의 패권주의적 행태와 함께의 연히 유지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 고유한 일체의 착취와 억압을 물리치고 민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진보를 앞당기는 길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여성운동, 평화운동, 환경보호운동 등의 사회운동과 진보적 정당들이 광범한 연합을 이루어 전진하는 데 있다.

식민지 민중의 줄기찬 민족해방투쟁으로 제국주의의 오랜 구식민지 체제는 붕괴되고 마침내 식민지 민족은 정치적 독립을 쟁취했다. 세계사의 무대에 식민지 민족의 역사주체로의 등장은 세계의 세력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치적 독립의 달성 이후 신생독립국의 민중은 곧바로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발전도상국 민중은 경제적 후진성과 정치적 독재,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새로운 종속을 극복하기 위한 지리한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의 발전도상국들 가운데 현저한 분화가 진행되어 한편에는 다수의 국민국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신흥공업국이 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도상국들의 민중은 민주주의와 민족자주를 위한 공통의 과제를 안고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의 승리만이 인류의 평화와 진보를 보장할 수 있다.

한편 소련의 10월혁명과 동구 및 식민지 종속국에서의 일련의 혁명은 자본주의적 착취와 민족억압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이들 나라들의 혁명과 사회건설은 세계사의 진보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스탈린주의적 모델은 관료주의, 개인의 자유억압, 민주주의의 왜곡, 경제적 효율의 결여 등으로 60년대 이후 정체와 위기를 낳았고 개혁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현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개혁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70년 동안 구축된 체제의 자기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권의 개혁은 숱한 어려움과 복잡성을 지니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 개혁의 미래는 자본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민중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질적으로 더 높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물질적 풍요와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대 세계의 이같은 현실은 세계의 모든 민중운동에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달성해 인간해방의 새세상을 열 수 있는 민중의 지적·정치적 역량은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이 남김없이 발휘될 때 민중주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진정한 민중시대가 올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2.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 민족은 민족해방을 위해 국내외에서 줄기차게 투쟁해 왔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체제의 붕괴와 해방은 우리 자체의 주체적 역량에 의해서만 쟁취된 것이 아니라, 2차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리의 산물로서 주어진 것이었다. 8·15와 함께 즉각 이땅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세에 의해 분단되었으며 남한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미군정으로 대체되었다. 구식민지체제는 붕괴되었지만 외세의 지배는 신 식민지적 형태로 지속되었다. 새로운 외세의 탄압 앞에서 우리 민족 자신에 의한 자주적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주체적 노력은 좌절되고, 미국의 절대적 비호 아래서 지주, 매판자본가, 매판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대미종속적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민족분단은 더욱 고착되었다.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민족운동이 궤멸한 토대 위에서 남한은 미국의 대소 반공군사기지로 전락하고 대외종속과 민족억압과 독재를 기본적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구조가 정착·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6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저급가의 강요에 의한 가혹한 민족수탈과 광범한 특허 지원에 의한 소수 재벌의 육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선진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의 빠른 흡수도 한 요인이었다. 그리하여 반봉건제가 해체되고 자본주의 상품경제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그 위에서 국가권력과 결탁한 소수 독점재벌이 국민경제를 지배하는 사회가 형성되었다. 한국사회의 지배구조는 독재정권과 독점자본가가 외세와 종속적 동맹을 강고하게 유지하는 기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독점자본의 지위는 독재정권의 정치적 억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은 민족을 정치적 무권리 상태로 묶어 둬으로써 재벌의 부와 민족의 빈곤을 확대 재생산해왔다. 6월항쟁의 결과 부분적인 정치적 자유가 형식상 허용되었으나 현 독재정권은 여전히 민족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주로 물리적 폭력에 매달려 민족의 정치적 진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세계는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한반도에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군사적 종속국, 미국의 대소 반공군사기지로서의 한국의 지위와 남북분단의 현실은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냉전의 십자군 역할을 강요해 왔다. 한국전쟁 직후에 체결된 휴전협정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으며, 주한 미군과 나라의 요소요소에 배치된 엄청난 규모의 핵무기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미종속과 남북분단은 이땅의 평화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며, 우리 사회의 이같은 특수한 조건 때문에 반전반핵, 평화군축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민족자주화 및 통일의 문제와 결합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성장지상주의적 자본주의의 발전은 민족의 건강과 생명, 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물과 공기와 토지의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은 공해강산으로 변했으며 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에는 각종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족은 부의 불평등에다 전쟁의 위협, 환경파괴로 인해 이중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환경오염경제를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환경보전경제로 재편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의 문제가 되었다.

독재정권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는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자 우리 민족의 고통의 근원이다. 따라서 현단계 우리운동의 변혁과제는 이땅에서 독재정권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를 청산하고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3. 우리 사회의 민중은 누구인가? 한국사회의 현대계에서 민중은 독재정권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하에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모든 민족 구성원들 즉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중간계층, 지식인, 여성, 청년학생 그리고 중소기업인이다.

고도성장이 낳은 계급구조상의 가장 중요한 질적 변화는 대량의 노동자계급의 창출로서 이제 노동자계급은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기본대중인 산업노동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잔업과 철야를 거듭하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언제나 질병과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현 체제하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다. 특유의 조직성과 규율성을 갖는 이들은 현재 우리 사회 민중운동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노동자계급 내에 사무직, 전문직, 기술직 노동자의 다수로 구성되는 정신노동자의 비중이 급증하는 것은 오늘날의 생산력과 사회적 분업의 조건에서는 필수적이며 노동자계급 구성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들과 산업노동자의 통일성 확보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통일성 확보뿐만 아니라 강고한 민중동맹을 구축함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

농업비중의 격감으로 민중구성에서 차지하는 농민의 양적지위는 현저히 저하되었으나 농민은 여전히 민중의 중심부대이다. 농민은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생계비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저농산물가격과 부등가교환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영농에 허덕이고 있다. 농가부채의 누적, 이농의 급증과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여성화, 소작농 확대 등은 농업위기의 직접적 표현이다. 농민은 전계층 하강분해를 겪고 있으며 주된 구성은 반농이다. 농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힘차게 농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시서민은 저소득과 불안정한 취업으로 부단히 생계를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점재벌의 부동산투기와 정부당국의 도시재개발정책 때문에 삶의 터전조차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서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운동은 근로대중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중간계층은 그 자체 독자적인 계급이 아니며 이질적인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공자, 소상공인 등의 자영업자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존립기반이 점점 더 축소되거나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데 이들의 다수는 노동자계급과의 경계선상에 위치한다. 국가와 기업의 중간관료층, 지식인 일부 등으로 구성되는 신중간층은 그간의 계급분화 속에서 노동자 계급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그 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 하층은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 민중연대에 있어 중간계층의 동참은 사회적 세력관계를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지식인층은 이미 상당수가 노동자화되었으나 그 중 일부는 중간층의 지위를 갖는다. 특히 지식인은 양심과 사상, 학문과 예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극심하게 억압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며 사회여론의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들은 민중운동의 발전에서 각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우리 사회는 계급적 차별과 함께 성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로서 우리 사회 하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오직 여성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가부장적 가족제 속에서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얽매어 있으며, 사회적 노동에서 전반적인 차별대우로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운동은

민중운동의 매우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청년학생은 계층적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 범주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민감한 기본속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직성 때문에 현재 우리 민중운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다수 중소상공인은 계급적으로 노동자와 대립하는 측면을 갖지만 국내의 독점자본의 지배와 독재정권의 독점재벌 위주의 특혜적 경제정책 때문에 소외, 억압당하고 있으므로 민중의 일원이 될 수 있다.

4. 우리 민중은 혹독한 수탈과 억압, 그리고 좌절을 딛고 굳세게 일어서고 있다. 우리 민중은 민족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찬란한 전통을 이어받고, 4월혁명과 광주항쟁,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노동자, 농민, 교사, 도시서민, 지식인, 여성, 청년학생 등 민중운동의 각 영역에서 전국적 대중조직의 대열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운동은 아직도 자신의 정치적 구실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이들을 강고한 정치세력으로 묶어 세울 민중정당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당은 현시기 우리 운동의 이같은 필요성에서 탄생된 것이다.

노동해방·민중해방을 지향하는 투쟁은 낡은 특권과 불평등을 새로운 특권과 불평등으로 대체하려는 투쟁이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특권과 불평등의 폐기를 목적으로 한다. 두말할 것이 없이 민중해방운동의 주인은 민중 자신이다.

민중당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를 촉진시키고 민중역량을 결집하여, 독재권력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를 청산함과 동시에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민중주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민중해방을 위해서는 민중권력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중당은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광범한 민중운동과 결합하여 이를 지원하고 조직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민중당은 선거활동과 의회활동이 갖는 적극적 의의를 충분히 승인한다.

독점재벌과 외세의 지배를 청산하고 민족분단을 극복하는 민중의 대업은 모든 민주세력과의 광범한 연대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민중당은 독재정권과 독점재벌, 외세의 지배에 반대하는 모든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그들과 연대할 것이다. 그러나 민중당은 민중운동의 자주적 발전을 저지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비판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 당은 원칙에 충실하되 교조주의와 독단주의를 배격하고 자신이 범한 과오를 기꺼이 시인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자기비판을 수행하며, 언제나 겸허하게 민중에게서 배우고 끝까지 민중과 더불어 나아가는 진정한 민중의 당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당은 민중의 대의와 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추구하는가

우리 민중당은 자유와 평등, 평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자유, 평등, 평화의 가치는 정치 현실을 판단

하기 위한 기준이고, 사회발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자유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종속상태, 궁핍,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자유는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지니고 협동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나아가 자유는 자주적인 존재로의 지향이며 자기실현 그 자체이다.

평등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제거하고 사회적 공정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공정은 재산, 권력, 소득의 분배로부터 교육 및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자원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저해하는 모든 전쟁과 침략의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동시에 강한 민족이나 국가가 약한 민족이나 국가를 힘으로 지배하는 상태가 극복됨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평화는 진정한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적대적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에 입각하여 우리는 민중의 염원과 희망을 담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회를 추구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어떠한 특권적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사회.

둘째,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개인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사회적 이익이 희생되지 않는 사회, 사회적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사회.

셋째, 일체의 계급적·권력적 특권 및 차별,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배제하는 사회.

넷째, 모든 사람이 자기실현을 위해 노동할 권리와 기회를 가지며 그 노동은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는 사회.

다섯째, 풍요로운 삶을 위해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그 경제력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민중의 생활개선을 위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

여섯째, 민중이 경제운영에서 소외되지 않고, 직장과 경제기구전반에 대해 민중의 참여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회.

일곱째, 민족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제거하고 평화와 역사진보의 가치하에 통합된 통일민족 사회.

여덟째, 호혜평등한 상호의존을 통한 민족국가들의 공동의 안보체제가 구축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이익과 전 인류적 이익이 평화적 경쟁을 통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국제사회.

아홉째, 단기적인 경제이익을 위해 지구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의 성과가 인생생활의 기초인 환경보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되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목표는 결코 개인이나 소수 정파의 의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절대다수 민중의 연대에 입각한 정치적 운동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즉, 우리 사회의 진보, 나아가 인류사회의 진보는 소수자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자가 실제의 주체가 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민중당은 다수 민중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한 유력한 정치적 수단이자 협력자이다.

1.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의 수립

그동안의 한국정치는 국민기본권이 유리되는 군사독재정치, 민중참여와 민중이익을 배제하는 독점재벌 위주의 보수 파당정치, 지역감정을 심화시키는 지역차별의 정치, 미국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종속된 정치였다.

이러한 정치를 민주화, 민중화, 자주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성격과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즉, 내외독점자본, 외세, 군부, 관료 등 특정 계급이나 분파의 독점물이었던 독재권력을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민중의 권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는 민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통해 민중 스스로의 연대와 협력, 책임의식에 바탕을 둔 정치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첫째, 민중이 일상적으로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직장을 단위로 하는 각종 대중조직들이 정치활동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상조직들의 정치활동과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한다.

둘째, 국가기구의 민주적 개조를 달성한다. 오랜 독재정권하에서 자유의 억압과 특권의 유지에 이용되어 왔던 보안사·안기부를 해체하고 군과 경찰, 관료기구를 민중에 복무하도록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하며 민중이 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한다. 모든 국가기구의 정보에 대한 공개원칙을 확립한다.

셋째, 의회가 민중의 의사를 올바르게 관철할 수 있도록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치적 다원주의가 보장되는 가운데 의회가 실질적으로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법적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의회가 진정으로 민중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계층별·직능별 분화가 정당하게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 의회활동에 대해 민중이 실질적 참여자이자 감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민중의 발안권과 소환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넷째,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현은 국가권력 민주화의 필수적 계기이다. 특히 권력의 중앙독점에서 비롯되는 부정부패와 관료주의, 연고주의, 지역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를 형식적·내용적으로 완성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정부는 철저히 지역주민의 의사에 의해 구성하며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한다. 지방의회는 기초단위를 읍·면·동 단위로 해야 하며 그 권한과 기능은 중앙의회에 준해서 부여한다.

2.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주주의 없는 어떠한 정치도 사회진보에 기여할 수 없다고 우리는 단정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방법과 목표, 나아가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라는 방향에 입각하여 사회 및 정치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소수에 의한 지배수단이 아니라 자각한 다수의 사회운영 원리로서 이해한다. 민중이 사회 전 과정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목표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과정이 간접민주주의 형태로만 실현되거나 국가권력구조의 민주화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확산과 심화, 국가권력 바깥에서 시민사회의 현장으로부터 쟁취되고 실현되는 민주주의에 각별한 의의를 두고 있다. 물론 고도의 직접민주주의는 민중의 높은 지적 능력, 합리성, 진보적 가치관을 전제로 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숨에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과정과 문화개혁의 과정에서 그러한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중조직들과 사회운동의 활성화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민중 자신에 의한 생산현장 대중조직들과 지역 현장 대중조직들의 광범하고 힘있는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민중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는 민주주의의 토양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제도적·법적 통제는 제거되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 선결적으로 실현한다.

첫째, 국가보안법 및 안기부법 등 반민주악법을 폐지한다.

둘째, 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셋째, 사상과 학문, 예술,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넷째, 언론·출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다섯째, 정당 및 선거제도에서의 모든 불합리와 불공정을 제거한다.

3. 자주, 평화, 호혜평등의 국제질서를 위하여

우리는 세계질서가 핵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냉전체제에서 핵전쟁을 비롯한 현대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평화체제로 전환되도록 힘을 쏟는다. 아울러 우리는 그러한 평화체제가 일부 선진자본주의의 경제적·정치적 패권에 이용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평화체제의 확립은 세계사회에서의 빈부격차와 지배 종속관계를 시정하여 진정으로 각 국민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존중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정한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첫째, 분단체제하에서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의 조약 및 협정이 전면 개폐되어야 하며, 진정으로 호혜평등한 국제관계의 구축에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와 핵무기의 철거를 단행한다.

둘째,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보장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협의기구의 창출과 군축 및 지역평화를 위한 제반 조치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셋째, 우리는 어떠한 군사적·정치적 블록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이며, 제3세계 발전도상국들과 협력하여 비동맹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발전도상국이 강대국의 정치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발전도상국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모든 평화애호세력 및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넷째, 우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제3세계의 빈곤, 기아, 외채, 항상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전 인류적 과제를 깊이 인식한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다국적기업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 위주의 현존 국제경제질서를 호혜평등하고 발전도상국의 경제적 문제들이 치유될 수 있는 신국제 경제질서로 바꾸는 데 노력한다.

4. 평화통일을 위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은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추구하여야 할 민족의 절박한 과제이다. 통일은 민중이 주체가 되어 자주, 평화, 민주, 민중연대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민중의 해방된 삶을 구현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적 냉전과 결합된 분단체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또한 분단은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사회체제의 반민중성을 심화시켰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남과 북에서 민중이 주체가 되는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통일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악법과 제도가 철폐되고 민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통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통일의 당면한 기본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간의 교류·협력의 확대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한에서 미군과 핵무기가 철수되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이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간의 군축과 더불어 불가침선언 및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한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상호간의 적대감 해소 및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 민중의 복지와 연대를 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과제들을 해결함과 더불어 남과 북의 본격적인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남과 북이 상이한 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통일할 수 있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를 전민족적인 의사를 수렴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남북한 체제내 문제에 대한 지역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하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경제·문화적 교류의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외교·군사 문제에 대한 공동 의사결정과 집행에 중점을 둔다. 남북 민중의 합의와 지지의 바탕 위에 모든 분야에서 연방국가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연방제에 도달할 것이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단일한 체제로 통일된 국가를 이룩할 것이다.

5. 민주주도의 개방적·자립적 경제구조의 건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였다. 우리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적 부를 창출하는 주역인 민중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산과정을 비롯한 경제생활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질서 때문이다.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는 이러한 독점재벌지배경제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과 민중의 이익을 실현하는 민주중도경제를 건설하고자 한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민주중도경제는 민중이 생산수단의 소유, 생산조직의 관리, 전체 국민경제의 운영과 관리, 소득분배 등에서 주인으로 참여하고 생산력 발전의 참된 주체가 되는 경제이다. 따라서 민주중도경제는 경제민주주의가 철저히 관철되는 경제이다.

우리는 민주중도경제의 수립을 통하여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개혁이 필수적이다.

첫째,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기간산업, 금융기관 및 천연자원은 국유화한다. 농지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유화하며 국유토지 임대제를 실시한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공익과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경제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소유형태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생산조직의 경영·관리에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생산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사회적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진정한 주인됨을 보장하는 노동공동체지주관리를 실시한다. 모든 사적 소유기업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이윤균점을 보장한다. 이러한 생산민주주의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동조합을 비롯한 자주적인 노동자 대중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다.

셋째, 시장과 계획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계획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한다. 계획적 시장경제의 비효율성 및 부자유를 최대한 극복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경제관리기구를 창출한다.

넷째, 재정 및 금융제도와 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기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소득재분배, 그리고 전면적 사회보장을 가능케 하는 재정지출구조와 조세제도를 확립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재정금융정책의 수립에서 민중이 직접 참여하고 그 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불평등하고 왜곡된 소득분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분배정의를 실현한다.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부당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지하경제를 강력히 통제한다.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주택, 교육, 의료 등 대중의 기본수요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고용, 승진, 임금의 차별 등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폐지한다. 나이가 재산소유의 불평등과 생활수준의 격차 등으로 인한 기회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의 실현을 추구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은 민주중도의 개방적·자립적 경제구조의 확립에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현대 과학기술혁명시대에서 유연생산체계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새로운 기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이 독점재벌의 희생물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알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생산적인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일곱째,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국제경제관계로부터 소외된 어떤 나라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폐쇄적 자급자족경제를 반대하며 개방경제를 옹호한다. 하지만 이때에 개방경제는 우리의 경제적 주권이 명확히 보장되는 호혜평등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체의 불평등한 대외경제관계가 청산되고 경제정책수립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국적기업을 점차 국민기업으로 전화시키는 효과적인 정책들이 실시되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한 기술적 종속을 극복하고 생산력의 자립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과학기술혁명을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해 달성하도록 연구·개발부분을 강화한다.

6.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세계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노동은 인간생존의 절대적 조건이고 인간의 발전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노동의 질적 발전이야말로 인류사회를 문명화하는 진정한 힘이다. 특히 현대 과학기술혁명은 힘든 노동,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크게 높여 주고 있다. 또 이로 인해 노동세계의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세계의 인간화와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학기술혁명의 성과와 노동을 자본축적의 수단으로만 간주해야 하는 오늘날의 자본관계이다. 따라서 자본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적 노동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과제이다. 이러한 궁극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는 관료적 및 병영적 통제체제를 지양하고 생산현장에서 민주주의가 확산·심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관철한다.

첫째, 노동악법의 개폐를 통해 노동 3권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완전히 보장한다.

둘째, 주 40시간 노동제를 실시한다.

셋째,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노동하고 충분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넷째,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고용정책을 실시한다. 아울러 실업보험을 실시하고 각종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노동자적 입장에서 전면 개혁한다.

다섯째, 노동 및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교육훈련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혁한다.

여섯째, 노동자 생활과 관련된 각급 국가조직과 사회조직의 민주적 관리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7. 농업 · 농민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국민경제에 있어서 농업은 일차적으로 국민대중에게 질 좋고 신선한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농업은 농촌노동력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한다. 또한 농업은 국토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독점자본을 위주로 한 대외의존적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온 결과, 식량 자급도는 크게 하락하고 농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농업과 농민은 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 앞으로 농산물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저농산물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한 우리나라 농업의 파탄과 대다수 농민의 몰락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 농업이 파괴된 후에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농산물을 비싼 값으로라도 미국 등의 소수 곡물상사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의 파괴는 대량의 이농으로 인한 실업문제, 도시문제, 주택문제를 낳으며, 환경파괴로 이어져 국민생활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식량자급도를 높이면서 농업생산력 증대와 농민의 경제 · 사회 ·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

첫째, 농산물의 국내자급도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최대한 억제한다.

둘째, 국가의 농산물 수매제를 확대하고, 농산물가격을 결정할 때 한계생산비를 보장한다.

셋째,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제도를 확립하고, 농지를 포함한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가의 통제를 강화한다.

넷째, 개별분산적 소농경영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산자 협동조직을 지원 · 강화한다.

다섯째, 유통, 저장, 가공, 생산자재 산업 등에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산자재의 가격결정에 농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여섯째, 농지기반, 경지확대 등 생산기반 확충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한다.

일곱째, 농업협동조합 등 각종 농민조직을 민주화하고 자주적 농민단체의 활동을 지원 · 장려한다.

여덟째, 연금제도 실시, 의료보장 등 농촌복지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 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도 · 농간 문화생활의 격차를 해소한다.

8.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연대를 위하여

여성들은 지금까지 심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차별을 받아 왔다. 그리고 이는 남성에게 사회적 노동이 부여되고 여성에게는 가사노동이 위임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유지 · 온존되어 왔다. 세계가 남성과 여성으로 분열되고 대립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쌍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생활 전체를 왜곡시킨다. 진정한 인간해방은 여성이 받는 모든 성차별을 배제하여 남녀평등을 이룰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남녀평등은 자본의 성에 따른 분할지배방식을 함께 타파해 나가려는 모든 남성과 여성의 연대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성들은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노동의 존엄과 가치를 남성과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자유, 평등, 진보의 가치하에 교육되어 자기 자신의 선택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를 갖고 공정한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갖게 되는 사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현한다.

첫째, 법의 분야에서 모든 남녀불평등을 제거하며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

고용관계, 모성보호 등에서 여성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경제생활 분야에서 남녀동등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를 대거 확대해야 하며 남녀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여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셋째, 정치생활 분야에서 여성이 적절한 정치적 대표성을 갖도록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넷째, 성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을 실시한다.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남녀평등이념이 교육에 뿌리내리도록 한다.

다섯째, 국가는 가족공동체를 보호하고 가족공동체 내에서 남녀의 연대와 건강한 자녀양육 및 풍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각종의 물질적·문화적 사업과 지원을 수행한다. 우선적으로 탁아소와 유아원을 공공부문으로 확립하여 교육내용을 풍부화하며 가족공동체를 위협하는 성폭력문화와 퇴폐문화를 근절한다.

9.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의 실현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발전시키고 책임있는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사회복지의 실현은 누군가의 시혜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민중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민중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성장위주정책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복지도 누릴 수 없었다. 사회복지 없이 장기적인 경제발전이 결코 성취될 수 없음을 세계사가 증명한다. 이제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실시는 어떤 이유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국가 사회복지정책의 전달 체계와 운영기구에는 국민의 대표가 참여한다.

둘째, 사회복지에 대한 재원을 대거 조성하며 재원은 소득계층별로 누진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마련한다.

셋째, 상해, 질병, 노령, 폐질 및 임신과 출산 등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한다.

넷째, 모든 국민들은 빈곤을 야기시키는 각종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포괄적인 사회부조를 실시한다.

다섯째, 모든 국민들은 종합적인 보건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점차로 무상의료서비스로 발전되어야 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실시하며 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추진한다.

여섯째, 모든 국민은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위해 모든 토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아닌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국공유화를 추진하여 영구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보급한다.

일곱째, 모든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정책을 실시한다. 지역사회개발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하에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별 교육, 의료, 환경 등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여덟째,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적 개별 서비스정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 인 전달체계의 구축과 제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국가는 노인·장애인·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홉째,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교통정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로망 및 전철망의 확대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등에 우선 주력한다.

10. 민중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문화는 문명의 척도이자 사회발전의 가늠자이다. 우리는 소수의 특권층이 향유하고 이윤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문화가 아니라 다수 민중이 참여하고 향유하며 사회적 연대를 발전시키는 문화를 원한다. 우리는 민족적 생활양식 속에서 형성되어 온 건강한 민족문화의 자양분을 흡수한 자주적인 민족문화를 건설하고자 한다.

문화생활에서 민중의 참여와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중들 자신에 의해서 전개되는 문화활동과 문화운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문화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부분문화의 활성화가 전체문화의 풍부화를 위한 조건이 된다.

인간의 창조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문예술 분야와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 예술의 분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양자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한다. 건강한 여가활동과 스포츠 활동은 건강한 노동생활의 연장임을 인식하여 그 사회적 기회를 다양화하고 넓히는 데 노력한다.

11. 인간해방을 위한 교육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의식과 실천력을 높여야 한다.

민중의 의식은 교육을 통해서 높아진다. 올바른 교육은 민중이 역사발전의 창조적·능동적 주체이며 노동이 역사발전의 원천임을 깨닫게 한다. 또한 교육은 인간에게 자신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여 풍부한 인간성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사회의 복합적인 구조에서 요구되는 창조적 전문성과 통합적 교양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

첫째, 교육활동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스스로 교육활동의 설계와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원자치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계급 계층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비의 개인부담을 줄이고 의무교육을 내실화하고 확대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운영을 혁신한다.

셋째, 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 자주적 발전,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개편한다. 아울러 반공분단 논리를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통합교육의 원리에 입각하여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통합, 학습과 노동의 통합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이에 따라 학계와 교과과정 그리고 입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다섯째, 졸업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평생교육의 조건을 마련한다.

12. 자연과 인간의 공생으로서의 환경보전

환경보전이란 자연을 단순히 정복·지배·개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사회의 모든 발전을 자연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대기의 온전한 상태를 보전하며 바다·강·산에서 생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계속 서식하길 원한다. 지금까지 전세계의 생산력 발전은 지구의 자연조건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더 이상 자연의 상태를 무시하는 공업화는 용인할 수 없다.

오늘날 지구적 규모의 환경위기와 개개의 발전도상국이 직면한 환경위기의 책임은 거의 대부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높은 생산력 수준과 환경파괴를 통해 취득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전세계의 환경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환경위기는 미국, 일본 등 외세의 공해산업 수출과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환경파괴, 독재권력의 무원칙한 환경정책에 최대의 원인이 있다. 사적 기업은 언제나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경제적 효용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만 내맡겨질 때 환경보전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진척시키며, 나아가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일체의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생공영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자연의 무분별한 착취는 물론 자연의 재생산능력을 해치는 환경파괴형,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환경보전형, 에너지절감형 산업구조로 개편해 나간다.

둘째, 환경보전과 생산력의 발전이 양립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셋째, 핵발전소는 안전성과 경제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므로 신규허가 및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점차적으로 폐기해 나간다.

넷째, 환경기본법을 대폭 강화하고 이의 완전한 시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수립한다. 특히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산업과 기업은 오염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다섯째, 전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환경보존을 위한 교양과 교육을 실시한다.

여섯째,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연대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환경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창설·강화한다.

제2절 기본정책

1. 정치·행정

1. 의회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중이 의회활동의 실질적인 참여자와 감시자가 되어 민중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의회제도를 정착시킨다.

- 1)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 정책에 대한 심의·승인권, 행정에 대한 감사·조사권 행정관료에 대한 탄핵소추권, 행정부 구성원칙 및 담당자 인선원칙의 제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2) 의원들의 야합과 공작에 의한 밀실정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은 TV생중계 등에 의해 전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 3) 의정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의원들의 면책특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의회의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위한 의원들의 활동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4) 의회가 다양한 계급·계층의 요구를 수렴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직능대표를 감안한 득표율 비례대표와 지역대표의 원칙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 5) 의회활동에 민중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민의 발언권, 소환권, 청원권 등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특정사안에 대한 특별검사임명권을 부여해야 한다.

2. 정당

민중이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계급·계층이 사회정치세력에 정치적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정당정치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1) 정당설립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한다.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에 위배되는 까다로운 등록 및 허가절차는 폐지하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정당은 무조건 인정한다. 또한 정당은 자진해산 외에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될 수 없다.
- 2) 정당의 정책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당이 실질적인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을 가진 정당이 발전해야 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책개발을 위한 제반활동이 지원·보장되어야 한다.

- 3) 정당의 정치자금의 양성화되고 공개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 정치자금이 적게 드는 정치가 정착되어야 하며 정당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 4) 모든 사회세력의 정치 및 정당활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민중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각 부문의 자발적인 대중결사체가 정치 및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단체, 농민단체, 빈민단체 등이 정치 및 정당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3. 선거제도

독재권력의 자의적 조작과 전횡에 의하지 않고 민중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 1) 금권과 관권에 의한 선거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공영제, 선거비용의 국고부담 등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운동과정에서 정치적 발언의 자유가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2) 선거구는 인구비례에 의한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다수당에 의한 자의적인 선거구 조정을 엄격히 제한한다.
- 3) 정책정당의 발전과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인 사표방지를 위해서 정당연기명투표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제는 사회 각 세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사표를 최대한 방지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총득표율에 의한 의석배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4. 행정

정부의 활동은 특정의 정치지배세력 또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종속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즉 국민의 이익과 의사가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실현하는 행정제도를 확립한다.

1) 행정제도를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 ① 업무와 인사에 대한 중앙집권적 계층구조를 분권화시킨다. 업무와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각 부처로 위임시켜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영향력을 제거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한다.
- ②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및 공무원들의 생계유지권과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③ 정책과정에 국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참여는 정책에 대한 공청회 개최의 의무화,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 저항권의 인정 및 정책결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정부의 정책결정에 투입될 수 있는 제도의 확립을 이루어야 한다.

- ④ 정부의 활동이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의한 정부 통제가 가능해야한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탄핵소추권을 통해 정책과정이나 정책결과에 대한 공무원의 통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유지하는 감사원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감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 ⑤ 행정부의 구성은 올바른 기준과 원칙에 의해 공개주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기구들은 철폐하고 특정계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운영을 없앤다.

2) 공정한 충원제도를 확립한다.

- ①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 부처와 각 지방정부에 분권화시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한다.
- ② 공무원의 충원은 공개채용의 원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채용은 특수직에 한하며 임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실시한다.
- ③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과정을 의무화시킨다.

3) 공정한 감사제도와 민중통제의 원칙을 확립한다.

- 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대폭 강화한다.
- ② 감사기관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엄정 독립하도록 인사상의 독립, 재정적 독립, 기능상의 독립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임명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감사원장은 호선으로 하되 그 임기는 국회의원 보다 길게 한다.

4)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제를 즉각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고유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전국적 규모와 국가존립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모든 업무는 지방정부에 이관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조직권을 지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지방 출신의 지방공무원에 의해 충원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행정기구에 대한 통제권은 지방정부에 있어야 한다.
-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적절한 자원의 배분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독차지하고 있는 세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전한다.
- ⑤ 지방자치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지역주민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권을 갖는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을 갖는다. 자치입법권은 헌법과 관계설정법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는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에 정당참여가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

- ⑧ 지방자치는 그 의미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교육자치제, 경찰자치제 등 여타 부문의 자치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 ⑨ 지방자치의 최소단위까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의 최소단위가 되지 못하는 통·반, 마을, 부락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 원칙에 준하여 자율적 시민조직의 운용이 적극 보장되어야 한다.

5) 군, 예비군, 민방위

- ① 총병력규모를 외침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고 현역병의 과도한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한 단기병(방위)제도와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수정한다.
- ② 군의 정치불간섭과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 특히 보안사는 해체하며 군수사기관의 민간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행위를 일체 금지시킨다.
- ③ 합참의장에 군지휘권을 집중시키는 현행 국군조직법을 철폐하고, 주요 작전부대의 운용 및 작전수행, 각종 예산과 결산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감시제도를 도입한다.
- ④ 비대화한 고급장교를 대폭 축소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예산의 낭비와 정실인사를 배제한다.
- ⑤ 단층을 이루는 사병집단의 내부구조를 단순화하고 병영생활의 민주화를 보장하며 사생활 침해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직무 이외의, 혹은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내부의 편향적 정치선전을 배제하는 법률과 규정을 마련한다.
- ⑥ 국민의 생계에 지장을 주고 체제홍보수단으로 전락한 예비군을 전면 철폐한다.
- ⑦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유지에 기여하는 민방위제도와 학생군사훈련을 전면 폐지한다.

6) 경찰, 검찰, 정보기관

- ① 경찰은 내무부로부터 분리하여 민간인이 참여하는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경찰자치제를 지방자치제와 같이 실시한다.
- ②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법무부와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둔다.
- ③ 국가안전기획부와 경찰 산하 공인기관을 해체하고 모든 정보기관의 정치사찰을 금지하며 의회의 통제하에 둔다.

5. 사법

- 1)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부에 인사권, 예산편성권, 법률안제출권을 부여한다.
- 2) 법관의 임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법조일원화를 실현한다.
- 3)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을 신설한다. 전문법원의 법관은 해당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임용한다.
- 4) 형사소송상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을 확립한다.

2. 통일 · 외교

1. 2단계 평화통일방안으로 민주주체의 통일을 이룩한다.

1) 평화정착단계

- ①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분단을 지속시키는 핵심요인이므로 평화정착을 분단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다.
- ② 평화정착을 위하여 남북 간의 군사력 감축, 미군철수, 팀 스피리트훈련 중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실현하며, 아울러 남북간의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 ③ 분단하에 외국과 맺은 조약과 협정을 통일에 대비하여 개정하며 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률을 정비한다. 또한 북을 적대시하는 교육과 선전, 왜곡비방을 중지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고취하는 노력을 전개한다.

2) 연방제통합단계

- ① 남과 북이 각각 45년간 상이한 체제로 독자적인 발전을 지속해 온 만큼 상대방의 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바탕에서 연방제 방식의 통일국가를 창출한다.
- ② 초기의 연방 통일정부는 남북 지역정부의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동등한 권한을 갖는 공동위원회 형식으로 외교, 군사, 교육부문의 공동의사 결정과 집행을 실현하여 통일국가의 면모를 갖춘다.
- ③ 연방제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를 망라한 추진기구를 결성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의 군사력을 점진적으로 균형있게 축소하여 각각 병력을 20만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단계적인 군사력 감축을 실시한다.

1) 남 · 북 군사력의 동결

우선 남과 북의 군사력을 동결하며 신무기 도입 등 군비경쟁을 종식시킨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지하며 상호간의 군사력 공개와 정보교환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로 도발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

2) 공격용 무력의 감축 및 핵 · 화학무기의 폐기

핵 · 화학무기는 즉각 철거 혹은 폐기하며 공격용 무기와 기습 · 상륙용 병력을 감축하고, 휴전선에 집중 배치된 군병력을 후방으로 이동한다.

3) 병력을 20만이하 수준으로 점차 감축한다.

남과 북이 병력과 무기를 상호주의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20만 이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

하고 예비군제도를 폐지한다. 남과 북이 각각 맺은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은 완전히 철수한다. 남과 북의 합의에 따라 군축의 진행과정을 상호 검증한다.

3. 통일 논의와 실천의 주체로 민중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실시한다.

- 1) 주권자인 국민이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북한에 대한 정보개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북한의 신문, 방송, 도서, 잡지, 영화, 음반 등에 대한 전면개방을 실시한다.
- 2) 통일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하여 남북 정당간의 교류와 대화를 추진한다.
- 3)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고취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민중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며 남과 북의 정당, 사회단체, 개별 인사를 망라하여 “민족의 대단결과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선언”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4) 통일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거나 독점하는 것을 막고 민중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기존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등의 관변기구를 해체하며, 정부의 통일관련 당국과 정당, 사회단체간의 통일정책을 협의하는 “민족통일정책협의회”의 구성을 추진한다.
- 5)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민간인 교류를 규제하는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인의 남북교류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4. 자주, 평화,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평등한 외교관계를 시정하고,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친선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

- 1)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표본인 한미행정협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
- 2) 미군에 장악되어 있는 군작전 지휘권을 회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한다.
- 3)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과 사죄, 피폭자 및 징용자에 대한 배상 등 한일간의 역사적 청산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한다.
- 4) 외무부 산하에 교민청을 신설하고 해외교포의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하며 외국 국적을 갖지 않은 교포의 기본권을 신장시킨다.
- 5) SIV를 비롯한 해외의 평화애호 및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며 연대한다.

3. 경제

1. 민주주의 경제의 실현을 위한 계획적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한다.

- 1) 독점재벌을 해체하여 민주적으로 재편한다.
- 2) 주요한 기간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국영, 공사합동, 일정한 규제를 받는 민영 등의 형태로 재편한다.
- 3) 에너지산업, 첨단산업, 정보통신산업, 금융산업, 식품관련산업에 대한 외자의 진출 및 지배를 방지

하고 그간의 외자기업에 주어진 특혜를 없앤다.

- 4) 국영기업에서의 자주관리를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그를 위해 국가, 해당기업 노동자, 소비자의 경영 참가를 보장하고 의회 및 특정기관이 영업활동을 감시하며 경영실적을 공개한다.
- 5) 기업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를 민주적으로 규제하며 이를 위해 각종 법적, 행정적 수단을 강구한다. 독점기업에 의한 부당한 이익추구, 반사회적 행위, 경제교란 행위 등의 규제를 위하여 주요제품의 원가, 자금운용에 대한 정부기관에의 보고와 공개를 요구하고 독과점적 담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입법을 제정하고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 6) 유통부문의 정비를 통해 시장교란과 불안정성을 제거한다. 특히 농수산물, 대기업제품에 대한 공공유통기구를 확대하고 가격체계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가격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구한다.
- 7) 지하경제를 뿌리뽑고 불로소득의 사회환원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2. 자주자립적 생산기반을 확립한다.

1) 에너지 종합정책

- ①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은 자립화, 안정성, 다양화, 수입선 다변화, 무공해 실험, 지역분산, 고효율화 그리고 에너지 절약 등에 둔다.
- ② 전력, 석탄 등 중요 에너지산업은 국영으로 전환하고 나아가 석유의 수입, 정제, 판매, 개발 등의 산업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수급상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자주적 경제를 위한 기반확립에 주력한다.
- ③ 전력은 공적 소유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석탄은 점진적으로 국·공영체제로 전환하여 에너지 자원의 국내충당을 확대한다.
- ④ 석유 관련산업은 현행 독점제별 기업소유에서 국영으로 전환하며 여기서 생긴 수익을 에너지 공급의 자립기반 확립 및 기타 복지재원으로 활용토록 한다.
- ⑤ 핵발전의 의존은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성있는 대체에너지 개발을 도모하여 '핵발전 없는 한국' 을 지향한다.

2) 산업정책

- ① 기본적으로 수출의존형 산업구조를 개혁하여 국민생활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로 전환시켜 간다.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화로부터 국민의 생활과 복지, 환경보호, 그리고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혁을 꾀한다.
- ② 대기업중심의 재정투융자를 재편한다.
- ③ 민간의 대규모 투자는 최대한 권장하여 공공투자는 복지향상, 환경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한다.
- ④ 식품산업은 해당 농수축산물 생산자조합이 관할토록 하여 국내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산업발전과 무관하며 향락과 과소비를 조장하는 서비스부분은 철저히 규제하며 공공서비스부분은 국가의 감독하에 육성·보호한다.

3) 과학기술의 발전

- ① 국가의 지원을 특별히 확대하고 현재의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확대 개편하며 고등교육에서의 이공계 비중을 높인다.
- ② 기술발전의 국내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 도입기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감독한다.
- ③ 새로운 기술개발에 힘을 기울인다. 국민생활 및 환경에 악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용에 앞서 악영향 방지기술, 산업폐기물 처리기술 또는 대체기술 등의 개발을 동시에 확립해간다.

4) 중소기업의 육성

- ① 중소기업 육성은 자립경제실현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 보호·육성·지원한다.
- ②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의 범위를 넓히고 대기업의 참입을 강력 규제하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③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정 범위내에서 금융·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실시한다.
- ④ 구조불황산업 등 사양산업부문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책을 강구하여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고도화로 유도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다.
- ⑤ 중소기업의 권익옹호를 위해 생산 유통에서의 상호협력을 유도한다. 중소기업가 단체를 민주적으로 재조직한다.

3. 재정·금융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혁한다.

1) 재정개혁

- ① 민중수탈적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재정지출의 목표를 민중생활의 질적 개선에 둔다.
- ② 방위세를 폐지하고 국방비를 비롯한 사회적 통제비용을 대폭 삭감하며, 복지재정지출을 대폭 늘린다.
- ③ 부가가치세는 세액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되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소득에 따른 직집세의 누진적 적용을 확대 실시한다.
- ⑤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상 혜택을 축소하며 특히 독점재벌에 유리한 각종 세제는 우선적으로 폐지한다.
- ⑥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며 토지 및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시급히 실시한다.
- ⑦ 각종 기금의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존속이 요구되거나 한시적으로 신설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복지형 기금 등은 의회의 철저한 감사대상으로 삼는다. 기금의 전용은 철저히 방지한다.
- ⑧ 재정지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재정의 유용 및 전용을 막을 수 있도록 재정활동에 대한 국민적 감사를 실시한다.

2) 금융개혁

- ① 경제의 민주적 계획화를 위해 민간 및 정부계의 각종 금융기관의 민주적 운용, 관리에 주력한다. 특히 정부계 금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서 민간은행에 대한 민주적 규제를 유도한다.
- ② 금융정책이 민중의 이익과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독립적 기관으로 하고 그 조직을 민주적으로 개편한다.
- ③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현행 지분비율을 폐지하고 대기업의 은행주식에 대한 소유를 억제하며 현재 주식은 국가가 유상매입하여 국가소유비율을 높인다.
- ④ 대출의 대기업 편중을 해소하고 부실대출기업에 대한 은행의 처분권한을 강화한다. 대출기업의 일정비율 이상 은행채무는 해당기업의 부동산 강제매각 등을 통해 상환토록한다.
- ⑤ 지하경제의 온상인 사채시장을 정화한다.
- ⑥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활동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다.

4. 자주적 대외경제관계를 구축한다.

- 1) 자주, 평등, 평화, 호혜를 근간으로 하여 대외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 2) 미·일 등 선진국과의 불평등한 경제관계를 시정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종 국제경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경제협정 중 불평등한 것들은 폐기하고 호혜평등한 협정으로 대체한다.
- 3) 호혜평등의 경제개방은 지지하나 선진국들에 의한 경제침탈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개방은 반대한다.
- 4)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한다.
- 5) 당면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현재 미·일주도의 협력체 구성으로부터 모든 국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이 협력체 구성에서 아세안 등 개발도상국과의 공동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호혜평등의 국제경제질서 구축에 앞장선다.

5.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추구한다.

1) 물가대책

- ① 물가상승의 주요원인인 독점재벌의 가격설정과 정부의 과도한 통화 증발을 규제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한다. 이를 위해 독점가격을 법적,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통화발생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필요통화량을 산출하여 전적으로 이에 따른다.
- ②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으로부터 국내물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필요한 기금을 설정하여 가격을 안정화한다.
- ③ 농수산물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물자의 유통체제를 일원화·합리화하고 이를 관련협동조합에서 직접 통제·운영한다.
- ④ 현행 물가통제 작성방식을 개선하고 물가상승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재정정책 등의 조치를 마련한다.
- ⑤ 공공요금을 안정시킨다.

2)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 ① 사회보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 ② 비용은 국가와 기업이 우선적으로 부담토록 한다.
- ③ 보험제도를 사보험으로부터 사회보험 방식으로 개편한다.

4. 노동

1. 완전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의 질을 향상시킨다.

- 1) 실업과 불완전 취업을 없애고 모든 국민에게 정상적인 노동조건하에서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고용보장법을 제정한다.
- 2) 노동자의 채용과 승진에 있어 성, 연령, 출신지, 신분 등의 차이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고용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 3) 채용, 승진,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노동조합 혹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장내 노동자 대중조직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한다.
- 4) 노동자의 지식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직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동자교육법을 제정하여 노동자에 대한 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2.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임금불평등을 해소한다.

- 1)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한다.
- 2) 부양가족이 있는 성년노동자에게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적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을 지불한다.
- 3) 노동력의 질적 차이에 해당하는 격차를 넘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한다.
- 4) 모든 직장에서 단일호봉제를 실시한다.
- 5) 상용노동자에게 월급제를 실시하고 임금총액 중 기본급의 비중을 80%이상으로 한다.

3. 건강한 노동생활을 보장하는 노동시간 및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 1) 일반 직장에서 주 40시간 노동제와 주 5일 근무제를 보편적으로 실시한다.
- 2) 특별히 위험한 작업과 중노동인 경우에는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3) 여성 및 미성년노동자가 위험한 작업과 중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없앤다.
- 4)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산업안전관리기구를 설치한다.
- 5) 직업병이 걸린 노동자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과 정부 부담으로 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기간중 전액의 임금을 지급하며 완쾌 후 직장복귀를 보장한다.

4. 생산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 1) 모든 직장에서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조직과 활동을 보장한다.
 - ① 일반 공무원과 교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법률로써 보장한다.
 - ②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보장한다.
 - ③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사용자는 엄격한 법적 용을 통해 처벌한다.
 - ④ 제3자 개입금지 등 노동관련법의 모든 독소조항을 폐지한다.

- 2) 모든 직장에서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이윤참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① 노사공동결정법을 제정하여 노동자 대표가 각급수준의 기업경영에 참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지도록 한다.
 - ② 기업이윤참가법을 제정하여 기업이윤을 자본가와 노동자에게 공동 배분한다.

- 3) 사회화된 대기업과 국유화된 기간산업에서는 노동공동체 자주관리를 실시한다.
 - ① '노동자 총회'와 '노동자평의회(혹은 직장평의회)'를 통해 노동공동체가 기업을 자주관리한다.
 - ② 노동공동체 자주관리와 전 국민적 관리를 결합한다.

5.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 1)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를 철폐한다.
- 2) '국민경제회의'를 설치하여 노동정책을 비롯하여 경제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 노동자대표가 참여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지게 한다.
- 3) 노동자생활과 관련된 각급 국가조직과 주요 경제조직 및 사회조직의 민주적 관리에 노동자가 의결 주체로 참여한다.

5. 농업

1. 농업을 보호하는 농산물 무역·가격정책을 수립한다.

농산물 가격은 개별농가가 안정적인 농민적 가족경영으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가격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 1) 농산물 수입은 최대한 억제한다.
 - ① 쌀을 비롯한 주요 기간농산물은 개방압력을 차단한다.
 - ② 국내생산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때 부족분만을 수입한다.

- ③ 가공식품의 수입은 엄밀한 기준에 의거해야 한다.
- 2) 생산비 절감을 위한 복합화·집약화를 추진한다.
- 3) 가격의 보장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수준에서 수매가와 수매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 4) 작목별 생산자 조직, 농협 등 농민조직의 농산물 판매를 강화한다.
- 5) 독점자본이 유통·가공공정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며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하고 농가가 참여하는 농산물 가공산업을 원료생산지 근처에 유치한다.
- 6) 국내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개발한다.

2. 농민적 토지소유 확립을 위한 농지법을 제정한다.

식량의 터전인 농지를 자본의 지배로부터 지키고 농업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소유권 우위체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 1) 농지의 소유자격은 자경농민과 농사조합에 한정되어야 한다.
- 2) 농지의 소유한도는 원칙적으로 3정보로 유지하되 3정보 이상 경작희망 농가는 농민 스스로가 선출한 농지위원회의 개별심사를 통하여 자경농가임이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허용토록 한다.
- 3) 비농민 소유농지는 국가가 매입하여 농민에게 매도한다.
- 4) 노동력 부족으로 영농능력이 없는 농가소유 농지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가간의 소작은 허용되어야 한다. 농민 아닌 자의 농지는 강제적 매매의 방법에 의해서, 영농능력이 부족한 농가의 농지는 임대차나 농사조합에 대한 출자를 통해서 영농능력이 있는 농가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 5) 농업생산의 확대를 위해 농지전용 토지는 타 용도로의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 6) 농민적 토지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지위원회가 농지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한다.

3. 새로운 농업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생산조직을 육성한다.

농업구조를 새로이 재편해 나가기 위해서 생활과 생산의 공동의 장인 마을이라는 기초 지역 단위에서부터 기존의 조직적 기반을 활용한 생산조직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 생산의 조정·관리 기능을 체계적으로 확립한다.

- 1) 작목별 생산요소를 조직화한다.
- 2) 집단적 교환을 통해 작목간·부문간 생산요소를 공동화한다.
특정 작목 내에서의 기초적 조직화에 근거하여 각 작목간·부문간에 농업생산의 계절성을 활용한 토지, 노동력, 기계 및 시설의 교환과 공동이용을 위한 조직적 체계를 만든다. 이는 복합경영을 행하는 농가들, 특정작목으로 전문화한 농가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 3) 생산, 유통 가공을 체계적으로 조정한다.
마을 단위에서의 생산 공동관리체계에 근거해 면·군 단위에서의 생산, 유통 및 생산물의 가공과 관련된 조직을 육성하며, 이 조직들을 지역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 4) 생산조직의 육성을 통한 지역 단위의 생산공동화 체계를 수립하고 농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마을 총회의 활성화를 통해 농민들이 마을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실시와 더불어 읍·면·군단위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6. 사회복지

1. 사회복지 재원을 대거 조성한다.

- 1) 재원은 소득계층별로 누진적인 직접세와 사회복지기금을 통해 마련된다.
- 2)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회복지재정비율을 최소한 10%까지 끌어올린다.
- 3)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국방비와 사회통제비용을 줄여 이를 복지기금으로 돌린다.

2.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1)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여 도시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도·농간의 사회적·문화적 격차를 줄인다.
- 2) 농촌·빈민지역의 주택을 증설·개선하고, 상·하수도시설을 확충하며 방역을 강화한다.
- 3)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고 사회체육시설과 공원 등의 휴양시설을 증설한다.
- 4) 국민을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노동생활을 위해 노동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3.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모든 경우와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정착시킨다.

- 1) 현재의 사보험을 국가와 기업주가 우선적으로 부담을 지는 사회보험으로 성격을 바꾼다.
- 2)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고, 치료와 요양, 회복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실시한다.
- 3)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맞았을 때 출산보조금, 간호수당, 출산수당을 포함하는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 4) 노령과 퇴직, 실업에 대비할 수 있는 노령보험, 실업보험을 실시한다.
- 5) 피보험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통일적인 보험제도를 구성한다.

4.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에 대한 개별사회적 서비스를 실시한다.

- 1) 노인이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①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의 의지가 있는 노인의 취업을 확대한다.
 - ②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③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2) 장애자는 정상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①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며 그 비율을 높인다.

② 모든 사회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의무화한다.

③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치료비, 요양비, 생활비를 포함하는 국민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의 치료, 요양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영 요양원을 대폭 증설하고 그 운영을 장애인 스스로의 민주적 운영에 맡긴다.

3)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공공탁아소·공공유아원을 증설하고 시설수준을 높인다.

② 청소년의 정서와 성장을 가로막는 교육, 문화를 개선한다.

③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④ 2인 이하의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4) 개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5. 모든 국민이 양질의 보건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1)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광범한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예방사업을 연구·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의학교육이 치료보다는 예방중심이 되도록 개편한다.

2) 저소득 계층에서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하여, 그 범위를 점차 전국민적으로 확대한다.

3) 대규모 병원은 국유화하고 국영 1차 진료기관을 증설하여 그 질을 높인다.

4) 한의학과 양의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양 분야의 교육과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한다.

5) 의약품 생산에서 성분의 유해성과 효용을 국가가 조사·규제하여 약품의 남·오용을 막는다.

6) 각 지역의 보건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정부, 보건의료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각급의 '보건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7. 주택·토지

1. 토지독점을 철폐하고 국·공유화율을 높인다.

1) 재벌과 땅투기꾼의 토지를 환수하여 국·공유화한다.

① 자연이 우리 민족공동체에게 천혜의 혜택으로 부여한 토지가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막는다. 민족성원 모두의 공유물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유화·공유화되어야 한다. 단 소토지 농민이 생산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국민이 생활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택지는 개인적 소유를 인정한다.

② 독점재벌 소유의 각종 비업무용 토지, 대토지 소유자의 투기목적 토지, 택지 및 임야소유상한제에 따른 초과 소유택지 및 임야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적정가격으로 수용한다.

③ 토지의 국공유화율을 점차적으로 높인다. 토지개발공사는 조성토지와 일반토지를 매매 분양하지 않는다.

④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를 정밀 검사하여 택지로 활용가능한 토지를 장부가로 매입하되 이를 은행 부채와 연계시키거나 토지공채로 매입한다.

2) 국·공유화된 토지는 우선 주택지 및 공장부지로 임대한다.

①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엄격히 분리하여 개인과 법인에게는 토지사용권만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토지사유를 제한한다.

② 국·공유화된 토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매각할 수 없게 된다.

③ 국·공유화된 토지의 임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의거하되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 등이 관리한다.

④ 토지의 임대 및 사용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⑤ 토지국유화 및 임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할 위원회를 구성한다.

2.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다.

1) 국·공유지에 대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한다. 이때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있고 개별 수용자에게 사용권이 주어지는 주택을 의미한다.

2) 주택용지 확보방안

① 택지화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②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③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불요불급한 군사보호지역을 비롯하여 국·공유지를 개방한다.

3) 자원조달방안

① 국민주택기금, 주택은행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만 이용한다.

②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정부의 직접투자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③ 세계잉여금(89년 3조여원, 89년 근소세 초과 징수분 6,000억원)을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한다.

④ 주택공사 및 토지개발공사의 운영을 민주화하며 이의 운영을 관리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들 기관이 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으로 되게 개편한다.

4) 임대료

① 임대료는 월 가계지출이 10% 수준을 넘지 않게 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비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② 해당지역 자원에서 공공적 성격을 갖는 주거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기관이 임대주택을 관리하도록 한다.

③ 임대료를 결정할 때에는 주거위원회의 결정을 거친다.

3. 재벌 및 대토지소유자의 부동산 소유실태를 공개한다. 특히 현재 전산화되어 있는 정부자료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다.

8. 여성

1. 여성의 평등한 평생 노동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 1) 남녀 평등한 직업교육의 기회 및 내용을 확보한다.
- 2)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고 남녀차별 채용을 엄벌하여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완전고용되는 사회를 만든다.
- 3) 여성노동자에게 동등한 신분보장과 승진으로 정년퇴직까지 평등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한다.
- 4) 여성노동자가 생리, 임신, 출산, 수유, 육아, 자녀교육 등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5) 여성의 임금을 현재의 저임금에서 생활 가능한 적정임금으로 끌어올리고 남녀간에 임금차별이 없도록 임금체계 개선에 노력한다.
- 6) 여성의 노동 가치는 남성과 마찬가지로의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이 주어져야 한다.
- 7) 직종분리를 극복하고 동일노동을 창출하기 위하여 고용할당제를 실시한다.
- 8) 여성노동자의 작업환경 및 조건을 쾌적하게 하여 직업병과 산업재해를 퇴치한다.
- 9) 노동현장에서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가혹행위를 근절한다.
- 10) 위장폐업, 외자철수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2. 주부의 권리를 보장한다.

- 1)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한다.
- 2) 주부의 재산취득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개선한다.
- 3) 가사와 양육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연금제도를 확립한다.
- 4) 주부들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 5) 주부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3. 모성을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 1) 여성과 남성을 위한 안전하고 무해한 출산조절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2) 낙태의 허용범위를 완화하고 그 비용은 의료보험으로 지불하여 불행한 출산을 방지한다.
- 3) 안심하고 건강하게 임신,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모, 신생아를 위한 의학적 치료와 도움 그리고 비용을 국가가 공동 분담한다.
- 4)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산전산후 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 자녀병가 등 다양한 제도를 특별히 마련

한다. 출산시 남편의 출산휴가를 마련하고 자녀병가는 풍부중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5) 다양한 탁아제도를 확충해서 어머니의 일할 권리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충족시킨다.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환경에 처한 자녀는 우선적으로 탁아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4.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한다.

- 1)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가족에게는 국가가 소득을 지원한다.
- 2) 특히 모자가족, 여성가구주 가족, 미혼모, 편부모가족 등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가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취해야 한다.
- 3) 가족 수에 맞는 거주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과감한 주택공급과 주택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
- 4) 장애자 가족원을 위한 비용이나 시설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재택 장애인을 위한 특별지원을 한다.
- 5) 노인가정과 기타 필요한 가정을 위한 가정조성자 파견사업이 사회비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6) 가족간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되도록 가족법을 완전히 개정한다.
- 7) 자녀에 대한 가혹행위를 사회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5. 성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을 실행한다.

- 1) 소년, 소녀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 2) 소년, 소녀에게 평등한 교육을 실시한다.
- 3) 여성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회를 보장한다.
- 4)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여성에 대한 차별적 행동과 사고를 바꾸는 교육을 실행한다.
- 5) 여성의 재교육 기회를 사회적으로 보장한다.
- 6) 평등한 문화창출을 위한 사회교육을 남성, 여성 모두에게 실시한다.

6. 여성의 동등한 정치참여를 촉진한다.

- 1) 여성의 자유로운 사회활동 보장, 특히 여성운동과 자주적인 협동활동을 지원한다.
- 2) 여성부를 신설하여 여성에 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한다.
- 3)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할당제를 다양한 차원에서 실시한다. 그리고 모든 공식적 정책결정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7. 성폭력과 성상품화를 근절하고 아름다운 성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 1) 올바른 성교육을 학교교육에서 사회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실시한다.
- 2) 아내 구타의 문제가 더 이상 은폐되지 않도록 아내 구타를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3) 국가와 지방단체,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성폭력 고발센터, 성폭력으로 피해입은 여성들을 위한 '여성의 집' 설치 등 이들을 위한 정신적·법률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 4) 『매매음 금지법』을 제정하여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포주는 엄벌토록 한다.

앞으로 3년간 남녀평등을 위한 10대 과제

1. 성별 임금격차 해소
2. 여성 취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고용할당제 도입
3. 두 자녀까지 무료출산
4. 산전산후 휴가 100일 확보
5. 부모 중의 1인 육아휴직 유급 1년
6. 아동 80만명을 위한 탁아소설치
7. 성차별적 교과서 개정과 학교 급식의 전면실시
8. 성폭력 처벌법, 매매음 금지법 제정
9. 가사노동의 가치인정을 위한 법제도 확립
10.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비례대표 할당제 20% 확보

9. 교육

1.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바탕을 굳건히 한다.

- 1) 교과내용을 민족·민주·인간화의 지향으로 대폭 개편하며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실시한다. 따라서 현행 국정검인제를 폐지하고 각급 학교의 교과서 채택은 지방교육위원회와 단위학교의 교무회의에서 결정한다.
- 2) 일선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교무회의 또는 교수회의를 의결기구로 상설화하며 교직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 3) 교원양성, 임용제를 전면 개편하고 교원평가제, 교수재임용제도를 폐지한다.
- 4) 현행 6·3·3·4 학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교부 산하에 학부모, 교직원,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학제개편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치원교육 및 중등교육의 전면 무상의무교육제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내용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 5)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한다.
- 6) 교육자치제는 시·군·구 등 모든 구역에 걸쳐 전면 실시하고 교육위원은 주민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모든 교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7)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8)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은 모두 지방 교육자치단체가 관장하도록 한다.

2.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실현과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

- 1)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을 바로잡고 학력차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 2) 중등학교의 직업교육, 산학협동을 강화하며 종합고등학교 제도를 확립해 간다.
- 3) 사회교육 시설과 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평생교육과 시민자치 공동체 의식 함양의 터전을 마련한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민중학교를 설립한다. 또한 자발적 민중교육 활동을 보호·지원한다.
- 4) 신체장애자 및 정신박약자에 대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특수교원 양성을 위해 대학교과를 신설 및 확충한다.

3.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재원을 확충한다.

- 1) 교육비 부담을 소득 격차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질적인 교육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 2) 교육재정 확보방안으로 신설된 연구세는 특별회계로 하고 현행 교육세와 함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세로만 사용하고 전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10. 문화

1. 권력과 자본의 조장에 의하여 반민중적이고 반민중적으로 변질된 현재의 문화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민족성을 드높이고 저급한 상업주의 문화를 근절한다.

- 1) 민족문화예술의 민주주의적 전통을 계발하고 이를 위한 각종 기관과 제도를 설립한다.
- 2) 문화예술의 사회성을 깊이 인식하여 퇴폐적 물신주의적 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 3) 부문별한 자본의 논리와 반민중적정권의 조장에 의한 외래 저급문화의 비정상적 유입을 봉쇄한다.

2. 소수 특권층에 의해 독점되는 문화배분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1) 국민교육과정 속에 문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정을 폭넓게 반영한다.
- 2) 거주지와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제도화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문화적 잠재력을 발휘하여 자아의 실현과 사회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3) 전문예술과 대중예술이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한다. 아울러 소수 전문예술가에 편중되어 있는 문화예술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중의 자생적인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민중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보장한다.

3. 전문 문화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고 창작 환경을 개선한다.

- 1) 문화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국가보안법과 위헌적인 사전검열 등을 제도화한 공연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 영화법 등 각종 악법을 개폐한다.
- 2) 일부 문예인에 편중된 창작지원을 확대·개선하여 모든 문예인에게 고른 창작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예진흥법 등 각종 국가적 차원의 제도를 정비한다.
- 3) 문예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 및 예술작품의 보호에 관한 법률조치와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 4) 문화정책의 형성과 집행의 모든 차원에 전문 문예인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 5) 창작활동의 자유와 전문성,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요구되는 조직체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

4. 국민이 풍족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시킨다.

- 1) 문화활동의 분권화를 추구하며 지역중심의 문화 발전을 권장하고 소규모 인구의 주변지역이나 미발전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 2) 각 지역별 인구별로 문화예술회관을 건설하고 공공시설의 문화활용을 제도화 한다.

5. 민족통일성회복을 통해 민족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남북의 문화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전문예술인 및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11. 언론

1. 권력과 자본에 예속된 언론을 민주화하여 전 국민이 언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사회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를 창달하기 위해서 독재정권이 언론을 지배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만들었던 유형무형의 통제는 철폐하고 언론 스스로의 굴종과 자본의 언론지배를 종식시킨다.

- 1) 민주적 공영방송 체제를 확립하고 방송사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법, 방송공사법, 방송광고공사법 등 방송관계법을 전면 개정한다.
- 2) 기존의 방송위원회 방송광고공사는 폐지하고 시청자 대표, 각계의 직능대표를 망라한 민주적 대표성이 확보된 기구로 개편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3) 정기 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신문, 잡지, 도서의 발간을 자유롭게 하고 등록취소, 발행정지 등 정부의 규제를 철폐한다.
- 4) 편집권 독립 등 공정 보도를 위한 언론사의 자율적 기구의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며 각계각층의 국민들로 구성된 언론평의회를 설립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감시하도록 하며 공정정보 청구권 등 국민의 반론권을 확대한다.

- 5) 주한미군방송(AFKN)의 채널 사용권을 회수하며 재벌의 언론사 소유 및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국민 주 방송의 설립이 추진되도록 한다.
2.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 청구권, 공개의 의무, 취재원 보호 등을 명시한 정보 자유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3. 민중의 자주적인 언론활동을 활성화 하여 영세한 출판, 인쇄업의 경영을 보호, 지원한다.
4. 해직 언론인의 원상회복과 진상규명을 추진하고 명예회복과 배상을 실시한다.
5. 언론 종사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12. 교통

1. 교통수단 간에 균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인교통수단이 없는 사람에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 1) 도보
 - ① 도시외관 도로 등 모든 도로에 기본적 보도시설을 반드시 갖춘다.
 - ② 보행에 위험이 없도록 차도와 보도를 확실히 분리하고, 육교, 지하도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 2) 자전거
 - ① 다른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건설 때 의무화한다.
 - ② 자전거 도로망을 확보하여 자전거이용을 권장한다.
 - 3) 대중교통
 - ① 지하철을 증설하여 지하철 수송부담율을 대폭확대하고 지하철 노선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연계체제로 개편한다.
 - ②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제로 확대한다.
 - ③ 시내버스의 굴곡노선을 조정하고 공동배차제를 대도시는 권역별로, 중소도시는 지역별로 실시한다.
 - ④ 시내버스 전용차선의 전면실시와 버스의 대폭 증차를 통해 버스의 교통난을 해소한다.
 - ⑤ 버스교통을 점차 공영화한다.
2. 투자의 지역, 지구간 균형성과 기능적 균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1) 도시개발
 - ① 교통문제를 고려한 합리적 주택지 건설,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

② 문화서비스 공간을 도심에서 시외곽, 지방으로 분산시킨다.

③ 교통난을 유발하는 도심의 대형건물 건축은 억제한다.

2) 소통

① 토지공개념의 강력한 실시로 도시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부지를 확보하며 도시간선도로망을 조속히 건설한다.

② 도심에 일체 주정차를 불허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엄격히 한다.

③ 모든 도로상의 공사는 예고되어야 하며, 교통체증 유발지역에서는 야간 이외에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다.

3) 주차

① 상습체증지역에서는 시유지 등을 활용하거나 세제, 금융지원으로 주차 빌딩을 마련하여 주차를 유도하되, 그 주변의 도로에서는 주정차의 전면금지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② 주차장법을 강화하여 교통난 유발시설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한다.

4) 교통안전

① 운수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 이내로 규제한다.

② 안전기준에 맞는 1일 최대 주행거리를 정해야 한다.

③ 시내버스 기사의 배차시간을 늘리고, 운행회수에 의해 임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한다.

④ 택시의 경우 도급제와 지입제를 전면 금지한다.

⑤ 운수노동자들이 '완전월급제' 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화물차 이외의 차량에 대해 재생타이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⑦ 내수용 차량의 질을 수출용 수준이상으로 높인다.

⑧ 교통안전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⑨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교통교육을 실시한다.

5) 교통공해

① 자동차, 트럭에 소음차단 장치와 엔진덮개가 구비되어야 한다.

② 새로운 과학 기술의 개발에 의해 자동차, 기차, 오토바이, 비행기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더 조용한 엔진을 개발한다.

③ 소음방지를 위해 학교, 병원, 도로가에 있는 주택가에 방음벽을 설치한다.

④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자동차를 대폭 줄이고 청정연료 자동차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⑤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는 생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⑥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보다 철도망 건설에 역점을 둔다.

3. 사회적 공평성의 관점에서 교통투자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교통법류 및 제도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1)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백화점, 음식점 등 대형건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한다.
- 2) 자동차 재벌에 대한 내수판매세를 부과한다.
- 3) 지하철 건설, 확장을 통해 얻은 이익분, 지가상승분 등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 4) 교통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한다.
- 5) 사업면허는 대표자가 바뀌면 당국에 반납토록 하며 소위 '프리미엄' 을 주고 받고 양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 6) 회사택시 영업권 불법판매를 금지한다.

13. 환경

1. 생태적 원리에 입각한 경제발전을 추구한다.

- 1)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
- 2) 민중의 이익과 배치되는 공해 다발형 외국자본, 기술, 상품의 국내진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 3) 기업과 인구의 과도한 도시 집중을 막고 전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오염물의 집적집중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 한다.
- 4)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시행한다. 환경파괴적이고 자원낭비적이며 인체에 유해한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최대한 억제한다.
- 5) 생태적 환경에 기초한 농업을 보호육성 한다. 농약사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화학농법이 아니라 유기농법의 실천과 미생물, 천적, 효소 등을 이용한 새로운 농약대체품의 개발을 촉진하여 농약에 의한 식품오염, 수질오염, 중독사고 등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한다.

2. 새로운 에너지 생산체계를 발전시킨다.

- 1) 핵 발전소의 신규허가 및 건설과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를 점차 폐기해 나간다. 이를 위해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를 근절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추구함과 아울러 다원적이고 순환적인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꾀한다.
- 2) 공해없는 대체에너지, 즉 태양열, 조력, 수력,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와 천연가스 등의 개발에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3. 환경관련법을 강화하고 그 시행을 철저히 한다.

- 1) 자연파괴 및 환경오염의 실태, 피해실태, 공해문제의 발생원인, 대처방안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각종자료와 정보를 국민에게 전면 공개한다.

- 2) 환경처를 환경부로 확대개편하여 일원화된 환경행정 업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각 지역마다 주민대표로 구성하는 환경보호위원회를 두어 정부와 기업, 민간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행하도록 하며, 환경부문과 관련한 제반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 3) 환경영향 평가제도에 있어 주민의견 참조가 아니라 주민동의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사전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 4)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환경파괴로 인해 파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완전한 보상을 하도록 한다.

4.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 1) 상수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해업체, 기업형 축산업체, 골프장 등을 철거하며 신규허가는 엄격히 규제한다. 아울러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에 대한 정화장치를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 2) 기업의 산업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갈수록 대형화 되어가는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3) 대기를 정화하고, 수질을 보전하며, 휴양지를 제공하는 산림을 보호하고 확장해야 한다. 특히 도시의 오염된 공기정화, 토양보전, 소음차단, 홍수·가뭄 예방, 휴식처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엄격히 한다.
- 4) 자동차와 공장 배기가스에 대해 생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화장치의 설치 의무화, 탈황연료사용, 저공해 엔진개발 등을 통해 공기 아닌 독가스로 변한 대도시와 공단주변의 대기오염을 신속히 개선한다.
- 5)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완비한다. 이와함께 기업이 배출하는 산업쓰레기에 대한 기업의 책임처리를 의무화한다. 국토의 쓰레기장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쓰레기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선진자본주의국으로부터 부분별한 산업쓰레기 도입은 금지한다.
- 6) 수입식품, 농산물에 대한 객관적인 안전 검역기준을 제정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법적장치와 과학적 장비, 인력을 확보한다. 국내식품과 농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5. 사회교육의 전 과정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과 실천을 심화시키고 기존의 환경파괴적인 소비생활을 바꿔나간다.

6. 환경발전을 위한 국제적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해 환경문제를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창설·강화해 나간다.

14. 민중의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1. 과학기술의 발전된 성과가 널리 퍼지도록 한다. 생산성만을 고려한 기계 개발을 지양하고 발전된 과학기술을 이용한 노동환경의 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
2. 독점자본의 이윤창출에 봉사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지양하고 민중경제 건설의 토대로서 과학기술 발전을 지향한다. 민중의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독점적 사용을 금한다.
3. 우리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앞장서서 튼튼한 우리경제의 토대를 마련한다. 우리의 잠재적인 인력과 우리 자원을 이용하여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을 꺾어 외국 자본의 종속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4. 정권의 안보를 위해 과학기술이 반민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과학기술은 인류 유산으로서 전 민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5. 군사과학기술 발전을 지양하며 과학기술의 파괴적 사용을 막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들의 세계평화운동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한다.
6. 과학기술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마음껏 민중을 위해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7. 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민중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풍토를 보장하고 민중에 대한 과학교육 강화에 적극 나선다.

전문

우리 민주당은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이끌어 나갈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합리적 국민정당으로서 참여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시장경제, 복지사회의 이념을 바탕으로 중산층, 중소상공인 그리고 노동자, 농어민, 도시서민 기타 모든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부단한 개혁과 실천으로 모든 민족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민주복지사회의 구현과 민족통일을 성취할 주체가 될 것임을 다짐하며, 우리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

강령

[정치]

우리는 국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국민적 지지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한 민간민주정부를 수립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참여민주주의와 도덕정치를 구현한다.

[인권]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제도나 행위도 단호히 배격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한다.

[외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평화외교, 민족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경제발전을 위한 실리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통일]

우리는 남북한 흡수통합을 반대하며,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대 전제하에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3원칙을 바탕으로 제1단계 1연합 2독립정부(공화국연합), 제2단계 1연방 2지역 자치정부, 3단계 1민족 1국가 1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안보]

우리는 대북방위와 새로운 주변정세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자주국방력을 육성한다. 군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군을 질적으로 정예화하는 한편, 남북한간 불가침 협정 및 군비축소에 대한 준비를 갖춘다.

[경제]

우리는 자유경제체제를 보장하며, 부의 공정한 분배, 중소기업의 우선적 발전, 노동자와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 소비자 보호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고루 잘 사는 정의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한다.

[사회·복지]

우리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지역간·계층간·남녀간·도농간의 모든 부당한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하며 진정한 국민화합의 바탕위에서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교육·문화예술]

우리는 교육의 자율성과 창작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신장시키고 문명정치와 민족통일 시대에 걸맞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민족문화예술을 꽃피운다.

[환경]

우리는 국민모두가 고루 문명적·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안정된 주거시설과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복지사회 구현을 적극 추진한다.

[과학기술]

우리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의 근간임을 자각하고, 과감한 투자와 교육, 기술적 자립을 통해 과학기술입국을 실현한다.

기본정책

1.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1. 정권의 정통성 확립

반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청산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하에 결정되는 진정한 문민정부를 수립하여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한다.

2. 국민저항권 인정

민주적 기본질서가 폭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붕괴될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저항권을 인정한다.

3. 고문금지 및 변호인의 수사참여권 보장

고문 등 일체의 가혹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절대로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게 하며,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수사참여권을 보장한다.

4. 국제인권규약의 완전 수용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폐지, 외국에서 형을 받은 자에 대한 이중처벌금지, 공무원노조 인정 등을 추진하여 국제인권규약을 완전히 수용한다.

5. 법률구조활동의 강화 및 변호인 접견권의 절대보장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 등 법률구조활동을 강화하고,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사법적 정의를 실현한다.

6. 명예회복 및 사면·복권

광주민주화운동·삼청교육대·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나 역사적 사건으로 희생된 인사들의 명예회복과 법적 지위회복 및 사면·복권을 추진한다.

7. 국민사생활 비밀보장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유통 등 전과정을 통제하고, 자기에 관한 정보의 열람권과 정정청구권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의 수집제한·목적외 사용 금지·비밀유지 의무 등을 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전화도청, 또는 서신검열의 금지를 포함하는 통신비밀을 보장한다.

8. 자유언론의 창달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설기준의 철폐 등 일체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보도·취재원 보호·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써 책임있게 보도·비판하고, 국민적 신뢰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9. 집회·결사의 자유보장

집회·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형성 및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비폭력·평화적 집회문화를 정착시킨다.

10. 대통령직선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중심제를 유지·발전시킨다.

11. 입법부의 권능강화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소수당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권의 요구, 국회소집, 국무위원 불신임 등 각급 결의안의 제출에 있어서 정족수를 대폭 하향 조정한다. 의안심의를 있어서 본회의의 의안심의를 강화하고, 국회의 연중 개의체제 아래 국회기능을 활성화하며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를 분리하고 이를 상설화한다.

12. 사법권의 독립보장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의 외부간섭을 철저히 배제한다. 또한 법관 재임명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에 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을 부여한다.

13. 감사원의 국회이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강력한 지원 하에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14. 검찰권의 독립

검찰권 행사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일체 배제함으로써 검찰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검찰권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집행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한다.

15. 경찰의 중립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업무에 대한 감독을 전담할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자치체 실시에 따른 경찰자치제를 확립하고 민주적인 경찰상을 정립한다.

16. 군의 엄정 중립

군인 복무규율에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반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군 정보기관의 민간사찰은 완전 폐지되어야 하며, 군은 오로지 국토방위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해야 한다.

17. 지방자치제의 확립과 발전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하여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능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제도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실현한다.

18. 자유·공명선거의 보장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립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선거감시기구 설치를 보장한다.

19. 행정개혁의 추진

행정의 국제화·전문화·개방화·자율화 추세와 성숙한 민주복지국가 건설이라는 현대국가의 새로운 정부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방만한 행정기관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하고, 행정권한의 지방정부 이양·행정업무의 민간위탁 및 공무원 정원증가 억제,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의 이사장제와 각종 형식적 자문기구 등 불필요한 조직정비 및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지원과 같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작은 정부」를 향한 행정개혁을 추진한다.

20. 행정의 민주화와 공개화

행정기관의 절차를 무시한 편의주의와 밀실행정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법으로 규정, 행정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예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21. 여성·청년층의 증용

정부내각 구성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며, 국회의원선거에 정당득표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여성·청년·직능인 대표를 일정비율씩 참여시켜 각계 각층의 의사를 국정운영에 반영시킨다.

22.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데 악용되어 왔을 뿐더러 개방·교류의 동서화해 추세에 역행하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질서보호법을 제정하여 민주적 국가안전보장체제를 수립하고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23. 국회정보위원회 설치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권 및 정보조정감독권을 폐지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수집과 보안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며,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심의 및 업무감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24. 직업공무원제의 확립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독립적 인사기구를 설치하여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노조활동과 안정된 생활급을 보장한다. 또한 공무원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의무화한다.

25. 민방위제도 개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중심의 효율적인 재해예방이 이루어지도록 민방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26. 정당활동의 자유보장과 정당운영비의 국고보조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의 경성비는 원칙적으로 국고에서 부담케 하고, 지정기탁제를 폐지하며,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실현하여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7. 범죄예방 · 민생치안

국가권력과 특권부유층의 부정 · 부패 · 부의 편중에서 비롯된 배금주의 · 인명경시풍조 등 왜곡된 사회분위기를 바로 잡아 범죄의 근원을 해소하며 시국치안에 동원되어 온 경찰력을 민생치안으로 복귀시켜 조직폭력 · 인신매매 · 마약 · 성폭력 등 반문명적 · 반인륜적 범죄를 근절한다.

II. 평화와 번영의 실리외교**1. 아 · 태시대의 주역이 되는 능동적인 외교 추진**

일본의 정치 · 군사적인 부각, 중국과 아세안의 급속한 경제성장, 미국과 러시아의 대동북아정책 조정 등 급변하는 동북아지역의 신질서 형성에 대비하여 우리의 외교정책을 수동적 방어외교에서 능동적 개척외교로 전환하여 아시아 ·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참가한다.

2. 자주실리외교의 실현

냉전논리와 분단의식에 기초한 특정국가 중심의 소극적인 편중외교를 지양하고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유엔정신에 입각하여 이념과 체제를 떠나 모든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안보중심의 군사외교를 경제중심의 실리외교로 전환하여 국가이익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3. 평화외교의 추진

평화를 민족생존과 번영발전의 지상목표로 삼아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기여한다.

4. 통일외교의 추진

우리 외교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민족의 평화적 통일로 설정하고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통일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5. 호혜평등한 한 · 미관계의 확립

한 · 미 양국간 갈등의 진원지인 한 · 미행정협정의 심각한 불평등 요소를 전면개정하고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을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및 한·미 양국의 이익과 여건에 맞추어 재조정함으로써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한다.

6. 우호적이고 동반자적인 한·일관계 형성

한·일 양국간에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정신대문제 등 과거 양국간의 문제와 심각한 무역불균형 문제를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하여 우호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7. 국제사회에의 기여

유엔회원국으로서 맡겨진 책임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든 국가들이 함께 번영하고 같이 발전하는데 적극 기여한다.

8. 교민청의 설치와 해외동포의 권익 신장

해외동포의 권익옹호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이민정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교민청을 설치하여 해외이주민의 지위향상에 힘쓰며, 해외동포를 위한 교육기관을 확충하여 민족문화를 전승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거주 동포의 모국방문과 상호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확보를 통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III. 상호화해와 공존의 민족통일 추진

1. 남북한 공존과 상호수렴의 통일추진

독일통일의 문제점과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흡수통합을 반대하고 남북한이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각 체제의 문제점으로 보완하면서 상호수렴하는 통일을 추진한다.

2. 민주공동체에 기반한 민족공동체의 완성

분단 반세기를 마감하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회복하는 민족공동체의 완성은 남북한 사회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민주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하는 만큼 민주공동체에 기초한 민족공동체의 완성을 추구한다.

3. 민족통일범국민협의체 구성과 전 국민적 통일방안 확정

정부·정당·민간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족통일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유로운 통일 논의를 보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통일방안을 하나로 묶어 전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단일한 통일방안으로 결정하며 민족통일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결정된 통일방안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다.

4. 평화공존체제의 정착

『남북합의서』 조항에 입각하여 현행 휴전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한 간 불가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이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국제적 보장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공존체제를 구축한다.

5.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비핵지대화 추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기초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핵능력으로부터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유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진한다.

6. 평화교류의 추진

남북간의 적대감과 불신을 제거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교류 등 다방면적인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남북간의 경제교류, 통신교류, 자원 및 에너지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등 경제통합의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정당회담과 직능단체별 회담 등 다양한 수준의 민간교류를 추진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한다.

7. 이산가족문제의 최우선적인 해결

분단 이래로 40년간 생사를 모르고 헤어져 살아온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한다.

8.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

남북분단의 상징이자 남북한 대결장인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고, 비무장지대를 녹지공간과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보존연구하며, 이를 교류, 협력의 거점도시로 건설하고 관광단지로 개발한다.

9. 통일관련 업무의 통일원 집중

통일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원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통일관련업무를 통일원으로 일원화하며, 남북회담사무국을 해체하여 남북회담 기능을 통일원으로 환원한다.

10. 남북합의서를 포함한 모든 남북관계 규정의 국회동의

민족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간의 중요한 합의나 결정은 종류와 성격을 불문하고 모두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동의 및 심의를 거쳐 발표되고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11. 남북연합기구인 「공화국연합」의 구성

평화통일달성의 중간단계로서 1연합 2독립정부 형태의 남북연합기구인 공화국연합을 구성하여 남북한이 현체제를 상호 인정하면서 각각 동수의 대표가 참여하는 연합정부와 연합의회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구성된 연합기구인 공화국연합은 남북한이 합의해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12. 평화통일의 달성

연합기구가 구성된 후 상호신뢰와 협력의 바탕위에 남북한 공화국은 각기 권한을 연합기구에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감으로써 1연합 2지역자치정부를 구성한 후 궁극적으로 1국가 1정부 1체제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며 한반도 및 세계평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다.

IV. 굳건한 민족안보 태세의 확보

1. 자주국방

대북방위와 새로운 주변정세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자주국방력을 육성한다.

2. 군의 과학화 · 전문화를 통한 질적 정예화

군의 과학화 · 전문화를 통한 질적 정예화, 특히 육 · 해 · 공군의 첨단장비의 균형있는 확보로 병력집약적 군구조를 정비 및 기술집약적 구조로 개편한다.

3. 통일 시대를 향한 국방정책 개발

남북한간 불가침협정의 체결과 군비감축을 촉진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개발한다.

4. 군 복무 및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군축분위기가 조성되면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한다. 예비군의 복무연한은 단축하되 예비군 전력은 정예화한다.

V. 경제 정의 실현

1. 시장경제체제 확립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한다.

2. 경제 정의 실현

모든 국민의 경제활동 기회를 공정하게 하고, 산업 및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공정한 거래제도와 유통구조를 정착시켜 생산에 참여한 각 경제주체가 공정한 이익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대중 참여 경제의 실현

국민주의 보급과 종업원 지주제를 확대하여 자본소유를 대중화하며, 기업경영에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민각자의 경제활동 기회를 최대한 확장한다.

4. 금융실명제 즉각 실시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여 왜곡된 금융거래를 정상화하며, 지하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음성소득을 완전히 제거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한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개방화 시대에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기업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한편으로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경영의 민주화 추진과 기업윤리를 강화한다.

6. 경제력 집중완화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한다.

7. 재정의 합리적 운용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체제를 확립하고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여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한다.

8. 공평과세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세정

국민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세 중심의 조세제도를 정착하고, 종합토지세제를 강화하며,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조세제도를 구현한다.

9.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의 자율성 신장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금융기관의 인사 독립성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금융시장의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킨다.

10. 물가의 안정

합리적인 통화관리제도를 통하여 통화량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독과점 가격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물가를 안정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을 이룩한다.

11. 합리적인 기금 운용

정부관리기금의 운용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달성한다.

12. 지방경제의 활성화

경제의 중앙집중화를 지양하고 지방에 대한 금융, 세제, 행정지원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기해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킨다.

13.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

정부투자기관을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과 합리적 인사제도를 기초로 경영을 내실화하며 국민지주제를 도입하여 국민이 소유하고 정부가 경영하는 국민기업으로 발전시킨다.

14. 국토의 균형적 개발 및 효율적 이용

국토종합개발계획 입안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은 물론 공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용효과가 큰 산업체의 지방유치와 금융·세제상의 특혜부여, 교육문화시설 지방분산의 적극 권장 등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하며 토지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15. 토지공개념 강화

택지소유상한제 확대 실시 및 초과택지 중 내대지의 처분의무화, 개발이익환수를 상향조정, 토지초과 이득세제 개선,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조치 등을 실현하여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일부 계층이 편중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16. 자원·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책 강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비경제탄광에 대한 폐광자금의 적극 자원과 능률탄광 중심의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탄광의 경제력을 회복시키고 전력의 생산과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발전시설과 배전부분을 분리하고, 민간 발전시설을 허용토록 하며 시간대별 전기요금부과 제도를 정착시킨다. 또한 원전 위주의 전원개발을 수정, 대체에너지 개발에 치중하고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시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적극 반영한다. 에너지 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능동적인 원유확보책을 강구한다.

17.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단체활동지원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해 생산·유통과정에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자율적인 민간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소비자운동을 시·군까지 확대하여 농어촌지역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피해구제와 예방을 위해 민간 소비자단체에게도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며, 관리운영비의 정부 지원비율을 높여 소비자단체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한다.

VI. 중소기업 적극 육성과 국민경제의 기반 강화**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제의 강화**

기술, 인력, 시장정보 및 해외시장개척 등 제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형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을 촉진함으로써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입 및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2.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중점 육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술집약형 유망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발전을 촉진한다.

3.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방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부응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제를 확립한다.

4. 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경제의 저변을 강화하고 소기업자의 기업욕을 촉진하며 기업경영의 안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기업 공제제도를 마련한다.

VII. 농림수산업의 보호와 육성**1. 농지기본법 제정**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농지의 생산적 이용성 제고와 농지보전을 확립하고 경영규모확대를 통한 농가경제 개선을 위해 농지기본법을 제정한다.

2. 기간작목의 보호와 수입억제

농업소득과 농지이용의 대부분을 점하는 쌀 등 기간작목을 보호하고 농수산물 수입을 적극 억제하여 농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생명산업으로 보호 육성한다.

3. 농어촌 구조개선

농업의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집약·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개발 육성한다.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소득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개발한다.

4. 농어가 부채경감의 지속적 추진

농어가 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농업관련세제 및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농어가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농어가부채가 실질적으로 경감되도록 한다.

5. 농어업보장세의 실시

농업생산기반, 농수산물 유통구조, 농어촌의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업에 대한 전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업보장세를 신설한다.

6. 유통구조의 개선

농수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판매를 농어민이 직접 담당토록하여 이익의 외부유출방지와 유통구조의 단선화를 기하고, 도농간 직판체계 구축으로 생산자의 소득보장과 소비자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7. 양곡정책의 개선

양곡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양곡관리회계를 신설하여 예산을 통한 양곡수매를 실시하고, 민간의 양곡유통 활성화로 이중적 시장구조를 개선하여 농민들의 양곡생산비를 보장한다.

8. 환경농업의 실시

유기농업을 장려하고 무공해·무독성 농자재의 개발로 농업생산과 환경보전이 공존되도록 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9. 농어민의 사회복지 보장

통합의료보험, 농업재해보상보험, 농어민연금제 등을 실시하여 농어민의 안전한 영농종사와 불의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Ⅷ. 노사 공존 · 공영과 노동복지 확충

1. 노사관계의 동반자 지위 보장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기업가는 노동자에게 동반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는 성실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사쌍방이 상호협력하여 산업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산업발전을 기한다.

2. 민주적 노동운동 보장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민주적인 생존 · 생활상의 요구와 노동기본권 요구를 옹호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 블랙리스트와 사업장내 폭력 등 반민주적인 탄압을 배격하여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보장함으로써 노사 공존 · 공영원칙을 철저히 실현한다.

3. 경영참가의 확대

선진화된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생산성 향상과 안정된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4. ILO수준의 노동관계법 개정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복수노조의 금지규정 등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생활급 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 수준으로 개정한다.

5. 산재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투자확대

노동자가 재해예방과 직업병 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며 안전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유인책으로 세제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6. 산업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고용 확대

산업구조조정과 첨단산업 및 기술혁신에 부응하는 기술인력의 확보와 직종간 · 학력간 취업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능 · 기술인 우대체제를 확립하고 직업훈련제도를 개선한다.

7. 고용보험제 실시와 노동정보의 전산망 구축

실업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기회의 창출, 직업훈련, 취업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를 조기에 실시하며, 노동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갖춘 취업정보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고용보험관리 및 구인 · 구직체계를 효율화한다.

8. 노동복지 향상으로 근로의욕 고취

고용·임금·승진 등에 관하여 산업간·업종간·기업간·학력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줄이며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로 전환하면서 생활급 임금을 보장하고 생산성에 따른 이익분배 제도를 정착시킨다. 또한 근로복지주택공급을 확대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킨다.

IX.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사회 실현

1. 복지정책의 기본이념

모든 국민이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임을 확신하며 이의 실현을 추진한다.

2.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노령보험, 실업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확충·실현하고 통합하며,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국가와 기업이 우선적 부담을 지는 사회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동능력이 없거나 생활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확충하는 실질적인 생활보장 대책을 강구한다.

3. 사회복지재원의 확충

부의 공정한 분배차원에서 소득계층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를 기본적인 재원으로 하며,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와 사회통제비용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이를 사회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

4. 예방보건의료의 실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확대하고 농어촌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개편한다. 「국민건강검진제도」를 확립하여 전국민이 모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5. 통합의료보험제도의 실시

지역, 직장, 공무원 의료보험조합을 하나로 통합하여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는 누진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계층간·지역간의 소득재분배를 달성하고 관리운영비 예산을 절감한다. 의료보험 적용과 목을 확대하고 진료일수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율도 30% 이내로 인한다.

6. 암·에이즈·성인병 대책 강화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체제의 정비, 암연구 등을 위해 선진국의 기술도입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난치병과 성인병 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을 국가에서 설립하여 운영한다.

7. 의약품관리제도의 개선

의약분업을 실시하여 전문의약품부터 의사의 처방전발행을 의무화하고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한다. 의약품 과대광고를 억제하여 약물의 오용과 남용을 예방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8. 한방진료제의 개선

한방진료에 대한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한다. 「한·양방 합동연구소」를 설립하여 한·양방협력제도를 확립한다.

9.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의 확충

노인,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가정간호사제도」와 「가족주치의제도」를 실시하고 노인성 치매, 약물, 알콜 중독환자를 위한 전문요양기관을 증설한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의 정신질환자 치료·재활기능을 강화한다.

10. 응급의료체제 확립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정부 등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응급진료기금」을 신설하여 진료거부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를 위해 비워놓는 병상에 대해서 국가 또는 보험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응급환자실대기제」를 시행한다.

11. 식품안전관리의 강화

식품위생감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민간소비자단체의 식품위생감시 활동을 지원한다. 「선통관후검사」방식의 검역제도를 「선검사후통관」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입대상국에 관계 공무원의 현지 파견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검사제도를 확립한다.

12. 의료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실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해결의 책임을 의사와 환자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환자와 의사를 모두 보호하는 「의료재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한다.

13. 노인복지의 확충

정년퇴직제도를 개선하고 노인취업상담소를 운영하여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노령수당 지급대상을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까지 확대하며 노인의 날을 제정하여 노인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경노효친 교육을 강화한다. 노부모 부양 영세민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부여하고 생업자금 융자금액을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경로당 또는 노인정을 현대적인 문화시설로 개선하고 버스, 철도, 항공 등 대중교통수단과 목욕탕까지 경로우대제도를 확대한다. 노인병 전문요양 기관을 설립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14. 아동·청소년 복지의 확충

공공탁아소·공공유치원을 획기적으로 증설하고 그 시설수준을 높이며, 결식아동·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 이용시설과 청소년 대상 사회교육기관을 확충·개선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한다.

15. 장애인 복지의 확충

장애아동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립계획을 반영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조세감면제도를 확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호수당을 현실화하며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건축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할인제도를 버스와 철도요금까지 확대한다. 자격면허시험의 장애인 응시제한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면허취득기회를 확대하고 장애발생 예방제도를 강화한다.

16. 영세민 복지의 확충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지역별, 가구 규모별,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확대하고, 자산소득 조사시 근로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한다. 생활보호 급여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세입자에 대한 주거비 지급제도를 신설한다.

17.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같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생활급을 보장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청」과 「사회복지행정직」을 신설하여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18. 국가유공자 보호제도의 개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수준을 현실화하고 무공훈장자 등도 보상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보훈병원의 전문인력과 병상을 확충하고 만성질환상이자에 대한 가정간호사제도를 도입한다.

19. 전 국민연금제도의 확립

농어민과 도시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예탁비율을 줄여 연금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을 확대한다.

X.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

1.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경제발전 촉구

개발과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은 물·토양·공기를 극심하게 오염시켜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으므로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수행하여 모든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녹색환경을 확보한다.

2. 맑은 물 공급

상수원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하천·호소의 자정능력 회복을 위해 수중보 운영을 재검토한다. 수량과 수질, 상수도와 하수도,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관리하여 맑은 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4대강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보호한다.

3. 깨끗한 공기 회복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도시와 공단지역에 「대기오염예보제」를 실시하여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공장, 대형빌딩의 연료사용을 규제하고 차량운행을 통제한다. 경유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장치 개발을 촉진하고 차량의 증가를 억제하며 원인자 부담제도를 강화한다. 탈황·탈질소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철도·항만 등의 수송배분비율을 재조정하며 자전거 보급을 확대한다.

4. 쓰레기문제 해결

쓰레기는 반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두배로 늘리는 재활용·감량화 정책을 추진하고 1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여 내구재 생산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기업의 쓰레기 회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재활용 산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한다. 폐기물 예치금액을 현실화하고 공병보증금제도를 모든 재활용 폐기물과 유해폐기물까지 확대한다.

5. 자연생태계 보존

국립공원 개발정책을 보존정책으로 전환하고 골프장 건설을 억제한다. 그린벨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간석지의 매립을 억제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구역을 확대한다. 「자연사박물관」과 「생태계연구소」를 설치한다.

6. 사전예방정책의 강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분쟁조정신청제도와 시민단체의 제3자조정신청제도를 도입한다. 공장이나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공장폐수 또는 생활하수와 쓰레기처리장도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며, 동시에 준공하는 3동시(三同時)제도를 실시한다. 오염이 심각한 대도시·공단지역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규제를 실시하여 공해방지 기술의 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 인구·주택·공장의 지방분산을 촉진한다. 「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하고 「환경오염방지대책에 관한 표준시방서」를 마련하며, 각종 개발사업의 기본계획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7. 환경행정의 책임과 권한 강화

환경처를 환경부로 확대개편하여 환경행정의 조정과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예산에 환경교부금을 설치하여 개발예산과 환경예산의 연동제를 실시한다.

8.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환경정보자료의 자유열람제도를 실시한다. 공해업체에 대한 감시·고발실적이 많은 민간환경단체를 포상하며, 민간단체가 의뢰하는 오염물질의 특정수수료를 면제하여 공해업체에 대한 시민 감시활동을 지원한다. 공해배출 부과금의 5%를 녹색기금으로 출연하여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공무원의 환경단체 활동을 장려하여 민간환경운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9. 환경과학기술의 개발 촉진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원인자부담제도와 환경마크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의 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새로 개발된 기술과 물질에 대한 「환경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신기술과 신물질은 적절한 오염방지 기술이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한다.

10. 산성비·온실효과·오존층 파괴 등의 방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의정서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오존층 파괴물질과 화석연료의 사용규제에 따른 대체물질과 대체에너지의 개발이용에 주력한다. 핵발전소의 증설을 억제하고 가동중인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발전소 부지내에 보관한다.

11. 도덕성의 회복과 생활양식의 전환

핵폐기물 등 유해산업폐기물을 공해상에 버리거나 제3세계로 수출하는 행위, 원조를 구실로 저개발국의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선진국가로서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화학비료와 농약·화석연료·열대목재 등에 과잉 의존하는 생산과 소비의 생활양식을 유기농법과

무공해 에너지의 개발, 폐기물의 재생이용, 근검절약의 생활양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XI. 성 차별없는 평등사회 구현

1. 남녀평등사회 구현

우리는 정치·경제·사회 제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하나의 인간으로서, 일하는 주체로서 존중받은 남녀평등사회를 구현한다.

2. 여성이 참여하는 사회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존중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 이를 위해 정부 내 모든 부서 및 의회, 정당에서 여성의 정당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한다.

3. 여성의 일할 권리

국가경제발전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여성의 평생노동권을 보장한다.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을 위하여 「고용평등감독제도」와 「고용평등심판제도」를 실시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한 기회부여를 보장하는 고용제도를 확립한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근로환경개선과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시간제 노동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여성 가구주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임대주택 우선권을 부여한다.

4. 자녀 양육의 책임

출산과 육아는 국가와 부모의 공동책임이다. 공동책임 실현을 위하여 육아휴직·자녀병가의 제도를 신설하여, 부부 직장인의 경우 양육의 공동책임자로서 부부 중 한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육아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키며 지역, 직장, 직업교육 시설 등에 탁아소를 설치하며, 노동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탁아비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5. 가사노동의 가치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필수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가정주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가사노동의 가치측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토록 한다.

6. 여성을 위한 교육

정치·경제 등 제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한다. 아울러 성차별적 교육제도 및 교과내용을 개선하고,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센터의 확대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마련한다.

7.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배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은 일반폭력으로 간주하고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발과 공공보호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강간과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입법을 제정한다.

8. 성의 상품화 배격

여성을 반인륜적 상품화하는 일체의 상업적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각종 매체가 조장하는 성의 반인륜적 상품화를 감시·규제하는 기구를 설립한다.

9. 여성건강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여성건강센터를 확대·설립한다. 특히 여성농민, 여성빈민, 여성노동자를 위한 의료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0.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직속하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XII. 인간화 지향 교육·민족문화 창달

1. 교육의 자주성 확립

교육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규제를 배제하고 교육주체의 자율적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교육 제도를 수립한다.

2. 자주적인 교직원단체 육성

자율적인 교직원단체의 건전육성을 통해 교직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며, 이들 단체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부당한 탄압을 철저히 배격한다.

3. 교육자치제의 실질적 구현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아가서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자치제 실시범위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하고,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자치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한다.

4. 학원 자율화의 정착

학문연구와 발표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수재임용 제도를 폐지하며 교수협회를 활성화한다. 교육관계 법을 전면 재정비하고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교원의 권익옹호에 전력한다.

5.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

GNP대비 5%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의 20%이상을 교육시설비로 법정화하여 양질의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6. 입시제도의 개선

소수 엘리트 중심의 경쟁교육 체제를 다수학생 중심의 전인교육체제로 전환한다. 대학에 전일제(全日制)수업을 실시하여 대학의 학생수용 능력을 확대시킴으로써 과열경쟁을 해소하고, 진급과 졸업을 엄격히 하는 졸업자격제를 채택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7. 과학기술교육 강화

급격한 과학발전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진흥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기업체가 산업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21세기의 과학 기술인력 양성체제를 갖춘다.

8. 사학의 지원·육성

재단의 자율성 보장과 아울러 교육주체, 특히 교직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재정난을 해소하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제도를 강화하며 재단의 사유재산화를 방지한다.

9. 교육기회 확대와 평생교육체제 확립

중학의무교육의 전면 실시를 추진하고 기술교육과 특수교육·사회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종교단체, 사회단체, 기업체의 생산기관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민주시민 대학"을 설립함으로써 연령에 구별없이 평생교육·인간화교육을 실시한다.

10. 교육정책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농촌지역에 교육도시를 다수 만들어 농촌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며,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 지방대학과 실업계 고교를 육성하고 교과과정을 정상화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11. 남북한 공동학술연구 및 예술교류 확대 추진

남북문화예술교류를 민간차원에서 중심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남북문화교류를 통한

민족 동질성회복의 일환으로 남북공동국어연구소와 남북문화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12.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통제와 재벌기업의 언론지배를 배제한다. 공보처를 폐지하고 방송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행정위원회로 제도화하여 문민시대를 선도하는 방송문화를 창달한다.

13. 문화예술활동의 자유 보장

보다 많은 지원, 보다 적은 간섭을 통해 문화예술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각종 사전심의제도를 철폐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해금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문화예술 기관의 자율성을 신장한다. 민족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건전한 대중문화를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한다.

14. 지방문화예술의 활성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지방문화예술을 꽃 피운다. 향토문화를 발굴·육성하고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확충한다.

15. 청소년문화의 활성화

청소년의 밝고 진취적인 기상의 신장을 위해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독서실·운동장·음악감상실 등 여가선용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보급한다.

16. 국민체력의 향상도모

체육활동의 정치도구화를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사회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체육증진을 도모한다.

XIII.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과학기술 육성

1. 과학기술입국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절대적인 시대적 요청임을 자각하고, 기초 및 첨단과학, 정보·통신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교육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실질적인 산학협동체제를 확립한다.

2. 국민복지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들의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의 전산·정보화가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한다.

3. 기술적 자립 추구

외국의 앞서가는 첨단과학기술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힘쓰되, 단기적 이익에 급급하여 무분별한 기술 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나라의 잠재적 인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주체적 과학기술 개발에 힘을 쏟음으로써 기술적 자립을 촉구한다.

4. 과학기술교육의 대중화

모든 국민이 전산·정보화 사회의 주체로서 과학기술을 일반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의 대중화를 도모한다.

XIV. 국민의 주거생활 보장

1.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1가구 1주택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및 소형분양주택의 건설 비율을 대폭 높이고, 서민들의 주택구입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를 통해 주택가격안정화를 도모한다.

2.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계속 실시 및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하

92년도로 사업이 중단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연장실시하고 입주자 선정조건을 완화하며 법정영세민에게 부담이 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하한다.

3.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양질의 주택공급

주택의 건축기준 강화와 시공감리 철저, 설계의 다양화를 통한 수요자의 선호도 최대 수렴, 체계적인 건자재 및 인력수급책 등을 수립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에 역점을 둔다.

4. 주택조성자금의 차질없는 조달

국민주택기금의 확대조성과 효율적 운용,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으로 주택조성자금을 차질없이 조달하고 주택청약관련 제예금가입자의 주택구입시 용자액을 확대한다.

5. 택지의 안정적 공급

택지개발시 공영개발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서민용 주택건설용지를 최우선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장기적 택지개발계획을 입안·실시하여 필요한 택지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6. 도시저소득층 주거안정 확립

임대차보호법개정, 관인계약서제도 도입, 전세자금 융자제도 개선, 영구임대 및 소형분양주택공급을 확대하여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확립한다.

XV. 교통난 해소와 대중정보사회 실현

1.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운행개선

대도시 지하철을 조속히 건설하며 위성도시까지 지하철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시내버스의 증차와 전용차선제 확대 및 노선조정 등을 실시하고, 환승체제를 정립하여 지하철 역세권 교통을 활성화한다.

2. 교통난 해소

도시의 도로율을 높이고, 교차로를 입체화하며 도시고속화도로를 확대 건설하며, 교통난 유발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지역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역교통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고속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을 확장한다.

주차장 건설 확대를 위하여 국가재정의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및 민간의 주차장 건설을 활성화한다. 자동차의 소유보다 운행에 비례하는 부담을 확대하여 자동차 통행량을 억제한다.

3. 교통안전 향상과 운수사업 활성화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교통법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교통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운수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안전운행을 정착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자동차·항공기·해운 등 각종 운수사업은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요금도 합리적인 경쟁구도 속에서 결정되도록 한다.

4. 교통 투자재원 확보

지하철 건설 등 교통투자에 의한 개발이익환수 등을 통하여 교통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국·공채 발행을 확대한다. 교통법칙금 등 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교통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관련 세금의 일정액을 교통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5. 정보이용의 활성화 추진

행정·산업·유통분야 등 정보공개제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통신비밀을 보장하여 정보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6.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통신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7. 대중정보사회 실현

우편·전화·정보통신 등 통신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전국단일통화권추진, 요금인하, 지역정보통신센터 설치를 통하여 국민 대중의 정보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대중정보사회를 실현한다.

바. 통일국민당**제1절 강령**

우리 통일국민당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처한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길은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를 실현하여, 우선 국민경제의 활력을 되찾으며 국민도의를 진작함에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새시대 요구에 부응해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민족역량 결집에 앞장선다.

이에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중도개혁 국민정당임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강령을 밝힌다.

1.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아 공정하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국정을 혁신한다.
2. 상호보완적 남북경제교류에 의한 신뢰구축과 민족동질성 회복으로 통일을 주도한다.
3. UN헌장 정신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세계평화에 능동적으로 기여한다.
4.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발전시켜 결실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국민복지의 향상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한다.
5. 법질서를 준수하고 근면과 정직을 존중하는 사회, 민생이 안정된 복지사회를 이룩한다.
6.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으로 시민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며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21세기에 대비한다.

7. 평등한 사회구조의 정착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가발전에 적극 공헌하게 한다.
8. 모든 생명의 근원인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높인다.

제2절 기본정책

정치: 닫힌 정치에서 열린 정치로

1. 정계의 권압주의와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고, 정당의 사당화, 지역당화를 배격한다.
2. 당리당락의 폐단을 청산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깨끗한 정치를 실현한다.
3. 책임정치의 구현과 건설적 정책창출로 생산적인 정치풍토를 조성한다.
4. 사법권의 엄정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의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인사행정의 독립성을 부여한다.
5.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관료주의 폐풍을 일소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적 공직자상을 확립한다.
6.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
7. 엄정한 선거제도와 올바른 주권행사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

통일: 정권유지를 위한 남북관계의 악용 반대

1. 남북교류는 우선 상호보완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교류에 역점을 두어 민족경제역량을 향상시킨다.
2.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되 점진적인 관계개선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주력한다.
3. 7천만 국민의 재결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4. 정권유지를 위한 남북관계의 악용을 단호히 배격한다.

외교·안보: 한민족 경제생활권 확보를 위한 외교 노력

1. 민족자존외교와 전방위외교를 동시에 적극 전개한다.
2. 낭비적인 허세외교를 지양하고 국가이익에 기초한 능동적인 실리외교를 추구한다.
3. 우방과의 우호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다극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경제외교에 주력한다.
4.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른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외교역량을 집중한다.
5. 국민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노력한다.
6.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여 본연의 임무수행에 전념토록 한다.
7.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인 군축을 추진하고 장비의 현대화, 첨단화로 군의 정예화를 이룩한다.
8. 남북관계 개선을 감안, 새로운 군사전략에 입각한 군의 군력구조를 확립한다.

경제 : 정부관여 최소화로 활력있는 국민경제

1. 시장경제원리를 경제운영의 주축으로 민간주도경제를 확대하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2.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만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통화정책을 과감히 개혁하여 실물경제 운용에 알맞은 통화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금리를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한다.
3.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개혁과 국민경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하고, 지하경제를 제도권으로 흡수시킨다.
4. 민주법치국가의 법질서를 정부 스스로 파괴하는 금융기관의 허울뿐인 민영화를 지양하고 금융기관의 인사권, 경영권을 독립시키며, 여신관리제도를 철폐하여 금융본연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촉진시킨다.
5. 금융자율화를 통하여 관치금융으로 인한 자금배분의 왜곡을 시정한다.
6. 물가안정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저소득 층의 고공기회를 증대하여 소득분배의 형평을 이룬다.
7. 조세체계를 개편하여 불로, 음성소득에 대한 세원을 발굴하며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실화하여 저소득 층의 세부담을 경감한다. 조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조세행정을 개혁한다.
8.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되 토지 공개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실질적 토지실명제를 확립하여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의 근원을 제도적으로 봉쇄한다.
9.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무역금융의 공급확대, 금리인하, 환율의 실세화, 관세행정 간소화 등 무역정책의 창의적 개혁과 기술투자확대, 전문인력 양성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을 극대화하고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 국제수지적자를 최단시일내에 흑자로 전환시킨다.
10.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자원을 포함한 다각적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중추가 되도록 집중 육성한다.
11.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민간자본의 적극 참여로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을 최단 시일내에 확충한다.
12.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가가 공동으로 창출한 소득에 대하여 공정한 성과배분의 노사협력체 문화를 이룩한다.
13. 근로자 및 영세민에게 저렴한 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유지를 이용한 택지공급확보와 재개발 사업 지원을 강력히 추진한다.
14.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의 체질개선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한다.
15. 생존권의 보장없는 쌀 시장의 개방을 적극 저지하며 폐허화된 농촌에 저리지금 지원, 경영규모 확대, 기계화, 영농기술 개발 및 농외소득 증가를 통하여 농촌의 소득을 배가한다.
16. 영세어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어항시설을 근대화하고, 장기 저리지금을 이용한 노후어선, 어구의 대체 등 어업발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17.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농민의 재산권 행사제한을 재검토하여 농민의 차별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18. 전시효과용 정부사업을 지양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한다. 국·공영기업의 경영합리화와 단계적 민영화를 실현한다.
19.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며, 합리적인 절약방안을 강구한다.
20. 획기적인 창의력으로 재원을 창출하여 대도시 교통난을 해결하고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육·해·공수송망을 개발한다.

사회·문화·복지 : 서로 돕는 인간 존중 사회

1. 범죄없는 사회건설을 위해 도덕성 회복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과학적 범죄예방과 대응책을 강구하고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안정을 도모한다.
2. 국민도의 양양에 종교활동의 역할을 기대하며 효친공로사상에 기초한 전통적 미풍양속을 진작한다.
3. 전통문화의 계승과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으로 슬기로운 민족문화를 창달한다.
4. 창의성을 가지고 교통난을 조속히 해결한다.
5. 주택공급물량과 구입자금 지원확대로 모든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토록 하고 주택가격의 안정으로 국민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6. 현재의 의료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료 혜택을 증진한다.
7. 결식아동과 극빈자를 위한 급식보조에 정부보유양곡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식량정책을 쇄신하여 결식층을 없앤다.
8.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일하고 싶은 모든 정년퇴직자들에게 직업을 마련해 주며 노인복지정책을 확대한다.
9. 장애자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고 재정지원을 늘려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교육·과학 : 정직하고 진취적인 인간 형성

1. 입시위주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2. 대학입시는 대학에 일임한다.
3.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국민교육의 질을 높인다.
4. 지역사회에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을 확충하여 밝은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진취적 기상과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토록 한다.
5.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기초과학교육에 주력하며 첨단기술개발과 고급 두뇌양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여성 : 국가발전에 여성의 참여를

1.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참여기회를 적극 확대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을 강화하고 택야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경제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3. 재산의 상속과 부부의 소유권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조세제도를 개선한다.
4.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여성도 균등한 교육기회와 문화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한다.

환경 : 쾌적한 환경으로 행복한 삶을

1.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총량규제를 실시하며 환경교육을 강화한다.
2.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오염자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3. 공해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구체화하며 특수병원과 요양시설을 확충한다.
4. 중소기업이 집중된 공단에 공해방지 시설을 정부재원으로 설치하여 공해없는 지역사회조성에 진력한다.
5. 그린벨트 관리법을 제정하여 자연환경보존과 토지이용의 조화를 이룬다.

사. 신정치개혁당**제1절 강령**

우리 「신정치개혁당」은 국민적 합의와 단결된 힘으로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개혁을 이룸으로써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정책실현에 창당정신이 있음을 천명한다.

따라서 우리 당은 민족의 화합과 번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반민주적 행위도 단호히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양심적 민주세력과 연합하여 민족통일의 성취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목표”와 이에 따른 “기본정책”을 밝힌다.

우리 「신정치개혁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초로 한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음의 사회목표를 추진한다.

1. 화합과 단결의 사회를 이룩한다.
2. 정직한 사회를 이룩한다.
3. 평등한 사회를 이룩한다.
4. 자유로운 사회를 이룩한다.
5. 복지사회를 이룩한다.
6. 안전한 사회를 이룩한다.
7. 발전적인 사회를 이룩한다.
8. 선진사회를 이룩한다.
9. 능률적인 사회를 이룩한다.

제2절 기본정책

[통일]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 회복에 필요한 남북간의 전분야에 걸친 교류를 확대하여 2000년까지는 우리 민족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완수한다.

철저한 국회심의회와 공식기관의 활용

- (1) 민족의 화합을 위한 통일문제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정부부처의 주도하에 공개적으로 행한다.
권력남용이 아닌 민족번영의 목적
- (2) 남북관계는 정권유지나 재벌의 이익추구 등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막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번영에 목적을 둔다.

남북간 공동연구 확대

- (3) 남북 공동으로 민족의 역사, 언어, 문화 등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교류의 장을 확대한다.

국제경제에 대처

- (4) 통일을 이룰 때까지 남북간 경제교류를 확대하여 상호보완적 경제발전을 이루며 국제경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

민족수난의 진실규명에 공동대처

- (5) 징병, 징용, 징심대 등 일제치하시 민족수난과 관련된 사건의 진실규명 및 피해보상에 남북 공동으로 대처한다.

[정치]

삼권분립이 보장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구현하고 정책 대결을 통한 정당정치, 정치개혁을 통한 도덕정치를 이룩한다.

대통령 중심제하의 직업공무원제 정착

- (1)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전반적인 사회개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공무원 제도를 정착시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한다.

의회민주주의 정착과 정책정당 정치 지향

- (2) 당리당락을 위한 정당정치를 배격하고 국민의 뜻이 의회민주주의를 통하여 반영되도록 정책대결의 정당정치를 지향한다.

정당과 민간단체간의 공동연구 지원

- (3) 정책정당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당과 함께 정책 대안을 창출·연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연구기관을 지원한다.

정치자금의 공개와 올바른 정치문화 정립

- (4) 정치자금 조성을 양성화하고 사용을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깨끗한 정치문화를 이룩한다.

법관의 양심보호와 사법부 독립성 보장

- (5) 법관이 양심에 따라 외부의 압력없이 재판하고 인사행정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이룩한다.

자치단체장 선거 조기 실시

- (6)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

중앙과 지방과의 조정협의체 실시

- (7)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마찰과 이견을 조절하기 위한 조정협의체를 둔다.

타락선거 추방과 선거정의 실현

- (8) 올바른 주권행사와 선거법준수로 금권, 관권으로 인해 타락한 선거풍토를 바로 잡는다.

[외교·국방]

민족의 이익에 기초한 자주·실리외교를 추진하며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

불평등 외교관계 청산

(1) 민족의 집결된 힘을 모아 모든 불평등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호혜평등 외교관계로 전환한다.

민족이익에 기초한 실리외교 추구

(2)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신속히 대처하며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기초한 실리외교를 추구한다.

통일여건 성숙을 위한 전방위외교 추진

(3) 이념과 체제를 벗어나 모든 나라와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여 통일여건을 만들어 간다.

군비축소와 군의 현대화

(4) 남북관계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인 군축을 추진하며 기계화, 현대화, 정예화를 통한 군의 군사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한다.

군복무 단축·예비군제 철폐·직업군인제 도입

(5) 직업군인제를 도입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이루며 군복무를 단축시키고 예비군제를 철폐함으로써 국가의 생산력을 증대시킨다.

민족방어계획수립

(6) 군의 방어개념을 민족방어로 확대하며 유사시에 대비한 민족방어계획을 수립한다.

해외파병은 국민적 합의에 근거

(7) 군의 해외파병은 세계평화 및 질서유지에 한하며 이때에도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경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며 그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경제사회를 이룩한다.

정부의 경제개입 규제와 시장경제원리 정착

(1)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공익과 조화되는 민간주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한다.

빈부격차 해소와 경제정의 확립

- (2) 정경유착, 부동산투기 등으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의 결과가 고르게 분배되는 정의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한다.

고부가 수출산업 육성과 불필요한 수입 억제

- (3)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편, 실질가득률이 높은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여 수출을 극대화하고 통상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검·절약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킨다.

직접세 중심으로 조세제도 개편

- (4) 직접세 중심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직접세의 누진율을 확대실시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이룩한다.

종합물가 안정대책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 (5) 부동산투기근절, 독과점의 규제, 유통구조의 합리화, 공공요금의 안정 등 종합적인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금융자율화 및 금융기관 민영화 즉각 실시

- (6) 금융의 왜곡된 운영을 방지하고 금융정책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자율화 및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즉각 실시한다.

금융실명제 조기실시로 지하경제 일소

- (7) 금융실명제 및 토지·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즉각 실시하여 지하경제의 온상인 탈세, 투기 등으로 발생한 불로소득, 음성소득을 사회로 환원토록 한다.

토지공개념 확대실시 및 토지거래 실명제

- (8) 불로소득, 빈부격차심화의 원인이 되는 토지에 대한 투기 및 반사회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의 확대실시와 토지거래실명제를 추진한다.

민간자본의 사회간접시설 투자 유도

- (9) 공공투자는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국민의 복지향상 및 환경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며 이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산업구조개편과 향락, 과소비 억제

- (10)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개편하며 향락과 과소비를 유발하는 서비스 부문을 철저히 규제한다.
- (11) 일용근로자, 영세민, 저소득층의 소득 및 고용의 기회를 증대하여 안정된 생활대책을 마련한다.
- (12) 1가구 1주택 원칙하에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소형국민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영세민에게는 영구임대주택 및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을 확대한다.

교통난을 국가생산력 저하의 중요문제로 인식

- (13)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공대중교통수단을 계속적으로 확충하며 인력 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종합수송계획을 정비한다.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계획을 수립

- (14)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이루며 통일에 대비한 국토의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소비자와 농어촌 소득보호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

- (15)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한다.

에너지 장기수급계획 수립 및 대체에너지 개발계획

- (16) 에너지의 절약을 생활화하고 장기적인 수급계획, 효율적인 사용방안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한다.

핵발전시설 확충제한

- (17) 핵발전시설의 확충은 안전에 바탕을 두며 안전하고 효율성있는 대체에너지가 개발될 때까지만 허용한다.

[농업]

농업의 부흥없이 경제안정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오늘 한국농업은 이미 산업이 아니라 생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농어업의 중흥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도모한다.

농수산물 수입 억제

- (1) 농산물의 수입은 가능한 한 억제하며 쌀시장 개방은 적극 저지한다.
- (2) 피해를 농촌경제가 소생할 수 있도록 영농저리자금의 지원확대, 과학적 영농기술개발, 영농기계화 및 규모확대 등을 통하여 농민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킨다.

전국 군단위 영농전문대학 설치 및 농어촌 종합개발세 신설

- (3) 전국 군단위 농공전문대학을 설치하여 농업혁신의 인력과 기술기반을 확충한다. 사우나, 골프 등 도시 성 소비업종에 목적세로서 '농어촌 종합개발세'를 부과하여 이의 재원을 확보한다.

영농전문인력에 병역특혜 및 영농자금 지원

- (4) 농업계 고등학교, 농공전문대학 졸업자가 그 지역에서 5년간 농업에 종사할 경우 산업체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병역특혜 및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농수산물 수입감시제도 도입 및 농수축협을 주요 수입 창구로 함

- (5) 농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입감시제도를 도입하여 농수산물 수급조절 및 농수축협을 농수산물 수입 주요 창구로 활용한다.

[사회·문화]

도덕성과 질서의 회복 및 법질서의 준수를 통하여 민생불안과 사회혼란을 방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한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민생치안 확보

- (1) 국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를 뿌리뽑아 민생치안이 확보된 안전한 사회를 이룩한다.

노사분쟁의 합의를정신 존중 및 노동자 권익보호

- (2)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노사간의 분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며 사용자의 부당행위, 과격한 노동쟁의 등은 지양한다.

현실적인 장애인 고용법 정착

- (3) 장애인 고용법의 현실적인 운용으로 우선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자를 위한 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공공건물에 장애인 전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4) 미풍양속인 경로사당을 고취하고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며 노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윤택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식품·의약품 등 검사강화

- (5)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부정식품, 부정의약품을 근절하고 식품 및 의약품의 검사를 강화한다.

문화의 주체성 확립 및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

- (6)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여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한다.

반민주적 문화예술관계법 폐기 및 창작활동지원의 현실화

- (7) 창작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화예술관계법을 폐기하고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8) 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용을 장려하여 국민 문화생활의 질을 높인다.

청소년 문화개발

- (9) 내일의 주역인 청소년의 시민의식 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의 마련, 확충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국민의 건전한 종교활동 보호

- (10) 종교활동을 방해하여 국민을 현혹시키는 사이버 종교단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교육]

이기주의, 출세주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건전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전인교육을 실시한다.

대학교육의 자율화

- (1) 대학입시 및 교육은 대학자율에 맡긴다.

중학교 의무교육 조기실시

- (2)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조기 실시하고 취학연령을 낮추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한다.

교육위원회의 주민직선 선출

- (3) 교육자치제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조기 확대실시하고 교육위원회의 위원 선출은 주민직선으로 한다.

교육자의 자질향상과 생활보장

- (4) 교육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지하교육비 과다지출 금지

- (5) 과외수업으로 인한 과대한 교육비 지출과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제도를 개선한다.

21세기를 위한 과학기술교육 투자확대

- (6)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고 고급인력, 고급두뇌 양성 및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21세기에 대비한다.

[여성]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남녀평등의 사회구조를 정착한다.

여성인력개발과 참여기회 보장

- (1) 여성의 사회 진분야에 걸친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여성인력을 개발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여성임금차별 철폐와 고용기회 확대

- (2) 여성에 대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없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한다.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보장

- (3) 여성의 지위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에게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환경]

자연을 보호하고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삶의 터전을 보장하며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준다.

범국민 환경보호운동 생활화

- (1) 환경보호와 국토보전을 위하여 학교·사회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범국민적 환경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환경보호를 생활화한다.

환경형법 조기실시

- (2) 자연훼손과 환경오염행위를 주요한 사회범죄로 규정하고 환경문제 관련법을 강화하며 이를 엄격히 적용한다.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

- (3) 산업 또는 기업이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하여 총량규제를 실시하며 환경을 오염·훼손시킨 자에게 정화·원상복구 및 기타 피해보상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케 한다.

공해방지시설 부담을 위한 환경기금 설치

- (4) 효율적인 공해방지시설 및 무공해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환경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제1절 강령

우리당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치체계와 생활질서를 건설하고 개인양심의 계발과 민족정기의 진작에 의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며 민족의 지혜를 결집시켜 이땅의 민주화를 성취하는 「화합정치」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6대 정치신조를 강령으로 삼는다.

1. 우리는 화합과 관용을 통한 「중도적 화합정치」를 실현한다.
2. 우리는 인간상호의 신뢰를 통한 「협동적 복지경제」를 구현한다.
3. 우리는 의식개혁을 통한 「연대적 책임사회」를 구현한다.
4. 우리는 전통과 창조의 조화를 통한 「생성적 민족문화」를 창달한다.
5. 우리는 대화와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적 남북통일」을 성취한다.
6. 우리는 선린과 호혜를 통한 「공영적 인류사회」를 건설한다.

제2절 기본정책

역사는 엄숙하다. 종건 나쁘건 오늘의 현실은 지금까지의 긴 과거속에서 마련되어 왔다.

어제에 이어진 오늘의 실천적 태도가 내일의 역사를 엮어나간다. 비람직한 새 역사에의 접근은 그렇기 때문에 투철한 역사 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인간집단의 윤리적 힘에 의해 가능하다. 따라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오늘의 국제질서 속에서 이겨 남아 영광과 번영의 민주복지국가를 창조할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을 찾고 그것을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고 보다 확실하게 다져나갈 것에 뜻을 모은 우리는 오늘의 역사가 요청하는 정치적 의지로 발전시켜 우리 민족의 번영과 국가의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국민적 화합체로서 「신민주당」을 결성하고 다음과 같은 6대 기본정책을 발표한다.

1. 정치의 민주화 – 국민전체의 참여에 의한 화합적 민주주의
2. 경제의 민주화 – 분배적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복지적 경제주의
3. 사회의 청정화 – 생활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주의
4. 문화예술의 주체화 – 자율적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한 창조적 문화주의
5. 교육의 계획화 – 민주시민의 함양을 위한 도덕적 교육주의
6. 안보의 자강화 – 자주적 국가안보를 위한 자강적 국방주의

제1절 강령

- 도덕정치로 민족정기를 승화시킨다.
- 민족도의로 통일독립 한다.
- 도덕문명으로 세계평화 한다.

[정치]

정치에 도덕이 아니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인의예지의 도덕을 회복하고 효제 충신의 미풍양속을 진작하며 양심의 정직과 청신한 선비정신으로 정치기강을 확립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며 위민정치를 시행할 것이다.

[경제]

경제는 불균형 불안정한 경제를 청산하고 과욕, 사치, 낭비의 비생산적 투자를 억제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며 음성적 지하경제를 척결하고 고급두뇌의 연구인력양성과 무공해 선진고급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경제질서를 선도하며 공평배분의 윤리를 확립하여 복지국가의 경제정리를 실현한다.

[사회]

사회에 극도로 팽창된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는 비정이나 폐기하고 예의염치(禮儀廉恥)의 실행으로 양심을 회복하며 인간상호존중의 기풍을 조성하고 민족전체가 신뢰화합하고 안정하며 범죄없는 사회를 이룩한다.

[문화]

문화는 무분별한 외래문화로 가치관을 잃고 시비를 분간치 못하여 문화적 병리현상이 팽배하고 민족자주정신마저 상실할 위험에 직면해 있으니 도의적 문화예술을 개발하여 국민정서를 순화하고 국가기풍을 정립한다.

[교육]

교육에 우리 학문은 아직도 일제하의 식민지 교육영향과 서구에 대한 추종모방학문으로 오늘의 교육은 기술적 지식습득에만 치중하여 경쟁심과 이기주의의 오만성이 조장된 민족상호간에 반목불신하니 이제 우리는 국학을 정립하여 효제충신을 기본한 도덕교육으로 인간성을 함양하고 과학물질문명과 정신도덕 문명을 합리화하는 국가만년대계를 공고이 할 전인교육을 실시 · 확립한다.

[환경]

환경에 편리주의의 무분별 무차별한 개발로 자연을 파괴하는 치명적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고로 환경을 위하여 사전영향평가의 기술적 노력과 욕구를 절제조화하는 자정의 도를 회복하여 산업, 교통, 통신 전반을 무공해 상생보완체제로 개선한다.

[군사]

군사에는 민유방본이니 본고라야 방영하니 전군에 도덕 및 안보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적 전천후 기간동량으로 육성하여 충실한 정신무장과 확고한 민족으로 제포보민하며 이안전하 할 민주주의 수호의 충효 간성으로 전문화한다.

[외교]

외교는 앞으로 세계정세는 과거와 같은 극단적 이념주의가 아닌 국가간 각분야에 도덕적 상생보완과 평화적 공존공영하는 도덕에 부응할 외교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제2절 기본정책

[정치]

도덕정치가 아닌 한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와 자유가 보장 받을 수 없기에,

- 도덕정신을 회복하고,
- 효제충신의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 양심과 참신한 선비정신으로 정치기강을 바로 잡으며,
- 도덕적 정치문화를 이루어 간다.
- 앞서가는 정치문화를 창달한다.
- 농촌 토지 자연녹지, 절대농지, 상대농지 해제

[경제]

경제강국의 길은

- 각종 생산자원을 산업경제지원화 하며,
- 경제전쟁을 예방하며,
- 국가간 경제안정 성장에 상부상조하며,
-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며,
- 자유경제로 성장발전을 원칙으로 한다.

- 중산층이상 자립경제화
- 기술경제와 산업개발 경제화
- 토지공개념 확대실시
- 비경제 소비경제 억제

[통일]

- 통일은 민주적 화합으로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하며,
- 남북한 육해공군을 평화군으로 창설하고,
- 남북한 군비를 축소하고,
- 세계 평화통일시대를 열어간다.
- 남북통일전 경제, 문화 등의 협력시대를 편다.

[사회]

- 도덕사회질서를 이루며,
- 국민경제가 안정성장을 보장토록 하며,
- 도덕정신으로 재무장하고,
- 사회정화 이전에 참 교육이고, 도덕적으로 순화하며,
- 도덕적 인본주의사회를 이룩한다.
- 범죄없는 사회를 이루어내고,
-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 약품 등 전문화 연구
- 노사분규 예방

[교육]

- 교육은 민족자존 차원에서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 교육정책을 원칙적으로 개혁을 하며,
- 전인교육으로서 인재양성을 원칙으로 하며,
- 교육창구를 개방하고 입시제도를 과감히 청산하고,
- 초·중·고·대학에 장학제도 대폭 확대한다.
- 전국적으로 유아원, 탁아소 복지화하며,
- 교육정책은 민족정통성 차원에 근본으로 한다.

[자원]

- 자원은 자연자원과 기술 및 생산품을 자원 지원하며,

- 해양개발자원화
- 식량자원화
- 우주개발자원화

[환경]

- 쾌적하고 공해없는 사회건설
- 공해예방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

-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보호하고,
- 법 이전에 도덕문화로 발전시키며,
- 세계 각나라 각문화 연구 · 교육

[농업]

- 농업경제 활성화(생산보장)
- 농수산물 수입억제
- 농촌기계화개발 확충
- 복지농촌 달성
- 농업경영단 경영으로 산업농업화
- 식량자원화

[교통]

- 교통체증 없애고 대중교통개발
- 항공개발 자원화

제1절 강령

전문

우리 대한정의당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통하여 조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합리적 국민정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복지사회의 이념을 구현하며 지속적인 개혁과 발전을 도모하여 모든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고 민주복지사회의 구현과 민족통일을 성취할 주체가 될 것임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밝힌다.

1. 정치

우리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으로 신장되는 법치주의와 도덕정치를 구현한다.

2. 경제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보장하며, 재벌에 의한 독점금지, 부의 공정한 분배, 중소기업의 육성, 국민의 생존권 보장,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실현하여 정의롭고 풍요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한다.

3. 통일

우리는 민족대화합과 민족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평화적 통일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4. 안보 · 외교

우리는 국제정계에 입각하여 세계평화와 공존 · 공영을 지향하면서 민족의 자강에 바탕을 둔 자주적 외교를 수행한다.

5. 사회

우리는 도덕정치를 구현하여 지역간 · 계층간 · 남녀간 · 도농간의 불균형과 차별을 해소하며 진정한 국민대화합의 바탕 위에서 윤리정치를 구현한다.

6. 인권

우리는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탈법과 위법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단호히 배척한다.

7. 교육·문화

우리는 교육의 자율성과 창작표현의 자유, 기회균등을 최대한 보장하여 국민의 개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창조적인 민족문화를 꽃피운다.

8. 복지·환경

우리는 과감한 기술투자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이룩한다.

9. 과학기술

우리는 과감한 기술투자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이룩한다.

제2절 기본정책

1. 도덕정치 구현

법치주의의 실현을 통하여 도덕과 정의가 지배하는 정치를 한다.

2. 민주정치 실현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정치를 한다.

3. 법률의 제정

법률은 국민의 총체적인 합의에 의해서만 개폐한다.

4. 지역감정 해소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경상도, 전라도의 지명을 바꾸고 행정구역을 새로이 편성하며 국민대화합의 기틀을 마련한다.

5. 부정부패

부정부패는 원칙적으로 척결하고 수사에는 성역이 없이 대통령의 비리도 수사하며 국회의원, 행정부의 고관, 사법부 법관의 비리를 수사하는 상설특별기구(옴부스맨 제도)를 둔다.

6. 재산공개화

국가고위 공직자의 재산은 등록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한다.

7. 선거공영제 확립

선거비용의 완전 공영제로 돈 안드는 선거를 치루고 결과적으로 돈 안쓰는 정치를 실현한다.

8. 중소기업중심

재벌위주의 특혜경제를 탈피하여 중산층,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며 경제정의를 실현하여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든다.

9. 평등대우

권력과 돈을 소유한 자만이 누리는 특권을 없애고 국민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10.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확립과 금융실명제를 즉각 실시한다.

11. 부의 분산

재벌에게 편중된 부를 국민에게 분산시키고 재벌의 횡포와 독점을 금지한다.

12. 기술개발

중소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선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13. 노사문제

공권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가 도덕심으로 화합하여 근로자에게 물질과 정신적인 면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여 노사문제의 공정,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동재판소를 둔다.

14. 위험수당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는 군인과 경찰들에게 그 사기양양을 위하여 보수를 대폭 올리고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15. 물가정책

부동산 투기 등의 지하경제를 없애고 긴축재정을 펴며, 지도층이 솔선하여 사치를 금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상을 없애고 직거래식 유통구조를 확립한다.

16. 대사면

통일을 앞두고 국민대화합이라는 견지에서 정의감으로 인하여 범법을 한 학생과 정치범(홍익범을 제외)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한다.

17. 전과기록말소

일시적 과오로 전과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새사람으로서의 재기를 위하여 전과기록을 말소한다.

18. 대학입시제도

현행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중·고교 내신성적으로만 대학에 입학하게 하여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없애며, 대학졸업은 엄격한 시험을 거치도록 한다. 또한 정부투자료 기숙사시설을 확대하여 지방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실시킨다.

19. 환경

공기와 수질의 오염을 시급히 제거하며 특히 공장폐수의 오염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공장폐기물은 우선 국가비용으로 대신 집행하며 그 비용은 공장주에게 부담시킨다.

20. 교통

교통지옥을 없애기 위하여 지하철을 증설하고 국토의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21. 군축과 병역의무

세계적인 냉전종식 조류와 남북한의 평화통일 염원을 고려하여 남북한 협의에 의한 군축을 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고, 군복무기간을 단축한다.

22. 안기부 등의 수사권의 폐지

안기부와 기무사는 그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며 민간인 수사권을 배제시킨다.

23. 인구의 지방분산

중앙행정부처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인구의 편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다.

24. 재산의 사회 환원

재벌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상속재산은 거의 사회에 환원토록 하며 개인상속은 극소화 한다.

25. 사회보호 공단

노인, 정년퇴직자, 고아 등을 수용하여 계속해서 직업인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전국에 공단을 설치하여 직업을 가지고 삶을 보장받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한다.

26. 문화예술의 전당건립

전통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힘쓰고 국제적 규모의 문화예술의 전당을 건립한다.

27. 법관의 임기

사법부의 독립차원에서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법관의 임기제도를 폐지하고 선진외국과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종신제로 하고 판사의 지위를 높인다.

28. 근로소득세의 감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감면대상을 늘린다.

29. 세제개혁

일정액의 고액소득자에게는 누진과세의 적용을 확대한다.

30. 농촌경제보호

농민의 수세를 폐지하고 농사기술의 지원확대와 유휴지 보상제도, 이중국가제도를 엄격히 실시하여 수입개방으로부터 농민과 농촌경제를 국가차원에서 보호한다.

31. 국가안보

국가안보를 구실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며 안보와 국민의 자유는 형평을 갖도록 한다.

32. 자주외교

국제정의를 입각하여 세계평화를 존중하고 국가간 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며 금지를 가지고 자주적 외교를 수행한다.

33. 주택정책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하여 소형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실비로 제공한다.

34. 관광개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대국을 만든다.

35. 여성의 사회진출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많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여 우리국력을 배로 증가시킨다. 정부, 국영기업체와 국회에 일정한 비율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제도화하며 여성이 대통령, 수상, 장관, 대법관 등과 같은 직위에 진출하도록 한다.

36. 경찰, 감사원, 한국은행의 중립화

경찰관, 감사원의 중립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여 성역없는 수사를 보장하고, 한국은행을 중립화하여 자율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게 한다.

37. 통일

민족대화합의 원칙하에 민족공동체 의식을 양양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정책을 세운다.

카. 새한국당

제1절 강령

전문

우리 새한국당은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새정치와 국정개혁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혼돈과 정체를 극복하고 민족번영을 이룩함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하며 땀흘려 일한 자가 대가를 받는 자유롭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하나되어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 힘있고 더불어 잘 사는 통일조국을 건설함을 목표로 삼는다.

1. 우리는 통합과 개혁의 새정치를 이룩한다.
2. 우리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를 달성한다.
3. 우리는 진취적인 새한국인을 창조하는 교육 및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4. 우리는 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
5. 우리는 인간다운 삶, 서로 믿는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6. 우리는 통일조국과 더불어 잘사는 민족공동체를 이룩한다.
7. 우리는 민족자강과 인류공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을 펼친다.

제2절 기본정책

〈통합과 개혁의 새정치〉

1. 국민통합의 정치

-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로의 개혁을 추진한다.
- 국민의 의사를 고르고 충실하게 대변하는 국회의 구성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 국민발안, 국민표결 등 국민의 직접적 정치참여의 길을 연다.
- 균형있는 지역개발, 공정한 인사정책을 통하여 망국적 지역감정을 해소한다.

2. 깨끗한 정치

- 부정과 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정치풍토를 확립한다.
-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돈을 쓰지 않는 선거관행을 정착시킨다.
- 행정부와 군, 경찰과 정보기관의 엄정중립을 확립하여 공명선거를 실천한다.

3. 미래를 지향하는 건설의 정치

- 파벌정치를 완전 제거하고,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정당질서를 확립한다.
- 토론과 표결이 존중되는 풍토를 진작하여 당내 민주화를 이룩한다.
- 정계에 진입하려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젊은 인재들을 적극 발굴·지원한다.
- 자율화·개방화시대에 맞추어 행정개혁을 단행한다.

4. 지방중심시대의 개막

-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완전 실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한다.
-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완전 실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조세제도 및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한다.
- 중앙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개혁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되는 지구당의 구성과 활동을 보장한다.

5. 인권선진국의 건설

- 비민주적 법령을 개폐하여 권위주의의 유산을 청산한다.
- 고문, 장기구금, 가혹행위의 수사관행을 철저히 근절한다.
- 정보사찰 및 언론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한다.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

1.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운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킨다.
-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출을 합리화한다.
- 노사합의를 존중하여 산업평화를 정착시킨다.
- 사치성 소비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퇴폐향락풍조를 근절한다.

2. 산업구조의 재조정과 성장잠재력의 강화

- 과학기술을 진흥하고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 첨단기술산업으로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를 조성한다.
- 인력의 생산적인 분야로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양상기능을 조성한다.
-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재정 이외의 다양한 자원 조달방안을 마련한다.

3. 경제정의의 구현

- 금융실명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하경제를 척결한다.
- 토지공개념을 철저히 실시하여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4. 금융자율화의 실현

- 중앙은행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여 금융국제화에 대비한다.
- 금융자본의 집중을 방지하여 금융독점의 폐해를 원칙적으로 봉쇄한다.

5. 조세제도 및 재정운용방식의 개선

- 재산관련 과세를 강화하고 근로소득관련 과세를 경감하여 조세의 형평을 이룩한다.
-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축소하여 깨끗한 세정을 펼친다.
-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율을 낮춰 법대로 세금을 내도 잘 살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
- 각종 연금·기금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한다.

6. 경제력 집중의 억제

- 상속·증여세제의 철저한 운용을 통하여 소유집중을 완화한다.
-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규제제도를 엄격히 운용한다.
-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뽑는다.
-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유도한다.

7. 중소기업의 활성화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인력·기술자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중소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모든 민원사항을 간소화한다.
- 중소기업의 외국기술도입, 해외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한다.

8. 미래지향의 국토공간 창조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분권화를 이룬다.
- 소외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활편의시설을 균형배치한다.
- 공업입지를 지역간에 균형있게 분포시켜 지방의 인구정착기반을 조성한다.
-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로 국토공간을 확대해 간다.

9.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

- 고부가가치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시설농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 주요 지방도시에 농업경영·기술전문대학을 설립하고 전문농업인력을 양성한다.
- 농어민이 농수산물의 가공·유통·저장산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 농어민과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건전화한다.

10. 안락한 주거환경의 조성

-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한다.
-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한다.
- 불량주택의 재개발사업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11. 경제의 국제화 추진

- 국가간 경제제도상의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경제외교를 강화한다.
- GATT의 무차별주의를 적극 존중하여 점증하는 지역주의에 대처한다.

(새한국을 창조하는 교육·문화정책)**1. 민주시민을 위한 전인교육**

-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낙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한다.
- 입시위주교육에서 도덕성 회복과 건전한 국민성 함양의 교육으로 개혁한다.
- 모든 아동에게 질 높은 취학 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 사회교육을 확충하여 평생을 배움의 과정으로 삼도록 한다.

2. 21세기 첨단산업사회를 준비하는 교육

- 중·고등학교의 기술교육을 확대하여 기술인력의 저변을 넓힌다.
- 전문대, 대학교, 연구소를 종합체계화하여 고급기술인력 배출경로를 다양화한다.
- 산업체의 교육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산학연대를 강화한다.
- 실질적 능력과 적성에 따른 인력채용을 유도하여 학벌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한다.
- 사회적, 국제적 수요에 부응하는 특수대학을 신설·운영한다.

3. 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교육자치제의 완성

- 대학정원을 대폭 늘린다.
- 대학의 학사관리를 자율화하여 대학교육을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한다.
- 지방행정과 교육자치가 조화되도록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 사학에 대한 법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를 개편하고 점진적으로 납입금을 자율화한다.
- 교육세의 수입원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한다.
- 일부 교육계의 누적된 비리를 척결한다.

4.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의 조성

- 교원에 대한 처우 및 후생복지제도를 대폭 확충한다.
- 교권을 확립하여 교사가 소신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한다.
- 교원인사관리의 민주성 확보에 만전을 가한다.

5.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문화정책

-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을 개혁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한다.
- 남북간 민간차원의 문화협력과 교류를 정부가 앞장서 지원한다.
- 남북간 다양한 방송매체,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한다.

6. 자율적인 문화활동의 창달

-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통제하는 제도를 개혁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연극·영화의 공연공간을 확충하고 국산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원로 문화예술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 언론방송의 제작편성을 완전히 민간자율에 맡긴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1. 맑고 신선한 환경**

- 부가가치가 높은 저공해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한다.
-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단계에 걸쳐 에너지절약·자원절약을 유도·지원한다.
- 폐기물의 재활용을 적극 추진한다.
- 환경공학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 국민의 참여하에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정보와 자료를 공개한다.
- 선진국의 무역규제에 대비하여 환경 규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

-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
- 도시의 구조를 보행자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한다.
- 택시요금체계를 현실화한다.
- 육상운송체계를 철도중심으로 대폭 보완한다.

〈인간다운 삶, 서로 믿는 삶〉**1. 인간다운 삶을 약속하는 사회보장**

- 계층간·지역간 불평등이 없도록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수준을 결정한다.
- 산업재해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보상수준을 인상한다.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 노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모든 노인에게 건강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2. 모두가 건강한 사회

- 의료보험료와 보험급여에 있어 지역간·소득별 격차를 제거한다.
- 의료비의 본인부담율을 줄이고 본인부담의 형평을 제고한다.
-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여 의료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의료보험조합의 의사결정에 의료수혜자들의 참여를 증대한다.
- 조합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도농간·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한다.

- 보건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유기적 연계체제를 확립한다.
- 산업화와 노령화에 따른 신중 질병의 치료에도 의료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3. 범죄로부터의 해방

- 성폭력, 조직폭력, 인신매매, 마약, 유괴를 철저히 근절한다.
- 민주화와 사회정의의 확립으로 민생치안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경찰업무의 과학화·합리화를 통해 범죄예방과 대처능력을 제고한다.
- 경찰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한다.
- 고도행정 및 교정시설의 개선으로 갇혀생활의 범국민적인 전개로 범죄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실현한다.
- 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치료를 위한 기관을 설립한다.
- 전과말소범위를 대폭 넓혀 전과사실로 인해 영원한 낙오자가 되는 불행을 줄인다.

4. 산업평화의 달성

- 노사간의 문제는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 해결하는 원칙을 확립한다.
- 참여형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일터의 민주화를 이룩한다.
-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
-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한다.
-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되 조합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5. 여성권익의 실질적 보장

-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공직의 인선 및 취임에 있어서 여성을 특별히 배려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남녀고용의 평등을 실현한다.
-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다.
- 주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 양성 평등화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및 직장에서의 성차별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 모성보호,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6. 건강한 청소년의 육성

-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수련터전을 확충하고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수련전문지도자의 양

성등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한다.

-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비행청소년의 교정과 사후교육을 강화한다.
- 불우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한다.
- 남북한 청소년간의 동질성회복을 위한 청소년 교류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 국제 청소년기구 및 단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국제적 교류기회를 확장해 나간다.

〈통일조국, 함께 잘 사는 민족공동체〉

1. 자주 · 평화 · 민주를 토대로 한 통일

- 민족이 주인되는 통일,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한다.
-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민주적인 통일헌정질서를 마련한다.

2. 화해와 통합을 향한 대북한 화해정책의 조용한 추진

-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으로 남북한 화해를 촉진한다.
- 남북한 군사문제에 관한 협의를 진전시켜 상호 안보상의 위협을 제거한다.
-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신뢰를 다지고 남북연합시대를 준비한다.

3. 위로부터의 통일노력과 아래로부터의 통일노력의 접목으로 통일역량의 배가

- 북한당국과의 대화와 함께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증진한다.
- 체육, 경제, 교통, 문화, 언론, 청소년 등 여러방면에서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지원한다.

4.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의 조성 과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 통일정책에 관한 주변 4강의 이해와 협조를 조성해 나간다.
- 주변국의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한다.
- 한미간 안보유대의 강화와 병행하여 동북아 지역에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5.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국제적 지위를 강구해 나간다.
-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이 협력하여 민족의 공동이익을 도모해 나간다.
-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제공한다.

6. 통일시대에 대비한 법제 및 내부체제 정비

- 통일시대에 맞도록 남북의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 남북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헌법을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 남북체제의 차이로 인해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한다.
- 남북한의 급격한 동질화에 따르는 통일비용을 최소화해 나간다.
- 국수주의를 배격하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한다.

〈민족자강과 인류공영을 위한 외교·국방〉

1. 화해와 협력의 새 세계질서 형성에 기여

- 탈냉전의 신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아시아 평화를 선도하여 국위를 신장한다.
- 유엔외교를 강화하고, 군축·인권·환경·마약·테러 등 세계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 전통 우방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구사회주의 및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한다.

2. 국력 신장과 사회의 성숙에 부응하는 외교력 강화

- 경제협력기수(OECD)에 가입하고 유엔 안보이사회 이사국이 되어 세계경제와 세계평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나간다.
- 국제기구 사무국에의 한국인의 진출을 지원한다.
-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외교정책수립에 반영한다.
- 민간외교를 강화하고 국제적 문화교류를 확대한다.

3. 한민족 통합과 공영을 위한 외교 강화

- 해외교포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영사업무의 위상을 높인다.
-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여 해외교포의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 해외교포의 국내체류 및 투자활동에 관한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4. 통일과 민족번영을 대비하는 자주국방

- 군사동맹 위주의 한미안보협력관계를 정치·경제·군사·외교 등 포괄적 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킨다.
- 남북간 상호신뢰 속에 군사정보교환과 군비통제를 실현한다.
- 통일 후의 민족국방을 고려하는 국방정책을 수립한다.

5. 미래지향적 방위체제의 확립

- 지역전략적 차원의 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 군의 전문화 · 과학화 · 정예화를 이룩한다.
- 군사시설 및 군수산업체를 민수시설로 전환하는 대책을 강구한다.
- 국방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정보전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

6. 국민과 함께 하는 군

- 군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한다.
- 사병의 군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복지수준을 향상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한다.
- 전역하는 장 · 사병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한다.
-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군제도를 개선한다.

편찬위원회

위원장	김호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위 원	유영렬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용호	인하대학교 교수
	조중빈	국민대학교 교수
	심지연	경남대학교 교수
	박찬욱	서울대학교 교수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정병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안병도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김현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간사장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간사장(전)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간사장(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간 사	이계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장
간 사(전)	서재영	선거연수원 교수
서 기	장성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 사무관

편찬실무단

- 집필진**
- 장성훈(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 사무관)
 - 이영춘(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 사무관)
 - 김성일(서울시 송파구선관위 지도담당관)
 - 김재훈(중앙선관위 기획재정관 사무관)
 - 심현화(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 주무관)
 - 정옥경(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 주무관)
 - 전성기(경기도 김포시선관위 주임)
 - 안평국(전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
 - 한승석(전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 박영길(전 서울시선관위 관리과장)
 - 홍주형(전 인천시 서구선관위 주임)
- 교열**
- 임좌순(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박원균(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선관위 사무국장)
 - 탁덕균(서울시 동작구선관위 사무국장)
 - 김형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선관위 사무국장)
 - 김창희(전 동아일보 정치부기자)

大韓民國政黨史 第4輯

인 쇄	2009년 12월 10일
발 행	2009년 12월 17일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길 30 (중앙동 2-3) 전화 02-503-0863 팩스 02-503-0864 http://www.nec.go.kr
디자인 · 제작	(주)에스아이케이알 02-2264-5298
